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1385-10

사회보장위원회
Social Security Committee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Factbook

202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Factbook

202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발간사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사회보장통계를 통해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과 국민의 욕구를 가늠하고 미래의 예측을 통해 다양한 위기상황과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대상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영역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은 2013년부터 발간된 사회보장통계의 여덟 번째 결과물로, 국가승인통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와 행정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실증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정부의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성과와 우리의 복지수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사회보장통계는 14개 세부영역, 269개 지표로 구성되며, 국민의 관심이 큰 저출산·고령화와 가족구조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현안과 추진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가족과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4개 정책대상과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문화, 주거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9개 정책영역에 따라 총 14개 분야로 구분하여 통계를 제공하고, 노인인구와 아동이 직면한 사회문제를 카드 뉴스로 제작, 배포하여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통계를 삶 속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사회보장통계 정보를 PC와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통계 포털을 개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계 정보를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함으로써 사회보장통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발간에 협조해 주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재정·통계전문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이 사회보장현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의 삶과 수요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 성숙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 **권 덕 철**

이용자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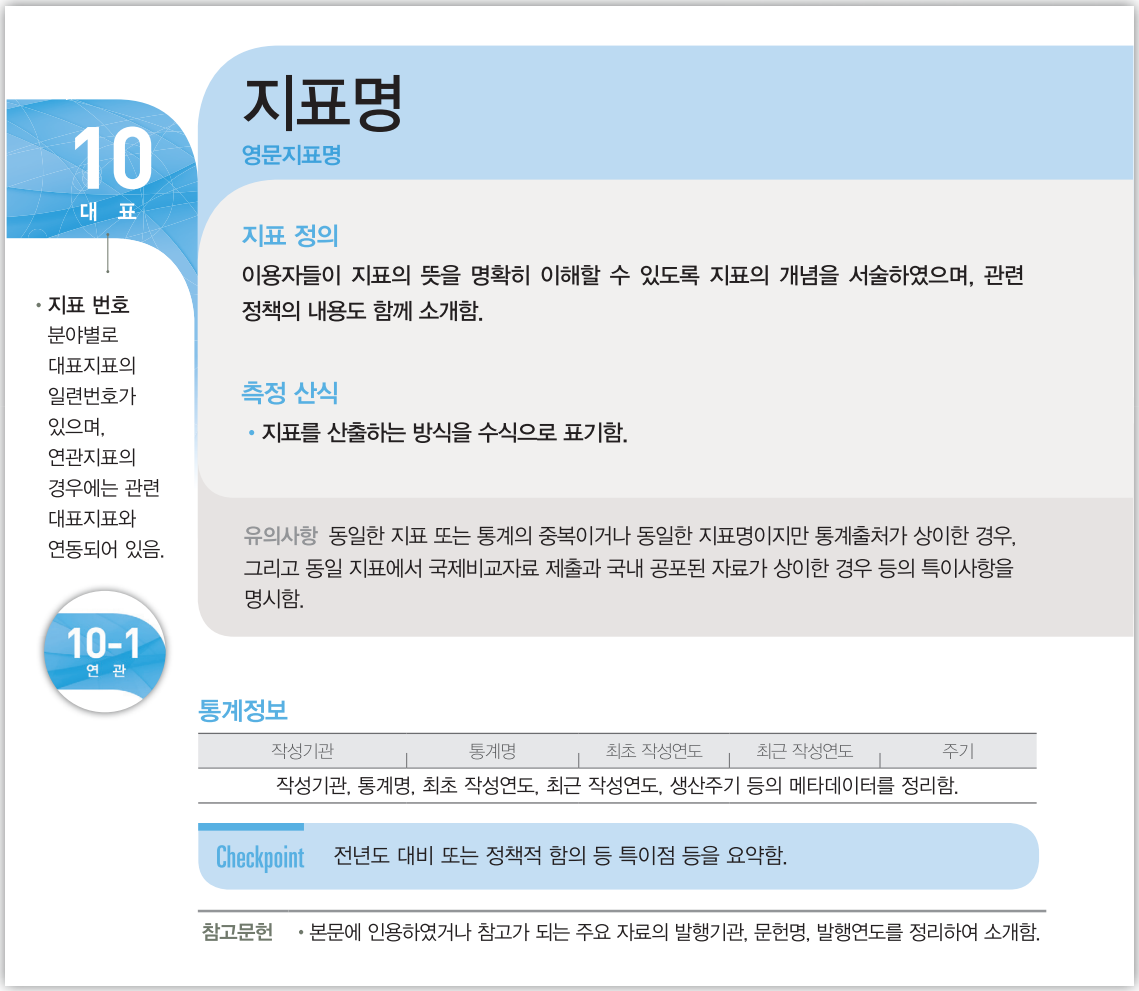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과 시대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통계 연보임.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가족, 아동, 노인, 장애인,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문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준과 삶의 질에 관련된 통계를 종합 제시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은 14개 분야, 52개 세부 영역을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함.
- 각 분야별 Highlight에는 2019년(통계 작성연도)의 사회보장 관련 현안을 정리함.

[그림] 사회보장통계 분야와 각 세부 영역명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음.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은 다음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 정보 중에서 전년도 수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업데이트, 오류 정정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것임.
- 반올림 처리로 세부 항목의 합계와 총계(전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수록된 통계는 사회보장통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19년 12월 말 현재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의 작성연도는 주로 2019년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된 미공표 자료는 작성 시점의 차이로 인해 부처가 발간하는 각종 통계 연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보고서에 사용된 부처명은 2020년 11월 현시점의 부처명을 기준으로 작성함.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은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기반으로 전자책(e-book)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 사회보장통계는 분야 및 영역, 생애주기별로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책자 표지의 QR코드를 이용하여 통계서비스 포털로 접속할 수 있음.
- 전자책(e-book)과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sc.go.kr)에서 본 보고서에 활용된 각종 통계표를 엑셀 양식으로 받아볼 수 있음.

※ 발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로 문의 바랍니다. (044-202-3723, 3724)

인포그래픽 014

사회배경 026

1 가족 040

2 아동 074

3 청년 108

4 노인 124

5 장애인 146

6 근로 188

7 소득보장과 빈곤 220

8 건강 252

9 보육 및 교육 316

10 문화 346

11 주거 372

12 에너지 398

13 환경 414

14 사회재정 436

지표별 목차

사회 배경

01. 인구성장률 028
02. 총인구 029
03. 인구피라미드 030
04. 부양비 031
05. 합계출산율 032
06. 국내총생산 034
07. 1인당 국민총소득 035
08. 경제성장률 036
09. 소비자물가지수 037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038

1 가족

01. 1인 가구 044
02. 노인가구 045
03. 한부모가구 047
04. 국내외 입양아동 수 048
04-1.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049
04-2.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050
05. 다문화가구 052
05-1. 북한이탈주민 054
06.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55
0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56
08.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057
09.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058
10. 조이혼율 059
10-1. 조혼인율 060
10-2.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061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2
1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064
12.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6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8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0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2

2 아동

01. 아동 수면시간 078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080
03. 아동 자살률 082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84
04-1. 아동 손상 경험률 086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87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089
07. 아동 빈곤율 091
0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093
07-2. 아동급식 지원자 수 094
08. 나홀로 아동 수 095
08-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097
09. 요보호 아동 수 100

09-1.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102
09-2.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103
09-3.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105
10.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106

3 청년

01. 청년고용률 112
01-1.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113
02. 청년 비정규직 비율 114
03.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115
04. 청년 니트(NEET) 비율 116
05. 청년 상대적 빈곤율 118
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119
07.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120
08. 청년 우울감 경험률 121
09.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122
10.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123

4 노인

01. 65세 기대여명 129
02. 노인의 ADL 제한율 131
03. 노인의 운동 실천율 132
03-1.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133
04. 노인의 학대경험률 134
05. 노인 진료비 136
05-1.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137
06.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138
06-1.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140
07.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141
07-1.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142
08. 장기요양기관 수 143
08-1.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145

5 장애인

01. 등록장애인 수 150
01-1. 장애출현율 153
02.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154
02-1.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155
03. 장애인 복지시설 수 156
03-1.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157
03-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158
03-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159
0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160
0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62
0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64
06-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166
07.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168
08. 특수교육대상자 수 170
08-1.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171
09.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172
10. 장애인 교육수준 174

11.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175
11-1. 장애인 고용률 176
11-2. 장애인 실업률 177
1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78
13.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179
14.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80
14-1. 장애수당 수급자 수 181
14-2.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182
15.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183
16.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185

6 근로

01. 경제활동참가율 192
02. 고용률 193
03. 실업률 194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196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197
06. 총 근로시간 198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200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201
09. 사회보험 가입률 203
10. 산업재해율 204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205
12. 시간급 최저임금 206
12-1. 최저임금 영향률 208
13. 시간당 임금총액 209
14.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210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212
15-1. 자활사업 참여자 수 214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16
16-1.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18
17.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219

7 소득보장과 빈곤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24
01-1.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226
01-2.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28
01-3.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229
01-4. 의료급여 수급자 수 231
01-5. 교육급여 수급자 수 233
02.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34
03. 상대적 빈곤율 236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238
05. 소득5분위배율 240
06. 지니계수 241
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43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245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247
09-1.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249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250

8
건강

01. 기대수명 257
01-1. 건강수명 259
01-2. 주관적 건강인지율 260
02. 조사망률 261
02-1. 연령표준화사망률 263
02-2. 영아사망률 264
02-3.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65
03. 저체중아 발생률 266
03-1. 조산율 267
04. 자살률 268
04-1. 정신장애 유병률 270
04-2. 우울장애 유병률 271
05. 10대 다빈도 상병 272
05-1. 암 발생률 273
05-2.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274
05-3. 고혈압 유병률 275
05-4. 당뇨병 유병률 276
06. 현재 흡연율 277
06-1.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279
06-2.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80
06-3. 청소년 현재 흡연율 281
07. 고위험 음주율 282
07-1. 연간 음주율 283
07-2. 청소년 현재 음주율 284
07-3. 1인당 알코올소비량 285
08. 비만율 286
08-1. 청소년 비만율 288
08-2. 걷기실천율 289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90
09-1.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291
10. 평균 재원일수 292
11. 1인당 의사 진찰 건수 293
11-1. 1인당 외래방문 횟수 294
11-2. 산전수진율 295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96
12-1.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298
12-2.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299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300
13-1.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301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302
14-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303
15. 의사 수 305
15-1. 면허의료인 수 307
16. 병상 수 308
16-1. 의료기관 수 310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311
17-1.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312
17-2.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313
17-3. 건강보험 급여비 314
17-4. 건강보험 보장률 315

9 보육 및 교육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320
01-1. 0~5세 아동보육공급률 322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323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324
03-1.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325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327
05. 학교급별 취학률 328
06. 학급당 학생 수 329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330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331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33
09-1.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334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335
10-1.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337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339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341
13. 고등교육 이수율 342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344

10 문화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350
01-1.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351
02. 연간 독서량 352
02-1. 연간 독서율 353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355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356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357
06.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359
07. 생활체육 참여율 361
07-1.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362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363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365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366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367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368
1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369
14. GDP 대비 문화예산 370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371

11 주거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376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378
03.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379
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381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382
05-1.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384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385
07. 노숙인 수 387
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388
09.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390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392
10-1.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393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394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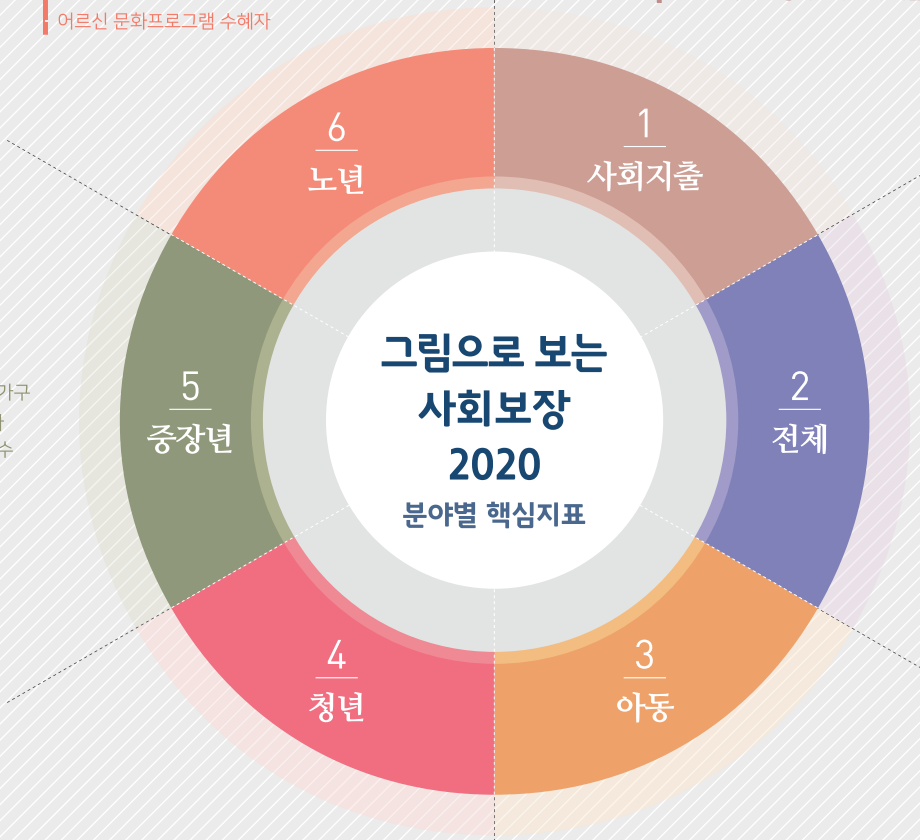
12 에너지
01. 가전기기 보급률 402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403
03. 도시가스 보급률 405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406
05.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407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408
07.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410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411
09. 연료비 지원 412

13 환경
01.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418
01-1.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419
01-2.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420
02. 주요 도시 소음도 421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422
03-1.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423
03-2.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424
04.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425
04-1. 환경예산 비율 426
05. 상수도 보급률 427
06. 하수도 보급률 428
06-1.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430
06-2. 하수도 설치율 431
07.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432
07-1.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433
08. 환경성질환자 수 435

14 사회재정
0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440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442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444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445
05. 공적연금수지 446
06. 고용 · 산재보험수지 447
0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448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449
08-1.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451

INFOGRAPHICS

2020



노인 인구 비중
상대적 노인 빈곤율
기초연금 수급률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학대 신고 건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공공사회지출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의 구성
OECD 국가의 상위 2개 분야 지출 구성

경제활동 참가율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및 관람 횟수
비만율
걷기 실천율

1인 가구 수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
건강식생활 실천율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주요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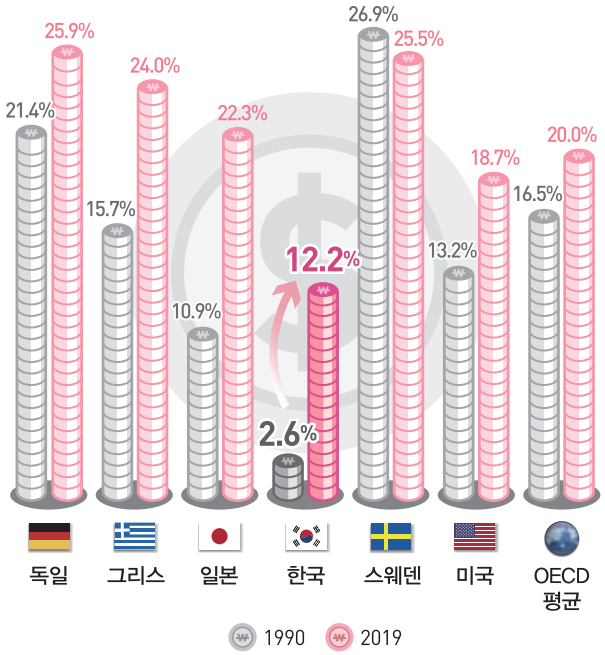
청년 고용률
장애청년 경제활동상태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우울감 경험률
사회단체 경험률

건강식생활 실천율
시도별 유치원 등록대상자 및 현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지역아동센터 수
상대적 아동 빈곤율

사회지출

▶ 공공사회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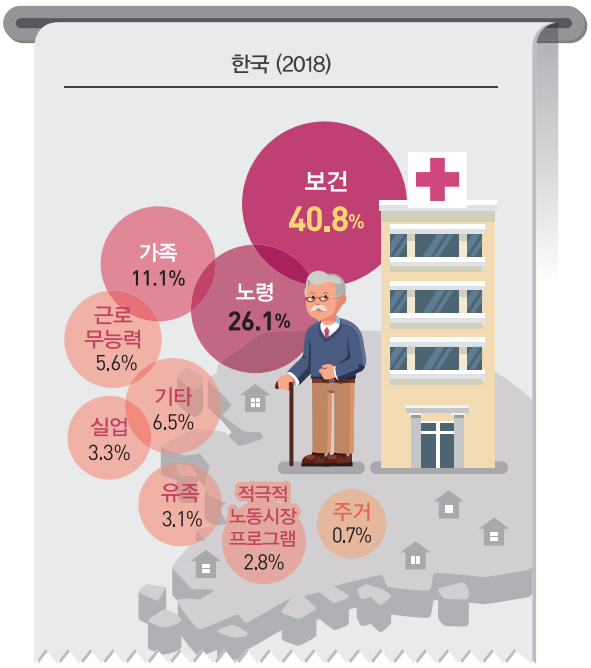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주: 일본은 2017년도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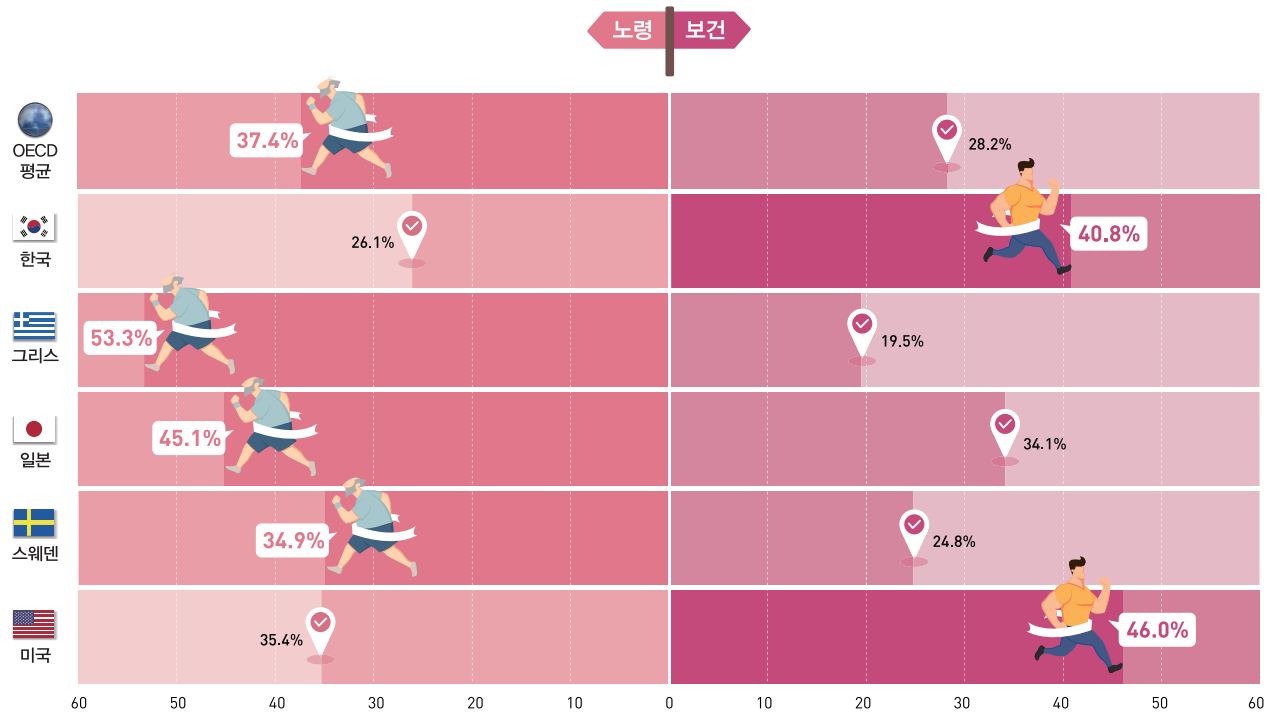
▶ 우리나라 공공사회지출의 구성

(단위: %)



▶ OECD 국가의 상위 2개 분야 지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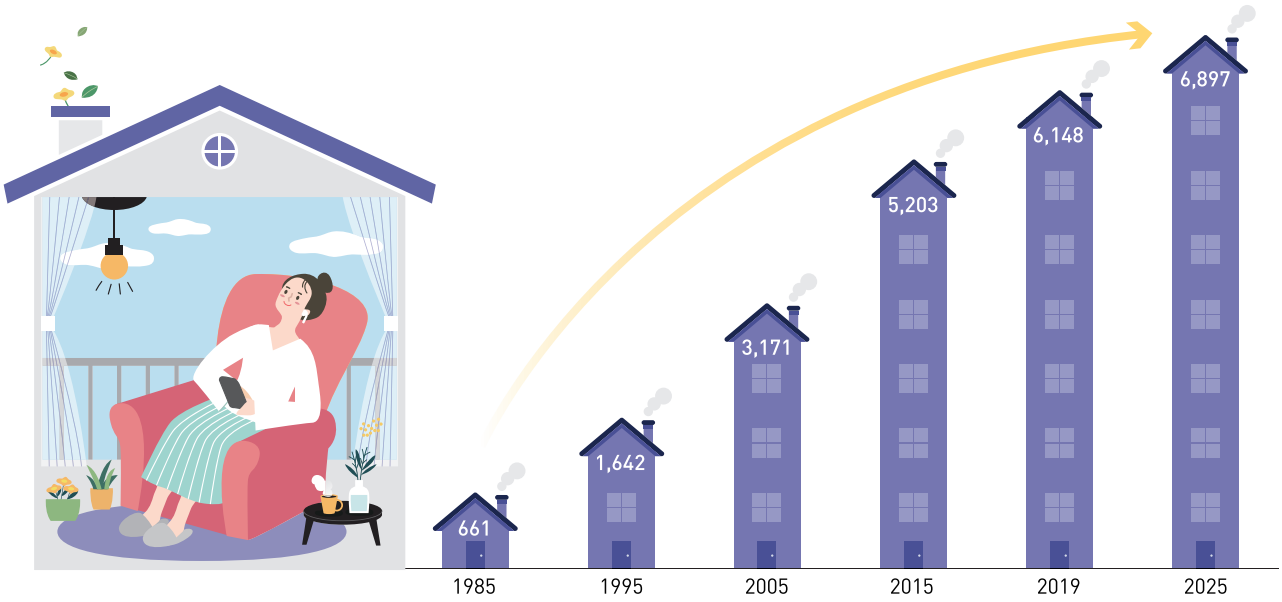
(단위: %)



전체

▶ 1인 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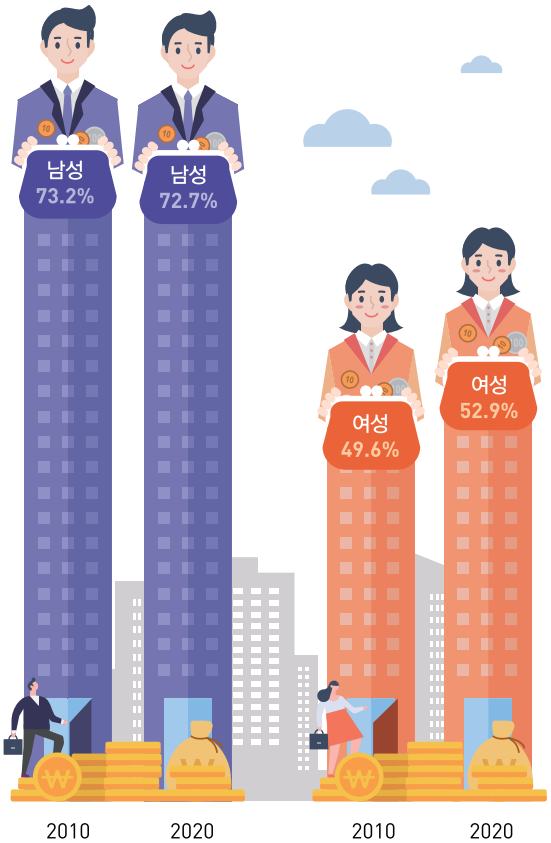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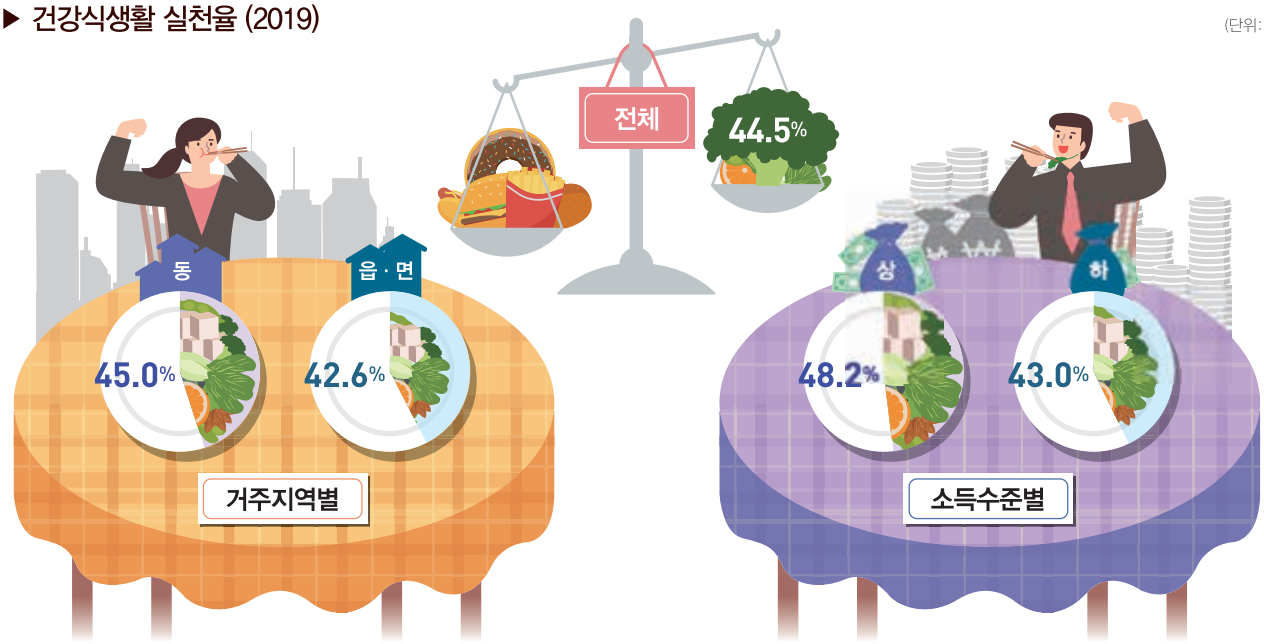
▶ 우리나라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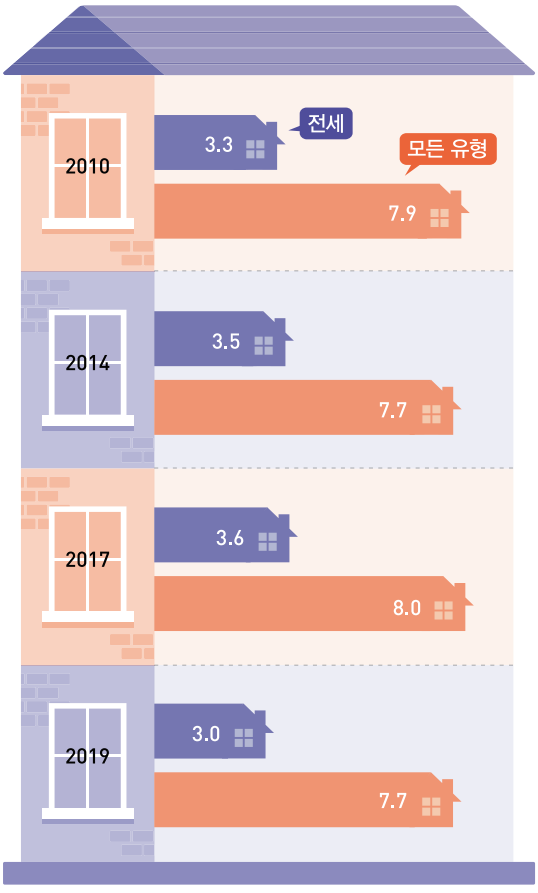
▶ 건강식생활 실천율 (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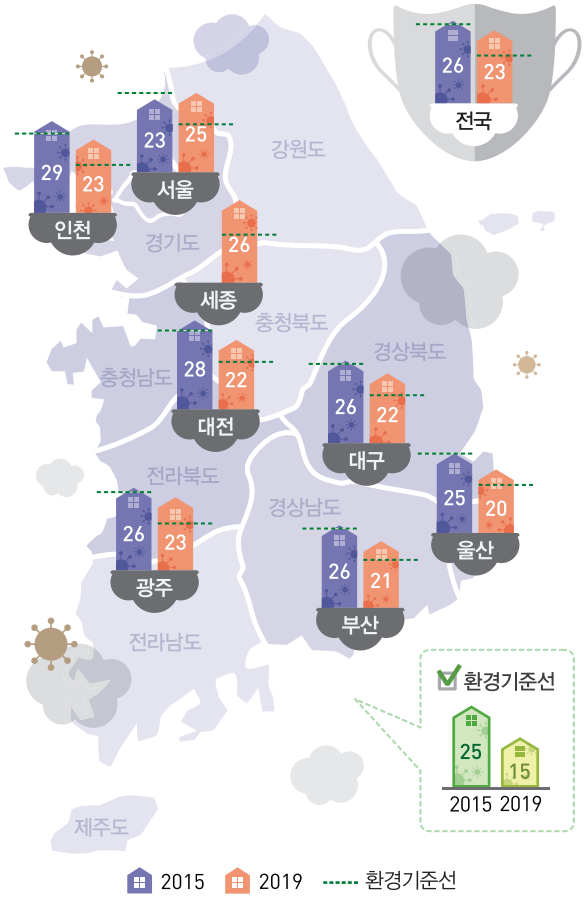
▶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 주요도시 초미세먼지(PM2.5) 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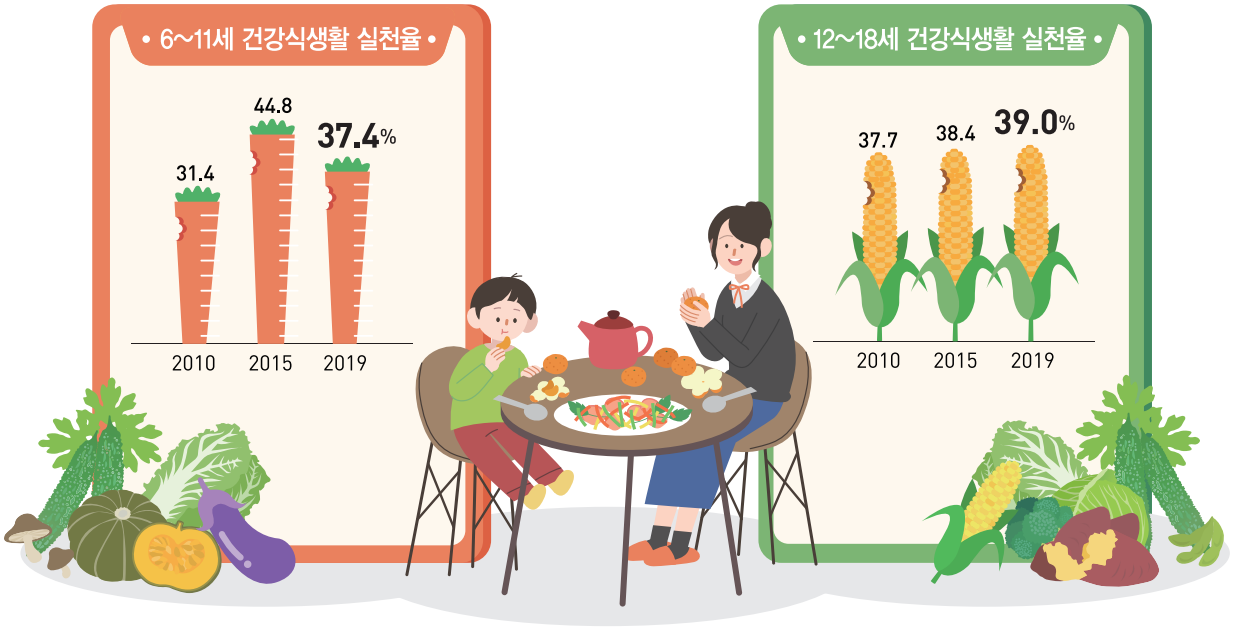
(단위: ㎍/㎥)



아동(18세 미만)

▶ 건강식생활 실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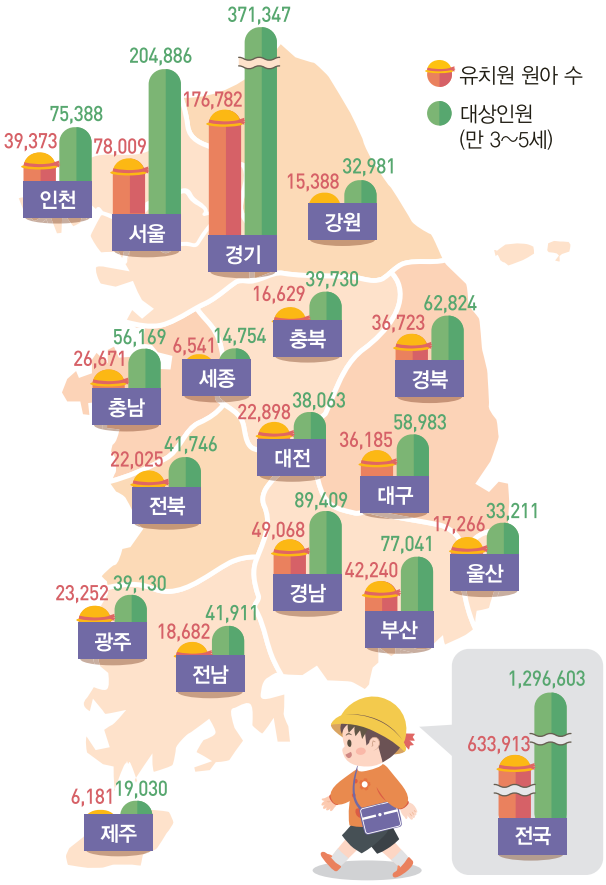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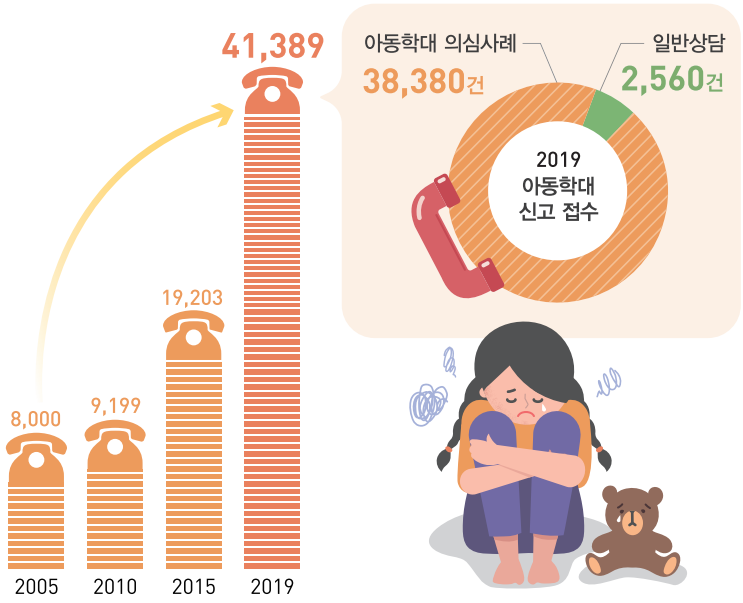
▶ 시도별 유치원 등록대상자 및 현원 (2019)

(단위: 명)



▶ 아동학대 신고 접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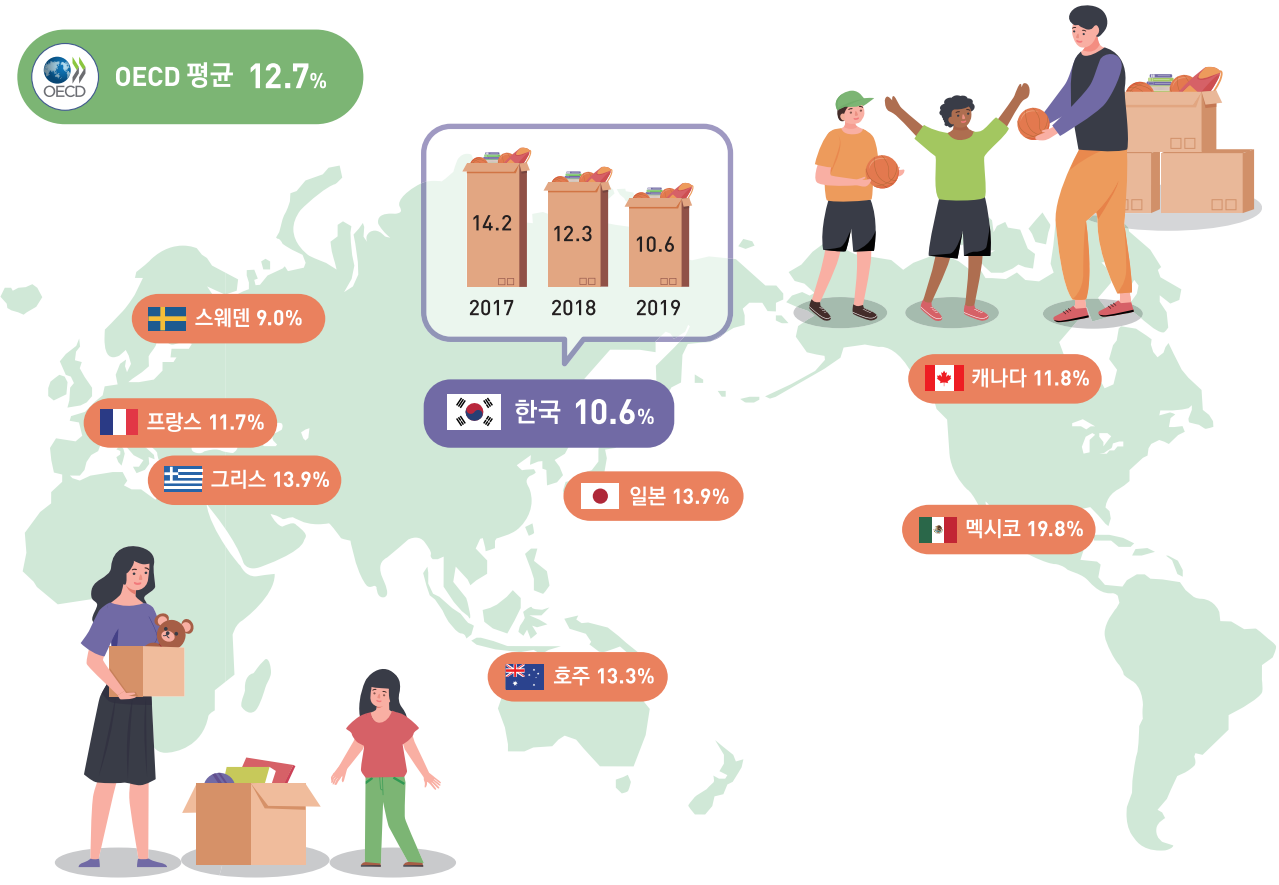
▶ 지역아동센터 수

(단위: 개소)



▶ 상대적 아동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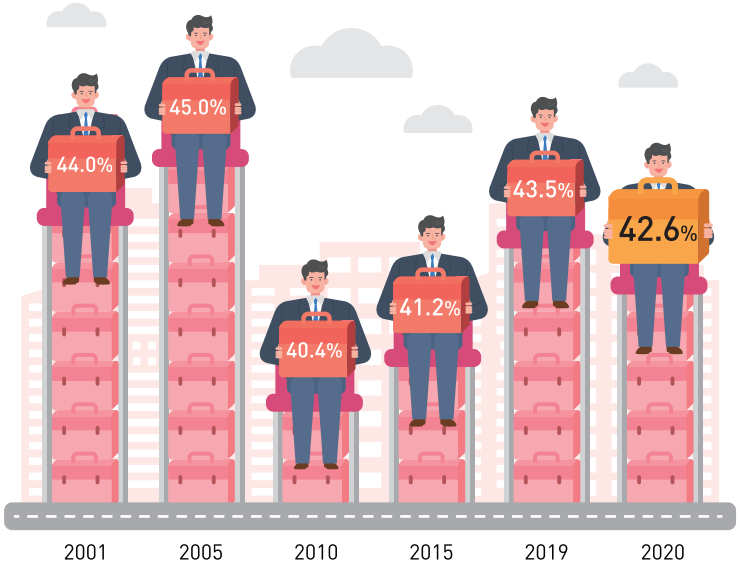


주: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2018년도 통계 수치임.

청년(19세~30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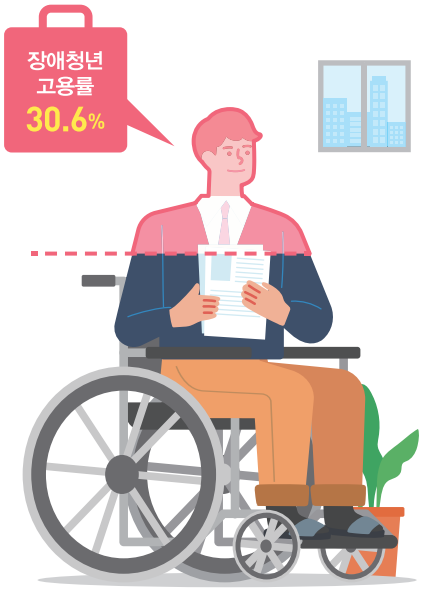
▶ 청년 고용률

(단위: %)



▶ 장애청년 경제활동상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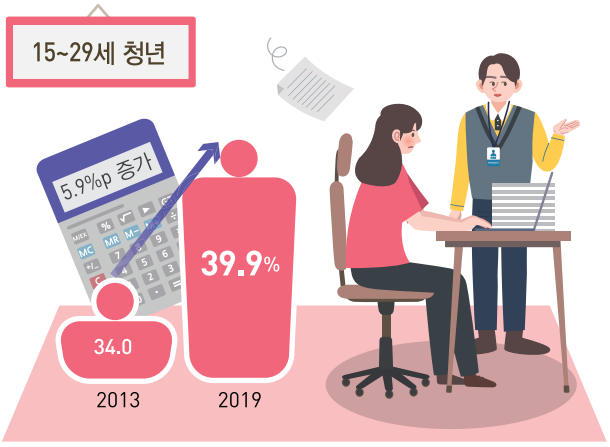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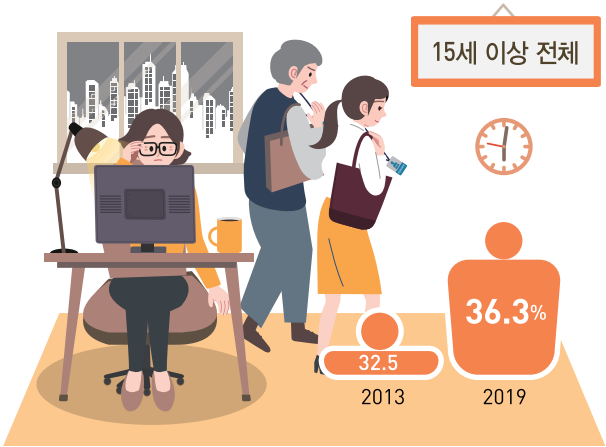




▶ 청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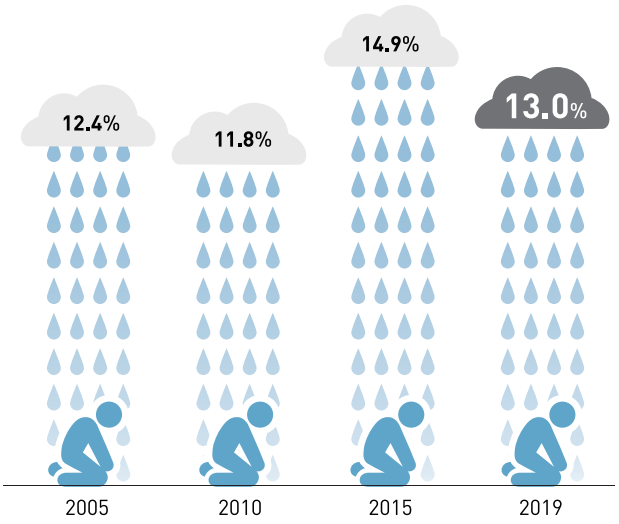




▶ 청년 우울감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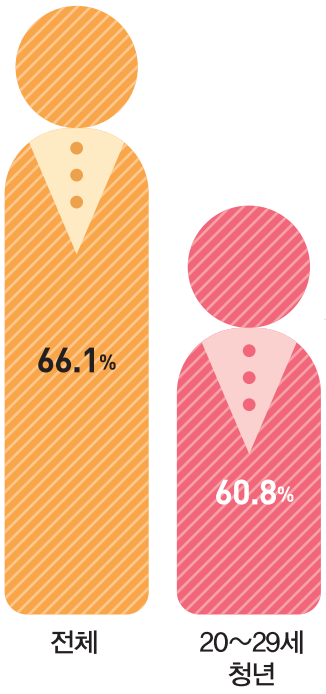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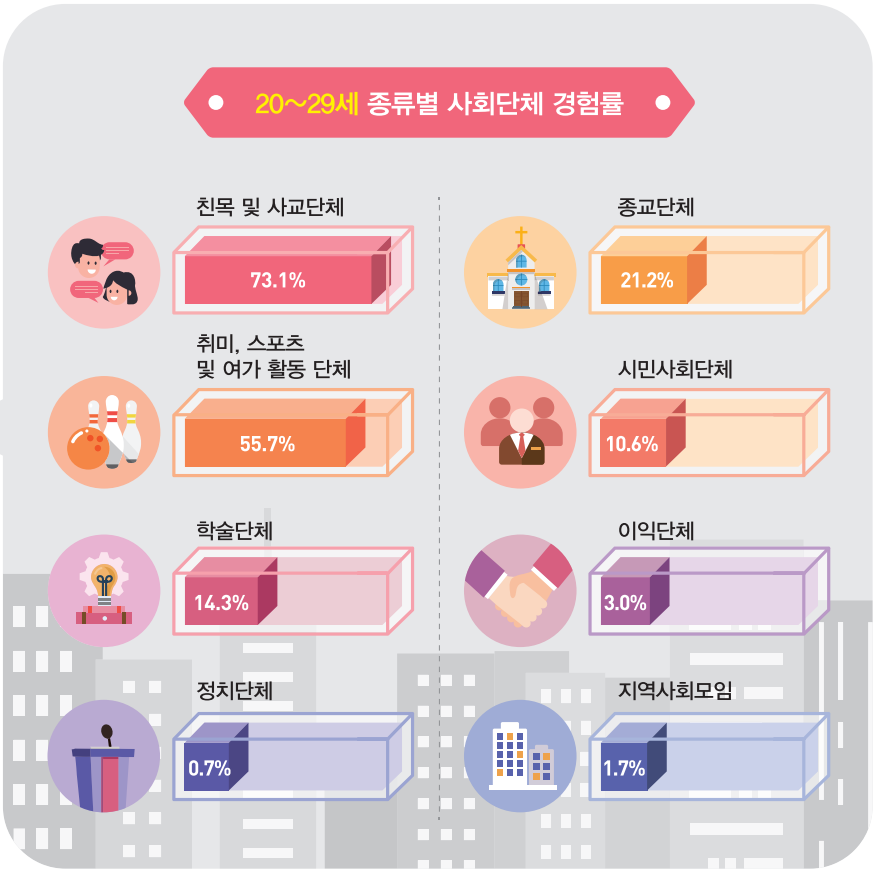




▶ 사회단체 경험률 (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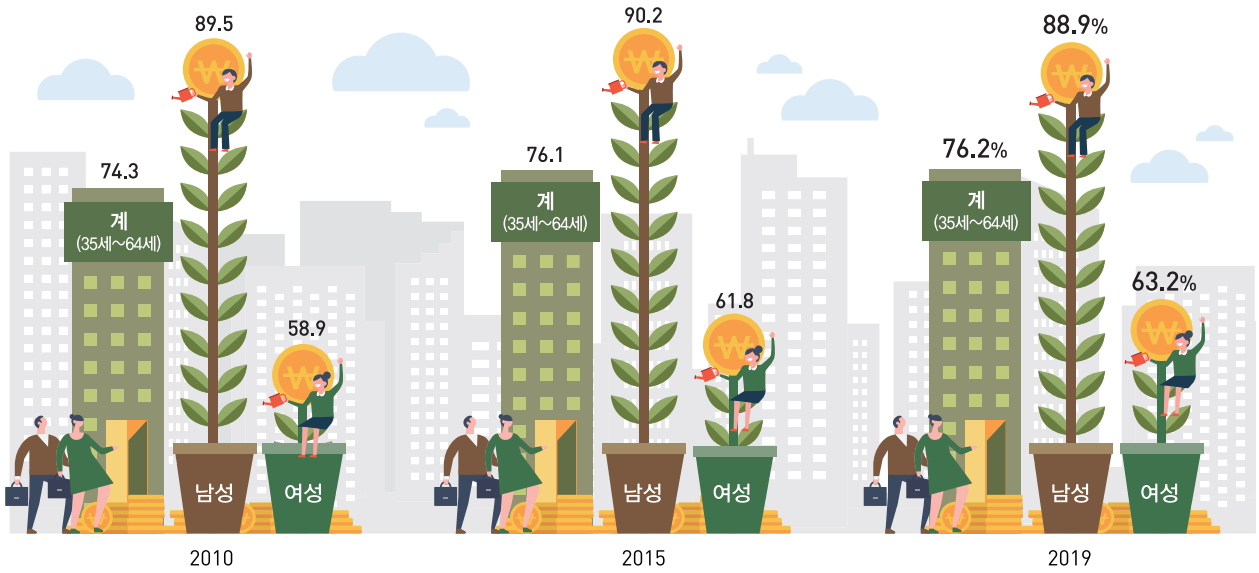




중장년(30대 초중반 ~ 60대 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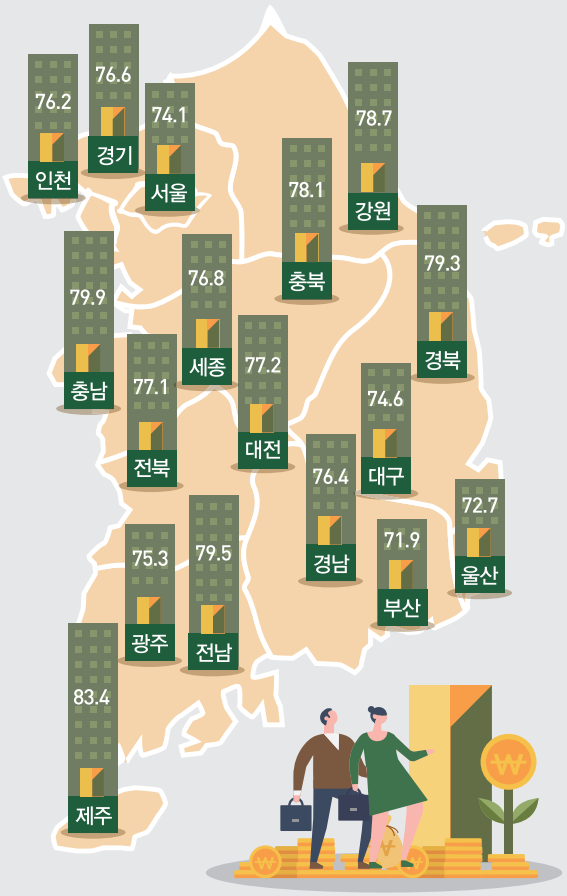
▶ 경제활동 참가율 (35세~64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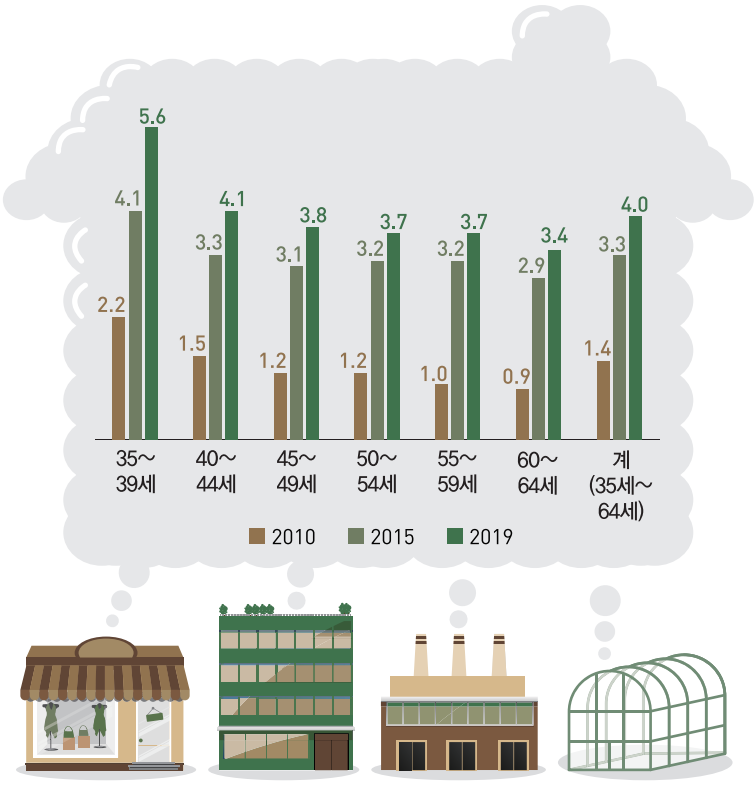


2019년 시도별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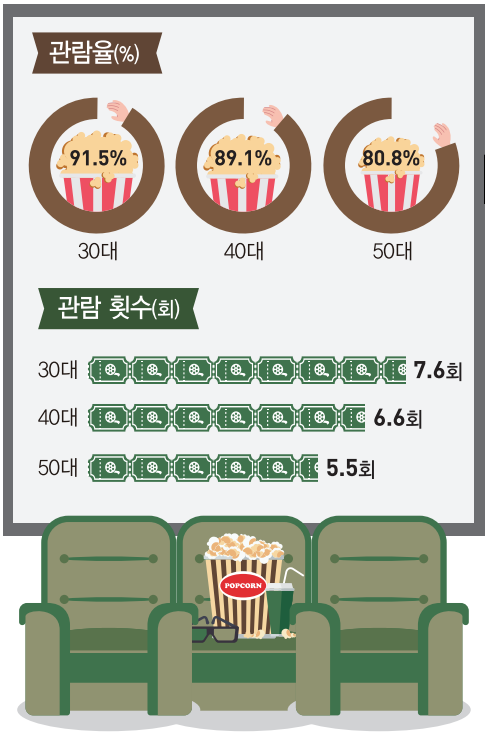
▶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 (35세~64세)

(단위: %)



▶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율 및 관람 횟수 (2019)

(단위: %,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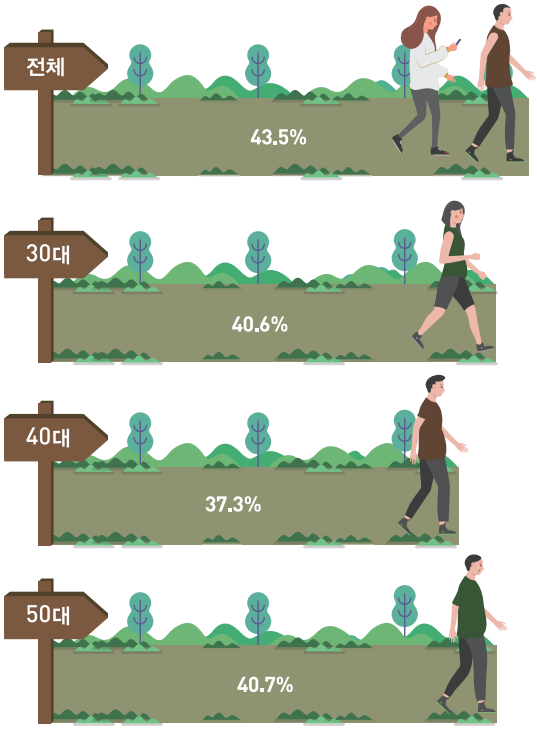
▶ 비만율 (2019)

(단위: %)



▶ 걷기 실천율 (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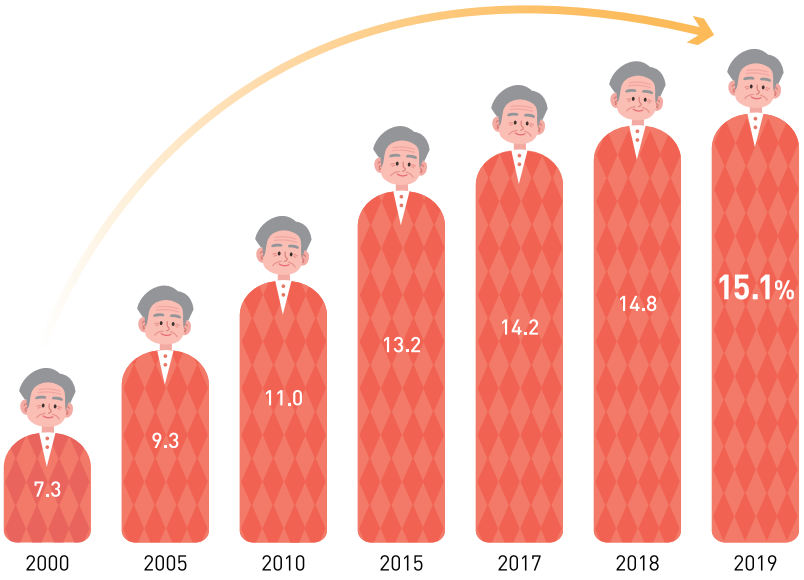


노년(65세 이상)

▶ 노인 인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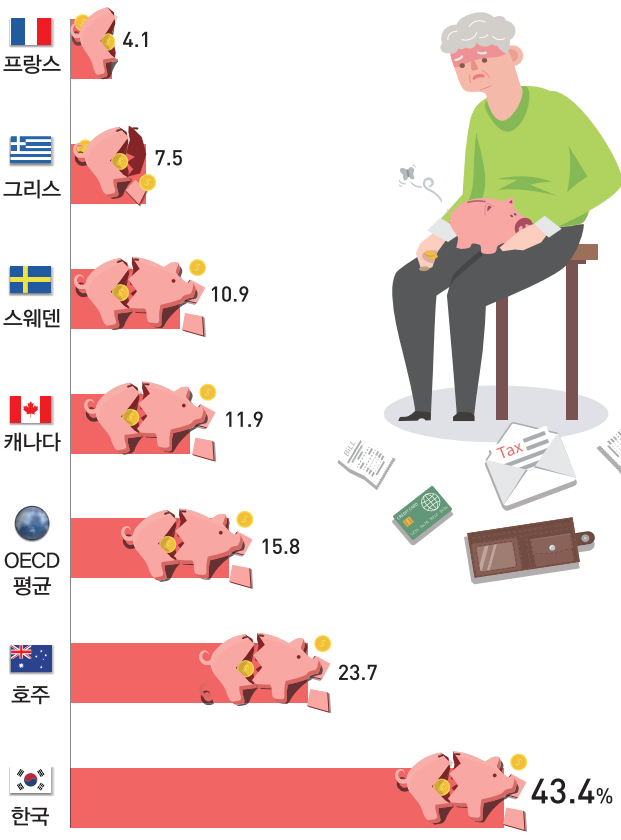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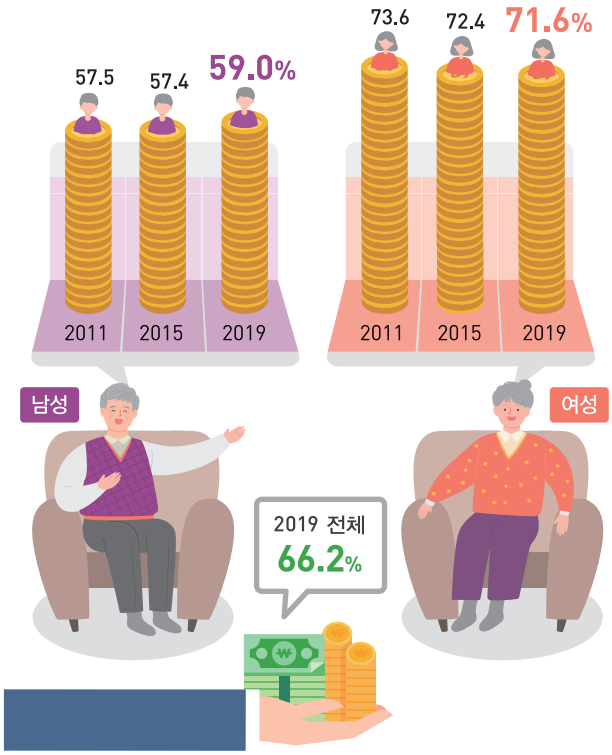
▶ 상대적 노인 빈곤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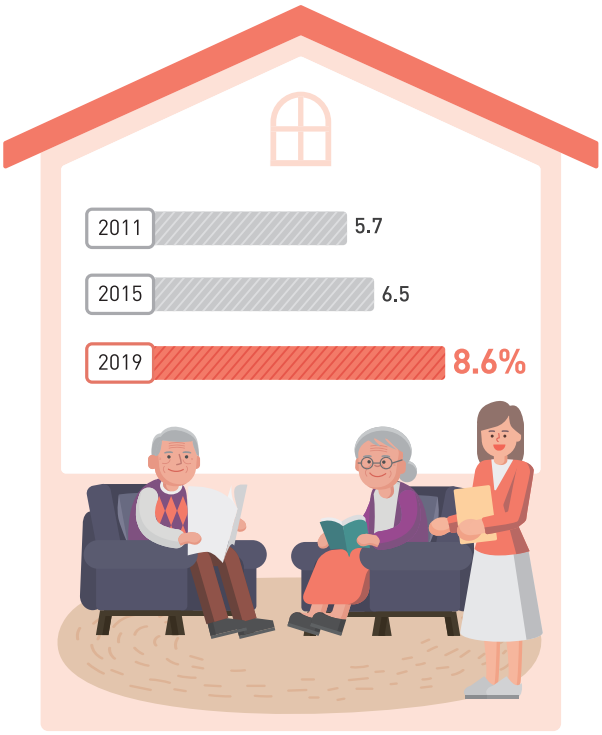
▶ 기초연금 수급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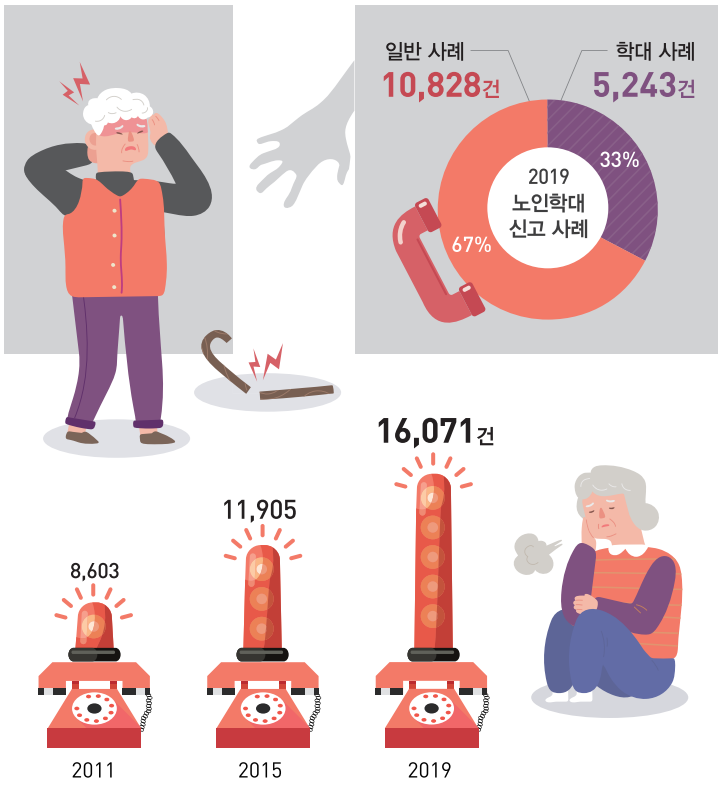
▶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단위: %)



▶ 노인학대 신고 건수

(단위: 건, %)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2019)

(단위: 인구 십만 명당 수혜자 수 비)



사회배경

01 인구성장률
02 총인구
03 인구피라미드
04 부양비
05 합계출산율
06 국내총생산
07 1인당 국민총소득
08 경제성장률
09 소비자물가지수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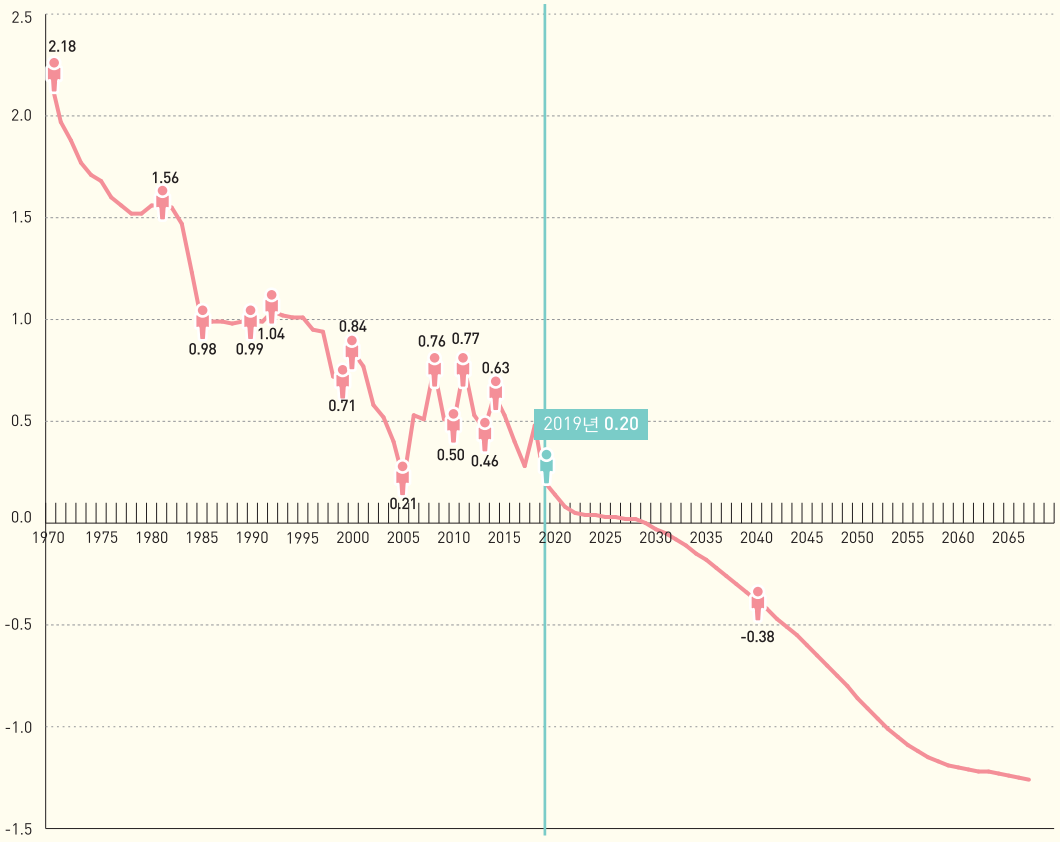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세부영역	지표	
인구	인구성장률	
	총인구	
	인구피라미드	
	부양비	
	합계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평균초산연령
거시경제적 여건	국내총생산	
	1인당 국민총소득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국가재정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01 인구성장률
Population Growth Rate

그림 1 인구성장률 (1970~2067)

(단위: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1 연도별 인구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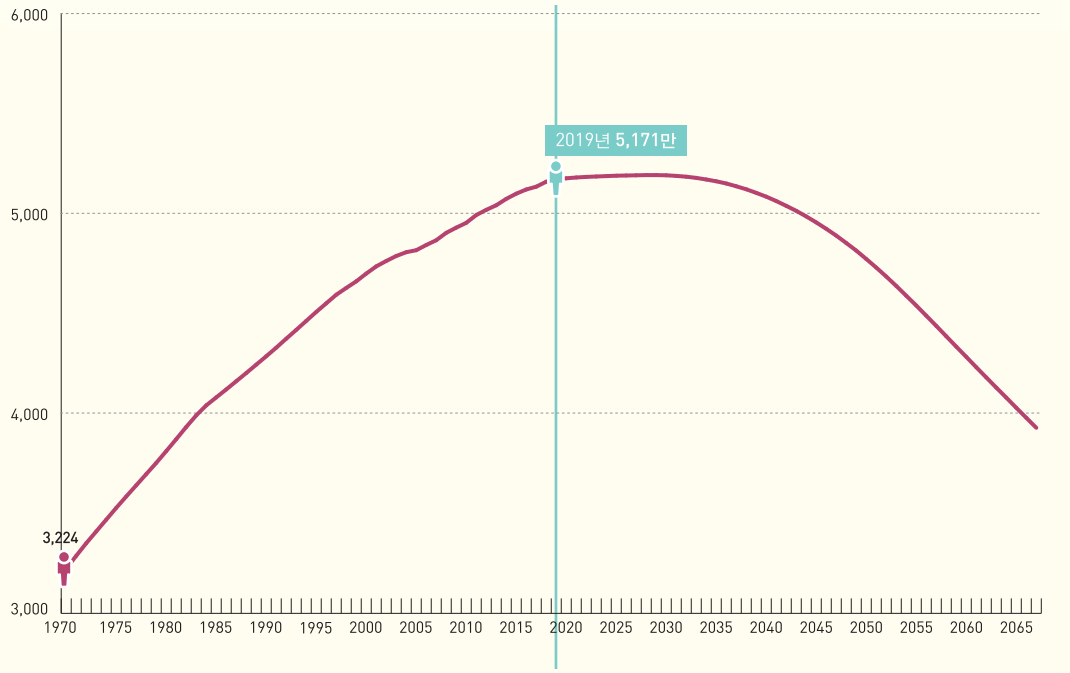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9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인구성장률	2.18	1.56	0.99	0.84	0.50	0.20	0.14	-0.03	-0.38	-0.86	-1.20	-1.26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2 총인구
The Total Population

그림 2 총인구 (1970~2067)

(단위: 만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2 연도별 총인구

(단위: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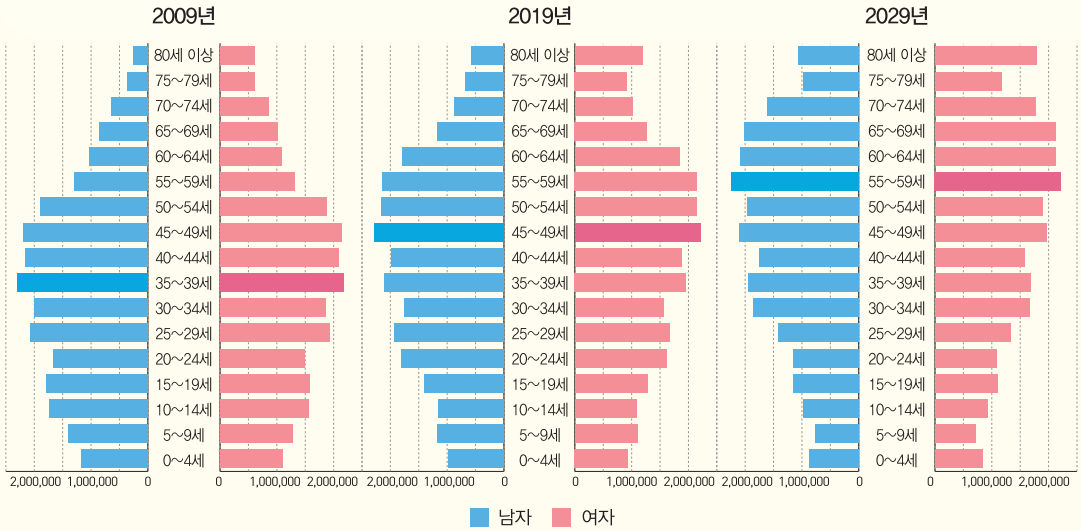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9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인구	3,224	3,812	4,287	4,701	4,955	5,171	5,178	5,193	5,086	4,774	4,284	3,929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3 인구피라미드
Population Pyramid

그림 3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명)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3 연도별 성별 · 연령별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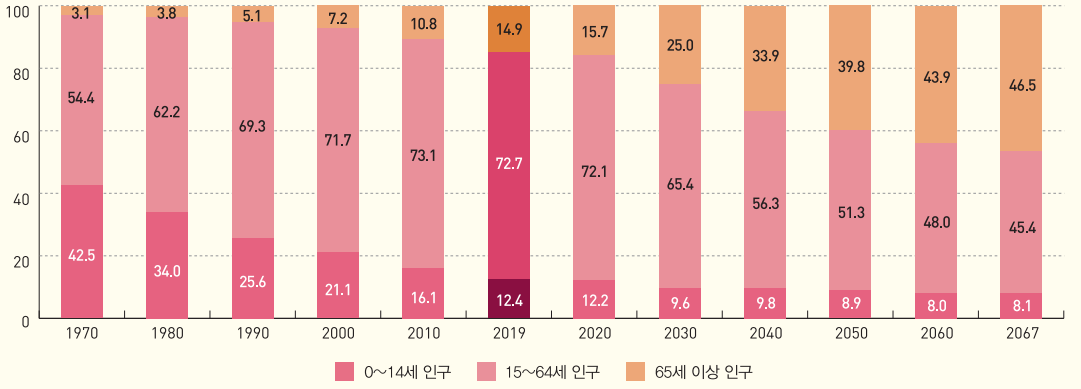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9			2019			2029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계	49,307,835	24,774,341	24,533,494	51,709,098	25,913,295	25,795,803	51,940,598	25,959,144	25,981,454
0~9세	4,945,130	2,568,322	2,376,808	4,193,431	2,152,155	2,041,276	3,185,266	1,634,905	1,550,361
10~19세	6,652,952	3,517,833	3,135,119	4,913,864	2,549,033	2,364,831	4,159,055	2,133,536	2,025,519
20~29세	7,154,091	3,729,949	3,424,142	6,992,924	3,721,980	3,270,944	4,992,078	2,582,495	2,409,583
30~39세	8,323,400	4,281,667	4,041,733	7,362,389	3,842,450	3,519,939	7,146,737	3,797,591	3,349,146
40~49세	8,565,487	4,349,632	4,215,855	8,342,617	4,255,799	4,086,818	7,390,207	3,844,097	3,546,110
50~59세	6,372,848	3,184,653	3,188,195	8,588,908	4,303,137	4,285,771	8,330,751	4,212,972	4,117,779
60~69세	3,987,320	1,897,253	2,090,067	6,080,337	2,966,389	3,113,948	8,354,921	4,112,941	4,241,980
70~79세	2,446,674	991,016	1,455,658	3,475,951	1,548,327	1,927,624	5,531,477	2,583,444	2,948,033
80세 이상	859,933	254,016	605,917	1,758,677	574,025	1,184,652	2,850,106	1,057,163	1,792,94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4 연도별 연령별 인구피라미드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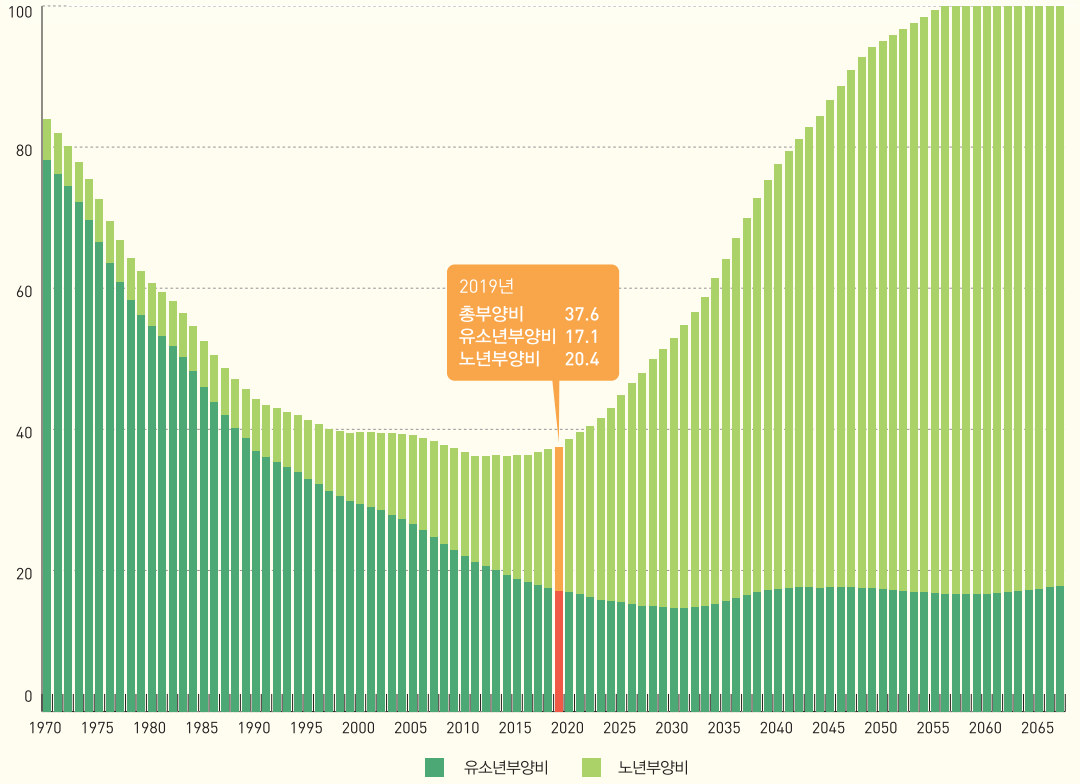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4 부양비
Dependency Ratio

그림 5 총부양비 (1970~2067)

(단위: %)



주: 1) 중위가정
2) 유소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
3)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4 연도별 부양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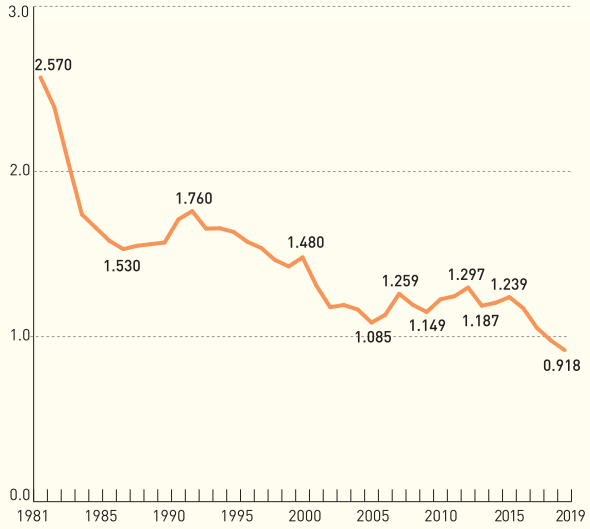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9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
총 부양비	83.8	60.7	44.3	39.5	36.9	37.6	38.6	53.0	77.5	95.0	108.2	120.2
유소년 부양비	78.2	54.6	36.9	29.4	22.0	17.1	16.9	14.7	17.4	17.4	16.7	17.8
노년 부양비	5.7	6.1	7.4	10.1	14.8	20.4	21.7	38.2	60.1	77.6	91.4	102.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5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그림 6 합계출산율 (198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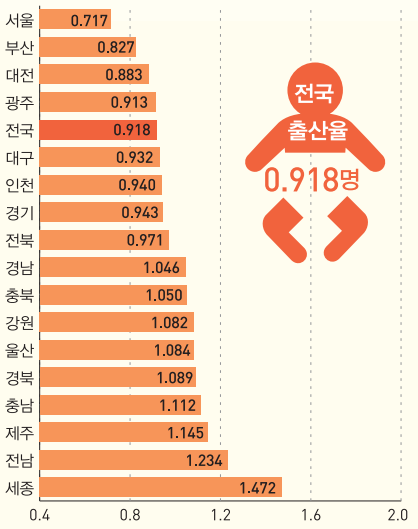
(단위: 가임기 여자 1명당 명)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8.26.)

그림 7 시도별 합계출산율 (2019)

(단위: 가임기 여자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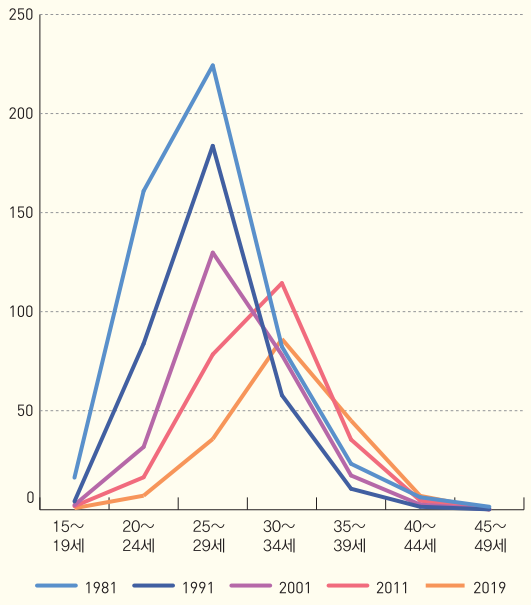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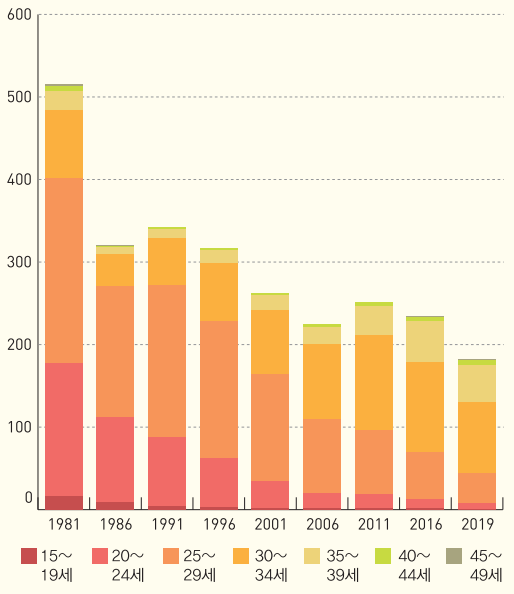
5-1. 연령별 출산율

그림 8 연도별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해당 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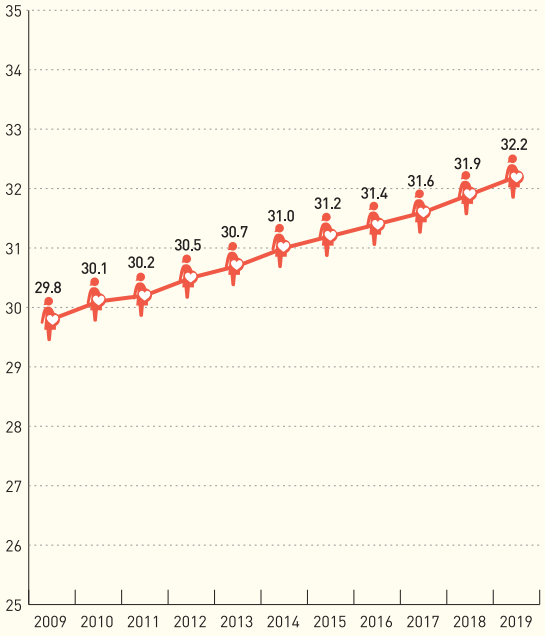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8.26.)

5-2. 평균초산연령

그림 9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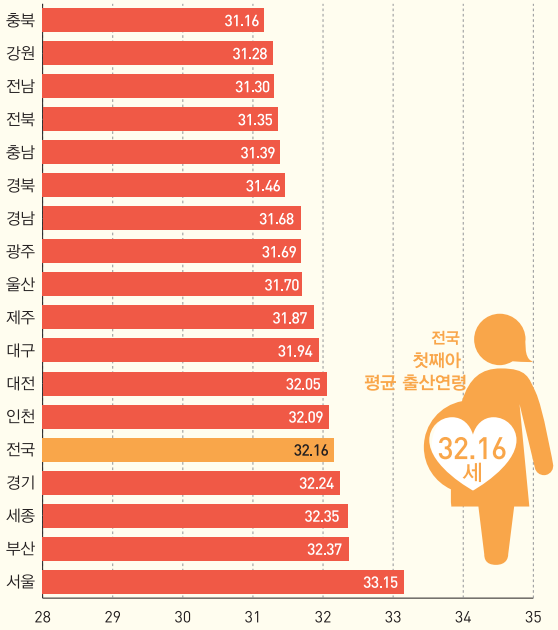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8.26.)

그림 10 시도별 모의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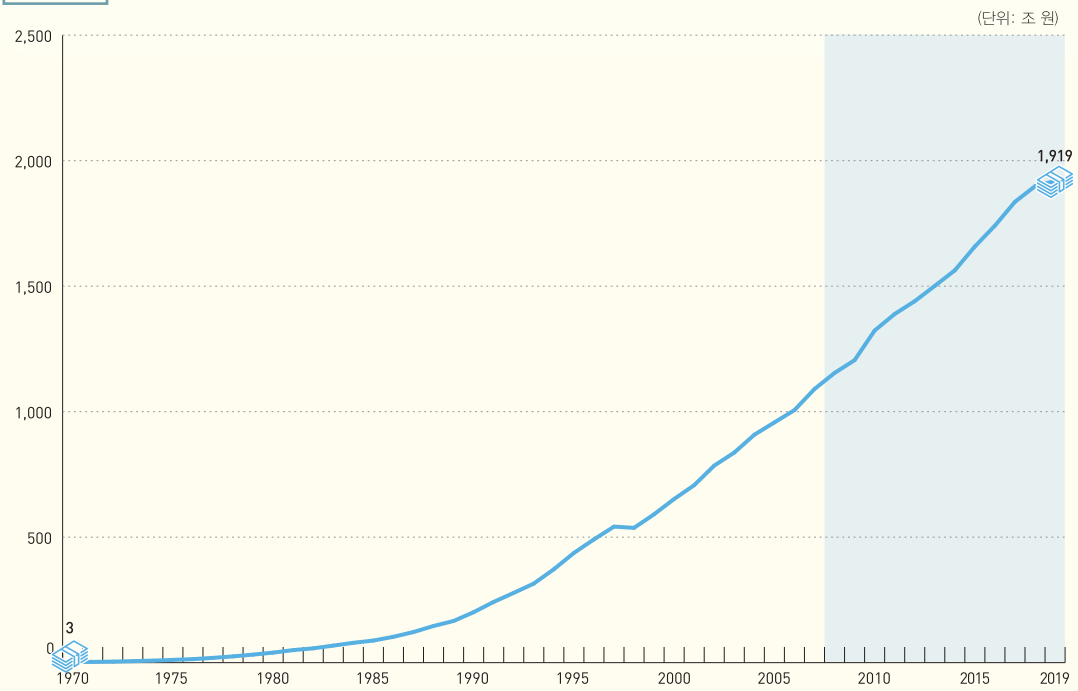
(단위: 세)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is.kr에서 2020.8.26. 인출)

06 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그림 11 국내총생산 (1970~201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5 연도별 국내총생산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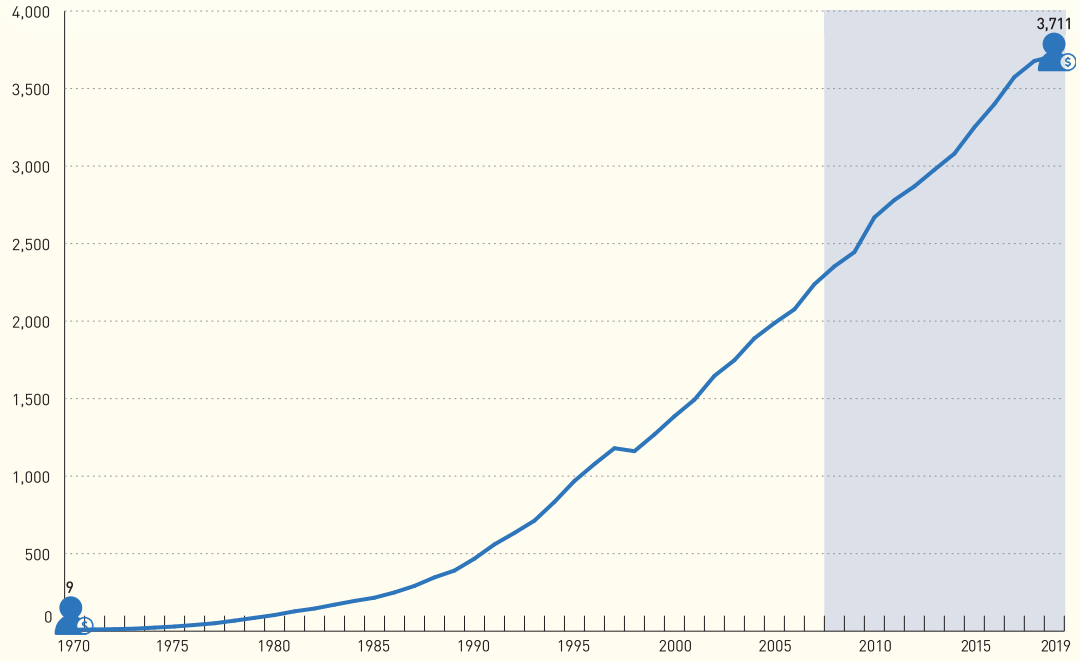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국내총생산	3	11	40	88	201	437	652	957	1,323	1,658	1,91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7 1인당 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

그림 12 1인당 국민총소득 (1970~2019)

(단위: 만 원)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6 연도별 1인당 국민총소득

(단위: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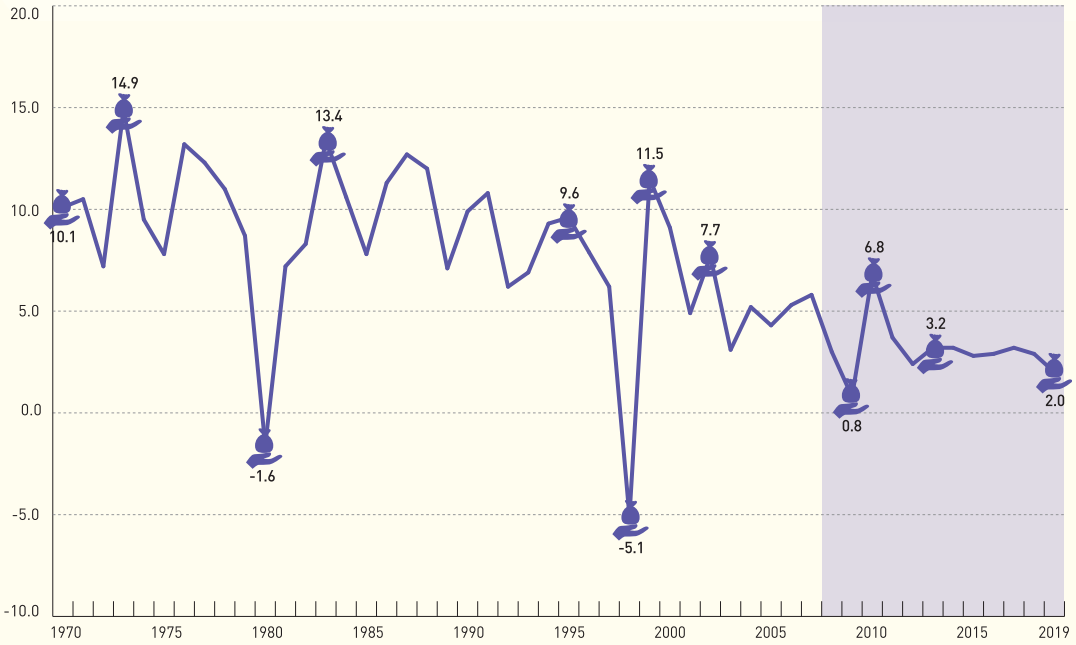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1인당 국민총소득	9	30	104	216	468	969	1,386	1,987	2,669	3,250	3,711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8 경제성장률
Rate of Economic Growth

그림 13 경제성장률 (1970~2019)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7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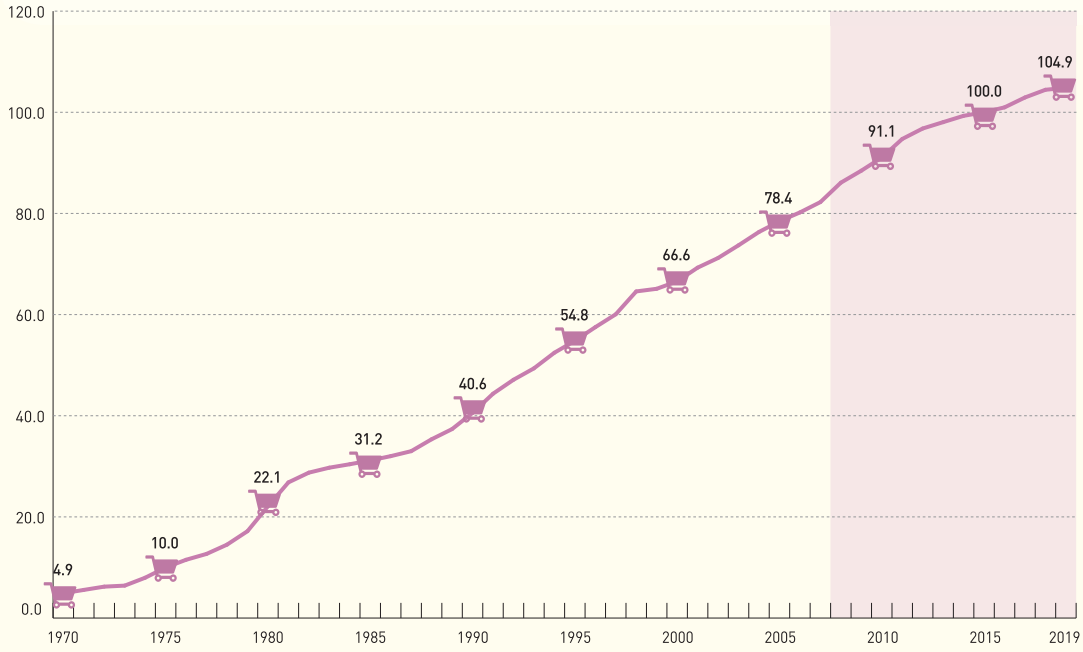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경제 성장률	10.1	7.8	-1.6	7.8	9.9	9.6	9.1	4.3	6.8	2.8	2.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9 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그림 14 소비자물가지수 (1970~2019)

(단위: 2015=100)



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5=100)의 총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8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2015=100)

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9
소비자물가지수	4.9	10.0	22.1	31.2	40.6	54.8	66.6	78.4	91.1	100.0	10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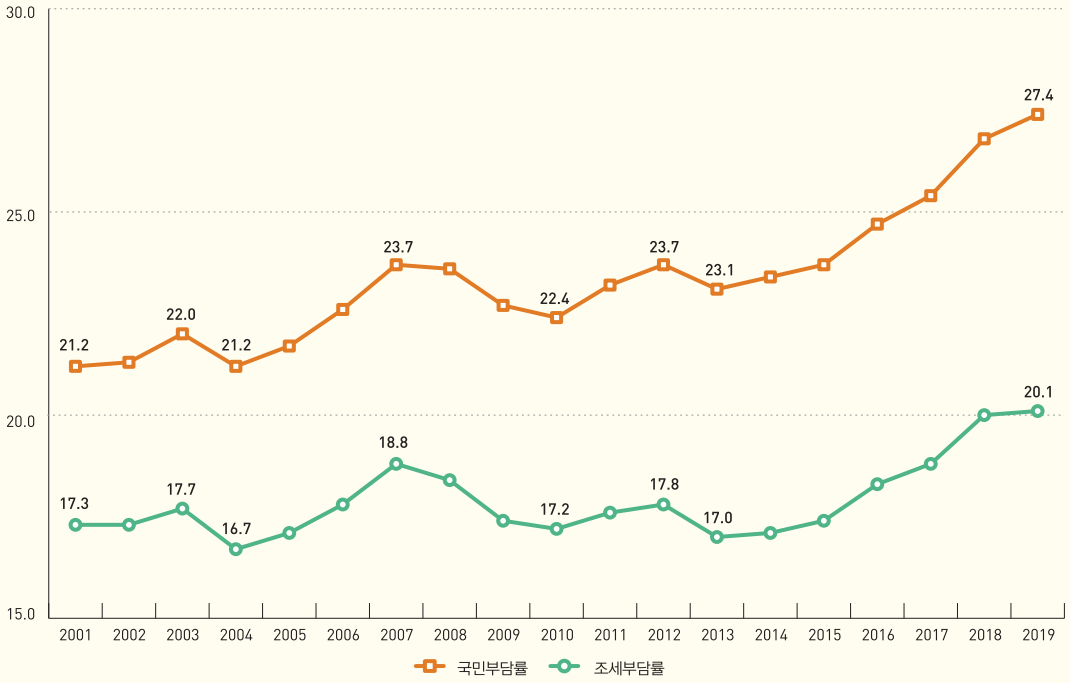
주: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지출목적별: 2015=100)의 총지수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10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 of GDP &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 of GDP

그림 15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2001~2019)

(단위: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1.1.10. 인출)

표 9 연도별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민부담률	21.2	21.3	22.0	21.2	21.7	22.6	23.7	23.6	22.7	22.4	23.2	23.7	23.1	23.4	23.7	24.7	25.4	26.8	27.4
조세부담률	17.3	17.3	17.7	16.7	17.1	17.8	18.8	18.4	17.4	17.2	17.6	17.8	17.0	17.1	17.4	18.3	18.8	20.0	20.1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1.1.10. 인출)

1

가족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1인 가구
02 노인가구
03 한부모가구
04 국내외 입양아동 수
05 다문화가구
06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07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08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09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10 조이혼율
1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2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3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5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1 가족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다양한 가족	1인 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국내외 입양아동 수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다문화가구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일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가족 갈등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조이혼율	조혼인율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가족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Highlight

한국사회의 인구구조는 출생아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감소와 고령 인구의 증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구조적 요인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자녀 출산이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의 감소,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과 가구 변화의 특징은 소가족화와 핵가족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족에 있어서의 변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돌봄의 기능을 약화시켜 자녀 양육과 부양의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족'분야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족을 보여줄 수 있는 1인 가구, 노인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등과 관련된 영역의 지표를 살펴보고,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의 주된 기능인 돌봄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포괄적인 가족 구성원 돌봄과 관련이 있는 가정관리 및 가족돌봄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등의 지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출생한 자녀의 돌봄과 관련이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등과 같은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과 같은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14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0만 가구 정도가 증가한 수준이다. 노인인구는 2019년 7,817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5.1%로 우리나라가 여전히 고령사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구는 2019년 2,061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0.2%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에 비해 3만 가구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과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합한 경우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가구는 2019년 354천 가구로 2018년에 비해 19천 가구 정도 증가하였다.

자녀 돌봄 관련 주요 제도인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2019년 74,095명과 105,165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최근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이나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의 육아휴직 증가에 따라 증가 추이를 아직 유지하고 있다. 가정관리와 가족 가구원 돌봄에 있어서는 기혼여성이 기혼남성에 비해 행위자 비율도 높고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나 추세에 있어서 남성의 가정관리와 가족 및 가구원 돌봄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2019년 가정폭력 발생률은 43.4%로 나타났으나,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2.8%로 확인된다.

한편,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인구 천 명당 4.7건으로 나타났으며, 조이혼율은 2.2건으로 나타났다.

01 대 표

1인 가구

Single-person household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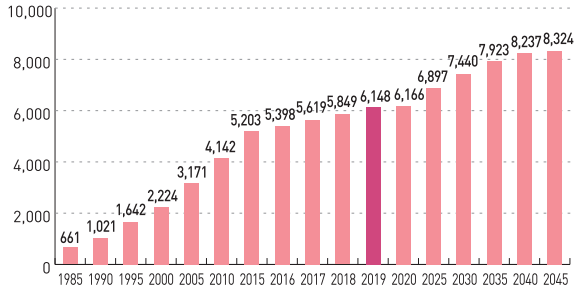
1인 가구란 일반가구 중 1인으로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1인으로 구성된 가구 수

그림 1-1 연도별 1인 가구 수 및 추계 (1985~2045)

(단위: 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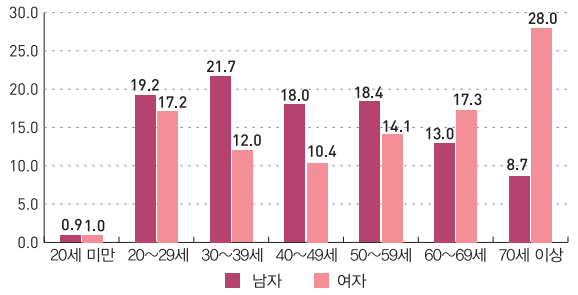


주: 1) 1985~2018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2020~2045년은 장래가구추계에서 발표된 1인 가구 추계임.
2) 2010년까지는 전통적 현장조사 방식의 집계결과이며, 2015년~2018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3) 가구 수 천 단위 표기 시, 백 단위에서 반올림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 2017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1-2 성별 · 연령별 1인 가구 비율 (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2020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1-1 연도별 · 성별 가구유형 및 1인 가구 비율

(단위: 천 가구, %)

연도	성별	일반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비율 (%)
2000	전체	14,312	2,224	15.5
	남자	11,659	945	8.1
	여자	2,653	1,279	48.2
2005	전체	15,887	3,171	20.0
	남자	12,402	1,418	11.4
	여자	3,485	1,753	50.3
2010	전체	17,339	4,142	23.9
	남자	12,842	1,924	15.0
	여자	4,497	2,218	49.3
2015	전체	19,111	5,203	27.2
	남자	13,461	2,593	19.3
	여자	5,650	2,610	46.2
2017	전체	19,674	5,619	28.6
	남자	13,659	2,792	20.4
	여자	6,015	2,827	47.0
2018	전체	19,979	5,849	29.3
	남자	13,742	2,906	21.1
	여자	6,237	2,942	47.2
2019	전체	20,343	6,148	30.2
	남자	13,867	3,054	22.0
	여자	6,476	3,094	47.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9	1년
	장래가구추계	2002	2017	5년

Checkpoint

1985년 처음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약 66만 가구였던 1인 가구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처음 시행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약 520만 가구로 약 8배 증가하였으며, 이제는 매년 등록센서스 방식에 의해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약 560만 가구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약 610만 가구까지 증가하여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한다. 2016년~2019년 1인 가구 추이는 매년 20만 가구 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02 대 표

노인가구

Elderly household

지표 정의

- 노인인구 비율(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인구 고령화의 정도와 변화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 노인가구는 가구원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 노인가구는 노인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노인독거가구(노인단독가구), 부부 중 1인 이상이 노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자녀동거가구, 그 외의 기타 다양한 가구 형태로 구분하여 파악되며, 노인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대비 가구 형태별 응답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된다.

측정 산식

- 노인인구 비율(고령인구 비율) = $\frac{\text{65세 이상 인구}}{\text{전체 인구수}} \times 100$
- 가구 형태별 노인가구 비율 = $\frac{\text{노인의 가구 형태별 노인 수}}{\text{65세 이상 전체 노인 수}} \times 100$
- 조손가구 수 = 조부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및 조부 또는 조모와 미혼 손자녀로 구성된 2세대 가구 수

표 1-2 연도별 · 성별 노인인구 수 및 전체 인구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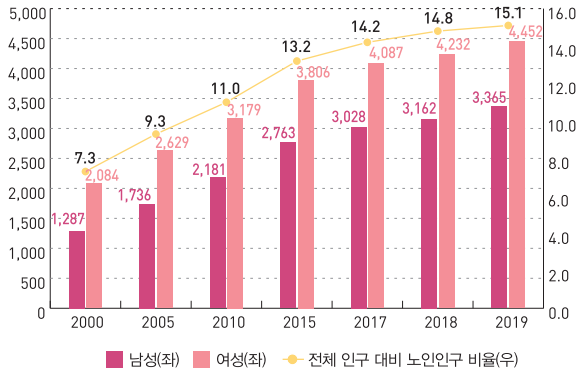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연도	노인인구	전체인구 대비 비중	성별			
			남성	노인인구 대비 비중	여성	노인인구 대비 비중
2000	3,372	7.3	1,287	38.2	2,084	61.8
2005	4,365	9.3	1,736	39.8	2,629	60.2
2010	5,360	11.0	2,181	40.5	3,179	59.5
2015	6,569	13.2	2,763	42.1	3,806	57.9
2017	7,115	14.2	3,028	42.6	4,087	57.4
2018	7,394	14.8	3,162	42.8	4,232	57.2
2019	7,817	15.1	3,365	43.0	4,452	57.0

주: 내국인 기준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1-3 연도별 · 성별 노인인구 수 및 비율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9	1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7	3년

Checkpoint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와 노인가구의 규모 및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노인인구 비율이 14.2%로 UN이 정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노인인구 비율 역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노인가구 형태 중에서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와 같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증가하고 자녀동거가구는 감소함에 따라 이와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조손가구 수는 일정 규모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일반특성별 · 가구 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2017)

(단위: %)

구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	계
합계		23.6	48.4	23.7	4.4	100.0
성	남자	10.8	64.5	20.3	4.5	100.0
	여자	33.0	36.5	26.3	4.3	100.0
연령	65~69세	16.9	53.4	24.2	5.5	100.0
	70~74세	22.0	53.8	20.7	3.5	100.0
	75~79세	25.6	48.4	22.9	3.1	100.0
	80~84세	33.6	40.7	21.9	3.7	100.0
	85세 이상	32.9	24.9	35.6	6.6	100.0
지역	동부	23.2	45.7	26.8	4.3	100.0
	읍 · 면부	24.3	54.2	17.0	4.6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2017

표 1-4 연도별 · 가구 형태별 노인가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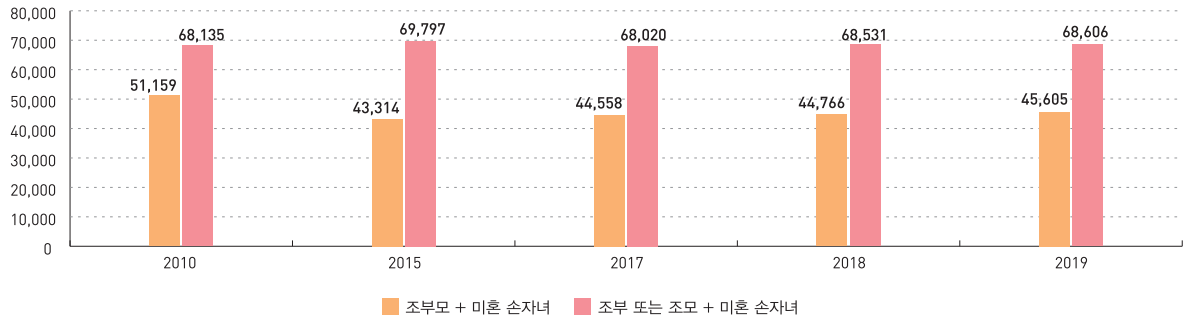
(단위: %)

연 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타 가구	계
1994	13.4	26.8	54.7	4.9	100.0
2004	20.6	34.4	38.6	4.4	100.0
2014	23.0	44.5	28.4	4.0	100.0
2017	23.6	48.4	23.7	4.4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등, 노인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1-4 연도별 가구 형태별 조손가구 수

(단위: 가구)



주: 조부모와 손자녀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으며, 손자녀는 미혼 자녀만 해당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3 대표

한부모가구

Single-parent household

지표 정의

한부모가구는 통계청이 집계하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주말부부 등 포함)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장래가구추계」를 통해 집계된 한부(모)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 수

유의사항

1.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한부모가족'을 의미한다.
3.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한부모가구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 자녀 가구(분거가족 포함)를 의미하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한부모가구 개념(한부모의 법적인 혼인상태가 미혼, 이혼 및 사별이며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과 상이함에 유의한다.

표 1-5 전체 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수 (201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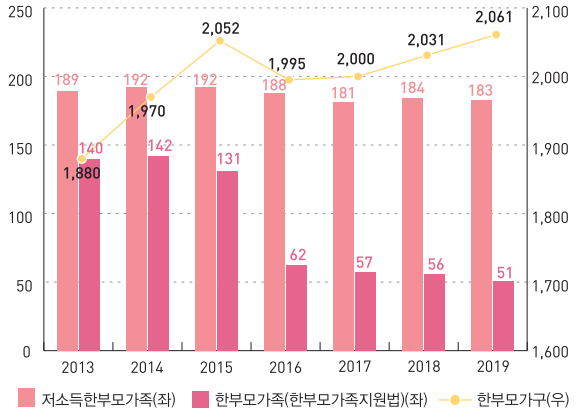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

연도	전체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계	전체가구 대비 (%)		
2013	18,388	1,880	10.2	189	140
2014	18,705	1,970	10.5	192	142
2015	19,013	2,052	10.8	192	131
2016	19,285	1,995	10.3	188	62
2017	19,524	2,000	10.2	181	57
2018	19,871	2,031	10.2	184	56
2019	20,116	2,061	10.2	183	51

주: 1) 한부모가구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 자녀 가구(분거가족 포함)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임.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 2017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내부자료), 2018

그림 1-5 한부모가구, 저소득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수 (2013~2019)

(단위: 천 가구)



주: 1) 한부모가구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른 부 또는 모와 함께 사는 한부모 자녀 가구(분거가족 포함)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대상인 한부모가족과는 상이한 개념임.
2) 저소득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동시보장결정가구를 포함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3)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동시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의미함.
4)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과 한부모가족 현황은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5~2045년, 2017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내부자료),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2	2017	5년
여성가족부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내부자료)	-	2019	1년

Checkpoint

전체 한부모가구 수는 2013년에 비하여 2019년에 181천 가구가 증가하였고,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과 저소득한부모가족을 합한 경우 2012년 310천 가구에서 2019년 234천 가구로 감소하였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 빈곤에 노출되기 쉽고 이는 곧 이들의 자녀양육 및 교육과 직결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최근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이 완화되고, 양육비 금액 상향과 양육비 지원 연령이 증가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2019

04
대 표

국내외 입양아동 수

Number of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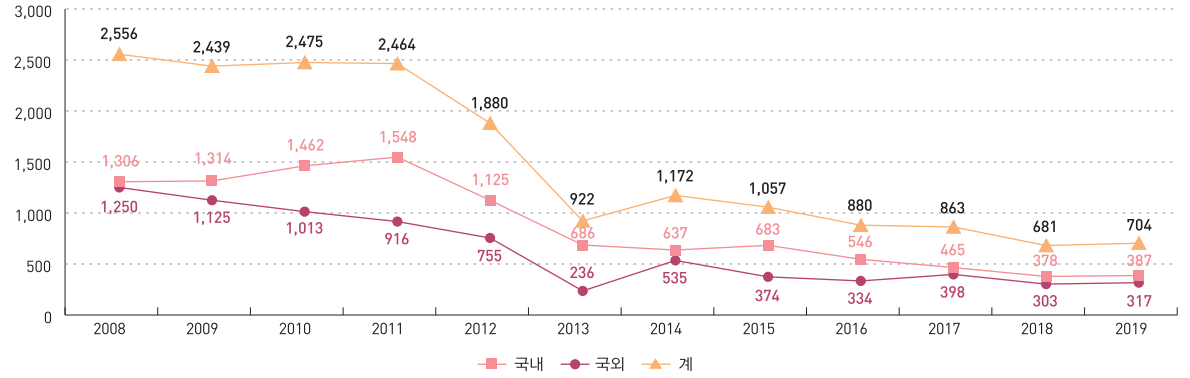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국내 및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총합

그림 1-6 국내외 입양아동 수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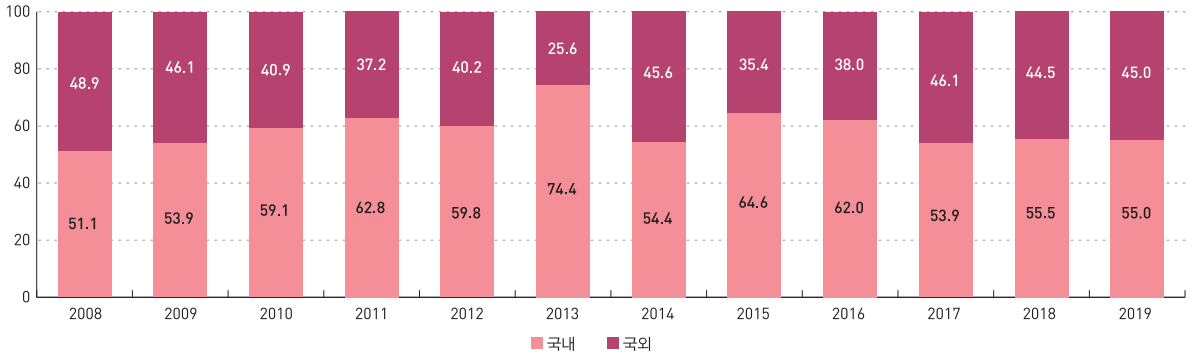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1-7 국내외 입양아 수 및 입양 비율 (2008~2019)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가정위탁 국내입양소년소녀가정 현황	1994	2019	1년

Checkpoint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된 입양아 수 감소 현상은 2013년 922명에서 2014년 1,172명으로 반등세를 보였으나 2017년 863명, 2019년 704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전체입양은 국외입양과 유사한 감소 폭과 추세를 보여주었으며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의 비율보다 높아졌다.

04-1 연 관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Number of Recipients of Benefits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만 16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입양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국내 입양가정(장애아동은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을 집계한다.

측정 산식

- 입양 관련 급여 수급자의 총합

표 1-6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14~2019)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12,255	12,872	13,376	13,741	13,926	14,045

주: 시설 수급자 포함,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1-8 장애 유무별 입양 관련 급여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



주: 시설 수급자 포함

표 1-7 시도별 · 월별 입양아동 급여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747	1,752	1,754	1,749	1,757	1,753	1,755	1,764	1,757	1,761	1,768	1,769
부산	710	707	706	710	711	710	712	713	713	720	721	719
대구	468	466	467	464	468	470	469	468	452	456	452	457
인천	860	863	862	864	867	862	867	867	871	870	867	871
광주	404	404	402	402	404	407	410	408	410	410	411	410
대전	346	347	350	347	349	348	347	350	350	345	344	345
울산	238	239	238	237	237	235	238	239	240	237	238	241
세종	158	160	159	163	165	167	168	168	171	170	171	169
경기	4,007	3,994	3,999	4,014	4,021	4,030	4,029	4,047	4,056	4,074	4,069	4,074
강원	527	528	531	530	533	528	531	531	532	534	535	533
충북	463	464	464	466	467	467	467	465	464	461	461	461
충남	733	735	742	740	743	742	740	740	737	732	734	738
전북	725	724	727	729	733	734	731	734	730	729	728	728
전남	604	599	601	602	602	596	595	596	596	588	590	591
경북	668	667	663	662	665	667	666	660	663	667	668	667
경남	1,020	1,022	1,016	1,016	1,011	1,012	1,017	1,014	1,017	1,019	1,017	1,020
제주	269	269	270	271	271	268	246	243	245	247	252	252
합계	13,947	13,940	13,951	13,966	14,004	13,996	13,988	14,007	14,004	14,020	14,026	14,045

주: 시설 수급자 포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2019년 12월 입양 급여 수급자 수는 2018년 12월 대비 119명(0.9%) 증가한 14,045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장애아동이 2.8%(395명)을 차지한다.

04-2
연 관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care Service related to Adopted Children

지표 정의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중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수급자(입양특례법에 의거)를 집계한다.

측정 산식

• 입양아동 관련 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이하 아동의 양육수당, 보육료 그리고 유아학비 수급자 수

표 1-8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중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수급자 수 (2017~2019)

(단위: 명)

시도	2017				2018				2019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전체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서울	463	159	217	87	363	135	168	60	237	122	65	50
부산	200	65	89	46	149	46	73	30	92	41	20	31
대구	115	26	55	34	102	23	59	20	55	16	13	26
인천	202	43	91	68	141	31	73	37	76	22	26	28
광주	100	19	56	25	76	20	44	12	50	25	10	15
대전	95	21	52	22	73	13	43	17	42	15	13	14
울산	61	20	26	15	49	21	20	8	27	15	4	8
세종	45	11	24	10	45	11	28	6	30	6	13	11
경기	1,020	262	548	210	847	198	469	180	501	184	173	144
강원	131	26	83	22	101	13	73	15	43	10	21	12
충북	95	22	55	18	87	23	47	17	40	14	14	12
충남	172	40	86	46	137	31	77	29	68	24	28	16
전북	150	25	86	39	120	23	68	29	58	15	21	22
전남	105	15	67	23	91	11	61	19	59	19	26	14
경북	172	31	101	40	133	24	84	25	89	31	33	25
경남	264	52	146	66	216	37	130	49	120	32	39	49
제주	72	16	46	10	61	10	40	11	32	7	20	5
합계	3,462	853	1,828	781	2,791	670	1,557	564	1,619	598	539	482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서비스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3	2019	월

Checkpoint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입양아동의 보육 관련 복지급여 수급자는 양육수당 598명, 보육료 539명, 유아학비 482명으로 총 1,619명이다.

표 1-9 시도별·월별 만 5세 이하 입양아동 관련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서울	358	345	341	334	331	325	321	324	321	321	320	329	330.8
부산	150	151	148	145	147	148	145	143	142	140	140	137	144.7
대구	99	99	98	95	100	102	98	96	93	92	91	92	96.3
인천	147	145	142	140	137	135	133	131	126	123	123	120	133.5
광주	74	74	74	73	73	71	69	67	70	70	72	71	71.5
대전	73	75	75	70	70	69	69	67	66	64	63	62	68.6
울산	49	49	49	48	47	47	47	46	49	50	47	47	47.9
세종	44	44	45	47	46	46	44	43	44	44	44	41	44.3
경기	836	826	815	804	789	782	771	769	764	769	760	747	786.0
강원	103	102	100	95	95	95	97	97	95	92	89	86	95.5
충북	83	81	80	76	77	74	72	69	66	63	60	58	71.6
충남	136	136	138	134	134	133	129	128	130	125	122	119	130.3
전북	116	116	116	116	114	112	107	102	97	96	94	97	106.9
전남	91	88	88	89	89	92	92	94	90	90	96	89	90.7
경북	134	134	134	133	130	126	125	127	130	133	132	132	130.8
경남	215	209	204	201	196	191	184	180	177	172	172	168	189.1
제주	58	53	53	53	52	49	49	42	43	44	46	46	49.0
합계	2,766	2,727	2,700	2,653	2,627	2,597	2,552	2,525	2,503	2,488	2,471	2,441	2,587.5

05 대 표

다문화가구

Multicultural household

지표 정의

다문화가구는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 배우자와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인지 · 귀화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출생, 인지,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귀화의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구 또는 그 자녀가 포함된 가구의 수**

유의사항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구성별 통계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이며, 외국인 주민 자녀 수와 지역별 통계는 외국인 주민 현황 기준(행정안전부, 각 연도)임에 유의한다. 외국인 주민 현황의 경우 2015년 11월 1일 이후 자료는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에서 외국인 주민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방식 및 통계기준일을 변경하였음에 유의한다.

표 1-10 가구 구성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2018~2019)

(단위: 천 가구,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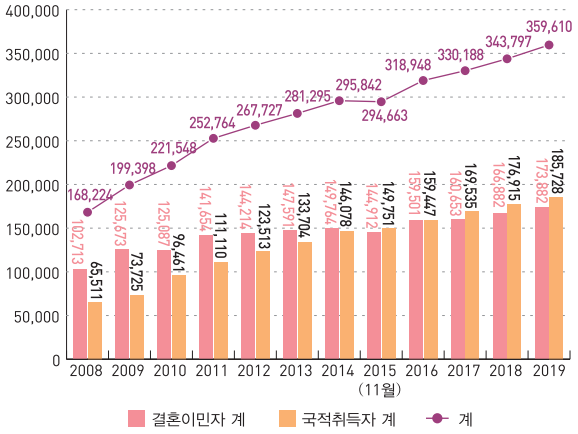
구분	2018 가구(A) (천 가구)	2018 가구원 (천 명)	2019 가구(B) (천 가구)	2019 가구원 (천 명)	증감 (B-A) (천 가구)	증감율 (%)
내국인(귀화)	61	120	63	125	2	3.7
내국인(출생) + 내국인(귀화)	77	285	81	300	4	5.2
내국인(출생) + 외국인(결혼이민자)	120	393	125	402	5	3.5
내국인(출생) + 다문화 자녀	31	104	36	117	5	15.0
내국인(귀화) + 외국인(결혼이민자)	16	50	18	57	2	12.2
기타	29	56	31	63	2	6.3
합계	335	1,009	354	1,062	19	5.7

주: 1) 내국인(귀화) :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로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외국인(결혼이민자) : 내국인(귀화자 포함)과 결혼한 외국인
3) 내국인(출생)+다문화자녀 : 내국인(출생) 가구주와 다문화자녀가 같이 생활하는 가구
4) 기타 가구 : 결혼이민자+기타외국인, 결혼이민자+다문화자녀 등 그 외 다문화 가구

자료: 통계청, 2019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2020.8.28.)

그림 1-9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08~2019)

(단위: 명)



주: 1) '16년 통계 기준 변경: 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2)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개정, '11.10.05. 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인지, 귀화)도 다문화 가족에 포함됨.
3) 2015년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 (통계 기준은 11.1일 0시),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4) 국적취득자는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회복한 경우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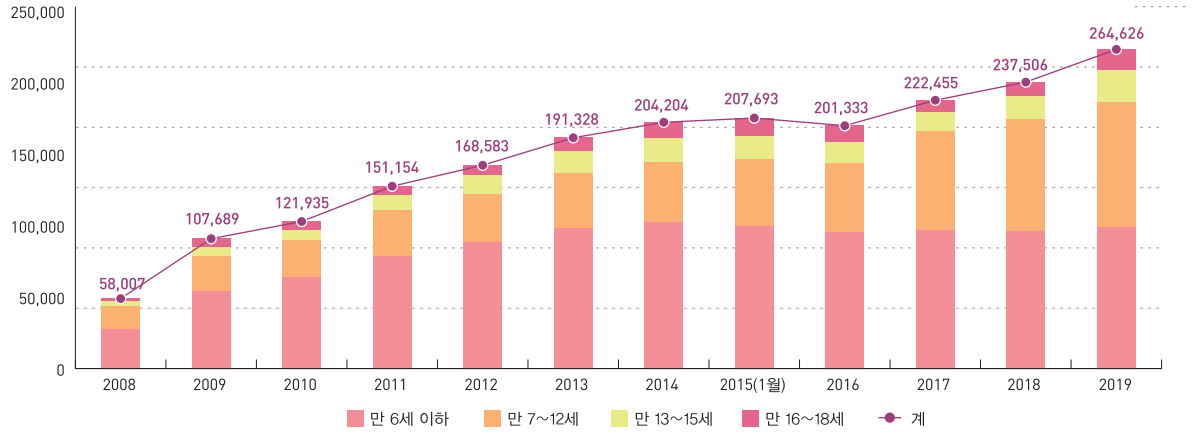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2006	2019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9	1년

Checkpoint 연도별로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는 대체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2008년 102,713명에서 2019년 173,882명으로 증가했고, 국적취득자도 2008년 65,551명에서 2019년 185,728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1-10 연령별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2008~2019)

(단위: 명)



주: 1) 외국인 주민 자녀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를 지칭함.
2) 2016년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1,333명으로 귀화하였거나 아직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가 9,874명(4.9%),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한 국내출생 자녀가 191,459명(95.1%)임.
3) 귀화 및 외국 국적 자녀는 2016년부터 추가됨.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1-11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취득자 현황 (2008~2019)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1월)	2016	2017	2018	2019
전국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294,663	318,948	330,188	343,797	359,610
서울	49,480	57,281	63,364	69,694	70,381	71,364	73,801	68,093	73,914	73,753	74,717	75,489
부산	7,654	7,973	8,314	9,705	10,305	10,915	11,529	11,380	11,853	12,337	12,620	13,255
대구	4,666	5,170	5,599	6,261	6,664	7,131	7,580	7,743	8,403	8,815	9,176	9,712
인천	9,659	11,872	13,235	14,939	16,029	17,026	18,222	18,552	20,988	22,626	24,435	26,211
광주	2,909	3,384	3,705	4,283	4,590	4,960	5,336	5,603	6,001	6,284	6,455	6,932
대전	3,175	3,849	4,117	4,758	5,123	5,337	5,575	5,610	5,899	6,106	6,232	6,516
울산	2,604	3,301	3,755	4,225	4,561	5,049	5,497	5,759	6,217	6,296	6,411	6,648
세종	-	-	-	-	-	653	650	894	1,053	1,225	1,351	1,490
경기	46,837	53,998	61,447	71,174	77,128	81,731	86,337	86,327	95,848	100,529	107,141	113,100
강원	3,764	4,449	4,809	5,793	6,103	6,381	6,590	6,571	6,768	6,989	7,212	7,659
충북	4,307	5,165	6,023	6,982	7,417	7,941	8,370	9,126	9,433	9,882	10,391	10,983
충남	5,970	8,614	9,544	11,294	12,348	12,649	13,460	14,035	14,863	15,636	16,396	17,323
전북	5,042	6,940	7,197	8,523	9,068	9,626	9,951	10,237	10,568	10,900	11,165	11,595
전남	5,982	7,452	8,142	9,489	10,115	10,657	11,129	11,502	11,749	11,906	12,040	12,722
경북	6,719	8,333	9,232	10,461	11,067	11,856	12,620	12,986	13,640	13,990	14,444	15,125
경남	8,216	10,107	11,345	13,062	14,443	15,352	16,217	16,799	17,929	18,725	19,106	19,996
제주	1,240	1,510	1,720	2,121	2,385	2,667	2,978	3,446	3,822	4,189	4,505	4,854

주: 1) '16년 통계 기준 변경: 종전 혼인귀화자와 기타귀화자로 나뉘어있던 한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세부구분 삭제됨(기타귀화자 중에도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많이 포함되므로 구별할 실익이 적음).
2) 매년 1.1일자 기준이었던 통계 시점이 '15년부터 매년 11.1일로 변경됨.
3) 2015.11.1. 기준부터 조사방식이 전통적 현장조사방식에서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변경, 조사시점 기준 전후 3개월 중 91일 이상 해외 체류자는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5-1
연 관

북한이탈주민

North Korean defectors

지표 정의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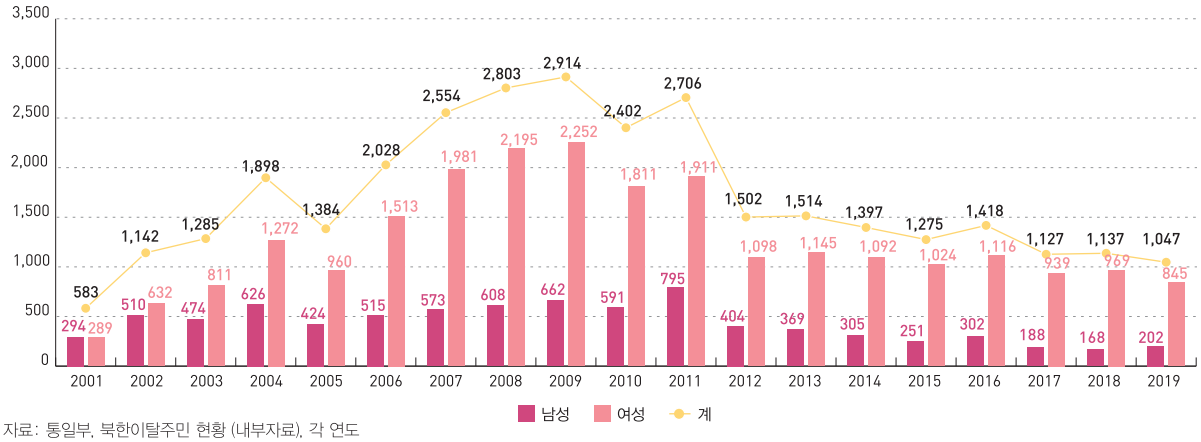
측정 산식

-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이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 수

유의사항 현재 북한이탈주민가구 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구 수를 파악하는 대신 가구원인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를 제시한다. 해당 연도의 통계는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기준으로 익년도 6월 말에 작성된다(입국조사 과정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임이 확인되는데 약 4~5개월 소요).

그림 1-11 성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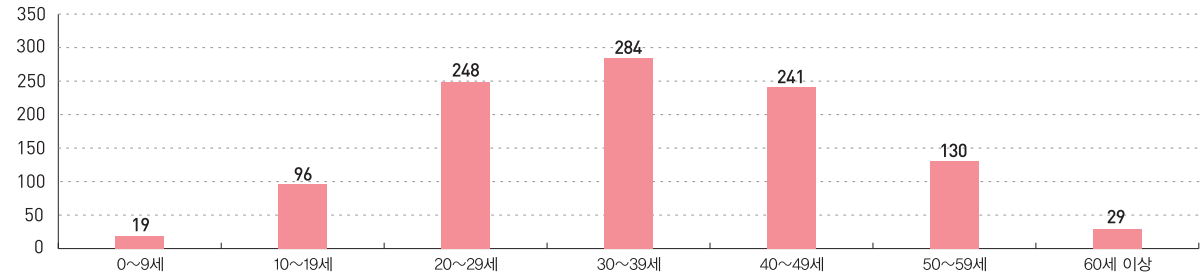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12 연령대별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2019)

(단위: 명)



주: 연령대별 입국 최종 인원임.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현황 (내부자료)	1998	2019	1년

Checkpoint 한국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1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여 2009년 2천 9백여 명으로 최근 1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011년까지 2천 명을 상회하였다. 그러나 2012년 1천 5백여 명으로 급감한 이후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 2019년 1,047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으며, 연령별로는 20~40대가 가장 많다.

06 대표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eipients of maternity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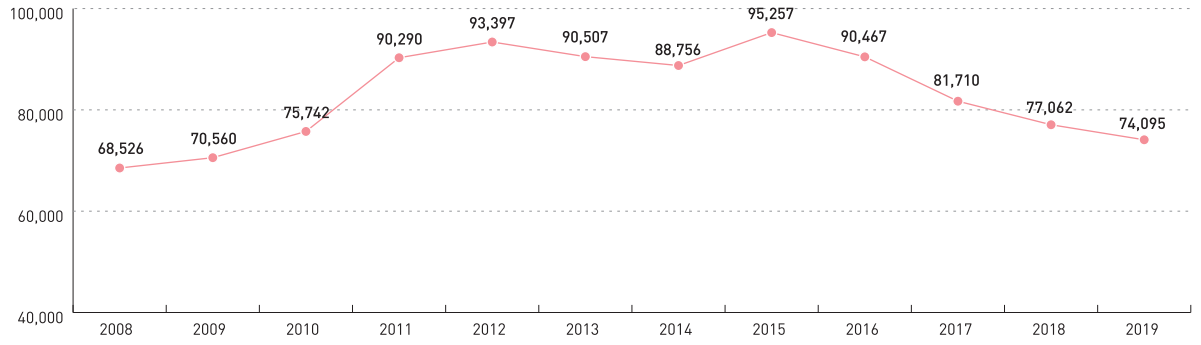
- '산전후휴가'라는 명칭으로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도입된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임신 ·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보장된 제도이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임신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이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480만 원 한도, 다태아 120일분 640만 원 한도)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측정 산식

- **출산전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그림 1-13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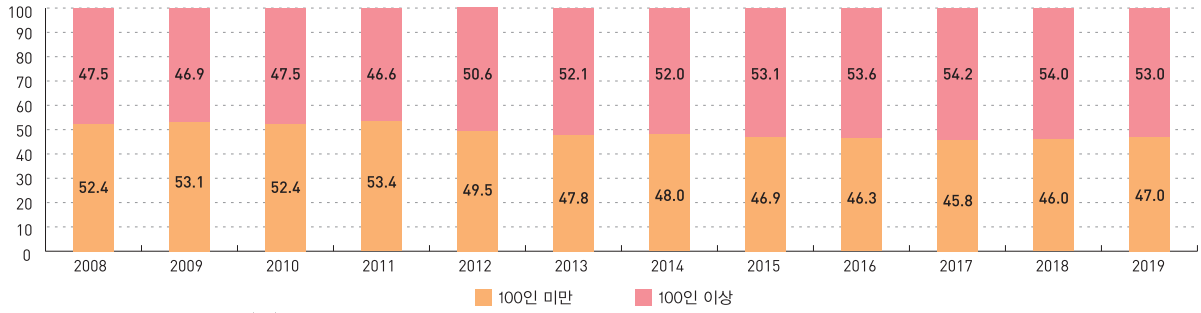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그림 1-14 사업장 규모별 출산전후휴가 수급자 비중 (2008~2019)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9	1년

Checkpoint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여 2008년 68,526명에서 2015년 95,25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07
대 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receipients of parental leave benefits

지표 정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급여를 처음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를 의미한다.

•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남녀 고용평등과 일 ·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1항에 의해 규정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육아휴직급여는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4개월째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에 해당되는 급여이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근로자는 자녀 1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급여 특례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2019.1.1.부터 상한액 월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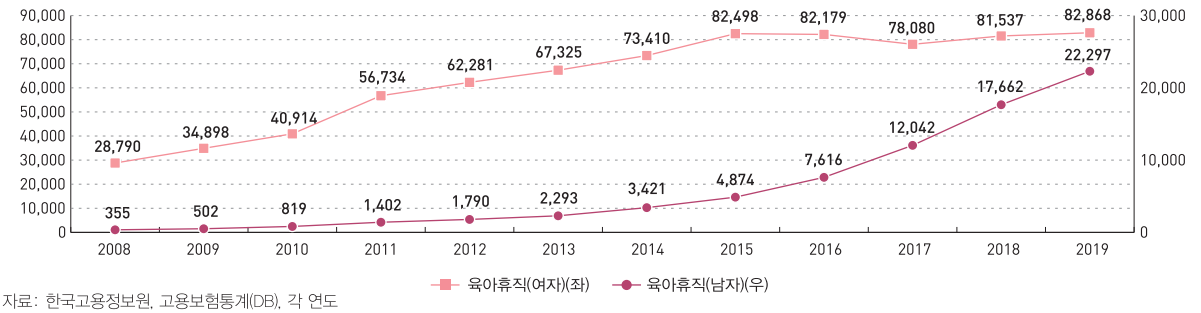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근로자 수**

유의사항 육아휴직자 수의 중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전년도 휴직자로 정의하고 당해 연도 휴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1-15 성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수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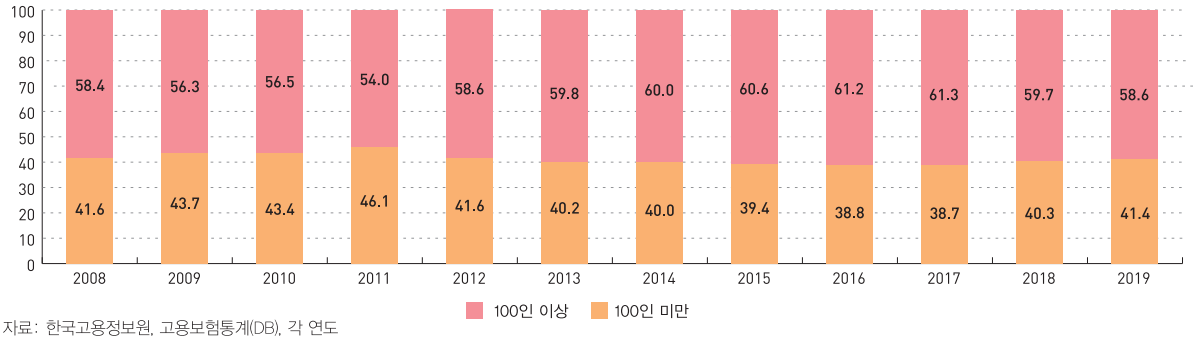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그림 1-16 사업장 규모별 육아휴직급여 신규 수급자 비중 (2008~2019)

(단위: %)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DB),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9	1년

Checkpoint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최근 아빠의 달을 도입하고 혜택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최근 급증한 가운데, 2017년 13.4%로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중 10%를 초과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높다.

08 대표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봄

Housework and Family and Household member Care

지표 정의

가정관리(자신의 가족 또는 가구의 가정생활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행동) 및 가족 · 가구원 돌봄(가족 또는 가구원을 보수를 받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은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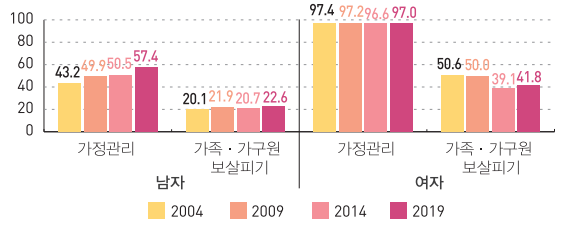
구분	1999~2009	2014	2019
가정관리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 기타 가사일	음식준비, 가정용 섬유 및 신발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차량관리, 애완동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관리, 차량관리 및 유지,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상품 및 서비스 구입, 기타 가정관리
가족·가구원 돌보기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함께 사는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함께 사는 만 10세 이상 초중고생 돌보기, 함께 사는 배우자 돌보기, 함께 사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사는 그 외 가구원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부모 및 조부모 돌보기, 함께 살지 않는 그 외 가족 돌보기	만 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측정 산식

- **전체 평균 시간 : 전체 집계대상자(특정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포함) 평균 시간**
- **행위자 비율 : 특정 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행위자)의 비율**
- **행위자 평균 시간 : 특정 행동을 한 사람(행위자)들의 평균 시간**

그림 1-17 기혼자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행위자 비율 (요일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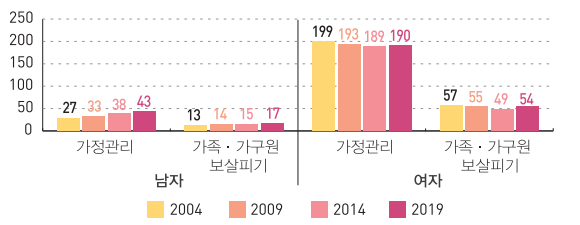


주: 2014년까지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은 19세 이상을 대상(동거 포함)으로 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1-18 기혼자의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평균 시간 (요일 평균)

(단위: 분)



주: 2014년까지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2019년은 19세 이상을 대상(동거 포함)으로 함.

자료: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1-12 가구 유형별 '가정관리' 및 '가족 · 가구원 돌보기' 행위자 비율과 평균 시간 (2019)

(단위: 시간:분, %)

가구 유형별	행동분류별	요일 평균 행위자 비율 (%)			요일 평균 시간 (시간:분)		
		계	남편	아내	계	남편	아내
맞벌이가구	가정관리	76.1	57.4	96.2	93	39	151
	가족·가구원 돌보기	30.2	22.2	38.8	25	15	36
외벌이(남편)가구	가정관리	73.9	49.7	99.3	136	33	245
	가족·가구원 돌보기	41.6	27.2	56.7	57	20	96
외벌이(아내)가구	가정관리	86.8	80.1	93.4	121	103	139
	가족·가구원 돌보기	18.9	16.6	21.1	17	16	17

주: 평균 시간과 비율은 초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상위분류의 값이 하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2019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2020.7.30.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1999	2019	5년

Checkpoint 가정관리와 가족 · 가구원 돌봄에 있어서 기혼여성은 기혼남성과 비교하여 행위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행위 시간도 절대적으로 많다. 다만, 남성의 경우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의 행위자 비율과 시간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여성의 경우 가정관리와 가족돌봄의 행위자 비율과 시간이 대체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인다.

09
대 표

가정폭력 발생률 및 신고율

Rate of Domestic violence and Reporting rate

지표 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난 1년간 전체 가구 중 가정폭력(부부폭력)이 발생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정폭력 신고율은 가정폭력 발생 건수 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본 지표를 통해 여성,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의 조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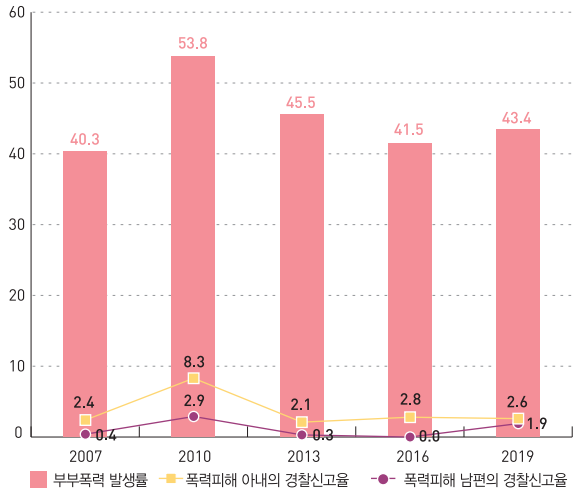
측정 산식

• 가정폭력 발생률 = $\frac{\text{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 가구}}{\text{조사 대상 가구}} \times 100$

• 가정폭력 신고율 = $\frac{\text{경찰에 신고한 건수}}{\text{가정폭력 발생 건수}} \times 100$

그림 1-19 연도별 가정폭력 발생률 및 경찰신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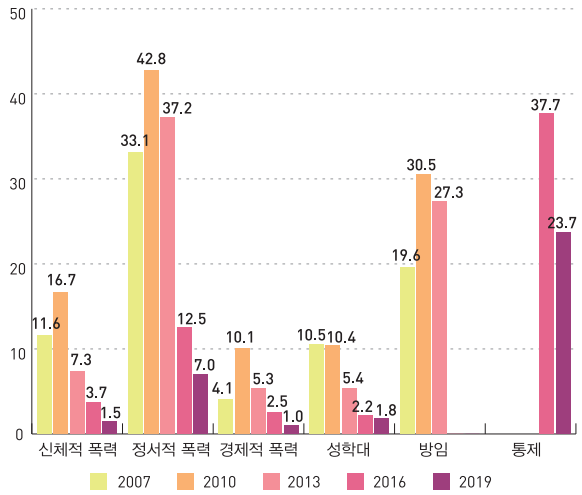
(단위: %)



주: 1)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2)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3) 2016년 이후 부부 폭력률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통제 행동 중 하나라도 경험한 비율임.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20 연도별 · 유형별 가정폭력 발생률

(단위: %)



주: 1) 중복응답이 반영된 값임.
2) 신체적 폭력은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을 모두 포함함.
3) 2004년 폭력 발생률은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학대만을 포함한 개념이며, 2007년, 2010년, 2013년에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학대, 방임을 포함한 개념임.
4) 2010년 조사에서 '상대방을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고립시키거나 의심하는 등의 폭력 유형'인 통제 발생률은 제외함.
5) 2016년 조사에서는 '방임' 대신이 '통제' 발생률을 포함함.
자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4	2019	3년

Checkpoint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면 2010년 53.8%로 비교 기간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9년에는 43.4%로 나타났다. 경찰신고율의 경우 비록 2019년 아내의 경찰신고율은 2.6%로 2016년 대비 0.2%p 감소하였으나, 2019년 남편의 경찰신고율은 1.9%로 2016년 대비 1.9%p 증가하였다.

10 대표

조이혼율

Crude divorce rate

지표 정의

1년 동안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연간 총 이혼 건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조이혼율은 특정 연도의 혼인 건수 대비 이혼 건수의 비율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조이혼율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은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 인구(2010년 이후는 거주 불명 등록자 제외)를 사용한다. 이혼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동안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결과이다.

표 1-13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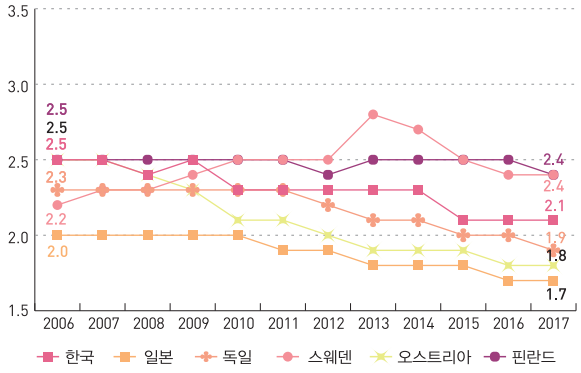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인구 천 명당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혼 건수(천 건)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조이혼율	2.5	2.5	2.4	2.5	2.3	2.3	2.3	2.3	2.3	2.1	2.1	2.1	2.1	2.2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1-21 주요 국가별 조이혼율 (2006~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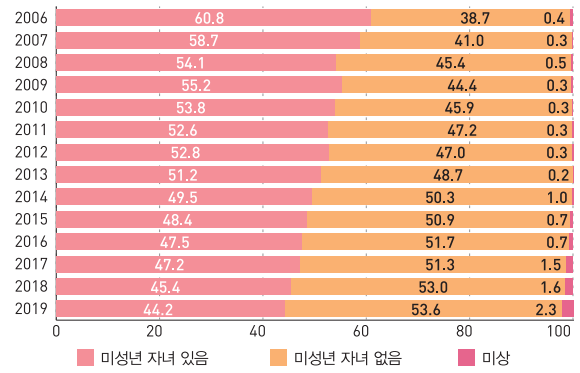
(단위: 인구 천 명당 건)



자료: OECD, OECD Family Database (http://www.data.oecd.org 에서 2021.1.10. 인출)

그림 1-22 미성년 자녀 유무별 이혼구성비 (2006~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1-14 평균 이혼연령 (2006~2019)

(단위: 세)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남자	42.6	43.2	44.3	44.5	45.0	45.4	45.9	46.2	46.5	46.9	47.2	47.6	48.3	48.7
여자	39.0	39.5	40.5	40.7	41.1	41.5	42.0	42.4	42.8	43.3	43.6	44.0	44.8	45.3

주: 평균 이혼연령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9	1년

Checkpoint 우리나라의 조이혼율은 200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 2.2건(인구 천명당)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이혼숙려제도의 도입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예정)부부를 대상으로 숙려기간 동안 '자녀양육안내' 등과 같은 부모교육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0-1
연 관

조혼인율

Crude marriage rate

지표 정의

1년 동안 신고된 총 혼인 건수를 해당 연도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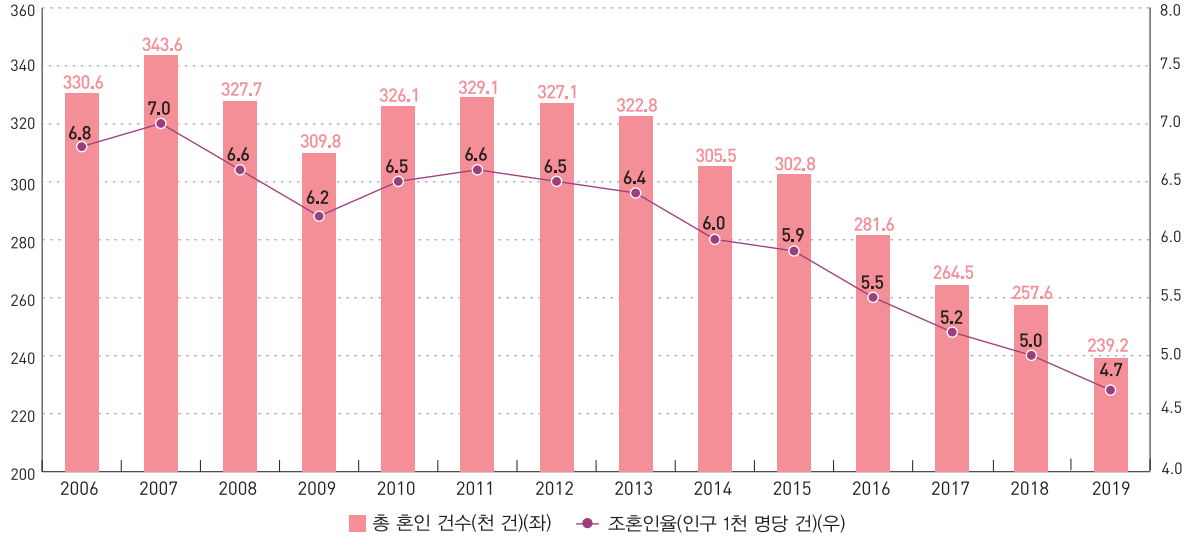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연간 총 혼인 건수}}{\text{당해 연도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

유의사항 혼인 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전국 시 · 구청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림 1-23 총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2006~2019)

(단위: 천 건, 인구 1천 명당 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9	1년

Checkpoint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혼인 건수는 2006년 약 331천 건에서 2019년 약 239천 건으로 약 9만 1천 건 정도 감소하였고, 2019년 조혼인율은 4.7로 공식 통계 작성(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은 특히 최근 그 감소 추세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 최근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혼과 비혼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10-2 연 관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Number of divorces with a foreign spouse

지표 정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유의사항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 즉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표 1-15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 (2006~2019)

(단위: 천 건,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이혼 건수(천 건)	124.5	124.1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106.0	108.7	110.8
외국인과의 이혼(천 건)	6.1	8.3	11.0	11.5	11.1	11.5	10.9	10.5	9.8	8.2	7.7	7.1	7.1	6.9
(총 이혼 중 비중)	4.9	6.7	9.4	9.3	9.5	10.1	9.5	9.1	8.4	7.5	7.1	6.7	6.6	6.2
한국남성 + 외국여성	3.9	5.6	7.9	8.2	7.9	8.3	7.9	7.6	7.0	5.7	5.6	5.2	5.2	4.4
한국여성 + 외국남성	2.2	2.7	3.1	3.2	3.2	3.1	3.0	2.9	2.8	2.5	2.1	1.9	2.0	1.8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9	1년

Checkpoint

2010년을 제외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되어 2019년 6.9천건(전체 이혼 중 6.2%)로 감소하였다. 특히 전체 이혼 중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외국인과의 이혼 건수는 다문화가구 전체의 이혼 건수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다문화가구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11 대 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prehensive Elderly Care Services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 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 인지 기능이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 경제적 활동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노인가구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1)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또는 B 판정자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4인 기준 직장 24만 1,925원, 지역 26만 4,138원) 이하인 노인 (2) 단, 단기가사서비스는 최소 2개월 이내 골절(관절증, 척추병증 포함)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어르신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부부 모두 75세 이상)의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노인이 대상

※ 조손가정 노인: 만 19세 미만 아동과 동거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인 이상의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75세 이상 고령 노인부부 중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 지원금액: 소득수준 및 서비스 이용일수에 따라 차등지원

(2019년 기준)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방문서비스(월 27시간, 36시간)	월 246,040원~월 458,280원	월 무료~97,000원
주간보호서비스(월 27시간(9일), 36시간(12일))		
단기가사서비스(1개월(24시간) 또는 2개월(48시간))		

표 1-16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3~2019)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31,397	34,897	32,873	32,534	34,135	34,618	29,620
이용액	8,867,832,000	10,428,219	9,891,669	9,818,997	10,408,462	11,858,311	12,219,103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1-17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700	2,720	2,757	2,767	2,806	2,804	2,813	2,751	2,632	2,559	2,424	2,231
부산	2,043	2,035	2,073	2,111	2,159	2,161	2,185	2,182	2,176	2,195	2,135	1,995
대구	1,433	1,458	1,476	1,489	1,504	1,517	1,519	1,493	1,471	1,465	1,385	1,254
인천	1,247	1,244	1,246	1,292	1,318	1,315	1,346	1,344	1,326	1,284	1,188	1,076
광주	2,154	2,160	2,206	2,251	2,240	2,252	2,291	2,296	2,296	2,281	2,186	1,988
대전	911	933	950	972	974	977	987	957	952	931	891	815
울산	351	363	369	376	376	377	371	370	363	357	324	302
세종	60	60	54	55	56	63	65	64	62	66	64	56
경기	4,426	4,478	4,538	4,613	4,663	4,689	4,719	4,664	4,558	4,380	4,071	3,659
강원	1,701	1,692	1,726	1,721	1,736	1,761	1,778	1,783	1,772	1,741	1,647	1,525
충북	989	999	1,016	1,053	1,063	1,071	1,048	1,043	1,015	986	922	848
충남	1,751	1,729	1,758	1,768	1,793	1,779	1,797	1,797	1,750	1,736	1,643	1,503
전북	3,569	3,555	3,609	3,683	3,736	3,775	3,804	3,736	3,670	3,620	3,401	3,124
전남	3,776	3,769	3,838	3,907	3,953	3,981	4,001	3,988	3,952	3,918	3,750	3,381
경북	3,548	3,544	3,632	3,703	3,730	3,767	3,811	3,779	3,704	3,699	3,530	3,273
경남	3,075	3,098	3,141	3,179	3,203	3,241	3,238	3,119	3,005	2,869	2,644	2,344
제주	260	254	260	269	269	276	270	279	291	289	279	246
합계	33,994	34,091	34,649	35,209	35,579	35,806	36,043	35,645	34,995	34,376	32,484	29,6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표 1-18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액 (2019)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028,363	1,018,883	1,086,255	1,100,576	1,115,143	1,089,742	1,134,201	1,069,978	989,243	1,002,994	927,139	878,545
부산	805,846	787,314	851,530	864,769	878,701	859,857	914,140	896,670	864,140	910,881	883,671	843,236
대구	579,850	572,508	617,466	623,143	632,066	618,859	654,636	617,181	609,438	630,595	583,576	540,140
인천	483,408	466,404	491,787	514,551	522,722	514,052	555,148	538,326	517,428	520,940	474,816	445,623
광주	866,331	856,073	914,250	939,030	938,174	930,554	967,989	965,358	943,857	979,044	928,992	869,564
대전	376,533	378,322	405,920	417,889	419,723	416,074	429,151	410,430	402,427	372,665	344,632	319,944
울산	138,743	135,860	148,165	148,314	150,965	149,021	151,250	144,809	136,229	139,599	125,181	117,930
세종	25,687	24,319	23,432	24,287	23,432	26,037	27,858	27,469	26,406	28,603	27,903	24,456
경기	1,735,811	1,703,281	1,844,150	1,891,480	1,919,570	1,883,509	1,983,327	1,836,912	1,703,216	1,762,223	1,632,649	1,492,163
강원	639,686	601,117	666,170	672,533	669,546	663,047	710,992	684,800	651,603	683,452	643,263	615,892
충북	386,908	381,167	405,447	426,915	429,384	425,166	435,923	418,252	391,923	405,149	365,427	350,983
충남	704,758	672,559	735,597	757,227	752,885	740,800	773,932	756,546	689,200	721,483	680,400	650,132
전북	1,356,828	1,323,469	1,414,416	1,450,665	1,466,268	1,464,545	1,508,998	1,443,213	1,381,581	1,423,546	1,317,792	1,264,391
전남	1,436,700	1,402,266	1,521,582	1,557,598	1,570,720	1,568,141	1,623,694	1,567,032	1,499,796	1,577,634	1,481,140	1,370,267
경북	1,395,436	1,371,486	1,484,024	1,529,384	1,519,275	1,515,892	1,582,565	1,556,943	1,475,664	1,541,365	1,457,196	1,382,463
경남	1,211,015	1,185,464	1,286,248	1,315,369	1,310,651	1,312,284	1,366,846	1,291,049	1,196,091	1,197,783	1,070,723	956,105
제주	99,442	90,966	100,926	105,054	105,624	103,401	109,985	109,026	109,415	113,309	107,024	97,271
합계	13,271,345	12,971,457	13,997,364	14,338,782	14,424,849	14,280,980	14,930,633	14,333,993	13,587,659	14,011,263	13,051,524	12,219,103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그림 1-24 시도별 · 계층별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수 (2019.12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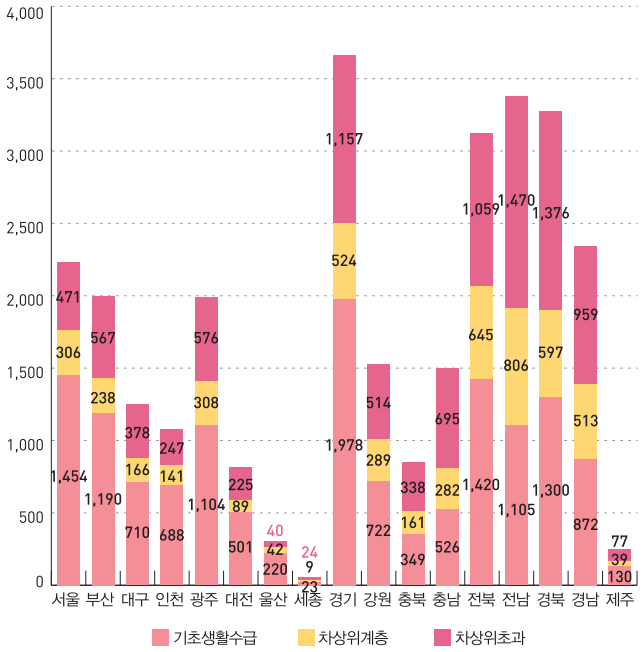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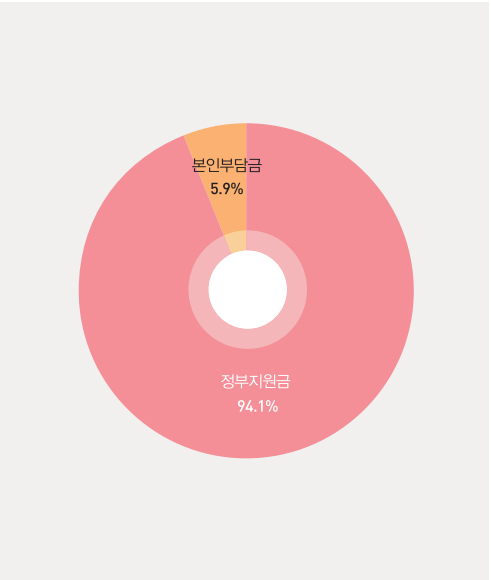


그림 1-25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액 비중 (2019.12 기준)

(단위: %)



11-1 연 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Comprehensive Elderly Care Services :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지표 정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그리고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서비스의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조직과 인력구성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제공인력도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지표의 목적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단, 노인단기가사서비스,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았다).

측정 산식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 이력이 있는 제공인력 수

표 1-19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2013~2019)

(단위: 개소, 명)

구분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92	1,358	1,453	1,605	1,813	1,902	1,881	12,970	15,554	15,839	16,684	18,496	20,084	18,524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1-20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 (2019)

(단위: 개소)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43	242	239	243	238	239	234	229	228	227	222	218
부산	88	88	90	91	91	91	90	91	90	89	88	87
대구	75	74	73	74	75	73	74	75	74	73	73	73
인천	53	54	55	55	54	55	55	54	54	53	54	53
광주	102	103	105	109	111	114	117	118	116	115	114	110
대전	64	62	66	67	65	64	65	65	64	62	62	61
울산	25	23	23	24	25	24	25	24	25	26	25	23
세종	4	4	4	3	4	4	4	4	4	4	4	4
경기	232	243	248	253	255	257	257	262	258	256	251	246
강원	71	72	73	73	71	72	71	73	71	71	70	70
충북	70	74	72	71	73	72	69	72	72	71	68	68
충남	84	84	86	85	84	85	84	83	84	85	85	84
전북	118	120	131	134	138	138	136	139	138	140	139	139
전남	225	227	227	229	231	232	231	230	233	232	232	229
경북	231	238	237	239	239	245	247	247	244	243	238	235
경남	189	189	187	193	193	182	180	176	175	172	173	165
제주	14	14	14	14	14	14	15	15	15	16	16	16
합계	1,888	1,911	1,930	1,957	1,961	1,961	1,954	1,957	1,945	1,935	1,914	1,881

주: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제 이력이 있는 기관 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 수의 합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표 1-21 시도별 ·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769	1,770	1,804	1,806	1,818	1,841	1,897	1,830	1,756	1,713	1,600	1,501
부산	1,059	1,076	1,115	1,138	1,180	1,173	1,207	1,214	1,236	1,258	1,217	1,133
대구	905	925	946	977	987	997	1,006	990	986	984	937	852
인천	731	732	742	775	791	798	823	818	803	784	759	696
광주	1,206	1,208	1,242	1,274	1,277	1,297	1,329	1,347	1,347	1,349	1,284	1,180
대전	608	644	644	656	654	659	672	644	648	629	601	542
울산	202	211	218	222	228	221	226	226	219	215	193	182
세종	45	46	42	41	40	46	49	50	47	49	49	44
경기	2,760	2,834	2,954	3,032	3,157	3,151	3,161	3,153	3,068	3,008	2,792	2,526
강원	896	895	924	921	935	944	961	960	947	936	891	843
충북	630	636	642	676	684	686	671	673	660	658	613	568
충남	1,079	1,072	1,093	1,111	1,130	1,142	1,159	1,169	1,119	1,123	1,060	986
전북	1,615	1,650	1,690	1,725	1,777	1,808	1,859	1,821	1,804	1,793	1,724	1,616
전남	2,135	2,146	2,212	2,256	2,275	2,320	2,349	2,333	2,313	2,320	2,226	2,042
경북	2,197	2,234	2,284	2,367	2,401	2,446	2,483	2,454	2,426	2,437	2,331	2,159
경남	1,826	1,874	1,907	1,925	1,968	1,998	2,013	1,960	1,897	1,823	1,714	1,530
제주	131	131	135	138	137	140	145	146	154	154	150	139
합계	19,794	20,084	20,594	21,040	21,439	21,667	22,010	21,788	21,430	21,233	20,141	18,539

주: 월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 수는 1건 이상 결제 이력이 있는 제공인력 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인력 수의 합임.

12 대 표

가사간병방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Nursing and Home Care Visi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 가사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이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한 자
- 지원 금액 : 소득 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2019년 기준)

구분	월 24시간(A형)		월 27시간(B형)		월 40시간(C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생계 · 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정부지원금	월 336,000원	월 315,840원	월 366,660원	월 355,320원	월 555,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0,160원	월 11,340원	월 22,680원	면제

표 1-22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3~2019)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8,810	8,979	8,692	8,174	7,289	6,978	6,903
이용액	2,036,135	2,059,491	2,069,551	2,002,282	1,837,719	2,044,816	2,449,868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1-23 시도별 · 월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527	532	540	549	544	554	550	540	535	533	531	533
부산	623	618	623	626	635	638	636	629	630	634	642	634
대구	393	391	389	399	397	396	393	398	394	400	413	411
인천	313	312	317	324	316	319	317	329	321	325	327	329
광주	385	393	395	399	392	391	394	385	382	382	386	381
대전	170	169	171	177	179	180	196	199	200	196	194	194
울산	163	170	166	176	182	175	175	178	179	185	197	197
세종	11	13	13	14	14	14	14	14	14	15	15	15
경기	743	753	759	753	753	753	750	748	746	750	747	739
강원	330	336	343	342	347	348	344	339	346	345	335	326
충북	194	194	197	202	207	201	207	205	206	206	207	205
충남	299	293	292	296	295	299	300	296	295	296	288	290
전북	1,040	1,042	1,052	1,054	1,045	1,033	1,047	1,047	1,045	1,026	1,020	1,014
전남	633	641	637	638	633	630	623	610	602	599	596	588
경북	469	480	487	487	500	498	494	493	492	494	485	478
경남	531	522	525	527	527	531	521	525	524	538	543	524
제주	64	63	63	66	64	65	57	52	51	52	46	45
합계	6,888	6,922	6,969	7,029	7,030	7,025	7,018	6,987	6,962	6,976	6,972	6,90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가사간병방문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그림 1-26 월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이용액 (2019)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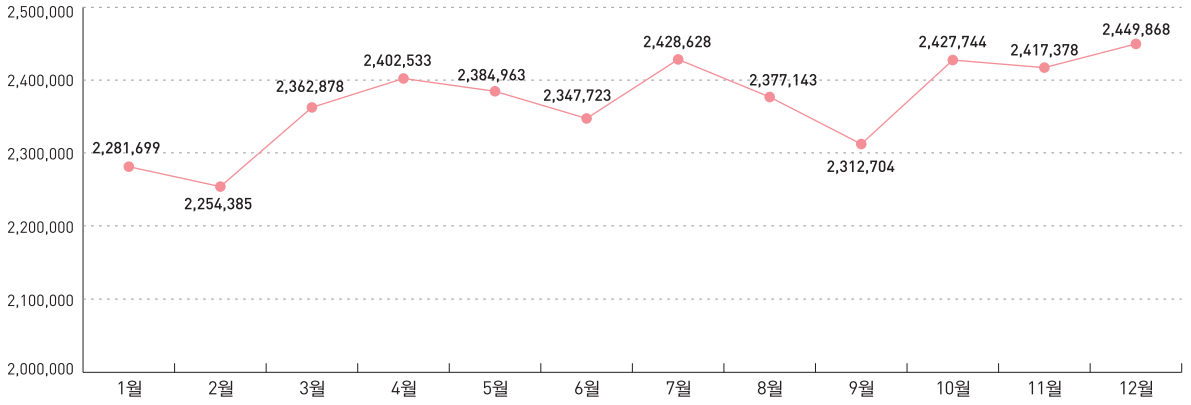


표 1-24 시도별 · 월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제공기관 수 (2019)

(단위: 개소)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47	51	48	46	46	46	48	48	46	46	46	46
부산	27	27	27	27	27	26	26	26	26	27	27	27
대구	13	13	13	14	13	13	13	13	13	13	13	13
인천	15	15	15	15	15	14	14	14	15	15	16	16
광주	15	14	15	15	16	18	18	18	18	19	19	19
대전	10	10	9	10	10	10	10	10	9	9	9	9
울산	6	6	6	6	6	6	6	6	6	6	6	6
세종	2	2	2	2	2	2	2	3	3	3	3	3
경기	53	53	54	56	56	56	55	54	54	55	55	54
강원	22	22	22	22	22	23	23	23	23	23	23	23
충북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충남	25	25	25	26	26	26	26	27	28	28	28	28
전북	29	28	28	28	28	29	29	30	30	30	31	31
전남	42	43	43	43	43	43	43	43	43	43	42	40
경북	40	41	41	41	42	43	43	43	43	43	43	42
경남	37	36	36	37	39	37	37	39	39	39	37	35
제주	4	4	4	4	4	4	4	4	4	4	3	3
합계	401	404	402	406	409	410	411	415	414	417	415	409

13
대 표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Language Development Supporting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감각적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서비스 및 심리상담서비스 등 간접적인 서비스와 더불어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 등 각종 지도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대상 중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며,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 지원 금액: 소득별로 상이

(2019년 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차상위계층(가형)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표 1-25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4~2019)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313	398	421	387	343	327
이용액	60,183	75,916	78,562	73,966	65,250	61,304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1-26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86	84	81	81	60	61	57	64	63	61	59	57
부산	6	5	6	6	9	7	7	9	7	7	9	7
대구	8	8	7	6	7	6	7	7	6	6	8	7
인천	8	8	7	7	7	7	7	7	7	7	7	7
광주	40	37	36	37	36	36	34	33	32	33	36	34
대전	17	17	17	17	18	18	18	17	18	18	17	16
울산	5	6	6	8	8	6	6	6	6	6	7	7
세종	1	1	1	1	1	0	0	0	0	0	0	0
경기	81	79	82	67	73	75	72	69	72	69	69	67
강원	6	6	6	6	5	4	4	3	3	3	3	4
충북	3	3	2	3	3	6	6	8	6	6	9	8
충남	12	17	19	21	21	21	22	22	21	21	20	20
전북	41	40	41	41	40	39	38	38	37	37	37	45
전남	10	11	11	10	10	10	10	10	11	11	11	13
경북	9	9	9	9	9	9	10	9	11	11	11	11
경남	11	11	12	12	12	10	11	11	11	11	11	10
제주	9	8	10	9	9	9	10	12	11	14	14	14
합계	353	350	353	341	328	324	319	325	322	321	328	32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언어발달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표 1-27 시도별 · 월별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액 (2019)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6,243	16,047	15,923	16,331	11,471	12,100	11,415	12,694	12,317	11,750	12,168	11,315
부산	1,172	952	1,152	1,152	1,656	1,251	1,325	1,705	1,451	1,362	1,685	1,139
대구	1,653	1,653	1,500	1,300	1,315	1,280	1,480	1,480	1,260	1,251	1,591	1,380
인천	1,311	1,245	1,249	1,206	1,129	1,249	1,224	1,209	1,149	1,048	1,081	1,113
광주	7,926	7,471	7,271	7,431	7,211	7,035	6,791	6,611	6,391	6,651	7,175	6,859
대전	3,500	3,500	3,500	3,500	3,680	3,680	3,680	3,480	3,660	3,660	3,440	3,220
울산	1,000	1,176	1,264	1,660	1,600	1,220	1,220	1,220	1,220	1,220	1,420	1,420
세종	220	220	220	220	220	0	0	0	0	0	0	0
경기	14,144	14,053	14,530	11,899	12,818	13,569	12,356	12,272	12,480	12,166	12,160	11,630
강원	1,021	992	1,032	956	692	712	467	492	374	456	494	587
충북	620	620	440	660	660	1,103	1,192	1,416	1,103	1,071	1,633	1,426
충남	2,200	2,990	3,290	3,706	3,850	3,631	3,913	3,846	3,672	3,646	3,400	3,413
전북	8,415	8,130	8,365	8,420	7,900	7,865	7,930	7,860	7,780	7,688	7,720	9,246
전남	2,100	2,280	2,147	2,120	2,120	2,120	2,120	2,120	2,285	2,340	2,340	2,780
경북	1,653	1,680	1,653	1,660	1,660	1,660	1,880	1,700	2,040	2,040	2,040	2,040
경남	1,910	1,910	2,110	2,110	2,110	1,710	1,900	1,900	1,920	2,000	2,000	1,840
제주	1,205	609	1,616	1,390	1,215	1,530	1,610	1,802	1,522	2,158	2,211	1,896
합계	66,294	65,529	67,262	65,721	61,307	61,716	60,502	61,808	60,625	60,508	62,559	61,304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14
대 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Community Social Service Investment Program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 기획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 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심리지원, 인터넷 과몰입 아동청소년 치유, 노인맞춤형 운동, 장애인 ·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건강 토탈케어, 자살위험군 예방,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 다문화가정아동 발달지원, 건강취약계층 운동, (비만)아동 건강관리,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업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유형과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신규 사업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정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1) 소득기준은 지역사회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하되, 노인/장애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노인대상사업(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보조기기렌탈 ·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소득기준이 없다. (2) 요구기준은 해당 서비스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선정우선순위는 지역 수요 및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정한다.
- 지원 금액 : 각 사업별로 본인부담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본인부담금을 설정하도록 권장

표 1-2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4~2019)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260,636	156,767	137,927	144,376	117,653	145,645	145,597
이용액	17,639,566	13,813,390	19,959,739	20,890,817	17,428,809	21,190,608	21,094,601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1-29 시도별 · 월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5,903	6,110	7,031	7,019	7,000	6,848	6,800	6,990	7,149	7,125	7,215	7,064
부산	11,052	10,843	12,096	13,573	13,376	13,410	13,412	13,633	13,537	14,923	15,060	14,806
대구	7,514	9,230	9,859	9,838	9,588	9,426	9,252	9,255	9,260	8,465	8,511	8,286
인천	14,219	13,939	12,612	11,641	11,546	10,886	9,537	8,518	7,695	7,121	7,214	8,640
광주	8,460	8379	8,425	9,176	8,870	8,732	7,572	7,006	6,389	5,956	5,800	5,748
대전	6,161	6,115	6,840	6,894	6,802	6,658	6,632	8,392	8,382	8,288	9,682	9,561
울산	2,704	2,629	3,211	3,519	3,160	3,096	3,152	3,280	2,691	2,667	2,459	2,932
세종	725	697	746	757	740	726	721	867	906	787	767	772
경기	22,534	22,335	26,628	27,087	26,746	25,999	25,568	26,224	26,742	26,495	25,553	25,219
강원	6,290	6,029	6,973	7,685	7,194	6,832	6,814	7,016	6,674	7,039	7,158	6,937
충북	3,768	4,319	5,038	4,900	5,121	4,935	5,269	5,273	5,934	6,139	6,044	5,748
충남	6,191	5,957	6,582	6,617	6,738	6,785	6,631	7,161	6,905	6,960	7,552	7,455
전북	10,910	11,172	11,882	12,025	11,902	11,739	11,479	11,126	10,248	10,683	9,951	9,627
전남	11,247	11,361	11,277	11,227	11,213	11,121	11,081	10,945	11,101	11,102	11,893	12,261
경북	8,130	7,245	8,244	8,754	8,621	8,485	8,074	8,217	7,971	8,096	7,978	8,011
경남	5,389	5,787	6,222	6,231	6,177	6,077	6,122	6,716	7,656	7,849	7,655	7,605
제주	5,957	5,333	6,207	6,152	5,946	5,355	5,080	4,615	4,307	4,566	4,496	4,925
합계	137,154	137,480	149,873	153,095	150,740	147,110	143,196	145,234	143,547	144,261	144,988	145,59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표 1-30 시도별 · 월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금액 (2019)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836,004	865,145	1,043,586	1,054,692	1,046,842	995,534	1,019,670	1,034,574	1,040,441	1,092,173	1,099,874	1,112,923
부산	1,280,381	1,293,228	1,418,226	1,682,760	1,577,842	1,610,581	1,616,164	1,636,046	1,610,816	1,849,988	1,871,857	1,851,087
대구	987,819	1,128,212	1,409,334	1,305,390	1,269,237	1,236,960	1,225,759	1,234,472	1,197,255	1,128,906	1,139,900	1,121,672
인천	1,923,871	1,859,969	1,755,012	1,594,288	1,580,375	1,490,235	1,313,669	1,158,912	1,028,275	995,280	1,000,462	1,195,115
광주	1,239,246	1,251,856	1,221,999	1,491,094	1,322,644	1,303,550	1,112,905	1,020,959	936,114	871,937	849,222	841,286
대전	964,090	989,309	1,062,334	1,130,350	1,091,069	1,067,345	1,071,605	1,304,608	1,340,968	1,325,497	1,540,595	1,543,479
울산	391,659	385,441	449,318	543,500	454,826	448,164	457,437	510,649	384,889	399,400	356,546	442,828
세종	127,194	112,884	140,903	135,431	128,302	127,852	131,761	145,580	161,883	137,109	133,001	139,504
경기	3,122,885	3,108,069	3,855,135	3,986,408	3,873,792	3,715,940	3,695,962	3,748,497	3,723,541	3,921,123	3,738,184	3,804,276
강원	851,690	790,867	993,454	1,086,246	1,009,700	945,786	941,625	971,468	883,370	982,621	1,012,383	1,001,416
충북	541,179	592,355	821,641	743,680	767,586	732,603	792,912	778,145	869,572	951,963	930,669	892,096
충남	866,680	794,044	975,042	957,796	944,145	946,054	949,454	1,009,525	963,434	1,002,264	1,065,387	1,116,364
전북	1,592,893	1,636,557	1,806,929	1,834,083	1,790,438	1,726,495	1,726,265	1,623,121	1,488,702	1,610,775	1,496,199	1,464,400
전남	1,329,914	1,328,844	1,355,733	1,310,464	1,326,566	1,293,409	1,320,352	1,281,217	1,297,916	1,347,825	1,411,216	1,524,471
경북	1,129,600	1,007,726	1,139,664	1,278,303	1,219,565	1,185,333	1,136,613	1,144,768	1,097,030	1,151,558	1,114,779	1,151,299
경남	762,092	824,550	948,021	929,876	908,391	883,454	899,765	980,923	1,132,365	1,197,586	1,130,015	1,173,256
제주	796,073	708,729	861,913	842,237	811,690	735,847	677,223	608,788	546,056	629,696	597,244	719,130
합계	18,743,268	18,677,784	21,258,244	21,906,597	21,123,012	20,445,143	20,089,141	20,192,252	19,702,627	20,595,701	20,487,534	21,094,601

주: 단위 미만인 수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 수치가 시도별 수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

15
대 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ostpartum Women and Infants Health Care Service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과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출산 전후 모성보호와 신생아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 건강한 임신 · 출산 ·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기준가격을 토대로 최대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분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기준가격	단축형	510천 원~1,120천 원	1,450천 원~2,175천 원	2,505천 원
	표준형	1,120천 원~1,680천 원	2,175천 원~2,900천 원	3,340천 원
	연장형	1,680천 원~2,240천 원	2,900천 원~3,625천 원	4,175천 원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임신 16주 경과 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금액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2019년 기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정부지원금	344천 원~1,613천 원	986천 원~2,708천 원	1,703천 원~3,119천 원
본인부담금	책정가와 정부지원금의 차액		

표 1-31 연도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7,886	7,135	8,253	8,348	9,729	11,815	16,073
이용액	3,314,373	3,103,393	3,439,509	3,418,829	4,234,500	5,938,824	9,721,815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표 1-32 시도별 · 월별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이용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3,703	3,765	4,308	4,296	4,140	3,724	4,079	3,925	4,016	4,452	4,051	3,675
부산	508	639	728	739	749	674	726	652	673	691	648	605
대구	669	726	843	872	817	703	736	692	734	822	796	743
인천	799	869	937	958	907	785	892	841	847	903	864	795
광주	346	369	437	421	456	394	395	375	439	496	429	379
대전	453	567	678	702	656	571	640	611	656	715	602	587
울산	361	383	435	452	440	385	414	410	425	483	439	372
세종	278	273	302	306	314	300	288	282	276	293	312	277
경기	3,342	3,978	4,637	4,819	4,655	4,081	4,614	4,550	4,724	5,118	4,708	4,278
강원	304	325	350	363	347	307	356	427	422	415	399	393
충북	407	423	474	538	522	506	527	500	478	519	474	398
충남	648	750	878	906	866	727	805	806	805	861	791	728
전북	421	428	473	499	514	483	474	443	432	491	448	407
전남	521	593	668	650	643	564	634	616	606	688	603	566
경북	634	693	816	824	787	758	874	794	782	867	830	744
경남	783	944	1094	1111	1016	896	999	995	1056	1154	1046	953
제주	156	168	179	193	209	156	172	169	169	188	179	173
합계	14,333	15,893	18,237	18,649	18,038	16,014	17,625	17,088	17,540	19,156	17,619	16,073

2

아동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아동 수면시간
02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03 아동 자살률
04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05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06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07 아동 빈곤율
08 나홀로 아동 수
09 요보호 아동 수
10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2 아동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아동 건강 발달	아동 수면시간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아동 자살률	
아동 안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 손상 경험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 빈곤	아동 빈곤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아동급식 지원자 수
아동의 사회적 보호	나홀로 아동 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요보호 아동 수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아동복지 지출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Highlight

2019년 아동 분야의 두드러진 특징은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에 있다. 2001년 이후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에 의해서 이뤄지며,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재학대 비율이 높다. 더구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는 원가정보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율이 최근에 증가하는 것을 과거보다 학대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이 지정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공적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학대피해아동의 발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아동에 대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증가하고 있다. 아동 빈곤율의 증가는 빈곤율을 산정하는 원자료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조사 방식 변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아동 수는 2015년 이후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관련이 있다.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하면서 교육급여의 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수급 아동의 수가 증가한 것이다.

반면에, 아동 안전사고의 사망자 수는 2003년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익사 사고 사망자 수는 상당 수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난 반면, 추락이나 중독, 화재 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사망자 수 등 전반적인 지표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동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01
대 표

아동 수면시간

Child Sleeping Hours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의 평일 평균 수면시간은 학교 등교 시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기초로 초 · 중 ·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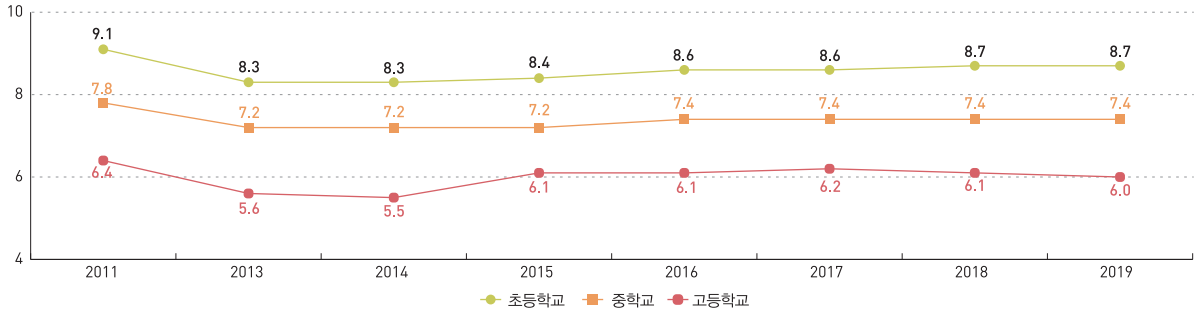
• 아동의 적정 수면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아동 1일(평일) 수면시간의 합}}{\text{전체 아동의 수}} \text{(평일 평균)}$$

그림 2-1 연도별 · 학령별 평균 수면시간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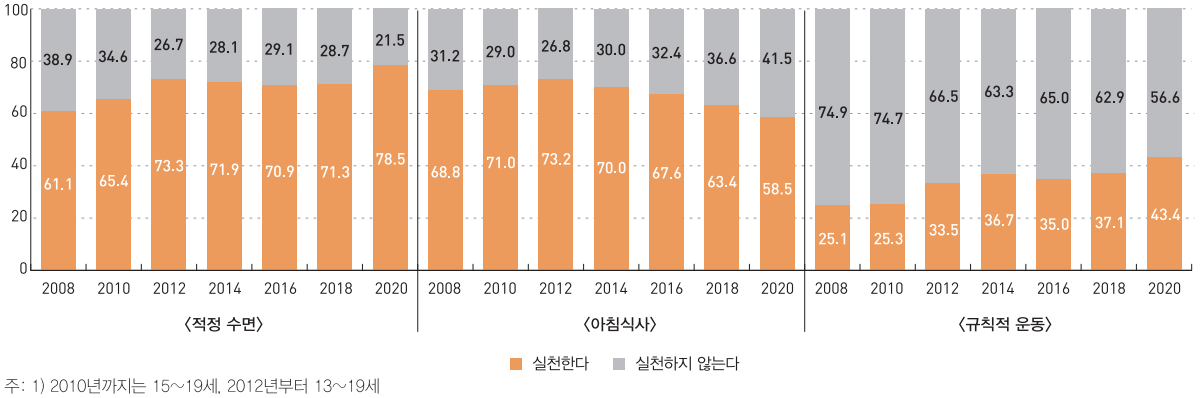


주: 2012년도는 조사결과 없음.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서, 각 연도

그림 2-2 연도별 건강관리 실천 여부

(단위: %)



주: 1)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2)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년에 보건(건강관리)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09	2019	1년
통계청	사회조사	1977	2019	1년

* 통계청 사회조사는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 (짝수년)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홀수년)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여가, 소득과소비, 노동으로 조사됨.

Checkpoint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동 · 청소년의 연도별 평균 수면시간은 2015년 이후 7.3시간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아동 ·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은 2015년 뚜렷한 증가를 보인 후 그대로 유지대로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수면시간의 증가 추이는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표 2-1 학령별 수면시간당 비율 (2010~2019)

(단위: %)

연도	구분		5시간 미만	5~6시간	6~7시간	7~8시간	8시간 이상
2010	전체		7.2	18.2	23.3	25.7	25.3
	초등학교		3.8	4.8	16.3	32.8	41.7
	중학교		4.1	15.4	34.5	30.8	15.0
	고등학교		16.1	44.9	26.6	8.4	3.9
2011	전체		3.0	8.1	15.1	21.3	52.4
	초등학교		0.0	0.3	1.2	8.7	89.8
	중학교		0.9	4.0	12.2	32.5	50.4
	고등학교	일반계	9.9	24.3	36.1	22.7	6.9
		전문계	5.2	14.7	30.3	29.8	20.0
2013	전체		6.6	14.5	19.5	24.7	34.7
	초등학교		0.6	0.6	3.1	17.1	78.5
	중학교		1.8	6.0	19.8	42.8	29.7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7.5	36.8	33.1	11.1	1.6
		특성화	11.4	22.3	32.3	26.4	7.6
2014	전체		5.6	15.7	20.8	24.6	33.4
	초등학교		0.3	0.7	3.8	17.2	78.0
	중학교		1.3	6.0	20.9	42.0	29.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5.0	40.4	33.0	10.1	1.5
		특성화	7.9	19.0	37.0	30.1	5.9
2015	전체		4.1	12.9	20.6	26.0	36.3
	초등학교		0.2	0.6	3.3	13.8	82.0
	중학교		1.1	6.6	18.1	41.6	32.6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0.9	31.5	36.1	17.5	4.1
		특성화	5.7	12.5	35.4	34.7	11.7
2016	전체		7.9	17.3	14.1	23.9	36.7
	초등학교		0.3	1.4	2.9	13.8	81.6
	중학교		2.5	9.5	16.0	37.5	34.5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20.7	40.1	21.2	15.3	2.7
		특성화	9.0	20.4	19.8	36.5	14.3
2017	전체		4.6	14.6	20.4	23.7	36.8
	초등학교		0.2	0.8	3.4	14.8	80.8
	중학교		1.5	7.6	20.0	36.6	34.3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1.5	34.5	32.9	16.7	4.3
		특성화	4.4	14.9	34.5	32.2	14.0
2018	전체		5.0	14.7	19.8	21.9	38.7
	초등학교		0.2	0.6	3.4	12.4	83.4
	중학교		1.3	7.9	17.8	36.6	36.4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2.6	34.5	34.3	14.4	4.3
		특성화	8.8	19.4	35.2	28.8	7.8
2019	전체		6.4	14.0	18.2	20.9	40.5
	초등학교		0.3	1.0	3.5	13.0	82.2
	중학교		2.6	8.1	19.4	33.2	36.7
	고등학교	일반/특목/자율	16.8	32.6	30.5	15.2	5.0
		특성화	8.4	23.2	29.8	25.9	12.6

주: 2012년도는 조사결과 없음.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 · 청소년인권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2
대 표

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Rate of Internet (Smartphone) Overdependences in Children

지표 정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스마트폰 고위험 사용자군(현저성, 조절실채, 문제적 결과 특성을 모두 나타내는 집단)과 잠재적 위험사용자군(현저상, 조절실태, 문제적 결과 중 1~2가지 특성을 보이는 집단)으로 구성된다.

- 스마트폰 과의존의 개념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salience)이 증가하고 이용조절력(self-control failure)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기존의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통합척도를 사용, 유아동(만 3~9세), 청소년(만 10세~19세), 성인(만 20세~59세), 고령층(만 60세~69세) 4종의 척도를 도입하였다.

측정 산식

- $\dfrac{\text{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상담개입 또는 집중치료가 필요한 집단 수)}}{\text{조사대상(10~19세) 청소년 수}} \times 100$

유의사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스마트폰 중독척도(각 15문항)를 활용하여 산출함.**

표 2-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및 수 (2012~2019)

(단위: %, 천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율(%)	비율(%)	비율(%)	비율(%)	수(천 명)	비율(%)	수(천 명)	비율(%)	수(천 명)	비율(%)	수(천 명)	비율(%)	수(천 명)
과의존 위험	11.1	11.8	14.2	16.2	5,810	17.8	7,426	18.6	7,860	19.1	8,278	20.0	8,871
고위험	1.9	1.3	2.0	2.4	863	2.5	1,042	2.7	1,133	2.7	1,180	2.9	1,274
잠재적 위험	9.2	10.5	12.2	13.8	4,947	15.3	6,384	15.9	6,727	16.4	7,098	17.1	7,597

주: 1) 조사연령 확대 2016년~2019년: 만 3~6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2015년: 만 3~5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014년: 만 10~5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013년: 만 10~54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4세)
2011년~2012년: 만 10~4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49세)
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연령이 위와 같이 확대되고, 기존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조사함에 따라 전년도와 단순비교 불가
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만3~69세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수x과의존 위험군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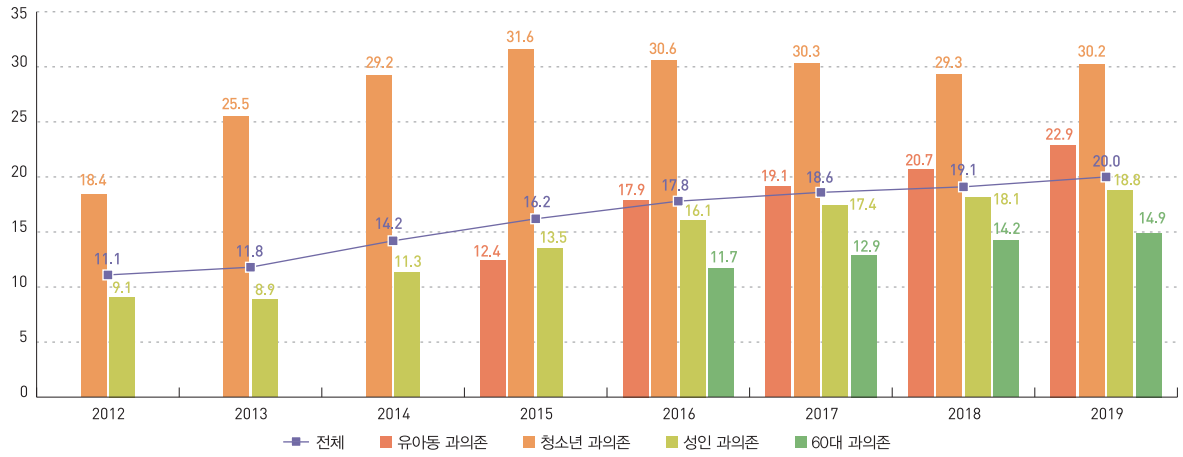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2004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청소년 및 유아동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2%, 22.9%로 나타나 전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인 20.0%보다 높았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전년 대비 약 0.9%p, 유아동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2%p, 성인과 60대 이상 연령대에서도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2-3 연령대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2~2019)

(단위: %)



주: 1) 조사연령 확대 2016년~2017년: 만 3~6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2015년: 만 3~59세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014년: 만 10~5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2013년: 만 10~54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4세)
2011년~2012년: 만 10~4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49세)
2)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조사대상 연령이 위와 같이 확대되고, 기존 인터넷(K-척도) 및 스마트폰(S-척도) 개별척도를 2016년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로 통합하여 조사함에 따라 전년도와 단순비교 불가
3)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수=만 3~69세인터넷(스마트폰)이용자수x과의존 위험군 비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2-3 연령대별 · 연도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2012~2019)

(단위: %)

구분	연령대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유아동	-	-	-	12.4	17.9	19.1	20.7	22.9
	청소년	18.4	25.5	29.2	31.6	30.6	30.3	29.3	30.2
	성인	9.1	8.9	11.3	13.5	16.1	17.4	18.1	18.8
	60대	-	-	-	-	11.7	12.9	14.2	14.9
고위험	유아동	-	-	-	1.7	1.2	1.2	2.0	2.3
	청소년	2.7	2.4	3.3	4.0	3.5	3.6	3.6	3.8
	성인	1.7	1.0	1.8	2.1	2.5	2.8	2.7	2.8
	60대	-	-	-	-	2.0	2.1	2.4	2.5
잠재적 위험	유아동	-	-	-	10.7	16.7	17.9	18.7	20.6
	청소년	15.7	23.1	25.9	27.6	27.1	26.7	25.7	26.4
	성인	7.4	7.9	9.5	11.4	13.6	14.6	15.4	16.0
	60대	-	-	-	-	9.7	10.8	11.8	12.4

주: 유아동 만 3~9세, 청소년 만 10~19세, 성인 만 20~59세, 60대 만 60~69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폰 과의존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3
대 표

아동 자살률

Child Suicide Rate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 자살률(자살사망률)은 연간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아동 · 청소년 사망자의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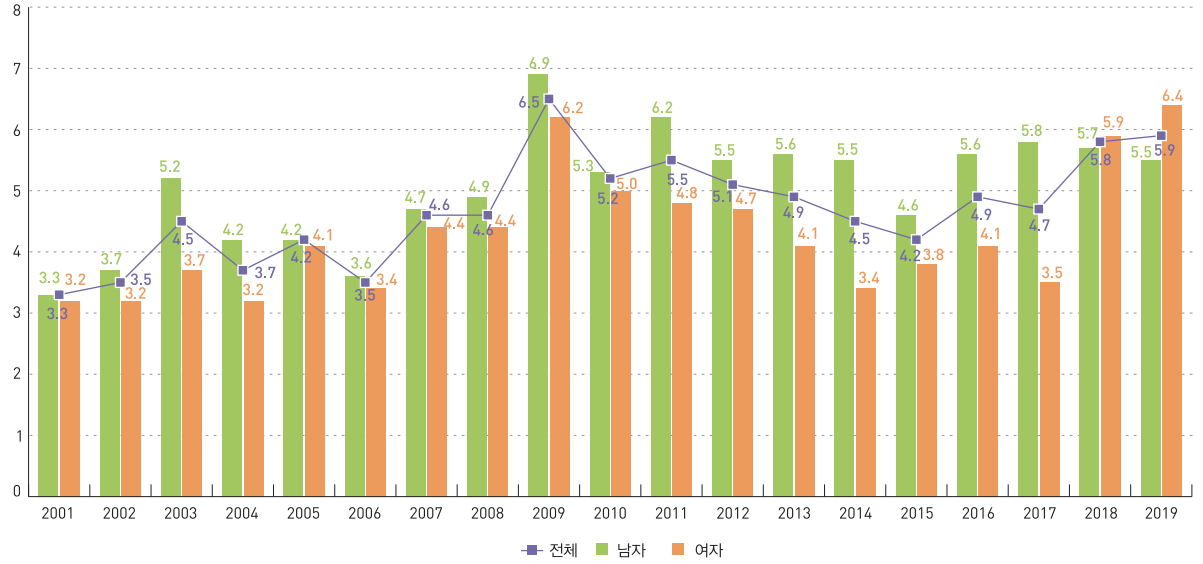
• 연앙인구는 당해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의 주민등록 인구를 의미하며, 출생률과 사망률을 산출할 때 사용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아동 · 청소년 사망자의 수}}{\text{당해 연도 아동 · 청소년 연앙인구}} \times 100{,}000$$

그림 2-4 성별 10대의 자살률 (2001~2019)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10대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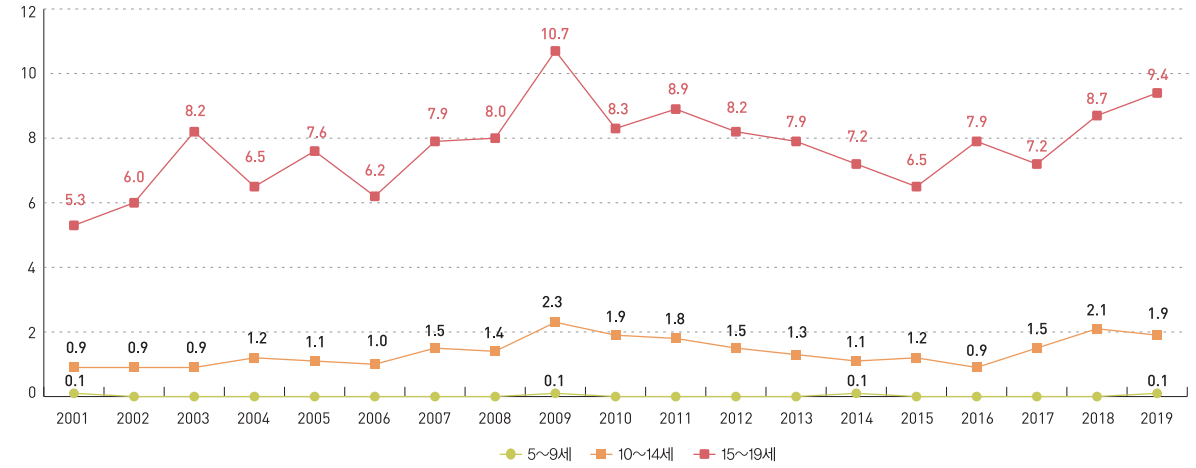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9	1년
통계청	사회조사	1977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10대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인구 10만명 당 5.9명으로 전년 대비 0.1명이 증가했다. 2009년 6.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 4.2명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던 10대 자살사망률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추세를 성별로 구분하면 2017년까지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으나, 2018년 여자청소년의 자살률이 남자청소년을 2000년 이후 처음 넘어서게 되었다.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2019년 15~19세의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9.4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0.7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 2-5 연령별 아동 · 청소년 자살률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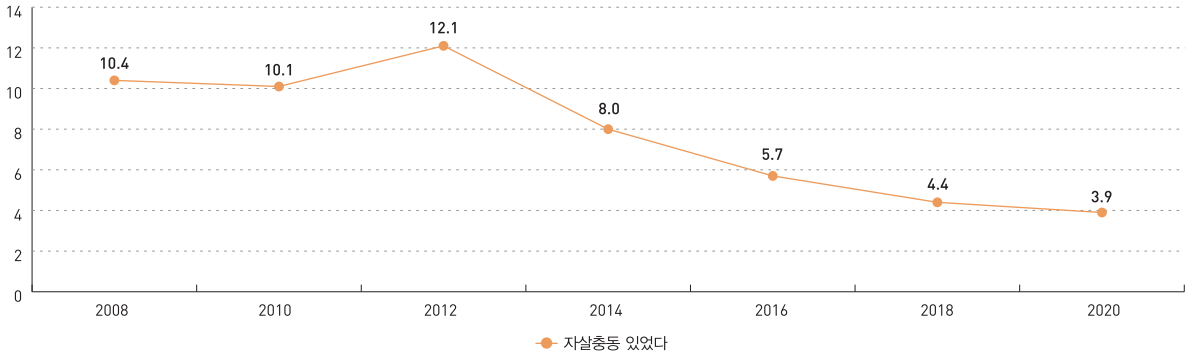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1) 사망원인통계의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에 해당하는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 0~4세 자살자 수는 집계되지 않거나 0명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2-6 연도별 자살충동 청소년의 비율

(단위: %)



주: 1)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2)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년에 보건(자살충동)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표 2-4 연도별 청소년 자살충동 여부 및 이유

(단위: %)

연도	자살충동 여부		자살충동 이유							
	자살충동 있다	자살충동 없다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정신적 질환, 장애	직장문제	외로움, 고독	가정불화	성적 및 진학문제	이성문제, 친구 및 동료와의 불화	기타
2008	10.4	89.6	8.8	3.5	1.7	13.6	10.1	51.0	8.6	2.9
2010	10.1	89.9	10.5	2.2	1.6	11.2	12.6	53.4	5.7	2.8
2012	12.1	87.9	16.7	2.0	0.4	12.5	16.9	39.2	8.5	3.7
2014	8.0	92.0	19.5	2.1	0.8	9.8	10.5	39.3	12.9	5.2
2016	5.7	94.3	10.6	3.0	1.0	11.1	11.9	48.1	10.0	4.3
2018	4.4	95.6	14.5	4.6	0.9	13.1	14.0	35.7	16.5	0.6
2020	3.9	96.1	9.3	12.4	3.0	14.4	11.2	29.7	11.0	0.8

주: 1) 2010년까지는 15~19세, 2012년부터 13~19세
2) 사회조사는 매년 실시하나, 짝수년에 보건(자살충동) 관련 조사를 수행함.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04
대 표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Number of safety accident death in children

지표 정의

아동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년 동안 외부요인에 의한 안전사고(운수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로 사망한 14세 이하의 아동의 수 및 10만 명당 비율을 말하며 자살, 타살,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한다.

•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사고 중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사고를 근거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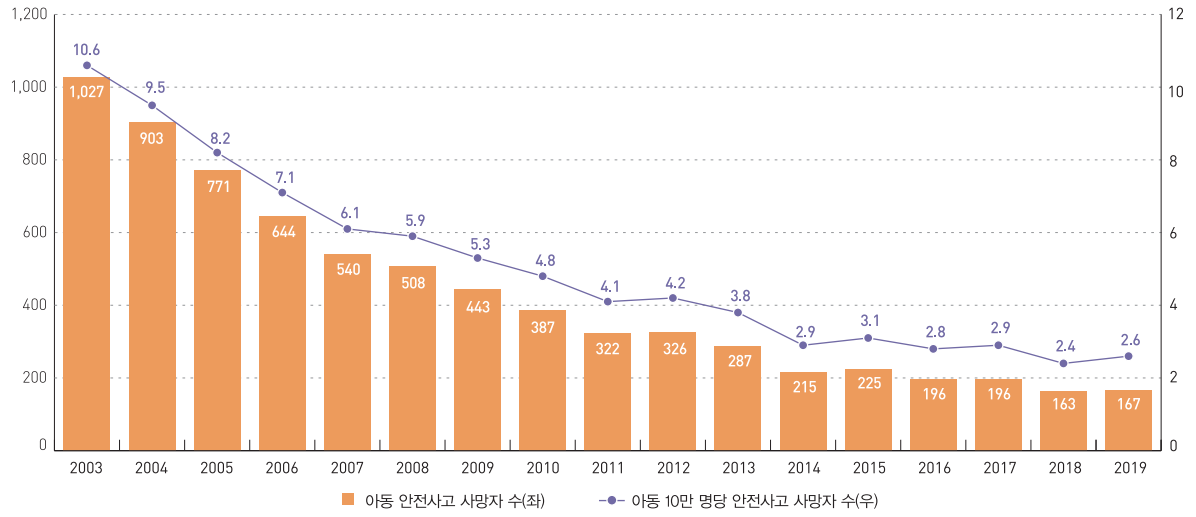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 = $\frac{\text{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 수}}{\text{14세 이하 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유의사항 본 지표에서 교통사고는 사망원인통계(통계청)와 교통사고통계(경찰청)에서 각각 공표하는 통계를 사용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의 교통사고는 육상 · 해상 · 항공 등 모든 교통기관 사고 및 트랙터 사고 등 비도로 상의 사고를 포함한다. 교통사고통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상에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의 통계를 의미하며 경찰에서 접수하여 처리한 교통사고를 근거로 작성된다.

그림 2-7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및 10만 명당 사망자 수 (2003~2019)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9	1년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1976	2018	1년

Checkpoint 2019년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6명으로 전년도 대비 0.2명 증가했으며, 2003년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수립 이후 2004년 9.5명, 2007년 6.1명, 2014년 2.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경찰청 집계 2018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명으로, 2002년 430명에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5 유형별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200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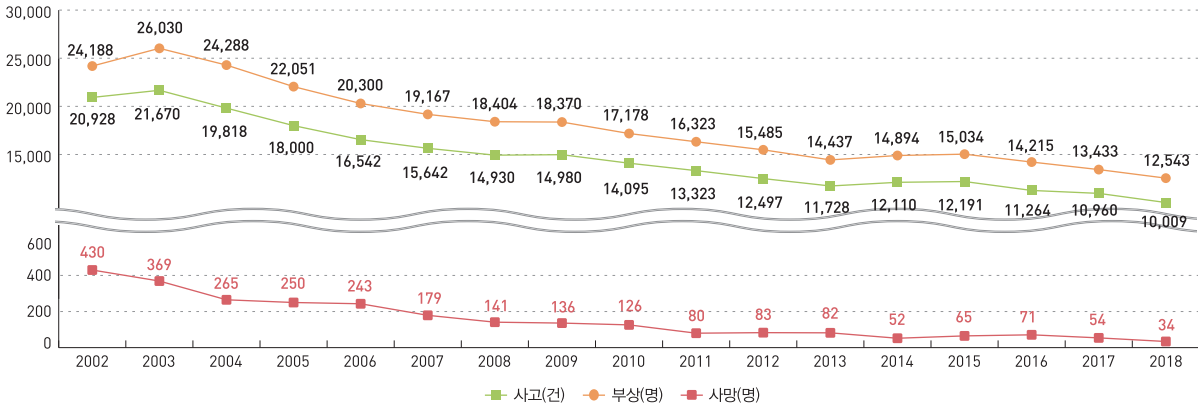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027	903	771	644	540	508	443	387	322	326	287	215	225	196	196	163	167
교통사고	501	378	347	317	260	214	201	194	137	131	121	80	103	87	75	54	54
익사	108	89	69	58	58	50	40	42	37	36	37	31	28	19	26	28	27
추락	159	187	156	79	79	78	62	44	50	53	41	36	28	28	24	18	25
화재	63	42	19	42	7	19	10	15	15	14	15	5	10	5	7	8	2
중독	4	7	5	5	4	2	5	3	1	1	2	2	0	1	2	4	1
기타	192	200	175	143	132	145	125	89	82	91	71	61	56	56	62	51	58

주: 통계표 사망통계자료(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 · 타살 · 질병 제외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그림 2-8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건수, 부상자 수, 사망자 수 (200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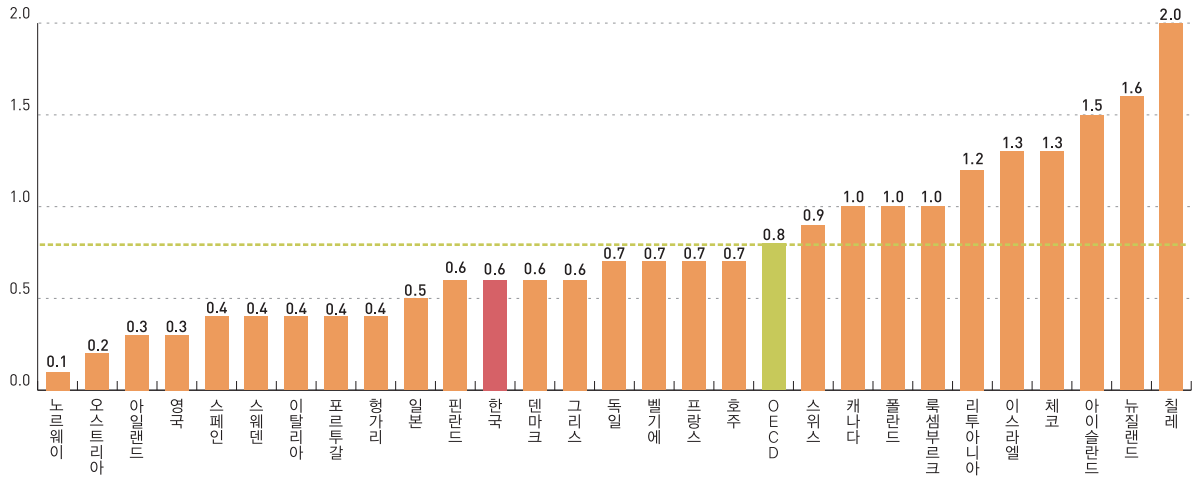
(단위: 건, 명)



주: 12세 이하 어린이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자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그림 2-9 아동(14세 이하)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국제비교 (2018)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주: 캐나다는 해당자료 없음.
자료 : OECD 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http://stats.oecd.org에서 2021.1.10. 인출)

04-1
연 관

아동 손상 경험률

Child Injur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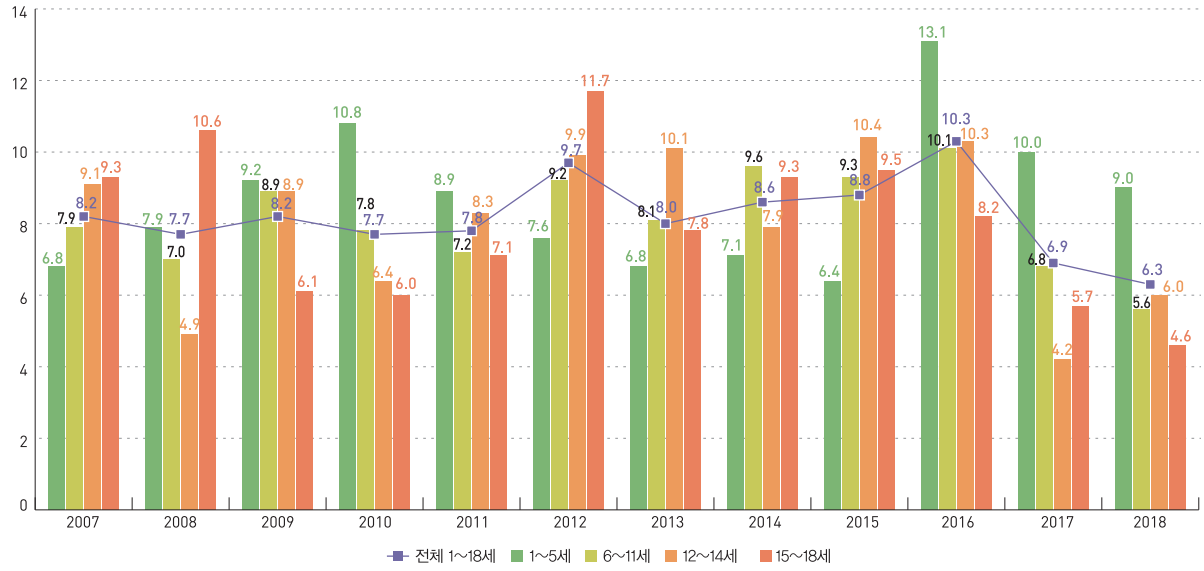
아동의 손상 경험률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 중 최근 1년간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아동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만 18세 이하 인구 중 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고나 중독을 경험한 사람}}{\text{만 18세 이하 인구}} \times 100$

그림 2-10 연도별 아동 연간 손상 경험률 (2007~2018)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8	1년

05
대 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Substantiation rate of Child Abuse

지표 정의

아동학대란 신체, 정신, 성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 유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건수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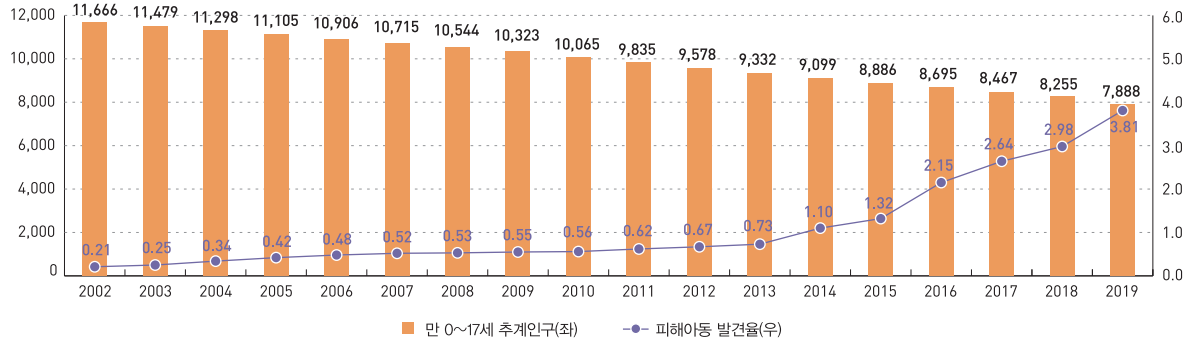
- 아동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은 추계 아동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를 의미한다.
- 학대피해아동 서비스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아동에게 취한 최종조치와 제공된 서비스의 횟수를 포함하는데, 최종조치 결과는 전년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 결과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frac{\text{만 0~17세 아동학대 판정 피해아동 수}}{\text{만 0~17세 아동 수}} \times 1{,}000$$

그림 2-11 추계 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발견율 (2002~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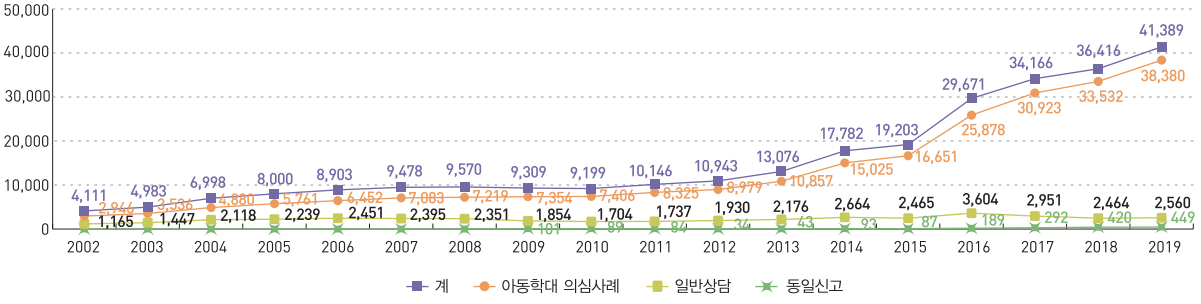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주: 1)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함.
2) 2016년까지 통계청 「연령별(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2017년 이후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년 이후: 아동학대 주요통계

그림 2-12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2002~2019)

(단위: 건)



주: 1) 동일신고는 2009년부터 집계됨. 동일신고란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 피해의심내용으로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를 의미함.
2) 해외발생사례 건수는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년 이후: 아동학대 주요통계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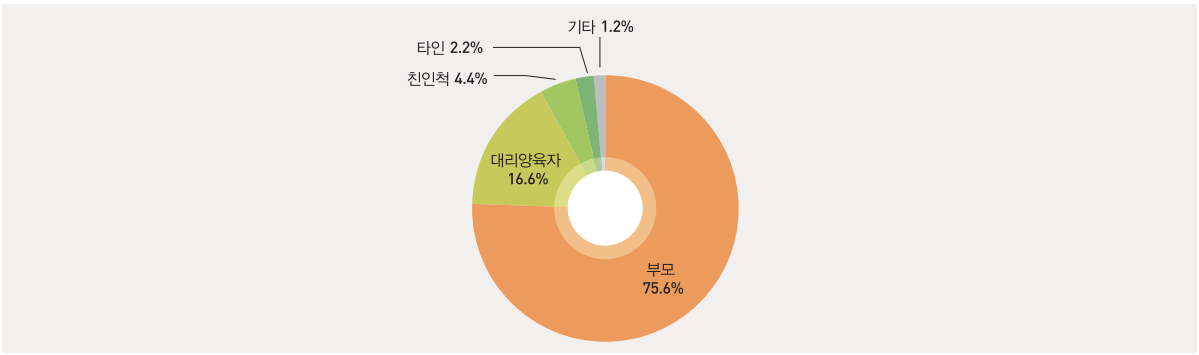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006	2019	1년

Checkpoint

2002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율 및 피해 아동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동인구의 지속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2002년 0.21‰에서 2019년 3.81‰로 증가하였다. 2018년 대비 0.83‰p 증가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30,045건의 아동이 학대피해아동으로 발견 · 보호되었다.

그림 2-13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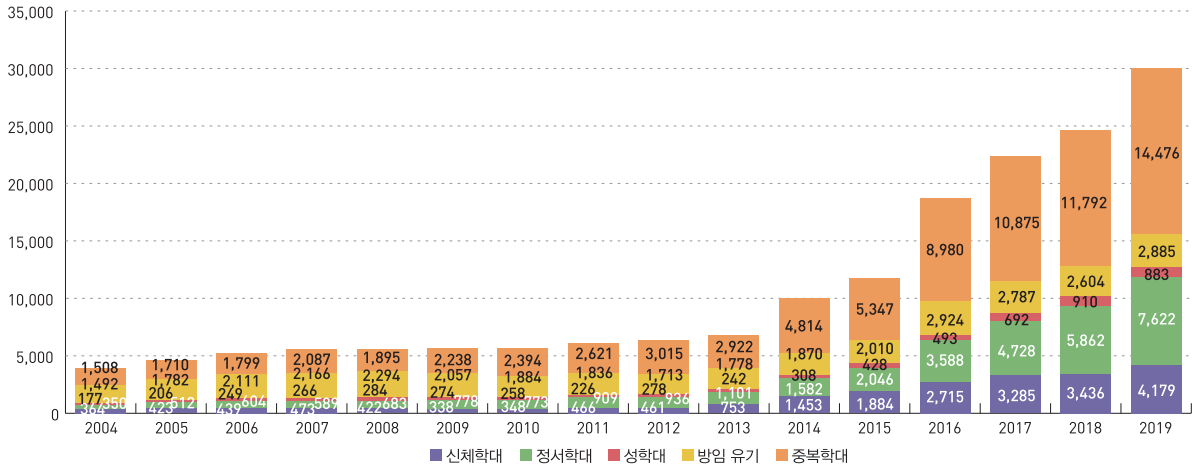
(단위: %)



주: 1) 대리양육자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을 의미함.
2) 기타에는 이웃, 낯선사람, 부모의 지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 강사, 파악불가 등이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그림 2-14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 건수 (200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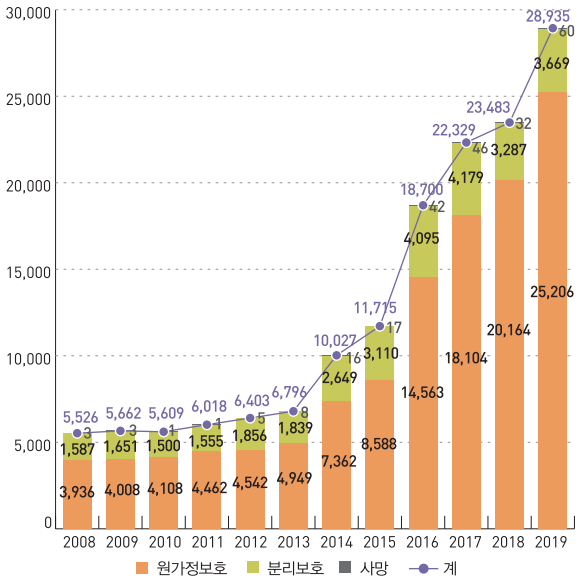
(단위: 건)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년 이후: 아동학대 주요통계

그림 2-15 피해 아동 초기조치 결과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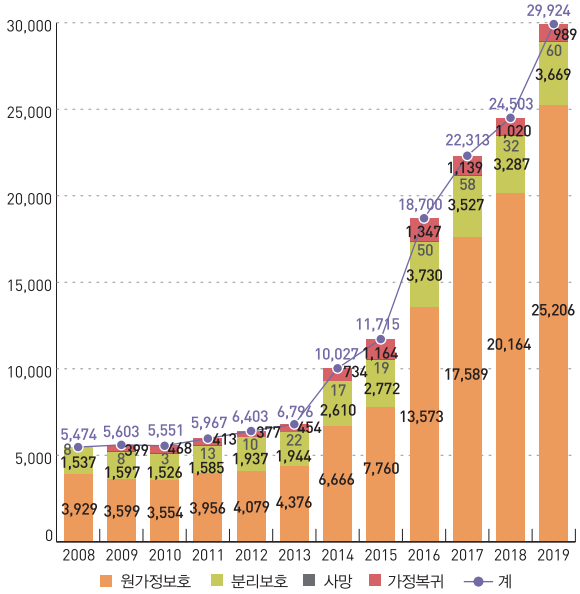
(단위: 건)



주: 1) 2018년 이후 통계에는 피해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함.
2) 기타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년 이후: 아동학대 주요통계

그림 2-16 피해 아동 최종조치 결과 (2008~2019)

(단위: 건)



주: 1) 최종조치란 당해 연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취해진 마지막 차수의 조치를 의미함.
2) 2018년 이후 통계에는 피해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함.
3) 기타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이전: 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8년 이후: 아동학대 주요통계

06
대 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Rate of School Violence

지표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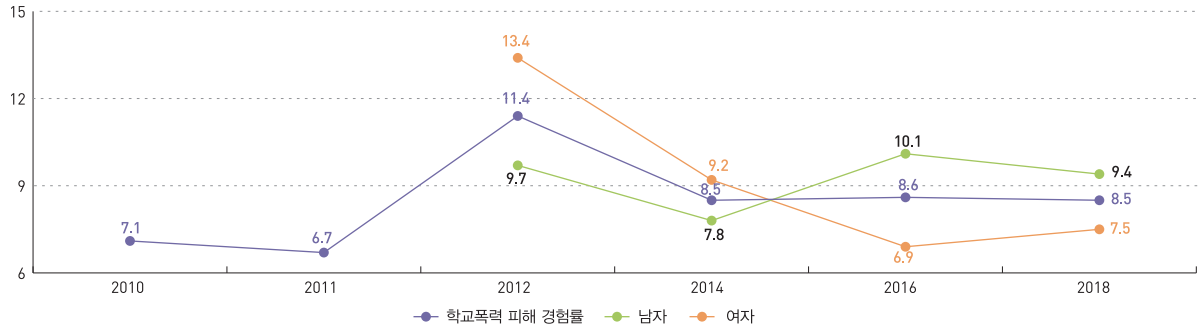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전국의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의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

유의사항 2014년까지 격년으로 각기 실시되던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는 조사 내용의 중복과 정책 활용도 측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2015년 통합이 결정되어, 2016년부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로 통합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에 각 통계표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그림 2-17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2016~2018)

표 2-6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이유

(단위: %)

연도	폭력 피해 경험률		폭력 피해를 당한 이유							
			계	특별한 이유 없다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	내가 잘못해서	외모나 장애 때문	성격 때문	금품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타
2010	전체	7.1	100.0	43.5	13.6	11.4	4.4	10.8	7.0	9.3
2011	전체	6.7	100.0	42.5	14.2	9.6	3.7	10.5	6.2	13.2
2012	전체	11.4	100.0	51.8	9.5	9.6	3.7	12.4	2.4	10.5
	남	9.7	100.0	54.1	16.1	7.0	2.3	7.7	2.7	10.2
	여	13.4	100.0	50.2	4.7	11.6	4.8	15.8	2.2	10.7
2014	전체	8.5	100.0	53.3	9.9	6.7	6.3	12.4	3.5	7.9
	남	7.8	100.0	47.4	14.4	8.7	7.1	10.8	5.2	6.4
	여	9.2	100.0	58.9	5.7	4.9	5.6	13.9	2.0	9.0

주: 기타는 모름 혹은 무응답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1999	2018	부정기

Checkpoint 2018년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청소년폭력 피해율은 8.5%로, 초등학생(9.9%) 〉 중학생(9.7%) 〉 고등학생(6.4%) 순으로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청소년폭력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피해율은 감소하였으나 사이버(인터넷)상의 폭력 피해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여자청소년과 중학생의 피해율이 2016년 대비 각각 1.2%p, 1.0%p 증가하였다.

표 2-7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

(단위: %)

구분	신체적 상처는 없었다	신체적 상처가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했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욕, 동영상 촬영을 억지로 당했다	기타
2010	34.9	19.6	33.7	6.3	0.6	4.1
2011	31.1	17.6	26.8	6.1	0.7	17.7

연도	구타	욕설, 폭언	돈, 금품 갈취	집단 따돌림
2012	28.1	56.2	29.6	38.2
2014	25.5	46.9	29.9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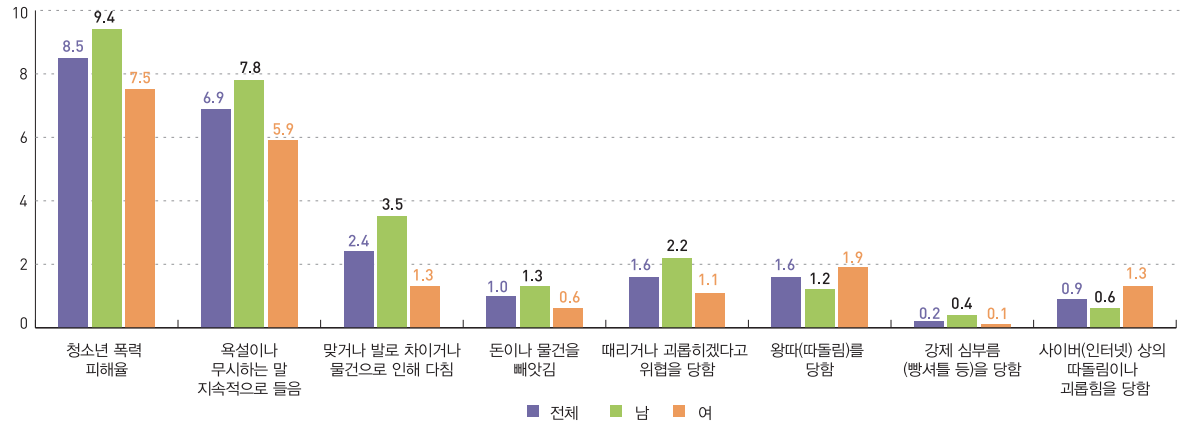
연도	사례 수(건)	청소년 폭력 피해율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지속적으로 들음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물건으로 인해 다침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때리거나 괴롭히겠다고 위협을 당함	왕따(따돌림)를 당함	강제 심부름(빵셔틀 등)을 당함	사이버(인터넷) 상의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함
2016	15,633	8.6	6.9	2.9	1.0	1.8	1.6	0.5	0.8
2018	15,629	8.5	6.9	2.4	1.0	1.6	1.6	0.2	0.9

주: 1) 제시된 7가지 유형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임.
2)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며, 복수응답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2016~2018)

그림 2-18 성별 학교폭력 피해유형 비율 (2018)

(단위: %)



주: 기타는 모름 혹은 무응답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2018)

표 2-8 연도별 · 피해 장소별 학교폭력 비율

(단위: %)

연도	학교교실 안	학교교실 외 교내공간	학교주변/ 공터/골목	동네 주변/ 골목/놀이터/ 주차장	상가, 지하도 안/ 학원 안/ 학원 건물 주변	시내유흥가/ 번화가	공원/야산 등	사이버 (인터넷 공간)	기타
2010	42.3	21.5	8.6	8.8	3.7	1.5	4.3	-	8.0
2011	38.3	12.3	8.3	10.5	2.1	1.9	4.1	-	22.3
2012	51.5	12.7	9.9	10.6	2.8	3.0	2.3	-	7.2
2014	46.4	13.3	10.6	9.0	3.8	2.5	2.5	-	11.7
2016	56.8	18.9	2.5	5.3	4.3	0.8	0.4	7.7	3.1
2018	51.6	19.7	2.2	4.7	5.3	0.6	0.5	10.7	4.6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2010~2014),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2016~2018)

07
대 표

아동 빈곤율
Child Poverty Rat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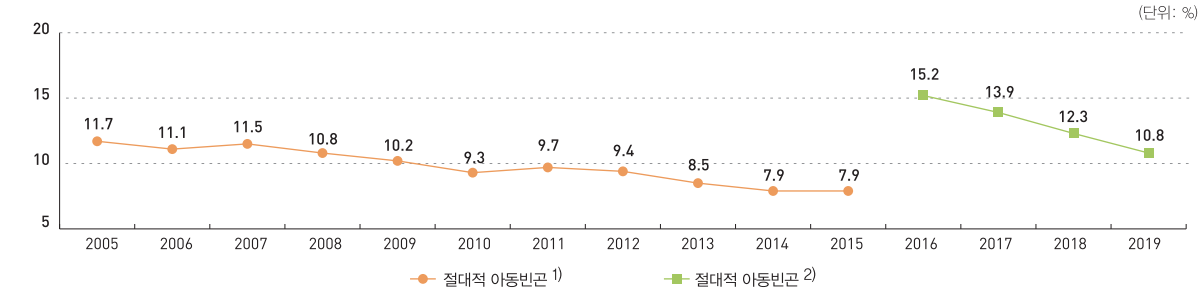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절대적 빈곤선(최저생계비) 미만인 아동(만 18세 미만)의 비율로 정의한다.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상대적 빈곤선(균등화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의 비율로 정의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아동 수}}{\text{전체 아동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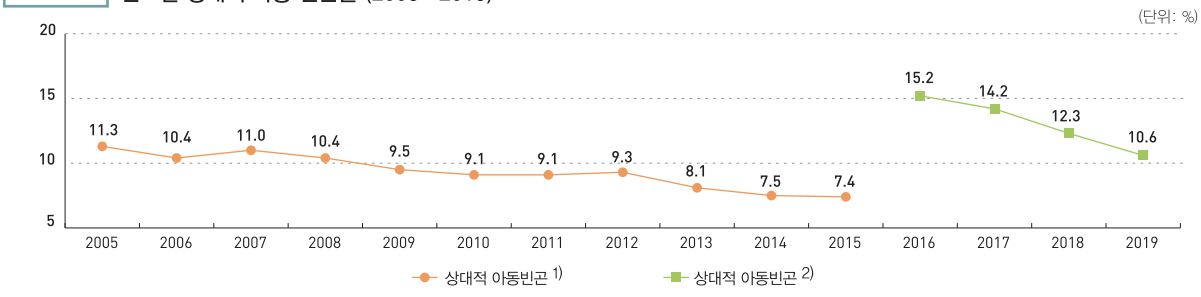
유의사항 절대적 아동 빈곤율 추정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 추정의 기준이 되는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OECD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 개편되어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소득통계와 지출통계가 분리되어 지출통계는 연간 주기로 작성 및 공표되며, 소득통계는 분기마다 작성 및 발표되어 각 통계표에서 제시하는 내용 중 일부가 연도별로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그림 2-19 연도별 절대적 아동 빈곤율 (2005~2019)



주: 1) 2015년 이전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농어가가구 제외, 1인 가구 제외 중위소득 50% 기준
2) 2016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농업 임업 및 어업가구 포함, 전 가구
3)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경상소득 중위소득 50% 기준임.
4) 2019년부터 기존 지표 산출에 활용했던 가계동향조사로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그림 2-20 연도별 상대적 아동 빈곤율 (2005~2019)



주: 1) 2015년 이전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농어가가구 제외, 1인 가구 제외 중위소득 50% 기준
2) 2016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농업 임업 및 어업가구 포함, 전 가구
3)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임.
4) 2019년부터 기존 지표 산출에 활용했던 가계동향조사로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19	분기, 1년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2019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10.8%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OECD 국가별 상대적 아동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2018년 OECD 평균은 12.7%이며, 우리나라는 12.3%로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아동 빈곤율이 중하위권에 속한다.

표 2-9 연도별 · 소득지출별 절대적 아동 빈곤율 (전 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2005~2016)

(단위: %)

연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5	8.3	5.9	7.2	9.0	4.7
2006	8.1	5.9	6.5	8.8	4.7
2007	8.2	5.9	6.7	8.5	5.4
2008	8.2	5.6	6.3	8.4	4.8
2009	8.3	4.9	5.9	9.8	5.3
2010	7.5	4.8	5.5	7.0	3.4
2011	7.1	4.3	5.2	6.5	3.2
2012	6.1	4.4	5.1	6.3	2.9
2013	5.3	3.6	4.2	7.8	3.3
2014	4.7	3.3	4.0	8.7	3.7
2015	5.0	3.6	4.5	9.6	3.9
2016	5.4	3.7	4.5	11.7	4.3

주: 1) 2015년 이전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중위소득 50% 기준
2) 2016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농업 임업 및 어업가구 포함, 전 가구
3) 절대적 아동 빈곤율은 경상소득 중위소득 50% 기준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표 2-10 연도별 · 소득지출별 상대적 아동 빈곤율 (전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출 50%,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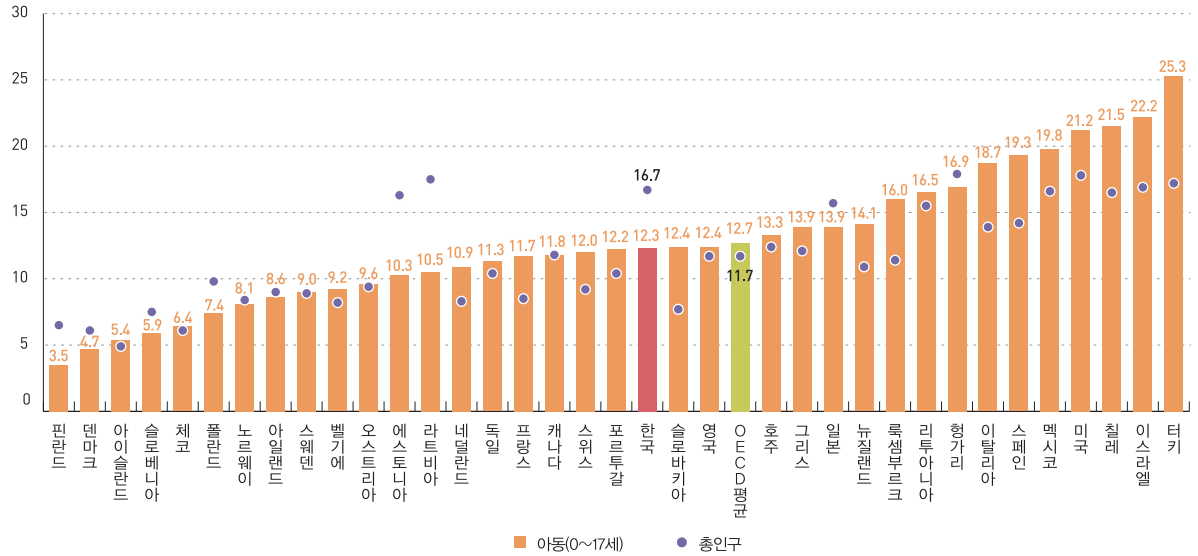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2005	13.0	11.7	11.3	4.1	5.7
2006	12.4	11.1	10.4	4.4	6.0
2007	12.9	11.5	11.0	4.7	6.8
2008	12.2	10.8	10.4	3.8	5.9
2009	12.4	10.2	9.5	4.0	5.3
2010	11.3	9.3	9.1	3.3	5.0
2011	11.1	9.7	9.1	3.2	5.0
2012	10.5	9.4	9.3	2.7	4.5
2013	9.1	8.5	8.1	2.6	4.2
2014	8.4	7.9	7.5	3.8	4.4
2015	8.7	7.9	7.4	3.3	4.8
2016	15.5	15.2	15.2	3.9	5.7
2017	14.5	13.9	14.2	4.1	5.5
2018	13.1	12.3	12.3	3.4	4.6
2019	12.1	10.8	10.6	2.9	4.4

주: 1) 2015년 이전 원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농어가가구 제외, 1인가구 제외 중위소득 50% 기준
2) 2016년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농업 임업 및 어업가구 포함, 전 가구
3) 상대적 아동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임.
4) 2019년부터 기존 지표 산출에 활용했던 가계동향조사로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및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그림 2-21 OECD 국가 가처분 소득 기준 상대적 아동 빈곤율 (2018)

(단위: %)



주: 뉴질랜드는 2014년도 수치이며 일본, 터키는 2015년도 수치, 네덜란드, 멕시코는 2016년도 수치,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칠레는 2017년도 수치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s://stats.oecd.org에서 2020.1.10. 추출)

07-1
연 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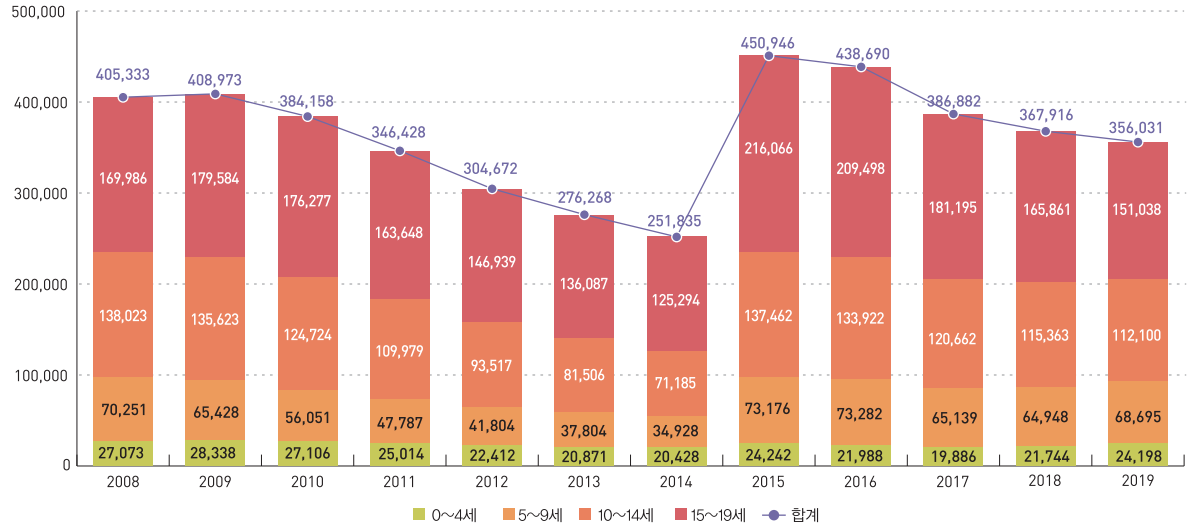
지표 정의

아동 ·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아동 · 청소년을 지칭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계층으로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를 수급한다.

그림 2-22 연령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수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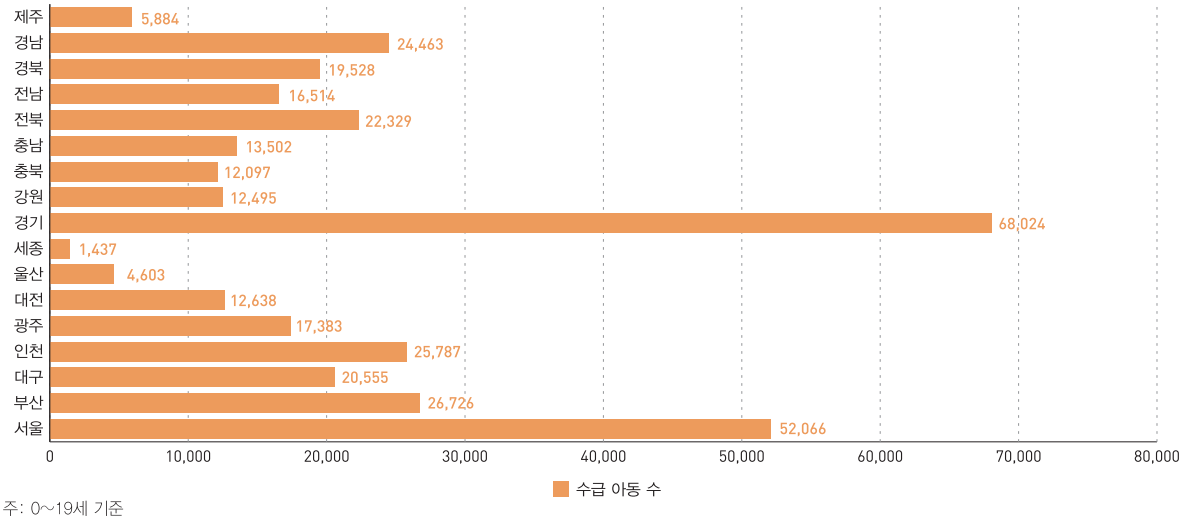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각 연도

그림 2-23 시도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수 (2019)

(단위: 명)



주: 0~19세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977	2019	1년

07-2
연 관

아동급식 지원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School M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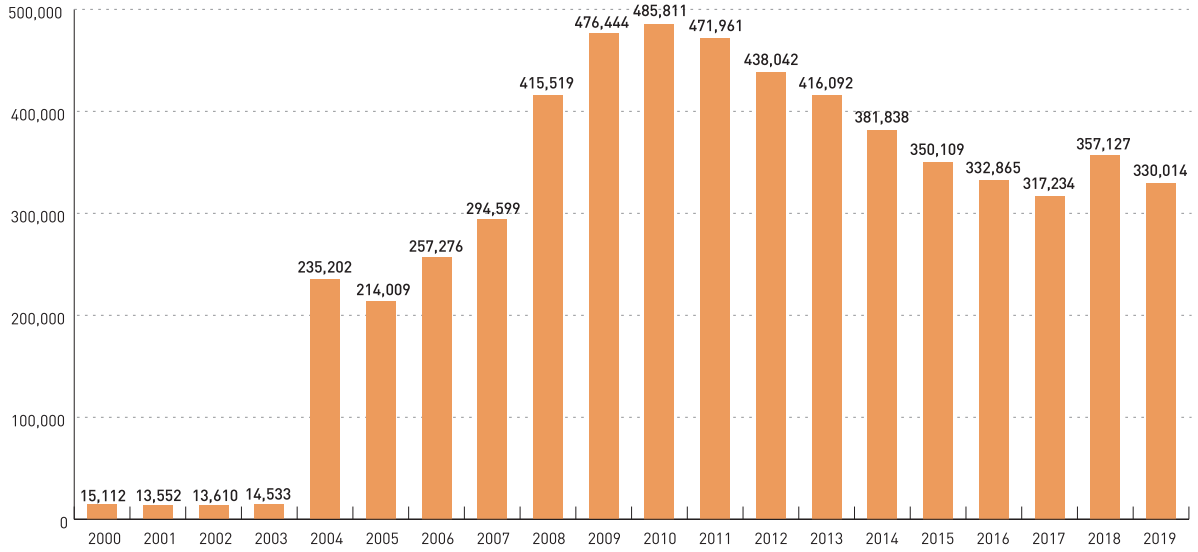
지표 정의

아동급식은 빈곤, 가족해체 등 여러 가지 가정 사유로 발생하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해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식품 등을 제공 · 지원한다.

-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한다.
-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지자체가 총괄하는 사업임.
- 지자체(시도/시군구) 제출자료를 취합한 자료임.

그림 2-24 아동급식 지원자 수 (2000~2019)

(단위: 명)



주: 매년 12월 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현황(지자체 제출자료), 각 연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07에서 2021.1.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급식 지원 현황	2000	2019	1년

08 대 표

나홀로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staying home alone

지표 정의

나홀로 아동이란 하루에 1시간 이상 혼자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끼리만 집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한다.

- 방과후 기관 이용 초등학생 중 나홀로 아동은 방과후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자녀 중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있는 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방과후 기관 이용 이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방치된 아동(초등학생 자녀)의 수**

표 2-11 가구 대표 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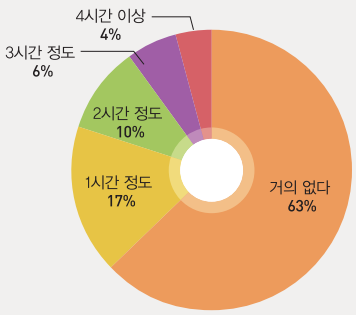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남성	528 (64.4)	133 (16.2)	93 (11.3)	47 (5.8)	19 (2.3)	820 (100.0)
여성	530 (61.7)	149 (17.4)	81 (9.4)	47 (5.4)	53 (6.1)	860 (100.0)
전체	1,059 (63.0)	282 (16.8)	174 (10.3)	94 (5.6)	71 (4.3)	1,68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그림 2-25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2015)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여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2005	2015	5년

Checkpoint

2차 가족실태조사에서 '보호자 없이 초등학생 자녀가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거의 없다'는 의견이 56.6%, 나머지 43.4%는 1시간~4시간 이상까지 혼자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 3차 조사(2015년)보다 방과후 성인의 보호 없이 방치되는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3차 조사의 경우 방과후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만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12 가구 대표 연령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단위: 천 명, %)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20세~30세 미만	3 (32.1)	3 (29.8)	0 (0.0)	4 (38.1)	0 (0.0)	11 (100.0)
30세~40세 미만	465 (69.5)	122 (18.1)	33 (4.9)	32 (4.8)	18 (2.7)	670 (100.0)
40세~50세 미만	510 (57.5)	141 (15.9)	134 (15.1)	53 (6.0)	49 (5.5)	887 (100.0)
50세~60세 미만	21 (41.8)	13 (24.7)	8 (14.8)	5 (10.3)	4 (8.5)	51 (100.0)
60세~70세 미만	41 (100.0)	0 (0.0)	0 (0.0)	0 (0.0)	0 (0.0)	41 (100.0)
70세 이상	17 (82.4)	4 (17.6)	0 (0.0)	0 (0.0)	0 (0.0)	21 (100.0)
전체	1,059 (63.0)	282 (16.8)	174 (10.3)	94 (5.6)	71 (4.3)	1,68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표 2-13 가구 구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일평균,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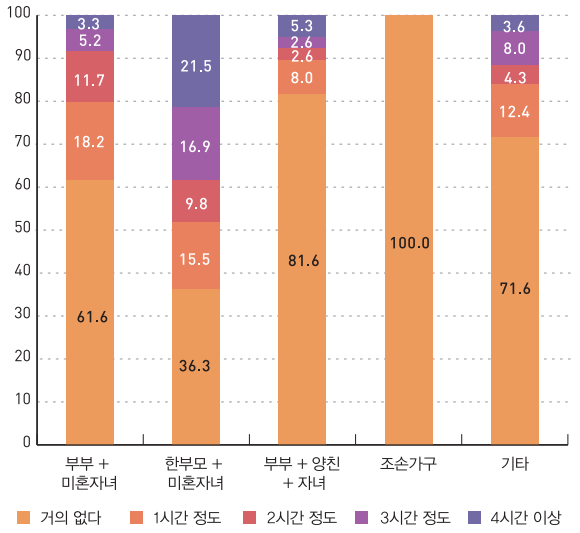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거의 없다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4시간 이상	전체
부부 + 미혼자녀	837 (61.6)	248 (18.2)	159 (11.7)	70 (5.2)	45 (3.3)	1,358 (100.0)
한부모 + 미혼자녀	27 (36.3)	11 (15.5)	7 (9.8)	12 (16.9)	16 (21.5)	73 (100.0)
부부 + 양친 + 자녀	113 (81.6)	11 (8.0)	4 (2.6)	4 (2.6)	7 (5.3)	139 (100.0)
조손가구	11 (100.0)	0 (0.0)	0 (0.0)	0 (0.0)	0 (0.0)	11 (100.0)
기타	71 (71.6)	12 (12.4)	4 (4.3)	8 (8.0)	4 (3.6)	99 (100.0)
전체	1,059 (63.0)	282 (16.8)	174 (10.3)	94 (5.6)	71 (4.3)	1,680 (100.0)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그림 2-26 가구 구성별 초등학생 자녀 방과후 혼자 있는 시간 (2015)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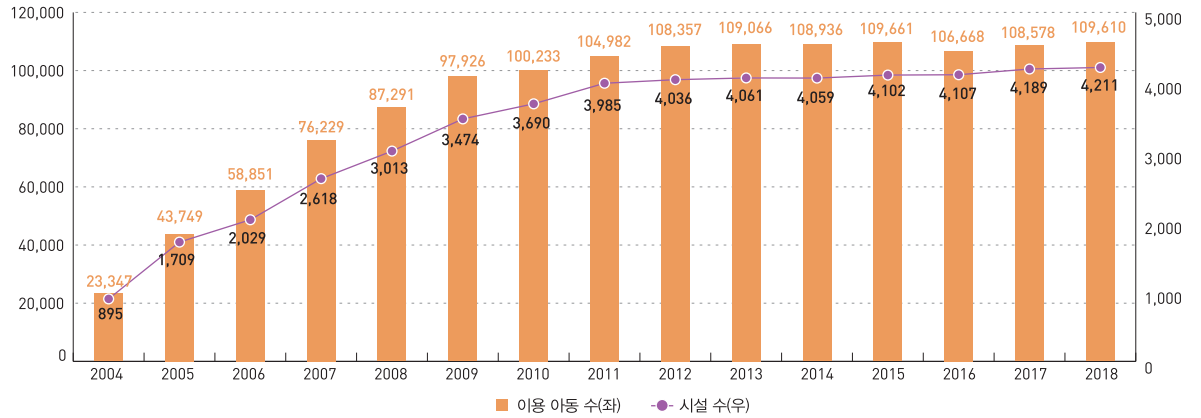
Number of uses of Community Child Centers

지표 정의

18세 미만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안에서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급식 등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그림 2-27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및 시설 수 (2004~2018)

(단위: 명, 개소)



자료: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4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004~2018)

(단위: 개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895	1,709	2,029	2,618	3,013	3,474	3,690	3,985	4,036	4,061	4,059	4,102	4,107	4,189	4,211
서울	104	157	210	262	302	354	367	395	404	405	409	414	414	450	454
부산	43	95	110	134	155	171	185	194	196	200	200	205	204	208	212
대구	21	28	35	60	75	115	147	171	177	188	191	200	199	198	200
인천	58	105	117	143	157	175	174	182	187	186	181	179	183	182	178
광주	39	80	92	143	164	201	218	272	278	285	292	300	301	306	308
대전	24	62	83	122	133	139	144	149	146	147	147	146	145	145	144
울산	17	33	41	49	51	54	52	56	57	58	56	56	55	54	56
세종	-	-	-	-	-	-	-	-	11	9	10	11	12	12	13
경기	192	336	402	534	601	656	679	722	735	728	751	757	763	783	789
강원	41	94	102	114	139	159	159	164	164	162	163	166	168	168	172
충북	56	102	118	137	156	176	185	201	202	199	190	188	184	185	184
충남	39	79	87	125	151	181	200	216	214	221	224	232	226	240	238
전북	59	130	147	173	212	255	267	286	288	287	281	281	286	285	285
전남	87	182	216	279	307	343	368	399	392	392	383	387	384	379	378
경북	34	91	108	143	164	206	232	252	256	261	257	259	258	267	271
경남	66	106	128	158	189	219	244	254	257	260	255	253	259	261	263
제주	15	29	33	42	57	70	69	72	72	73	69	68	66	66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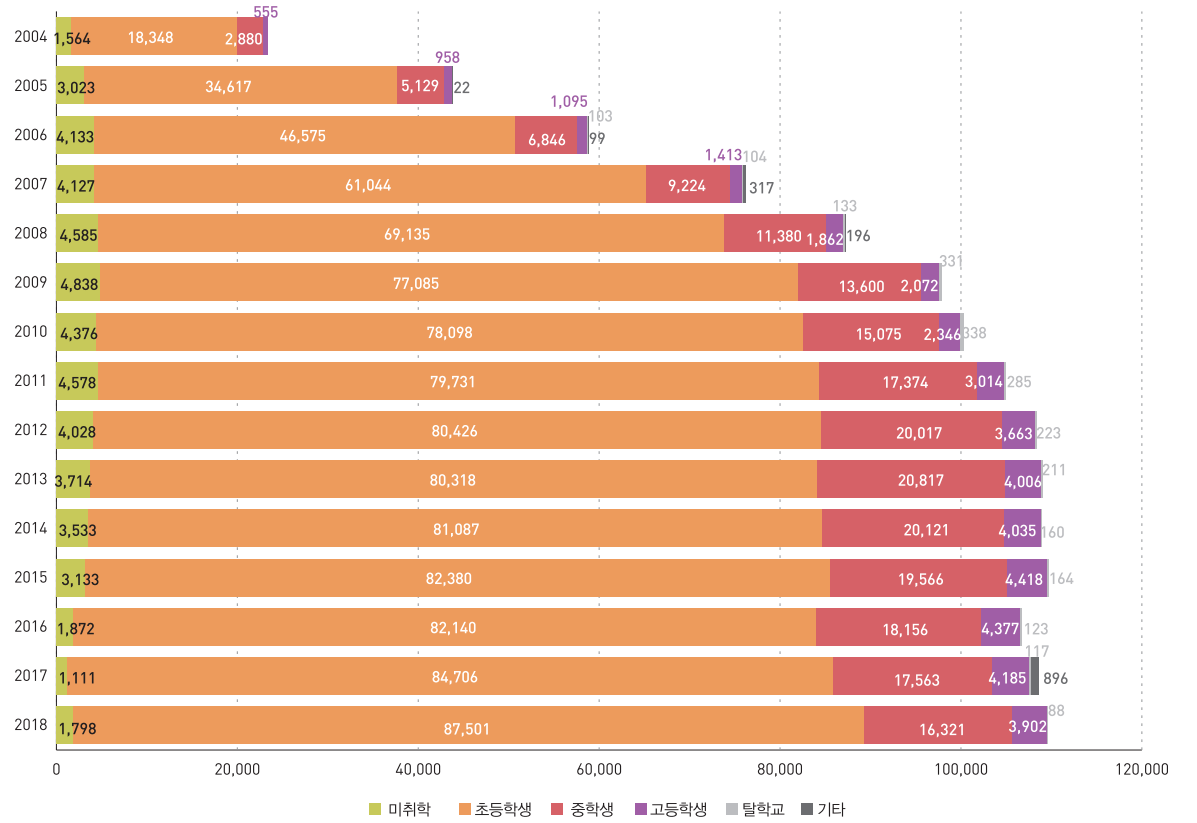
주: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2008	2018	1년

그림 2-28 학령별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4~2018)

(단위: 명)



주: 2018년 말 기준 분석 불가능 시설 73개소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5 학령별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 (2004~2018)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108,578	109,610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3,714	3,533	3,133	1,872	1,111	1,798
초등학생	18,348	34,617	46,575	61,044	69,135	77,085	78,098	79,731	80,426	80,318	81,087	82,380	82,140	84,706	87,501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20,817	20,121	19,566	18,156	17,563	16,321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4,006	4,035	4,418	4,377	4,185	3,902
탈학교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211	160	164	123	117	88
기타	-	22	99	317	196	-	-	-	-	-	-	-	-	896	-

주: 2018년 말 기준 분석 불가능 시설 73개소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각 연도

표 2-16 가정형태별 · 양육자 경제활동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018)

(단위: 명, %)

구분		이용 아동 수	비율	센터당 평균 아동 수
전체		109,568	100.0	26.5
양부모가정	소계	73,992	67.5	17.9
	맞벌이 가정	53,708	49.0	13.3
	아버지만 경제활동	15,563	14.2	5.1
	어머니만 경제활동	3,366	3.1	2.4
	경제활동 안함	1,355	1.2	2.0
모자가정	소계	18,579	16.9	5.0
	경제활동 함	15,798	14.4	4.4
	경제활동 안 함	2,781	2.5	2.2
부자가정	소계	12,769	11.7	3.7
	경제활동 함	11,573	10.6	3.4
	경제활동 안 함	1,196	1.1	1.8
조손가정	소계	3,162	2.9	1.9
	경제활동 함	1,530	1.4	1.7
	경제활동 안 함	1,632	1.5	1.7
소년소녀가장		193	0.2	1.6
기타(친척 및 시설)		873	0.8	2.1

주: 분석 불가능 시설 73개소 및 응답 오류 시설 3개소 제외됨.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 2019

09
대 표

요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Needing Protection

지표 정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시 · 군 · 구청에서 보고받아 사회적 보호를 하게 된 아동의 총합

표 2-17 발생 원인별 요보호 아동 수 및 비중 (2000~2019)

(단위:명, %)

연도	총 계	기아, 미아	미혼부모	비행, 가출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등
2000	9,085	1,422(15.7)	4,190 (46.1)	1,757 (19.3)	1,716 (18.9)	
2001	10,586	815 (7.7)	4,897 (46.3)	728 (6.9)	4,146 (39.2)	
2002	10,057	708 (7.0)	4,337 (43.1)	749 (7.4)	4,263 (42.4)	
2003	10,222	707 (6.9)	4,457 (43.6)	595 (5.8)	4,463 (43.7)	
2004	9,393	543 (5.8)	4,004 (42.6)	581 (6.2)	4,265 (45.4)	
2005	9,420	492 (5.2)	2,638 (28.0)	1,413 (15.0)	4,877 (51.8)	
2006	9,034	285 (3.2)	3,022 (33.5)	802 (8.9)	4,925 (54.5)	
2007	8,861	342 (3.9)	2,417 (27.3)	748 (8.4)	5,354 (60.4)	
2008	9,284	353 (3.8)	2,349 (25.3)	706 (7.6)	891 (9.6)	4,985 (53.7)
2009	9,028	257 (2.8)	3,070 (34.0)	707 (7.8)	1,051 (11.6)	3,943 (43.7)
2010	8,590	401 (4.7)	2,804 (32.6)	772 (9.0)	1,037 (12.1)	3,576 (41.6)
2011	7,483	299 (4.0)	2,515 (33.6)	741 (9.9)	1,125 (15.0)	2,803 (37.5)
2012	6,926	285 (4.1)	1,989 (28.7)	708 (10.2)	1,122 (16.2)	2,822 (40.7)
2013	6,020	306 (5.1)	1,534 (25.5)	512 (8.5)	1,117 (18.6)	2,551 (42.4)
2014	4,994	295 (5.9)	1,226 (24.5)	508 (10.2)	1,105 (22.1)	1,860 (37.2)
2015	4,503	347 (7.7)	930 (20.7)	360 (8.0)	1,094 (24.3)	1,772 (39.4)
2016	4,592	274 (6.0)	856 (18.6)	314 (6.8)	1,540 (33.5)	1,608 (35.0)
2017	4,121	273 (6.6)	850 (20.6)	229 (5.6)	1,437 (34.9)	1,332 (32.3)
2018	3,918	338 (8.6)	623 (15.9)	231 (5.9)	1,415 (36.1)	1,311 (31.8)
2019	4,047	245 (6.1)	464 (11.5)	473 (11.7)	1,484 (36.7)	1,381 (33.5)

주: 빈곤, 실직, 부모 이혼 등에는 빈곤, 실직, 부모이혼, 부모사망, 부모질병을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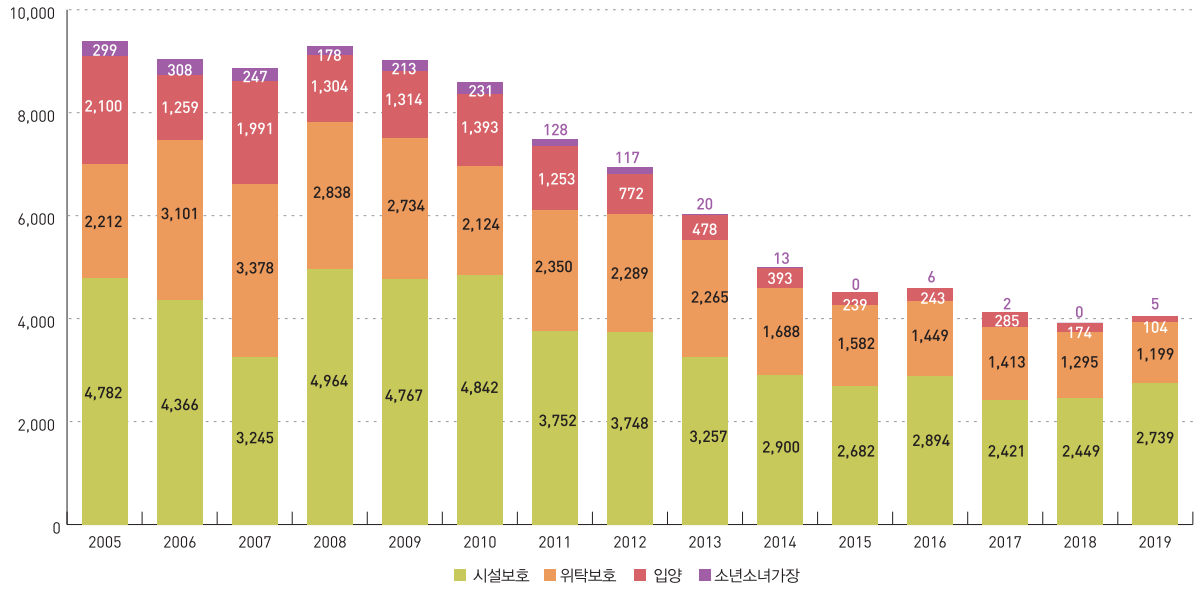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1994	2019	1년

Checkpoint 요보호 아동의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9년 요보호 아동의 수는 4,047명으로 전년 대비 129명이 증가하였다. 2019년 요보호아동의 발생 원인은 학대, 부모 이혼, 사망, 빈곤, 실직 등이 7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2000년 이후 주요한 발생 원인이 되었던 미혼부모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9년 11.5%를 차지하였다.

그림 2-29 요보호 아동 조치현황 (2005~2019)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내부자료), 2020

표 2-18 요보호 아동 조치현황 (2019)

(단위: 명, %)

전체	조치내용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시설 등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소계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 전 위탁
4,047 (100.0)	2,739 (67.7)	1,707 (42.2)	401 (9.9)	6 (0.1)	625 (15.4)	1,308 (32.3)	5 (0.1)	104 (2.6)	1,003 (24.8)	196 (4.8)

자료: 보건복지부, 요보호 아동 현황보고 (내부자료), 2020

09-1
연 관

아동복지시설 아동 수

Number of uses of Children Welfare Institutions

지표 정의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아동 수는 생활, 치료 및 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종합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표 2-19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수

(단위: 개소)

연도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78	223	10	-	-	-
1995	269	215	13	-	-	-
2000	269	235	12	6	8	-
2005	282	242	13	8	15	-
2006	282	243	13	8	15	-
2007	282	243	13	8	13	-
2008	285	242	12	10	14	5
2009	280	239	12	11	13	3
2010	280	238	12	11	14	3
2011	280	242	12	10	12	3
2012	281	243	12	11	12	3
2013	281	243	13	11	11	3
2014	278	242	12	10	11	3
2015	281	243	12	11	12	3
2016	281	243	12	11	12	3
2017	280	242	12	11	12	3
2018	279	241	12	11	12	3
2019	281	240	13	13	12	3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표 2-20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

(단위: 명)

연도	총계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종합시설
1990	23,450	20,147	471	-	-	-
1995	18,074	15,105	620	-	-	-
2000	17,720	16,293	222	460	387	-
2005	19,151	17,729	229	457	626	-
2006	18,817	17,517	235	436	554	-
2007	18,426	17,161	269	404	365	-
2008	17,992	16,706	257	477	341	142
2009	17,586	16,239	262	514	368	138
2010	17,119	15,787	235	495	402	131
2011	16,523	15,313	249	455	361	113
2012	15,916	14,700	256	497	335	128
2013	15,239	14,038	250	486	359	106
2014	14,630	13,437	252	481	336	124
2015	14,001	12,821	243	447	350	140
2016	13,689	12,448	230	485	356	170
2017	12,789	11,665	221	497	279	127
2018	12,193	11,100	227	447	272	147
2019	11,665	10,585	218	469	275	118

주: 1)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종합시설을 포함하며, 위 표에서 아동직업훈련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2) 종합시설은 일시보호시설과 아동상담소를 겸함.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1996	2019	반기

09-2
연 관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under Foster Care

지표 정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수는 보호대상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 수를 의미한다.

-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측정 산식

-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총합

표 2-21 위탁가정 유형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0~2019)

(단위: 세대, 명, %)

연도	구분	계	위탁가정 유형		
			대리양육 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일반 위탁가정
2010	세대 수	12,120 (100.0)	7,849 (64.8)	3,365 (27.8)	906 (7.5)
	아동 수	16,359 (100.0)	10,865 (66.4)	4,371 (26.7)	1,123 (6.9)
2011	세대 수	11,630 (100.0)	7,463 (64.2)	3,351 (28.8)	816 (7.0)
	아동 수	15,486(100.0)	10,205 (65.9)	4,260 (27.5)	1,021 (6.6)
2012	세대 수	11,030 (100.0)	7,230 (65.5)	3,037 (27.5)	763 (6.9)
	아동 수	14,502 (100.0)	9,732 (67.1)	3,831 (26.4)	939 (6.5)
2013	세대 수	11,169 (100.0)	7,294 (65.3)	3,086 (27.6)	789 (7.1)
	아동 수	14,596 (100.0)	9,776 (67.0)	3,843 (26.3)	977 (6.7)
2014	세대 수	11,077 (100.0)	7,162 (64.7)	3,089 (27.9)	826 (7.5)
	아동 수	14,385 (100.0)	9,550 (66.4)	3,816 (26.5)	1,019 (7.1)
2015	세대 수	10,706 (100.0)	6,944 (64.9)	2,927 (27.3)	835 (7.8)
	아동 수	13,728 (100.0)	9,127 (66.5)	3,556 (25.9)	1,045 (7.6)
2016	세대 수	10,197 (100.0)	6,642 (65.1)	2,773 (27.2)	782 (7.7)
	아동 수	12,896 (100.0)	8,578 (66.5)	3,348 (26.0)	970 (7.5)
2017	세대 수	9,575 (100.0)	6,207 (64.8)	2,605 (27.2)	763 (8.0)
	아동 수	11,983 (100.0)	7,950 (66.3)	3,100 (25.9)	933 (7.8)
2018	세대 수	8,955 (100.0)	5,831 (65.1)	2,357 (26.3)	767 (8.6)
	아동 수	11,141 (100.0)	7,426 (66.7)	2,801 (25.1)	914 (8.2)
2019	세대 수	8,359 (100.0)	5,442 (65.1)	2,167 (25.9)	750 (9.0)
	아동 수	10,384 (100.0)	6,905 (66.5)	2,572 (24.8)	907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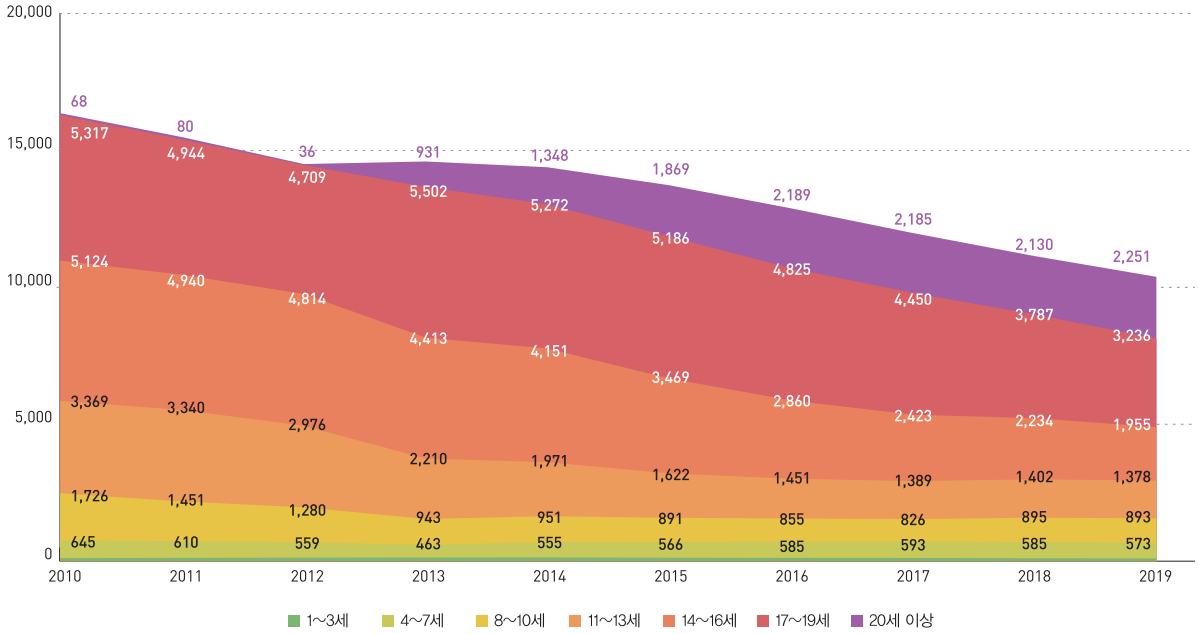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위탁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현황	2009	2019	1년

그림 2-30 연도별 ·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0~2019)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표 2-22 연도별 · 연령별 가정위탁보호 아동 현황 (2010~2019)

(단위: 명)

구분	계	보호 아동 연령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 이상
2010	16,359	110	645	1,726	3,369	5,124	5,317	68
2011	15,486	121	610	1,451	3,340	4,940	4,944	80
2012	14,502	128	559	1,280	2,976	4,814	4,709	36
2013	14,596	134	463	943	2,210	4,413	5,502	931
2014	14,385	137	555	951	1,971	4,151	5,272	1,348
2015	13,728	125	566	891	1,622	3,469	5,186	1,869
2016	12,896	121	585	855	1,451	2,860	4,825	2,189
2017	11,983	117	593	826	1,389	2,423	4,450	2,185
2018	11,141	108	585	895	1,402	2,234	3,787	2,130
2019	10,384	98	573	893	1,378	1,955	3,236	2,251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09-3
연 관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수

Number of Children in Grouphomes

지표 정의

아동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의미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측정 산식

-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총 수

표 2-23 아동공동생활가정 수 및 연령별 보호 아동 현황 (2009~2019)

(단위: 개소, 명)

연도	시설 수 (개소)	보호 아동 재학 유형						
		계	0~7세 (미취학)	8~13세 (초등)	14~16세 (중등)	17~19세 (고등)	20세 이상 (대재)	기타
2009	397	1,993	230	842	518	300	23	80
2010	416	2,127	195	894	543	388	42	65
2011	460	2,241	254	843	619	402	51	72
2012	489	2,438	291	848	682	481	50	86
2013	480	2,481	280	884	670	546	59	42
2014	476	2,588	300	878	661	640	79	30
2015	480	2,636	352	850	652	653	87	42
2016	510	2,758	428	878	701	613	101	37
2017	533	2,811	385	947	661	642	127	49
2018	558	2,872	355	998	678	665	129	47
2019	578	2,949	378	1,024	678	666	157	46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및 종사자 현황	1996	2019	반기

10
대 표

아동 · 가족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Family

지표 정의

OECD 기준 아동 · 가족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영육아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accom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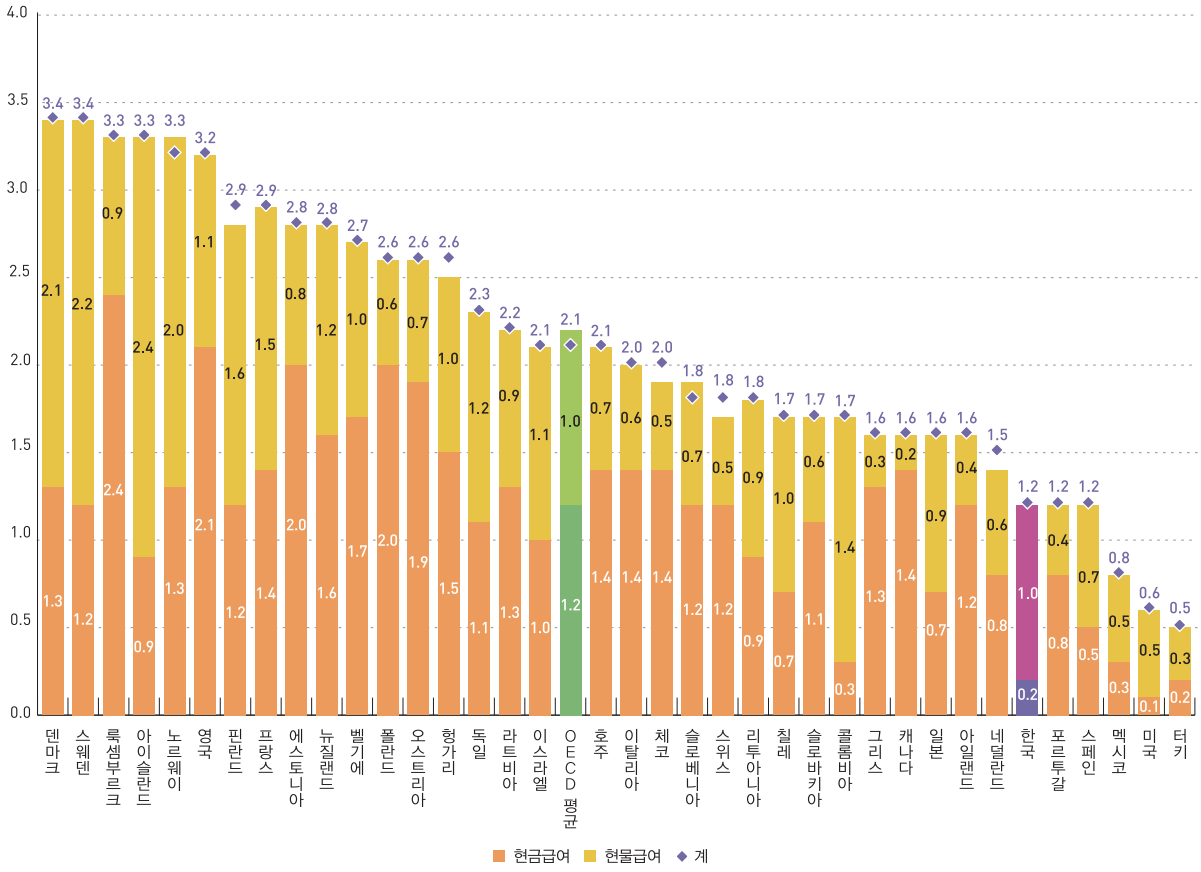
- OECD 기준 사회복지 지출에는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상별(노인, 장애인 및 아동가족 등) 및 영역별(보건,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등)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로 인한 지출 등이 포함된다.

측정 산식

-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출산전후 휴가(maternity and parental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 영육아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가사지원/시설지원(home help/ accomodation), 기타 현물지원(other benefits in kind)에 대한 지출의 총합**

그림 2-31 OECD 국가의 아동 ·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 (2017)

(단위: % of GDP)



주: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프랑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은 2018년도 자료임.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3.1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1990	2019 (확정치 '80~'15, 예측치 '16~'18)	2년

표 2-24 연도별 OECD 국가의 아동 · 가족에 대한 현금급여 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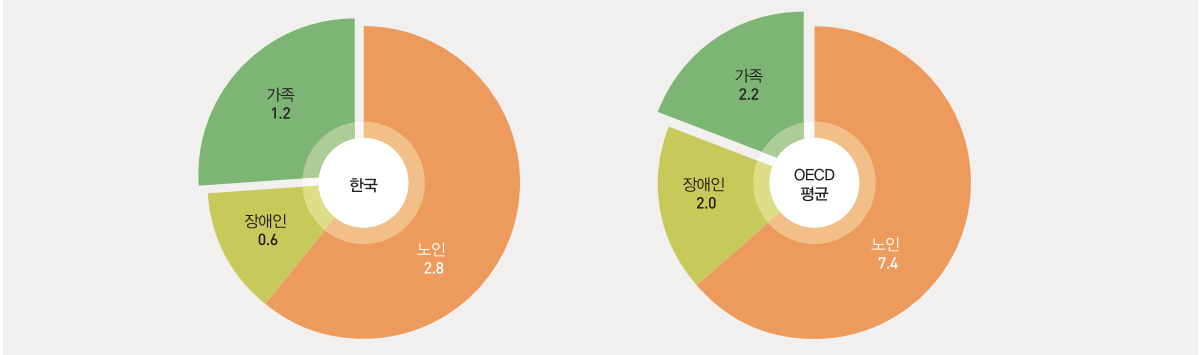
(단위: % of GDP)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호주	2.6	2.6	2.8	2.7	2.7	2.7	2.4	2.1		
오스트리아	3.0	2.7	2.6	2.6	2.6	2.6	2.6	2.6		
벨기에	2.8	2.9	2.8	2.8	2.9	2.8	2.8	2.7		
캐나다	1.3	1.2	1.2	1.2	1.2	1.6	1.7	1.7	1.6	
칠레	1.5	1.3	1.4	1.4	1.5	1.7	1.8	1.8	1.7	1.7
콜롬비아	1.4	1.2	1.5	1.7	1.8	2.0	1.8	1.7	1.7	
코스타리카		0.6	0.5	0.6	0.6	0.7	0.7	0.7	0.6	
체코	2.4	2.2	2.2	2.2	2.1	2.0	2.0	2.0		
덴마크	3.9	3.9	3.8	3.7	3.6	3.5	3.5	3.4		
에스토니아	2.5	2.2	2.0	1.9	2.3	2.8	2.9	2.8		
핀란드	3.1	3.1	3.2	3.2	3.2	3.1	3.0	2.9		
프랑스	2.9	2.9	2.9	3.0	3.0	2.9	2.9	2.9	2.9	
독일	2.2	2.1	2.2	2.2	2.2	2.2	2.3	2.3		
그리스	1.0	1.0	1.2	1.3	1.4	1.3	1.3	1.6		
헝가리	3.4	3.2	3.1	3.0	2.9	2.8	2.8	2.7	2.6	
아이슬란드	3.5	3.3	3.4	3.4	3.5	3.3	3.2	3.3		
아일랜드	3.0	2.8	2.7	2.5	2.3	1.7	1.6	1.6		
이스라엘	2.0	1.9	2.0	2.0	1.8	1.8	1.9	2.3	2.1	2.1
이탈리아	1.4	1.3	1.4	1.4	1.8	2.0	1.9	2.0		
일본	1.1	1.2	1.1	1.1	1.2	1.4	1.5	1.6		
한국	0.7	0.7	0.8	1.1	1.1	1.1	1.1	1.1	1.2	
라트비아	2.1	1.7	1.6	1.8	1.9	2.2	2.2	2.2		
리투아니아	2.9	2.4	2.0	1.7	1.7	1.8	1.7	1.8		
룩셈부르크	3.9	3.5	3.6	3.6	3.5	3.4	3.2	3.3		
멕시코	1.0	1.0	1.0	1.0	1.0	1.0	1.0	0.9	0.8	0.6
네덜란드	1.5	1.5	1.4	1.3	1.3	1.4	1.5	1.5		
뉴질랜드	3.4	3.3	3.2	2.8	2.7	2.6	2.5	2.5	2.8	
노르웨이	3.1	3.1	3.0	3.1	3.2	3.3	3.4	3.2		
폴란드	1.3	1.3	1.3	1.4	1.4	1.5	2.5	2.6		
포르투갈	1.4	1.2	1.2	1.2	1.2	1.2	1.2	1.2		
슬로바키아	1.6	1.6	1.7	1.7	1.7	1.6	1.6	1.7		
슬로베니아	2.1	2.1	2.1	1.9	1.8	1.8	1.7	1.8		
스페인	1.4	1.3	1.3	1.3	1.3	1.2	1.2	1.2		
스웨덴	3.4	3.4	3.5	3.6	3.5	3.5	3.5	3.4		
스위스	1.5	1.5	1.6	1.6	1.6	1.8	1.8	1.8	1.8	
터키	0.3	0.3	0.4	0.4	0.4	0.4	0.5	0.5		
영국	3.9	3.9	3.9	3.7	3.5	3.4	3.3	3.2		
미국	0.7	0.7	0.7	0.7	0.6	0.6	0.6	0.6	0.6	
OECD 평균	2.2	2.1	2.1	2.1	2.1	2.1	2.1	2.1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3.11. 인출)

그림 2-32 아동 · 가족복지 지출 (2018)

(단위: % of GDP)



주: OECD 평균은 2017년도 자료임.

자료: OECD.Stat,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3.11. 인출)

3

청년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청년고용률
02 청년 비정규직 비율
03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04 청년 니트(NEET) 비율
05 청년 상대적 빈곤율
06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07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08 청년 우울감 경험률
09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10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3 청년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청년의 고용과 경제활동	청년고용률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청년 비정규직 비율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청년 니트(NEET) 비율	
청년의 삶의 질	청년 상대적 빈곤율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청년 우울감 경험률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Highlight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년이 정부 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인해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청년의 삶에 관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 사회보장 통계 지표 중 고용지표를 제외한 대부분 지표가 2020년의 상황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청년의 다차원적 삶의 수준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변화를 전망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던 청년 고용률은 2020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15~29세 고용률은 2019년 43.5%에서 2020년 42.2%로 1.3%p 감소하였는데,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0.8%p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큰 변화이다. 20대와 30대의 고용률 변화를 확인한 결과, 20대의 고용률 감소가 더 뚜렷했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충격이 학교를 졸업하고 첫 일자리를 구하는 연령대인 20대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2009년 74%에서 2019년 76%로 소폭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85%보다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이수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64%에서 2019년 72%로 8%p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OECD 국가의 여성 고등교육 이수자 고용률 평균 81%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에 더해 남성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84%에서 81%로 감소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 감소를 고려할 때 2020년 고등교육 이수 청년의 고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20년 39.9%로 증가하였다. 30대보다 10대와 20대에서의 비정규직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청년의 고용불안정 수준이 더 커졌음을 보여준다.

18세~25세, 20대와 30대 청년의 빈곤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구소득을 이용해 빈곤율을 산정할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빈곤 위험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19년 9.0%로 소폭 감소했으나, 전체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5.3%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가구는 모든 기준(면적, 시설, 침실)에서 미달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1.3%로 수도권 외 지역(6.3%)보다 높았다.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도 악화되고 있다. 19~29세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05년 12.4%에서 2019년 13.0%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우울감 경험률 7.4%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코로나블루를 고려하면 청년의 정신건강 수준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0년 시행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연령을 만 19~34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이 가진 '이행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연령 기준의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 사회지표 대부분은 만 19~34세라는 법적 청년 연령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 여기서는 청년기본법과 기존 지표와의 연결성을 고려하기 위해 기존 지표에서 정의하는 연령별(고용의 경우 15~29세, 빈곤 18~25세, 주거 20~39세) 값을 제시하고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 19~34세가 포함된 20~30대의 값을 함께 분석하였다. '제1차 청년기본계획(2020-2025)'에 청년지표 개발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므로 향후 사회보장 통계에서도 청년의 삶을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1
대 표

청년고용률

Youth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청년고용률은 15~29세 청년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정의한다.

- 취업자는 ①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명자료 발췌).

  청년의 경제활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로는 실업률, 고용률, 고용보조지표 등이 있는데, 이 중 고용률은 청년의 고용성과를 직접 보여주는 지표로 청년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

측정 산식

- $\dfrac{\text{취업 중인 15~29세 인구수}}{\text{전체 15~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통계기준을 개정(2013년 10월)함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 범위가 '1시간 무급가족종사자'로 확장되었으나, 공식 취업자 · 고용률 등은 현행(18시간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기준)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거 시계열도 소급보정된다. 인구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년 7월~2018년 12월(18년 6개월간)간의 소급보정된 모수추정용 인구를 적용하여 새로운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공표자료(KOSIS,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재작성하여 서비스하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1 청년 연령대별 고용률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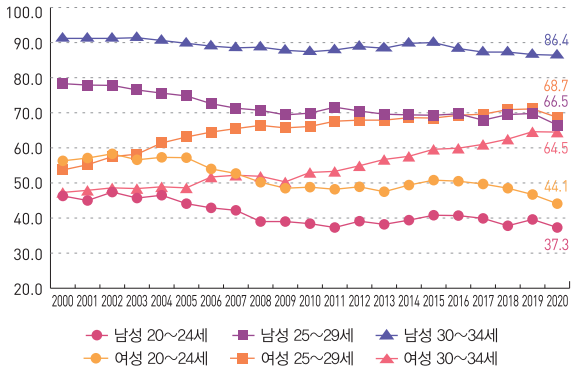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세 이상 전체	58.9	59.3	59.6	59.8	60.5	60.5	60.6	60.8	60.7	60.9	60.1
15~29세	40.4	40.4	40.3	39.5	40.5	41.2	41.7	42.1	42.7	43.5	42.2
20~24세	44.4	43.3	44.5	43.3	44.8	46.1	46.1	45.3	43.7	43.5	41.1
25~29세	68.1	69.6	69.2	68.8	69.0	68.9	69.5	68.7	70.2	70.4	67.6
30~34세	70.7	71.0	72.3	72.9	74.2	75.3	74.7	74.7	75.4	76.1	76.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2.1. 인출)

그림 3-1 성별 청년 연령대별 고용률 (2000~2020)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2.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0	1개월

Checkpoint OECD 국제기준의 청년 연령인 15~29세 고용률은 2010년 40.4%에서 2013년 39.5%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0% 이상을 유지하였다. 2019년 43.5%에서 2020년 42.2%로 1.3%p 감소하였는데,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0.8%p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19~34세의 고용률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어, 정책 대상으로서 청년의 고용률을 확인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20대와 30~34세 청년의 고용률을 확인한 결과, 2020년 20대의 고용률은 2019년보다 감소하였고, 30~34세 고용률은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주로 20대 청년에 집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Employment rates of 25~34 year-olds with tertiary education

지표 정의

25~34세 고등교육(대학) 졸업자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한다.

- 2019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연령별 인구수)은 50.0%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대학졸업 청년의 고용률은 높은 인적자본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정규 교육과정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예상되는 25~34세 청년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을 보여준다. 고등교육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이 포함되고, 사이버 · 원격 · 방송통신대학은 제외된다.**

- $\frac{\text{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 중 취업자 수}}{\text{25~34세 고등교육 이수자}} \times 100$

표 3-2 OECD 국가 25~34세 대학졸업자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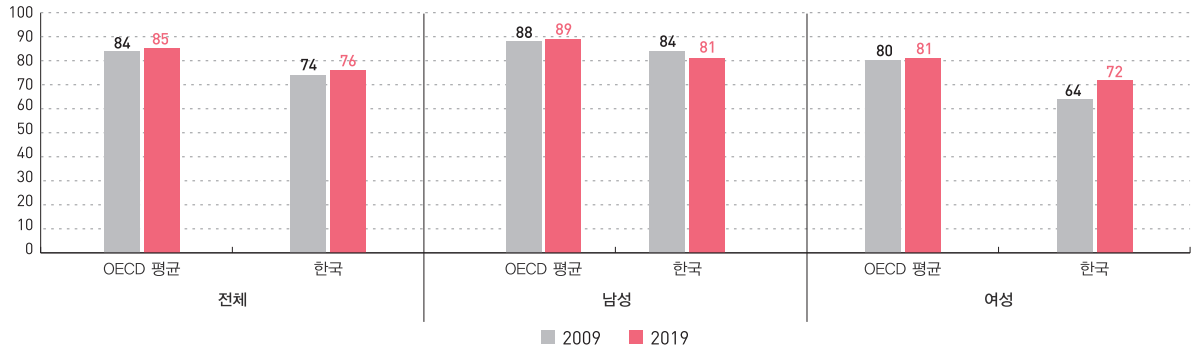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한국
2009	84	74	88	84	80	64
2019	85	76	89	81	81	72

자료: OECD/ILO, See Source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and Annex 3 for note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last updated 2020.8.31.)

그림 3-2 OECD 국가 25~34세 대학졸업자 고용률

(단위: %)



자료: OECD/ILO, See Source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and Annex 3 for note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last updated 2020.8.3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대학 졸업 청년고용률	-	2019	비정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2019	월

Checkpoint

25~34세 청년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2009년 74%에서 2019년 76%로 소폭 상승했으나, OECD 평균인 85%보다 9%p 낮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이수 여성의 고용률은 2009년 64%에서 2019년 72%로 8%p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OECD 국가의 여성 고등교육 이수자 고용률 평균 81%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는 성평등 정책 확충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청년 여성들이 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 고등교육 이수자의 고용률은 84%에서 81%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높은 교육수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대학 졸업 이상 고학력 청년에게 맞는 대졸자 이상 일자리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의 연기, 취소를 고려할 때 2020년에는 고등교육 이수 청년의 고용률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02 대 표

청년 비정규직 비율

Rate of irregular workers among ages 15~29 workers

지표 정의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15세~29세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비정규직은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①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며, ②시간제 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③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가 포함된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설명자료 발췌).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회초년생인 청년 중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년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15~29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text{15~29세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9년 자료에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 전년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2018년 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한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결과이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규모 및 비중 (2013~2020)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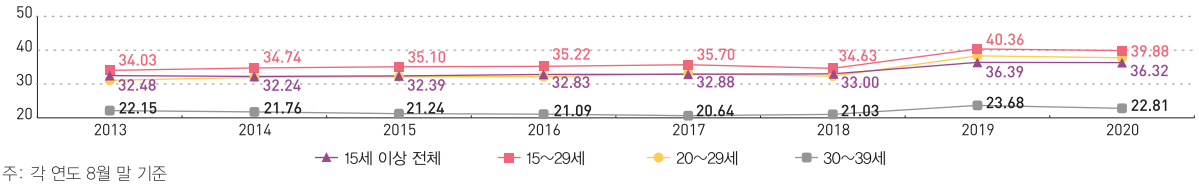
연령대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근로자 수	비중
15세 이상 전체	5,977	32.48	6,123	32.24	6,308	32.39	6,481	32.83	6,578	32.88	6,614	33.00	7,481	36.39	7,426	36.32
15~29세	1,182	34.03	1,253	34.74	1,288	35.10	1,309	35.22	1,336	35.70	1,275	34.63	1,513	40.36	1,421	39.88
15~19세	175	74.79	184	69.96	191	74.32	197	75.19	179	73.36	151	74.02	151	77.84	138	84.15
20~29세	1,007	31.09	1,069	31.97	1,097	32.14	1,112	32.19	1,157	33.08	1,124	32.32	1,362	38.31	1,283	37.75
30~39세	1,081	22.15	1,060	21.76	1,028	21.24	1,000	21.09	981	20.64	992	21.03	1,111	23.68	1,022	22.81

주: 1) 각 연도 8월 말 기준
2) 2019년 자료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비교가 불가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8. 인출)

그림 3-3 청년 및 전체 연령 비정규직 비율 (2013~2020)

(단위: %)



주: 각 연도 8월 말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7	2020	연 2회(3월, 8월)

Checkpoint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13년 34.0%에서 2020년 39.9%로 증가하였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 36.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30대보다 10대와 20대에서의 비정규직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39.9%로 2019년(40.4%)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2020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 10명 중 4명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임시·일용직 취약 근로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 한편,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등 고용형태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03
대 표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

Employment insurance coverage rate among ages 15~29 workers

지표 정의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 고용보험은 1993년 제정,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장기실직,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년 고용보험 가입률은 생애주기상 실직과 출산, 육아를 경험하는 청년 중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15~29세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수}}{\text{15~29세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변경한 것이다. 지역고용조사는 반기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사회보험 가입률은 2014년부터 상반기(4월)에 조사한 값이다(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4 연령대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4~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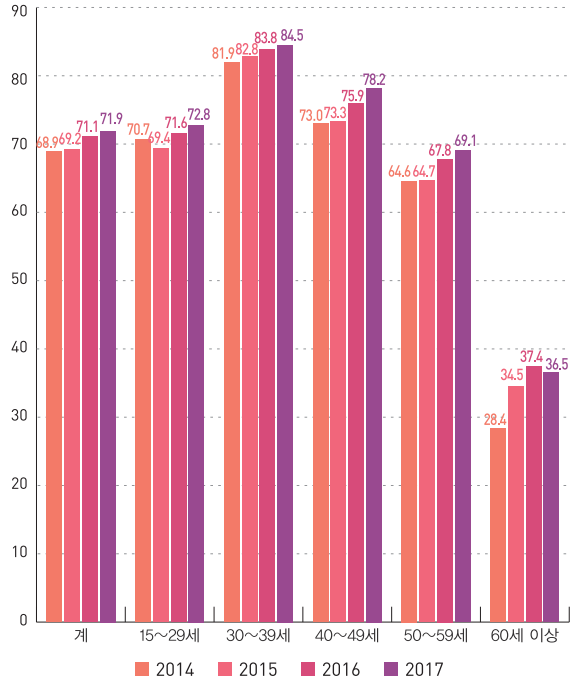
구분	연령별	2014	2015	2016	2017
국민연금	계	69.1	68.9	70.3	69.6
	15~29세	70.5	69.1	71.3	72.5
	30~39세	82.8	83.3	84.2	85.1
	40~49세	74.3	74.6	76.9	79.4
	50~59세	66.3	66.3	69.1	70.4
	60세 이상	18.4	21.1	21.6	7.6
건강보험	계	72.1	72.0	73.6	74.8
	15~29세	71.3	70.8	72.2	73.6
	30~39세	83.2	83.8	84.8	85.8
	40~49세	74.7	74.8	77.2	79.9
	50~59세	67.3	67.5	69.8	71.2
	60세 이상	45.1	46.1	48.2	48.3
고용보험	계	68.9	69.2	71.1	71.9
	15~29세	70.7	69.4	71.6	72.8
	30~39세	81.9	82.8	83.8	84.5
	40~49세	73.0	73.3	75.9	78.2
	50~59세	64.6	64.7	67.8	69.1
	60세 이상	28.4	34.5	37.4	36.5

주: 1) 임금근로자 대상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3) 국민연금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등 특수직연금 포함
4)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만 집계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수급권자, 피부양자는 제외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1.29. 인출)

그림 3-4 연령대별 고용보험 가입률 (2014~2017)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08	2017	반기

* 사회보험가입률은 2014년~2017년까지 1년 주기 작성

Checkpoint

15~29세 청년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4년 70.7%에서 2017년 71.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핵심 근로집단인 30대(84.5%), 40대(78.2%)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밑돈다. 이는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신규취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진 것을 반영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교육수준 등)의 심화가 사회보장 권리의 이중화(Dualization)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 자료는 2021년 공개 예정이므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등 정부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2021년 사회보장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04
대 표

청년 니트(NEET) 비율

Share of 15~29s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s)

지표 정의

청년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비율은 15~29세 청년 중 교육, 훈련을 받지도 않고, 일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중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OECD 기준을 따라 형식교육을 받지 않고 취업상태가 아닌 경우 니트로 정의하였다.

- 생애주기에 있어서 청년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School-to-Work Transition) 과정을 경험하는데, 청년 니트 비율은 성인기 주요 과업(교육, 취업, 원가구로부터 독립(주거), 가족의 형성(결혼), 자녀양육) 중 성인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결정하는 핵심 과업인 교육과 취업에서 벗어난 유휴청년의 규모를 보여준다. 청년 니트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새로운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니트 비율은 기존 사회안전망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교육, 직업훈련, 취업 상태가 아닌 15~29세 인구수}}{\text{15~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청년 니트는 합의된 정의가 없는데, OECD는 고등학교(중등교육, secondary education)를 졸업한 후 대학이 아닌 기관에서 자격 등을 획득하는 형식교육*(formal education, post-secondary non-teritiary education) 중인 청년과 취업상태인 청년을 니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면 공공기관 채용시험(행정고시, 공무원, 공기업 등), 기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에 통학하는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중인 청년이 니트에 포함된다. 김기헌(2017)이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형식교육 중인 청년을 제외하였을 때,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15세~29세 청년 니트 비율은 16.6%로 OECD 정의를 적용한 청년 니트 비율(19.2%)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청년 니트의 정의를 마련하여,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 니트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김기헌, 2017).

* 형식교육 :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 비형식교육 : 비형식교육이란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을 말한다. 형식교육과 동일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화된 교수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가의 '학력.학위'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이다. 공식적인 학위나 졸업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강좌 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지속적인 스터디 클럽, 개인과외 형태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는 학습을 말하며, 직장에서 받은 교육, 학원수강, 주민자치센터나 백화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영농교육, TV강좌, 인터넷 강좌, 학습동아리, 개인 교습 등을 포함한다(교육통계서비스 용어사전 발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Society at a glance (국가별 교육통계, 노동력통계)	-	2017	비정기적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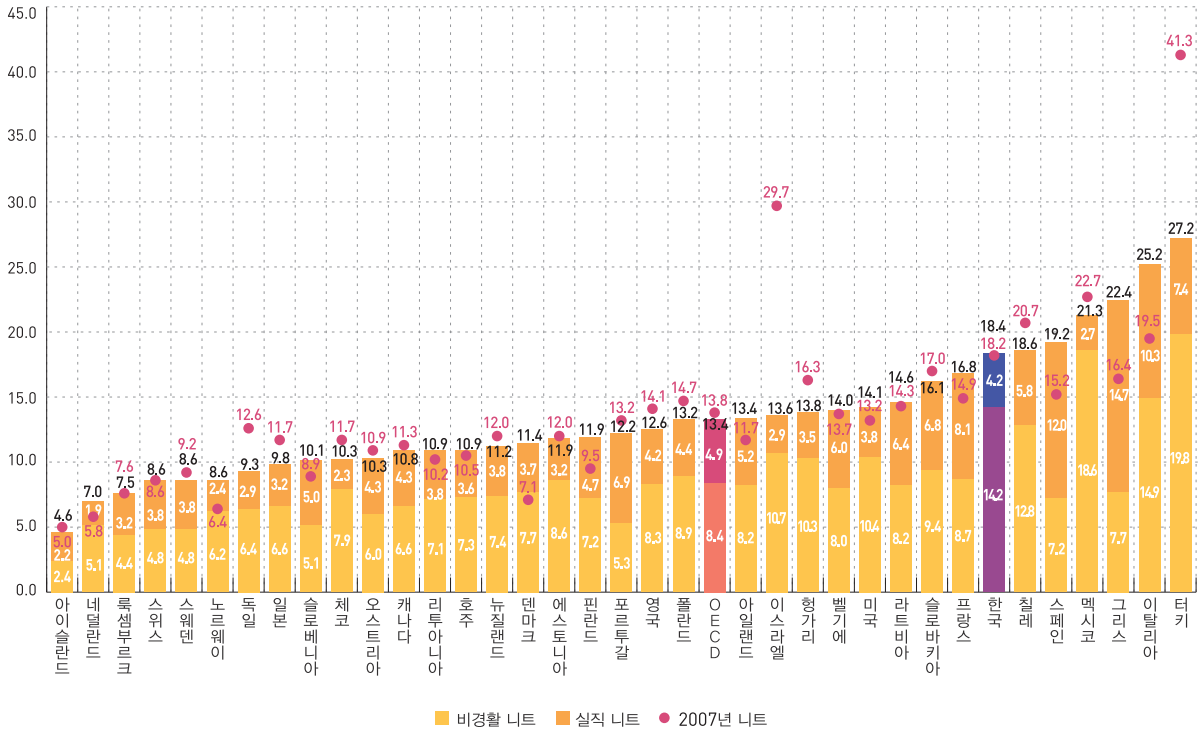
OECD 기준 정의(비형식교육에 참여 중인 청년도 니트에 포함됨)를 적용한 한국의 청년 니트 비율은 2007년 18.2%에서 2017년 18.4%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청년 니트 비율이 2007년 13.8%에서 2017년 13.4%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한국의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은 14.2%로 OECD 국가 평균 8.4%보다 5.8%p 높은 수준이다. 청년 니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청년 니트의 특수성과 내적 이질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9년 니트 비율은 2021년 공개 예정이므로 최근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취업청년의 증가를 고려할 때 니트 비율의 증가 추이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헌(2017). 한국 청년 니트(NEET)의 정의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KLI 패널 워킹페이퍼. 2017년 제8호.
-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그림 3-5 OECD 국가별 청년 니트 비율 (2007, 2017)

(단위: %)



주: 1) 일본의 비경활 니트, 실직니트는 2014년 자료
2) 미국의 비경활 니트, 실직니트는 2016년 자료
3) 스페인의 2007년 니트는 2006년 자료

자료: OECD, Society at a Glance 2019, 〈Figure 5.5.〉 More than one in seven young people are not employed nor in education or training 발췌
(원자료: National labour force surveys, the OECD Education database, www.oecd.org/education/database.htm)

05
대 표

청년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 빈곤율은 18세~25세 청년 중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청년 비율을 의미한다.**

- 빈곤 여부를 결정하는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있는데, 여기서는 OECD의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빈곤선으로 적용하였다.

  전통적으로 청년은 근로 연령대에 속해 기초생활보장의 주된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최근 청년이 경험하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위험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빈곤 위험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청년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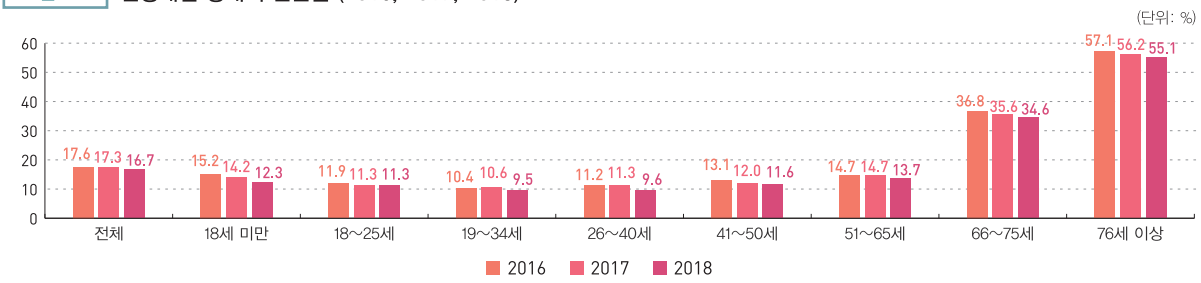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인 18~25세 인구수}}{\text{18~25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6년부터 빈곤과 불평등 지표를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 공표함에 따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빈곤율을 산출한 빈곤통계연보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OECD는 고용률 산정 시 청년 연령을 15~29세로,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산정 시 청년 연령은 18~25세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OECD의 상대적 빈곤율 산정 방식에 따른 청년 연령과 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인 19~34세를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그림 3-6 연령대별 상대적 빈곤율 (2016, 2017, 2018)



주: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개인 빈곤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각 연도 (원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18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6	2018	1년

Checkpoint 18~25세 청년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11.9%에서 2018년 11.3%로 0.7%p 감소하였다. 19~34세 청년 빈곤율은 10.4%에서 9.5%로 감소하였다. 이는 66~75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감소폭보다 낮은 수준의 변화이다(2016년 36.8%에서 2018년 34.6%로 감소). 청년 빈곤율은 노인 빈곤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다른 연령대 빈곤율이 감소하는 기울기보다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부모가구에서 독립해야 하는 성인이행기 청년의 빈곤 위험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청년 빈곤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 (2020). 2019년 빈곤통계연보.

*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시장소득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 – 조세 – 사회보장분담금

**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

06 대 표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

Youth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지표 정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20세~34세 청년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방 수, 면적, 시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은 가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 최저주거기준이란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하며, 주택법 제5조의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 및 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방 수 기준, 면적 기준, 시설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분류한다(이태진 외, 2016, p.149).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비율은 주거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의 주거실태를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로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저주거기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구성[1)]	실(방) 구성[2)]	총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3)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분리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표 3-5 가구유형별·수도권 여부별 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1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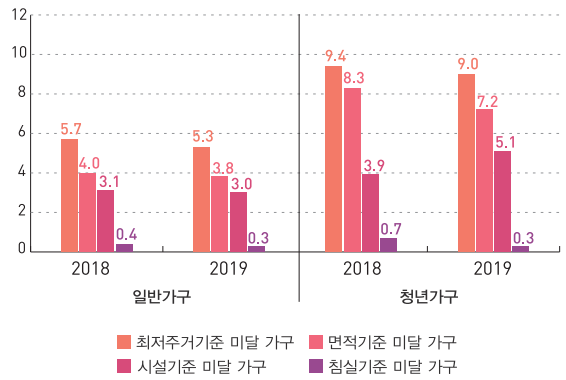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연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면적기준 미달 가구	시설기준 미달 가구	침실기준 미달 가구
일반가구	전체	2018	5.7	4.0	3.1	0.4
		2019	5.3	3.8	3.0	0.3
	수도권	2018	6.8	5.8	3.0	0.5
		2019	6.7	5.6	3.3	0.3
	수도권 외	2018	4.6	2.3	3.1	0.3
		2019	4.1	2.1	2.8	0.3
청년가구	전체	2018	9.4	8.3	3.9	0.7
		2019	9.0	7.2	5.1	0.3
	수도권	2018	11.5	10.3	4.2	1.0
		2019	11.3	9.6	5.8	0.4
	수도권 외	2018	7.2	6.0	3.6	0.3
		2019	6.3	4.5	4.2	0.2

주: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0

그림 3-7 가구유형별, 일반/청년 가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2018~2019)

(단위: %)



주: 청년가구는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경우임.
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특성가구 연구보고서,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9	1년

Checkpoint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청년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2018년 9.4%에서 2019년 9.0%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5.3%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가구는 모든 기준(면적, 시설, 침실)에서 미달 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1.3%로 수도권 외 지역(6.3%)보다 높았다.

참고문헌

- 이태진, 김태완, 정의철, 최은영, 임덕영, 윤여선, 최준영, 우선희 (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7
대 표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

The General Health- Checkup rate among 20~30s

지표 정의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 대상인 20~39세 청년 중 건강검진을 받은 청년의 비율을 의미한다.

-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행정규칙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거하여 만 20~39세 유지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만 대상이었는데, 2019년부터 20~30대 세대원과 피부양자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었다.

측정 산식

- $\frac{\text{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수검대상자 수}}{\text{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대상 20~3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청년 건강검진은 암 발병 연령이 낮아지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청년의 불건강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 대상 청년의 수검률이므로 전체 청년 중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과 다른 지표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6 연령대별 건강검진 수검률 (2019)

(단위: 명, %)

구분	대상자 수	수검자 수	수검률(%)
전체	21,716,582	16,098,417	74.1
20~29세	2,660,300	1,689,169	63.5
30~39세	3,722,287	2,726,677	73.3
40~49세	4,484,982	1,590,601	78.4
50~59세	4,776,894	3,703,979	77.5

자료: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통계연보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9	1년

Checkpoint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대상 청년(20~29세) 중 건강검진 수검 청년 비율은 63.5%였으며, 30~39세의 수검률은 이보다 높은 73.3%였다. 이는 전체 연령 건강검진 수검률 74.1%보다 낮은 수준이다.

08 대 표

청년 우울감 경험률

Rat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ages 19~29

지표 정의

청년 우울감 경험률은 19~29세 청년 중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 최근 청년의 어려움이 고용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변금선, 김기헌, 2019), 가장 대표적인 근거로 지목되는 것이 우울감, 우울증, 불안감, 불안장애 등을 경험하는 청년의 증가이다(김지경, 이윤주, 2018). 청년 우울감 경험률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연령집단으로 여겨져 온 청년이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다른 연령대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청년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우울감을 경험한 19~29세 청년의 수}}{\text{19~29세 청년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전체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이다(국민건강영양조사 설명자료).

표 3-7 연령대별 우울감 경험률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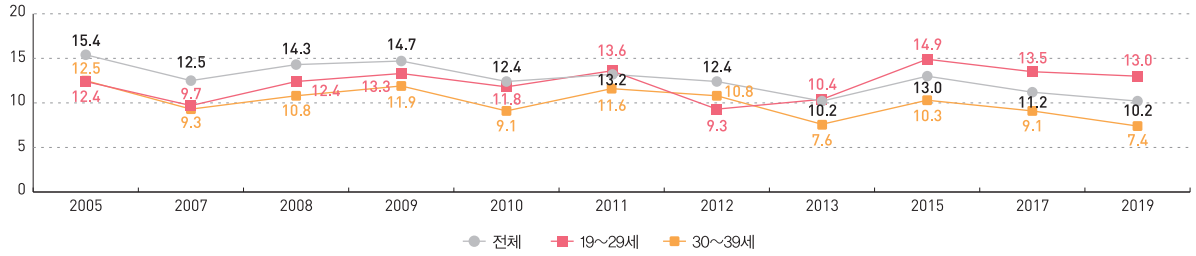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9
전체		15.4	12.5	14.3	14.7	12.4	13.2	12.4	10.2	13.0	11.2	10.2
연령집단	19~29세(청년)	12.4	9.7	12.4	13.3	11.8	13.6	9.3	10.4	14.9	13.5	13.0
	30~39세	12.5	9.3	10.8	11.9	9.1	11.6	10.8	7.6	10.3	9.1	7.4
	40~49세	14.8	11.7	13.4	13.4	11.0	11.4	12.9	8.3	10.8	7.8	8.9
	50~59세	18.0	13.8	17.4	17.8	16.9	15.2	15.0	13.1	13.1	11.0	10.6
	60~69세	22.8	20.4	19.2	17.9	15.5	15.0	15.1	12.4	18.2	14.7	11.0
	70세 이상	21.2	20.2	21.6	21.5	16.9	15.9	17.9	16.1	15.2	17.3	13.0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에서 2021.2.8. 인출)

그림 3-8 전체 연령집단과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 변화 (2005~2019)

(단위: %)



주 1)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년 동안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임.
2) 전체 및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자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6에서 2021.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2년

Checkpoint

19~29세 청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2005년 12.4%에서 2019년 13.0%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우울감 경험률 7.4%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30~39세의 우울감 경험률은 2007년 15.4%에서 2019년 10.2%로 20대와 달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 청년의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우울감 경험률 변화 추이를 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7년부터 전체 우울감 경험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5년에는 전체 연령집단 중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2019년에는 노인 집단(70세 이상)에 이어 우울감 경험률이 가장 높은 집단이 되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울감(코로나블루)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 · 정서 문제 및 대응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9
대 표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19~29세 청년이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0~10점 척도 평균값이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관한 주관적인 만족 수준을 보여준다.

- 삶의 질 지표는 주관적, 객관적 지표로 구별되는데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지표와 달리 개인이 인식하는 삶의 만족 수준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삶의 질 지표가 갖는 질적 측면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삶의 질 향상이 보건복지정책 분야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유의사항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므로 동일한 조건에서도 개인간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명자료 발췌).

표 3-8 연령대별 주관적 삶의 만족도 (2013~2019)

(단위: 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5.7	5.7	5.8	5.9	6.0	6.1	6.0
연령대	19~29세 (청년)	5.7	5.9	5.8	6.1	6.1	6.1	6.0
	30대	5.8	5.8	5.8	5.9	6.2	6.2	6.1
	40대	5.7	5.7	5.8	5.8	6.0	6.2	5.9
	50대	5.5	5.6	5.8	5.8	5.9	6.1	6.1
	60~69세	5.6	5.5	5.9	5.9	5.9	5.9	5.8

주: 삶의 만족도는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의 평균값임.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각 연도 (http://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4에서 2020.12.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2013	2019	1년

Checkpoint 19세~29세 청년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2013년 5.7에서 2019년 60.1으로 높아졌으며, 이는 전체 집단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30대, 40대보다는 낮고 60대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편, 전체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의 삶의 만족도 평균인 6.0점보다 0.6점 낮으며, 이탈리아, 일본과 비슷한 수치다(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설명자료).

참고문헌

- 변금선, 김기헌 (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46(2), 257-258.

10 대 표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

Social participation rate of the youth

지표 정의

청년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20~29세 청년 중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시민사회 단체, 취미 · 레저 · 스포츠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로 정의한다.

- 우리나라는 청년 의원 비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국제의회연맹(IPU, Inter-Parliamentary Unio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만 30세 미만 청년 의원 비율은 0%로 유럽 47개국 평균 3.9%에 한참 못 미친다(IPU, 2018). 청년 사회단체 참여율은 청년의 정치참여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치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비율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당사자의 권한 부여와 사회적 자본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간 단체참여 경험자 중 20~29세 인구수}}{\text{조사대상 인구 중 20~29세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사회조사의 조사대상 인구는 2009년까지는 15세 이상 인구이며, 2011년부터 13세 이상 인구로 하향조정 되었다.

표 3-9 연령대별 사회단체 참여율 (2019)

(단위: %)

구분		전체	친목 ·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 스포츠 · 레저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 모임	기타
전체		66.1	77.4	28.7	47.3	12.6	7.6	4.3	1.7	11.5	0.0
연령집단	13~19세	48.9	45.3	23.5	63.1	35.1	12.3	0.6	0.2	0.7	0.0
	20~29세(청년)	60.8	73.1	21.2	55.7	10.6	14.3	3.0	0.7	1.7	0.0
	30~39세	67.0	80.2	21.6	52.7	7.5	9.4	5.3	1.4	6.4	0.0
	40~49세	71.0	79.5	25.5	52.2	13.5	7.5	7.1	2.3	11.2	0.0
	50~59세	74.8	84.6	30.1	45.5	13.7	6.1	5.4	2.9	16.1	0.0
	60세 이상	63.7	77.2	40.4	32.8	9.9	3.0	1.7	1.2	19.3	0.0

주 1) 2019년 이후 기존 참여단체 3개 선택형 문항에서 참여단체 전체 선택형 문항으로 조사표 변경
2) 참여자 – 지난 1년간, 13세 이상 인구로 단체 참여 조사항목의 세부 단체참여 항목에 1개 이상 '참여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9 (http://kosis.kr에서 2020.12.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회조사*	1999	2019	2년**

* 사회참여 부문

** 사회참여 부문은 홀수년 공표

Checkpoint 20~29세 청년의 2019년 사회단체 참여율은 60.8%로 전체 사회단체 참여율 66.1%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민사회단체 참여율은 10.6%로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으며, 정치단체 참여율은 0.7%로 20세 미만(0.2%)에 비해 높고 40~50대(2.8%)보다 낮았다. 한편 지역사회 모임 참여율은 20대 청년의 참여율이 1.7%로 40대 이상 참여율이 11.0% 이상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참고문헌 • IPU (2018).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2018.

4

노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65세 기대여명
02 노인의 ADL 제한율
03 노인의 운동 실천율
04 노인의 학대경험률
05 노인 진료비
06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07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08 장기요양기관 수

4 노인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노인 건강수준	65세 기대여명	
	노인의 ADL 제한율	
	노인의 운동 실천율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노인의 학대경험률	
노인 의료이용	노인 진료비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노인 장기요양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장기요양기관 수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Highlight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진료비 중 노인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처음으로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한 이후로 2019년 41.4%를 차지하였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2010년부터 연평균 4.6%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5.2%의 증가율을 보여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노인 진료비(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는 2010년부터 연평균 10.9%씩 증가하여, 2018년 대비 2019년에는 13.2% 증가하였다. 즉,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10년 동안 10%p이상 상승하여, 노인 인구수의 증가율보다 2배 이상의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노인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현재보다 증가 속도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작인 2020년부터는 급속도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진료비 증가속도를 낮추려면, 앞으로 만성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측면의 정책을 시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보장성 관리가 요구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할수록 이들의 삶의 질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2017년 전체 노인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비율은 9.8%로 2014년 대비 약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대비 총 2.9%p가 감소하였다. 방임학대(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는 2014년 대비 약 0.3%p 감소하였으나,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경제학대는 약 0.1%p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1%씩 증가하고 있어, 2019년에는 총 16,071건으로 2018년 대비 3.8% 증가하였다. 즉,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측정 산식 상 분모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노인인구 수 대비 노인학대 경험률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며, 총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고는 있으나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리고 반드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학대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는 과소 측정된 결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수와 더불어 앞으로 노인학대 경험은 노인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학대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수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수도 노인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장기요양기관 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를 포함한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수는 24,953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2019년 492,132명에 이르렀다. 이 중 요양보호사가 444,525명으로 전체의 90.3%를 차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 인력 중 사회복지사는 26,395명으로 전체의 5.4%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인 인구수의 증가로 장기요양기관을 찾는 이용자들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수요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부에서 장기요양수급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과 맞물려, 장기요양기관을 찾는 이용자들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기관 수와 전문 인력들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만족하는 구조 및 과정측면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 질 향상 및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01 대 표

65세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at 65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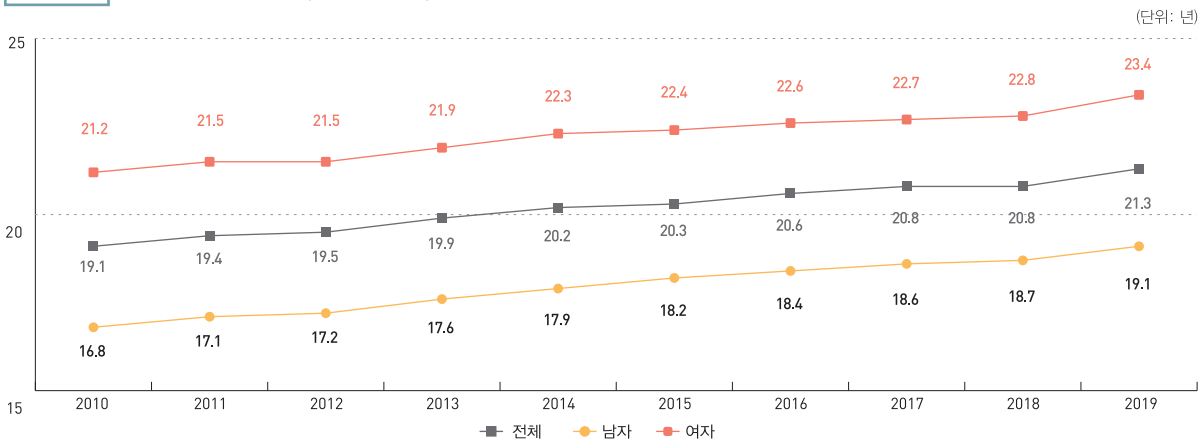
지표 정의

65세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다.

측정 산식

$$\frac{\text{65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65세의 생존 인구수}}$$

그림 4-1 성별 65세 기대여명 (2010~2019)



주: 2018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0	2019	1년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시도별 통계는 3년 주기로 공표

Checkpoint 노인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65세 기대여명은 2010년 19.1년에서 2015년 20.3년, 2019년 21.3년으로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다른 인구 집단보다 건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들의 건강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표 4-1 연도별 · 시도별 65세 기대여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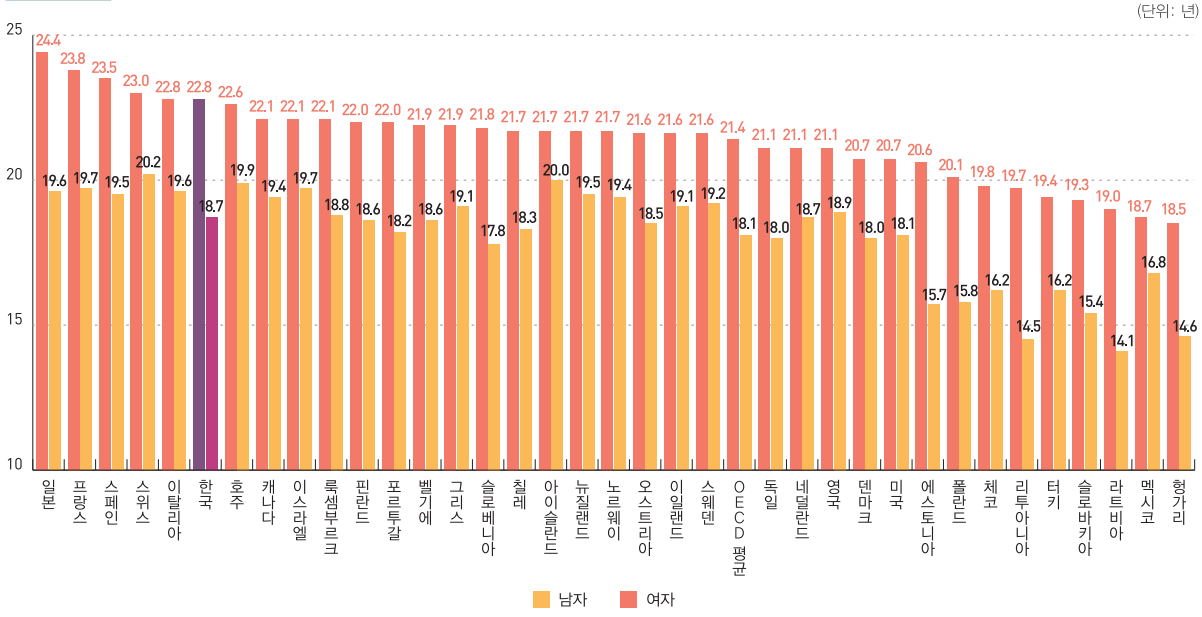
시도	전체				남자				여자			
	2008	2011	2014	2017	2008	2011	2014	2017	2008	2011	2014	2017
전국	18.6	19.4	20.2	20.8	16.3	17.1	17.9	18.6	20.7	21.5	22.3	22.7
서울	19.6	20.3	21.0	21.8	17.6	18.1	19.0	19.8	21.5	22.2	22.8	23.7
부산	17.6	18.7	19.7	20.1	15.4	16.5	17.7	18.1	19.5	20.6	21.5	22.0
대구	18.2	18.9	19.9	20.4	16.0	16.8	17.8	18.4	20.1	20.8	21.7	22.1
인천	18.6	19.0	19.9	20.6	16.4	16.9	17.8	18.2	20.6	20.8	21.8	22.7
광주	18.3	18.8	19.6	20.3	16.3	16.5	17.6	18.5	20.2	20.9	21.5	21.9
대전	18.6	19.4	20.3	20.8	16.7	17.3	18.3	19.2	20.3	21.4	22.1	22.3
울산	17.3	18.0	18.8	19.9	15.3	15.6	17.0	17.8	19.1	20.2	20.5	21.8
세종	-	-	20.5	20.5	-	-	18.0	18.1	-	-	22.7	22.7
경기	18.9	19.6	20.4	20.9	16.8	17.5	18.3	19.0	20.8	21.6	22.4	22.7
강원	18.4	19.7	20.1	20.7	16.0	17.3	17.6	18.2	20.5	21.8	22.4	23.0
충북	18.3	18.9	19.9	20.3	15.9	16.5	17.5	18.2	20.4	21.1	22.1	22.2
충남	18.9	19.8	20.3	20.8	16.4	17.3	17.8	18.5	21.1	22.0	22.6	22.9
전북	18.4	19.5	20.2	20.6	16.0	17.0	17.7	18.4	20.6	21.7	22.5	22.7
전남	18.6	19.1	20.2	20.5	15.8	16.3	17.1	17.9	21.0	21.6	22.9	22.9
경북	18.4	19.0	20.0	20.5	15.8	16.4	17.3	18.2	20.7	21.2	22.3	22.7
경남	17.8	18.8	19.7	20.1	15.1	16.3	17.1	17.7	20.2	21.0	22.0	22.3
제주	20.4	20.7	21.1	21.5	17.6	17.5	18.5	18.8	22.9	23.5	23.4	23.8

주: 1)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2) 세종은 2008년과 2011년의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9.1.4. 인출)

그림 4-2 OECD 국가의 성별 65세 기대여명 (2018)

(단위: 년)



주: 멕시코와 일본은 2017년 수치임.

자료: OECD Health Data (http://stats.oecd.org에서 2021.1.10. 인출)

02 대 표

노인의 ADL 제한율

Rate of ADL Limitations among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노년기에 있어서 신체적 독립성의 유지능력과 자립적 노후생활의 영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지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다.
*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옷 입기, 세수 · 양치 · 머리감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이용하기, 대소변 조절하기의 7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한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은 몸단장 하기, 집안일 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물건 구매하기, 금전 관리하기, 전화 사용하기, 약 챙겨먹기의 10개 항목으로 조사된다.

측정 산식

$$\frac{\text{ADL 항목 중 1개 이상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4 노인

표 4-2 연도별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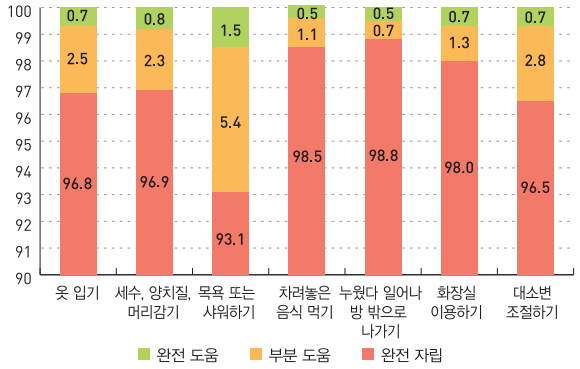
(단위: %)

연도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경험	ADL도 제한 경험	계
1994	49.7	17.4	32.8	100.0
1998	52.7	15.6	31.7	100.0
2004	80.7	12.4	6.9	100.0
2008	81.6	10.4	8.0	100.0
2011	85.1	7.7	7.2	100.0
2014	81.8	11.3	6.9	100.0
2017	74.7	16.6	8.7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4-3 ADL 항목별 기능상태 (2017)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7

표 4-3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현황 (2017)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지역별		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동	읍면	남자	여자
기능제한 없음		74.7	89.4	83.1	70.8	56.1	32.6	75.6	72.7	83.6	68.1
IADL만 제한		16.6	7.6	12.1	20.3	29.2	35.4	15.8	18.3	10.4	21.2
ADL도 제한 경험		8.7	3.0	4.8	8.9	14.7	32.0	8.6	9.0	6.1	10.7
IADL	완전 자립	75.4	89.9	84.1	71.9	56.7	32.7	76.2	73.7	83.7	69.3
	1~2개 도움	9.6	4.9	8.1	12.6	15.5	15.7	8.5	12.1	5.1	13.0
	3~4개 도움	5.6	2.9	3.6	7.2	9.8	11.7	5.7	5.4	4.1	6.8
	5~6개 도움	4.3	1.5	2.5	4.0	9.4	13.7	4.7	3.7	3.3	5.1
	7~8개 도움	2.4	0.3	0.8	1.8	4.6	13.0	2.4	2.4	1.6	3.0
	9~10개 도움	2.6	0.6	0.9	2.5	4.0	13.2	2.5	2.8	2.2	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201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7	3년

Checkpoint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ADL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의 ADL 제한경험률은 1994년 32.8%에서 2004년 6.9%, 2014년 6.9%로 많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8.7%로 다시 증가하였다. IADL 제한경험률 역시 1994년 17.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나, 2014년 11.3%, 2017년 16.6%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03
대 표

노인의 운동 실천율

Rate of physical activity i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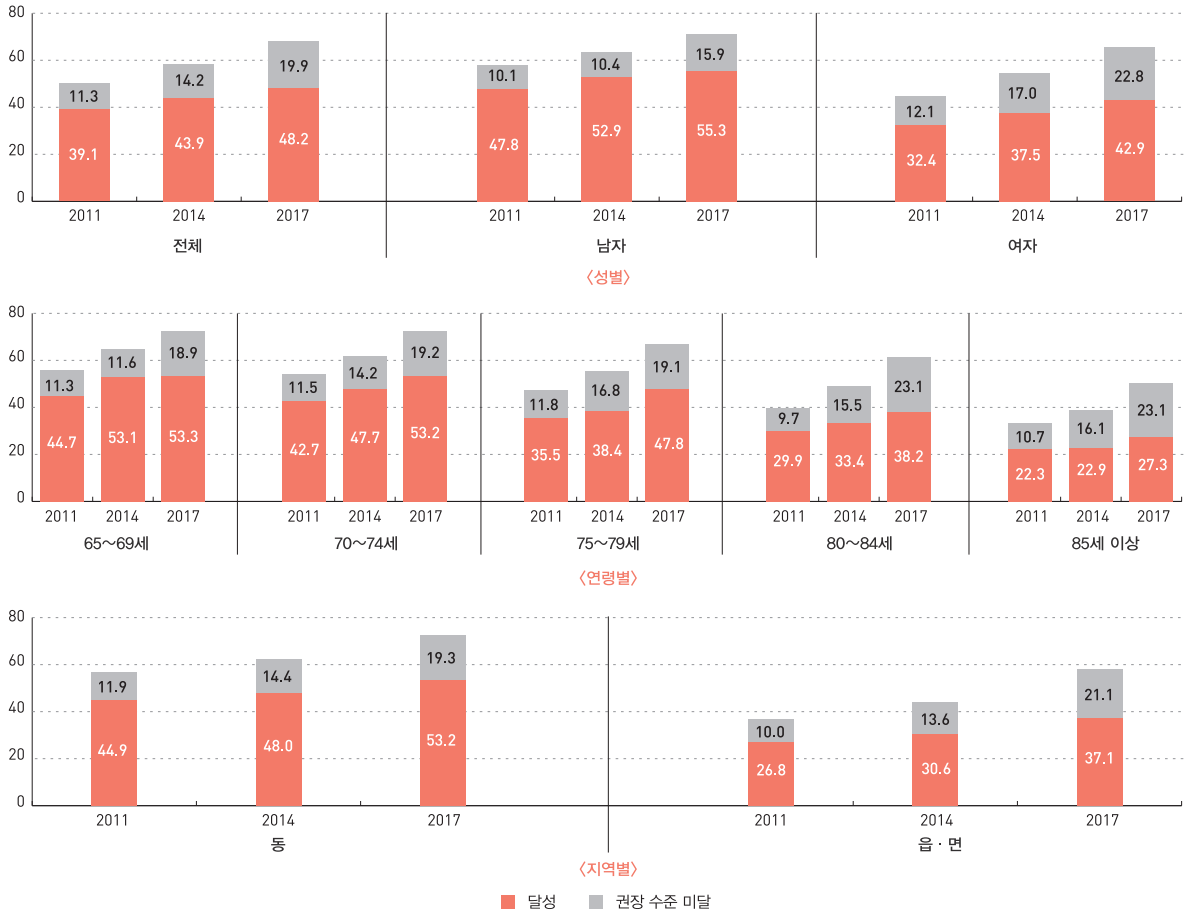
조사대상 노인인구 중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운동 실천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그림 4-4 연도별 · 특성별 노인의 권장 수준 운동 실천율

(단위: %)



주: 권장 수준이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것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7	3년

Checkpoint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 활동은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근력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게 있어서 운동은 더욱 중요하다. 비록 우리나라 노인의 고위험 음주율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운동 실천율과 흡연율의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노인의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Current Smoking Rate and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현재 흡연율은 조사대상 노인인구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을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고위험 음주율은 조사대상 노인인구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현재 흡연율(%) = $\frac{\text{평생 '5갑(100개비) 이상' 흡연자이면서,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고위험 음주율(%) = $\frac{\text{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6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4-4 성별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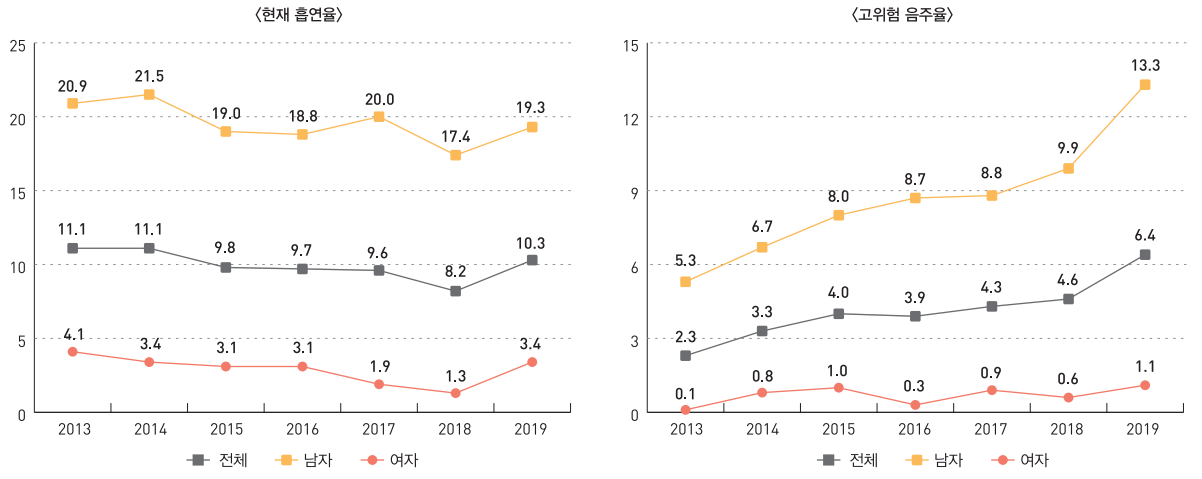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현재 흡연율	11.1	11.1	9.8	9.7	9.6	8.2	10.3	20.9	21.5	19.0	18.8	20.0	17.4	19.3	4.1	3.4	3.1	3.1	1.9	1.3	3.4
고위험 음주율	2.3	3.3	4.0	3.9	4.3	4.6	6.4	5.3	6.7	8.0	8.7	8.8	9.9	13.3	0.1	0.8	1.0	0.3	0.9	0.6	1.1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그림 4-5 성별 노인의 현재 흡연율 및 고위험 음주율 (2013~2019)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04
대 표

노인의 학대경험률

Rate of self-reported Elderly abuse

지표 정의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조사에 참여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방임을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인학대를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언어학대), 경제학대, 방임학대로 나누어 경험률을 파악하였다. 이는 노인에 대한 권리침해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대경험 응답 노인 수}}{\text{65세 이상 조사자 수}} \times 100$

표 4-5 연도별 · 일반특성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단위: %)

구분		학대경험률	학대 유형별 경험률					
			타인으로부터의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2011	12.7	0.5	-	9.4	1.5	1.4	2.5
	2014	9.9	0.2	-	7.3	0.3	1.5	2.8
	2017	9.8	0.3	0.1	7.4	0.4	1.7	2.3
성	남자	9.6	0.4	0.1	7.0	0.4	1.6	2.3
	여자	10.1	0.3	0.1	7.6	0.4	1.7	2.3
연령	65~69세	8.6	0.3	0.1	6.3	0.5	1.6	1.9
	70~74세	10.2	0.3	0.1	7.2	0.4	1.5	2.7
	75~79세	10.5	0.5	0.1	8.2	0.3	1.6	2.2
	80~84세	10.9	0.3	0.0	8.0	0.4	2.4	2.7
	85세 이상	10.2	0.3	0.0	8.9	0.1	1.3	2.2
지역	동부	9.6	0.4	0.1	7.2	0.4	1.7	2.4
	읍 · 면부	10.3	0.1	0.0	7.8	0.5	1.6	2.1

주: 성폭력 또는 성추행 조사는 2017년부터 시작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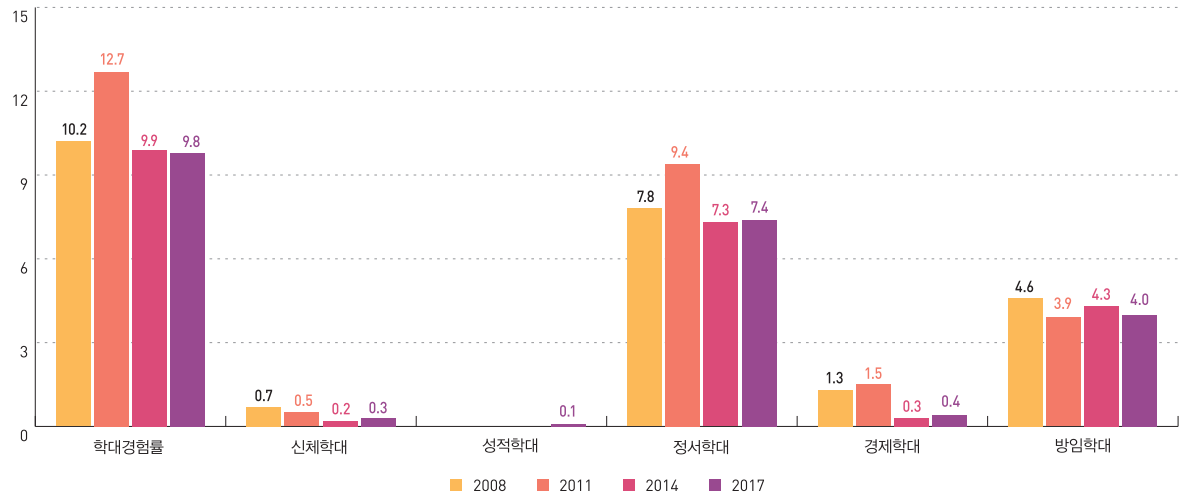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1994	2017	3년

Checkpoint 2017년 노인의 학대경험률은 9.8%으로 2014년의 9.9%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각 유형별 0.1%p 정도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일반사례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34건, 학대 사례 신고 건수는 55건이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

그림 4-6 연도별 노인의 학대경험률 및 학대유형별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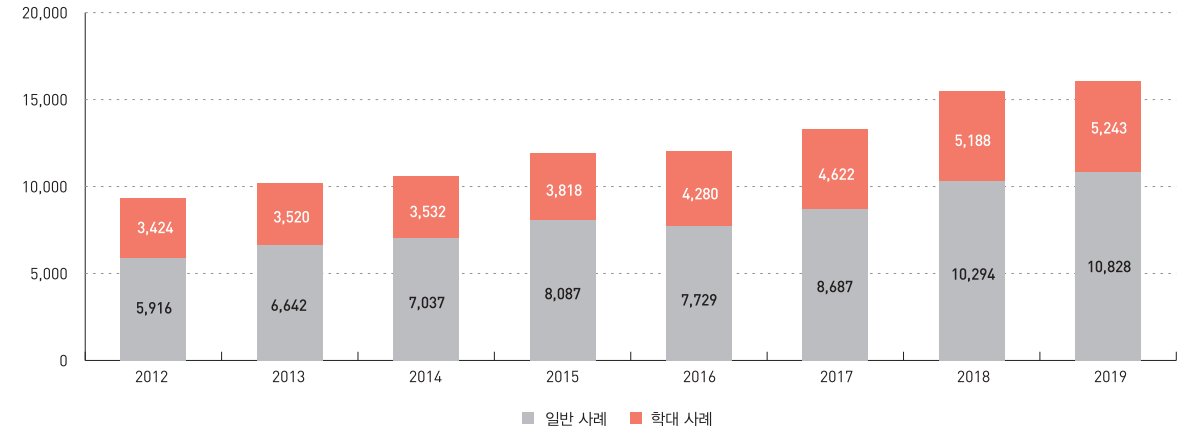
(단위: %)



주: 방임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을 포함함.
성적학대는 2017년 조사에서만 실시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4-7 노인학대 신고 건수 (2012~2019)

(단위: 건)



주: 1) 일반 사례: 신고접수된 사례 중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었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 위험요인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
2) 학대 사례: 신고접수 시 노인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사례판정 결과 학대로 판정된 사례
자료: 보건복지부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2020

05
대 표

노인 진료비

Medical Expenditures on adult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진료비이다.

- '노인 진료비의 비율'과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를 통해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 수준을 확인하고, 노인 1인의 부담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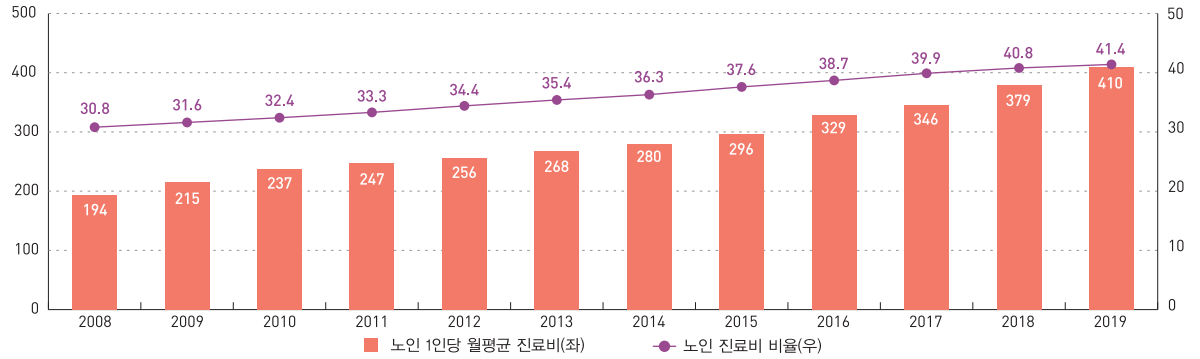
측정 산식

-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

유의사항
- '노인 진료비 비율'은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5세 이상 인구의 연간 진료비를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한달 분으로 환산해준 값이다.
- 진료비는 급여 진료비와 법정본인부담금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림 4-8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및 노인 진료비 비중 (2008~2019)

(단위: 천 원,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표 4-6 노인 진료비 비율 및 노인(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008~2019)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인구(천 명)	48,160	48,614	48,907	49,299	49,662	49,999	50,316	50,490	50,763	50,941	51,072	51,391
65세 이상 인구(천 명)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6,445	6,806	7,092	7,463
노인인구 비율(%)	9.6	9.9	10.2	10.5	11.0	11.5	11.9	12.3	12.7	13.4	13.9	14.5
총 진료비(억 원)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41	543,170	579,546	645,768	693,352	776,583	864,775
65세 이상 진료비(억 원)	107,371	125,442	140,987	153,961	163,401	180,565	197,417	218,023	250,187	276,533	316,527	358,247
노인 진료비(%)	30.8	31.9	32.3	33.3	34.2	35.4	36.3	37.6	38.7	39.9	40.8	41.4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60,335	67,709	74,564	78,424	80,545	85,214	90,248	95,759	106,286	113,612	126,891	140,663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원)	194,531	214,507	236,588	247,366	256,308	267,792	279,648	295,759	328,599	346,161	378,657	409,536

주: 1) 적용 인구는 연도 말 기준
2)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진료비/연평균 건강보험 적용 인구)/12
3)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65세 이상 진료비/연도말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인구)/12
4) 반올림 계산하여 실제 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9	1년

Checkpoint

노인인구의 급증과 기대여명의 향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0.6%p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노인 진료비의 비중은 41%를 넘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빠른 의료비 증가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바, 노인 진료비 역시 정책적 개입을 통한 관리가 요구된다.

05-1
연 관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Number of outpatient by type of medical institution,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외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이며, 외래환자 수는 외래환자가 요양기관에 방문한 횟수(외래방문일 수)에 대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외래환자 중 노인 비율 = $\frac{\text{65세 이상 외래환자 수}}{\text{전체 외래환자 수}}$

표 4-7 의료기관 종별 노인 외래환자 수 (2016)

(단위: 명, %)

구분		전연령	65세 이상 외래환자 수			외래환자 중 노인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741,247	201,365	80,131	121,234	27.2	10.8	16.4
상급종합		40,681	12,498	6,079	6,419	30.7	14.9	15.8
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27,683	10,216	5,663	4,553	36.9	20.5	16.4
	300~499병상	17,766	6,290	3,366	2,924	35.4	18.9	16.5
	100~299병상	24,024	7,203	3,337	3,866	30.0	13.9	16.1
병원	100병상 이상	26,529	6,997	2,864	4,133	26.4	10.8	15.6
	30~99병상	41,768	5,881	2,271	3,610	14.1	5.4	8.6
요양병원	300병상 이상	499	221	76	145	44.3	15.2	29.1
	100~299병상	2,174	900	324	576	41.4	14.9	26.5
	30~99병상	619	308	101	207	49.8	16.3	33.4
의원	병상있음	137,201	34,642	12,758	21,884	25.2	9.3	16.0
	병상없음	422,304	116,212	43,292	72,920	27.5	10.3	17.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1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2001	2016	5년

06
대 표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인지기능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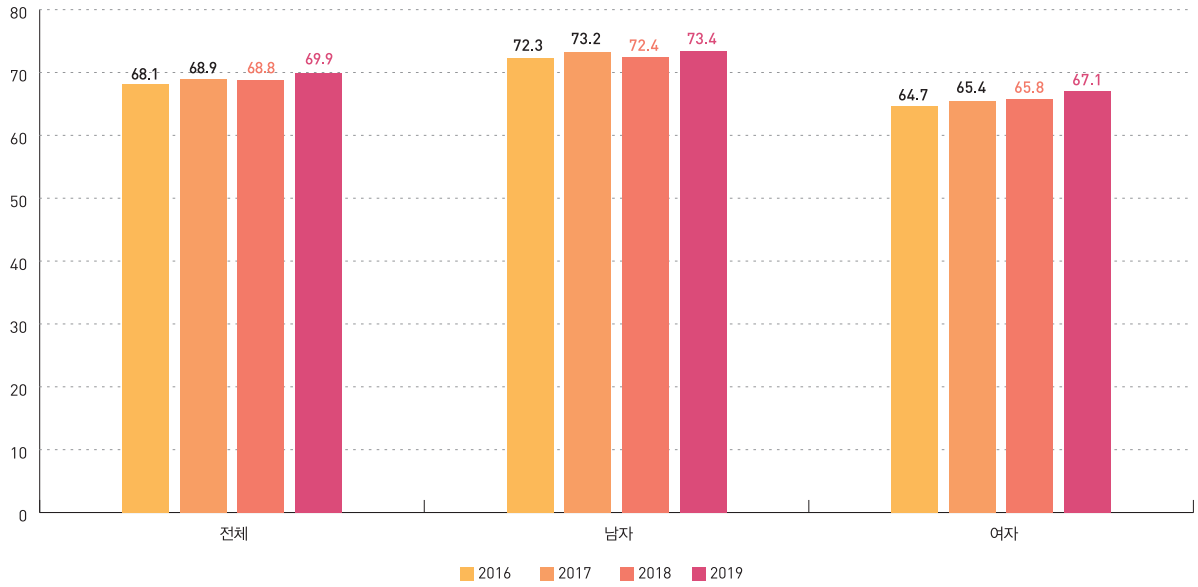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65세 이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그림 4-9 성별 노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6~2019)

(단위: %)



주: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 중 2차 검진이 삭제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http://nhis.or.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65세 이상 노인의 일반검진 수검률(69.9%)로 전년대비 1.1% 상승하였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표 4-8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만 40, 50, 60, 70세 대상, 2019)

(단위: 명)

구분	전체				
	계	우울 증상이 없음	가벼운 우울 증상	중간 정도	심한 우울증 의심
전체	1,934,620	1,578,997	266,961	80,254	8,408
서울	347,445	275,771	53,745	16,153	1,776
부산	132,687	110,559	16,765	4,907	456
대구	93,025	77,432	11,891	3,383	319
인천	112,686	90,197	16,700	5,307	482
광주	55,726	47,097	6,527	1,868	234
대전	57,137	45,998	8,359	2,561	219
울산	46,128	38,141	6,167	1,678	142
세종	12,256	9,613	2,016	566	61
경기	486,423	386,808	74,355	23,106	2,154
강원	57,294	47,705	7,186	2,183	220
충북	61,573	50,714	8,109	2,516	234
충남	78,137	64,497	10,158	3,152	330
전북	68,883	59,016	7,493	2,151	223
전남	71,364	62,160	6,948	1,931	325
경북	101,532	86,005	11,745	3,333	449
경남	129,820	109,131	15,510	4,480	699
제주	22,504	18,153	3,287	979	85

주: 2018년부터 해당 검진 결과표가 변경되었으며, 대상 연령이 만 70, 74세에서 만 40, 50, 60, 70세로 변경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 (http://nhis.or.kr에서 2021.1.10. 인출)

06-1
연 관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Inspection Rate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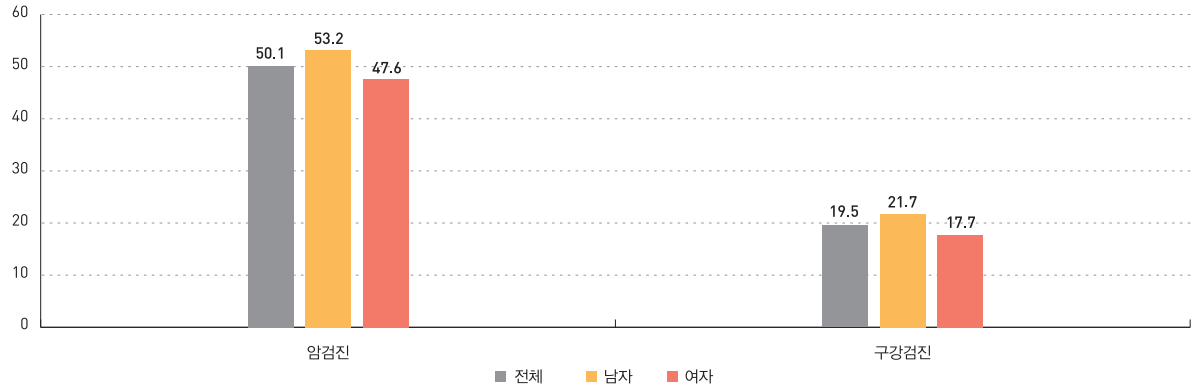
건강검진 대상 인원 중 특정 항목의 검진을 받은 인원의 비율이다. 특정 검진항목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이외의 암검진, 구강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해당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수검자}}{\text{특정항목 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그림 4-10 성별 노인의 주요 검진항목의 성별 수검률 (2019)

(단위: %)



주: 1) 암검진 대상 부위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임.
2) 2018년부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이 삭제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 (http://nhis.or.kr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건강검진통계	2008	2019	1년

07
대 표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Coverage of Public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에서 공적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공적장기요양보호에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해당된다.

- 인구구조와 가족구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기능상 제약이 있는 노인이 일상생활 중에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삶을 돌보고, 이들에 대한 주변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측정 산식

- $\frac{\text{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text{65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표 4-9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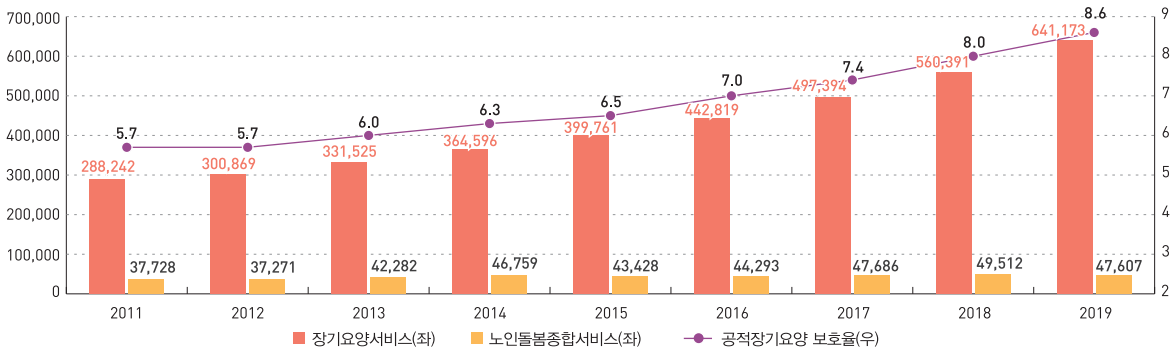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노인 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소계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11	325,970	288,242	37,728	5,700,972	5.7
2012	338,140	300,869	37,271	5,980,060	5.7
2013	373,807	331,525	42,282	6,250,986	6.0
2014	411,355	364,596	46,759	6,520,607	6.3
2015	443,189	399,761	43,428	6,775,101	6.5
2016	487,112	442,819	44,293	6,995,652	7.0
2017	545,080	497,394	47,686	7,356,106	7.4
2018	609,903	560,391	49,512	7,650,408	8.0
2019	688,780	641,173	47,607	8,026,915	8.6

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20; KOSIS, 고령인구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21.3.12. 인출)

그림 4-11 노인의 공적장기요양 보호율 (2011~2019)

(단위: 명, %)



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급 기준으로, 인정자 중 각 연도 1월~12월까지 누적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지급된 자(중복자, 사망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내부자료), 2020; KOSIS, 고령인구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20631에서 2021.3.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 (내부자료)	-	2019	부정기

Checkpoint

공적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8.4%의 증가를 하여 2019년 약 64만 1천여 명에 이르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연평균 10.5%씩 증가하여 2011년 5.7% 수준이던 공적장기요양보호율은 2019년 8.0%로 높아졌다. 공적장기요양 보호율의 확대가 노인인구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매우 발전적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07-1
연 관

노인의 장기요양 수급률

Rate of People in receipt of Long-term Car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65세 인구 중 유급 장기요양서비스(시설 또는 재가)를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 시설 장기요양수급자(병원 외)는 재원(공공재원과 민간재원)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며, 재가 장기요양수급자는 움직임의 제약으로 인하여 자신의 집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인구}}{\text{65세 이상 인구수}} \times 100$

표 4-10 성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자 및 장기요양 수급률 (201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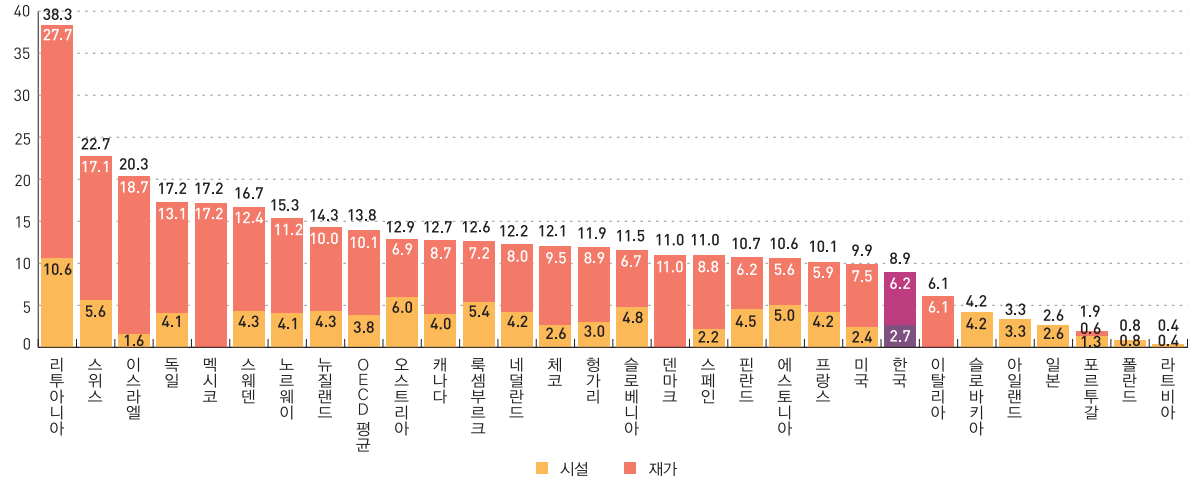
(단위: 명, %)

연도	전체			남자			여자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계	시설	재가
2012	370,810 (6.4)	139,384 (2.4)	231,426 (4.0)	100,499 (4.2)	31,655 (1.3)	68,844 (2.9)	270,311 (8.0)	107,729 (3.2)	162,582 (4.8)
2013	403,611 (6.7)	149,454 (2.5)	254,157 (4.2)	108,118 (4.3)	33,188 (1.3)	74,930 (3.0)	295,493 (8.4)	116,266 (3.3)	179,227 (5.1)
2014	437,734 (7.0)	157,363 (2.5)	280,371 (4.5)	115,820 (4.4)	34,405 (1.3)	81,415 (3.1)	321,914 (8.8)	122,958 (3.4)	198,956 (5.4)
2015	481,383 (7.4)	168,717 (2.6)	312,666 (4.8)	127,157 (4.7)	37,133 (1.4)	90,024 (3.3)	354,226 (9.4)	131,584 (3.5)	222,642 (5.9)
2016	526,032 (7.8)	177,597 (2.6)	348,435 (5.2)	137,876 (3.5)	39,140 (1.0)	98,736 (2.5)	388,156 (9.9)	138,457 (3.5)	249,699 (6.4)
2017	587,429 (8.3)	189,144 (2.7)	398,285 (5.6)	154,062 (3.8)	41,924 (1.0)	112,138 (2.8)	433,367 (10.6)	147,220 (3.6)	286,147 (7.0)
2018	660,121 (8.9)	202,193 (2.7)	457,928 (6.2)	174,856 (4.1)	44,941 (1.1)	129,915 (3.1)	485,265 (11.5)	157,252 (3.7)	328,013 (7.8)

자료: OECD, OECD Health Data (http://stat.oecd.org에서 2021.1.10. 인출)

그림 4-12 OECD 국가의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수급률 (2018)

(단위: %)



주: 멕시코, 캐나다, 미국은 2016년 수치,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는 2017년 수치임.

자료: OECD, Health Data (http://stats.oecd.org에서 2021.1.1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	2018	1년

08
대 표

장기요양기관 수

Number of Long-term Care Fac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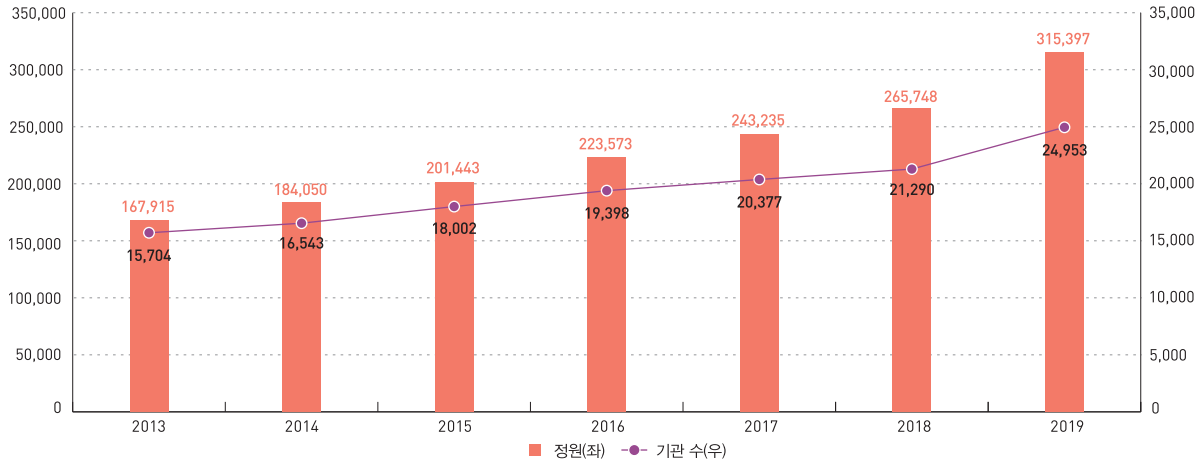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같은 법 제23조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이다. 즉,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재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와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모두 해당한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

그림 4-13 장기요양기관 수 (2013~2019)

(단위: 명,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19	1년

Checkpoint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래,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2008년 8,318개소이던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24,953개소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수준의 향상에 대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표 4-11 시도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19)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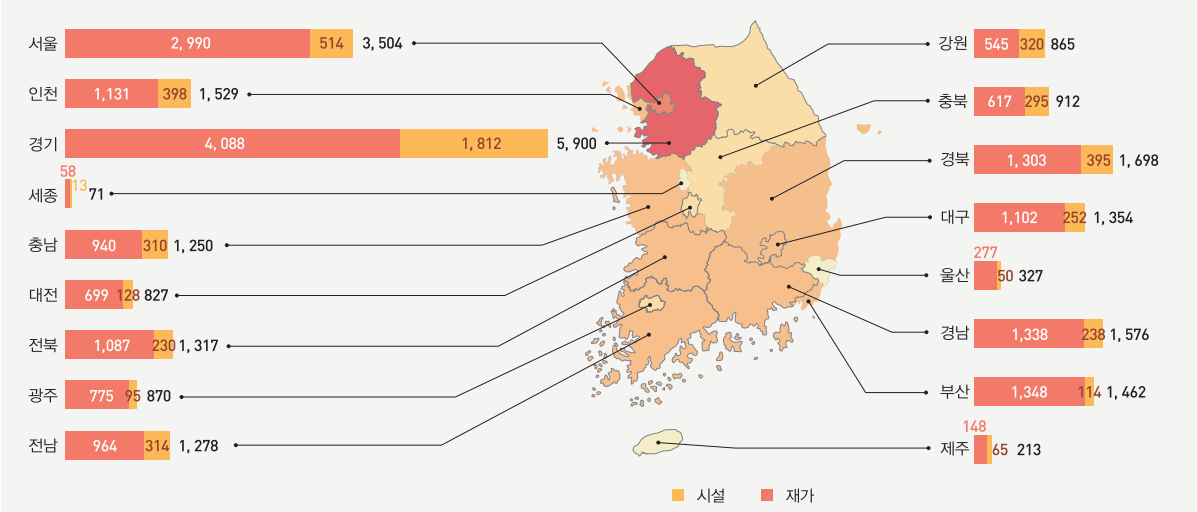
구분	전체	재가							시설		
		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국	24,953	19,410	15,305	11,121	795	4,179	162	1,975	5,543	3,604	1,939
서울	3,504	2,990	2,308	1,913	139	444	50	324	514	204	310
부산	1,462	1,348	1,177	724	44	207	2	134	114	92	22
대구	1,354	1,102	897	532	32	303	16	87	252	113	139
인천	1,529	1,131	939	777	58	187	7	110	398	292	106
광주	870	775	641	381	27	134	1	81	95	78	17
대전	827	699	568	465	43	138	1	76	128	88	40
울산	327	277	224	122	17	83	1	24	50	37	13
세종	71	58	40	25	3	16	0	7	13	11	2
경기	5,900	4,088	3,096	2,518	175	900	39	430	1,812	1,190	622
강원	865	545	407	266	40	139	7	57	320	202	118
충북	912	617	445	239	21	201	2	65	295	187	108
충남	1,250	940	738	541	38	246	8	90	310	207	103
전북	1,317	1,087	817	592	41	256	3	128	230	163	67
전남	1,278	964	777	500	41	229	5	83	314	221	93
경북	1,698	1,303	1,036	691	38	357	15	126	395	273	122
경남	1,576	1,338	1,099	754	30	278	5	126	238	190	48
제주	213	148	96	81	8	61	0	27	65	56	9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재가의 소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외한 것임.
3)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구법),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전환)은 201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0

그림 4-14 시도별 · 급여종류별 장기요양기관 수 (2019)

(단위: 개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2020

장기요양기관의 전문 인력

Number of Long-term Care Workers

지표 정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사(촉탁의 포함),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수이다.

측정 산식

-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의 수

표 4-12 급여종류별 전문 인력 현황 (2016~2019)

(단위: 명)

구분	전체				재가				시설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2016	2017	2018	2019
계	344,242	377,184	421,326	492,132	273,748	302,285	341,541	404,237	78,664	83,659	88,742	95,301
요양보호사	313,013	340,624	379,822	444,525	259,595	284,144	319,498	377,726	60,549	64,179	68,216	73,082
사회복지사	14,682	18,535	22,305	26,395	9,747	13,188	16,314	19,610	5,001	5,402	6,052	6,831
간호사	2,675	2,791	2,999	3,312	1,249	1,371	1,584	1,793	1,506	1,485	1,472	1,582
간호조무사	9,080	9,845	10,726	12,054	2,730	3,120	3,671	4,567	7,036	7,460	7,806	8,301
물리(작업) 치료사	1,974	2,024	2,122	2,350	243	266	294	361	1,835	1,861	1,937	2,114
의사 (촉탁포함)	1,683	2,198	2,210	2,358	129	134	112	104	1,649	2,161	2,179	2,324
치과위생사	5	7	10	7	5	7	10	7	-	-	-	-
영양사	1,130	1,160	1,132	1,131	50	55	58	69	1,088	1,111	1,080	1,067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표 4-13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요 전문 인력 현황 (2019)

(단위: 명)

구분	전체			재가			시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국	26,395	12,054	444,525	19,610	4,567	377,726	6,831	8,301	73,082
서울	3,626	1,424	74,036	3,107	764	68,231	521	733	6,399
부산	1,525	439	29,987	1,325	206	27,842	203	255	2,285
대구	1,254	579	20,523	968	290	17,541	289	374	3,154
인천	1,593	792	27,316	1,083	197	22,407	512	629	5,321
광주	807	232	15,742	674	134	14,602	137	122	1,245
대전	791	368	15,299	618	150	13,325	175	238	2,136
울산	351	140	6,367	283	78	5,707	68	70	690
세종	75	34	1,254	57	15	1,076	18	19	194
경기	6,238	3,505	103,228	4,049	935	82,401	2,200	2,728	23,318
강원	1,052	523	13,738	678	131	9,990	375	421	3,901
충북	993	591	14,198	657	203	10,899	340	424	3,595
충남	1,367	672	21,280	979	249	17,743	393	479	3,974
전북	1,438	617	19,479	1,143	292	16,727	298	373	2,984
전남	1,423	603	20,186	1,043	236	16,907	383	416	3,554
경북	1,872	780	28,403	1,408	358	23,802	466	530	4,959
경남	1,692	599	29,711	1,348	274	26,133	345	374	3,936
제주	298	156	3,778	190	55	2,393	108	116	1,437

주: 1) 연도 말 기준임. 2) 전체 계는 급여종류에 따른 중복을 제거한 것임.
3)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간호조무사 포함임. 4) 각 전문 인력은 재가와 시설에서 중복 집계되므로 재가와 시설의 합은 전체 수치보다 큼.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2008	2019	1년

5

장애인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등록장애인 수
02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03 장애인 복지시설 수
0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0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6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07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08 특수교육대상자 수
09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10 장애인 교육수준
11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1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13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14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15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16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5 장애인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장애인 인구 및 생활	등록장애인 수	장애출현율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장애인 보육 · 교육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장애인 교육수준	
장애인 경제활동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실업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장애수당 수급자 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Highlight

본 분야에서는 먼저 국내 장애인의 인구학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적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복지시설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장애인의 생애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 교육, 돌봄,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자료를 살펴보고, 성인장애인의 경우 고용, 직업, 지역사회재활, 일상생활지원 등과 관련된 영역의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의 현금급여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장애출현율은 5.39%(2,668천 명)로 인구 1만 명당 539명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0년 대비 2.3%p 증가한 것으로 후천적 장애 및 인구고령화에 의한 장애발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정장애인 중 법정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수는 2,511천 명으로 94.1%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0년 대비 31.5%p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복지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경우 2018년 이용자 수는 78,202명으로 2014년 대비 연평균 9.7% 증가하였으며, 이용액도 연평균 16.1%씩 증가하였다. 장애인복지시설(거주, 지역사회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시설 등)의 경우에도 2019년 3,744개소로 매년 새롭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편 사회통합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이 강조되면서 시설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거주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과 단기거주시설이 늘어나는 반면 기존의 대규모 시설은 점차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기조는 보육 및 교육 영역에서도 그 흐름을 엿볼 수 있는데, 통합보육이 강조되면서 시설 증가의 대부분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반학교 특수학급대상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인의 교육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된 이후로 대상자 및 지급액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68,716명으로 나타나 목표치인 70% 수준을 넘어섰다.

하지만, 장애인의 근로 및 고용 실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인구(각 63.3%, 60.9%)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실업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월평균 임금 수준 또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01
대 표

등록장애인 수

Number of the Registered Disabled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유형 및 기준에 부합하여 시 · 군 · 구에 등록된 장애인의 수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 · 요루, 뇌전증 등 15가지 유형의 법정 장애를 명시하고 있다*.

- 장애인 등록 현황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등록장애인 수는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장애인 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측정 산식

- 우리나라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어 등록한 장애인의 수

표 5-1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수 (2001~2019)

(단위: 천 명)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134	1,294	1,454	1,611	1,789	1,967	2,105	2,247	2,430	2,517	2,519	2,511	2,501	2,494	2,490	2,511	2,546	2,586	2,619
지체장애	682	755	814	883	965	1,049	1,114	1,191	1,293	1,338	1,333	1,322	1,309	1,296	1,281	1,267	1,254	1,239	1,223
시각장애	116	136	153	170	190	197	217	228	241	249	251	253	253	253	253	252	253	253	253
청각, 언어장애	106	124	139	155	176	205	218	239	262	278	279	276	273	271	269	291	302	363	399
지적장애	95	104	112	119	128	138	143	147	155	161	167	173	179	184	190	195	201	207	212
뇌병변장애	65	92	118	143	169	195	215	232	252	262	261	258	253	252	251	250	253	253	252
자폐성장애	3	4	6	8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3	25	27	29
정신장애	33	39	47	54	64	75	82	87	95	96	95	95	96	97	99	100	101	102	103
신장장애	28	32	35	38	42	45	48	50	54	57	60	63	67	70	74	78	84	88	92
심장장애	7	9	10	12	13	14	14	15	15	13	10	8	7	6	6	6	5	5	5
호흡기장애	-	-	7	10	12	13	14	15	16	16	15	14	13	12	12	12	12	12	12
간장애	-	-	3	4	5	6	6	7	8	8	8	9	9	10	10	11	12	13	13
안면장애	-	-	1	1	1	2	2	2	3	3	3	3	3	3	3	3	3	3	3
장루 · 요루장애	-	-	7	8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14	14	15	15	15
뇌전증장애	-	-	3	5	7	8	9	9	10	10	9	8	7	7	7	7	7	7	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현황,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0.11.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	2006	2020	1년

Checkpoint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 장애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1년 등록장애인이 2,519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까지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2017년 2,546천 명, 2018년 2,586천 명, 2019년 2,618천 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2005년 37.7%, 2010년 33.7%, 2016년 30.4%까지 감소하다 2017년 32.5%와 2018년 30.4%, 2019년 37.6%로 반복된 증감을 나타내고 있다.

* 장애범주는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0년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2003년에는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되었다. 한편, 2007년에는 기존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2014년에는 기존 간질장애를 뇌전증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표 5-2 시도별 · 성별 등록장애인 수 (2019)

(단위: 명, %)

시도	등록장애인 수			인구대비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국	2,618,918	1,513,206	1,105,712	5.05	5.85	4.26
서울	394,843	228,821	166,022	4.06	4.82	3.33
부산	175,378	103,538	71,840	5.14	6.18	4.13
대구	125,485	73,112	52,373	5.15	6.07	4.25
인천	144,574	86,344	58,230	4.89	5.83	3.95
광주	70,177	39,573	30,604	4.82	5.49	4.16
대전	73,222	42,632	30,590	4.96	5.79	4.14
울산	51,014	30,794	20,220	4.44	5.22	3.62
세종	12,046	7,176	4,870	3.54	4.23	2.85
경기	559,878	332,872	227,006	4.23	5.00	3.45
강원	101,484	58,715	42,769	6.58	7.57	5.58
충북	97,688	55,965	41,723	6.11	6.91	5.28
충남	133,724	76,495	57,229	6.30	7.07	5.49
전북	132,364	71,949	60,415	7.28	7.96	6.60
전남	141,888	75,459	66,429	7.59	8.05	7.13
경북	180,898	101,237	79,661	6.79	7.54	6.02
경남	187,968	108,545	79,423	5.59	6.42	4.75
제주	36,287	19,979	16,308	5.41	5.92	4.89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9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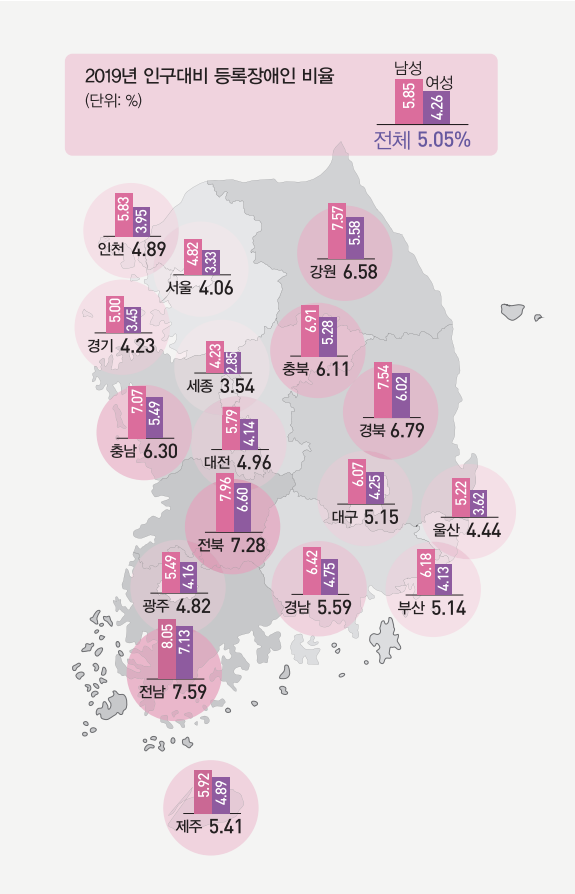


표 5-3 연령별 ·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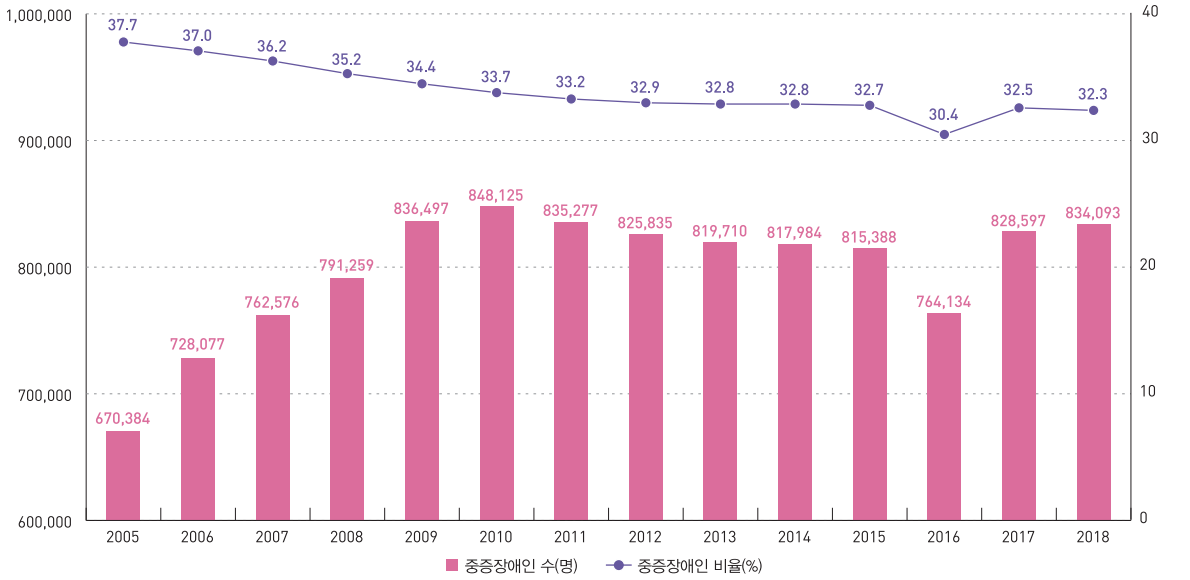
(단위: 명)

연령 구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계
계	585,734	399,669	985,403	927,472	706,043	1,633,515	1,513,206	1,105,712	2,618,918
0~9세	17,442	8,399	25,841	3,356	1,923	5,279	20,798	10,322	31,120
10~19세	34,409	17,852	52,261	4,265	3,122	7,387	38,674	20,974	59,648
20~29세	50,849	26,954	77,803	12,202	6,401	18,603	63,051	33,355	96,406
30~39세	46,521	28,622	75,143	40,750	13,162	53,912	87,271	41,784	129,055
40~49세	70,785	43,857	114,642	106,458	32,370	138,828	177,243	76,227	253,470
50~59세	117,885	68,342	186,227	206,905	82,994	289,899	324,790	151,336	476,126
60~69세	118,642	72,789	191,431	240,441	152,177	392,618	359,083	224,966	584,049
70~79세	88,248	72,203	160,451	204,656	216,593	421,249	292,904	288,796	581,700
80~89세	37,441	52,173	89,614	98,846	171,915	270,761	136,287	224,088	360,375
90~99세	3,461	8,260	11,721	9,466	24,866	34,332	12,927	33,126	46,053
100세 이상	51	218	269	127	520	647	178	738	916

주: 2019년도 이전자료는 1~6급의 등급으로 구분되었으나, 2019년도 이후자료는 장애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9 (http://kosis.kr에서 2020.11.29. 인출)

그림 5-1 장애인구 중 중증장애인 비율 (2005~2018)

(단위: 명, %)



주: 1) 2005 ~ 2017년 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1~3급에 해당함.
2) 2018년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며, 뇌병변 · 시각 · 지적 · 자폐성 · 정신 · 심장 · 호흡기 · 뇌전증장애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3급 장애인도 인정함(단, 호흡기 · 뇌전증장애 3급은 2010년부터 중증으로 인정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각 연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 눈에 보는 2019 장애인 통계, 2019

01-1
연 관

장애출현율

Prevalence of Disability

지표 정의

우리나라의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 우리나라의 장애출현율은 「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근거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해 추정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우리나라 법정 장애범주에 해당되는 추정장애인 수}}{\text{전체 인구}} \times 100$

표 5-4 연도별 장애출현율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1	2014	2017
등록장애인 수	907,571	1,669,329	2,517,312	2,501,112	2,511,051
추정장애인 수	1,449,496	2,148,686	2,683,477	2,726,910	2,668,411
장애인 등록률	62.6	77.7	93.8	91.7	94.1
장애출현율	3.09	4.59	5.61	5.59	5.39

주: 1) 등록장애인 수는 각 조사 당시 보고된 자료를 활용함.
2)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는 가구표본조사방식이 아닌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출현율을 파악하지 않았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https://kosis.kr에서 2020.11.1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1990	2017	3년

02
대 표

장애인의 ADL(IADL) 제한율

Prevalence of ADL(IADL) Limitation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신체활동으로, 자신의 육체를 돌보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계속 반복되는 옷 입기나 세수하기,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의미하며 몸단장하기, 식사 준비하기, 근거리 외출하기 등 단순한 신체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ADL(IADL) 제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5 장애 정도별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 (2017)

(단위: %)

구분	전체			중증(1~3급)			경증(4~6급)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옷 벗고 입기	80.7	16.6	2.7	61.7	32.5	5.9	92.9	6.6	0.6
목욕하기	75.6	20.6	3.9	55.1	36.6	8.4	88.9	10.2	0.9
양치질하기	89.2	8.8	1.9	76.2	19.4	4.4	97.4	2.2	0.4
음식물넘기기	97.2	1.7	1.1	94.1	3.8	2.1	99.3	0.4	0.3
식사하기	91.9	6.7	1.3	82.6	14.4	2.9	97.8	1.9	0.3
누운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94.5	4.3	1.2	89.4	8.1	2.5	97.7	1.9	0.4
옮겨앉기	92.1	6.2	1.7	85.2	11.3	3.6	96.8	2.8	0.5
앉은자세 유지	93.0	5.7	1.2	87.6	9.9	2.5	96.6	3.0	0.4
보행	75.2	20.9	3.9	65.5	26.1	8.4	81.4	17.6	1.0
이동	68.8	26.7	4.5	53.8	36.0	10.1	78.4	20.7	0.9
배변	91.5	6.3	2.2	83.4	11.9	4.6	96.8	2.6	0.6
배뇨	91.6	6.2	2.2	84.5	10.9	4.6	96.2	3.1	0.6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표 5-6 장애 정도별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 (2017)

(단위: %)

구분	전체			중증(1~3급)			경증(4~6급)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전화사용하기	77.6	17.5	4.8	60.1	29.2	10.7	88.8	10.2	0.9
물건사기	72.4	21.5	6.1	49.3	37.4	13.3	63.6	28.9	7.5
식사준비(만 13세 이상)	63.6	28.9	7.5	37.7	45.8	16.5	79.6	18.4	1.9
청소(만 13세 이상)	62.3	30.3	7.4	37.9	46.2	15.8	77.6	20.3	2.1
빨래하기(만 13세 이상)	63.7	28.8	7.4	39.5	44.3	16.2	78.7	19.3	2.0
약 챙겨먹기(만 13세 이상)	85.2	12.2	2.6	67.9	26.2	5.8	96.0	3.5	0.5
금전관리	71.9	20.9	7.3	48.4	35.4	16.2	86.9	11.6	1.5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62.7	27.9	9.4	38.5	41.4	20.2	78.4	19.2	2.5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1990	2017	3년

Checkpoint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 제한율을 장애 정도로 구분해보면 경증(4~6급)의 경우 목욕하기, 보행, 이동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90% 이상의 완전 자립을 보였고 중증(1~3급)은 옷 벗고 입기, 목욕하기, 이동, 보행에서 완전 도움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제한율은 중증(1~3급)은 대중교통수단 이용(20.2%), 경증(4~6급)은 물건사기(7.5%)의 완전 도움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02-1
연 관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Need for Help with Daily Activitie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는 장애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느 정도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혹은 남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를 '1. 혼자서 스스로, 2. 대부분 혼자서, 3. 일부 도움 필요, 4. 대부분 도움 필요, 5. 거의 남의 도움 필요'와 같이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도움 필요 정도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7 장애유형별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2017)

(단위: %)

구분	계	혼자서 스스로	대부분 혼자서	일부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거의 남의 도움 필요
전체	100.0	46.9	19.2	19.5	8.9	5.5
지체장애	100.0	58.3	20.5	14.4	4.4	2.4
뇌병변장애	100.0	13.4	13.5	28.8	21.0	23.4
시각장애	100.0	64.0	12.6	12.8	8.1	2.6
청각장애	100.0	45.8	28.0	19.3	4.7	2.2
언어장애	100.0	28.2	32.4	23.4	16.0	-
지적장애	100.0	9.5	11.5	41.6	26.1	11.2
자폐성장애	100.0	2.9	11.1	25.7	35.0	25.3
정신장애	100.0	40.1	18.4	29.9	9.0	2.6
신장장애	100.0	49.4	21.2	22.2	5.5	1.7
심장장애	100.0	56.5	25.9	17.5	-	-
호흡기장애	100.0	29.2	26.0	36.3	8.1	0.4
간장애	100.0	84.6	12.1	1.6	-	1.7
안면장애	100.0	84.2	14.2	1.7	-	-
장루 · 요루장애	100.0	29.7	52.4	16.1	0.9	0.8
뇌전증장애	100.0	62.8	12.4	15.1	9.7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1990	2017	3년

03
대 표

장애인 복지시설 수

Number of Welfar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복지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 · 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본 지표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복지시설 수 = 거주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표 5-8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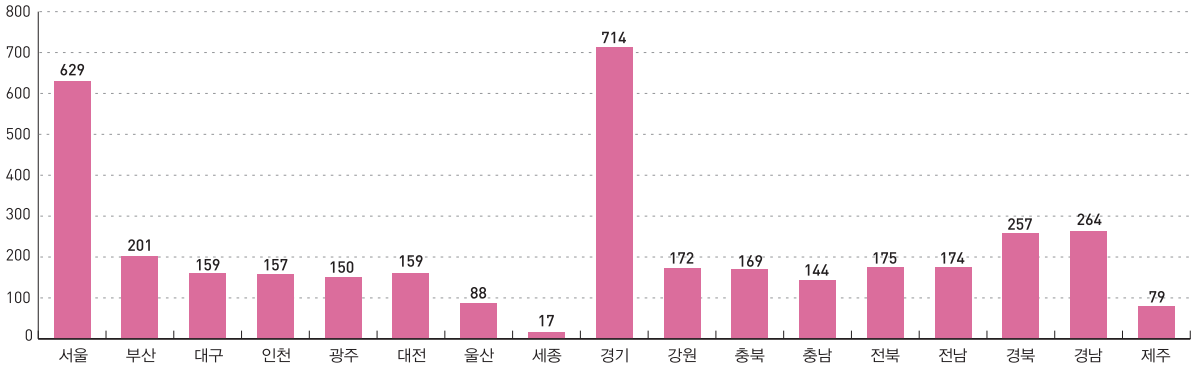
(단위: 개소)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거주시설	265	288	314	347	397	452	490	1,348	1,397	1,457	1,484	1,505	1,517	1,527	1,557
지역사회재활시설	1,049	1,125	1,286	1,419	1,563	1,701	1,820	1,140	1,184	1,213	1,248	1,303	1,333	1,373	1,468
직업재활시설	244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39	560	582	625	651	68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	-	-	-	-	-	16	16	16	17	17	17	17	17	17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	-	-	-	-	17	17	18	18	18	19	19	19	19
계	1,558	1,732	1,939	2,130	2,346	2,570	2,799	2,999	3,126	3,244	3,327	3,426	3,511	3,587	3,744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보건복지부, 2019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그림 5-2 시도별 장애인 복지시설 수 (2019)

(단위: 개소)



주: 시 · 도 비교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대체로 광역 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있어 제외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0	1년

Checkpoint

2012년에 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개소 수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기존 생활시설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로 개편된 것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시설 수는 모든 유형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2013년을 기점으로 그 증가 추세가 소폭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년 200개소 이상의 복지시설이 새롭게 신설되던 양상이 2013년에는 127개소, 2014년에는 118개소, 2016년에는 99개소, 2017년 85개소, 2018년 76개 증가로 증가 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다시 157개가 증가하였다.

03-1
연 관

장애인 거주시설 수 및 거주인 수

Number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Residents

지표 정의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 · 요양 ·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본 지표를 통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비율 및 현황 등 시설 장애인 복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지체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 언어장애인, 지적 · 자폐성장애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한다.**

•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와 연도 말 기준 거주하는 실 인원수를 측정한다.

표 5-9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 (2009~2019)

(단위: 개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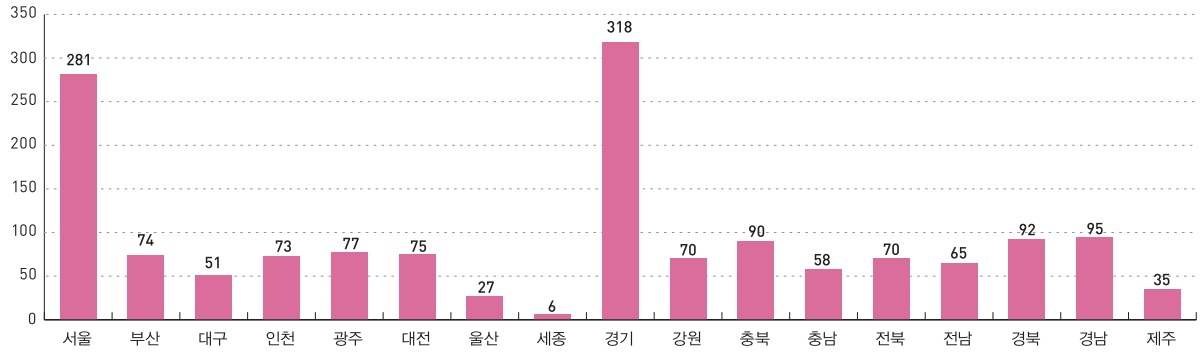
구분	총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단기거주 시설		공동생활 가정	
			소계		지체 ·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 · 언어장애인		지적 · 자폐성장애인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시설 수	인원
2009	397	23,243	235	13,048	38	2,230	14	760	11	519	172	9,539	153	9,728	9	467	91	-	531	-
2010	452	24,395	260	19,270	40	3,673	14	873	10	386	196	14,338	182	4,813	10	312	103	-	589	-
2011	490	25,345	289	14,038	39	2,102	15	787	9	361	226	10,788	191	10,798	10	509	119	-	637	-
2012	1,348	30,640	342	14,926	40	2,057	16	786	8	335	278	11,748	201	11,006	10	510	128	1,438	667	2,760
2013	1,397	31,152	356	15,069	39	1,978	16	770	8	320	293	12,001	216	11,412	9	473	131	1,432	685	2,766
2014	1,457	31,406	375	15,246	44	2,208	15	632	7	270	309	12,136	223	11,344	9	466	137	1,495	713	2,855
2015	1,484	31,222	383	14,920	39	1,668	16	628	7	255	321	12,369	233	11,314	10	541	141	1,548	717	2,899
2016	1,505	30,980	381	14,817	40	1,766	17	711	7	228	317	12,112	233	11,192	9	452	146	1,616	736	2,903
2017	1,517	30,693	376	14,630	39	1,690	17	700	7	232	313	12,008	233	10,996	9	429	147	1,699	752	2,939
2018	1,527	30,152	376	14,168	33	1,418	16	662	7	223	320	11,865	239	10,995	9	398	150	1,671	753	2,920
2019	1,557	33,954	368	13,620	33	1,304	15	615	7	216	313	11,485	251	10,978	9	382	159	1,733	770	2,949

주: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이었던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 거주시설로 재편됨.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거주시설 수와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함.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5-3 시도별 장애인 거주시설 수 (2019)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0	1년

03-2
연 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Number of Community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 · 치료 · 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전국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수를 말한다.

표 5-10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07~2019)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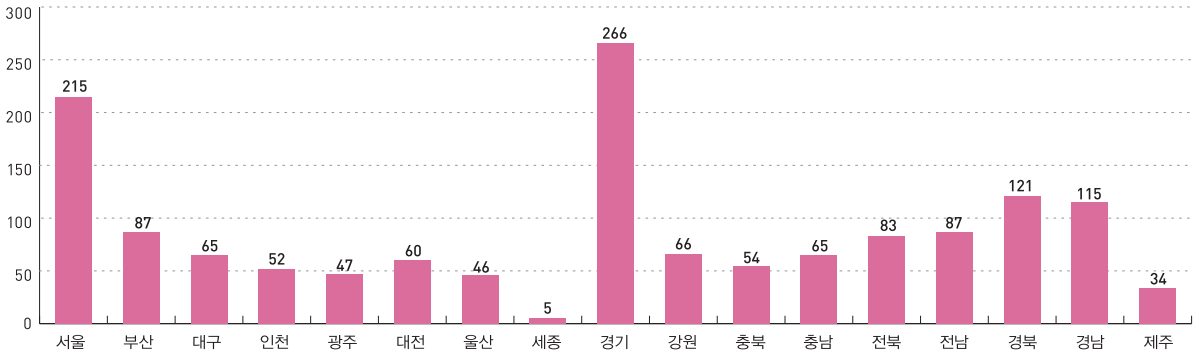
구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공동생활 가정	의료재활 시설
	계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 시설	장애인 체육관	생활이동 지원센터	수화통역 센터	기타			
2007	1,286	157	321	24	149	143	-	76	400	16
2008	1,419	171	365	26	152	154	-	84	450	17
2009	1,563	185	395	27	154	162	-	91	531	18
2010	1,701	191	443	27	154	176	-	103	589	18
2011	1,820	199	485	27	156	180	-	119	637	17
2012	1,140	205	526	28	156	191	-	-	-	-
2013	1,184	219	558	29	155	199	-	-	-	18
2014	1,213	223	592	29	156	193	20	-	-	18
2015	1,248	224	625	30	156	193	20	-	-	18
2016	1,303	231	663	34	159	194	22	-	-	20
2017	1,333	237	690	33	157	194	22	-	-	19
2018	1,373	241	724	33	159	195	21	-	-	19
2019	1,468	254	769	28	197	164	24	-	-	18

주: 1) 의료재활시설은 2012년부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위 자료에서는 함께 표기함.
2) 장애인 단기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2012년부터 거주시설로 포함되었음.
3) 2014년부터 점자도서관 및 점자도서출판시설이 기타 시설로 통계 산입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5-4 시도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 (2019)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0	1년

03-3
연 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Number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은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본 지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보장 지원정책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으로 구분되며, 본 지표는 각각의 시설 수를 측정한다.**

표 5-1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및 연말 이용 인원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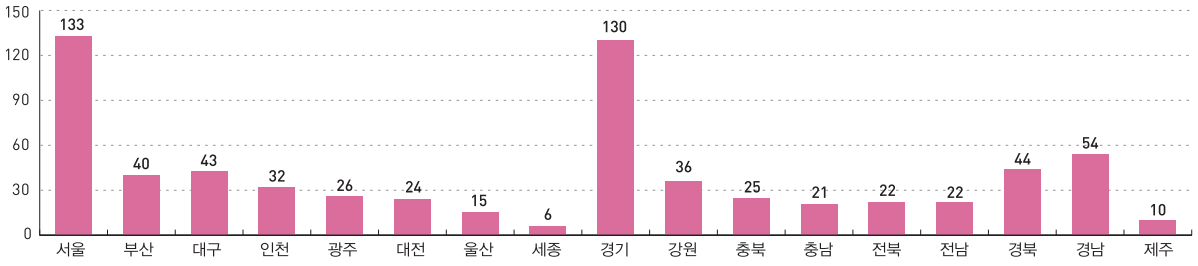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호작업장	시설 수	177	189	212	250	373	403	422	447	477	496	516	553	573	593
	이용 인원	4,835	5,238	5,559	6,574	10,009	10,680	11,374	12,086	12,930	13,616	14,335	14,960	15,262	15,796
근로사업장	시설 수	24	29	31	33	44	53	56	64	64	64	63	62	63	65
	이용 인원	1,246	1,344	1,422	1,516	1,761	2,190	2,384	2,653	2,721	2,798	2,762	2,724	2,690	2,823
직업적응훈련시설	시설 수	-	-	-	-	-	-	-	-	-	-	-	10	15	25
	이용 인원	-	-	-	-	-	-	-	-	-	-	-	157	253	437
총계	시설 수	319	339	364	386	417	456	478	511	541	560	579	625	651	683
	이용 인원	9,481	10,059	10,422	11,048	11,770	12,870	13,758	14,739	15,651	16,414	17,097	17,841	18,205	19,056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각 연도

그림 5-5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수 (2019)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1999	2020	1년

Checkpoint

2015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해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등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새롭게 명시하였다.

04
대 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Installation Rate of Convenience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 중 정해진 편의시설을 설치한 시설의 비율이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5년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데, 대상시설은 전국적으로 14만 2천여 개이며, 설치대상 편의시설은 모두 630여 만 개다.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의 전반적인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편의시설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설치된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text{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세부 항목 수}} \times 100$

표 5-12 연도별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3, 2018)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2013					2018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	설치기준 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
매개시설	2,729,583	1,897,877	69.5	1,706,129	62.5	3,873,162	3,167,681	81.8	2,998,098	77.4
내부시설	1,929,421	1,555,422	80.6	1,392,127	72.2	3,299,282	2,762,138	83.7	2,560,854	77.6
위생시설	1,250,126	583,869	46.7	478,392	38.3	1,482,821	1,049,239	70.8	953,768	64.3
안내시설	195,730	82,643	42.2	70,711	36.1	214,343	146,173	68.2	133,581	62.3
기타시설	200,514	163,868	81.7	147,789	73.7	124,179	93,540	75.3	84,392	68.0
비치용품	-	-	-	-	-	34,626	18,685	54.0	-	-
계	6,305,374	4,283,679	67.9	3,795,148	60.2	9,028,413	7,237,456	80.2	6,749,378	74.8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표 5-13 핵심항목 기준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율 (2018)

(단위: 개소, %)

편의시설 종류	핵심 세부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 설치 수	적정설치율(%)
매개시설	1,354,654	1,183,889	87.4	1,112,339	82.1
내부시설	1,115,619	1,061,126	95.1	1,015,005	91.0
위생시설	625,863	466,585	74.6	429,608	68.6
안내시설	68,931	53,308	77.3	48.786	70.8
기타시설	40,767	29,442	72.2	27,618	67.7
계	3,205,834	2,794,350	87.2	2,633,406	82.1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	1995	2018	5년

Checkpoint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전수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가장 최근은 2018년에 실시되었다.
적정설치율은 편의시설 종류별,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표 5-14 시도별 편의시설 설치율 (2018)

(단위: 개소, %)

시도	대상건물 수	설치기준항목 수	설치 수	설치율(%)	적정설치 수	적정설치율(%)
서울	27,856	1,281,950	1,126,201	87.9	1,084,340	84.6
부산	11,542	556,144	450,345	81.0	412,842	74.2
대구	8,206	426,993	344,582	80.7	322,959	75.6
인천	12,260	539,621	429,301	79.6	394,810	73.2
광주	7,065	352,632	289,910	82.2	282,980	80.2
대전	3,881	210,210	174,163	82.9	161,341	76.8
울산	3,887	191,761	163,218	85.1	157,194	82.0
세종	919	49,855	44,316	88.9	42,248	84.7
경기	38,247	1,760,119	1,446,055	82.2	1,366,155	77.6
강원	5,794	318,419	250,496	78.7	231,362	72.7
충북	8,632	446,844	316,577	70.8	279,507	62.6
충남	8,016	416,073	324,729	78.0	296,256	71.2
전북	11,317	551,305	425,521	77.2	392,363	71.2
전남	10,440	517,090	378,530	73.2	338,328	65.4
경북	11,842	605,288	450,702	74.5	412,590	68.2
경남	12,466	639,345	495,402	77.5	454,976	71.2
제주	3,577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계	185,947	9,034,890	7,243,294	80.2	6,754,701	74.8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2018

05
대 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Developmental Rehabilitation Services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장기의 정신적 ·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 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련 급여를 지급한다.

측정 산식

- 급여액 : 서비스 단가는 월 8회(주 2회), 회당 27,500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제한 금액
- 본인부담금 : 소득별로 차등 지원

(2019년 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차상위계층 (가형)	차상위계층 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정부지원금	월 22만 원	월 20만 원	월 18만 원	월 16만 원	월 14만 원
본인부담금	면제	월 2만 원	월 4만 원	월 6만 원	월 8만 원

표 5-15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3~2019)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46,979	50,769	51,609	52,200	52,830	55,802	62,360
이용액	8,052,683	8,563,030	8,622,253	8,652,818	8,691,978	9,070,412	10,071,097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5-16 월별 · 시도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8,825	8,954	8,948	9,150	9,202	9,203	9,204	9,054	9,151	9,215	9,306	9,363
부산	3,717	3,833	3,989	4,202	4,400	4,396	4,372	4,216	4,229	4,412	4,411	4,637
대구	2,714	2,764	2,751	2,804	2,896	2,894	2,950	2,909	2,968	3,019	3,023	3,048
인천	2,804	2,774	2,791	2,870	2,938	3,002	3,078	3,065	3,152	3,159	3,187	3,225
광주	2,620	2,566	2,492	2,465	2,533	2,542	2,542	2,527	2,524	2,549	2,590	2,568
대전	1,847	1,911	1,905	1,892	1,940	1,975	1,992	1,997	2,044	2,064	2,123	2,171
울산	1,020	1,154	1,190	1,201	1,250	1,256	1,318	1,334	1,358	1,364	1,440	1,445
세종	309	356	385	398	391	386	378	375	376	366	370	371
경기	13,206	13,294	13,892	14,321	14,461	14,484	14,743	14,795	14,866	15,048	15,253	15,359
강원	1,711	1,672	1,687	1,740	1,774	1,792	1,816	1,797	1,815	1,824	1,826	1,818
충북	1,412	1,397	1,413	1,405	1,464	1,487	1,523	1,577	1,596	1,605	1,680	1,732
충남	1,938	1,990	2,018	2,009	2,050	2,055	2,109	2,124	2,112	2,113	2,091	2,105
전북	2,627	2,608	2,568	2,591	2,584	2,599	2,590	2,585	2,610	2,614	2,613	2,812
전남	2,343	2,405	2,389	2,433	2,456	2,456	2,484	2,480	2,511	2,506	2,541	2,556
경북	3,514	3,708	3,713	3,769	3,839	3,856	3,853	3,802	3,795	3,781	3,753	3,810
경남	3,985	3,974	3,941	3,961	3,960	3,957	3,942	3,892	3,929	3,922	3,930	3,906
제주	1,110	1,078	1,159	1,210	1,260	1,319	1,396	1,432	1,456	1,464	1,446	1,434
합계	55,702	56,438	57,231	58,421	59,398	59,659	60,290	59,961	60,492	61,025	61,583	62,36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발달재활서비스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Checkpoint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9년 12월 말 기준 62,36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으며, 이용액도 2013년 12월 기준 8,053백만 원에서 2019년 12월 기준 10,071백만 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7 월별 · 등급별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9)

(단위: 명, 천 원)

구분	이용자 수						이용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합계	
1월	7,522	4,620	12,933	20,999	9,628	55,702	9,129,368
2월	7,529	4,584	13,764	21,039	9,522	56,438	9,145,653
3월	7,461	4,553	14,337	21,276	9,604	57,231	9,369,519
4월	7,503	4,571	14,811	21,783	9,753	58,421	9,575,639
5월	7,539	4,597	15,295	22,082	9,885	59,398	9,692,630
6월	7,539	4,606	15,428	22,180	9,906	59,659	9,698,608
7월	7,580	4,634	15,626	22,340	10,110	60,290	9,834,699
8월	7,561	4,641	15,291	22,026	10,442	59,961	9,727,393
9월	7,599	4,648	15,455	22,132	10,658	60,492	9,740,863
10월	7,607	4,684	15,563	22,291	10,880	61,025	9,923,431
11월	7,633	4,689	15,749	22,523	10,989	61,583	10,004,322
12월	7,672	4,699	15,955	22,890	11,144	62,360	10,071,097

06
대 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Users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후 신체기능과 자립생활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의거 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일 때 선정되며, 각 활동지원등급,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바우처를 지원한다.

측정 산식

- 활동지원급여 : 활동지원등급 등급을 설정하여(15등급) 각 등급별 최저 778천 원(15등급)에서 최대 6,221천 원(1등급)까지 산정
- 특별지원급여 : 출산(104만 원), 자립준비(26만 원), 보호자일시부재(26만 원)을 최대 6개월까지 한시적 지원
- 본인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금 차등 부과**(특별지원급여는 별도 본인부담금 없음)

표 5-18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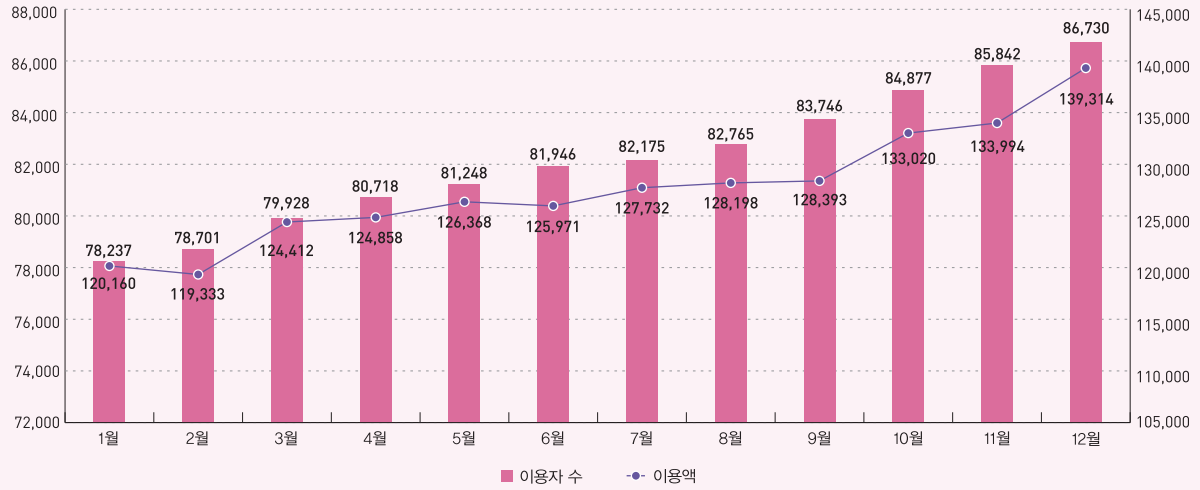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용자 수	48,335	53,870	60,521	66,534	72,193	78,202	86,730
이용액	50,001,289	56,552,453	66,203,438	73,955,751	81,734,439	102,590,834	139,313,650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5-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및 이용액 (2018)

(단위: 명, 백만 원)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Checkpoint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2019년 12월 기준 이용자 수는 86,730명, 이용액은 139,314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 수와 이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만 65세가 도래한 대상자 중 장기요양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과 시설 입소, 의료기관 입원 및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가 퇴소 또는 퇴원을 앞두고 있어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

**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 면제, 차상위계층은 2만원 정액 부과, 차상위 초과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180% 초과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함.

표 5-19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5,543	15,641	15,814	15,976	16,080	16,139	16,237	16,362	16,529	16,695	16,879	17,025
부산	5,761	5,793	5,855	5,916	5,972	6,006	6,052	6,113	6,149	6,221	6,292	6,361
대구	3,734	3,740	3,762	3,804	3,817	3,838	3,869	3,893	3,963	4,020	4,058	4,094
인천	4,458	4,496	4,564	4,609	4,666	4,683	4,708	4,722	4,763	4,842	4,899	4,942
광주	3,380	3,416	3,452	3,477	3,502	3,520	3,554	3,586	3,655	3,698	3,741	3,781
대전	3,353	3,384	3,447	3,473	3,490	3,518	3,559	3,565	3,585	3,633	3,655	3,709
울산	1,147	1,155	1,183	1,172	1,193	1,203	1,199	1,216	1,222	1,237	1,249	1,255
세종	297	308	323	331	336	342	344	364	374	377	385	396
경기	16,566	16,636	16,947	17,145	17,149	17,392	17,533	17,684	17,931	18,188	18,376	18,570
강원	2,017	2,016	2,069	2,104	2,134	2,144	2,155	2,165	2,205	2,245	2,283	2,303
충북	2,455	2,459	2,498	2,540	2,573	2,603	2,590	2,588	2,616	2,650	2,669	2,699
충남	3,420	3,438	3,508	3,548	3,522	3,546	3,574	3,580	3,619	3,664	3,711	3,761
전북	2,837	2,865	2,917	2,901	2,946	2,997	3,030	3,056	3,106	3,148	3,188	3,209
전남	3,192	3,214	3,256	3,284	3,341	3,371	3,411	3,444	3,464	3,538	3,596	3,635
경북	3,432	3,458	3,514	3,536	3,582	3,632	3,621	3,613	3,656	3,691	3,736	3,769
경남	5,622	5,661	5,780	5,842	5,873	5,932	5,657	5,708	5,784	5,895	5,970	6,060
제주	1,023	1,021	1,039	1,060	1,072	1,080	1,082	1,106	1,125	1,135	1,155	1,161
합계	78,237	78,701	79,928	80,718	81,248	81,946	82,175	82,765	83,746	84,877	85,842	86,730

표 5-20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액 (2019)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5,526,768	25,567,311	26,541,120	26,570,211	26,910,982	26,692,060	27,125,876	27,203,744	27,249,170	28,172,414	28,387,505	29,455,528
부산	9,925,613	9,835,585	10,180,877	10,163,087	10,297,943	10,272,674	10,408,682	10,484,789	10,406,054	10,788,387	10,857,540	11,320,561
대구	6,185,069	6,134,429	6,358,587	6,403,455	6,508,958	6,481,342	6,570,734	6,654,432	6,679,039	6,891,788	6,921,737	7,217,617
인천	7,172,457	7,108,871	7,462,191	7,490,081	7,591,331	7,536,719	7,742,873	7,721,666	7,699,730	8,000,964	8,075,072	8,373,736
광주	5,508,008	5,521,919	5,755,660	5,717,581	5,800,219	5,792,814	5,866,616	5,932,454	5,952,305	6,159,087	6,176,088	6,457,508
대전	5,042,076	5,027,480	5,180,834	5,173,675	5,231,809	5,218,609	5,284,408	5,275,236	5,297,630	5,440,273	5,483,472	5,709,115
울산	1,552,866	1,537,209	1,621,812	1,603,625	1,650,992	1,632,595	1,648,297	1,649,458	1,657,537	1,716,984	1,737,759	1,789,732
세종	373,582	384,196	409,627	413,571	429,215	427,516	436,776	457,688	477,501	489,851	509,336	530,363
경기	25,576,620	25,402,713	26,460,973	26,664,400	26,745,233	26,893,609	27,369,883	27,478,062	27,664,593	28,586,389	28,898,662	29,959,589
강원	2,938,784	2,845,725	3,040,502	3,095,278	3,131,802	3,082,189	3,180,380	3,173,036	3,151,425	3,325,349	3,336,173	3,508,206
충북	3,766,145	3,704,921	3,881,865	3,932,657	3,990,489	3,967,699	4,008,924	3,991,261	3,969,711	4,122,636	4,128,563	4,299,953
충남	4,554,923	4,513,468	4,708,687	4,746,965	4,722,932	4,704,103	4,779,370	4,789,611	4,791,248	4,956,626	5,012,441	5,213,948
전북	4,187,454	4,121,943	4,353,040	4,278,021	4,433,862	4,405,076	4,524,668	4,539,893	4,552,695	4,753,858	4,731,435	4,987,370
전남	4,352,897	4,305,531	4,502,455	4,532,837	4,622,927	4,624,482	4,755,681	4,749,691	4,743,469	4,962,799	5,014,337	5,176,323
경북	4,687,282	4,562,304	4,821,587	4,829,527	4,965,956	4,915,667	4,957,920	4,940,107	4,906,732	5,122,215	5,111,612	5,365,657
경남	7,396,385	7,353,107	7,667,553	7,753,043	7,819,956	7,803,624	7,560,738	7,600,621	7,621,756	7,929,084	7,987,118	8,280,272
제주	1,413,223	1,405,889	1,465,094	1,490,120	1,513,815	1,519,862	1,510,455	1,556,318	1,572,268	1,600,894	1,624,965	1,668,173
합계	120,160,150	119,332,600	124,412,463	124,858,134	126,368,421	125,970,642	127,732,283	128,198,067	128,392,864	133,019,597	133,993,813	139,313,650

06-1
대 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An Overview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Providing organization and provider

지표 정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 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제공기관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공모에 의거 심사를 통해 지정되며, 활동보조기관,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기관으로 구분된다. 활동지원인력도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로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등 자격기준은 활동내역에 따라 상이하다. 본 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별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의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군구청에 지정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결제이력이 있는 제공기관 수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등록되어 있고, 해당 지역에서 연간 1회 이상 서비스 제공이력이 있는 활동지원인력 수

표 5-21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 (2013~2019)

(단위: 개소, 명)

구분	제공기관 수							제공인력 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801	824	862	883	904	908	919	40,448	46,812	52,761	58,102	62,629	68,673	78,044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5-22 월별 · 시도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 (2019)

(단위: 개소)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40	132	128	125	121	117	121	123	126	123	122	125
부산	69	69	69	68	63	63	64	63	64	65	64	64
대구	33	31	31	31	31	30	32	33	33	34	34	34
인천	42	39	40	39	39	37	38	38	38	37	39	39
광주	30	29	28	28	28	30	31	31	31	31	31	31
대전	23	23	23	23	23	23	23	24	23	23	22	22
울산	11	11	11	10	10	10	10	10	11	11	11	11
세종	6	6	6	6	6	6	5	6	6	6	7	7
경기	153	164	169	171	175	178	176	179	178	182	182	181
강원	43	44	44	43	43	44	44	44	44	43	43	43
충북	32	31	31	31	30	30	30	30	30	30	30	30
충남	49	49	49	49	48	49	50	50	50	51	50	51
전북	52	52	52	50	50	50	51	51	51	53	53	53
전남	66	68	67	67	66	65	65	65	66	66	66	67
경북	60	60	60	60	62	64	61	61	62	62	62	62
경남	88	89	89	92	92	92	92	91	91	90	89	89
제주	8	8	9	9	9	9	9	10	10	10	10	10
합계	905	905	906	902	896	897	902	909	914	917	915	919

주: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수는 1건 이상 결제이력이 있는 기관 수이며, 합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중복을 제외한 전체 제공기관 수의 합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2013	2019	월

Checkpoint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수의 증가로 제공기관 수 및 제공인력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2월 기준 제공기관 수는 919개, 제공인력 수는 78,044명으로 나타났다.

* ①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표 5-23 시도별 · 월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인력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4,573	13,624	13,112	12,861	12,340	12,142	12,238	12,124	12,603	12,545	12,676	13,448
부산	5,238	5,264	5,342	5,403	5,474	5,530	5,707	5,638	5,651	5,757	5,815	5,899
대구	3,460	3,309	3,345	3,410	3,238	3,154	3,134	3,275	3,195	3,374	3,418	3,434
인천	3,918	3,613	3,800	3,840	3,877	3,603	3,710	3,653	3,694	3,643	3,751	3,787
광주	3,364	3,385	3,437	3,462	3,507	3,521	3,563	3,580	3,638	3,692	3,728	3,778
대전	3,272	3,294	3,377	3,418	3,416	3,454	3,499	3,457	3,487	3,512	3,376	3,433
울산	979	982	1,022	1,034	1,051	1,060	1,061	1,070	1,078	1,086	1,107	1,109
세종	193	205	217	221	233	238	243	312	318	333	519	533
경기	14,407	15,723	16,790	17,587	18,344	19,111	19,115	19,719	19,562	20,145	20,350	19,955
강원	1,532	1,790	1,818	1,606	1,626	1,635	1,640	1,653	1,674	1,717	1,767	1,783
충북	2,131	2,128	2,182	2,228	2,260	2,280	2,284	2,295	2,298	2,328	2,361	2,378
충남	2,653	2,611	2,680	2,721	2,740	2,753	2,885	2,892	2,913	2,976	3,027	3,056
전북	2,253	2,280	2,327	2,353	2,380	2,406	2,456	2,469	2,498	2,541	2,581	2,633
전남	2,523	2,538	2,585	2,649	2,705	2,731	2,771	2,799	2,829	2,902	2,947	2,994
경북	2,769	2,776	2,819	2,847	3,082	3,208	3,172	3,184	3,368	3,441	3,470	3,531
경남	4,694	4,890	4,987	5,187	5,226	5,278	5,273	5,228	5,291	5,221	5,296	5,373
제주	788	787	808	835	848	862	861	877	893	903	913	920
합계	68,747	69,199	70,648	71,662	72,347	72,966	73,612	74,225	74,990	76,116	77,102	78,044

07
대 표

장애아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Number of the Child Care Faciliti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ir Users

지표 정의

장애아 어린이집은 장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보다 장애아가 많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와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구분한다. 이용 아동은 각각 시설의 연도 말 이용 현원을 의미한다.

• 본 지표를 통해 장애아 보육정책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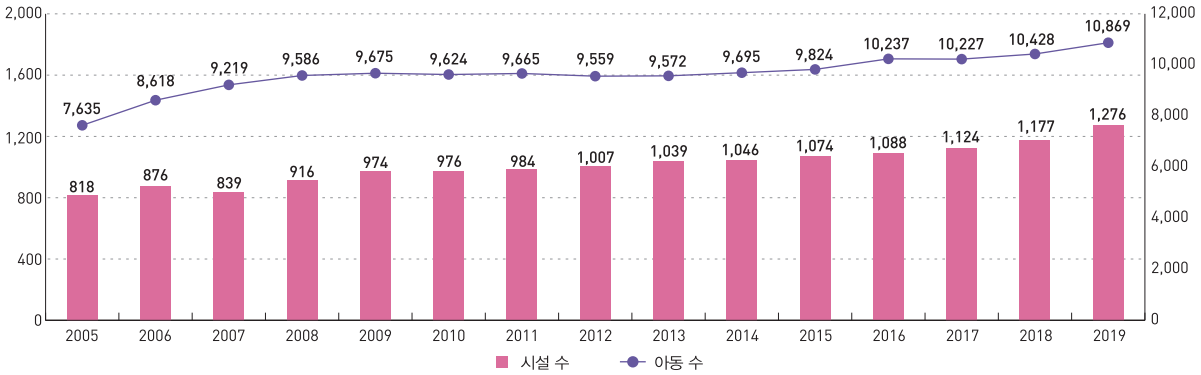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및 이용 아동 수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통합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및 이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현 인원

그림 5-7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인원 (2005~2019)

(단위: 개소, 명)



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수와 장애아동 현원 합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표 5-24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05~2019)

(단위: 개소, 명)

유형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설 수	장애아 전문	132	144	154	160	168	166	169	171	172	174	175	177	178	177	176
	장애아 통합	686	732	685	756	806	810	815	836	867	872	899	911	946	1,000	1,100
이용 아동 수	장애아 전문	5,053	5,406	5,887	6,068	6,206	6,137	6,152	5,994	5,883	5,860	5,895	6,158	6,161	6,239	6,301
	장애아 통합	2,582	3,212	3,332	3,518	3,469	3,487	3,513	3,565	3,689	3,835	3,929	4,079	4,066	4,189	4,568
시설 소계		818	876	839	916	974	976	984	1,007	1,039	1,046	1,074	1,088	1,124	1,177	1,276
이용 아동 소계		7,635	8,618	9,219	9,586	9,675	9,624	9,665	9,559	9,572	9,695	9,824	10,237	10,227	10,428	10,869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2004	2019	1년

Checkpoint

2000년대 중반 장애아 어린이집과 이용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전년대비 시설 수는 99개소, 이용 아동은 441명 증가하였다. 통합보육이 강조되면서 시설 증가의 대부분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수는 2009년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5-25 시도별 · 유형별 장애아 어린이집 수 및 이용 인원 (2019)

(단위: 개소, 명)

시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합계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시설 수	이용 아동
서울	8	203	368	1,664	376	1,867
부산	16	553	45	149	61	702
대구	17	790	13	109	30	899
인천	6	125	80	416	86	541
광주	11	506	1	18	12	524
대전	4	96	23	66	27	162
울산	9	344	17	87	26	431
세종	1	25	5	7	6	32
경기	21	624	367	1,492	388	2,116
강원	4	122	19	72	23	194
충북	7	205	10	22	17	227
충남	10	304	30	45	40	349
전북	10	351	11	64	21	415
전남	13	532	14	30	27	562
경북	14	732	18	87	32	819
경남	21	686	31	114	52	800
제주	4	103	48	126	52	229
합계	176	6,301	1,100	4,568	1,276	10,869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보육통계, 2020

08
대 표

특수교육대상자 수

Number of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지표 정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 · 평가 결과에 따라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한 장애영유아 및 학생 수를 의미한다.

측정 산식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영아 및 학생 수

표 5-26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2007~2020)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장애영아	-	-	288	290	356	403	578	680	742	656	5,986	6,212	6,521	6,975
유치원	3,125	3,236	3,303	3,225	3,367	3,675	4,190	4,219	4,744	5,186				
초등학교	32,752	33,974	34,035	35,294	35,124	34,458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중학교	15,267	16,833	17,946	19,375	20,508	21,535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고등학교	13,349	15,686	17,553	19,111	20,439	21,649	22,466	22,973	23,422	23,943	28,644	27,749	26,884	26,100
전공과	1,447	1,755	2,062	2,416	2,871	3,292	3,640	4,063	4,460	4,602				

주: 장애영아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용 등임.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5-27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2007~2020)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시각장애	2,292	2,103	2,113	2,398	2,315	2,303	2,220	2,130	2,088	2,035	2,026	1,981	1,937	1,908
청각장애	2,864	3,073	3,385	3,726	3,676	3,744	3,666	3,581	3,491	3,401	3,358	3,268	3,225	3,132
지적장애	36,041	40,222	40,601	42,690	45,132	46,265	47,120	47,667	47,716	47,258	48,084	48,747	49,624	50,693
지체장애	7,739	8,788	9,659	10,367	10,727	11,279	11,233	11,209	11,134	11,019	10,777	10,439	10,200	9,928
정서행동장애	7,695	7,681	3,537	3,588	2,817	2,713	2,754	2,605	2,530	2,221	2,269	2,221	2,182	1,993
자폐성장애	-	-	4,647	5,463	6,809	7,922	8,722	9,334	10,045	10,985	11,422	12,156	13,105	13,917
의사소통장애	1,185	1,226	1,324	1,591	1,631	1,819	1,953	1,966	2,045	2,089	2,038	2,081	2,204	2,404
학습장애	6,982	6,754	6,526	6,320	5,606	4,724	4,060	3,362	2,770	2,327	2,040	1,627	1,409	122
건강장애	1,142	1,637	1,945	2,174	2,229	2,195	2,157	2,029	1,935	1,675	1,626	1,758	1,763	1,785
발달지체	-	-	1,450	1,394	1,723	2,048	2,748	3,395	4,313	4,940	5,713	6,502	7,309	8,434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표 5-28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수 (2007~2020)

(단위: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65,940	71,484	75,187	79,711	82,665	85,012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일반학교 일반학급	7,637	10,227	12,006	13,746	14,741	15,647	15,930	15,648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일반학교 특수학급	35,340	37,857	39,380	42,021	43,183	44,433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특수학교	22,963	23,400	23,606	23,776	24,580	24,720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특수교육지원센터	-	-	195	168	161	212	384	539	563	494	401	418	375	316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20	1년

*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서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실태조사가 실시됨.

Checkpoint

특수교육대상자는 2005년 이후 2015년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으며, 2016년 소폭 감소 후 201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증감 현황을 학교급별로 보면 장애영유아,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에서는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중학교는 2013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만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나머지 유형에서는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교육기관별로는 전년대비 일반학교 특수학급대상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특수학급에 대한 장애인의 교육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08-1
연 관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비율

Inclusion Rates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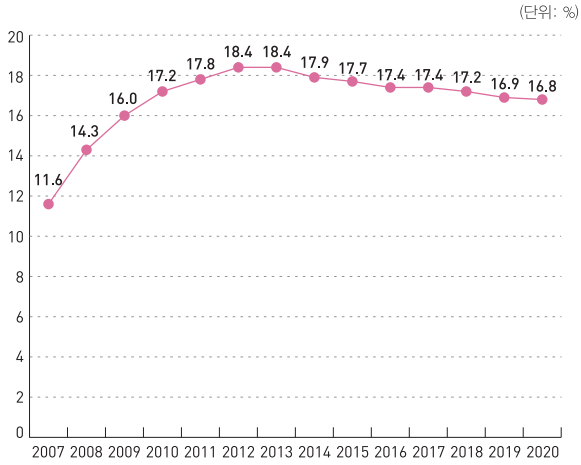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학생 중 전일제 통합학급에서 완전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해당 지표는 장애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으로 질 높은 통합교육을 제공받는지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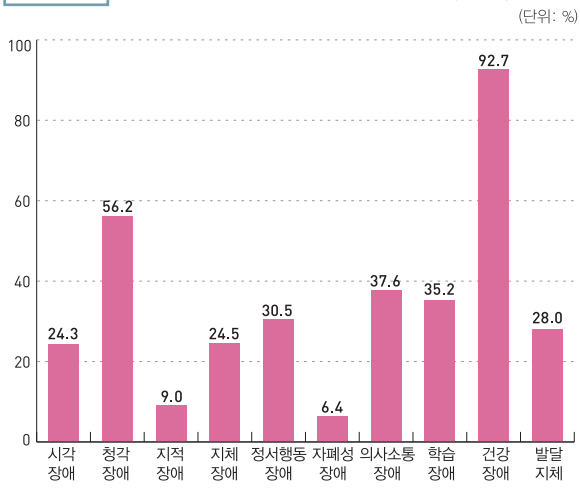
- $\frac{\text{일반학교 일반 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text{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times 100$

그림 5-8 전일제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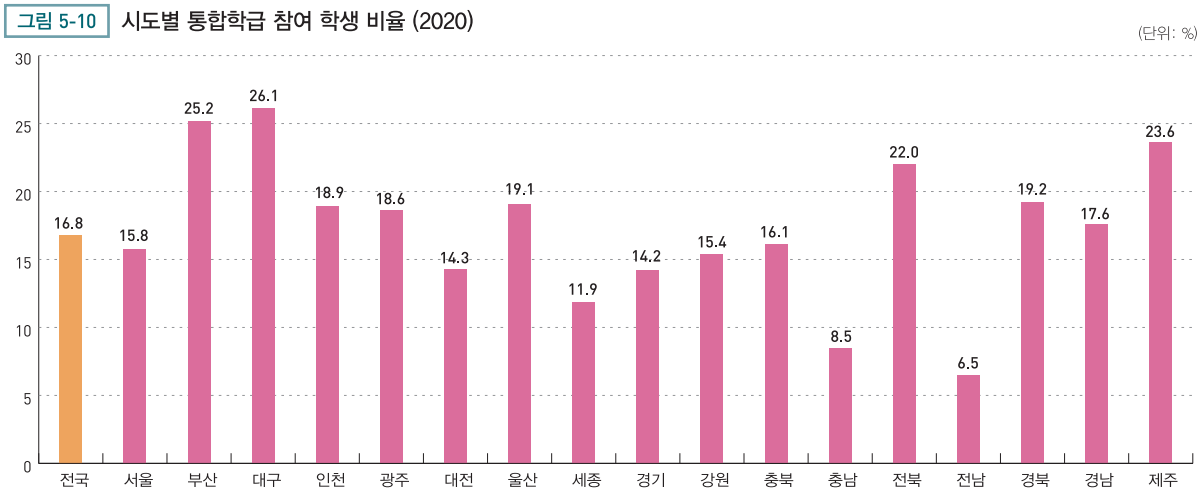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각 연도

그림 5-9 장애유형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20)



자료: 교육부, 2020 특수교육통계, 2020

그림 5-10 시도별 통합학급 참여 학생 비율 (2020)



자료: 교육부, 2020 특수교육통계,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08	2020	1년

* 2001년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연구」에서 최초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부터 통계청 승인을 받아 특수교육실태조사가 실시됨.

09
대 표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

An Overview of Educational Benefit for Parent and Children With Disabilites : Provision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1~3등급 장애인 가구 자녀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측정 산식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중 1~3급의 중증장애를 가진 초 · 중 · 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
- 지급액 : 입학금 · 수업료(고등학생) 금액 전액, 교과서대(고등학생) 125.9천 원(연 1회), 부교재비(초 · 중학생, 특수교육대상자) 38.7천 원(연 1회), 학용품비(중 · 고등학생) 52.6천 원(연 2회 분할지원) 등

(2015년 기준)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최저생계비 130%(원)	802,465	1,366,362	1,767,594	2,168,828	2,570,061	2,971,293	3,37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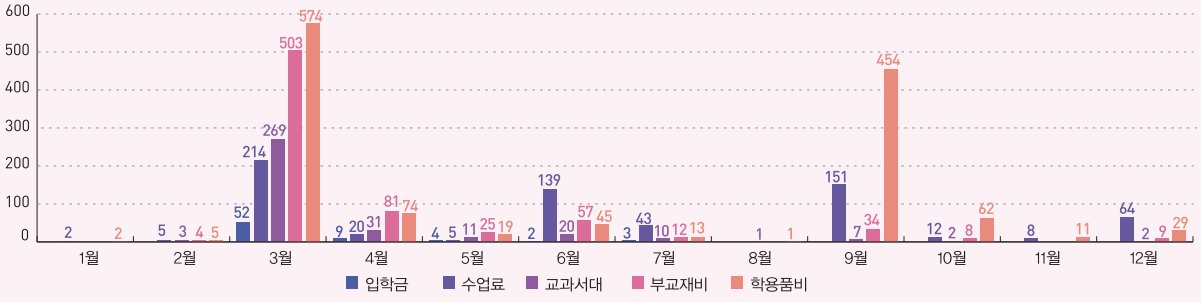
표 5-29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3~2015)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5,445	4,298	3,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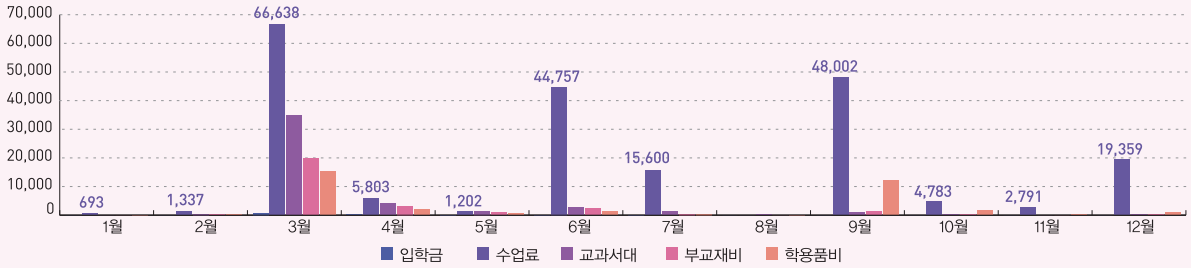
그림 5-11 월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5)

(단위: 건)



(단위: 천 원)

그림 5-12 월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액 (2015)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5	월

Checkpoint 2014년 대비 2015년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약 28% 감소(2014년 4,298건→ 2015년 3,111건)했으며 지급금액은 약 40% 감소(2014년 540백만 원→2015년 322백만 원)하였다.

표 5-30 월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015)

(단위: 건, 천 원)

구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합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1월	-	-	2	693	-	-	-	-	2	53	4	746
2월	-	-	5	1,337	3	389	4	155	5	132	17	2,011
3월	52	781	214	66,638	269	34,818	503	19,698	574	15,158	1,612	137,094
4월	9	140	20	5,803	31	4,144	81	3,206	74	1,946	215	15,239
5월	4	59	5	1,202	11	1,425	25	958	19	526	64	4,170
6월	2	30	139	44,757	20	2,720	57	2,283	45	1,315	263	51,105
7월	3	43	43	15,600	10	1,285	12	464	13	393	81	17,785
8월	-	-	-	-	1	130	-	-	1	53	2	182
9월	-	-	151	48,002	7	907	34	1,316	454	12,205	646	62,429
10월	-	-	12	4,783	2	259	8	310	62	1,708	84	7,060
11월	-	-	8	2,791	-	-	-	-	11	289	19	3,081
12월	-	-	64	19,359	2	259	9	348	29	894	104	20,860
합계	70	1,053	663	210,965	356	46,333	733	28,738	1,289	34,671	3,111	321,761

그림 5-13 시도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 건수 (2015.12 기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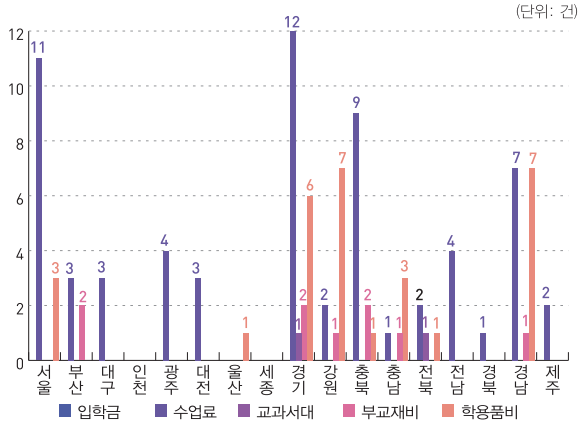


그림 5-14 시도별 장애인 교육비 지급액 (2015.12 기준)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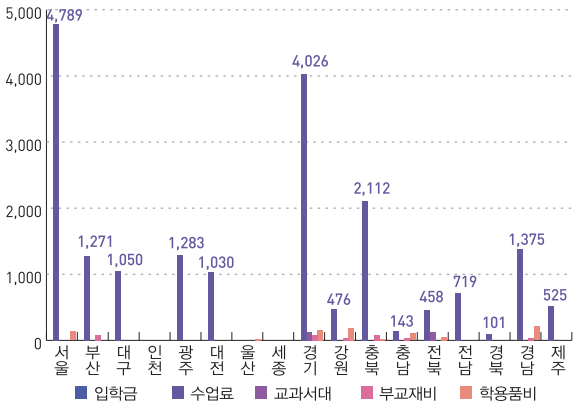


표 5-31 시도별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2015.12 기준)

(단위: 건, 천 원)

시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합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서울	-	-	11	4,789	-	-	-	-	3	132	14	4,920
부산	-	-	3	1,271	-	-	2	77	-	-	5	1,348
대구	-	-	3	1,050	-	-	-	-	-	-	3	1,050
인천	-	-	-	-	-	-	-	-	-	-	-	-
광주	-	-	4	1,283	-	-	-	-	-	-	4	1,283
대전	-	-	3	1,030	-	-	-	-	-	-	3	1,030
울산	-	-	-	-	-	-	-	-	1	26	1	26
세종	-	-	-	-	-	-	-	-	-	-	-	-
경기	-	-	12	4,026	1	130	2	77	6	158	21	4,391
강원	-	-	2	476	-	-	1	39	7	184	10	699
충북	-	-	9	2,112	-	-	2	77	1	26	12	2,216
충남	-	-	1	143	-	-	1	39	3	105	5	287
전북	-	-	2	458	1	130	-	-	1	53	4	640
전남	-	-	4	719	-	-	-	-	-	-	4	719
경북	-	-	1	101	-	-	-	-	-	-	1	101
경남	-	-	7	1,375	-	-	1	39	7	210	15	1,624
제주	-	-	2	525	-	-	-	-	-	-	2	525
합계	-	-	64	19,359	2	259	9	348	29	894	104	20,860

10
대 표

장애인 교육수준

Education status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조사대상 장애인의 최종학력을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따라 측정한 값의 분율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미취학,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3년제 이하), 대학(4년제 이상), 대학원 이상'과 같이 8점 척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 $\frac{\text{교육수준(최종학력) 각 문항에 대한 응답 장애인 수}}{\text{조사대상 장애인 수}} \times 100$

표 5-32 장애유형별 장애인 교육수준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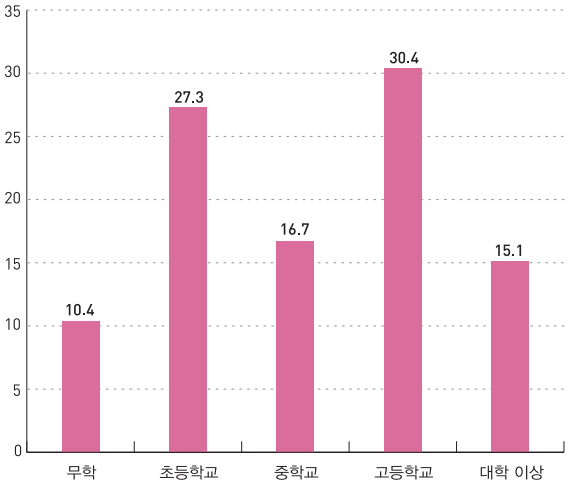
(단위: %)

구분	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전체	100.0	10.4	27.3	16.7	30.4	15.1
지체장애	100.0	11.2	28.9	18.8	27.6	13.5
뇌병변 장애	100.0	9.3	26.3	15.6	29.6	19.1
시각장애	100.0	8.9	26.9	15.8	29.4	19.0
청각장애	100.0	18.6	32.7	14.2	22.3	12.2
언어장애	100.0	18.6	25.4	18.6	25.1	12.3
지적장애	100.0	7.4	23.3	12.2	48.5	8.6
자폐성 장애	100.0	3.1	31.1	7.6	51.5	6.7
정신장애	100.0	1.3	15.1	11.9	42.1	29.6
신장장애	100.0	2.8	22.6	17.8	35.2	21.6
심장장애	100.0	0.0	23.5	9.8	42.8	23.8
호흡기 장애	100.0	8.1	14.4	28.0	38.3	11.2
간장애	100.0	2.7	1.9	12.6	48.2	34.6
안면장애	100.0	1.7	14.1	15.0	46.8	22.6
장루·요루장애	100.0	9.4	24.8	11.5	37.4	16.8
뇌전증 장애	100.0	0.0	14.1	13.8	66.1	6.0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그림 5-15 학령별 장애인 교육수준 (2017)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1990	2017	3년

Checkpoint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교육기회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어져 왔다. 일례로 교육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인 비중은 장애인의 경우 45.5%(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로 이는 활동제약이 없는 비장애인 77.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하여 약 32.0%p 낮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7

11 대 표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는 만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장애인 취업자와 취업률,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장애인 실업자와 실업률,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한다.

• 장애인의 경제활동 전반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 = $\frac{\text{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text{장애인 인구수}} \times 100$

•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 장애인 인구수 –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

표 5-33 일반특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019)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전체	2015	2,444,194	921,980	849,517	72,463	1,522,214	37.7	7.9	34.8
	2016	2,441,165	941,050	880,090	60,960	1,500,115	38.5	6.5	36,1
	2017	2,460,080	953,008	898,475	54,533	1,507,072	38.7	5.7	36.5
	2018	2,495,043	922,897	861,648	61,249	1,572,146	37.0	6.6	34.5
	2019	2,526,201	941,136	881,890	59,247	1,585,065	37.3	6.3	34.9
성별	남성	1,457,582	707,053	664,770	42,283	750,529	48.5	6.0	45.6
	여성	1,068,618	234,083	217,120	16,963	834,535	21.9	7.2	20.3
연령대별	15~29세	129,699	46,702	39,638	7,064	82,997	36.0	15.1	30.6
	30~39세	131,941	77,366	70,467	6,899	54,575	58.6	8.9	53.4
	40~49세	257,988	158,272	150,695	7,577	99,716	61.3	4.8	58.4
	50~59세	483,745	275,517	257,570	17,947	208,228	57.0	6.5	53.2
	60세 이상	1,522,827	383,278	363,519	19,759	1,139,549	25.2	5.2	23.9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437,603	356,416	336,380	20,036	1,081,187	24.8	5.6	23.4
	고졸	745,769	377,982	354,185	23,797	367,787	50.7	6.3	47.5
	대졸 이상	342,828	206,738	191,325	15,413	136,090	60.3	7.5	55.8
장애정도별	중증	733,220	165,361	153,275	12,086	567,859	22.6	7.3	20.9
	경증	1,792,981	775,776	728,615	47,161	1,017,205	43.3	6.1	40.6
장애유형별	지체장애	1,233,940	578,197	547,040	31,157	655,743	46.9	5.4	44.3
	지체 외 신체외부장애	245,656	32,923	30,721	2,202	212,733	13.4	6.7	12.5
	시각장애	250,780	114,298	105,173	9,125	136,482	45.6	8.0	41.9
	시각 외 감각장애	355,769	104,878	96,752	8,126	250,891	29.5	7.7	27.2
	정신적 장애	302,391	72,254	65,900	6,354	230,137	23.9	8.8	21.8
	발달	200,489	58,938	54,045	4,893	141,551	29.4	8.3	27.0
	신체내부장애	137,665	38,587	36,304	2,283	99,078	28.0	5.9	26.4
지역별	수도권	1,054,380	400,788	369,977	30,811	653,592	38.0	7.7	35.1
	광역시권	478,175	168,025	155,686	12,339	310,150	35.1	7.3	32.6
	기타 시도	993,646	372,323	356,226	16,097	621,323	37.5	4.3	35.9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9	1년

Checkpoint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37.8%로 전년도 37.0%에 비해 0.8%p 증가하였다. 고용률 또한 2018년 34.5%에서 2019년 34.9%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같은 기간 6.6%에서 6.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
연 관

장애인 고용률

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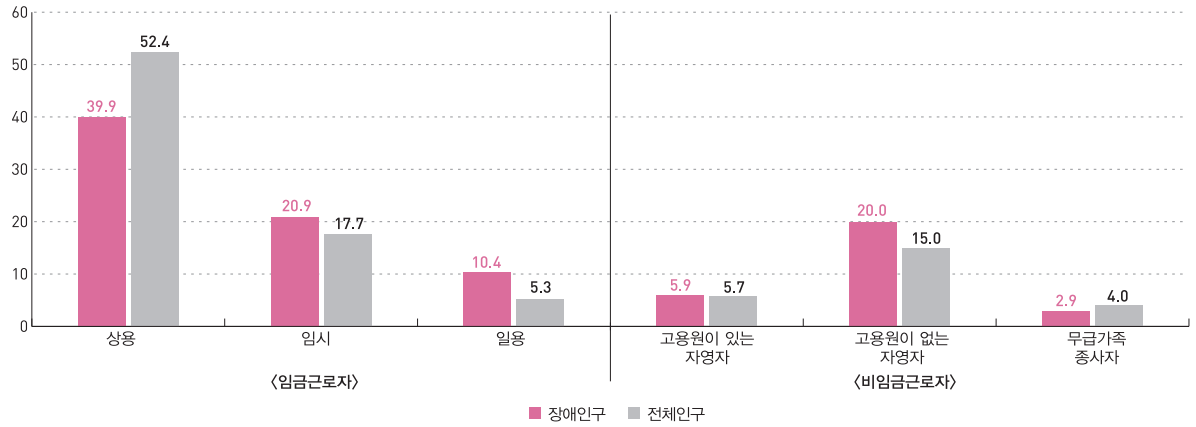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구 중 취업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생산가능 장애인구 중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로 정의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장애인 취업자 수}}{\text{생산가능 장애인 인구수}} \times 100$

그림 5-16 장애인 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구성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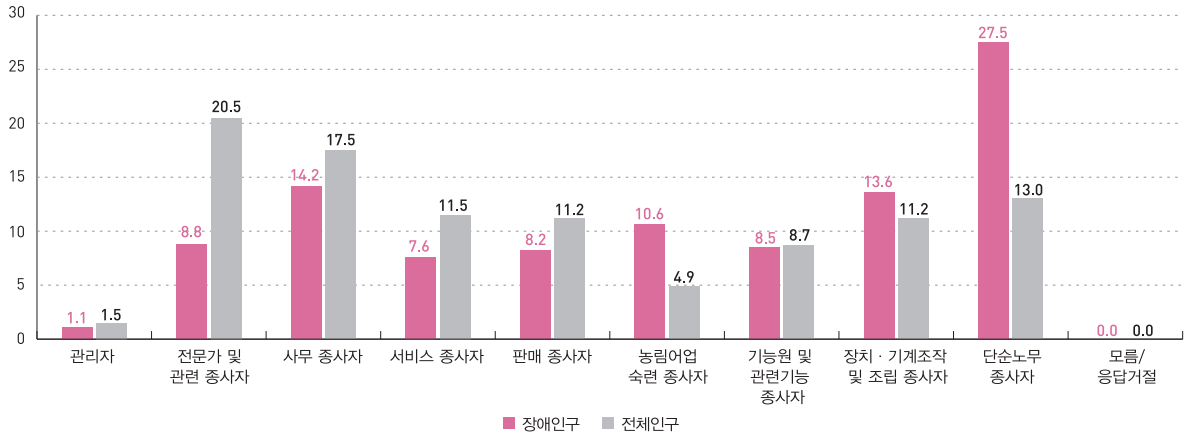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9

그림 5-17 장애인 취업자 직업별 구성비 (2019)

(단위: %)



주: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9	1년

11-2
연 관

장애인 실업률

Unemployment Rate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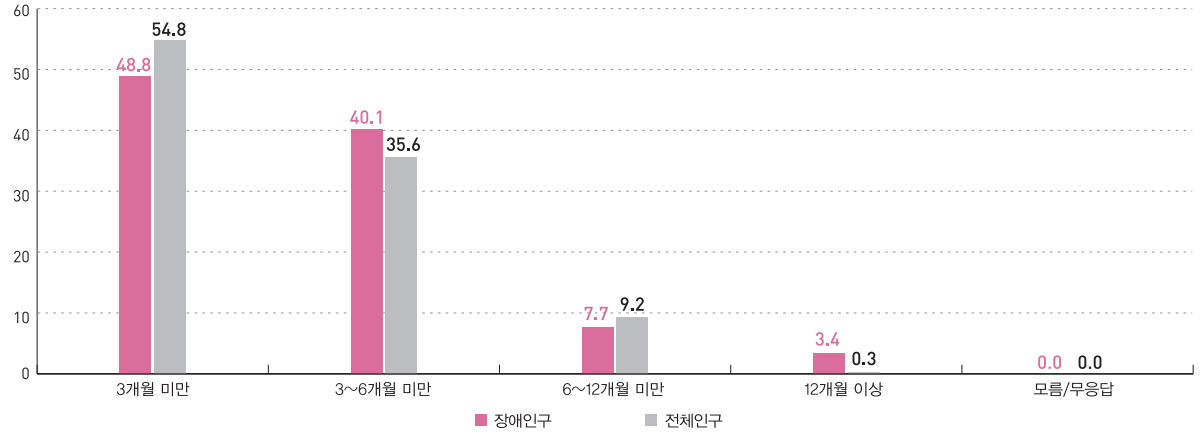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실업자 수}}{\text{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수}} \times 100$$

그림 5-18 장애인 실업자 구직기간별 구성비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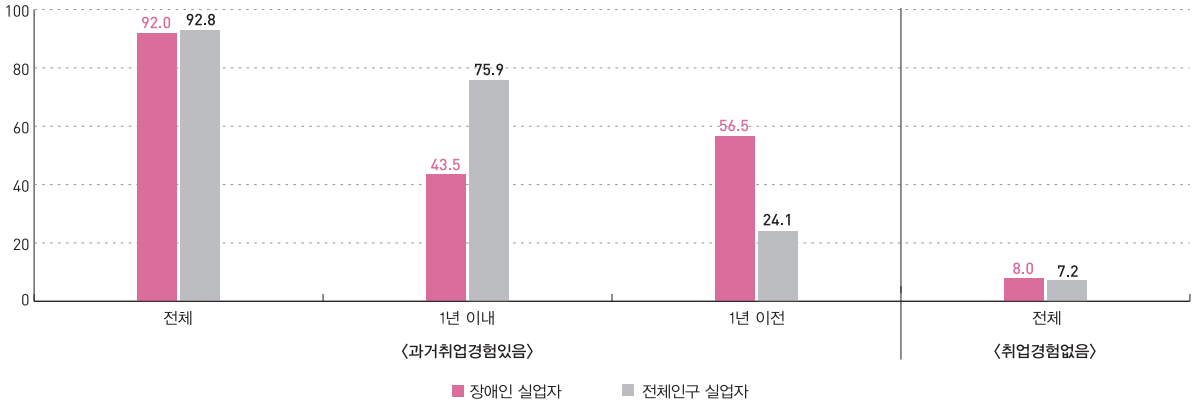
(단위: %)



주: 전체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9

그림 5-19 장애인 실업자의 과거 취업 경험 구성비 (2019)

(단위: %)



주: 전체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9년 5월) 참조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9	1년

12 대 표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Current Status of Mandatory Employ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본 지표를 통해서 의무고용제도 이행 현황을 파악한다.

• 본 지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장애인 근로자 수}}{\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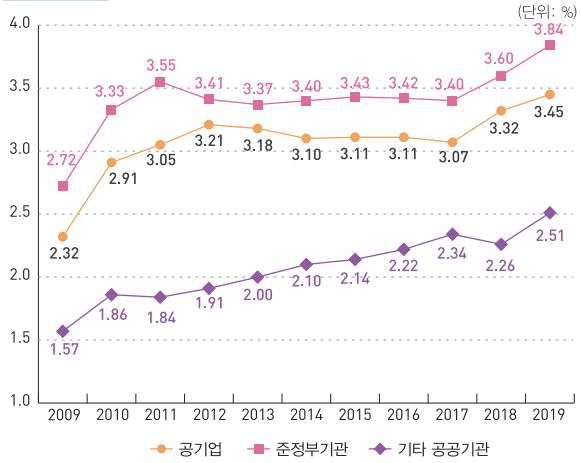
표 5-3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9~2019)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87	2.24	2.28	2.35	2.48	2.54	2.62	2.66	2.76	2.78	2.92
정부부문	1.97	2.39	2.48	2.61	2.85	2.91	3.11	3.50	3.30	3.20	3.40
공무원	-	2.40	2.52	2.57	2.63	2.65	2.80	2.81	2.88	2.78	2.86
공무원 아닌 근로자	-	2.36	2.35	2.75	3.51	3.75	4.05	4.19	4.61	4.32	5.06
공공기관	2.11	2.56	2.72	2.80	2.81	2.91	2.93	2.96	3.02	3.16	3.33
민간기업	1.84	2.19	2.22	2.27	2.39	2.45	2.51	2.56	2.64	2.67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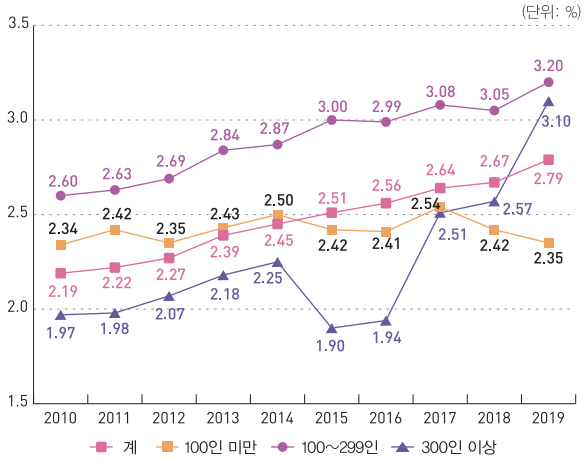
주: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1)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2020

그림 5-20 공공기관 유형별 장애인 고용률 (2009~2019)



주: 1)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2) 2014년에 지방공기업, 2019년 출연기관이 별도로 산정되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그림 5-21 민간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현황 (2010~2019)



주: 1) 2008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1.70이며 50~299인 기업은 1.93임.
2009년부터 사업장 규모가 세분화됨.
2) 2010년부터는 고용률에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적용한 것임.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의무고용현황,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006	2019	1년

Checkpoint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2019년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전년도에 비해 0.14%p 상승하였다. 하지만 정부부문의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까지 법적 의무고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2019년 기준): 정부 및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

13
대 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Average Wage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in Recent 3 months

지표 정의

취업장애인은 조사대상 기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의미하며, 취업장애인의 월평균소득은 이들의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말한다.

- 취업한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취업장애인의 월소득 및 취업분야를 파악하여 장 · 단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과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취업장애인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표 5-35 연도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단위: 명, 만 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추정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289,919	205.0	327,712	213.8	313,384	227.4	333,105	220.5	314,515	239.2	319,752	236.6	338,258	267.6
	임시근로자	131,074	95.2	132,818	80.3	127,363	90.7	160,827	92.4	156,642	90.9	156,779	102.0	180,047	92.7
	일용근로자	100,970	97.3	98,198	100.0	89,303	109.1	98,463	120.5	107,997	126.3	88,516	133.2	83,321	136.5
정규직 여부	비정규직	308,498	107.9	328,438	111.4	307,479	117.1	361,473	122.5	344,808	119.3	337,390	124.6	359,234	129.8
	정규직	213,464	227.0	230,289	234.2	222,571	254.2	230,921	242.1	233,982	264.5	232,232	269.6	242,391	296.9
종사자 규모	1~4인	140,185	113.5	124,891	121.2	94,274	112.6	131,069	122.3	113,973	129.8	118,041	135.7	119,933	139.2
	5~49인	221,900	138.9	267,186	153.2	272,707	151.5	302,267	161.6	279,790	163.1	272,942	176.5	304,428	190.8
	50~299인	99,425	195.9	117,695	190.1	106,846	225.5	109,066	203.0	118,275	200.1	107,289	205.0	112,626	225.9
	300인 이상	53,495	270.9	45,456	258.3	51,700	306.3	41,969	292.8	52,918	324.9	61,275	270.4	52,661	325.9
합계		521,962	156.6	558,727	162.0	530,050	174.7	592,395	169.1	578,790	178.0	565,047	183.1	601,625	197.1
전체 인구			217.1		223.4		231.4		241.2		242.3		255.8		264.3

자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97.1만 원으로 조사되어 2017년 기준 183.1만 원에 비하여 증가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의 임금은 전체 인구의 월평균 임금 264.3만 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정규직,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 종사자의 임금이 가장 높았다.

14 대 표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Pension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본 지표는 장애인연금의 수급자 수를 이용한다.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표 5-36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0~2019)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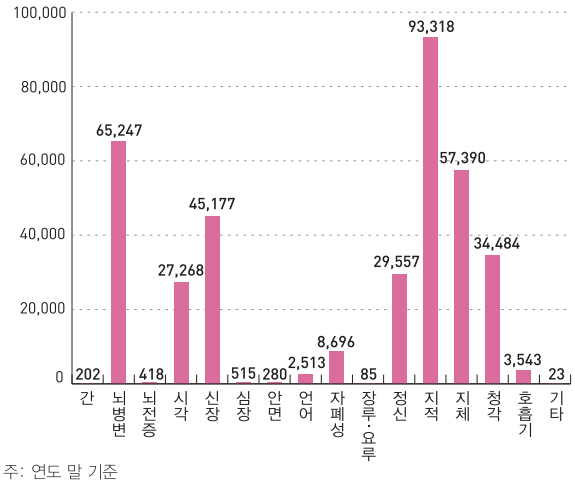
연도	수급률	수급자 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차상위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2010	45.3	244,319	145,495	56,079	40,034	2,711
2011	55.6	293,122	139,299	61,690	81,983	10,150
2012	59.0	305,913	134,322	55,824	88,070	27,697
2013	59.7	305,394	131,668	52,663	92,592	28,471
2014	64.5	328,414	130,428	51,512	118,157	28,317
2015	67.3	342,444	134,489	46,306	133,431	28,218
2016	68.4	350,161	134,432	45,085	142,769	27,875
2017	69.4	359,986	136,213	42,464	153,681	27,628
2018	70.0	364,712	146,606	34,539	155,812	27,755
2019	70.7	368,716	154,029	29,780	157,345	27,562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www.bokjiro.go.kr에서 2020.12.1. 인출)

그림 5-22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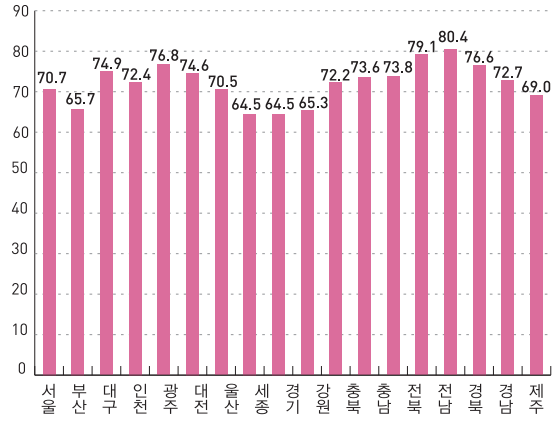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ssis.or.kr에서 2020.12.1. 인출)

그림 5-23 시도별 장애인연금 수급률 (2019)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http://ssis.or.kr에서 2021.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수급자 현황	2010	2019	1년

Checkpoint 장애인연금 수급자 수는 2011년 제도의 본격 시행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2013년 305,394명이던 수급자는 2018년 364,712명, 2019년 368,71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장애수당 수급자 역시 2013년 320,029명에서 2018년 365,706명, 2019년 365,8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2013년 21,777명에서 2018년 18,568명, 2019년 17,990명으로 감소하였다.

14-1
연 관

장애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ility Allowance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보장제도수급자(일반 재가 및 보장시설)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3급(중복제외)과 4급~6급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측정 산식

- 장애수당 수급자 수

표 5-37 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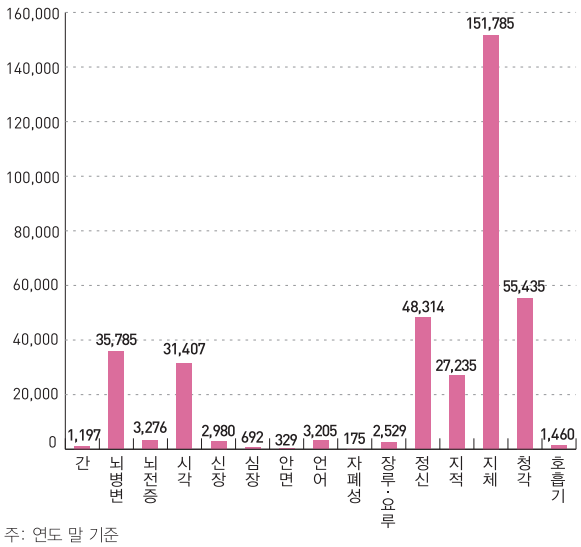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차상위
2010	308,243	212,914	11,202	84,127
2011	316,861	210,471	10,381	96,009
2012	318,483	204,717	15,428	98,338
2013	320,029	204,710	11,989	103,330
2014	320,318	207,819	11,766	100,733
2015	327,881	219,845	12,130	95,906
2016	336,224	223,744	12,528	99,952
2017	343,662	226,342	12,579	104,741
2018	365,706	234,141	13,112	118,453
2019	365,804	234,439	12,988	118,377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수당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수급자 수 (http://ssis.or.kr에서 2020.12.1. 인출)

그림 5-24 장애유형별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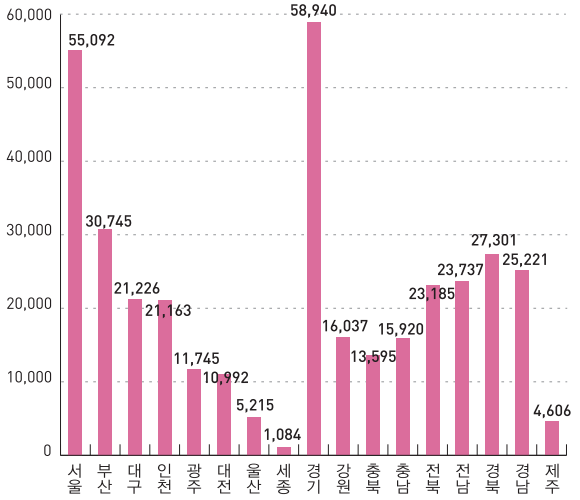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수당 장애유형별 성별 수급자 수 (http://ssis.or.kr에서 2020.12.1. 인출)

그림 5-25 시도별 장애수당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수당 (http://ssis.or.kr에서 2020.12.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수당 지급현황	2010	2019	1년

14-2
연 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Children Allowance Recipients

지표 정의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된다.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다.

측정 산식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표 5-38 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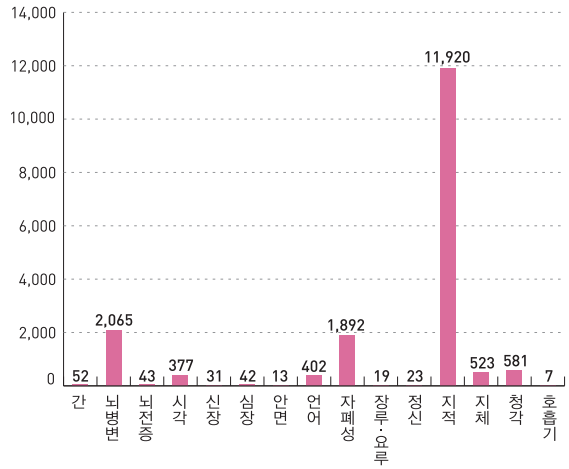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총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차상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소계	중증	경증
2010	23,057	12,637	7,982	4,655	6,308	4,229	2,079	4,112	3,231	881
2011	23,586	12,493	7,833	4,660	6,973	4,670	2,303	4,120	3,216	904
2012	22,813	11,541	7,104	4,437	7,090	4,664	2,426	4,182	3,186	996
2013	21,777	11,172	6,782	4,390	7,127	6,235	4,677	3,478	2,598	880
2014	21,121	10,818	6,511	4,307	6,388	4,518	2,230	3,915	2,916	999
2015	20,464	10,993	6,466	4,527	5,681	3,675	2,006	3,790	2,742	1,048
2016	19,934	10,652	6,197	4,455	5,771	3,668	2,103	3,511	2,500	1,011
2017	19,323	10,203	5,844	4,359	5,860	3,636	2,224	3,260	2,233	1,027
2018	18,568	9,758	5,483	4,275	5,727	3,527	2,200	3,083	2,040	1,043
2019	17,990	9,454	5,159	4,295	5,725	3,374	2,351	2,811	1,761	1,050

주: 시설수급자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장애수당 지급, 2010년부터 장애아동수당 지급.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구분별 연령구간별 수급자 수 (http://ssis.or.kr에서 2020.12.1 인출)

그림 5-26 장애유형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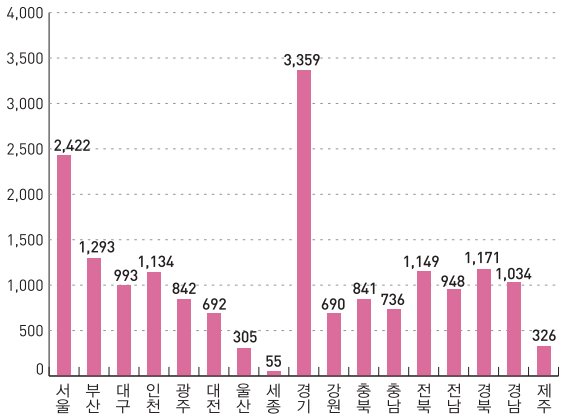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장애유형별 성별 수급자 수 (http://ssis.or.kr에서 2020.12.1 인출)

그림 5-27 시도별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별 사회보장통계. 장애아동수당 (http://ssis.or.kr에서 2020.12.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지급 현황	2010	2019	1년

15 대 표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Number of Disabled persons in Near Poverty group

지표 정의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측정 산식

- 지원 대상: 장애수당(만 18세이상의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만 18세미만의 등록장애인에게 지급) 수급자 중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지원 금액: 차상위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아동수당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차상위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 차상위 경증장애아동은 월 10만 원 지급

(2019년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표 5-39 연도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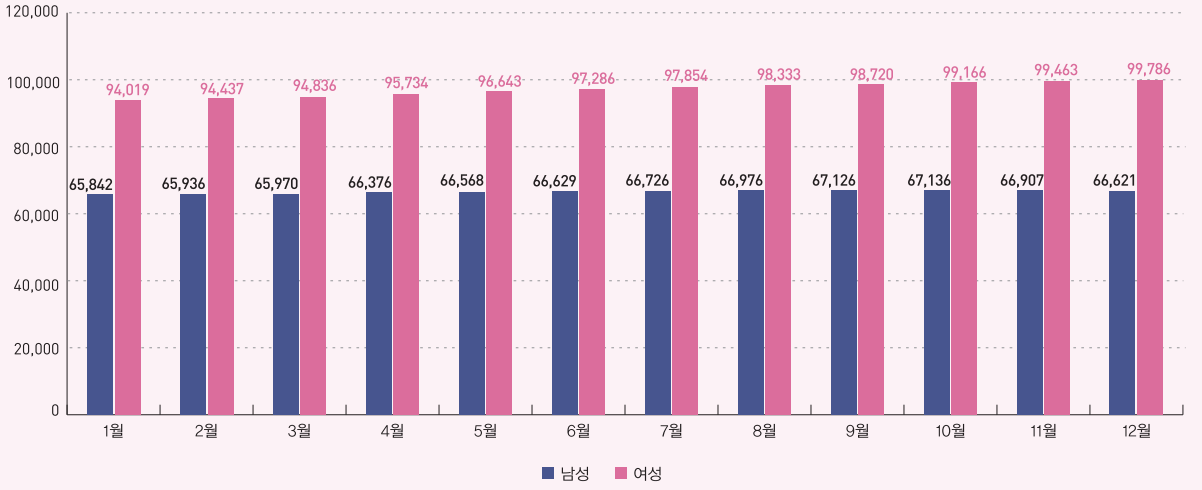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110,457	107,121	101,587	105,723	110,601	159,196	166,407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5-28 월별 · 성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2019년 12월 기준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는 총 166,407명으로 전년동월의 159,196명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5년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40 시도별 · 월별 · 성별 차상위 장애인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남	9,993	10,004	10,054	10,092	10,136	10,189	10,236	10,250	10,243	10,259	10,291	10,270
	여	11,554	11,624	11,668	11,747	11,883	11,953	12,057	12,101	12,155	12,223	12,276	12,337
	계	21,547	21,628	21,722	21,839	22,019	22,142	22,293	22,351	22,398	22,482	22,567	22,607
부산	남	4,675	4,678	4,671	4,702	4,709	4,717	4,726	4,750	4,783	4,798	4,789	4,801
	여	6,088	6,103	6,124	6,216	6,270	6,331	6,402	6,427	6,454	6,507	6,544	6,581
	계	10,763	10,781	10,795	10,918	10,979	11,048	11,128	11,177	11,237	11,305	11,333	11,382
대구	남	3,166	3,170	3,165	3,194	3,212	3,242	3,236	3,232	3,246	3,235	3,214	3,222
	여	4,223	4,254	4,295	4,323	4,373	4,428	4,478	4,509	4,543	4,591	4,631	4,669
	계	7,389	7,424	7,460	7,517	7,585	7,670	7,714	7,741	7,789	7,826	7,845	7,891
인천	남	3,317	3,356	3,370	3,400	3,431	3,448	3,469	3,525	3,547	3,581	3,571	3,577
	여	4,348	4,390	4,415	4,457	4,507	4,570	4,614	4,669	4,702	4,737	4,782	4,820
	계	7,665	7,746	7,785	7,857	7,938	8,018	8,083	8,194	8,249	8,318	8,353	8,397
광주	남	2,167	2,171	2,168	2,156	2,146	2,157	2,144	2,149	2,155	2,144	2,125	2,097
	여	3,008	3,015	3,025	3,032	3,054	3,082	3,094	3,097	3,117	3,102	3,082	3,075
	계	5,175	5,186	5,193	5,188	5,200	5,239	5,238	5,246	5,272	5,246	5,207	5,172
대전	남	1,933	1,925	1,927	1,923	1,919	1,934	1,934	1,934	1,940	1,941	1,933	1,907
	여	2,370	2,384	2,383	2,395	2,394	2,396	2,415	2,419	2,419	2,435	2,439	2,449
	계	4,303	4,309	4,310	4,318	4,313	4,330	4,349	4,353	4,359	4,376	4,372	4,356
울산	남	1,097	1,108	1,116	1,124	1,126	1,124	1,133	1,143	1,151	1,147	1,147	1,149
	여	1,552	1,551	1,552	1,576	1,590	1,587	1,590	1,607	1,615	1,631	1,640	1,653
	계	2,649	2,659	2,668	2,700	2,716	2,711	2,723	2,750	2,766	2,778	2,787	2,802
세종	남	218	218	220	216	215	214	213	215	219	221	223	216
	여	330	330	330	333	334	343	347	347	347	346	348	354
	계	548	548	550	549	549	557	560	562	566	567	571	570
경기	남	12,395	12,423	12,468	12,600	12,704	12,740	12,731	12,817	12,853	12,877	12,854	12,799
	여	15,268	15,370	15,485	15,691	15,895	16,021	16,077	16,197	16,304	16,372	16,416	16,437
	계	27,663	27,793	27,953	28,291	28,599	28,761	28,808	29,014	29,157	29,249	29,270	29,236
강원	남	3,100	3,083	3,080	3,084	3,086	3,047	3,039	3,039	3,041	3,020	3,007	3,004
	여	4,772	4,784	4,813	4,839	4,871	4,896	4,935	4,949	4,957	4,945	4,959	4,974
	계	7,872	7,867	7,893	7,923	7,957	7,943	7,974	7,988	7,998	7,965	7,966	7,978
충북	남	2,458	2,473	2,477	2,487	2,496	2,485	2,497	2,492	2,500	2,514	2,497	2,483
	여	3,850	3,865	3,873	3,911	3,977	4,008	4,035	4,050	4,064	4,074	4,089	4,095
	계	6,308	6,338	6,350	6,398	6,473	6,493	6,532	6,542	6,564	6,588	6,586	6,578
충남	남	2,921	2,927	2,937	2,973	2,970	2,935	2,948	2,954	2,953	2,951	2,938	2,913
	여	4,489	4,510	4,519	4,587	4,631	4,639	4,661	4,682	4,693	4,712	4,731	4,735
	계	7,410	7,437	7,456	7,560	7,601	7,574	7,609	7,636	7,646	7,663	7,669	7,648
전북	남	3,998	4,003	3,979	3,998	3,991	3,996	3,989	3,998	4,003	3,998	3,976	3,942
	여	6,984	7,016	7,023	7,116	7,142	7,205	7,240	7,267	7,293	7,339	7,348	7,359
	계	10,982	11,019	11,002	11,114	11,133	11,201	11,229	11,265	11,296	11,337	11,324	11,301
전남	남	4,488	4,470	4,457	4,442	4,397	4,389	4,401	4,409	4,402	4,397	4,332	4,288
	여	8,783	8,812	8,825	8,870	8,889	8,903	8,920	8,942	8,944	8,979	8,961	8,990
	계	13,271	13,282	13,282	13,312	13,286	13,292	13,321	13,351	13,346	13,376	13,293	13,278
경북	남	4,652	4,665	4,651	4,710	4,730	4,714	4,719	4,734	4,746	4,735	4,724	4,665
	여	7,894	7,918	7,973	8,066	8,166	8,210	8,265	8,329	8,353	8,390	8,420	8,438
	계	12,546	12,583	12,624	12,776	12,896	12,924	12,984	13,063	13,099	13,125	13,144	13,103
경남	남	4,462	4,461	4,436	4,459	4,490	4,489	4,497	4,524	4,541	4,517	4,495	4,497
	여	7,208	7,220	7,240	7,272	7,361	7,409	7,417	7,434	7,459	7,481	7,513	7,534
	계	11,670	11,681	11,676	11,731	11,851	11,898	11,914	11,958	12,000	11,998	12,008	12,031
제주	남	802	801	794	816	810	809	814	811	803	801	791	791
	여	1,298	1,291	1,293	1,303	1,306	1,305	1,307	1,307	1,301	1,302	1,284	1,286
	계	2,100	2,092	2,087	2,119	2,116	2,114	2,121	2,118	2,104	2,103	2,075	2,077
합계	남	65,842	65,936	65,970	66,376	66,568	66,629	66,726	66,976	67,126	67,136	66,907	66,621
	여	94,019	94,437	94,836	95,734	96,643	97,286	97,854	98,333	98,720	99,166	99,463	99,786
	계	159,861	160,373	160,806	162,110	163,211	163,915	164,580	165,309	165,846	166,302	166,370	166,407

16
대 표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on Disability as % of GDP

지표 정의

OECD SOCX 기준 장애인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근로무능력 관련급여(Incapacity-related Benefits)로 발표되고 있으며,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어 있다.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지출되는 장애관련 복지예산의 규모를 의미한다.

- 현금급여(Cash benefits)는 장애연금(Disability pensions), 산재보험(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 상병급여(Paid sick leave), 기타 현금급여(Other cash benefits)로 구성되고, 현물급여(Benefits in kind)는 돌봄 및 가사보조서비스(Residential care/Home-help service), 재활서비스(Rehabilitation services), 기타 현물급여(Other benefits in kind)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장애인복지지출(현금 + 현물급여)}}{\text{국가별 GDP}}$

유의사항 현금급여(Cash benefits) 중 상병급여(Paid sick leave)는 2010년부터 산재급여(Pensions on occupational injury and disease)로부터 분리되어 산출되고 있지만 본 글에서는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다.

표 5-41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규모 (2000~2019)

(단위: GDP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0.33	0.37	0.39	0.44	0.51	0.54	0.57	0.58	0.6	0.62	0.52	0.54	0.58	0.57	0.56	0.59	0.59	0.60	0.60	0.61
현금급여	0.24	0.26	0.27	0.31	0.33	0.35	0.36	0.38	0.38	0.37	0.34	0.34	0.36	0.35	0.36	0.36	0.35	0.35	0.33	0.34
현물급여	0.09	0.11	0.12	0.13	0.18	0.19	0.21	0.2	0.23	0.25	0.18	0.2	0.22	0.21	0.2	0.23	0.24	0.25	0.27	0.27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2.23.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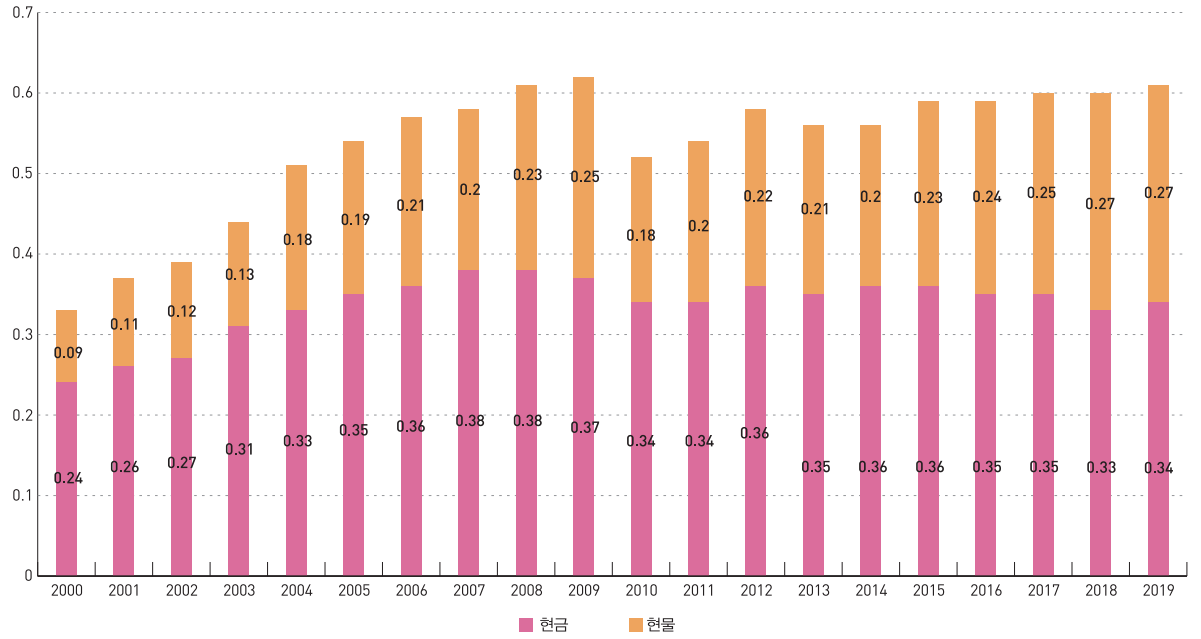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1990	2019 (확정치 '08~'17 예측치 '18~'19)	2년

Checkpoint 2014년 0.56%에 비해 2015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0.59%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물급여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현금급여는 2006년 0.2%대 진입 이후 소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OECD SOCX Database. (2021.2.23.)

그림 5-29 우리나라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중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비중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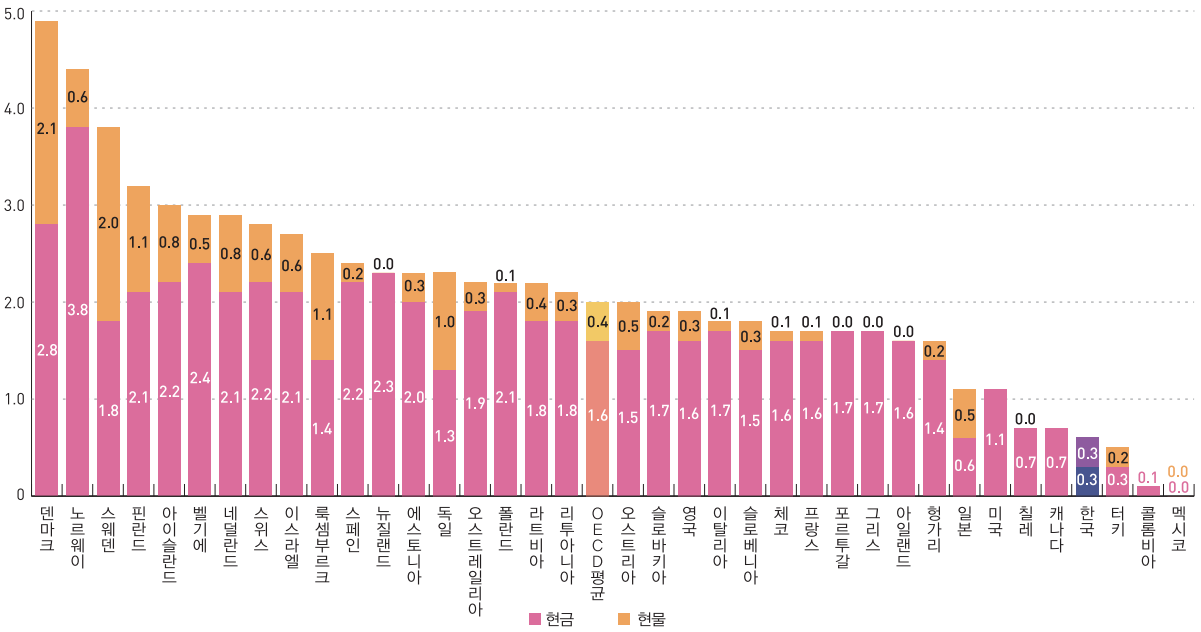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2.23. 인출)

그림 5-30 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지출 (2017)

(단위: GDP 대비 %)



자료: OECD SOCX Database,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에서 2021.2.23. 인출)

6

근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경제활동참가율
02 고용률
03 실업률
04 실업급여 수급자 수
0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06 총 근로시간
0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08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09 사회보험 가입률
10 산업재해율
11 저임금근로자 비율
12 시간급 최저임금
13 시간당 임금총액
14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15 자활사업 대상자 수
16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17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6 근로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고용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안정성	실업급여 수급자 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일자리의 질	총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사회보험 가입률	
	산업재해율	
근로빈곤	저임금근로자 비율	
	시간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영향률
	시간당 임금총액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활	자활사업 대상자 수	자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공급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급격한 기술변화와 근로형태의 다양화는 노동수요에 있어서의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 고용의 안정적인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야기하는 일자리 양극화 문제는 포용국가 지향에 있어서 커다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노동시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 전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정책은 포용국가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한다 할 수 있다.

근로부문은 상기한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시장의 양적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이 있고, 노동시장의 질적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총 근로시간, 사회보험 가입률, 시간당 임금총액, 저임금근로자 비율 등이 있으며,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지표로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중 자활사업 참여자 수나 실업급여 수급자 수 그 외 최저임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로 전반적인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노동시장정책적 대응을 살펴본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상당히 낮은 실업률을 보여 양호한 양적 성과를 보인다. 19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벗어난 후에는 3% 중반을 중심으로 미세하게 등락을 거듭하며 안정적이다(2019년 3.8%).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전체 핵심경제인구를 대상으로 한 때보다 4%p 이상 높아, 낙관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비교 차원에서는 여전히 낮은 편으로, 특히,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저조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겠다.

임금 근로자 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지고, 여성은 임시·일용직의 비중도 큰 편이다. OECD 국가들과 비교 시에도 한국의 임시직 비중은 큰 편으로 2019년 한국의 임시직은 24.4%로 OECD 평균인 11.8%를 훨씬 상회한다. 아울러,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17%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인데, 특히 여성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26.1%에 달한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는 흐름도 나타난다. 임금 수준과 사회보험 가입률 등에서 여전히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개선되고 있다. 2020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제외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전년보다 다소 늘어, 건강보험은 49%, 고용보험은 46.1%에 달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기간제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년보다 줄었다.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 이외에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시장 여건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시장 질적 지표가 취약한 편이다. 2019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90%를 상회하는 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만이 90.9%를 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80%에 못 미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이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 높은 편으로, 산재보험 가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99%에 달하는 가입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대책과 최저임금, 근로 및 자녀장려금 등의 제도를 통해 노동시장에 개입해왔다.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은 비교적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2018년에는 특히 전년보다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규모가 늘어난 특징을 보인다.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투입 비용의 증가와 맞물려,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다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은 적은 편이다. 한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8년과 2019년에는 실질 인상률이 약 10% 이상에 달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약 240원 인상되어 전년 대비 명목 인상률은 2.9%, 실질 인상률은 2.3%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총 4,946천 가구이고 총액은 5조 298억 원으로 2010년(52만 가구, 4,020억 원)과 비교하여 지급가구 수는 9배, 지급금액은 13배 증가하였다. 최근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였고, 연령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01 대 표

경제활동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의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기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한다.

•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서 '일정 기간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활용 가능한 노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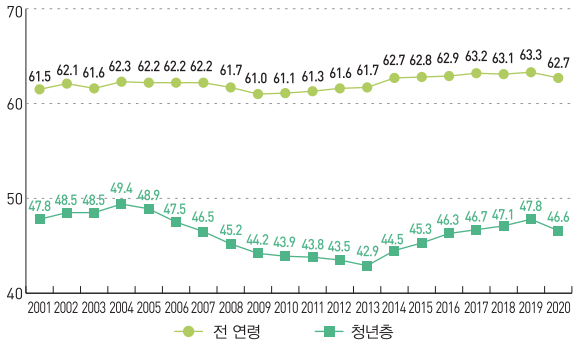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6-1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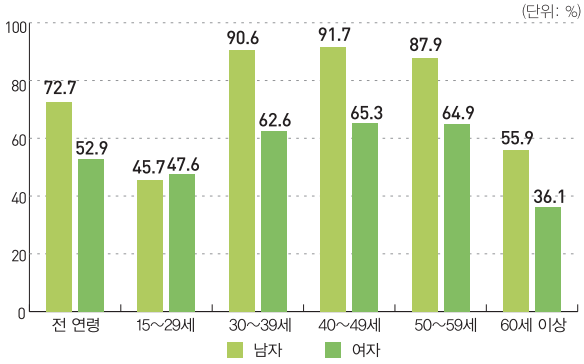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31. 인출)

그림 6-2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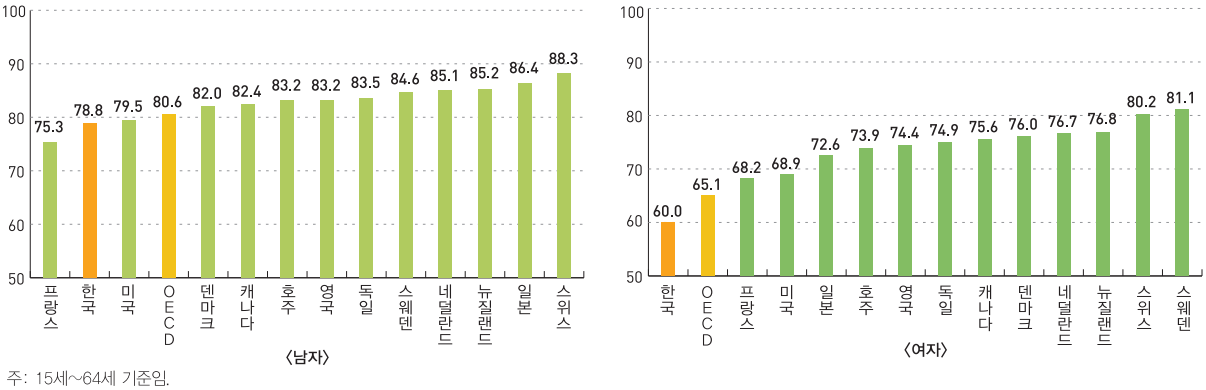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31. 인출)

그림 6-3 성별 OECD 주요국가 경제활동참가율 (2020)

(단위: %)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1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0	1개월

Checkpoint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소 높아지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02
대 표

고용률
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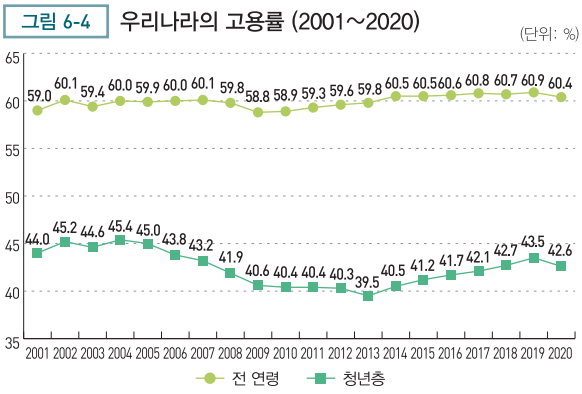
• 취업자는 "조사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시휴직자"이며, 고용률은 조사대상 기간에 인구 대비 노동을 공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고용률은 노동력의 활용 정도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취업자 수}}{\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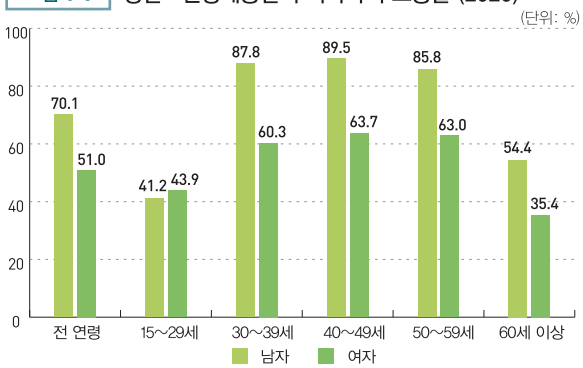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에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 기준을 15~64세로 적용했음에 유의해야 함.

그림 6-4 우리나라의 고용률 (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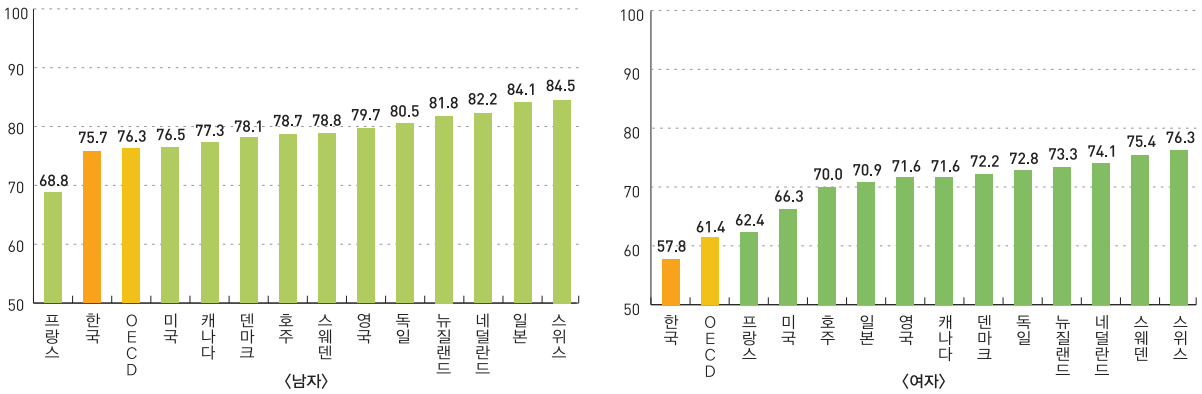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31. 인출)

그림 6-5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고용률 (20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31. 인출)

그림 6-6 성별 OECD 주요국가 고용률 (2020)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0	1개월

Checkpoint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다소 주춤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청년 고용률의 하락 폭이 크고, 여성 고용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편이다. 전반적인 고용률을 높이려면, 청년과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03 대 표

실업률

Unemployment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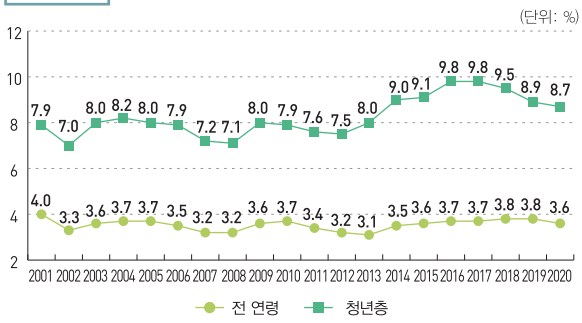
실업자는 조사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별도로 파악하는 "고용보조지표"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활용하여 고용시장 상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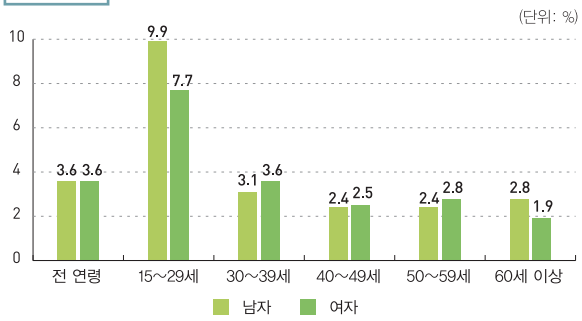
- $\frac{\text{실업자 수}}{\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그림 6-7 우리나라의 실업률 (200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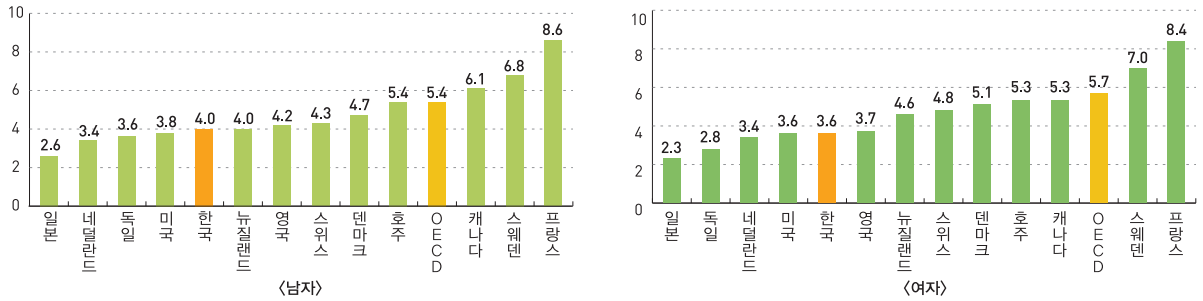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31. 인출)

그림 6-8 성별 · 연령계층별 우리나라의 실업률 (20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21. 인출)

그림 6-9 성별 OECD 주요국가 실업률 (2020)



주: 15세~64세 기준임.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12.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0	1개월

Checkpoint 2020년 실업률은 3.6%로 전년보다 0.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3.1%)이던 2013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청년(15~29세) 실업률도 최근 감소세를 보여, 2020년에는 8.7% 수준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전체 실업률보다 5%p 이상 높아, 청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1 시도별 실업률 (2007~2019)

(단위: %)

시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3.2	3.2	3.6	3.7	3.4	3.2	3.1	3.5	3.6	3.7	3.7	3.8	3.8
서울	4.1	3.9	4.5	4.7	4.5	4.2	3.9	4.4	4.2	4.2	4.5	4.8	4.4
부산	4.0	3.8	4.3	3.6	3.6	3.9	3.8	3.8	4.1	3.9	4.6	4.1	3.7
대구	3.6	3.7	4.3	4.0	3.7	3.3	3.3	3.8	3.5	4.1	4.0	4.4	3.7
인천	4.0	3.9	4.5	5.0	4.7	4.5	4.1	4.7	5.0	4.9	4.6	4.3	4.4
광주	4.0	3.8	3.8	3.5	3.1	2.7	2.8	2.8	2.9	3.1	2.9	3.8	3.7
대전	4.1	3.7	3.7	3.7	3.6	3.7	3.0	3.4	3.4	3.2	3.4	4.2	4.2
울산	2.5	3.4	4.1	3.5	2.7	2.6	2.1	2.7	2.9	3.8	3.5	4.6	4.2
세종	-	-	-	-	-	-	-	-	-	-	2.3	2.3	2.7
경기	3.3	3.2	3.8	4.0	3.4	3.3	3.0	3.3	3.9	3.9	3.9	3.8	3.8
강원	1.9	1.7	2.1	2.6	2.2	2.5	2.3	3.1	3.2	2.8	2.6	2.9	3.6
충북	2.3	2.2	2.1	2.2	2.4	2.0	2.0	3.0	2.6	2.6	2.2	2.4	3.1
충남	2.4	2.5	3.1	3.0	2.4	2.3	2.8	3.3	3.5	3.2	2.8	3.1	2.9
전북	2.4	2.2	2.0	2.2	2.3	2.0	2.0	2.5	1.7	2.1	2.5	2.7	2.7
전남	1.8	2.0	1.6	2.1	2.0	1.6	2.1	2.9	2.5	3.0	3.2	2.8	2.6
경북	2.1	2.1	2.7	2.8	2.6	2.5	3.1	2.9	3.0	3.2	2.8	4.1	3.9
경남	2.4	2.2	3.1	2.8	2.2	1.8	2.1	2.5	2.6	3.3	2.9	3.0	3.8
제주	2.1	1.8	1.6	1.8	1.7	1.5	1.8	2.0	1.9	2.2	1.9	2.0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04
대 표

실업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Unemployment Benefit Recipients

지표 정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중 대표적인 제도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로,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을 말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일용인 경우 90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증명해야만 수급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측정 산식

- 수급자 수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급여를 수급한 인원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 수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근로시간(8시간),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60,000원/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2017년 1~3월은 46,584원/2016년은 43,416원/2015년은 43,000원

표 6-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급인원, 수급금액 (1997~2019)

(단위: 명, 십억 원)

연도	수급자격 인정자	증가율	수급인원	증가율	수급 금액	증가율
1997	50,774	-	49,117	-	79	-
1998	434,199	755.2%	411,686	738.2%	799	915.3%
1999	325,220	△25.1%	484,772	17.8%	936	17.1%
2000	258,727	△20.4%	332,692	△31.4%	471	△49.7%
2001	346,671	34.0%	428,156	28.7%	845	79.5%
2002	297,109	△14.3%	416,041	△2.8%	839	△0.7%
2003	375,561	26.4%	502,211	20.7%	1,030	22.8%
2004	467,730	24.5%	707,432	40.9%	1,448	40.6%
2005	562,524	20.3%	812,768	14.9%	1,752	21.0%
2006	609,691	8.4%	943,542	16.1%	2,074	18.4%
2007	685,024	12.4%	1,009,180	7.0%	2,434	17.4%
2008	835,140	21.9%	1,162,534	15.2%	2,865	17.7%
2009	1,068,389	27.9%	1,301,132	11.9%	4,116	43.7%
2010	973,026	△8.9%	1,238,665	△4.8%	3,687	△10.4%
2011	902,362	△7.3%	1,202,066	△3.0%	3,561	△3.4%
2012	898,054	△0.5%	1,187,247	△1.2%	3,677	3.2%
2013	919,118	2.3%	1,210,263	1.9%	3,884	5.6%
2014	971,068	5.7%	1,252,677	3.5%	4,156	7.0%
2015	950,754	△2.1%	1,272,470	1.6%	4,547	9.4%
2016	953,901	0.3%	1,278,833	0.5%	4,895	7.6%
2017	940,183	△1.4%	1,295,789	1.3%	5,243	7.1%
2018	1,062,933	13.1%	1,417,296	9.4%	6,688	27.6%
2019	1,144,090	7.6%	1,546,993	9.2%	8,386	25.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2020

표 6-3 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수 (2019)

(단위: 명)

구분	계	남	여
계	1,144,090	571,536	572,554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35,505	8,893	26,6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15,185	7,766	7,419
폐업, 도산	51,446	16,821	34,625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488,998	237,489	251,509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권고사직	44,818	21,597	23,221
정년	33,953	22,738	11,215
계약 만료, 공사 종료	363,473	163,674	199,799
고용보험 비적용, 기타, 분류 불능	110,712	92,558	18,15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보험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	1997	2019	1년

Checkpoint 2000년대 안정적인 실업률에 비해 큰 폭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를 반영한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수급인원과 금액 증가는 최근의 경기침체의 결과물로 판단된다. 실례로 2019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수의 약 75%가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나 계약 만료 및 공사 종료에 의한 자이다.

05
대 표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지원 규모

Public Expenditure on Labor Market Policies

지표 정의

노동시장정책(Labour Market Policies; LMP)이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 재진입, 이탈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을 말한다.

• OECD는 노동시장프로그램을 적극적 정책과 소극적 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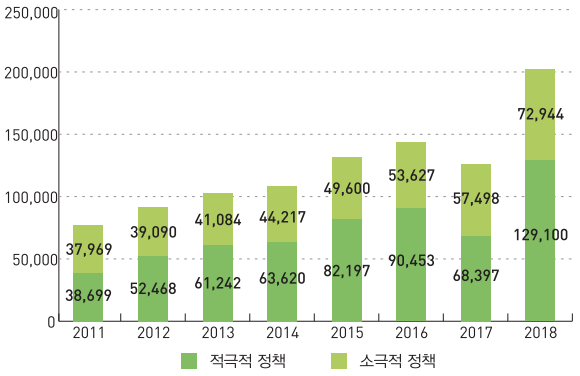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1) 직접일자리 창출 + 2) 직업능력개발 + 3) 고용서비스 + 4) 창업지원 + 5) 고용장려금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실업자에 대한 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그림 6-10 노동시장정책 투입비용 (2011~2018)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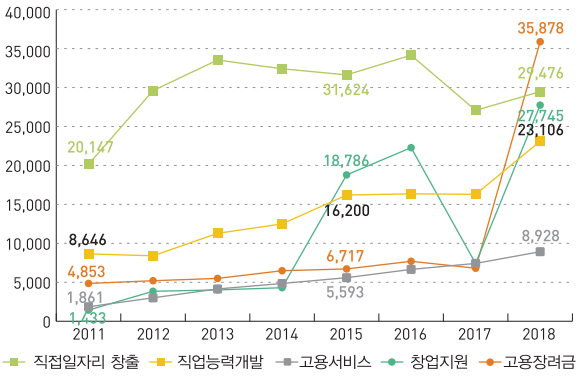


주: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pr market programm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6-1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투입비용 (2011~2018)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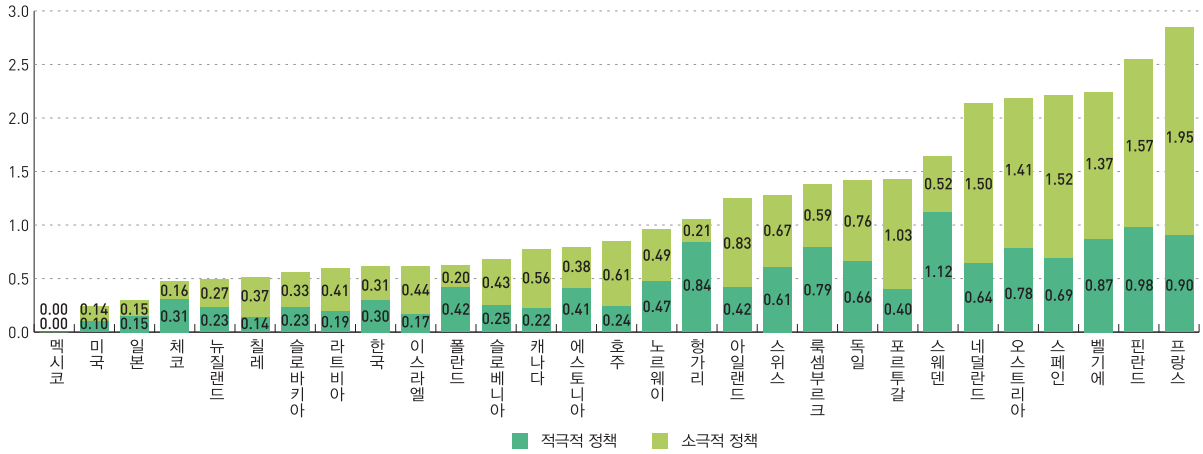


주: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pr market programm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6-12 OECD 노동시장 지출수준 (GDP 대비 비중) (2017)

(단위: %)



주: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기준과 OECD Labpr market programmams의 기준이 달라, 두 값 간에는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Labour Market Programmes (http://stats.oecd.org에서 2020.12.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0	2018	1년

Checkpoint

노동시장정책 투입비용은 증가세이고, 2018년 특히, 전년 대비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부문에 대한 투입이 늘었다. 노동시장정책 투입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지출 수준이 낮은 편으로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성과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06
대 표

총 근로시간
Total Hours Worked

지표 정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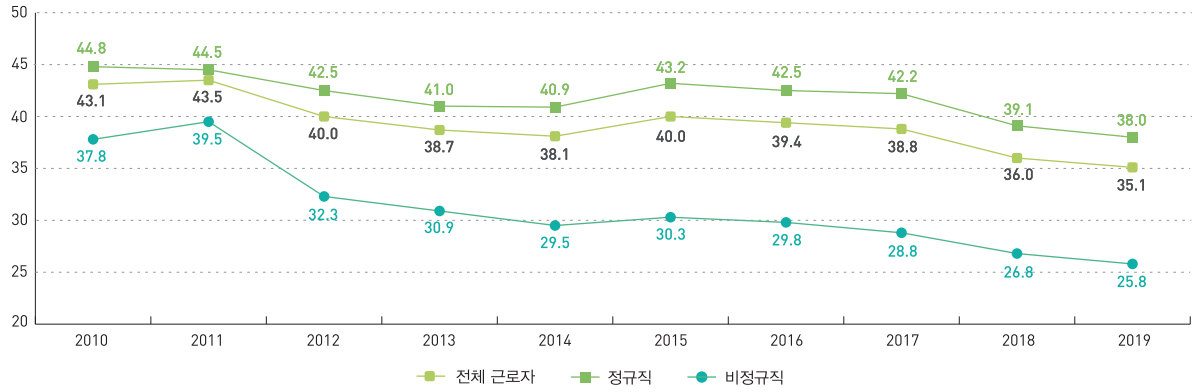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관행이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 만들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근로시간은 중요한 지표로 이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소정근로시간 + 초과근로시간

그림 6-13 전체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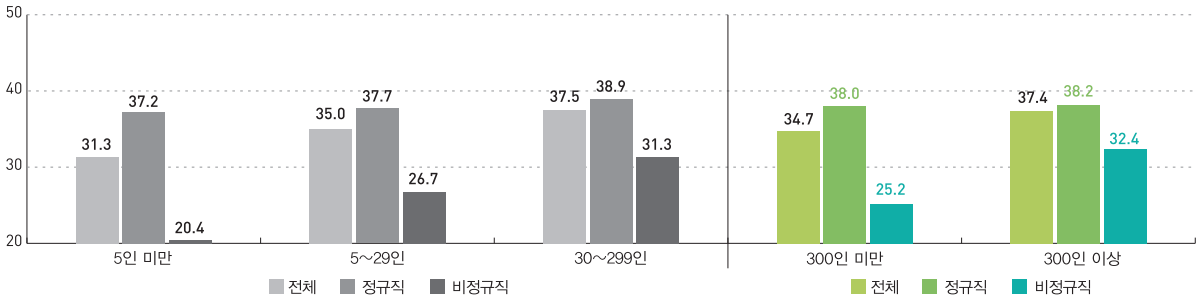
(단위: 시간)



주: 1)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6-14 사업체 규모별 · 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19)

(단위: 시간)



주: 1)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9	1년

Checkpoint 2018년 7월 이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듬해에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에, 2020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2021년부터는 5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 실효성 평가를 위해 향후 근로시간 단축 여부를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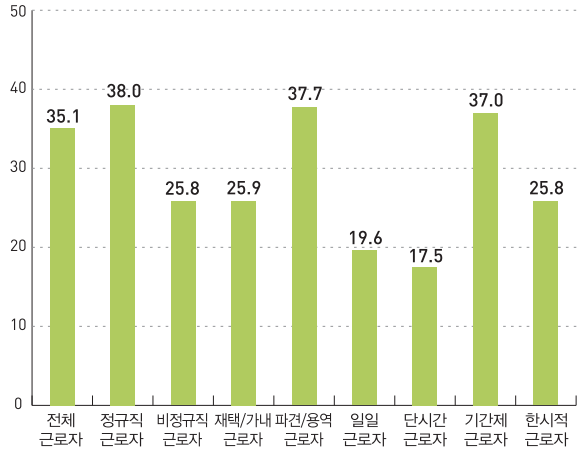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기준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의 일반근로자 8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유해위험작업근로자 6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의 연소근로자 7시간) 이내로 사업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일(주휴일, 취업규칙상의 휴일은 제외)에 정규적인 업무개시와 종료시각 사이의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이때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 초과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한다.

*** 2008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합하고,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그림 6-15 근로형태별 주당 근로시간 (2019)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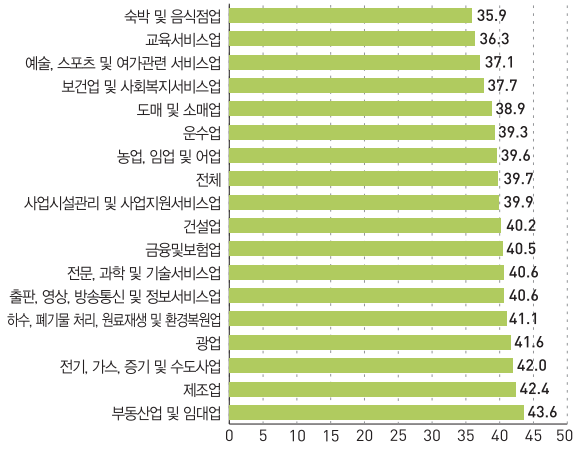


주: 1) 주당 근로시간을 월 근로시간×(7일/30.4일) 측정 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수치임.
2) 특수형태근로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9

그림 6-16 산업별 주당 근로시간 (2019)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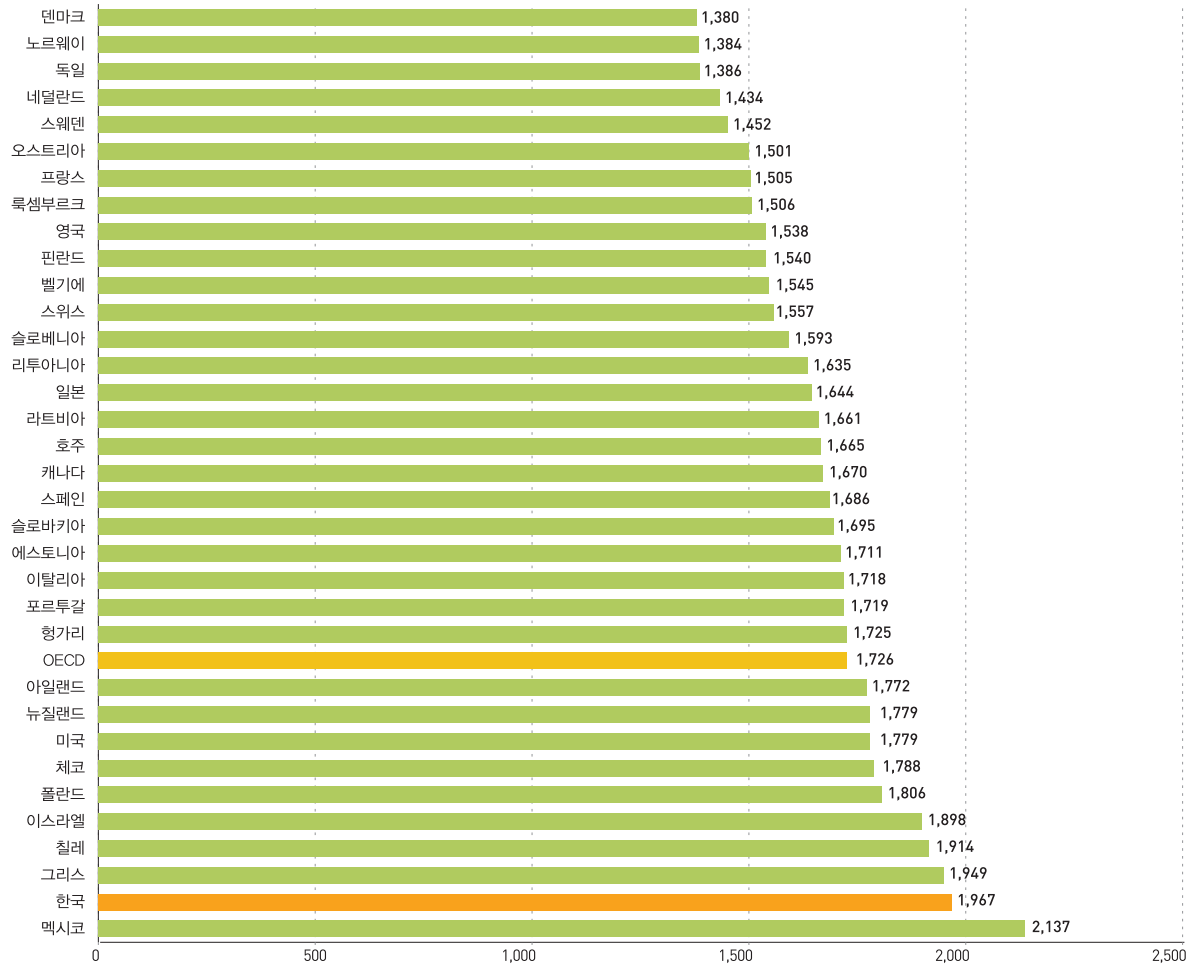


주: 주당 근로시간은 측정산식에 따라 총 근로시간과 총 근로일수를 활용하여 재산정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9

그림 6-17 OECD 주요국가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2019)

(단위: 시간)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07
대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Status of Workers

지표 정의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 상태를 말하며,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한다.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와 한 사람 이상의 유급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자영업자(고용주)로 구분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한다.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고용계약을 미설정한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자이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다.

• 종사상 지위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종사상 지위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표 6-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와 비율 (200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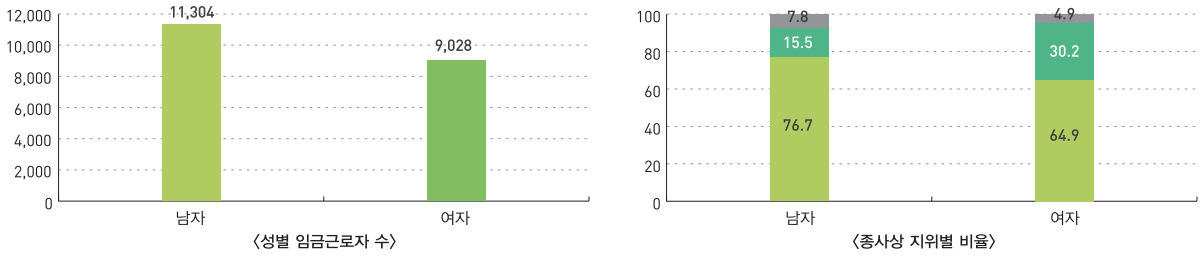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2,831 (100.0)	23,188 (100.0)	23,561 (100.0)	23,775 (100.0)	23,688 (100.0)	24,033 (100.0)	24,527 (100.0)	24,955 (100.0)	25,299 (100.0)	25,897 (100.0)	26,178 (100.0)	26,409 (100.0)	26,725 (100.0)	26,822 (100.0)	27,123 (100.0)	26,904 (100.0)
자영업자	6,141 (26.9)	6,109 (26.3)	6,048 (25.7)	6,005 (25.3)	5,749 (24.3)	5,643 (23.5)	5,657 (23.1)	5,768 (23.1)	5,703 (22.5)	5,720 (22.1)	5,622 (21.5)	5,614 (21.3)	5,682 (21.3)	5,638 (21.0)	5,606 (20.7)	5,531 (20.6)
무급가족종사자	1,503 (6.6)	1,471 (6.3)	1,419 (6.0)	1,413 (5.9)	1,352 (5.7)	1,279 (5.3)	1,273 (5.2)	1,266 (5.1)	1,232 (4.9)	1,219 (4.7)	1,153 (4.4)	1,126 (4.3)	1,110 (4.2)	1,101 (4.1)	1,077 (4.0)	1,042 (3.9)
상용근로자	7,923 (34.7)	8,248 (35.6)	8,715 (37.0)	9,105 (38.3)	9,479 (40.0)	10,178 (42.4)	10,786 (44.0)	11,250 (45.1)	11,847 (46.8)	12,319 (47.6)	12,716 (48.6)	13,062 (49.5)	13,428 (50.2)	13,772 (51.3)	14,216 (52.4)	14,521 (54.0)
임시근로자	5,059 (22.2)	5,163 (22.3)	5,202 (22.1)	5,122 (21.5)	5,134 (21.7)	5,107 (21.2)	5,045 (20.6)	5,032 (20.2)	4,919 (19.4)	5,069 (19.6)	5,114 (19.5)	5,124 (19.4)	4,992 (18.7)	4,851 (18.1)	4,795 (17.7)	4,483 (16.7)
일용근로자	2,205 (9.7)	2,197 (9.5)	2,178 (9.2)	2,130 (9.0)	1,973 (8.3)	1,826 (7.6)	1,765 (7.2)	1,639 (6.6)	1,600 (6.3)	1,570 (6.1)	1,572 (6.0)	1,483 (5.6)	1,514 (5.7)	1,460 (5.4)	1,429 (5.3)	1,328 (4.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그림 6-18 성별 임금근로자 수와 종사상 지위별 비율 (2020)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63	2020	1개월

Checkpoint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성은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직 비율이 높다. 다른 한편, 그 규모와 비중이 감소세를 보이긴 하나,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여전히 취업자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08
대 표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

Employment by Employment Type

지표 정의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포괄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정의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눠진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짧은 근로자를 말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 제공방식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재택, 가내), 일일(호출) 근로자로 분류된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형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측정 산식

• 근로형태별 정의에 따른 취업자 수

유의사항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 · 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는 제외

표 6-5 근로형태별 취업자 수와 임금근로자 대비 비율 (2006~2020)

(단위: 천 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15,420	16,006	16,258	16,609	17,189	17,715	17,941	18,403	18,992	19,474	19,743	20,006	20,045	20,559	20,446
	정규직	9,956	10,274	10,770	10,826	11,475	11,662	11,987	12,426	12,869	13,166	13,262	13,428	13,431	13,078	13,020
	비정규직	5,465	5,732	5,488	5,783	5,715	6,053	5,954	5,977	6,123	6,308	6,481	6,578	6,614	7,481	7,426
	– 한시적 근로자	3,649	3,580	3,322	3,528	3,298	3,474	3,427	3,446	3,529	3,655	3,671	3,725	3,823	4,785	4,608
	* 기간제	2,741	2,556	2,388	2,828	2,500	2,687	2,729	2,770	2,763	2,872	2,939	2,930	3,005	3,799	3,983
	– 시간제 근로	1,127	1,199	1,231	1,428	1,623	1,708	1,828	1,883	2,035	2,236	2,488	2,663	2,709	3,156	3,252
	– 비전형 근로	1,918	2,204	2,147	2,288	2,300	2,452	2,304	2,234	2,137	2,229	2,245	2,112	2,071	2,045	2,073
비율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4.6	64.2	66.2	65.2	66.8	65.8	66.8	67.5	67.8	67.6	67.2	67.1	67.0	63.6	63.7
	비정규직	35.4	35.8	33.8	34.8	33.2	34.2	33.2	32.5	32.2	32.4	32.8	32.9	33.0	36.4	36.3
	– 한시적 근로자	23.7	22.4	20.4	21.2	19.2	19.6	19.1	18.7	18.6	18.8	18.6	18.6	19.1	23.3	22.5
	* 기간제	17.8	16.0	14.7	17.0	14.5	15.2	15.2	15.1	14.5	14.7	14.9	14.6	15.0	18.5	19.2
	– 시간제 근로	7.3	7.5	7.6	8.6	9.4	9.6	10.2	10.2	10.7	11.5	12.6	13.3	13.5	15.3	15.9
	– 비전형 근로	12.4	13.8	13.2	13.8	13.4	13.8	12.8	12.1	11.3	11.4	11.4	10.6	10.3	9.9	10.1

주: 1) 매년 8월 기준임.

2) 비정규직 근로자는 한시적 근로자이거나 시간제 근로자이거나 비전형 근로자이므로 세 유형의 합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과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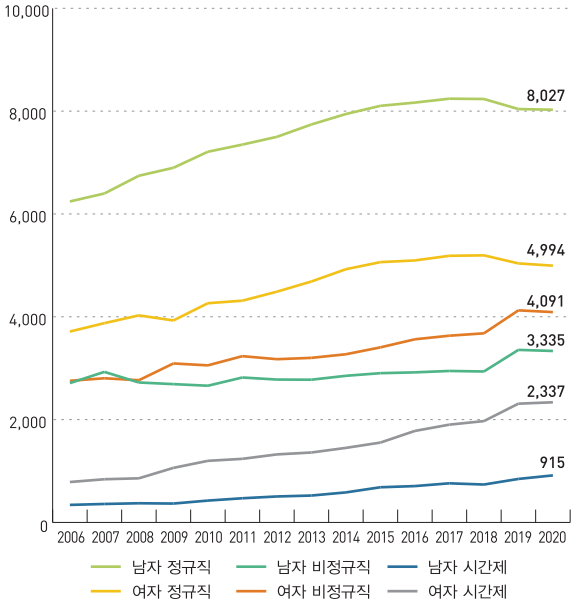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20	1년

Checkpoint 노동의 이중구조의 문제로 비정규직 문제가 꾸준히 논의되는 가운데, 여전히 비정규직의 비중은 임금근로자 중 30% 정도에 달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2015년 이후 정규직 근로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수와 비중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그림 6-19 성별 ·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수 (200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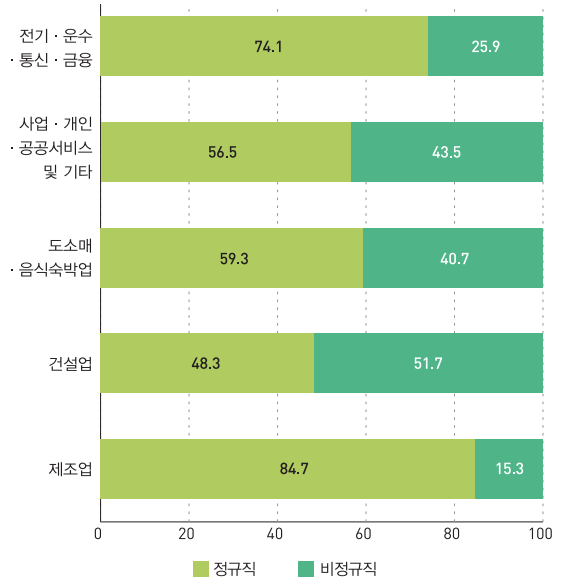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매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그림 6-20 산업별 · 근로형태별 취업자의 비율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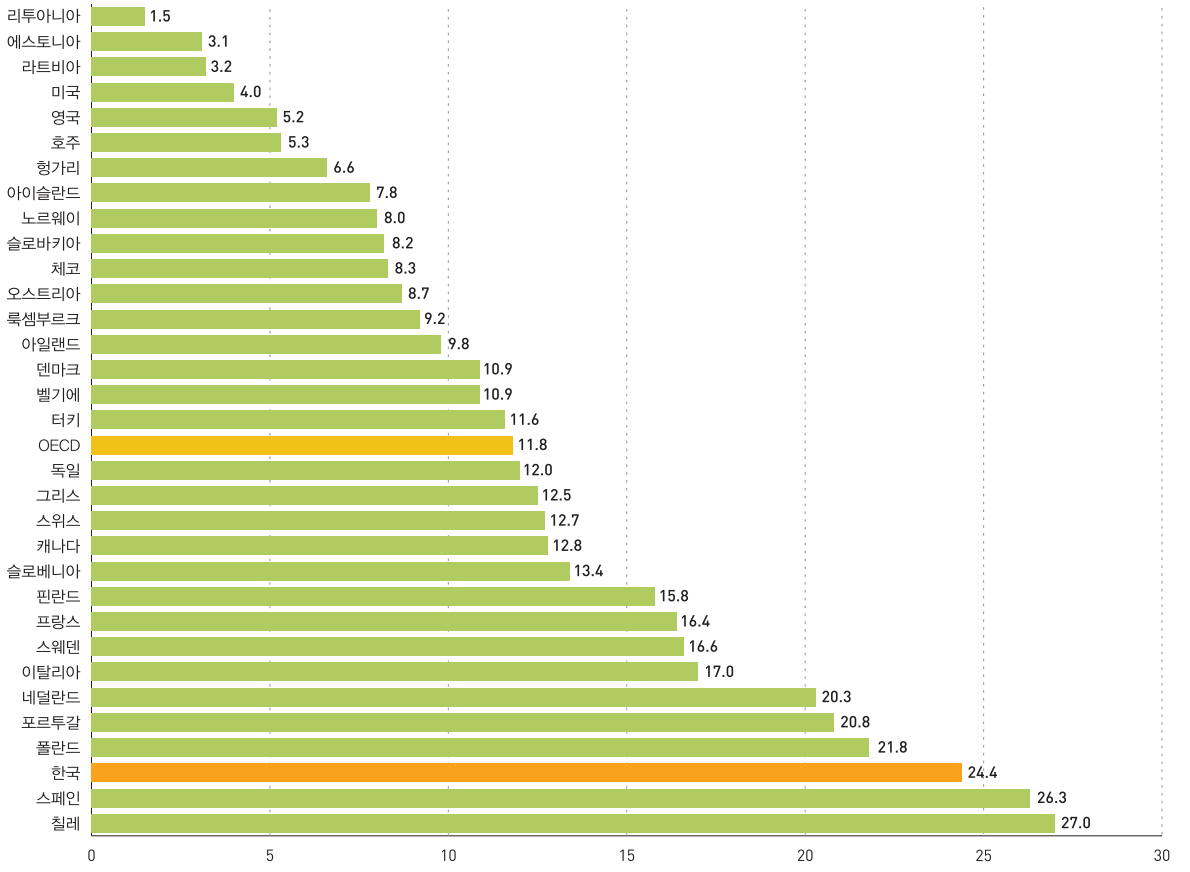
(단위: %)



주: 매년 8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그림 6-21 OECD 주요국가 임시직의 비율 (2019)

(단위: %)



주: 1) 호주, 미국은 2017년도 자료임.
2) 일본, 멕시코 값 없음.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12.23. 인출)

09
대 표

사회보험 가입률

Social Insurance Coverage

지표 정의

각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다. 사회보험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 노령에 대비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건강보험은 질병발생 시, 고용보험은 실업, 산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를 대비해 각각 1977년, 1995년, 1964년 시행되었다.

•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은퇴, 실업,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사회보험 가입률은 얼마나 많은 근로자가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의 혜택을 받는지 보여준다.

측정 산식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frac{\text{직장가입자 수}}{\text{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 단, 고용보험의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frac{\text{각 보험가입 근로자 수}}{\text{각 보험가입 대상 근로자 수}} \times 100$$

표 6-6 사업체 규모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9)

(단위: %)

고용형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90.3	90.9	91.1	97.7
5인 미만	72.7	77.3	77.9	90.9
5~29인	94.4	91.9	92.1	99.7
30~299인	97.8	97.3	96.9	99.9
300인 미만	89.3	89.4	89.7	97.4
300인 이상	96.2	99.9	98.9	99.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9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표 6-7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및 증감률 (2020)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건강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고용보험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계	69.8	0.3	76.7	1.0	72.6	1.7
정규직	88.0	0.5	92.6	1.1	89.2	2.0
비정규직	37.8	△0.1	49.0	1.0	46.1	1.2
한시적	50.5	1.5	65.2	3.5	60.0	2.9
기간제	53.8	4.8	69.8	6.7	63.6	6.0
비기간제	31.4	△17.7	38.5	△17.8	39.4	△15.6
시간제	20.5	0.7	28.9	2.2	27.8	1.7
비전형	17.2	△1.9	29.4	△2.9	27.0	△2.0

주: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8. (http://kosis.kr에서 2020.12.2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03	2020	1년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9	1년

Checkpoint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두루누리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2019년 전년 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이 늘어났으나, 비정규직 중 비기간제, 비전형 근로자 등의 가입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10
대 표

산업재해율

Industrial Accident Rate

지표 정의

재해자 수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재해자를 말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재해자 수}}{\text{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times 100$$

표 6-8 산업별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2019)

(단위: 명, %, ‰)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재해율(%)	사망만인율(‰)
전체	18,725,160	109,242	2,020	0.58	1.08
광업	11,108	2,543	406	22.89	365.5
제조업	4,045,048	29,274	492	0.72	1.22
건설업	2,487,807	27,211	517	1.09	2.08
전기 · 가스 · 수도업	76,687	111	5	0.14	0.65
운수창고 · 통신업	910,585	6,173	153	0.68	1.68
기타 산업	11,193,925	43,930	447	0.39	0.40

주: 산재사망만인율은 (산재 사망자 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10,000임. 재해율은 (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0

그림 6-22 사업체 규모별 재해율 (2019)

(단위: %)



주: 산재사망만인율은 (산재 사망자 수/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수)×10,000임. 재해율은 (재해자 수/근로자 수)×100
자료: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1977	2019	분기

Checkpoint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평균의 2배 이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이 이보다 규모가 큰 사업장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험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노력과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

11 대 표

저임금근로자 비율

Low Pay Incidence

지표 정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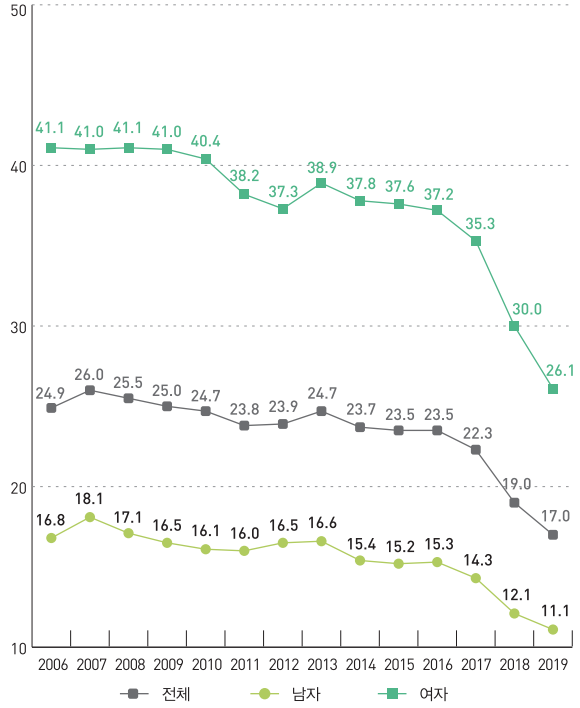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의 비율은 임금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이 불평등할 뿐 아니라 근로빈곤의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임금이 임금 중위값의 2/3보다 적은 임금근로자의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의 수}} \times 100$$

그림 6-23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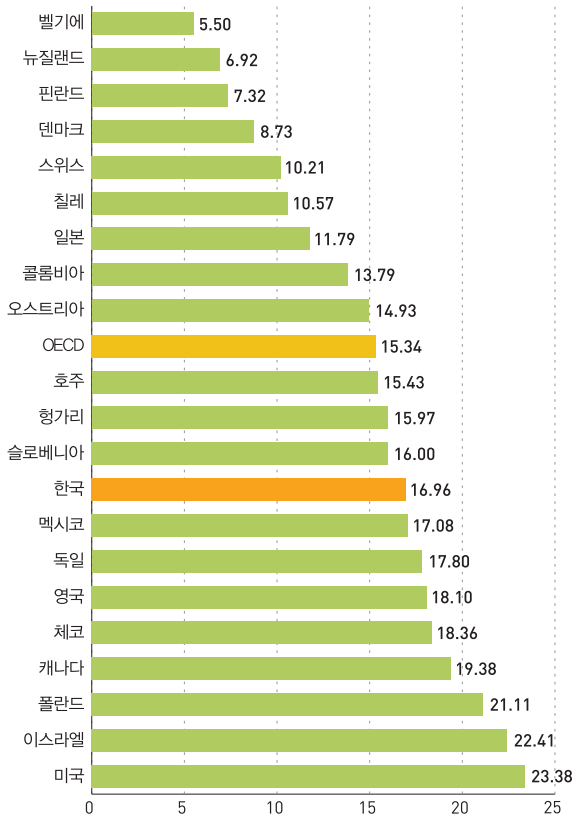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12.23. 인출)

그림 6-24 OECD 주요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 (2019)

(단위: %)



주: 1) 2016년 자료: 스위스
2) 2017년 자료: 벨기에, 칠레
3) 2018년 자료: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4) 2019년 자료: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미국

자료: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에서 2020.12.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mployment Outlook	-	2019	1년

Checkpoint

꾸준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다소 높은 수준이다. 특히, 여성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는 여성의 취약한 종사상 지위 등과 결부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증가와 실업률 감소 등의 양적인 정책목표와 함께 임금수준 제고 등 일자리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질적인 정책목표가 병행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12 대 표

시간급 최저임금

Hourly Minimum Wag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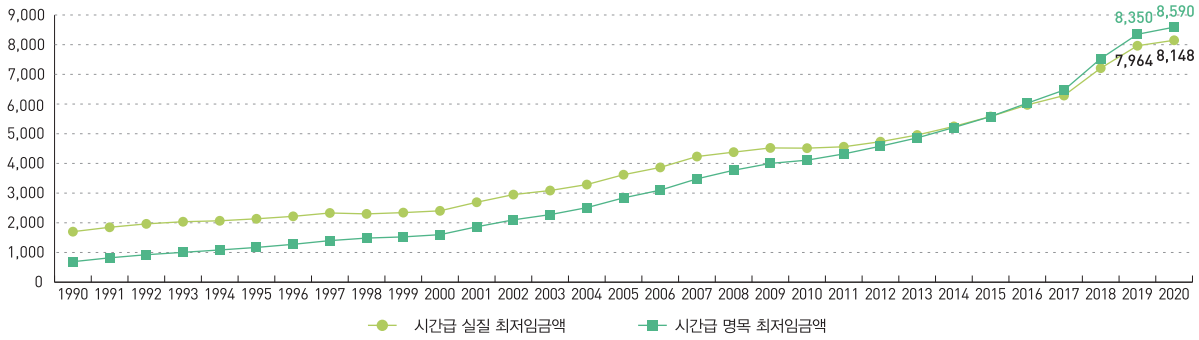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 결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를 보면 시행 초년도인 1988년도에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1990년 전 산업으로 확대되었고 1999년에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01년 이후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측정 산식

•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산출

그림 6-25 시간급 명목 최저임금액과 실질 최저임금액 (199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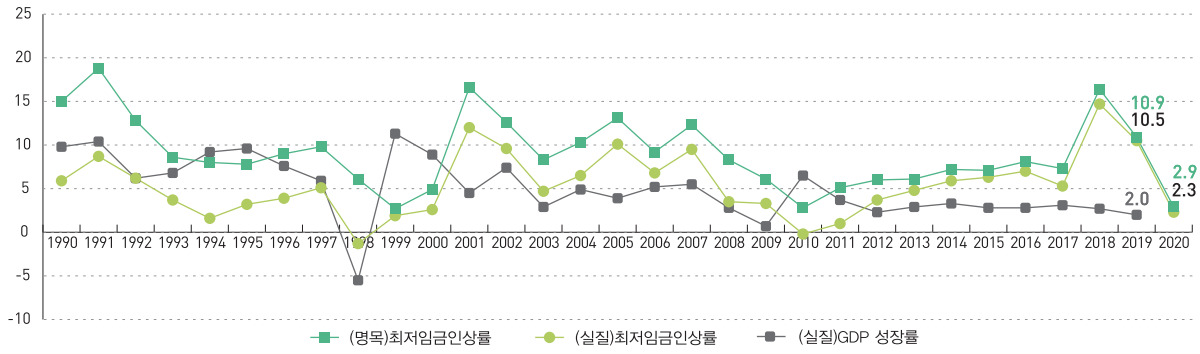
(단위: 원)



주: 실질 최저임금액은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실질화한 것으로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산출
자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내부자료), 각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4. 인출)

그림 6-26 실질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인상률 (1990~2020)

(단위: %)



주: (실질)최저임금인상률은 2015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실질화한 것으로 연구진에서 자체적으로 산출
자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내부자료), 각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청, 소비자 물가조사 (https://kosis.kr에서 2021.1.14. 인출)
실질 GDP 성장률: 한국은행, 국민소득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에서 2021.1.14.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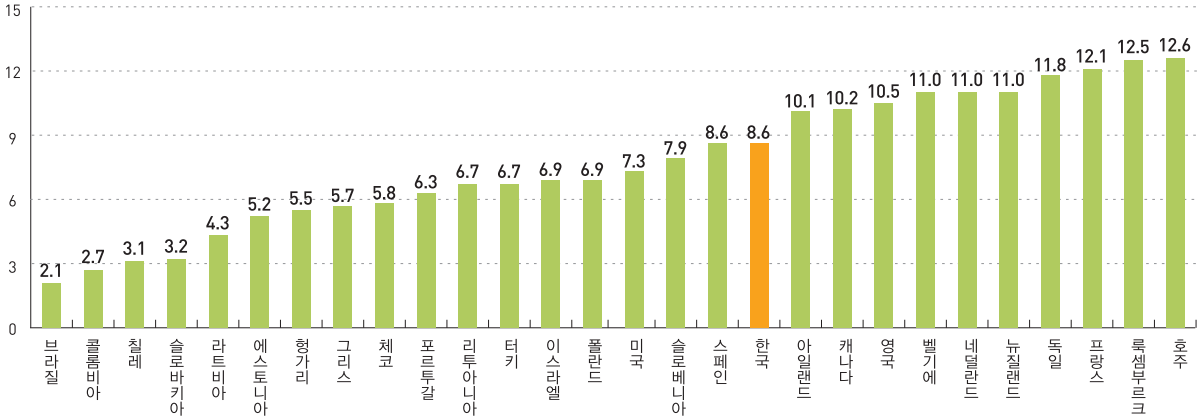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1989	2020	1년

Checkpoint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다소 높은 편이다.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18년과 2019년에는 실질 인상률이 약 10% 이상에 달하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약 240원 인상되어 전년 대비 명목 인상률은 2.9%, 실질 인상률은 2.3%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그림 6-27 OECD 주요국가 시간당 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최저임금액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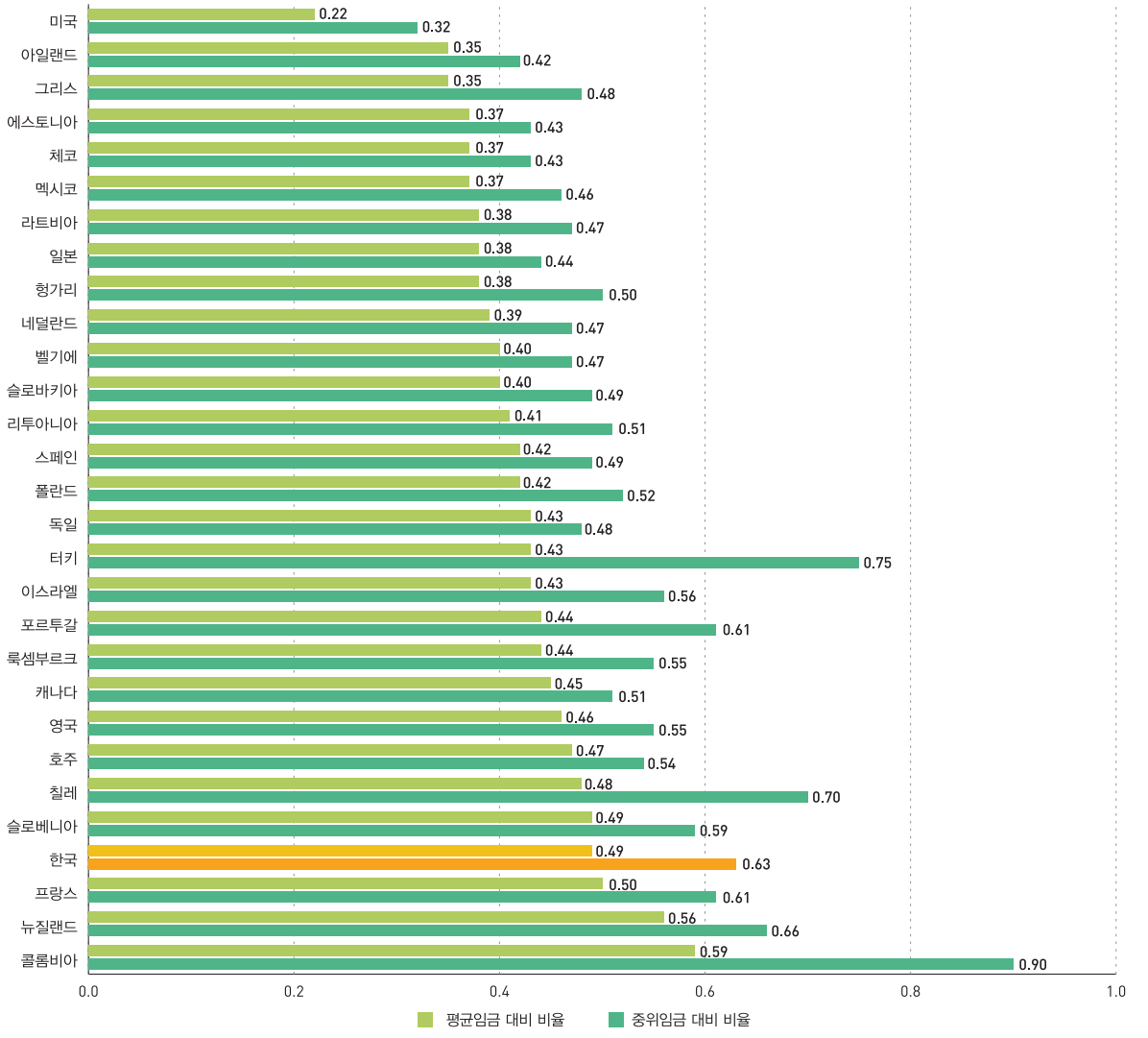
(단위: US$ PPP)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20.12.23. 인출)

그림 6-28 OECD 국가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2019)

(단위: %)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에서 2020.12.23. 인출)

12-1
연 관

최저임금 영향률

Proportion of Employees expected directly by New Minimum Wage

지표 정의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최저임금 변경(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수 비율의 추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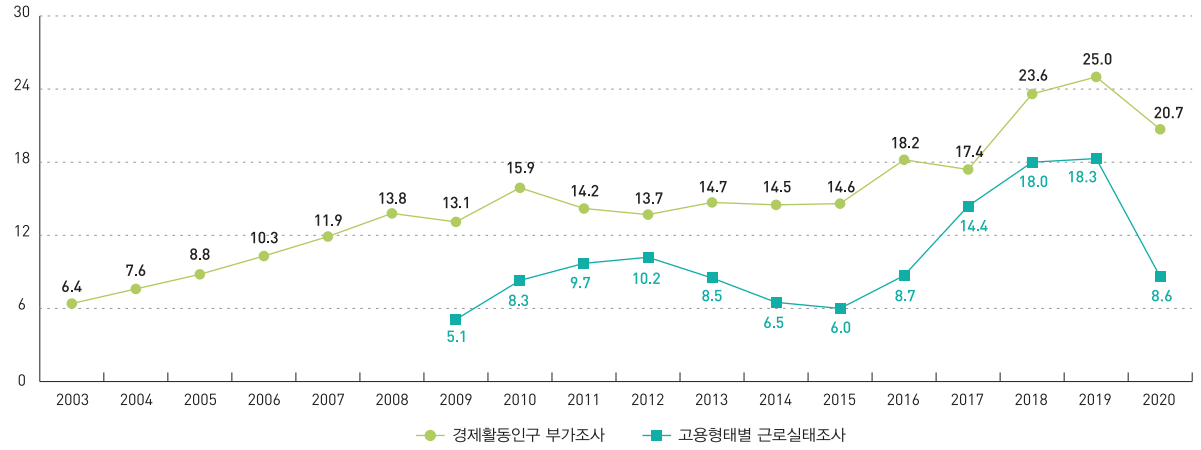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전년도 시간당 임금액에 금년도 임금상승률 전망치를 결합하여 금년도 시간당 임금액과 근로자 수의 분포를 추정한 후,

$$\frac{\text{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그림 6-29 최저임금 영향률 (2003~2020)

(단위: %)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내부자료)	-	2020	-

Checkpoint 2019년까지 꾸준히 늘어나던 최저임금 영향률은 2020년 다소 하락하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20.7%,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8.6%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영향률의 증가세가 다소 완화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가 적지 않으므로, 변화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적 지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대 표

시간당 임금총액

Hourly Wage

지표 정의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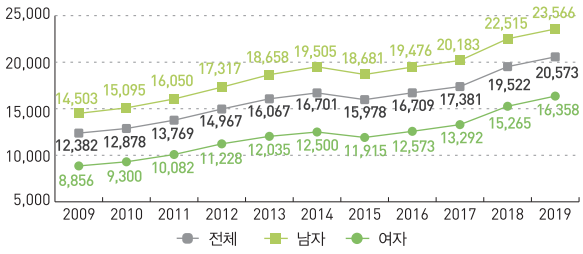
- 근로자와 그 가족은 임금총액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곧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월 임금총액}}{\text{월 근로시간}}$ (임금총액* = 정액급여 + 초과급여 + 특별급여)

그림 6-30 성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시간당 임금액 (2009~2019)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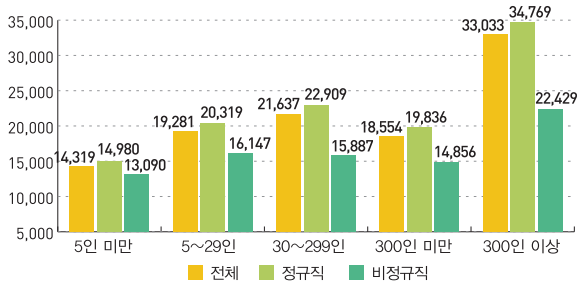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6-31 사업체 규모별 ·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19)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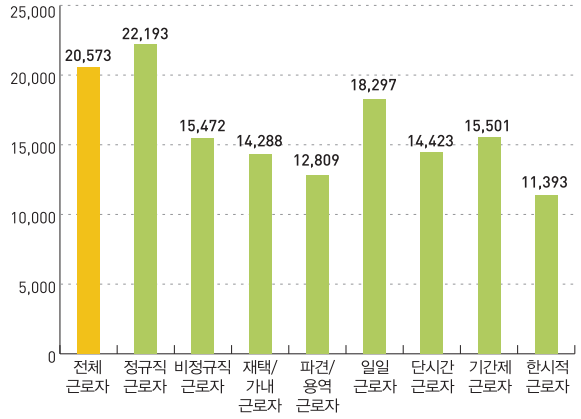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0

그림 6-32 근로형태별 시간당 임금액 (2019)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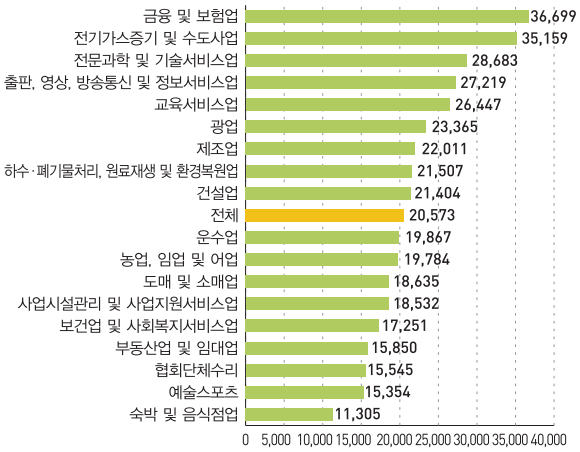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0

그림 6-33 산업별 시간당 임금액 (2019)

(단위: 원)



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201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08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20,573원으로 전년 대비 약 5.4% 인상되었으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절화를 반영한 결과로 시간당 임금액에 대한 성별, 사업체 규모별, 고용형태별에 따른 검토와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임금총액은 정액, 초과, 특별 등의 세 가지 급여를 합한 것이며, 정액급여란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연차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고, 초과급여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연장 · 휴일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특별급여란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을 말한다.

14 대 표

근로 · 자녀장려금 지급액

Payment of Earned Income Tax Credit/Child Tax Credit

지표 정의

근로장려금은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 또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요건 검토 후 지급된다.

측정 산식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1]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2]	4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 × 150 / 400
	400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 ~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 – (총 급여액 등 – 900만 원) × 150 / 1,100
• 홑벌이 가족가구[3]	7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260 / 700
	700 ~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 ~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400만 원) × 260 / 1,600
• 맞벌이 가족가구[4]	800만 원 미만	총 급여액 등×300 / 800
	800 ~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 ~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 – (총 급여액 등 – 1,700만 원) × 300 / 1,900

주: 1)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2)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3)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4)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 20 / 1,900]
•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 20 / 1,50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세청	국세통계	1967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가구는 총 4,946천 가구이고 총액은 5조 298억 원으로 2010년(52만 가구, 4,020억 원)과 비교하여 지급가구 수는 9배, 지급금액은 13배 증가하였다. 최근 단독가구의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 연령요건을 폐지하였고, 연령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한 효과의 분석이 필요하다.

표 6-9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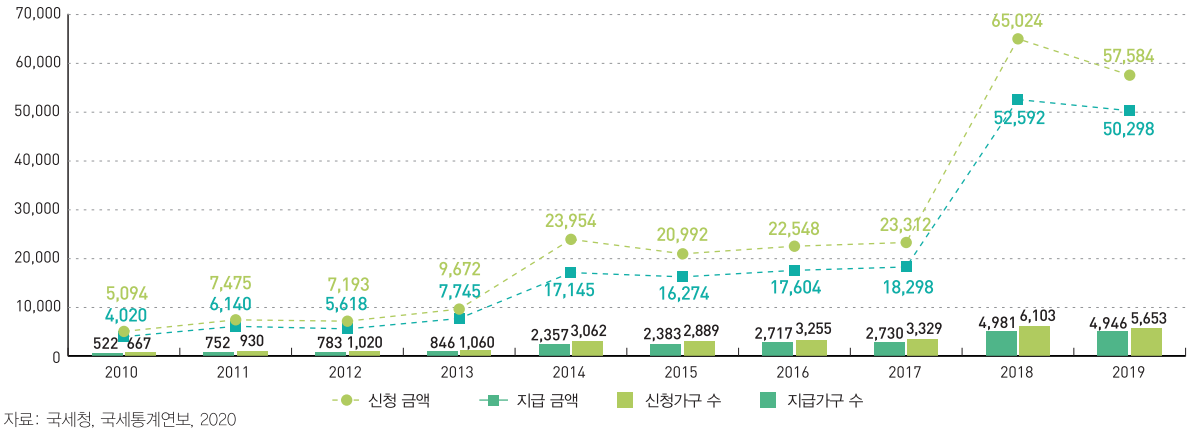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억 원)

구분	신청								
	합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 · 자녀장려금		
연도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근로)	금액(자녀)
2010	667	5,094	667	5,094	-	-	-	-	-
2011	930	7,475	930	7,475	-	-	-	-	-
2012	1,020	7,193	1,020	7,193	-	-	-	-	-
2013	1,060	9,672	1,060	9,672	-	-	-	-	-
2014	3,062	23,954	1,659	14,196	1,403	9,758	751	7,157	5,729
2015	2,889	20,992	1,738	13,205	1,151	7,787	612	5,764	4,534
2016	3,255	22,548	1,985	14,779	1,270	7,769	560	5,560	4,044
2017	3,329	23,312	2,178	16,585	1,151	6,727	489	5,038	3,397
2018	6,103	65,024	5,021	55,595	1,082	9,429	790	11,502	7,459
2019	5,653	57,584	4,808	49,979	845	7,605	639	8,978	6,109
지급									
2010	522	4,020	522	4,020	-	-	-	-	-
2011	752	6,140	752	6,140	-	-	-	-	-
2012	783	5,618	783	5,618	-	-	-	-	-
2013	846	7,745	846	7,745	-	-	-	-	-
2014	2,357	17,145	1,282	10,566	1,075	6,579	572	5,346	4,124
2015	2,383	16,274	1,439	10,574	944	5,700	506	4,677	3,584
2016	2,717	17,604	1,655	11,967	1,062	5,637	466	4,551	3,216
2017	2,730	18,298	1,793	13,381	937	4,917	403	4,205	2,753
2018	4,981	52,592	4,102	45,048	879	7,543	651	9,563	6,090
2019	4,946	50,298	4,214	43,915	732	6,383	556	7,954	5,19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0

그림 6-3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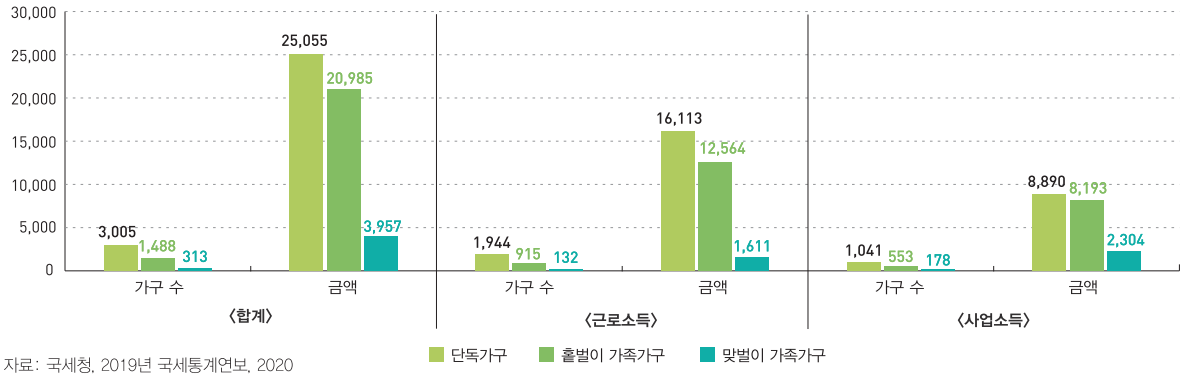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억 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0

그림 6-35 가구유형별 · 소득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수와 지급액 (2019)

(단위: 천 가구, 억 원)



자료: 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2020

15 대 표

자활사업 대상자 수

Number of people targeted by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자활사업을 시행 중이다.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사업 대상자: (1)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 (2)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중 참여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가능) (4)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5)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인 차상위자(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참여를 원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6) 시설수급자 중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행복e음 보장결정 필수) (7) 일반시설생활자(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차상위자 참여 결정 준용
  *일반수급자: (1)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2)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자활사업 범위: 2017년을 기준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생업자금 지원 등을 포함

표 6-10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3~2019)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활사업 대상자 수	1,277,668	1,256,139	1,569,566	1,551,707	1,502,461	1,663,098	1,801,635

주: 연도 말 기준

표 6-11 월별 · 수급지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9)

(단위: 명)

구분	자활사업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계 (시설 수급자 제외)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소계	자활사업 미참여자	자활사업 희망 참여자	소계	조건부과 제외자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부수급자			자활 특례자	기타	
									소계	취업 대상자	비취업 대상자			
1월	1,679,580	1,670,441	1,182,406	1,179,393	3,013	90,617	82,519	8,098	90,265	26,826	63,439	2,568	303,441	10,283
2월	1,695,182	1,686,073	1,190,670	1,189,309	1,361	90,653	82,910	7,743	90,962	30,882	60,080	2,546	310,028	10,323
3월	1,695,322	1,686,264	1,187,775	1,186,427	1,348	96,945	89,601	7,344	91,746	31,751	59,995	2,487	306,053	10,316
4월	1,722,314	1,713,207	1,201,018	1,199,544	1,474	97,645	90,272	7,373	92,433	32,484	59,949	2,515	318,185	10,518
5월	1,745,565	1,736,533	1,212,692	1,211,215	1,477	96,434	89,036	7,398	92,757	32,938	59,819	3,561	329,611	10,510
6월	1,751,998	1,743,195	1,217,408	1,216,010	1,398	93,901	86,808	7,093	93,165	33,568	59,597	3,620	333,630	10,274
7월	1,757,079	1,748,334	1,223,053	1,221,530	1,523	92,040	85,141	6,899	93,091	33,736	59,355	3,593	335,083	10,219
8월	1,765,583	1,756,876	1,230,226	1,227,019	3,207	91,249	84,347	6,902	93,632	34,322	59,310	3,576	336,720	10,180
9월	1,772,325	1,763,630	1,235,221	1,233,822	1,399	89,793	83,129	6,664	93,775	34,477	59,298	3,535	339,846	10,155
10월	1,785,254	1,776,445	1,243,363	1,241,958	1,405	88,993	82,091	6,902	94,151	34,926	59,225	3,498	344,886	10,363
11월	1,797,759	1,788,579	1,251,327	1,249,850	1,477	88,141	81,413	6,728	94,501	35,257	59,244	3,472	349,412	10,906
12월	1,801,635	1,792,012	1,255,740	1,254,225	1,515	87,005	80,689	6,316	94,448	35,405	59,043	3,412	349,505	11,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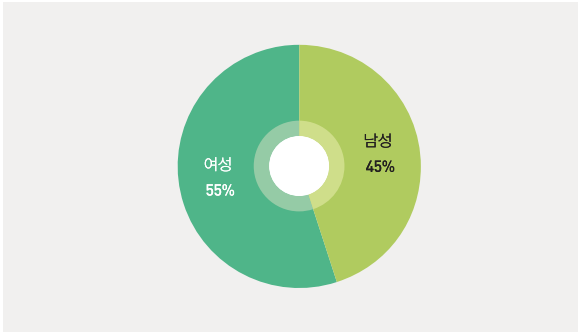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사업 대상자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2019년 자활사업 대상자 수는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하여, 백 팔십 만 명에 달했으며, 여성, 50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이 큰 편이다.

그림 6-36 성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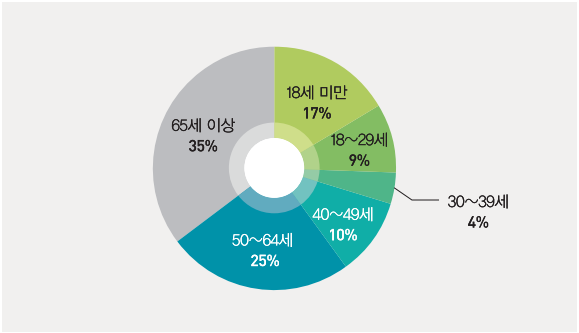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7 연령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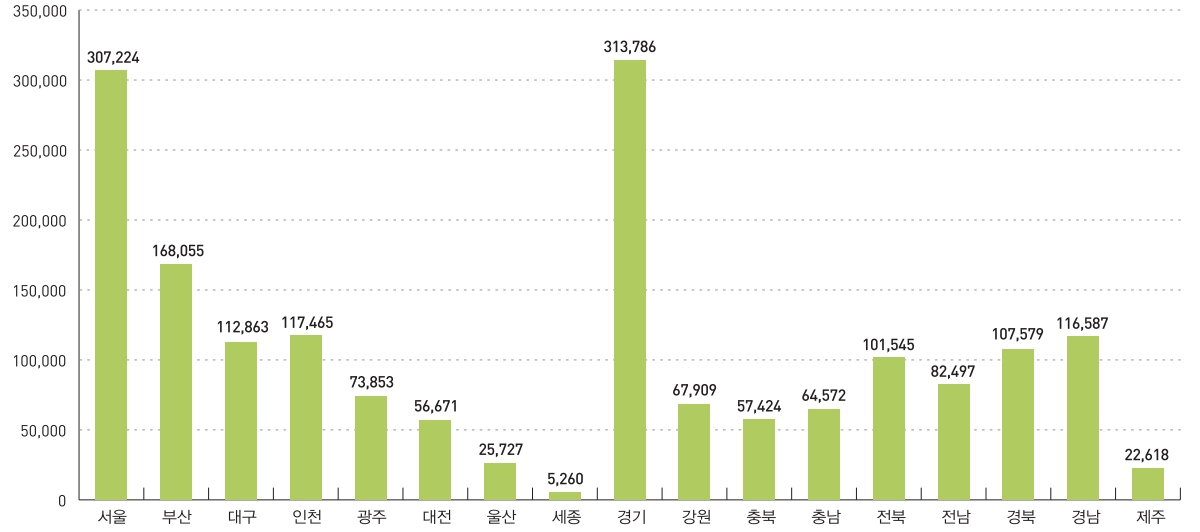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8 시도별 자활사업 대상자 수 (2019)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15-1
연 관

자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자활사업* 대상자 중 실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수를 집계한 값이다.

* 자활근로, Gate Way 과정, 취업성공패키지 등

측정 산식

- 자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표 6-12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3~2019)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활사업 참여자 수	46,973	46,250	50,131	48,208	50,224	52,064	60,342

주: 연도 말 기준

표 6-13 월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9)

(단위: 명)

구분	자활근로	Gateway 과정	희망리본사업	기타	취업성공패키지사업	계
1월	23,824	3,132	12,935	0	7,552	47,443
2월	24,693	3,416	12,925	0	7,388	48,422
3월	24,645	3,636	13,316	0	8,707	50,304
4월	26,104	3,784	14,932	0	6,697	51,517
5월	25,791	3,882	13,637	0	6,286	49,596
6월	26,332	3,863	15,160	0	6,089	51,444
7월	27,287	3,871	18,568	0	6,345	56,071
8월	27,352	3,938	18,603	0	7,734	57,627
9월	27,705	3,930	16,866	0	7,513	56,014
10월	28,547	3,989	15,895	0	6,034	54,465
11월	29,070	4,161	17,290	0	7,195	57,716
12월	29,977	4,632	17,849	0	5,522	57,98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참여자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2019년 12월의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60,342명으로 나타났고, 자활근로가 가장 많은 29,977명,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다음으로 많은 5,522명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50세 이상의 자활사업 참여가 많은 편이다.

표 6-14 수급유형별 · 업종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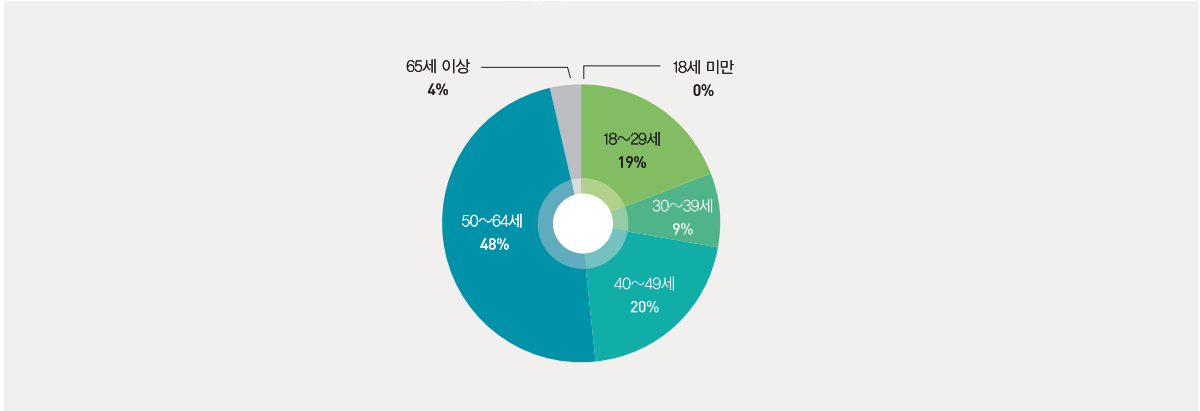
(단위: 명)

수급자 구분	값없음	집수리	간병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도시락	세차	영농	세탁	음식점 (외식)	장애 통합	산모 도우미	환경 정비	택배	기타	전체
일반 수급자가구	414	68	120	598	218	2	77	55	304	113	428	36	3	528	207	5,402	8,573
조건부 수급자가구	4,986	180	306	1,500	564	9	157	140	589	303	870	74	8	1,844	580	26,367	38,477
시설수급자	6	1	3	6	1		7		4	3	16	1		1	1	92	142
차상위 자활가구	13	83	208	690	276	2	105	56	555	150	410	33	2	227	234	2,749	5,793
특례수급자 가구	27	135	116	759	367	2	70	83	394	190	400	65	4	439	369	2,990	6,410
기타									1	1						3	5
값없음	148	1	5	21	4				5	4	13			9	14	718	942
합계	5,594	468	758	3,574	1,430	15	416	334	1,852	764	2,137	209	17	3,048	1,405	38,321	60,342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39 연령별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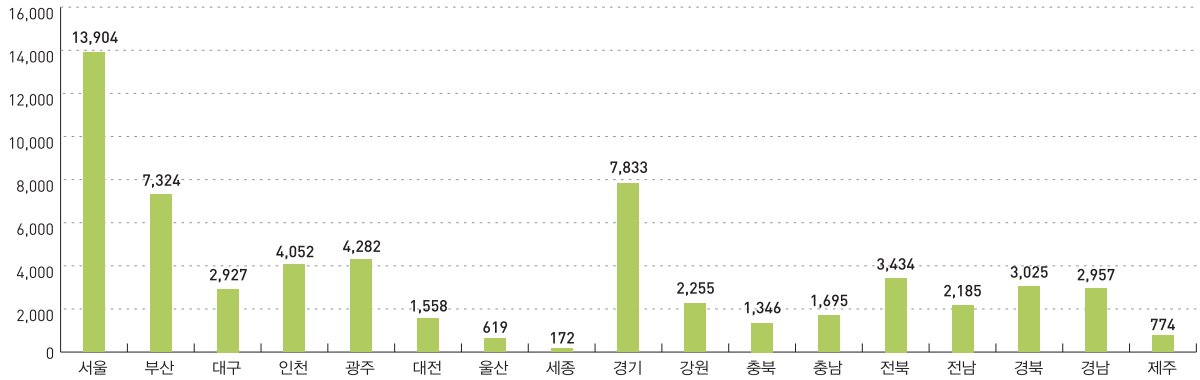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40 시도별 자활사업 참여자 수 (2019)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16
대 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Number of people participations i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사업 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수를 집계한 값이다.

측정 산식

- 자활근로사업 범위: 2017년을 기준으로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근로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이 해당되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합계는 중복을 제외한 인원수로 산정

표 6-15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3~2019)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33,370	30,713	28,955	25,387	24,666	24,505	29,977

주: 연도 말 기준

표 6-16 월별 · 수급자격별 자활근로 유형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9)

(단위: 명)

수급자격	자활근로 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맞춤형) 기초생계급여	시장진입형	1,286	1,311	1,286	1,463	1,399	1,251	1,393	1,365	1,397	1,453	1,443	1,372
	인턴도우미형	941	953	975	1,026	997	855	863	852	894	919	938	914
	사회서비스형	3,031	3,309	3,337	3,746	3,761	3,691	3,900	3,934	4,049	4,393	4,680	4,465
	근로유지형	3,574	3,631	3,663	3,691	3,638	3,446	3,489	3,488	3,474	3,474	3,497	3,536
(맞춤형) 기초의료급여	시장진입형	2,221	2,309	2,250	2,404	2,316	2,482	2,608	2,551	2,585	2,644	2,639	2,743
	인턴도우미형	765	774	788	789	810	835	846	861	860	865	900	982
	사회서비스형	4,943	5,142	5,134	5,385	5,359	5,958	6,175	6,327	6,428	6,602	6,636	7,165
	근로유지형	2,184	2,169	2,158	2,161	2,191	2,326	2,315	2,323	2,306	2,313	2,290	2,362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시장진입형	134	126	130	159	153	158	175	168	170	180	196	201
	인턴도우미형	50	56	54	56	62	56	57	54	62	73	100	108
	사회서비스형	318	341	334	399	405	422	455	448	461	480	511	559
	근로유지형	17	20	22	25	25	37	29	24	21	20	25	46
(맞춤형) 기초교육급여	시장진입형	2	2	0	1	0	0	0	0	0	0	0	0
	사회서비스형	0	0	1	0	1	1	1	1	1	1	1	1
차상위 자활	시장진입형	1,304	1,390	1,352	1,390	1,330	1,321	1,355	1,325	1,321	1,348	1,310	1,355
	인턴도우미형	236	237	233	244	236	194	176	188	192	196	228	269
	사회서비스형	2,673	2,777	2,735	2,907	2,856	2,913	2,988	3,019	3,037	3,067	3,061	3,153
	근로유지형	34	22	25	22	14	15	15	15	13	11	16	52
기타	시장진입형	5	3	12	38	15	33	53	15	6	19	14	30
	인턴도우미형	5	4	6	5	6	7	11	6	5	6	9	9
	사회서비스형	17	14	26	45	27	77	75	38	24	45	29	48
	근로유지형	5	3	3	11	12	23	15	9	4	7	6	15
전체		23,745	24,593	24,524	25,967	25,613	26,101	26,994	27,011	27,310	28,116	28,529	29,385

주: 기타는 수급자격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및 자활급여지급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참여자 수는 2018년보다 2019년에 증가한 것처럼 2019년 12월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한 29,97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과반 이상은 사회서비스형에 참여 중이다.

그림 6-41 월별 자활근로 참여자 수 및 신규 참여자 비율 (2019)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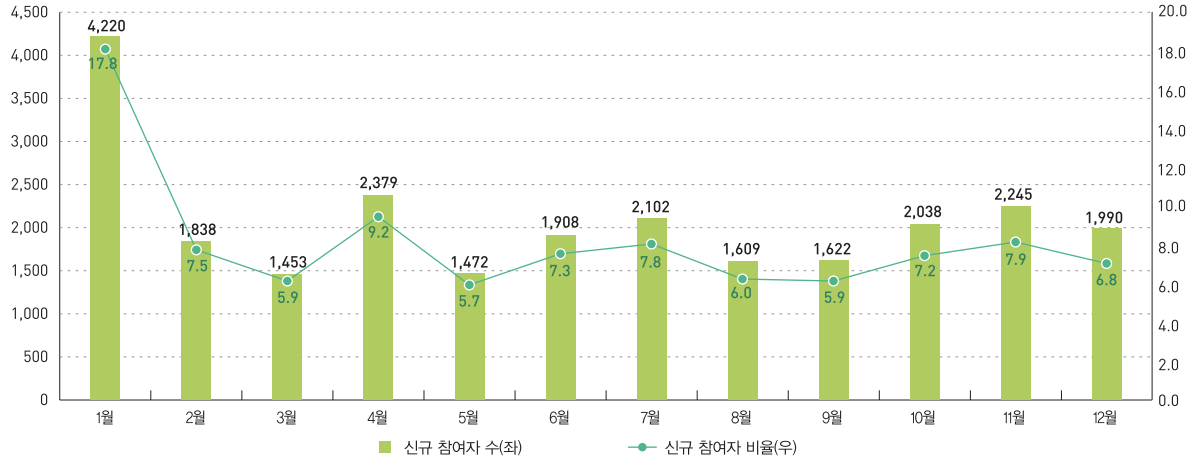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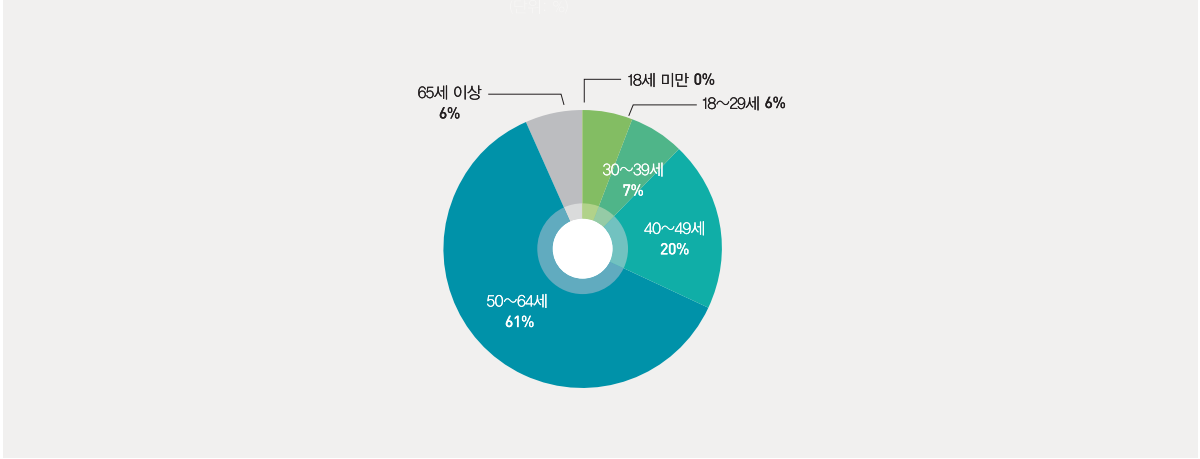


그림 6-42 연령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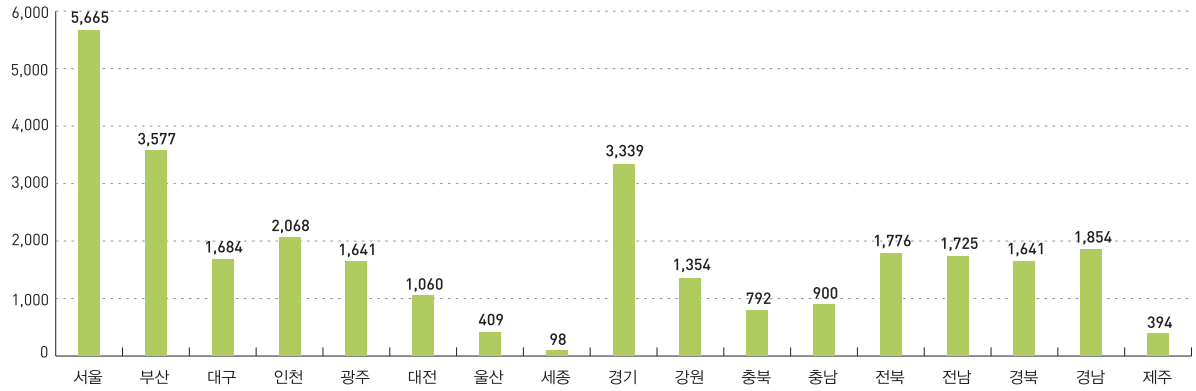
(단위: %)



주: 연도 말 기준

그림 6-43 시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 (2019)

(단위: 명)



주: 연도 말 기준

16-1 연 관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Expenditure on Self-Sufficiency work program benefits

지표 정의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자활근로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로 편성 · 구분된다. 본 지표에서는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 지급 현황을 제시한다.

측정 산식

- 자활기관별로 자활급여 지급액(자활인건비) 계산
  - 시군구 직접 사업시행 = 전체 지급금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액 + 고용보험액 + 산재보험액)}
  - 타기관 = 자활소득금액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수는 자활참여정보(고용지원센터(취업성공패키지사업) 제외)를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성별, 자활지원 유형별 중복을 제외

표 6-17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급여지급) 수 및 급여지급액

(단위: 명, 천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7	2018	2019
참여자 수	30,713	28,849	25,301	24,666	24,505	29,977
급여지급액	24,547,116	23,800,292	22,935,268	22,141,027	23,185,123	35,432,076

주: 연도 말 기준

표 6-18 시도별 · 월별 · 성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 참여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154	2,197	2,275	2,300	2,289	2,325	2,323	2,362	2,321	2,355	2,427	2,398	2,513	2,428	2,577	2,449	2,605	2,464	2,710	2,522	2,766	2,522	3,004	2,647
부산	1,224	1,736	1,260	1,774	1,259	1,738	1,321	1,816	1,330	1,837	1,368	1,789	1,405	1,859	1,412	1,889	1,437	1,927	1,439	1,888	1,554	1,967	1,572	1,998
대구	499	887	515	899	517	894	552	910	520	857	554	909	575	921	591	926	592	942	620	954	647	991	662	1,018
인천	620	994	634	1,015	642	1,022	666	1,032	662	1,029	695	1,090	731	1,124	750	1,117	771	1,133	804	1,152	849	1,194	854	1,211
광주	454	1,000	451	1,023	462	1,022	475	1,034	479	1,039	473	1,022	492	1,042	491	1,042	504	1,052	527	1,056	534	1,072	550	1,076
대전	308	524	310	528	327	547	333	559	337	568	341	582	340	578	344	599	323	568	347	621	355	649	380	672
울산	134	154	139	155	127	147	149	167	150	179	152	175	167	181	167	178	177	187	181	201	186	213	191	218
세종	35	48	38	50	40	49	47	51	46	53	43	52	41	51	45	52	46	52	44	55	44	55	44	54
경기	1,012	1,405	1,063	1,474	1,033	1,415	1,158	1,528	1,155	1,553	1,218	1,589	1,263	1,622	1,302	1,666	1,332	1,679	1,353	1,676	1,463	1,811	1,490	1,837
강원	471	663	480	665	469	650	504	679	502	676	518	684	543	697	548	691	546	700	568	715	583	748	584	766
충북	222	394	224	391	226	404	237	421	230	413	226	392	251	430	251	437	259	442	266	464	261	449	304	483
충남	327	463	333	474	342	480	375	503	376	504	384	513	393	508	383	494	415	517	410	521	413	545	384	513
전북	507	985	506	981	498	970	554	1,031	557	1,025	558	1,041	561	1,033	580	1,043	604	1,073	628	1,077	644	1,092	660	1,110
전남	462	873	515	998	506	971	529	1,005	557	1,031	561	1,027	559	1,010	586	1,042	591	1,040	593	1,045	585	1,037	623	1,099
경북	474	806	493	849	492	835	528	924	542	933	565	942	587	956	602	962	615	970	567	924	618	970	639	999
경남	564	870	602	895	624	905	628	909	635	919	645	934	675	949	681	960	702	970	700	956	752	1,020	790	1,060
제주	128	158	137	165	155	171	161	178	160	187	154	186	164	190	161	187	177	200	175	204	178	207	182	211

표 6-19 월별 · 지원유형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 (2019)

(단위: 백만 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시장진입형	8,578	6,453	6,621	7,103	7,115	6,586	7,622	7,093	7,374	7,142	7,351	8,661	87,699
인턴도우미형	2,284	2,179	2,328	2,521	2,572	2,143	2,452	2,324	2,374	2,410	2,595	2,880	29,063
사회서비스형	13,685	12,245	12,760	14,108	14,342	13,807	15,926	15,223	15,789	15,725	16,464	19,199	179,273
근로유지형	3,799	3,479	3,690	3,863	3,858	3,492	3,933	3,712	3,667	3,663	3,727	4,261	45,144
계	28,346	24,357	25,399	27,595	27,887	26,029	29,933	28,353	29,203	28,940	30,138	35,001	341,17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2019년 자활근로사업 급여지급액은 총 3,543억 원으로 나타났다.

17 대 표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participation in self-sufficiency program

지표 정의

차상위자활사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중 비수급권자에게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 기회와 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 군, 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과 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하다.

측정 산식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또는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수급 인정을 받은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2019, 단위: 원)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표 6-20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2013~2019)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19,240	18,912	15,611	12,085	10,647	10,324	11,525

주: 연도 말 기준

표 6-21 시도별 · 월별 · 성별 차상위자활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308	448	312	449	308	432	313	425	319	425	322	410	329	391	328	397	328	387	339	397	367	436	432	454
부산	274	543	271	551	281	549	291	562	297	553	302	533	322	521	329	527	330	518	321	528	336	559	358	589
대구	91	228	92	219	94	226	95	219	99	219	99	224	102	221	107	222	103	221	105	223	123	252	147	271
인천	165	290	151	249	142	236	153	242	160	242	156	236	157	223	152	208	147	216	151	216	165	234	183	248
광주	115	352	113	358	116	348	121	346	125	342	109	325	101	305	100	313	95	304	97	319	95	325	103	342
대전	160	297	160	295	161	301	166	304	150	266	139	249	143	259	155	268	158	276	162	283	173	296	179	304
울산	65	120	65	120	63	118	66	122	67	124	67	117	66	120	72	118	74	120	79	131	83	132	91	144
세종	19	20	20	20	18	20	19	19	20	17	17	21	16	23	12	19	12	19	12	21	14	22	16	24
경기	562	929	567	939	584	931	593	947	598	965	592	939	596	919	588	896	591	892	599	907	620	945	664	985
강원	216	436	213	429	216	425	221	437	228	438	229	427	227	422	229	430	230	432	231	427	248	444	267	458
충북	131	255	133	250	133	250	140	256	144	260	141	264	148	273	148	276	150	270	156	272	157	275	166	279
충남	133	264	139	275	142	276	143	283	151	278	148	265	151	264	152	266	153	261	155	270	164	284	175	295
전북	317	663	328	665	327	655	343	666	332	655	334	633	328	635	319	621	313	611	322	611	336	635	353	650
전남	359	751	370	762	372	776	384	789	386	792	387	771	385	766	378	756	387	759	407	786	416	818	429	845
경북	233	458	242	469	241	471	252	473	257	474	256	466	258	468	261	471	261	474	263	486	284	496	301	519
경남	323	680	334	683	341	683	349	697	353	691	346	668	348	656	355	645	358	648	362	660	398	703	435	742
제주	28	50	30	50	30	50	33	49	32	51	35	47	32	44	24	38	21	36	25	40	27	44	30	4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자활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차상위자활수급자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10,324명에 그쳤으나, 2019년 12월 반등하여 11,525명으로 나타났다.

7

소득보장과 빈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02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03 상대적 빈곤율

04 상대적 노인 빈곤율

05 소득5분위배율

06 지니계수

07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08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09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10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7 소득보장과 빈곤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최저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의료급여 수급자 수
		교육급여 수급자 수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율	
	상대적 노인 빈곤율	
불평등	소득5분위배율	
	지니계수	
노후소득보장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Highlight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도 개혁 등의 정책적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2014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대상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제고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대상자의 욕구 및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개편된 제도들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수준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이 연이어 추진 및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보장수준 제고를 위한 연금액에 대한 인상이 단계적으로 이뤄졌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완화 및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편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시장소득을 적용한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높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소득을 적용한 노인 빈곤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경기침체의 영향이 저소득층 또는 노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불평등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소득이 적용되는 빈곤율과 불평등도는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빈곤율은 2017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처분소득을 적용한 노인 빈곤율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역시 2017년 이후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공적이전제도의 효과성이 소득보장 측면과 불평등 완화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의 경우도 제도 성숙으로 인한 수급자 수 확대 및 급여수준의 제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성숙과 앞서 언급한 자산조사형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01
대 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Benefit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 대상에게 각 가구의 처한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 수급률은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빈곤율과의 비교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 추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text{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text{총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수급자 수는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를 합친 숫자이며, 수급률 역시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가 합친 전체 수급자 수를 인구로 나누어 구하였다. 여기서 일반수급자는 시설(에이즈쉼터, 노숙인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를 말한다.

표 7-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급가구) 현황 (2001~2019)

(단위: 천 명, %, 천 가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급자 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1,646	1,631	1,582	1,744	1,881
수급률	(3.0)	(2.8)	(2.8)	(2.9)	(3.1)	(3.1)	(3.1)	(3.1)	(3.2)	(3.1)	(2.9)	(2.7)	(2.6)	(2.6)	(3.2)	(3.2)	(3.1)	(3.4)	(3.6)
일반수급가구 수	698	691	718	754	810	832	852	854	883	879	851	822	811	814	1,014	1,035	1,032	1,165	1,28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표 7-2 성별 ·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비중 (2019)

(단위: 천 명, %)

구분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계	356	105	75	182	287	300	488	1,792
남자(%)	51.0	51.5	51.2	50.3	44.7	51.0	44.1	44.8
여자(%)	49.0	48.5	48.8	49.7	55.3	49.0	55.9	55.2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1977	2019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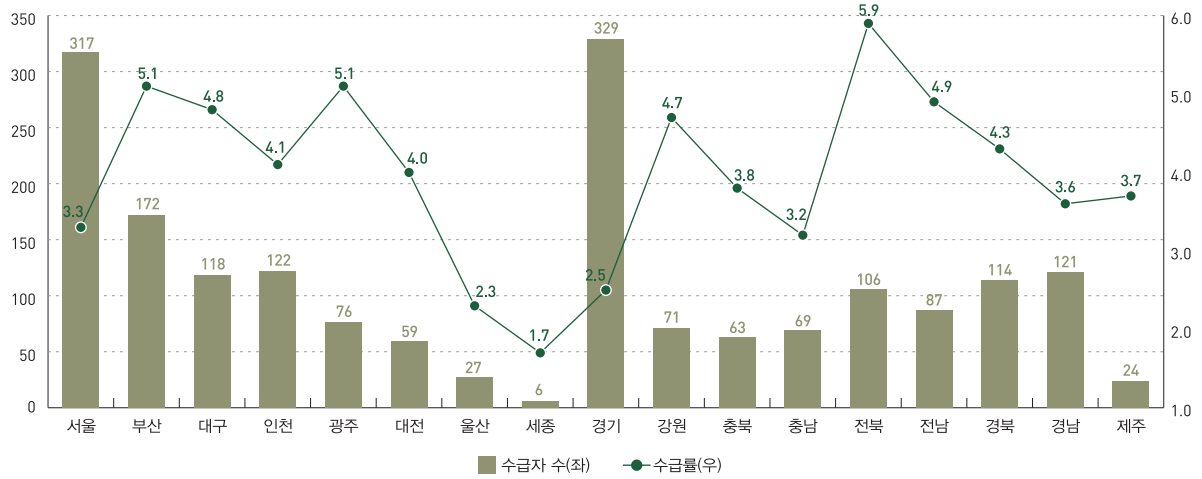
Checkpoint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로의 개편으로 수급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지만 이 후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2018년, 2019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급여별 단계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어 수급자 규모 및 분포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e-나라지표(부문별지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그림 7-1 시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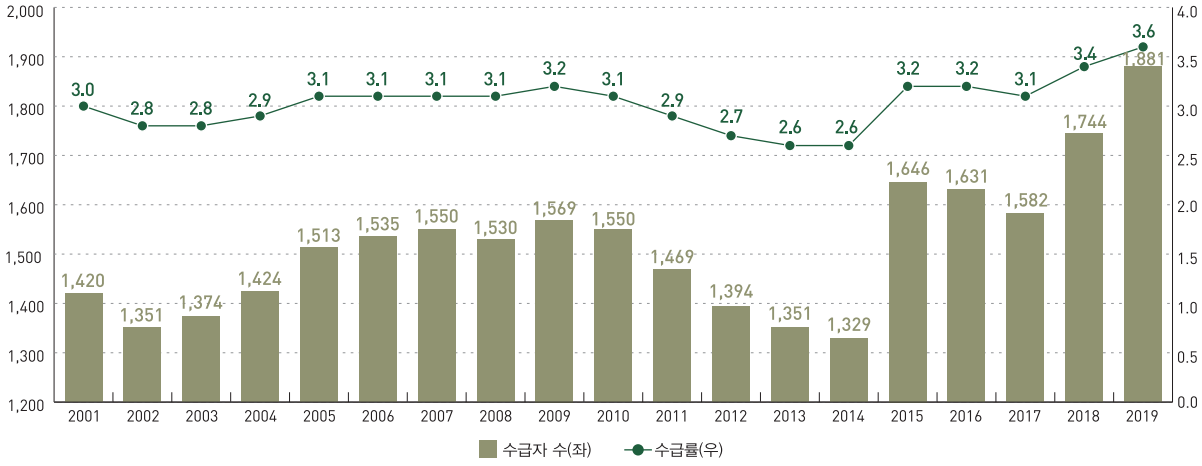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2020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그림 7-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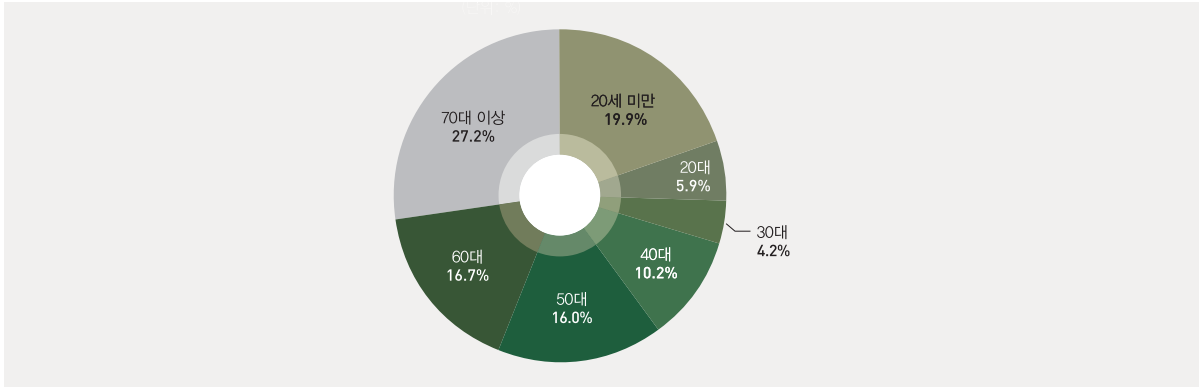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그림 7-3 연령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분포 (2019)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

01-1
연 관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Overview of Customized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통합급여로 지원하였던 것을 중위소득 50% 이하인 지원대상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맞춤형 급여는 법률용어가 아니며 이전의 통합급여 방식과 구분하기 위하여,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현 운영 방식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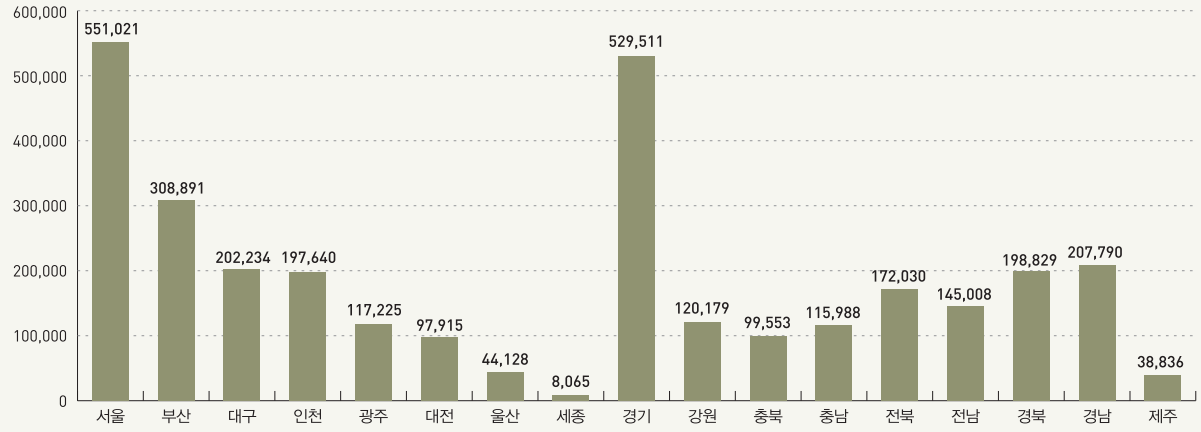
측정 산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급여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비교하여 선정된 급여종류별 수급자 및 수급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구분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그림 7-4 시도별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체 수급가구 수 (2019)

(단위: 가구)



주: 맞춤형 급여 자격 있는 가구 기준(가구중복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연도 말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	2019	월

Checkpoint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는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수급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급여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시도별 맞춤형 급여별 수급가구 및 수급자 수 (2019)

(단위: 가구, 명)

구분	수급가구 수		수급자 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서울	152,061	202,738	227,284	41,939
부산	86,004	113,204	127,965	21,294
대구	55,951	73,118	87,171	16,523
인천	52,930	71,988	84,891	20,244
광주	30,337	43,255	53,442	13,266
대전	26,737	34,901	42,662	9,870
울산	11,808	17,313	17,535	2,380
세종	2,054	2,973	3,208	1,164
경기	139,589	197,687	210,297	54,807
강원	33,045	43,770	49,330	9,978
충북	26,955	36,935	39,809	9,536
충남	32,457	41,020	47,959	10,826
전북	47,162	61,569	75,212	17,737
전남	39,919	52,322	60,483	13,360
경북	56,532	70,153	82,500	15,496
경남	57,372	74,365	83,143	20,144
제주	10,496	13,619	16,804	4,694
합계	861,409	1,150,930	1,309,695	283,258

주: 각각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및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Number of Livelihood Benefit Recipients : Households

지표 정의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등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로서 대상자 선정 기준인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급받는다.

측정 산식

- 생계급여 수급 신청 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생계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선정기준(2019)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단위: 원/월)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표 7-4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15~2019)

(단위: 가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803,385	808,575	822,417	837,310	861,409

주: 연도 말 기준

표 7-5 월별 · 시도별 생계급여 수급가구 수 (2019)

(단위: 가구)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45,926	146,845	147,485	148,390	148,675	148,458	149,026	149,527	150,044	150,836	151,543	152,061
부산	83,721	84,201	84,592	84,892	84,847	84,757	84,911	85,128	85,399	85,626	85,974	86,004
대구	54,913	55,077	55,239	55,386	55,266	55,133	55,245	55,452	55,588	55,736	55,940	55,951
인천	50,274	50,695	51,000	51,404	51,538	51,572	51,838	52,104	52,320	52,535	52,803	52,930
광주	30,086	30,181	30,241	30,260	30,133	30,055	30,119	30,203	30,241	30,317	30,348	30,337
대전	26,095	26,219	26,304	26,435	26,460	26,366	26,420	26,466	26,536	26,619	26,739	26,737
울산	11,201	11,300	11,363	11,433	11,488	11,522	11,560	11,627	11,702	11,738	11,791	11,808
세종	1,996	2,011	2,023	2,032	2,034	2,000	1,998	1,998	2,011	2,015	2,038	2,054
경기	134,581	135,237	135,979	136,868	137,111	136,953	137,463	138,055	138,336	138,960	139,478	139,589
강원	32,907	33,014	33,109	33,104	33,090	32,885	32,901	32,974	32,999	33,032	33,030	33,045
충북	26,688	26,837	26,876	26,980	26,946	26,851	26,858	26,858	26,893	26,958	26,950	26,955
충남	32,131	32,321	32,421	32,541	32,469	32,273	32,345	32,392	32,404	32,475	32,532	32,457
전북	47,207	47,273	47,406	47,500	47,412	47,089	47,140	47,188	47,202	47,247	47,282	47,162
전남	40,431	40,524	40,591	40,688	40,416	40,104	40,069	40,112	40,106	40,121	40,006	39,919
경북	55,818	56,062	56,185	56,562	56,581	56,275	56,415	56,480	56,514	56,692	56,676	56,532
경남	56,166	56,452	56,657	56,928	56,851	56,806	56,876	57,068	57,173	57,338	57,363	57,372
제주	10,338	10,409	10,422	10,518	10,495	10,485	10,512	10,507	10,466	10,496	10,501	10,496
합계	840,479	844,658	847,893	851,921	851,812	849,584	851,696	854,139	855,934	858,741	860,994	861,409

주: 맞춤형 급여 기초생계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6	2019	월

Checkpoint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2월 861,409가구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수급가구는 서울, 경기 순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월평균 861,409가구가 수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추세를 살펴보면, 4월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5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7월부터 반등하여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6월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수급가구 수가 감소하여 전월대비 –0.26%를 기록하였다.

01-3
연 관

주거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수

Number of Housing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and Households

지표 정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임차료, 수선유지금 등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받는 가구로써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원받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금을 차등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주거급여 수급 신청가구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급여 선정기준(2019)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4% 이하(단위: 원)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3,156,580

표 7-6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5~2019)

(단위: 가구)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879,597	880,356	885,964	1,027,572	1,150,930

주: 연도 말 기준

표 7-7 월별 · 시도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9)

(단위: 가구)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178,764	181,403	183,739	187,179	189,864	191,787	193,485	195,243	196,573	198,571	200,888	202,738
부산	102,472	103,600	104,762	106,289	107,485	108,253	109,004	109,584	110,320	111,135	112,366	113,204
대구	66,393	67,053	67,860	68,874	69,479	69,994	70,526	70,956	71,371	72,060	72,761	73,118
인천	63,681	64,573	65,388	66,486	67,385	68,001	68,674	69,362	69,874	70,532	71,249	71,988
광주	40,156	40,592	40,933	41,349	41,724	41,960	42,150	42,331	42,474	42,750	43,042	43,255
대전	32,169	32,520	32,888	33,308	33,594	33,678	33,900	33,983	34,109	34,412	34,760	34,901
울산	14,869	15,142	15,416	15,736	15,979	16,202	16,396	16,545	16,711	16,883	17,126	17,313
세종	2,570	2,623	2,653	2,693	2,750	2,755	2,761	2,785	2,826	2,861	2,927	2,973
경기	174,704	177,247	179,522	182,765	185,385	187,189	188,779	190,534	191,757	193,789	196,048	197,687
강원	40,568	40,876	41,194	41,678	41,989	42,233	42,443	42,691	42,837	43,038	43,456	43,770
충북	34,435	34,789	35,015	35,426	35,733	35,873	35,923	36,080	36,136	36,430	36,691	36,935
충남	38,299	38,691	38,991	39,432	39,757	39,874	40,022	40,249	40,340	40,585	40,958	41,020
전북	57,562	58,073	58,589	59,327	59,929	60,084	60,287	60,509	60,700	61,016	61,452	61,569
전남	49,984	50,232	50,473	50,936	51,229	51,251	51,280	51,457	51,601	51,855	52,144	52,322
경북	65,542	66,125	66,654	67,539	68,125	68,255	68,589	68,792	69,016	69,491	69,912	70,153
경남	67,964	68,627	69,162	70,036	70,675	71,195	71,583	72,152	72,448	73,000	73,776	74,365
제주	12,495	12,622	12,743	13,017	13,125	13,200	13,313	13,346	13,319	13,431	13,532	13,619
합계	1,042,627	1,054,788	1,065,982	1,082,070	1,094,207	1,101,784	1,109,115	1,116,599	1,122,412	1,131,839	1,143,088	1,150,930

주: 맞춤형 급여 기초주거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가구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9	월

Checkpoint 주거급여 수급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2월 1,150,930가구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기준 임차료를 지원받는 가구가 전체 수급가구의 약 89.5%를 차지하였고 자가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10.5%를 차지하였다.

표 7-8 시도별 · 주거유형별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9)

(단위: 가구)

구분	자가	임차											개인운영시설	시설입소(급여미지급)	기타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용대차											
				전체사용대차				부분사용대차							
				기타대가유	기타대가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별도가구특례	기타대가유	기타대가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별도가구특례	급여미지급			
서울	2,497	90,184	77,657	3,544	25	7	230	13,048	29	25	5,986	3,954	1,094	77	4,381
부산	7,989	37,378	46,048	3,321	227	3	148	7,301	455	8	2,054	3,567	267	17	4,421
대구	2,605	29,800	27,322	2,062	62	2	128	4,546	93	7	1,782	2,021	156	29	2,503
인천	5,413	28,694	22,575	2,338	17	7	102	5,025	19	5	2,796	2,465	445	43	2,044
광주	2,128	21,665	10,924	1,319	6	1	58	2,745	4	3	962	1,663	348	22	1,407
대전	1,729	17,272	9,918	952	6	2	53	2,008	34	3	683	882	363	12	984
울산	504	5,724	7,344	452	46	-	31	1,198	21	1	470	514	54	14	940
세종	254	946	810	182	-	-	16	310	-	1	127	91	30	1	205
경기	6,335	85,995	57,787	5,638	175	4	241	16,195	328	19	9,614	5,811	2,564	210	6,771
강원	5,941	10,691	14,057	2,936	94	3	83	4,240	68	6	1,480	1,662	254	8	2,247
충북	4,928	11,327	9,520	2,091	18	5	48	3,400	2	3	1,536	1,755	594	31	1,677
충남	5,917	10,566	10,550	2,995	34	-	64	4,549	75	-	1,406	1,691	359	3	2,811
전북	9,733	19,810	13,783	4,757	102	1	124	5,477	27	1	1,085	2,793	973	18	2,885
전남	12,081	8,468	10,493	5,993	141	29	117	6,540	48	13	1,059	3,166	680	59	3,435
경북	11,488	14,263	21,180	5,955	193	5	102	6,669	70	4	1,244	3,036	374	33	5,537
경남	7,464	19,500	24,152	4,692	223	3	105	6,592	275	5	2,429	3,098	406	40	5,381
제주	576	3,472	5,781	899	5	1	25	1,298	4	1	450	567	62	7	471
합계	87,582	415,755	369,901	50,126	1,374	73	1,675	91,141	1,552	105	35,163	38,736	9,023	624	48,100

주: 1) 시설수급자 포함
2) 맞춤형 급여 도입 후 주거유형이 5개에서 15개로 확대됨에 따라 1:1 매칭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그 경우에는 '기타'로 분류. 따라서 '기타'에는 입력값 오류와 주거유형 비매칭 수급자로 구성됨.
3) 연도 말 기준

표 7-9 시도별 · 급여종류별 주거약자가 포함된 맞춤형 급여(주거급여) 수급가구 수 (2019)

(단위: 가구)

시도	합계 (A+C)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65세 이상 장애인 (A=aUb, 중복제거)	65세 이상 (a)	장애인 (b)	65세 이상 장애인 (C=cUd, 중복제거)	65세 이상 (c)	장애인 (d)
서울	299,421	132,848	97,496	64,317	2,087	1,807	866
부산	165,531	68,172	49,857	32,188	6,702	5,816	2,796
대구	101,808	43,723	30,761	22,329	2,165	1,829	1,001
인천	102,559	41,606	29,190	21,603	4,388	3,706	2,066
광주	54,935	23,379	15,257	12,520	1,664	1,336	779
대전	49,021	20,714	13,539	11,489	1,428	1,160	691
울산	24,382	10,573	7,543	5,257	435	356	218
세종	4,145	1,635	1,132	844	228	197	109
경기	295,378	127,765	90,760	64,097	5,558	4,664	2,534
강원	66,589	24,536	16,976	12,596	5,363	4,584	2,534
충북	56,596	21,088	13,895	11,479	4,379	3,552	2,203
충남	62,631	22,755	14,750	12,690	5,373	4,435	2,628
전북	91,294	32,171	20,728	18,440	8,600	7,182	4,173
전남	83,041	26,127	16,227	15,115	11,039	9,150	5,383
경북	103,351	36,253	23,971	19,541	10,207	8,321	5,058
경남	106,871	41,658	27,957	21,889	6,619	5,434	3,314
제주	19,513	8,247	5,609	4,480	506	383	288
합계	1,687,066	683,250	475,648	350,874	76,741	63,912	36,641

주: 시설수급자 제외, 연도 말 기준

01-4 연 관

의료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Medical Aid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지표 정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분류되어 진찰 및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및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의료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의료급여 선정기준(2019)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단위: 원)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표 7-10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5~2019)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급여 수급가구 수	1,343,775	1,319,780	1,302,248	1,306,568	1,309,695

주: 연도 말 기준

표 7-11 월별 · 시도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224,157	224,622	224,805	225,661	226,023	225,447	225,451	225,803	226,141	226,866	227,622	227,284
부산	126,862	127,089	127,235	127,567	127,603	127,249	127,195	127,361	127,603	127,793	128,167	127,965
대구	87,717	87,803	87,729	87,914	87,815	87,399	87,237	87,315	87,289	87,444	87,535	87,171
인천	83,014	83,373	83,558	84,059	84,226	83,976	84,113	84,340	84,510	84,718	84,988	84,891
광주	54,404	54,522	54,527	54,537	54,189	53,910	53,780	53,764	53,728	53,649	53,593	53,442
대전	42,936	43,022	43,026	43,155	43,069	42,837	42,744	42,691	42,718	42,820	42,895	42,662
울산	16,806	16,893	17,005	17,105	17,206	17,252	17,308	17,384	17,448	17,492	17,531	17,535
세종	3,143	3,169	3,189	3,195	3,210	3,175	3,141	3,156	3,187	3,189	3,199	3,208
경기	207,024	207,551	208,057	209,088	209,539	208,731	208,862	209,467	209,744	210,497	211,109	210,297
강원	50,166	50,188	50,233	50,179	50,129	49,776	49,642	49,627	49,571	49,555	49,534	49,330
충북	40,035	40,132	40,112	40,226	40,198	39,929	39,877	39,859	39,885	39,988	39,967	39,809
충남	48,251	48,437	48,476	48,602	48,602	48,213	48,169	48,168	48,143	48,234	48,290	47,959
전북	77,148	77,104	77,058	77,110	77,007	76,251	76,035	76,014	75,919	75,841	75,805	75,212
전남	62,799	62,709	62,565	62,568	62,280	61,562	61,266	61,202	61,141	61,165	60,987	60,483
경북	82,793	82,978	82,988	83,412	83,540	82,864	82,837	82,892	82,945	83,178	83,130	82,500
경남	82,449	82,736	82,907	83,167	83,064	82,940	82,856	83,173	83,238	83,350	83,301	83,143
제주	17,013	17,057	17,024	17,161	17,038	16,973	16,934	16,889	16,809	16,852	16,834	16,804
합계	1,306,717	1,309,385	1,310,494	1,314,706	1,314,738	1,308,484	1,307,447	1,309,105	1,310,019	1,312,631	1,314,487	1,309,695

주: 맞춤형 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9	월

Checkpoint 2019년 12월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1,309,695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12월 기준 1종 수급자수는 2종 수급자 수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시도별 · 종별 의료급여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구분	1종	2종	값없음	계
서울	156,772	69,808	704	227,284
부산	90,828	36,929	208	127,965
대구	59,177	27,919	75	87,171
인천	57,862	26,813	216	84,891
광주	31,094	22,290	58	53,442
대전	27,898	14,662	102	42,662
울산	12,971	4,482	82	17,535
세종	2,260	928	20	3,208
경기	155,983	53,723	591	210,297
강원	36,310	12,947	73	49,330
충북	29,973	9,719	117	39,809
충남	36,721	11,124	114	47,959
전북	50,898	24,190	124	75,212
전남	45,355	14,956	172	60,483
경북	62,057	20,307	136	82,500
경남	62,565	20,441	137	83,143
제주	10,958	5,792	54	16,804
합계	929,682	377,030	2,983	1,309,695

주: 실수급자 기준임. 연도 말 기준

01-5 연 관

교육급여 수급자 수

Number of Education Benefit Recipients : Individuals

지표 정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받는다.

측정 산식

- 교육급여 수급 신청자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써 교육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가구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 ·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교육급여 선정기준(2019)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표 7-13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15~2019)

(단위: 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급여 수급가구 수	377,638	370,062	324,735	299,829	283,258

주: 연도 말 기준

표 7-14 월별 · 시도별 교육급여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45,507	45,419	40,192	41,031	42,558	42,675	42,557	42,554	42,553	42,551	42,462	41,939
부산	22,593	22,566	19,517	20,652	21,497	21,333	21,361	21,446	21,460	21,624	21,581	21,294
대구	17,688	17,652	15,752	16,089	16,631	16,543	16,518	16,550	16,584	16,717	16,704	16,523
인천	20,802	20,754	19,129	19,669	20,462	20,386	20,388	20,404	20,418	20,560	20,517	20,244
광주	13,905	13,953	12,324	13,024	13,505	13,493	13,480	13,534	13,571	13,544	13,449	13,266
대전	10,621	10,607	9,436	9,749	10,046	9,984	9,985	9,998	10,000	10,056	10,031	9,870
울산	2,618	2,613	2,392	2,436	2,580	2,519	2,512	2,519	2,502	2,511	2,474	2,380
세종	972	1,000	933	1,039	1,140	1,148	1,151	1,158	1,170	1,183	1,183	1,164
경기	57,325	57,388	53,889	52,327	55,263	54,884	54,890	55,139	55,492	56,022	56,073	54,807
강원	10,439	10,471	9,171	9,595	10,106	10,082	10,044	10,070	10,110	10,143	10,078	9,978
충북	9,686	9,692	8,613	9,096	9,583	9,532	9,533	9,561	9,582	9,696	9,685	9,536
충남	11,466	11,431	10,181	10,469	11,007	10,957	10,923	10,969	10,967	11,046	11,033	10,826
전북	18,691	18,729	16,681	17,495	18,123	18,068	17,962	18,030	18,107	18,154	18,022	17,737
전남	14,411	14,404	12,639	13,562	13,924	13,747	13,703	13,751	13,796	13,818	13,649	13,360
경북	15,889	15,875	14,106	15,059	15,666	15,544	15,435	15,507	15,620	15,886	15,899	15,496
경남	20,188	20,273	18,158	19,137	20,188	20,204	20,215	20,279	20,381	20,509	20,334	20,144
제주	4,935	4,938	4,386	4,654	4,776	4,783	4,767	4,770	4,752	4,781	4,755	4,694
합계	297,736	297,765	267,499	275,083	287,055	285,882	285,424	286,239	287,065	288,801	287,929	283,258

주: 맞춤형 급여 기초교육급여 자격이 있는 수급자 기준(시설수급자 제외)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및 수급가구 현황(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5	2019	월

Checkpoint 2019년 12월 교육급여 수급자 수는 2018년 12월 대비 16,571명(5.5%)이 감소한 283,258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교육급여 수급자는 봄학기가 시작된 후인 4월과 5월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11~12월에 들어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02 대 표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Number of near-poor people in receipt of Priority Care

지표 정의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는 공공기관 보유자료, 지자체 및 지역 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중앙부처 10개 기관 20여 개 사업과 지자체 특수시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연계되는 대상자들을 말한다.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달리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곤란한 소득은 제외하고 소득인정액 산출(실제소득-부양비,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측정 산식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중에서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사업, 민간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연계된 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2019)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단위: 원)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3,587,024

표 7-15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13~2019)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차상위 확인서발급 수급자 수	129,896	149,964	127,217	128,997	149,647	149,312	142,886

주: 연도 말 기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2019년의 월별 차상위 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는 12월 기준 142,886명으로 나타났다.

표 7-16 월별 · 시도별 · 성별 우선돌봄 차상위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성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남	13,771	13,637	13,526	13,622	13,652	13,271	13,022	12,968	12,927	12,958	12,969	12,682
	여	19,803	19,582	19,551	19,664	19,675	19,201	18,838	18,744	18,701	18,699	18,760	18,471
부산	남	3,590	3,556	3,564	3,596	3,620	3,534	3,444	3,428	3,430	3,443	3,390	3,329
	여	6,298	6,240	6,227	6,253	6,259	6,119	6,037	6,008	6,004	5,991	5,929	5,852
대구	남	1,953	1,959	1,978	1,985	2,014	1,976	1,926	1,937	1,932	1,950	1,939	1,911
	여	3,854	3,866	3,911	3,935	3,939	3,894	3,836	3,818	3,786	3,818	3,802	3,779
인천	남	2,256	2,245	2,260	2,275	2,285	2,225	2,168	2,163	2,157	2,174	2,171	2,158
	여	4,079	4,058	4,053	4,082	4,074	4,019	3,946	3,942	3,939	3,959	3,936	3,896
광주	남	1,301	1,305	1,302	1,324	1,320	1,258	1,221	1,230	1,230	1,222	1,203	1,157
	여	2,399	2,399	2,381	2,383	2,349	2,283	2,262	2,266	2,256	2,221	2,182	2,118
대전	남	1,569	1,585	1,591	1,631	1,628	1,620	1,608	1,610	1,599	1,596	1,623	1,595
	여	2,668	2,679	2,704	2,741	2,765	2,764	2,736	2,744	2,744	2,803	2,799	2,765
울산	남	596	603	589	586	604	579	566	571	568	575	568	530
	여	1,080	1,070	1,064	1,064	1,082	1,076	1,059	1,065	1,063	1,072	1,071	1,024
세종	남	96	101	97	95	95	88	94	95	97	105	107	108
	여	185	192	191	190	193	182	195	195	197	201	198	198
경기	남	9,528	9,563	9,547	9,655	9,657	9,373	9,300	9,318	9,308	9,390	9,390	9,213
	여	13,632	13,655	13,710	13,906	13,896	13,539	13,360	13,430	13,482	13,628	13,719	13,559
강원	남	1,653	1,665	1,699	1,703	1,704	1,667	1,655	1,645	1,645	1,676	1,690	1,664
	여	4,109	4,117	4,133	4,147	4,144	4,076	4,068	4,059	4,052	4,091	4,084	4,043
충북	남	1,165	1,176	1,167	1,201	1,201	1,190	1,164	1,146	1,157	1,163	1,171	1,168
	여	3,086	3,099	3,123	3,150	3,134	3,097	3,048	3,033	3,025	3,078	3,090	3,060
충남	남	1,852	1,854	1,848	1,873	1,880	1,853	1,839	1,851	1,854	1,872	1,886	1,856
	여	5,415	5,402	5,414	5,461	5,455	5,419	5,418	5,432	5,415	5,478	5,510	5,449
전북	남	1,855	1,868	1,892	1,924	1,947	1,892	1,868	1,882	1,882	1,897	1,905	1,869
	여	6,050	6,027	6,075	6,107	6,106	6,022	5,944	5,939	5,956	5,990	5,970	5,925
전남	남	2,211	2,193	2,210	2,270	2,266	2,215	2,208	2,213	2,225	2,240	2,250	2,215
	여	8,069	8,043	8,103	8,165	8,146	8,020	7,988	7,995	8,020	8,063	8,074	8,003
경북	남	2,951	2,973	3,029	3,089	3,103	3,024	2,999	2,992	3,005	3,050	3,074	3,047
	여	8,902	8,937	9,018	9,104	9,139	8,992	8,911	8,880	8,861	8,986	9,056	8,994
경남	남	2,572	2,599	2,693	2,797	2,853	2,860	2,871	2,864	2,860	2,880	2,878	2,804
	여	7,053	7,058	7,173	7,347	7,392	7,393	7,373	7,396	7,395	7,463	7,390	7,278
제주	남	389	392	388	402	382	389	363	360	361	365	366	369
	여	808	807	804	817	791	805	789	795	794	793	788	797
합계	남	49,308	49,274	49,380	50,028	50,211	49,014	48,316	48,273	48,237	48,556	48,580	47,675
	여	97,490	97,231	97,635	98,516	98,539	96,901	95,808	95,741	95,690	96,334	96,358	95,211

03
대 표

상대적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지표 정의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된 소득의 중위값 일정 비율(보통 40%, 50%, 60%)을 빈곤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선으로 설정한 후 이 기준선 미만(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과 전체 인구와의 비율로 정의한다.

• 과거 선진국들의 경우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사용해왔으나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선이 적용되고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이하)인 인구수}}{\text{전체 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상대적 빈곤율의 기준선(기준중위소득의 40%, 50%, 60%)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의 50%의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기준중위소득의 50%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교육급여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표 7-17 소득별 · 자료원별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 (2006~2019)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6.6	17.3	17.5	18.1	18.0	18.3	17.6	17.8	17.9	18.6	19.5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19.6	19.0	19.1	19.6	19.5	19.8	19.7	19.9	20.8
가처분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14.3	14.8	15.2	15.3	14.9	15.2	14.6	14.6	14.4	13.8	14.7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18.6	18.3	18.4	18.2	17.5	17.6	17.3	16.7	16.3

주: 1)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2)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상대적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청. 상대적 빈곤율(가계동향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0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9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0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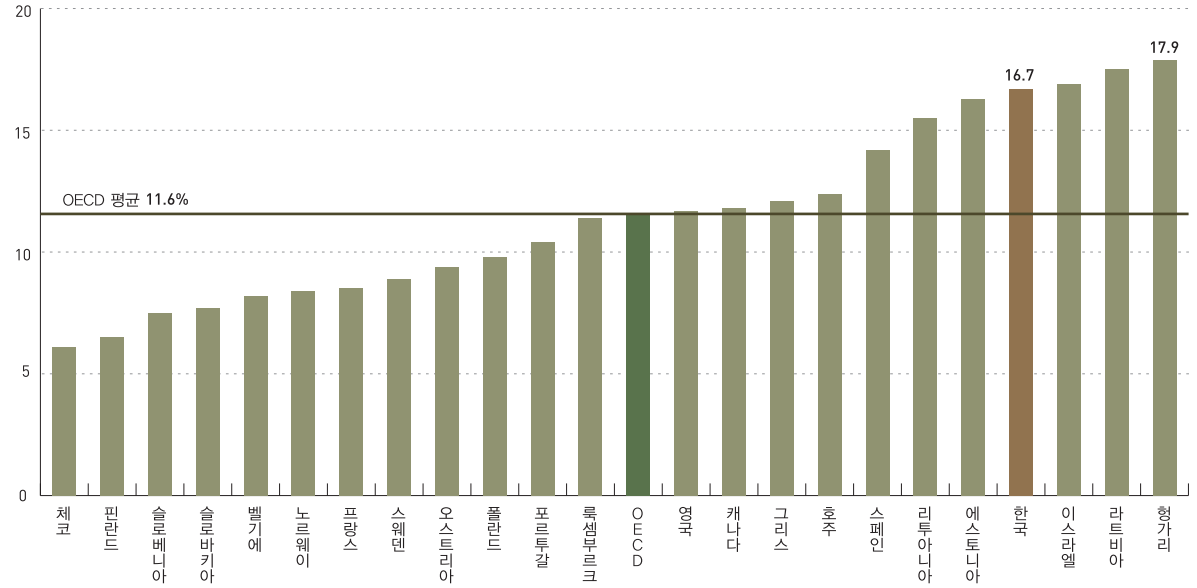
Checkpoint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시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013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다소의 등락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빈곤율 발생 차이 확대는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그림 7-5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비교 (2018)

(단위: %)



주: 1)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2) 2018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0.12.30. 인출)

04
대 표

상대적 노인 빈곤율

Relativ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지표 정의

상대적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균등화된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균등화된 기준중위소득 40 · 50 · 60%) 미만인 노인(65세 이상 또는 66세 이상)의 비율로 정의한다.

- 노인은 통상 근로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은 빈곤정책, 노후소득보장정책을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데 참고로 활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소득이 빈곤선 미만(이하) 노인 수}}{\text{전체 노인 수}} \times 100$$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노인에 대한 상대적 빈곤율은 노인집단 자체에서 산출한 기준선이 아닌 노인이 포함된 전체집단의 상대적 기준선을 구한 후 이것을 노인집단에게만 적용하여 산출한다.

표 7-18 소득별 · 자료원별 중위 50%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2006~2019)

(단위: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	66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53.7	54.8	54.9	58.3	60.0	61.1	61.6	62.8	63.8	64.0	66.5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57.8	56.7	56.9	57.3	57.8	58.7	58.3	59.9	61.0
	65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52.3	53.7	53.9	57.3	59.1	60.2	60.3	61.3	62.5	63.2	65.5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56.9	55.4	55.7	55.9	56.6	57.5	56.7	58.5	59.0
가처분소득	66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43.9	44.6	45.5	47.0	47.2	48.6	48.5	49.6	48.8	45.7	47.7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47.8	47.0	47.7	46.0	44.3	45.0	44.0	43.4	43.2
	65세 이상	가계동향조사	42.8	43.6	44.1	45.9	46.3	47.6	47.2	48.1	47.4	44.8	46.5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46.5	45.4	46.3	44.5	43.2	43.6	42.3	42.0	41.4

주: 1) 노인빈곤에서 노인인구는 OECD 기준 '은퇴연령인구(66세 이상)'과 노인복지법 기준(65세 이상)을 구분하여 제시
2)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3) 중위소득 50% 상대적 빈곤율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전을 받은 뒤, 국민 상위 50% 소득(중앙값)의 절반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계청. 상대적 노인 빈곤율(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청. 상대적 노인 빈곤율(가계동향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0	분기, 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2005	2020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0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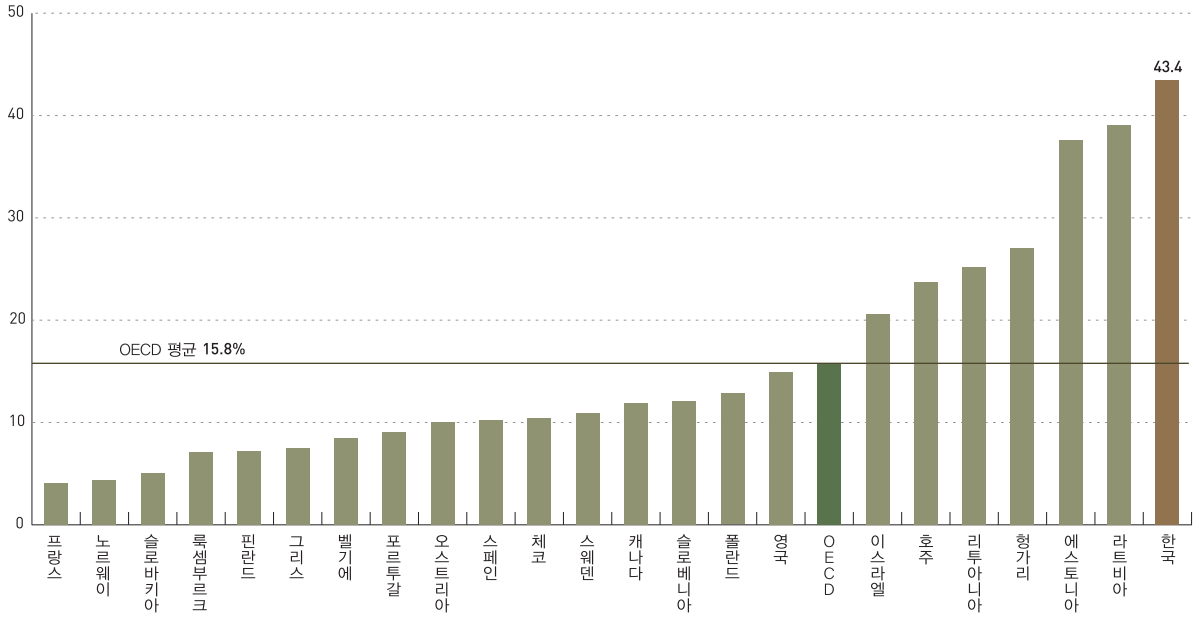
Checkpoint 변경된 소득분배지표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최근(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에 대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이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이라는 것은 노인에 대한 정부의 소득보장 및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그림 7-6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율 비교 (2018) : 66세 이상 노인 대상

(단위: %)



주: 1) 2018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2) 측정산식과 자료의 차이로 OECD 공표 수치와 빈곤통계연보 수치 간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0.12.30. 인출)

05
대 표

소득5분위배율

Income quintile share ratio (s80/s20)

지표 정의

소득5분위배율은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 소득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와 함께 소득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데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상위 20\% 평균 소득}}{\text{하위 20\% 평균 소득}}$$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표 7-19 소득별 · 자료원별 소득5분위배율 (2006~2019)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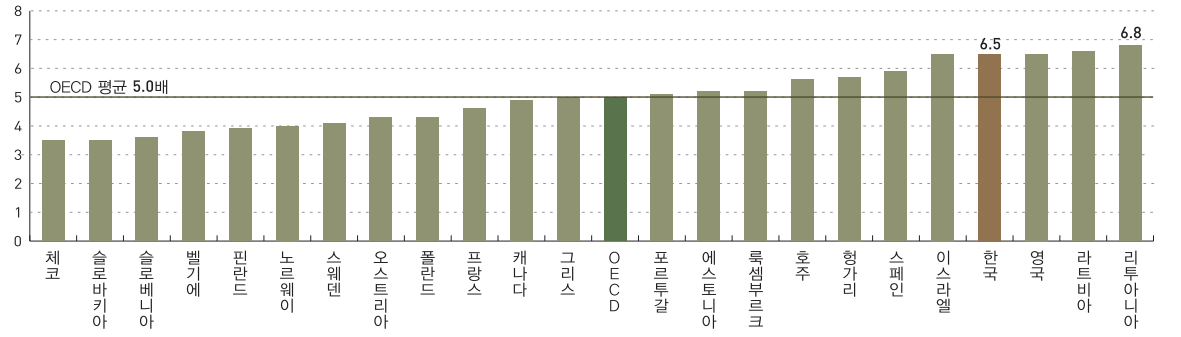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59	8.08	8.24	9.32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11.21	10.65	10.29	10.32	10.41	10.88	11.27	11.15	11.56
가처분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5.38	5.60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8.32	8.10	7.68	7.37	6.91	6.98	6.96	6.54	6.25

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자료: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청. 소득5분위배율(가계동향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그림 7-7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 비교 (2018)

(단위: 배)



주: 2018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0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9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0	1년

Checkpoint 변경된 소득분배지표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장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2014년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5분위배율은 대체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19년의 경우 시장소득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고 가처분소득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06
대 표

지니계수
Gini coefficient

지표 정의

지니계수는 인구와 소득 간의 분포와 그 관계(로렌츠 곡선)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주는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관련 지표이다.

•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상태를 나타내며, 소득불평등의 국제적 비교에도 많이 활용된다.

측정 산식

• $\frac{1}{n}(n+1-2(\frac{\sum_{i=1}^{n}(n+1-i)y_i}{\sum_{i=1}^{n}y_i}))^*$

* n: 전체 인구수, y_i: i번째 인구의 소득, i: 1, ···, n

유의사항 그동안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OECD 국제기준(Wave6)대로 작성했던 **공식 소득분배지표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고, 소득분배지표 작성을 위한 기준소득을 OECD 최근 권고사항(Wave7*)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Wave7 변경사항: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차감

표 7-20 소득별 · 자료원별 지니계수 (2006~2019)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장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30	0.340	0.344	0.345	0.341	0.342	0.338	0.336	0.341	0.341	0.353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0.418	0.411	0.401	0.397	0.396	0.402	0.406	0.402	0.404
가처분소득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포함)	0.306	0.312	0.314	0.314	0.310	0.311	0.307	0.302	0.302	0.295	0.304	-	-	-
	가계금융복지조사	-	-	-	-	-	0.388	0.385	0.372	0.363	0.352	0.355	0.354	0.345	0.339

주: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는 2016년까지 공표, 이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함.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부터 횡단면 대표성 확보를 위해 그룹별 5년 주기로 순환되는 연동패널이 도입됨. 2011~2014년 과거계열은 소득분배지표 활용성 제고를 위해 일부 행정자료가 입수되지 않은 과거계열을 통계적 추정방법을 통해 보완 작성하여 공표함.
자료: 통계청. 지니계수(가계금융복지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청. 지니계수(가계동향조사) (http://kosis.or.kr에서 2020.12.3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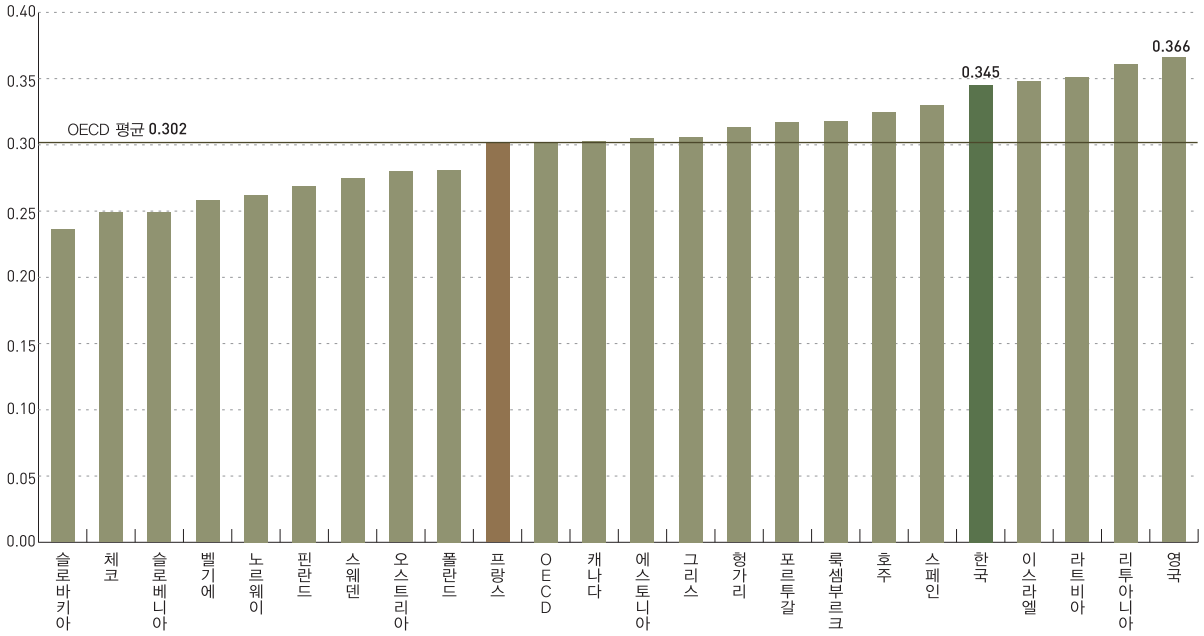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0	분기, 1년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1953	2019	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1	2020	1년

Checkpoint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최근(2016년, 2017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018년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시장소득 적용 지니계수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지만 가처분소득 적용 지니계수는 전년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그림 7-8 OECD 국가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비교 (2018)



주: 2018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DD#에서 2020.12.30. 인출)

07
대 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Total Recipients and Take-up Rates of Basic (Old-Age) Pension Allowance

지표 정의

기초(노령)연금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체하여,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70%에 대해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이다.

•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의 소득 일정부문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div \text{65세 이상 노인 수} \times 100$$

표 7-2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8~2019)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초연금)	2015 (기초연금)	2016 (기초연금)	2017 (기초연금)	2018 (기초연금)	2019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5,069,273	5,267,708	5,506,352	5,700,972	5,980,060	6,250,986	6,520,607	6,775,101	6,995,652	7,356,106	7,650,408	8,026,915
수급자 수	2,897,649	3,630,147	3,727,940	3,818,186	3,933,095	4,065,672	4,353,482	4,477,850	4,563,998	4,839,722	5,094,713	5,313,027
수급률	(57.2)	(68.9)	(67.7)	(67.0)	(65.8)	(65.0)	(66.8)	(66.1)	(65.2)	(65.8)	(66.6)	(66.2)

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인구이며,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2015년 1월부터 포함)이 포함된 자료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초연금 인구대비 수급률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에서 2021.1.12.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1.1.12. 인출)

표 7-22 성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8~2019)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초연금)	2015 (기초연금)	2016 (기초연금)	2017 (기초연금)	2018 (기초연금)	2019 (기초연금)
남성	수	915,590	1,258,681	1,302,090	1,340,600	1,386,412	1,441,676	1,579,746	1,635,315	1,674,943	1,807,804	1,936,567	2,040,157
	수급률	(44.9)	(59.1)	(58.1)	(57.5)	(56.2)	(55.5)	(57.9)	(57.4)	(56.6)	(57.7)	(59.2)	(59.0)
여성	수	1,982,059	2,371,466	2,425,850	2,477,586	2,546,683	2,623,996	2,773,736	2,842,535	2,889,055	3,031,918	3,158,146	3,272,870
	수급률	(65.4)	(75.6)	(74.3)	(73.6)	(72.5)	(71.8)	(73.1)	(72.4)	(71.5)	(71.8)	(72.1)	(71.6)

주: 각 연도 12월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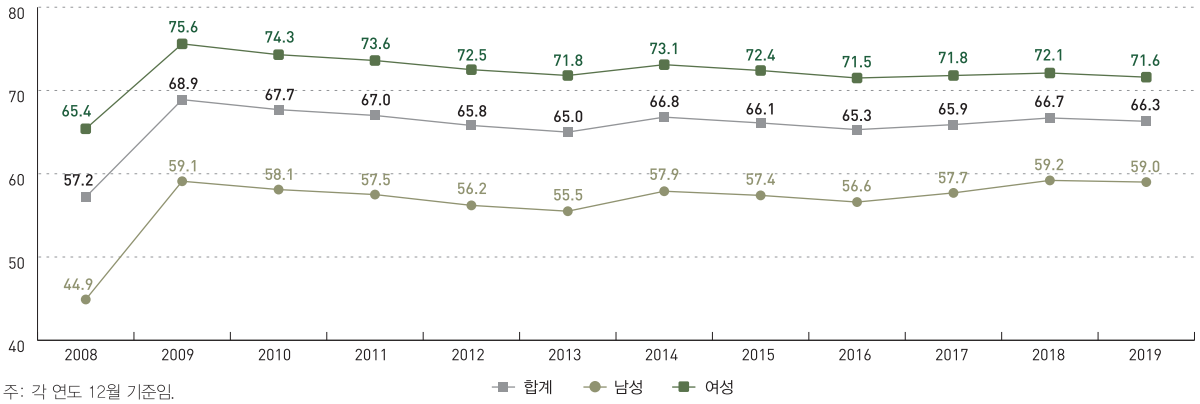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자 수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에서 2021.1.12.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1.1.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현황	2008	2014	1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2015	2019	1년

그림 7-9 성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2008~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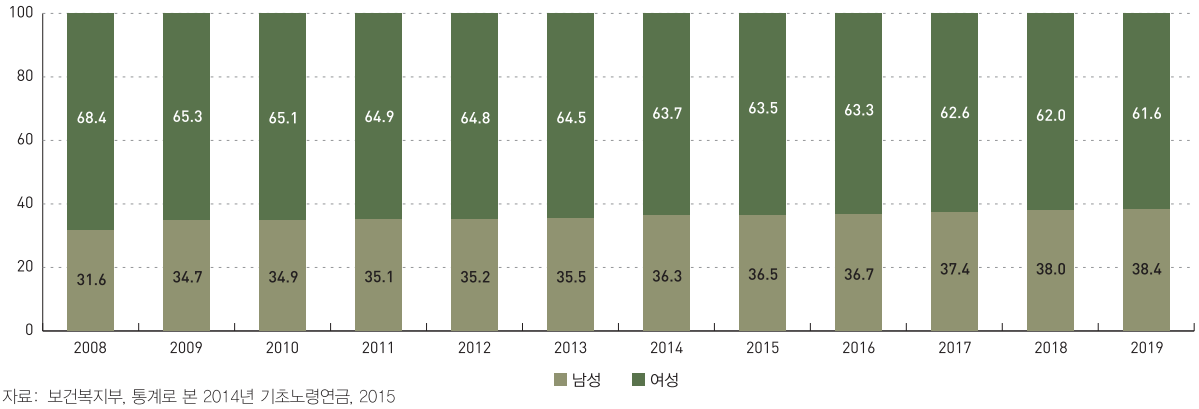


주: 각 연도 12월 기준임.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자 수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에서 2021.1.12.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연령별 인구현황 (https://jumin.mois.go.kr/index.jsp#에서 2021.1.12. 인출)

그림 7-10 성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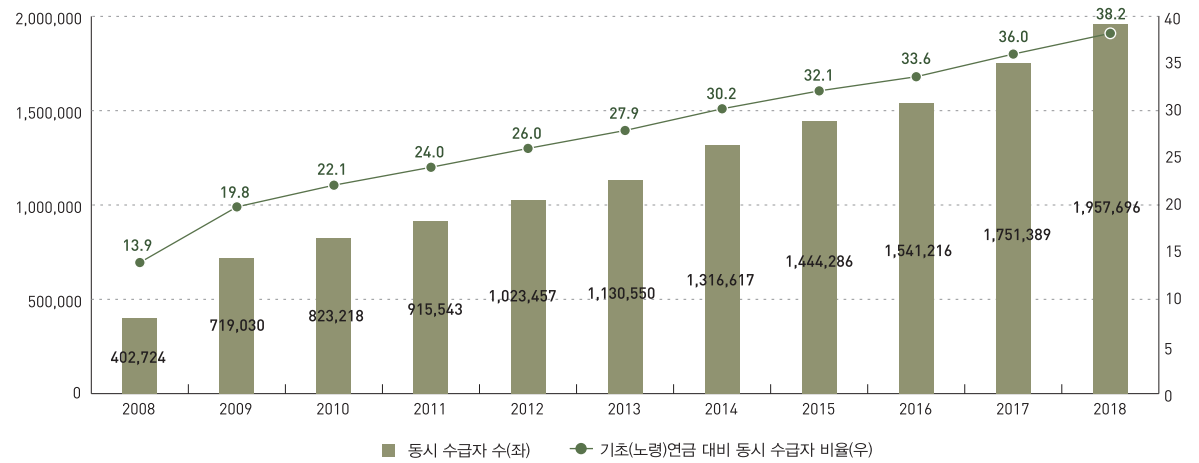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연금, 20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초연금 수급자 수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sociguastat/retrieveSociGuaStatList.do에서 2021.1.12. 인출)

그림 7-11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2008~2018)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14년 기초노령연금, 2015
국민연금공단, 2018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9

08
대 표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가입종별 비율

National Pension Participants by Insurance Type

지표 정의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노화 및 장애 발생 그리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 지표를 통해 최근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후준비가 점점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노후준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각 가입종별 가입자 수}}{\text{전체 가입자 수}} \times 100$

표 7-23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총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소득신고자	납부예외자		
1995	7,496,623 (100.00)	5,541,966 (73.93)	1,650,958 (22.02)	239,229 (3.19)	48,710 (0.65)	15,760 (0.21)
1999	16,261,889 (100.00)	5,238,149 (32.21)	5,309,735 (32.65)	5,512,567 (33.90)	32,868 (0.20)	168,570 (1.04)
2010	19,228,875 (100.00)	10,414,780 (54.16)	3,574,709 (18.59)	5,099,783 (26.52)	90,222 (0.47)	49,381 (0.26)
2011	19,885,911 (100.00)	10,976,501 (55.20)	3,775,873 (18.99)	4,899,557 (24.64)	171,134 (0.86)	62,846 (0.32)
2012	20,329,060 (100.00)	11,464,198 (56.39)	3,903,217 (19.20)	4,665,179 (22.95)	207,890 (1.02)	88,576 (0.44)
2013	20,744,780 (100.00)	11,935,759 (57.54)	3,938,993 (18.99)	4,575,441 (22.06)	177,569 (0.86)	117,018 (0.56)
2014	21,125,135 (100.00)	12,309,856 (58.27)	3,873,696 (18.34)	4,571,014 (21.64)	202,536 (0.96)	168,033 (0.80)
2015	21,568,354 (100.00)	12,805,852 (59.37)	3,791,244 (17.58)	4,511,565 (20.92)	240,582 (1.12)	219,111 (1.02)
2016	21,832,524 (100.00)	13,192,436 (60.43)	3,886,930 (17.80)	4,173,269 (19.11)	296,757 (1.36)	283,132 (1.30)
2017	21,824,172 (100.00)	13,459,240 (61.67)	3,865,800 (17.71)	3,826,117 (17.53)	327,723 (1.50)	345,292 (1.58)
2018	22,313,869 (100.00)	13,817,963 (61.93)	3,993,598 (17.90)	3,701,287 (16.59)	330,422 (1.48)	470,599 (2.11)
2019	22,216,229 (100.00)	14,157,574 (63.73)	3,955,403 (17.80)	3,276,660 (14.75)	328,727 (1.48)	497,865 (2.24)

주1: 납부예외자 포함
주2: 1)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2)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3)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6조의 가입대상 중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4)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가입된 자를 의미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2호), 2020 (업데이트된 데이터는 http://kosis.or.kr에서 2020.12.31.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9	1년

Checkpoint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는 1988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이후 60% 수준을 돌파하여 2019년 기준 총가입자의 63.7%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90년대 말에는 60%대였으나 점차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7%대를 유지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높은 비중은 아니지만 최근 그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Facts Book

표 7-24 시도별 · 종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2019)

(단위: 천 명)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가입자	6,040	1,253	865	1,081	519	590	445	106	5,378	541	626	845	625	698	1,034	1,300	270
사업장	4,426	716	477	615	296	364	282	66	3,368	307	391	534	348	405	621	786	156
지역	1,436	487	346	424	199	201	149	35	1,808	210	210	279	245	258	369	469	106
임의	329	76	21	18	17	9	11	7	3	93	7	7	9	8	8	14	15
임의(계속)	498	102	29	23	25	14	13	7	2	109	17	17	22	23	26	3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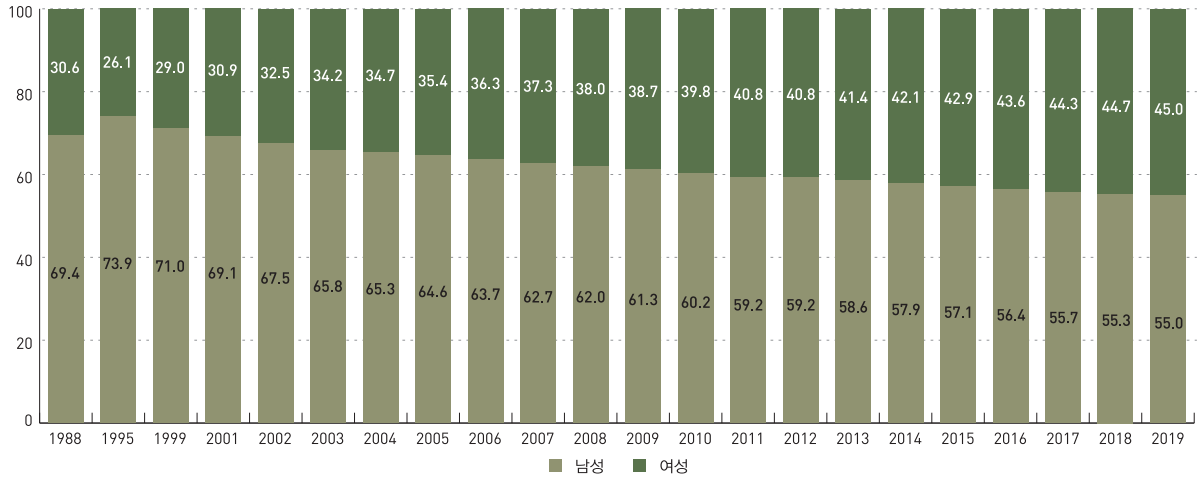
주 :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년 국민연금통계연보(제32호), 2020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http://kosis.or.kr에서 2020.12.31. 인출)

그림 7-12 연도별 ·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1988~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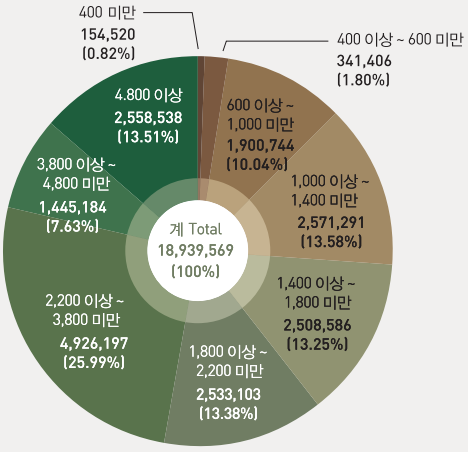


주 : 납부예외자 포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각 연도

그림 7-13 소득구간별 국민연금 가입자 비중 (2019)

(단위: 천 원, 명)



주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2019

09
대 표

국민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종류별 비율

Number of All Beneficiaries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급여유형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된다.

• 본 지표를 통해 근로능력이 감퇴된 이후의 소득보장 적용 인구 규모를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각 급여종별 수급자 수}}{\text{전체 수급자 수}} \times 100$$

표 7-25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1988	1993	1998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	-	10,971	112,946	1,156,098	1,949,867	2,748,455	2,840,660	2,947,422	3,151,349	3,412,350	3,706,516	3,778,824	4,090,497
		비율		(30.3)	(56.3)	(80.8)	(82.1)	(82.8)	(82.3)	(81.9)	(82.0)	(82.3)	(82.6)	(82.0)	(82.2)
	장애연금	수급자 수	-	3,896	13,245	47,260	72,166	75,934	75,041	75,387	75,688	75,497	75,486	75,734	77,872
		비율		(10.7)	(6.6)	(3.3)	(3.0)	(2.3)	(2.2)	(2.1)	(2.0)	(1.8)	(1.7)	(1.6)	(1.6)
	유족연금	수급자 수	-	21,387	74,334	226,806	353,594	496,073	536,161	575,706	617,084	659,124	705,619	756,425	808,253
		비율		(59.0)	(37.1)	(15.9)	(14.9)	(14.9)	(15.5)	(16.0)	(16.1)	(15.9)	(15.7)	(16.4)	(16.2)
	소계		-	36,254	200,525	1,430,164	2,375,627	3,320,462	3,451,862	3,598,515	3,844,121	4,146,971	4,487,621	4,610,983	4,976,622
일시금	반환일시금	수급자 수	3,136	545,611	1,061,643	100,296	138,456	176,531	180,233	147,035	180,705	208,620	203,449	159,967	188,851
		비율	100.0	(99.6)	(99.4)	(90.0)	(87.4)	(89.32)	(89.56)	(86.03)	(87.19)	(87.74)	(89.00)	(87.23)	(88.50)
	장애일시보상금	수급자 수	-	2,341	1,625	3,609	4,902	2,862	2,993	2,651	2,597	2,577	2,916	3,072	3,028
		비율		(0.4)	(0.2)	(3.2)	(3.1)	(1.45)	(1.49)	(1.55)	(1.25)	(1.08)	(1.28)	(1.68)	(1.42)
	사망일시금	수급자 수	-	-	4,529	7,561	15,129	18,235	18,025	21,219	23,949	26,578	22,240	20,354	21,509
		비율			(0.4)	(6.8)	(9.5)	(9.23)	(8.96)	(12.42)	(11.56)	(11.18)	(9.73)	(11.10)	(10.08)
	소계		3,136	547,952	1,067,797	111,466	158,487	197,628	201,251	170,905	207,251	237,775	228,605	183,393	213,388
총계			3,136	584,206	1,268,984	1,541,630	2,534,114	3,518,090	3,653,113	3,769,420	4,051,372	4,384,746	4,716,226	4,794,376	5,190,010

주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함.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9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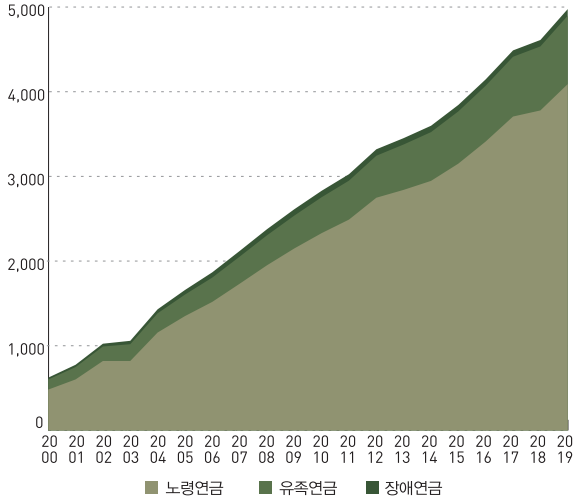
Checkpoint 2019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약 519만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의 8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그림 7-14 종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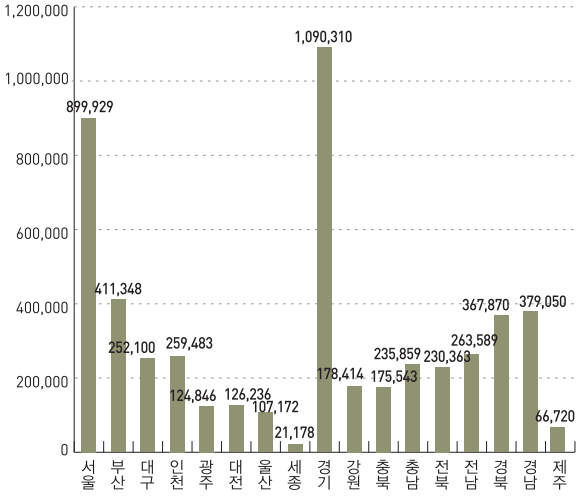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15 시도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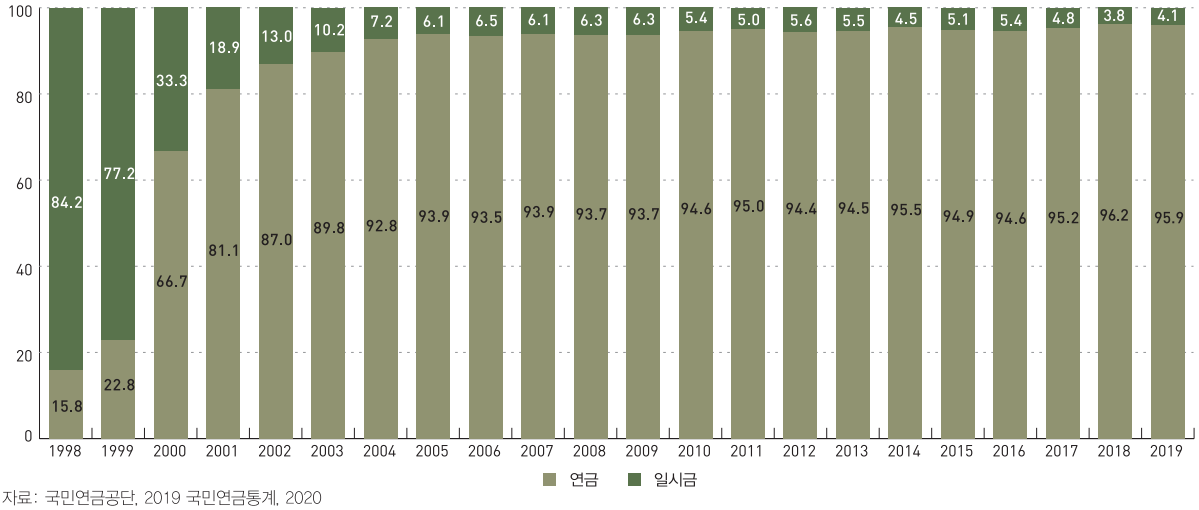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 2020

그림 7-16 지급유형별 국민연금 수급자 비중 (199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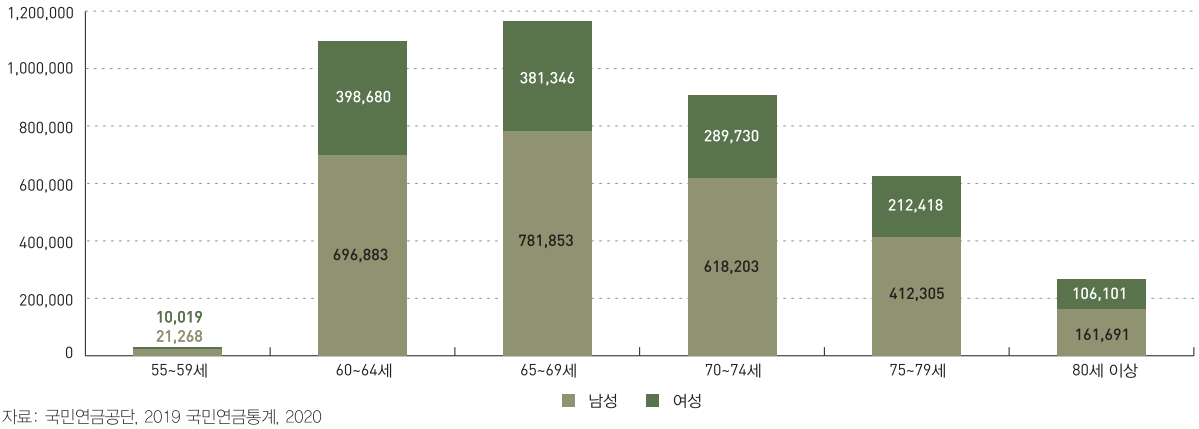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 2020

그림 7-17 연령별 · 성별 노령연금 수급자 분포 (2019)

(단위: 명)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 2020

09-1
연 관

65세 이상 인구의 공적연금 수급률

Public Pension take-up rates for people aged 65 and over

지표 정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자의 합계를 65세 이상 추계인구로 나눈 비율임.

측정 산식

- $\frac{\text{각 연금 65세 이상 수급자의 합}}{\text{65세 이상 추계 인구}} \times 100$

표 7-2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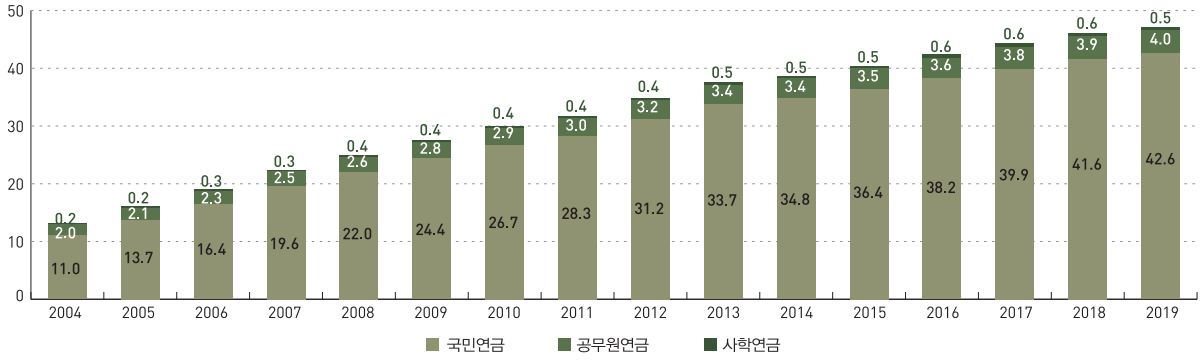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704,194	870,495	1,079,922	1,252,152	1,432,387	1,606,024	1,800,167	2,050,717	2,305,340	2,524,786	2,742,708	2,967,912	3,262,158	3,527,924	3,786,360
	(16.1)	(19.0)	(22.4)	(25.0)	(27.6)	(30.0)	(31.8)	(34.8)	(37.6)	(38.7)	(40.4)	(42.4)	(44.3)	(46.1)	(47.2)
국민연금	600,421	751,897	944,651	1,103,007	1,268,935	1,428,414	1,605,959	1,835,624	2,067,085	2,238,805	2,433,884	2,620,621	2,889,222	3,186,380	3,421,423
	(13.7)	(16.4)	(19.6)	(22.0)	(24.4)	(26.7)	(28.3)	(31.2)	(33.7)	(34.3)	(35.9)	(37.5)	(39.9)	(41.6)	(42.6)
공무원연금	93,468	104,942	119,471	131,482	143,882	155,777	169,979	188,006	206,163	222,325	240,041	256,695	279,524	300,037	323,430
	(2.1)	(2.3)	(2.5)	(2.6)	(2.8)	(2.9)	(3.0)	(3.2)	(3.4)	(3.4)	(3.5)	(3.6)	(3.8)	(3.9)	(4.0)
사학연금	10,305	13,656	15,800	17,663	19,570	21,833	24,229	27,087	32,092	34,894	35,608	41,736	45,951	41,507	41,507
	(0.2)	(0.3)	(0.3)	(0.4)	(0.4)	(0.4)	(0.4)	(0.4)	(0.5)	(0.5)	(0.5)	(0.6)	(0.6)	(0.6)	(0.5)

주: 2017년 사학연금 수급자 수의 경우 사학연금통계연보의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의 65세 이상 수급자 수의 합계
2017년~2018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국민연금통계연보의 수치를 활용함(국민연금공단, 2017년 국민연금통계, 2018, p.42).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18 연금종류별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2004~2019)

(단위: %)



자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각 연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8	1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내부자료)	-	2018	1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학연금통계	-	2018	1년

Checkpoint

공적연금 수급률(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률의 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40%를 넘고, 2018년에는 4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공적연금 수급률은 19%에 불과했는데, 10년 동안 수급률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급 규모의 증가에는 국민연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한 수급자 수와 수급률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10 대 표

국민연금 평균 지급액

Average Benefit Amount in National Pension by Type of Benefit

지표 정의

국민연금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 국민연금 평균지급액 지표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금수급액 수준을 알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총 연금지급액}}{\text{전체 수급자 수}}$$

표 7-27 연도별 · 종별 국민연금 연평균 급여액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2004	200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금	소계	총 급여액	2,568,966,021	5,764,985,965	10,837,243,194	12,361,972,797	13,087,467,966	14,342,682,741	16,107,102,923	18,155,323,381	19,800,819,509	21,711,563,871
		평균 급여액	1,796	2,427	3,264	3,581	3,637	3,731	3,884	4,046	4,294	4,363
	노령	총 급여액	1,987,450,647	4,765,527,612	9,327,086,191	10,705,594,320	11,295,917,329	12,415,110,788	14,047,956,805	15,931,616,455	17,384,044,152	19,069,257,910
		평균 급여액	1,719	2,444	3,394	3,769	3,832	3,940	4,117	4,298	4,600	4,662
	장애	총 급여액	163,629,119	268,100,552	314,462,857	326,167,915	331,603,350	336,567,621	337,332,457	349,016,676	359,198,132	378,719,802
		평균 급여액	3,462	3,715	4,141	4,347	4,399	4,447	4,468	4,624	4,743	4,863
	유족	총 급여액	417,886,255	731,357,801	1,195,694,146	1,330,210,562	1,459,947,287	1,591,004,332	1,721,813,661	1,874,690,250	2,057,577,225	2,263,586,159
		평균 급여액	1,842	2,068	2,410	2,481	2,536	2,578	2,612	2,657	2,720	2,801
일시금	소계	총 급여액	345,048,750	415,817,731	713,511,379	750,778,622	692,474,556	841,327,088	961,056,130	928,562,845	951,864,390	1,052,779,601
		평균 급여액	3,096	2,624	3,610	3,731	4,052	4,059	4,042	4,062	5,190	4,934
	장애	총 급여액	29,297,315	47,920,508	34,653,608	38,736,640	34,471,226	35,522,321	36,048,008	42,130,805	46,669,363	48,846,663
		평균 급여액	8,118	9,776	12,108	12,942	13,003	13,678	13,988	14,448	15,192	16,132
	반환	총 급여액	303,193,832	348,026,409	648,045,442	679,144,836	618,468,248	759,703,922	874,649,129	842,325,211	859,081,687	953,068,325
		평균 급여액	3,023	2,514	3,671	3,768	4,206	4,204	4,193	4,140	5,370	5,047
	사망	총 급여액	12,557,603	19,870,814	30,812,329	32,897,146	39,535,082	46,100,845	50,358,993	44,106,829	46,113,340	50,864,613
		평균 급여액	1,661	1,313	1,690	1,825	1,863	1,925	1,895	1,983	2,266	2,365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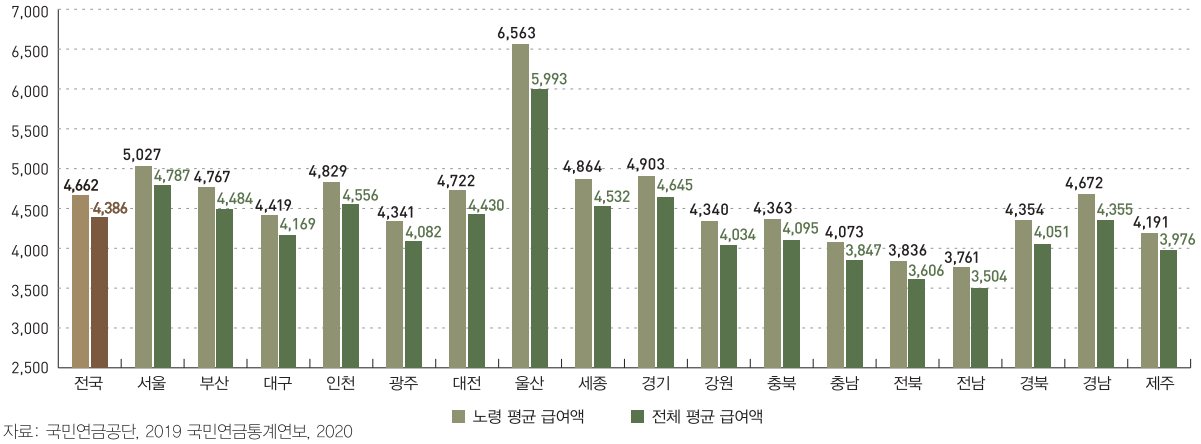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1988	2019	1년

Checkpoint 국민연금의 평균급여액은 연금제도의 성숙으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국민연금의 평균급여액은 노령연금은 약 466만 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각각 약 486만 원, 약 28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평균 연금수급액은 울산 지역이 가장 높으며, 전남 지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 생생통계 Silver Book

그림 7-19 시도별 평균 연금수급액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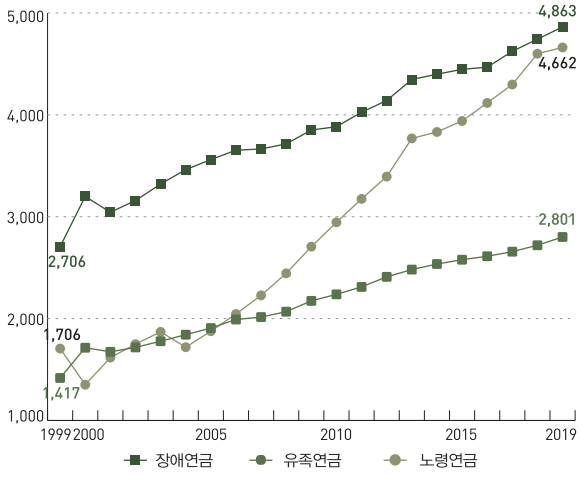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2020

그림 7-20 급여종류별 연평균 급여액 (199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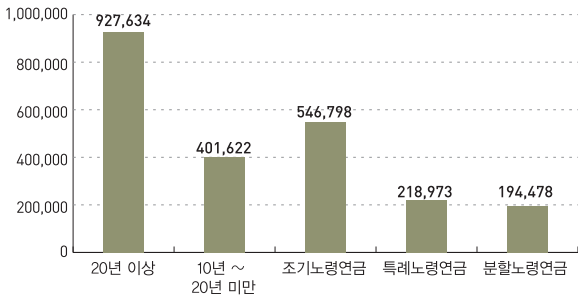
(단위: 천 원)



주: 통계연보 자료 기반으로 가공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7-21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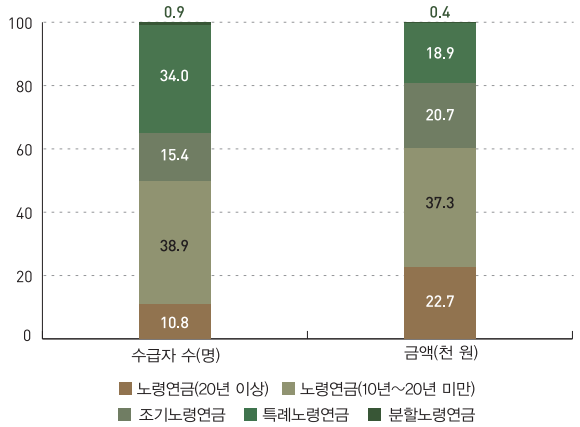
(단위: 원)



주: 1) 소득활동 :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2) 조기노령연금 : 가입 기간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거나 세후 월평균 국민연금 A값에 준하는 소득에 미달할 경우, 정상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제도
3) 분할연금 :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경우, 상대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61세가 되면, 상대배우자의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2.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2019

그림 7-22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 및 월평균 지급액 비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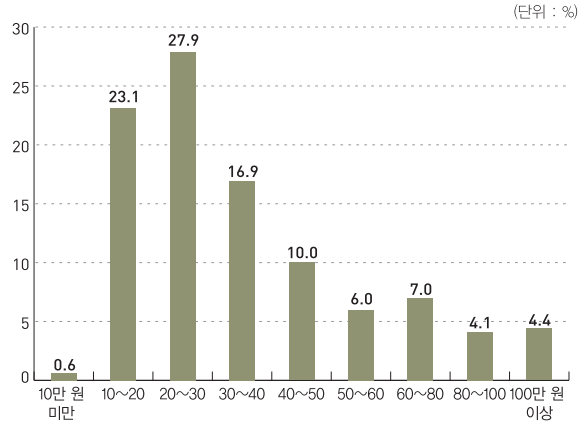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민연금공단, 2019 국민연금통계연보, 2020
(http://kosis.or.kr에서 2020.12.31. 인출)

그림 7-23 월평균 급여액 수준별 연금 수급자 분포 (2018)

(단위 : %)



주: 1) 월평균 급여액은 노령, 장애,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 연금액이 반영되며, 특례, 분할연금은 제외됨.
2) '17년 12월, '18년 12월 당월 기준, 따라서 '17년 말, '18년 말 기준 수급자 수와 월평균 급여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8 국민연금 생생통계, 2019 원자료: 국민연금 월별사업통계(안)

8

건강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기대수명
02 조사망률
03 저체중아 발생률
04 자살률
05 10대 다빈도 상병
06 현재 흡연율
07 고위험 음주율
08 비만율
09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10 평균 재원일수
11 1인당 의사 진찰 건수
1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13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14 의료보장 적용 인구
15 의사 수
16 병상 수
17 GDP 대비 경상의료비

8 건강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건강수준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인지율
	조사망률	연령표준화사망률
		영아사망률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저체중아 발생률	조산율
	자살률	정신장애 유병률
		우울장애 유병률
	10대 다빈도 상병	암 발생률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고혈압 유병률
		당뇨병 유병률
건강관리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청소년 현재 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연간 음주율
		청소년 현재 음주율
		1인당 알코올소비량
	비만율	청소년 비만율
		걷기실천율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의료이용	평균 재원일수	
	1인당 의사 진찰 건수	1인당 외래방문 횟수
		산전수진율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의료자원	의료보장 적용 인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의사 수	면허의료인 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GDP 대비 경상의료비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건강보험 급여비
		건강보험 보장률

Highlight

보건의료제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건강 향상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보건의료제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한다. 특히, 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도 이러한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 간에 비교를 통해 각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국민도 개인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을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관리' 활동과 '의료이용' 정도를 살펴본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제도를 운용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의료자원'의 현황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현재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건강수준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기대수명'이다. 2019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3세이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서 3.1년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과는 OECD 국가 중에서 단연 눈에 띈다. 한편,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길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다행스러운 것은 남자와 여자의 기대수명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같은 기간 동안 두 집단의 격차는 6.8세에서 6.0세로 줄어들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명은 73.1세로 OECD 국가의 평균인 70.4세보다 월등히 높지만, 고령화 추세가 빠른 만큼 정부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관리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는 비교적 많지 않다. '현재 흡연율'과 '고위험 음주율' 정도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검토되고 있다. 이 수치들은 지정 통계로 관리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꾸준히 집계되고 있다. 2019년 '현재흡연율'은 21.5%(남자 35.7%, 여자 6.7%)이다. 흡연이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가운데, 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지만, 흡연의 중독성과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함께 청소년 흡연도 심각한 문제로 종종 다루어진다. 물론 과거에 비교해서 많이 감소했지만, 중학생의 3.2%, 고등학생의 9.9%가 흡연을 하고 있다. 한편, '고위험 음주율'은 2019년 12.6%로 2010년(13.8%)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성의 음주율은 6.5%로 소폭 상승(2010년 5.6%)하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이다. 이와 관련된 지표는 OECD 국가와의 비교에서 항상 등장하는 만큼 빼놓을 수 없는 정보이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이용'은 평균 재원일수와 1인당 의사진찰 건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평균 재원일수는 병원을 기준으로 17.9일이다. 여기에는 요양 병원에서의 장기 입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만을 놓고 단적으로 보건의료제도의 특성을 OECD와 비교해서 설명하기 어렵다. 평균 재원일수를 급성기, 만성기(재활, 장기요양)로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 국민의 의료이용 현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급성기 평균 재원일수는 9.5일로 OECD 평균 수준이다.

한편, 1인당 의사진찰 건수는 16.9건(2018년 기준)이다. 즉,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16번이 넘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재원일수는 가장 길고, 1인당 의사진찰 건수는 많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접근성, 효율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의료자원'은 크게 인력과 시설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각종 지표를 통해 인력은 적고 시설은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인력의 관점에서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를 살펴보면(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2.4명으로 OECD 국가(평균 3.5명) 중 두 번째로 적다. 간호인력(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은 이보다 나은 수준이지만, 7.2명으로 OECD 평균(8.9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자원에 해당하는 병상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다. 인구 천 명당 12.4개로 OECD 평균 4.5개의 약 3배에 이른다. 이렇게 병상 수가 많은 것은 요양병원의 병상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요양병원의 병상은 인구 천 명당 5.3개로 전체 병상의 38.8%에 이른다.

이처럼 우리나라 국민은 정부가 갖춘 의료자원을 기반으로 의료이용을 하고 있다. 건강수준의 향상이 이러한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만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은 꽤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기후 환경의 변화는 각 질환의 특성에 맞는 대응(예방, 치료 등)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은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을까? 국민 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집계한 경상의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7.6%로 OECD 평균(8.8%)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경상의료비의 증가 속도가 빠른 점(특히, 민간 지출), 가계가 지출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 등에 대해서 사회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의 많은 국가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전 국민을 의료보장의 테두리에 둠으로써 보편적 의료 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보장 서비스를 늘리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간다면 전 세계가 추구하는 가치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하루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01
대 표

기대수명
Life expectancy at birth

지표 정의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몇 년을 더 생존할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기대치로, 0세에 대한 기대여명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기대여명(Life expectancy at age x)은 어느 연령 (x)에 도달한 사람이 그 이후로 몇 년을 더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연수이다.

- 기대수명은 보건, 의료정책수립,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장래인구추계 작성,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의 비교에 널리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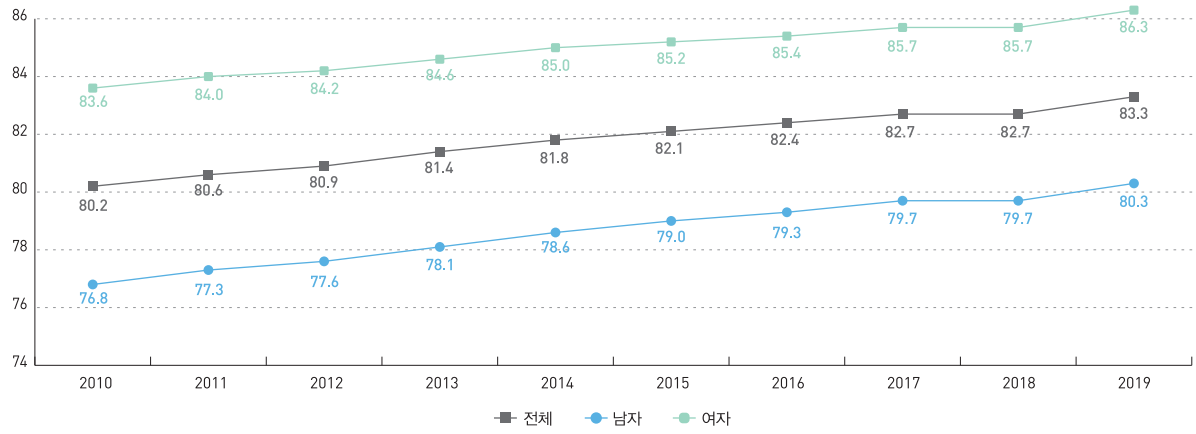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0세 이후의 총 생존연수 (정지인구)}}{\text{0세 생존자 수}}$

유의사항 통계청 생명표와 OECD 통계의 기대수명이 다른 이유는 통계청 생명표는 우리나라 남녀 생존자 수 비율을 고려하여 전체 기대수명을 산출하는 반면에 OECD는 남녀 각각의 기대수명을 산술 평균하기 때문이다.

그림 8-1 성별 기대수명 (2010~2019)

(단위: 년)



주: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생명표*	1970	2019	1년

*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 시도별 통계의 주기는 3년임.

Checkpoint 기대수명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3.1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남자의 기대수명은 3.5년, 여자의 기대수명은 2.7년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에 힘입어 남녀 간 차이는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표 8-1 연도별 · 시도별 기대수명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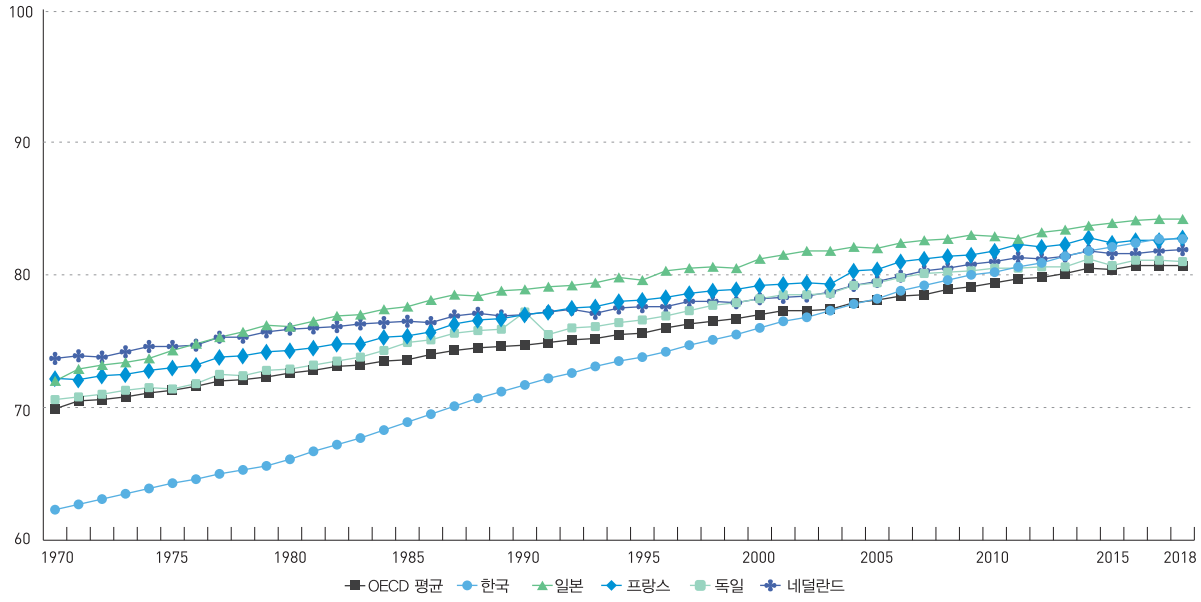
시도	전체				남자				여자			
	2008	2011	2014	2017	2008	2011	2014	2017	2008	2011	2014	2017
전국	79.6	80.6	81.8	82.7	76.2	77.3	78.6	79.7	83.0	84.0	85.0	85.7
서울	81.1	82.0	83.0	84.1	78.2	78.9	80.1	81.2	84.1	85.1	85.8	87.0
부산	78.3	79.7	81.0	81.9	74.9	76.4	77.9	78.9	81.8	82.9	84.1	84.9
대구	79.0	80.0	81.4	82.2	75.7	76.8	78.4	79.2	82.4	83.2	84.3	85.1
인천	79.5	80.1	81.4	82.4	76.3	77.1	78.3	79.3	82.7	83.2	84.5	85.6
광주	79.4	80.2	81.4	82.0	76.4	76.8	78.3	79.3	82.4	83.6	84.4	84.8
대전	79.8	80.7	82.0	82.9	76.8	77.6	79.2	80.5	82.8	83.8	84.8	85.4
울산	78.7	79.6	80.7	82.0	75.8	76.3	78.2	79.1	81.6	82.9	83.2	84.9
세종	-	-	81.3	83.0	-	-	77.7	80.0	-	-	84.8	86.1
경기	80.1	81.1	82.2	83.1	77.1	78.0	79.2	80.4	83.2	84.2	85.2	85.7
강원	78.6	80.2	80.9	82.0	74.9	76.4	77.2	78.4	82.3	84.0	84.6	85.7
충북	78.8	79.6	81.2	81.9	75.1	76.0	77.6	78.8	82.4	83.3	84.8	84.9
충남	79.3	80.6	81.3	82.2	75.7	76.9	77.8	78.9	83.0	84.2	84.9	85.6
전북	78.8	80.1	81.4	82.3	75.1	76.3	77.8	79.0	82.5	84.0	85.0	85.5
전남	78.7	79.7	81.2	82.0	74.6	75.6	77.1	78.4	82.8	83.9	85.3	85.6
경북	78.6	79.6	81.1	82.0	74.7	75.9	77.6	78.6	82.5	83.3	84.7	85.5
경남	78.5	79.7	80.9	81.9	74.7	76.1	77.3	78.6	82.3	83.4	84.5	85.2
제주	80.7	81.4	82.1	82.7	76.4	77.1	78.3	78.7	84.9	85.6	85.9	86.7

주: 1) 2016년 12월 2일자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과거 공표된 1970~2015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음.
2) 세종은 2008년과 2011년의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3. 인출)

그림 8-2 OECD 주요 국가의 기대수명 (1970~2018)

(단위: 년)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2.13. 인출)

01-1
연 관

건강수명
Healthy life expectancy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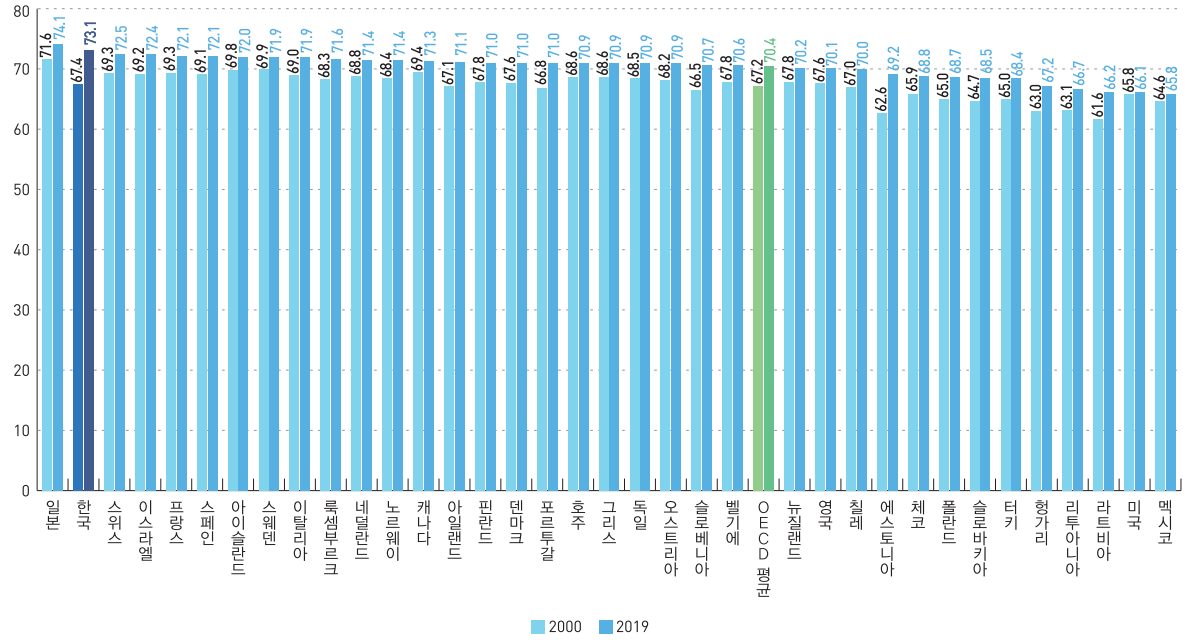
건강수명(HALE; Healthy Life Expectancy)은 장애나 부상으로 인해 줄어든 생명연수를 고려한 '온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수명이다.

측정 산식

• 출생 시점부터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생존연수

그림 8-3 연도별 OECD 국가의 건강수명

(단위: 년)



자료: WHO, Healthy life expectancy (HALE) Data by country, 2020 (https://apps.who.int/gho/data/view.main.HALEXv?lang=en에서 2021.1.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	2019	부정기

참고문헌 •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2020

01-2
연 관

주관적 건강인지율

Perceived health statu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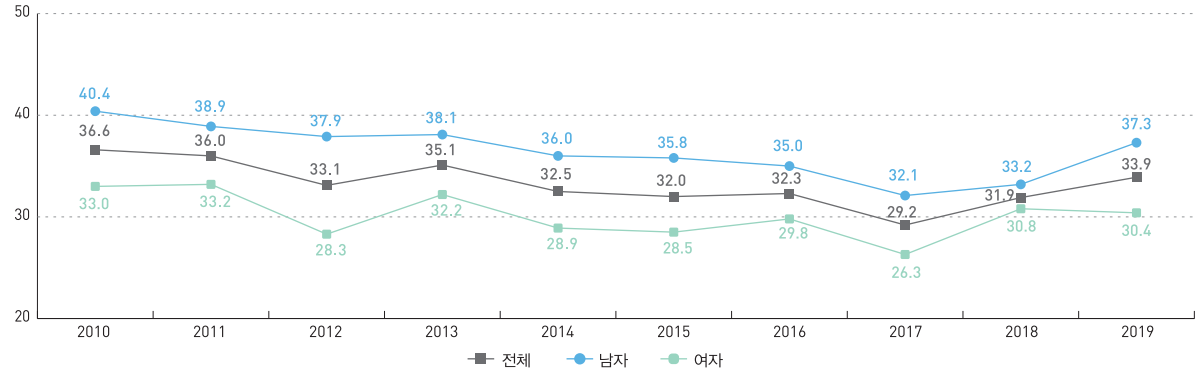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중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frac{\text{평소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4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09~2019)

(단위: %)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표 8-2 특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2010~2019)

(단위: %)

연도	전체[2]	연령대						거주지역[2]		소득수준[2][3]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하	중상	상
2010	36.6	43.4	39.8	34.4	31.5	32.1	27.9	36.5	37.4	31.7	35.8	36.9	38.6	41.6
2011	36.0	44.9	34.6	37.1	32.9	27.3	27.1	36.5	34.1	29.4	32.4	37.1	40.0	42.9
2012	33.1	46.1	31.4	34.7	26.8	23.2	18.8	33.3	32.8	28.0	29.2	36.0	34.7	39.1
2013	35.1	47.6	38.8	34.9	26.4	22.3	18.9	35.1	36.0	31.5	31.9	34.2	36.0	42.8
2014	32.5	42.9	33.3	32.1	27.1	23.2	21.4	33.1	28.4	26.5	29.9	31.7	35.2	39.7
2015	32.0	40.3	31.6	31.8	29.8	26.7	19.8	32.3	31.8	25.5	31.5	31.0	34.4	38.1
2016	32.3	43.6	31.1	31.3	28.1	26.2	20.6	33.3	26.4	28.0	30.4	32.1	33.4	37.7
2017	29.2	35.3	32.5	28.9	25.2	22.0	17.9	29.7	27.2	22.4	25.3	33.1	27.6	37.5
2018	31.9	40.8	33.1	29.4	29.4	26.2	20.6	32.4	29.0	26.0	28.5	32.8	34.2	38.7
2019	33.9	41.6	37.0	31.7	31.7	26.7	20.3	34.6	29.1	25.3	31.1	35.3	38.6	39.0

주: 1)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좋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율을 의미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3)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02
대 표

조사망률
Crude death rate

지표 정의

성별과 연령에 무관하게 1년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를 그해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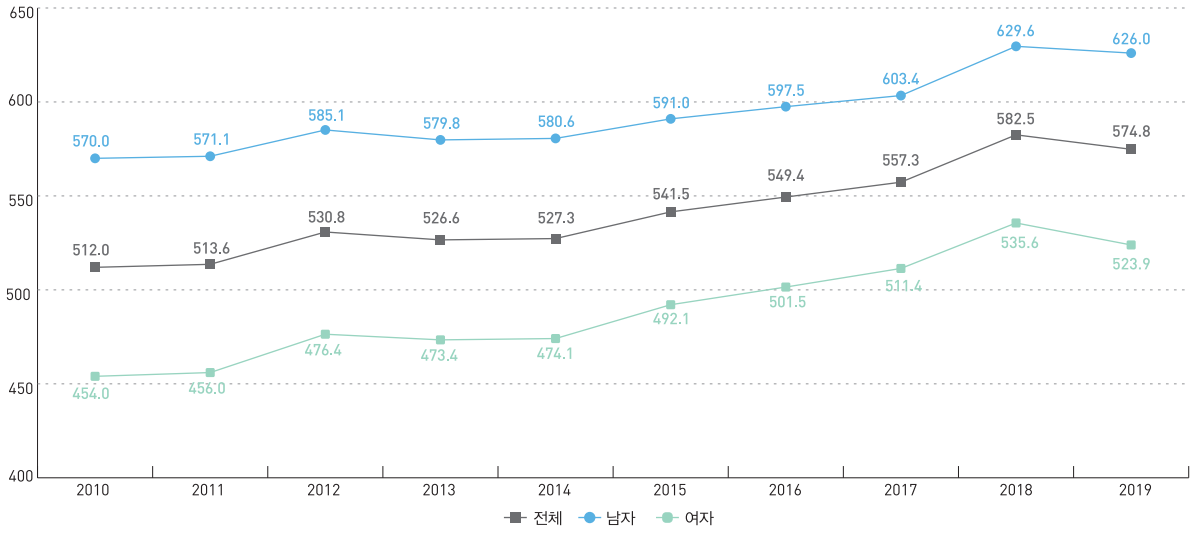
• 사망수준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인구구조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사망률은 한 나라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동시에 그 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1년 간 발생한 총 사망자 수}}{\text{해당 연도 연앙인구}} \times 100{,}000$$

그림 8-5 성별 조사망률 (2010~2019)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9	1년

Checkpoint 사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사망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며, 역으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늘린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그해의 중간일인 7월 1일 기준 인구수

표 8-3 연도별 · 시도별 조사망률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0	2015	2019	2010년 대비 2019년	2010	2015	2019	2010년 대비 2019년	2010	2015	2019	2010년 대비 2019년
전국	512.0	541.5	574.8	10.9	570.0	591.0	626.0	8.9	454.0	492.1	523.9	13.3
서울	394.4	434.6	457.6	13.8	451.5	491.5	531.7	15.1	338.3	379.4	386.9	12.6
부산	557.9	598.5	656.6	15.0	626.6	661.7	732.5	14.5	490.1	536.8	583.4	16.0
대구	484.4	529.3	565.7	14.4	542.8	578.1	624.7	13.1	426.1	481.2	508.0	16.1
인천	444.5	466.0	516.9	14.0	497.4	517.4	567.6	12.4	391.0	414.3	466.0	16.1
광주	453.9	508.0	527.0	13.9	495.5	527.4	560.6	11.6	412.9	489.0	494.1	16.4
대전	424.4	459.7	509.7	16.7	478.9	501.7	553.0	13.4	369.8	417.7	466.6	20.7
울산	387.6	422.5	459.8	15.7	411.5	438.4	491.1	16.2	362.4	405.6	426.8	15.1
세종	-	536.1	374.3	-	-	578.1	384.0	-	-	493.6	364.6	-
경기	412.2	429.6	464.3	11.2	455.6	470.5	506.1	10.0	368.2	388.3	422.1	12.8
강원	708.7	737.0	778.9	9.0	800.3	807.9	863.9	7.4	615.8	664.9	692.7	11.1
충북	640.9	677.1	714.9	10.4	709.2	734.6	757.9	6.4	571.5	618.6	671.0	14.8
충남	684.0	703.8	738.9	7.4	768.1	764.3	777.1	1.2	597.9	641.5	699.4	14.5
전북	711.0	738.3	799.8	11.1	780.0	786.7	844.3	7.6	642.4	690.4	755.9	15.0
전남	840.6	873.3	900.9	6.7	934.6	932.1	945.4	1.1	746.8	814.6	856.2	12.8
경북	758.4	777.2	817.8	7.3	829.9	834.6	852.7	2.7	686.2	719.4	782.4	12.3
경남	598.5	638.7	660.2	9.3	651.9	679.4	688.0	5.2	544.5	597.5	632.1	13.9
제주	534.8	546.2	596.7	10.4	554.1	576.4	635.5	12.8	515.5	515.7	557.3	7.5

주: 세종은 2010년 자료가 없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14. 인출)

02-1
연 관

연령표준화사망률

Age-adjusted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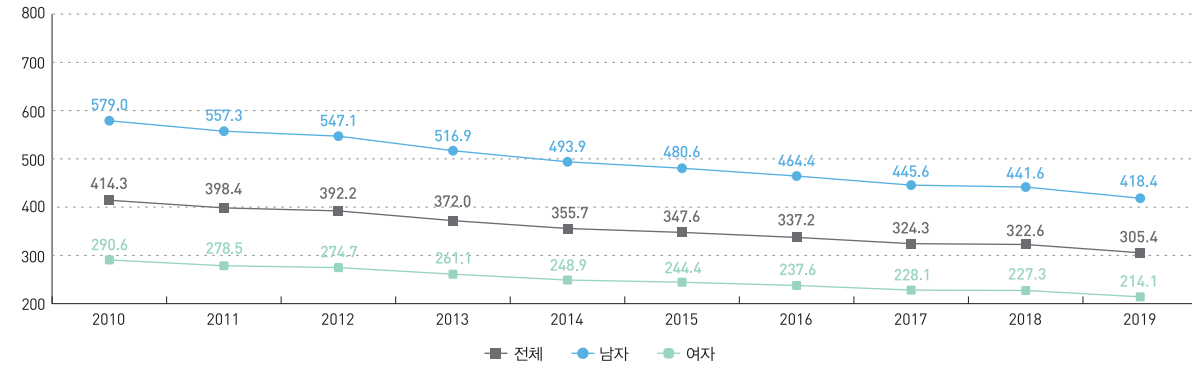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한 사망률이다. 이를 위해 표준인구는 2005년 주민등록 연령별 연앙인구(남녀 전체)를 사용한다.

측정 산식

$$\frac{\sum(\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times 100{,}000$$

그림 8-6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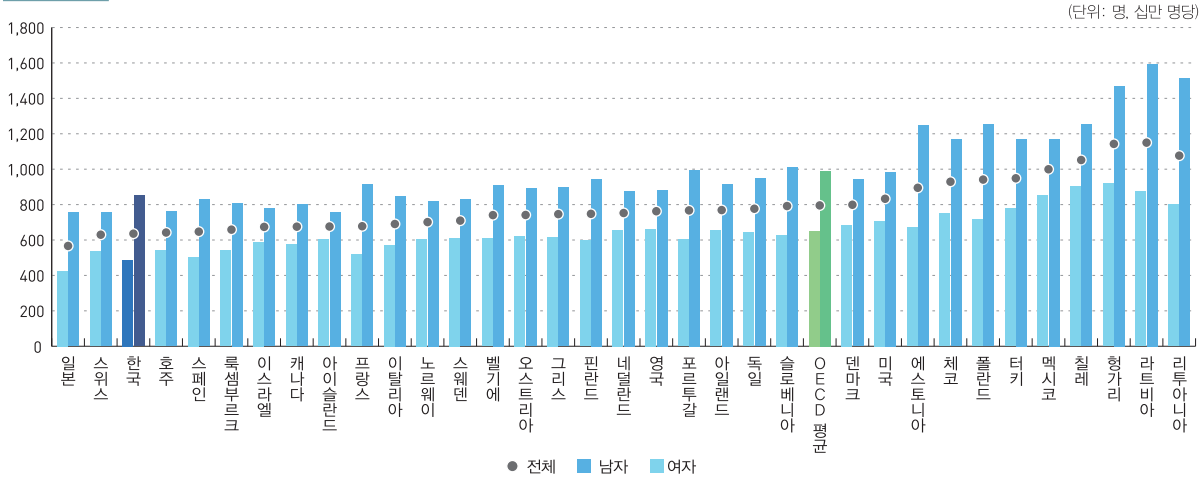
(단위: 명, 표준인구 십만 명당)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14. 인출)

그림 8-7 OECD 국가의 성별 연령표준화사망률 (2017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십만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2017년 기준이며,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는 2018년이 비교됨.
※ OECD 통계는 발표 시점에서 t-2년도가 비교의 기준이 되지만, 질병 자료(사망원인)에 기반을 둔 사망률 정보는 t-3년이 기준이 됨. 이는 국제기구 간 자료 공유 시점의 차이에 기인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2.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9	1년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02-2
연 관

영아사망률

Infant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아 수를 그해 출생아 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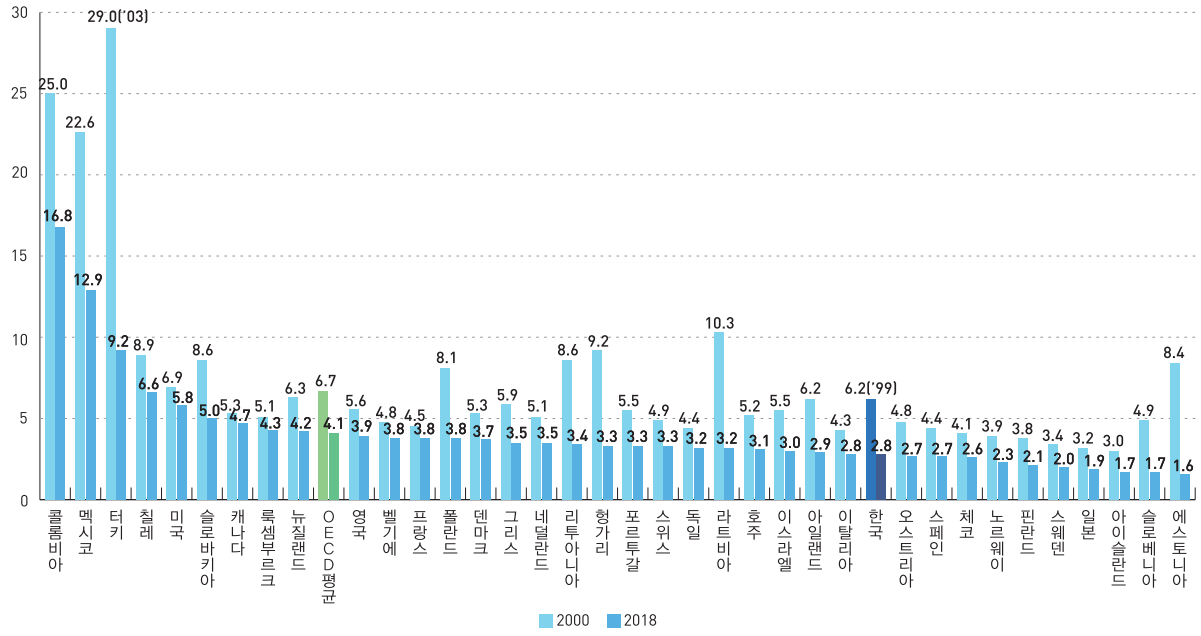
• 영아사망률은 보건의료제도의 특성과 효과뿐만 아니라, 아이와 산모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와 사회적인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출생 후 1년 이내 사망아 수}}{\text{해당 연도 총 출생아 수}} \times 1{,}000$$

그림 8-8 OECD 국가의 연도별 영아사망률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출생아 천 명당)



주: 1)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가장 최근 연도 자료는 2018년이며, 콜롬비아, 뉴질랜드는 2016년, 미국은 2017년이 비교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2.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18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02-3
연 관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Cause-specific mortality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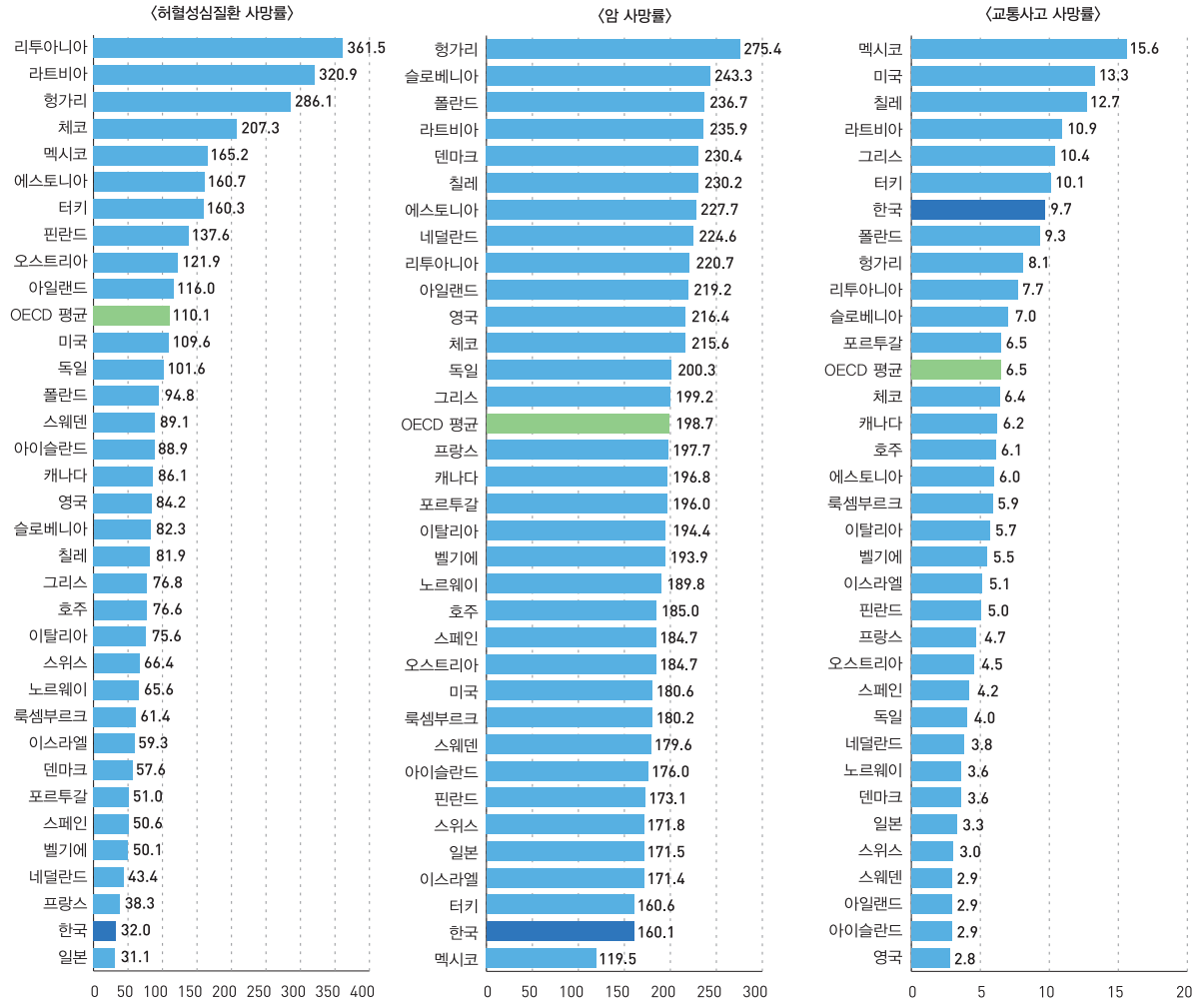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인구로 나누어 추정한다. 사망원인 분류는 ICD-10을 기반으로 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7)에 따른다. 여기에서 허혈성심질환은 I20-I25, 암은 C00-C97이다. 교통사고(육상 운수사고)는 외인사(인체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사망) 중에 하나로 V01-V89이다. OECD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10년 OECD 인구로 연령표준화를 해준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 수}}{\text{인구수}} \times 100{,}000$

그림 8-9 OECD 국가의 특정사인에 의한 사망률 (2017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2.1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18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03 대 표

저체중아 발생률

Low birth weight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출생 체중 2.5㎏ 미만 출생아의 비율이다.

• 저체중아 발생률은 영아의 질병 및 사망과 관련 있는 중요 지표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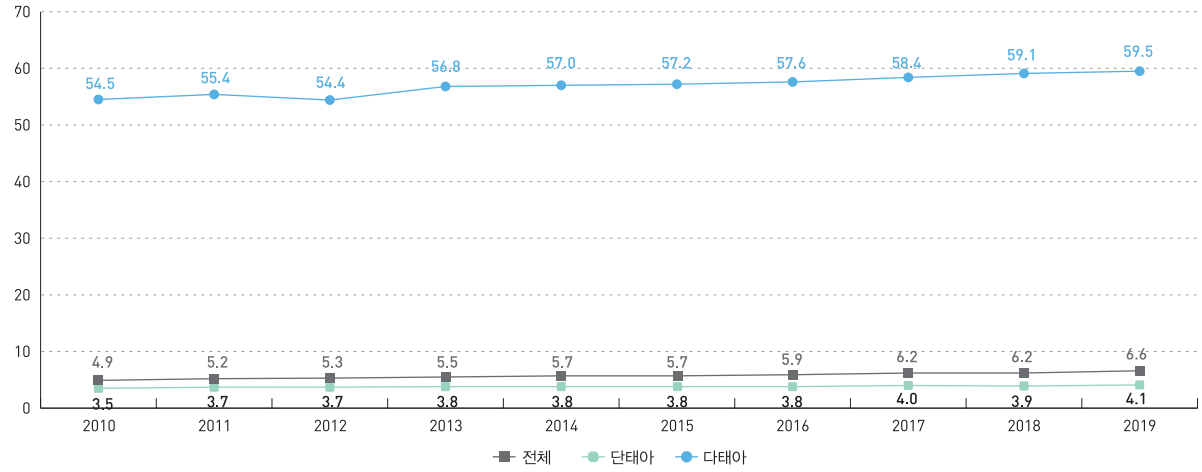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체중 2.5㎏ 미만의 출생아 수}}{\text{한 해 동안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유의사항 출생통계자료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년도 4월까지(16개월) 전국 행정기관에 출생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이다.

그림 8-10 출생아 수별 저체중 출생아 비율의 변화 (2010~2019)

(단위: %)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 (2020.8.26.)

표 8-4 체중별 출생아의 구성비 (2019)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저체중아(2.5㎏ 미만)	6.6	4.1	59.5
정상체중아(2.5~4.0㎏ 미만)	90.3	93.0	40.5
과체중아(4.0㎏ 이상)	2.8	2.9	0.0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 (2020.8.2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9	1년

Checkpoint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출생아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저체중 출생아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저체중 출생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

03-1
연 관

조산율

Premature birth rate

지표 정의

전체 출생아 중 임신(재태)주수 37주 미만에 출생한 출생아의 비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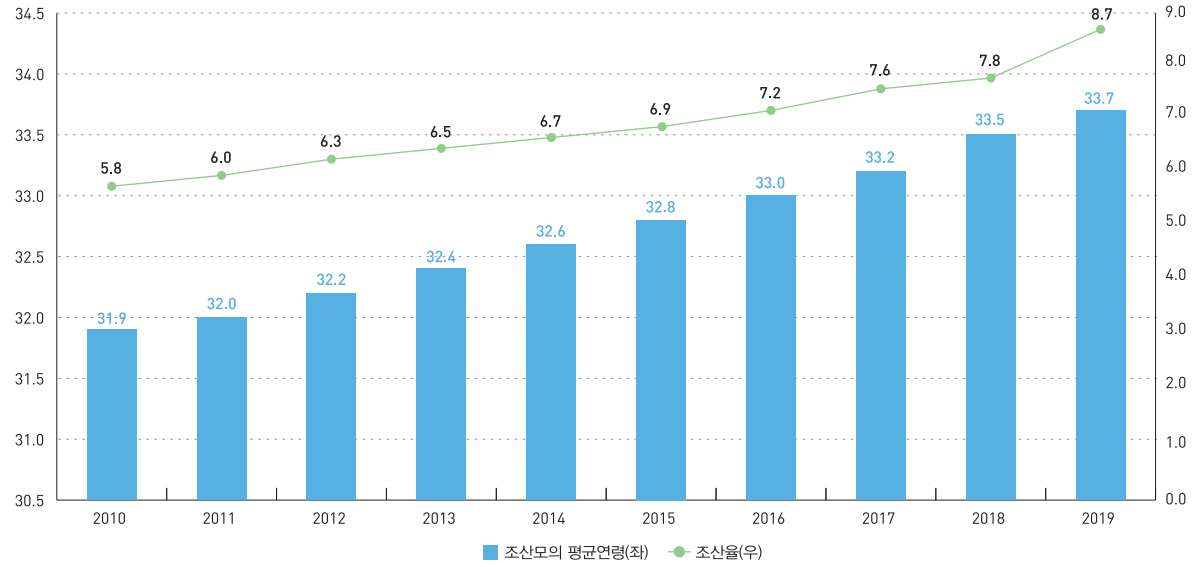
• 조산아는 저체중아와 함께 영아 이환 및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출생아이므로 조산율은 저출산에 대응한 모자보건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37주 미만 출생아 수}}{\text{한 해 출생한 출생아 수}} \times 100$$

그림 8-11 조산율 및 조산모의 평균 연령의 변화 (2010~2019)

(단위: 세, %)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 (2020.8.26.)

표 8-5 임신기간별 출생아의 구성비 (2019)

(단위: %)

구분	전체	단태아	다태아
37주 미만 출산	8.1	5.4	63.4
37주~41주 출산	91.8	94.5	36.6
42주 이상 출산	0.1	0.1	0.0

자료: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 (2020.8.2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70	2019	1개월

참고문헌

• 통계청, 「2019년 출생 통계」 보도자료, 2020

04 대 표

자살률

Suicide rate

지표 정의

자살률은 연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그해 연앙인구*로 나눈 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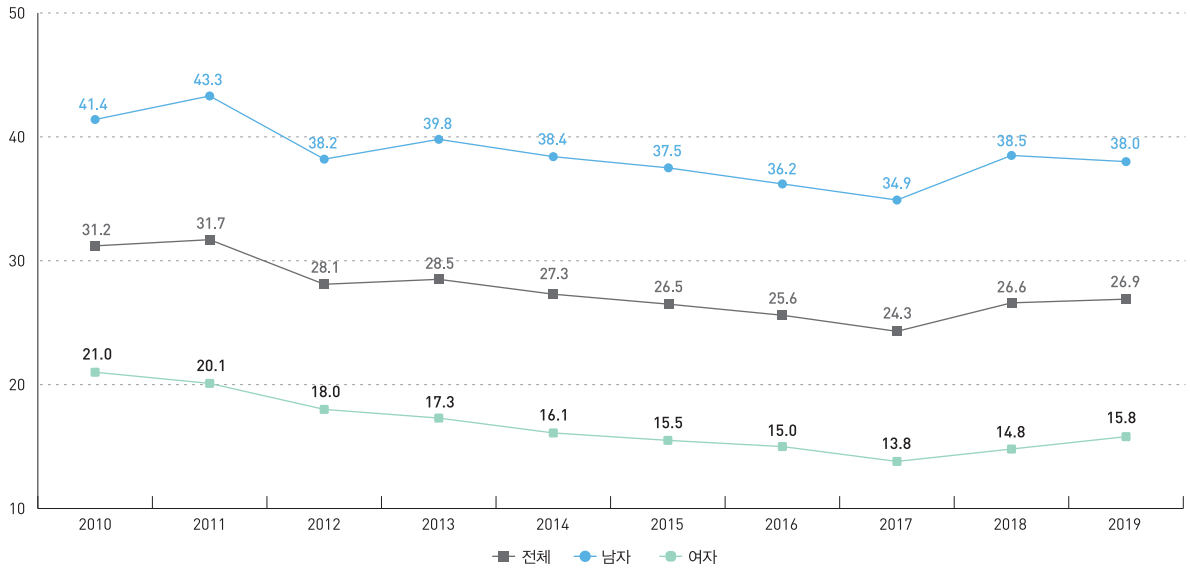
• 자살률은 국가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정신질환이나 신체질병이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의 수}}{\text{해당 연도 연앙인구}} \times 100{,}000$$

그림 8-12 성별 자살률 (2010~2019)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연령표준화 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1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1983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6.9명으로 2018년 26.6명보다 0.3명 증가하였다(남자 38.5명 → 38.0명, 여자 14.8명 → 15.8명). 1990~2000년대에 비교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바, 자살률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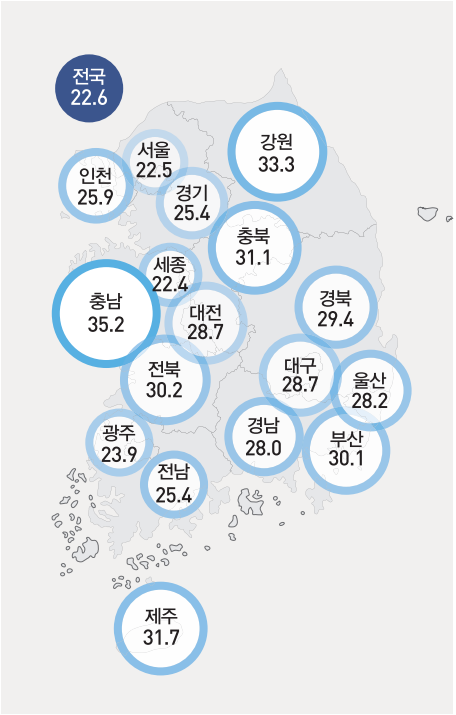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 그해의 중간일인 7.1일 기준 인구수

표 8-6 시도별 · 연령대별 자살률 (2019)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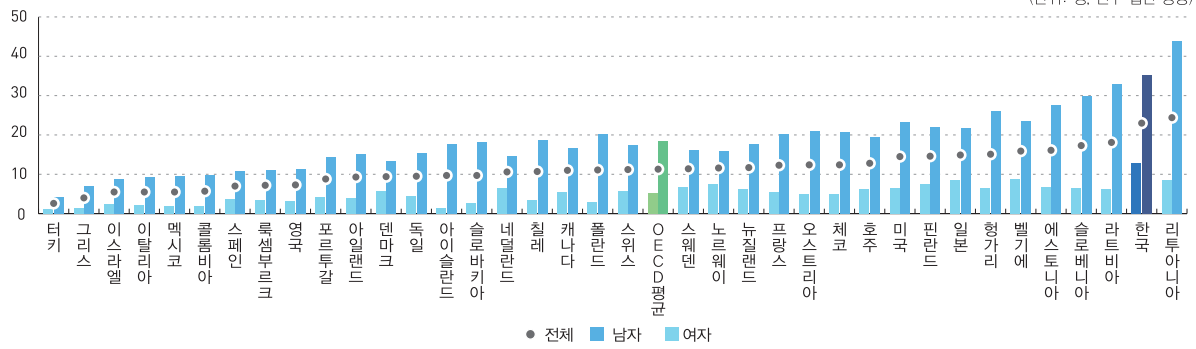
시도	전체				남자				여자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전국	22.6	0.7	27.4	46.6	31.7	0.7	37.8	76.7	14.0	0.7	16.5	24.0
서울	22.5	0.7	22.8	37.0	30.8	0.6	30.4	58.8	14.5	0.8	15.4	19.6
부산	30.1	0.8	30.3	47.6	43.1	0.5	41.5	81.2	17.6	1.1	18.9	21.7
대구	28.7	2.0	29.8	45.2	41.2	1.9	42.8	71.0	16.5	2.1	16.5	26.4
인천	25.9	-	26.7	48.0	37.7	-	38.7	76.3	14.1	-	14.1	26.4
광주	23.9	1.0	26.2	35.4	33.9	1.9	35.9	62.2	14.1	-	16.4	15.6
대전	28.7	0.5	28.7	57.9	41.9	-	40.6	101.7	15.6	1.1	16.5	24.0
울산	28.2	-	30.7	47.2	41.5	-	43.6	85.7	14.2	-	16.6	15.7
세종	22.4	-	26.7	39.6	26.4	-	30.3	61.6	18.4	-	23.0	23.1
경기	25.4	0.9	25.9	50.6	34.2	0.8	34.4	78.9	16.4	1.0	17.0	28.7
강원	33.3	-	31.6	59.5	49.5	-	46.2	100.3	16.9	-	15.6	29.2
충북	31.1	-	30.9	55.8	46.0	-	44.0	98.2	15.9	-	16.5	24.3
충남	35.2	0.7	35.4	60.6	50.6	0.7	50.8	95.6	19.2	0.7	18.0	34.7
전북	30.2	0.4	29.7	50.3	43.9	-	40.2	93.2	16.6	0.9	18.4	19.9
전남	25.4	-	24.5	41.5	39.4	-	37.9	71.8	11.3	-	9.4	20.7
경북	29.4	0.6	30.1	44.1	41.6	0.6	41.7	71.2	17.1	0.7	17.2	24.7
경남	28.0	0.2	29.7	43.6	39.8	0.4	40.8	74.8	16.1	-	17.7	21.5
제주	31.7	3.1	36.2	38.2	47.6	4.0	53.5	66.7	15.5	2.1	17.7	17.7



주: 연령표준화 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20 (http://kosis.kr에서 2020.11.14. 인출)

그림 8-13 OECD 국가의 성별 자살률 (2017년 또는 최근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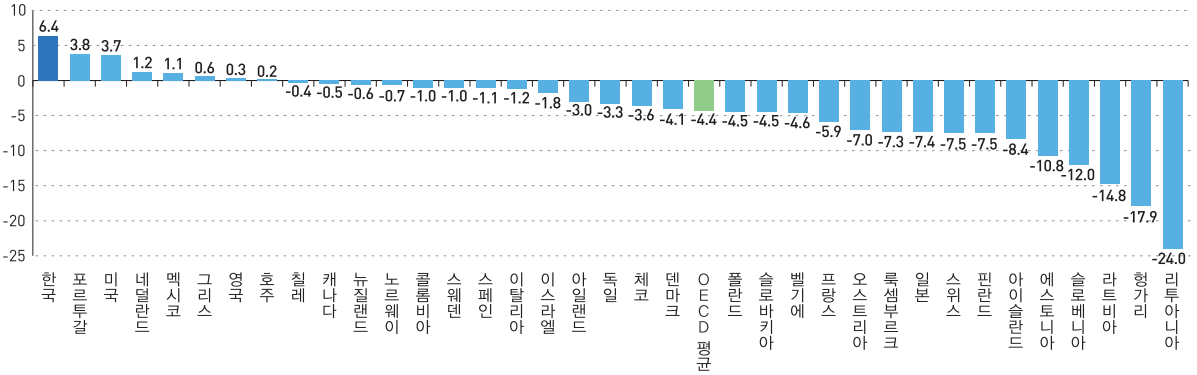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13. 인출)

그림 8-14 OECD 국가의 자살률 변화폭 (1990년 대비 2017년(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OECD 기준 인구에 따른 바, 국가 간 연령구조의 차이가 제거되어 통계청의 자살률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13. 인출)

04-1
연 관

정신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mental disorders

지표 정의

지난 1년 동안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단, 조사의 시점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혹은 입소 중인 환자는 제외하며, 조사 결과는 성과 연령을 보정한다.

측정 산식

$$\frac{\text{1년 동안 한 번 이상의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대상 인구수}} \times 100$$

표 8-7 연도별 · 성별 정신장애 유병률

(단위: %)

구분	2006			2011			2016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알코올사용장애	5.6	8.7	2.5	4.4	6.6	2.1	3.5	5.0	2.1
니코틴사용장애	6.0	10.8	1.1	4.0	7.0	0.9	2.5	4.5	0.6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0.3	0.4	0.2	0.4	0.2	0.5	0.2	0.2	0.2
기분장애	3.0	2.1	3.9	3.6	2.3	4.9	1.9	1.3	2.5
불안장애	5.0	3.2	6.9	6.8	3.7	9.8	5.7	3.8	7.5
모든 정신장애	17.1	20.7	13.5	16.0	16.2	15.8	11.9	12.2	11.5

주: 1)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는 조현병 및 관련 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를 포함함.
2) 모든 정신장애는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대상자를 포함함.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2001	2016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04-2
연 관

우울장애 유병률

Prevalence of depressive disorder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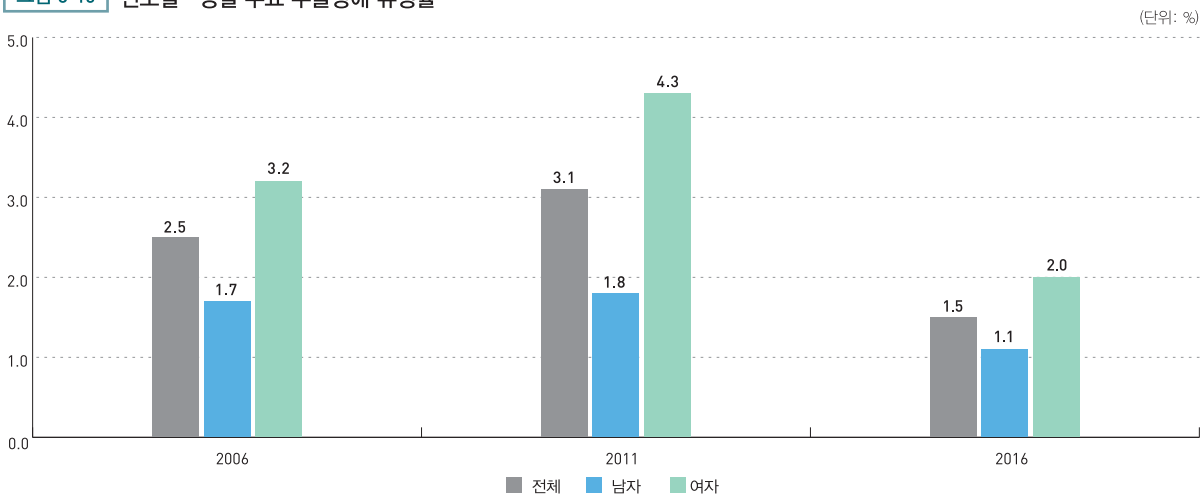
우울장애 유병률은 지난 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 우울장애는 기분장애의 하위 항목이다. 여기에서 기분장애는 기분이 지나치게 침울하거나 들떠 있어 기분의 조절이 어렵고,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기분이 장시간 지속되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렵고, 직업수행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측정 산식

$$\frac{\text{1년 동안 주요 우울장애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대상 인구수}} \times 100$$

그림 8-15 연도별 · 성별 주요 우울장애 유병률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17.12.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2001	2016	5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실태조사, 각 연도

05 대 표

10대 다빈도 상병

Ten Most frequent diseases

지표 정의

우리나라 국민에게서 1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된 상병을 의미한다. 입원서비스와 외래서비스 각각에 있어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측정 산식

• 특정 상병으로 발생된 의료서비스

표 8-8 입원서비스 다빈도 상병 (2019)

(단위: 명, 일, 천 원, 위)

구분	2019						과거 순위	
	진료실 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성별 내 순위		2015	2010
					남자	여자		
1. 노년백내장(H25)	301,128	1,244,343	254,505,836	200,868,879	2	1	4	3
2.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J18)	349,423	553,793	495,586,506	397,479,951	1	3	2	4
3.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A09)	308,637	3,315,990	757,608,138	616,421,616	4	2	5	6
4. 출산장소에 따른 생존출생(Z38)	263,382	1,231,551	108,977,166	107,671,362	3	5	1	1
5. 기타 추간판장애(M51)	261,121	2,017,599	340,240,065	254,247,122	5	4	3	7
6. 치핵 및 항문 주위 정맥혈전증(K64)	160,944	430,836	189,232,825	148,424,235	6	9	7	5
7. 무릎관절증(M17)	116,643	542,613	106,291,374	93,263,229	42	6	9	16
8. 어깨병변(M75)	131,256	2,811,252	838,155,481	644,159,249	9	11	10	49
9. 기타 척추병증(M48)	124,888	1,491,386	285,803,896	214,539,037	11	10	8	17
1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127,546	1,085,574	290,455,726	218,207,627	34	8	16	53

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7차 개정으로 치핵(I84)이 치핵 및 항문 주위 정맥혈전증(K64)으로 변경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3.9. 인출)

표 8-9 외래서비스 다빈도 상병 (2019)

(단위: 명, 일, 천 원, 위)

구분	2019						과거 순위	
	진료실 인원	내원일수	진료비	급여비	성별 내 순위		2015	2010
					남자	여자		
1.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16,086,522	56,742,600	1,639,978,637	1,213,332,495	1	2	2	3
2. 급성 기관지염(J20)	16,850,437	34,676,524	1,622,800,402	1,132,863,216	2	1	1	1
3.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7,044,504	17,041,692	540,524,083	392,179,087	3	3	4	5
4. 치아우식(K02)	6,273,196	44,687,807	3,333,612,396	2,371,675,597	5	4	6	8
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I10)	5,656,028	11,252,538	316,723,876	230,091,516	4	6	7	10
6.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감염(J06)	6,450,381	11,180,515	558,559,959	397,066,108	6	5	5	4
7. 등통증(M54)	5,109,062	9,886,384	293,257,393	212,077,684	8	8	10	15
8. 위염 및 십이지장염(K29)	5,217,454	9,351,582	442,970,740	303,935,416	10	7	8	6
9. 급성 편도염(J03)	5,382,581	24,677,229	942,604,801	680,223,447	7	9	3	2
10.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L23)	4,389,435	8,635,437	239,197,840	174,745,992	12	10	13	14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3.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입원과 외래의 10대 다빈도 상병은 항목과 순위에서 과거(2010년 및 2015년)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질병 구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05-1
연 관

암 발생률

Incidence of cancer

지표 정의

암 발생률은 조사시점(2016년도)에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암환자 수를 나타낸다.

측정 산식

$$\frac{\text{새롭게 발생한 암환자 수}}{\text{주민등록 연앙인구}} \times 100{,}000$$

표 8-10 주요 암 종별 발생률과 5년 상대생존율

(단위: 명, 인구 십만 명당, %)

구분	조발생률 (2017년, 인구 십만 명당)			연령표준화 발생률 (2017년, 인구 십만 명당)			5년 상대생존율 (2013년~2017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모든 암(C00–C96)	453.4	478.1	428.6	282.8	301.6	278.7	70.4	63.5	77.5
위(C16)	57.9	77.9	38.1	33.3	47.5	21.1	76.5	77.5	74.6
대장(C18–C20)	54.9	65.1	44.7	30.8	39.9	23.0	75.0	76.6	72.6
갑상선(C73)	51.1	23.6	78.5	44.5	20.8	68.9	100.1	100.4	100.0
폐(C33–C34)	52.7	72.9	32.5	27.5	42.7	15.8	30.2	25.2	41.5
유방(C50)	43.7	_	86.9	31.6	-	63.0	93.2	-	93.2
간(C22)	30.1	45.0	15.2	17.0	27.6	7.4	35.6	36.4	33.2
전립선(C61)	25.0	50.0	-	12.9	29.0	-	94.1	94.1	-
담낭 및 기타 담도(C23–C24)	13.4	13.9	12.8	6.7	8.1	5.5	28.9	29.7	28.0
췌장(C25)	13.7	14.6	12.9	7.3	8.8	6.0	12.2	11.8	12.5
신장(C64)	10.3	14.1	-	6.7	9.6	-	83.1	83.1	-

주: 1) 2017년을 기준으로 조발생률이 높은 10개 암 종의 정보만 제시함.
2)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의 비율을 가중치로 주어 산출한 가중평균발생률임. 조발생률은 해당 인구집단에서의 암 발생 정도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며, 지역 간 혹은 시기에 따른 암 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연령구조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발생률을 사용함.
3) 상대생존율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동일한 연도, 성별, 연령인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함. 예를 들어,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일반인과 생존율이 같음을 의미함. 갑상선암의 경우 5년 상대생존율이 100%를 넘는 것은 갑상선암에 걸린 환자가 5년 동안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인구와 비교하였을 때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의미임.

자료: 보건복지부, 2017 암등록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암등록통계	1999	2017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7 암등록통계, 2019

05-2
연 관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Prevalence of cerebrovascular diseas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의사로부터 뇌졸중을 진단받은 적이 있는 사람 수}}{\text{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2015년까지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표가 측정되었으나, 2016년부터 만 30세 이상으로 변경됨.

표 8-11 특성별 뇌졸중 의사진단경험률 (2010~2019)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1.3	0.2	0.1	2.0	2.6	5.0	1.4	1.1	1.9	1.1	0.9	1.6	0.7
2011	1.7	0.1	0.2	1.0	5.9	6.5	1.8	1.4	1.5	2.3	2.1	1.3	1.1
2012	1.3	0.1	0.7	0.9	3.5	4.6	1.5	0.7	1.7	1.4	0.9	1.4	0.8
2013	2.2	0.3	0.7	3.0	4.8	7.9	2.1	2.6	3.4	1.8	1.5	1.8	2.3
2014	1.7	0.1	0.6	1.2	4.6	7.1	1.7	1.5	3.1	1.8	1.1	1.1	1.4
2015	1.7	0.0	0.3	1.5	4.4	8.4	1.8	1.2	2.3	2.1	1.0	1.8	1.3
2016	1.7	0.1	0.6	2.1	3.7	6.7	1.7	1.6	2.8	1.7	1.4	1.2	1.1
2017	1.8	0.1	0.8	2.0	3.8	6.9	1.8	2.1	2.9	1.6	1.6	1.4	1.3
2018	1.8	0.3	0.6	1.8	3.7	8.0	1.7	2.5	2.5	2.6	1.6	0.8	1.5
2019	1.9	0.6	1.2	1.3	3.2	8.2	1.9	2.4	2.0	2.3	2.8	1.4	1.1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05-3
연 관

고혈압 유병률

Prevalence of hypertension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사람 수}}{\text{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2 일반 특성별 고혈압 유병률 (2010~2019)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26.8	7.2	17.0	37.3	55.6	61.2	27.4	25.3	28.0	26.1	27.6	26.1	26.7
2011	28.4	9.1	21.1	33.8	55.4	66.6	28.5	29.2	27.7	29.2	31.7	26.0	26.5
2012	28.9	9.5	22.6	34.5	54.0	66.4	29.0	29.0	28.4	30.5	29.9	28.8	26.4
2013	27.2	9.7	19.5	35.9	48.7	62.3	27.3	27.4	27.6	27.7	30.1	25.0	25.8
2014	25.4	7.3	17.7	32.0	48.5	63.5	25.6	24.4	26.3	28.5	24.0	25.4	22.9
2015	27.8	8.7	20.7	33.9	51.8	67.5	27.4	30.9	32.0	30.6	24.8	26.3	25.7
2016	29.1	10.3	21.7	36.5	50.9	69.2	29.1	29.2	33.3	26.4	27.0	30.3	28.5
2017	26.9	11.3	19.2	32.1	46.9	64.7	26.7	28.2	29.8	27.8	25.4	25.2	26.4
2018	28.3	11.7	20.6	34.7	46.0	70.2	27.6	32.2	30.7	32.1	27.2	27.5	23.8
2019	27.2	9.5	19.0	32.3	51.5	67.2	27.0	27.1	30.9	27.8	26.1	24.9	26.4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05-4
연 관

당뇨병 유병률

Prevalence of diabet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당뇨병은 심혈관계 합병증과 실명, 조기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인병으로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사람 수}}{\text{만 30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3 일반 특성별 당뇨병 유병률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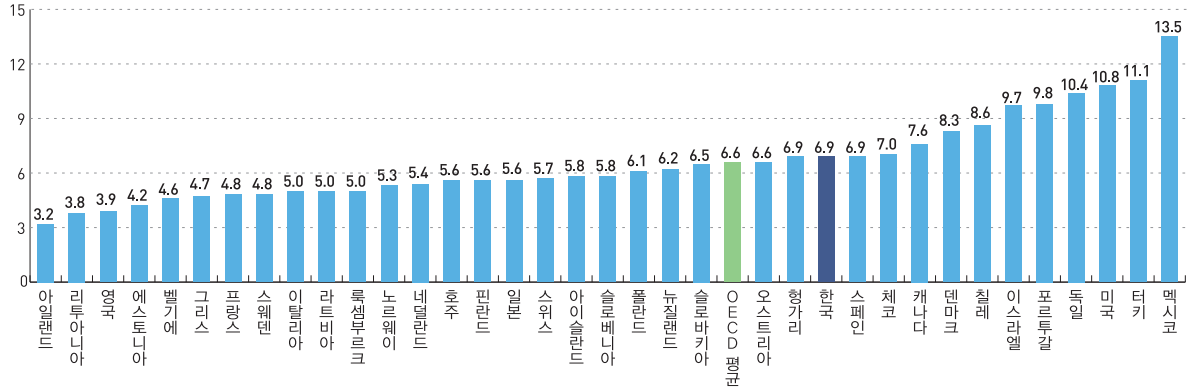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9.6	2.8	6.6	13.1	17.6	23.4	10.1	9.1	11.2	11.1	8.6	7.7	9.2
2011	9.7	2.5	6.6	13.8	19.6	21.5	9.4	11.1	10.3	9.1	10.3	8.7	10.3
2012	9.0	1.9	5.0	12.6	20.3	22.0	9.0	9.6	10.2	11.6	6.7	8.0	7.7
2013	11.0	2.5	7.3	12.6	25.2	27.6	11.3	10.0	13.6	11.7	9.0	10.9	9.8
2014	10.1	2.2	7.4	11.9	22.6	24.0	10.5	9.2	14.2	10.1	7.4	8.9	10.1
2015	9.5	2.9	7.0	9.7	19.7	24.4	9.5	9.5	12.8	12.0	7.6	6.3	9.1
2016	11.3	2.7	8.0	14.2	21.8	29.1	10.7	14.8	14.1	11.0	11.8	9.0	10.0
2017	10.4	2.0	6.7	15.1	19.6	27.9	10.4	11.3	14.5	10.3	10.4	9.2	8.5
2018	13.8	2.5	7.5	13.0	20.3	26.5	10.2	11.6	12.9	13.0	9.2	9.1	7.9
2019	10.4	2.3	7.0	13.5	21.5	26.0	10.0	12.8	10.6	11.5	9.9	9.9	10.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그림 8-16 OECD 국가의 당뇨병 유병률 (2019)

(단위: %)



주: OECD Health Statistics는 OECD 인구로 표준화되기 때문에, 국내 통계 수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iabetes Atlas 9th Edition,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 International Diabetes Federation, IDF Diabetes Atlas 9th Edition, 2019

06
대 표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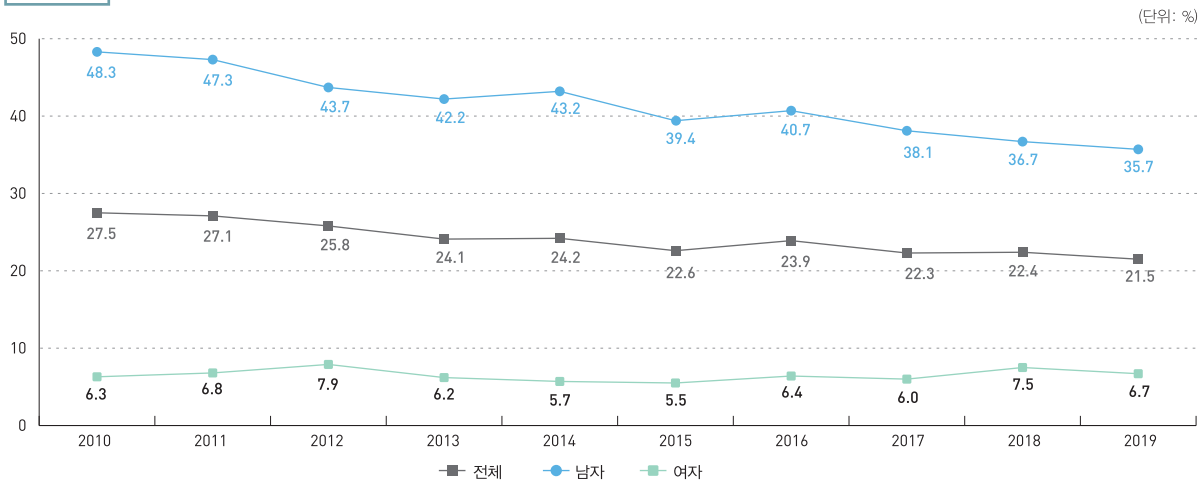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흡연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5백만 명의 규모에 이르고 있다.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과 암 발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흡연은 말초혈관질환, 고혈압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이 되며, 임신부의 경우 저체중아 출산과 신생아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피움' 또는 '가끔 피움'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17 성별 현재 흡연율 (2010~2019)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Checkpoint 현재 흡연율은 2010년 이후 미미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흡연율은 21.5%로 2018년 22.4%보다 0.9%p 감소하였다(남자 36.7% → 35.7%, 여자 7.5% → 6.7%).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표 8-14 일반 특성별 현재 흡연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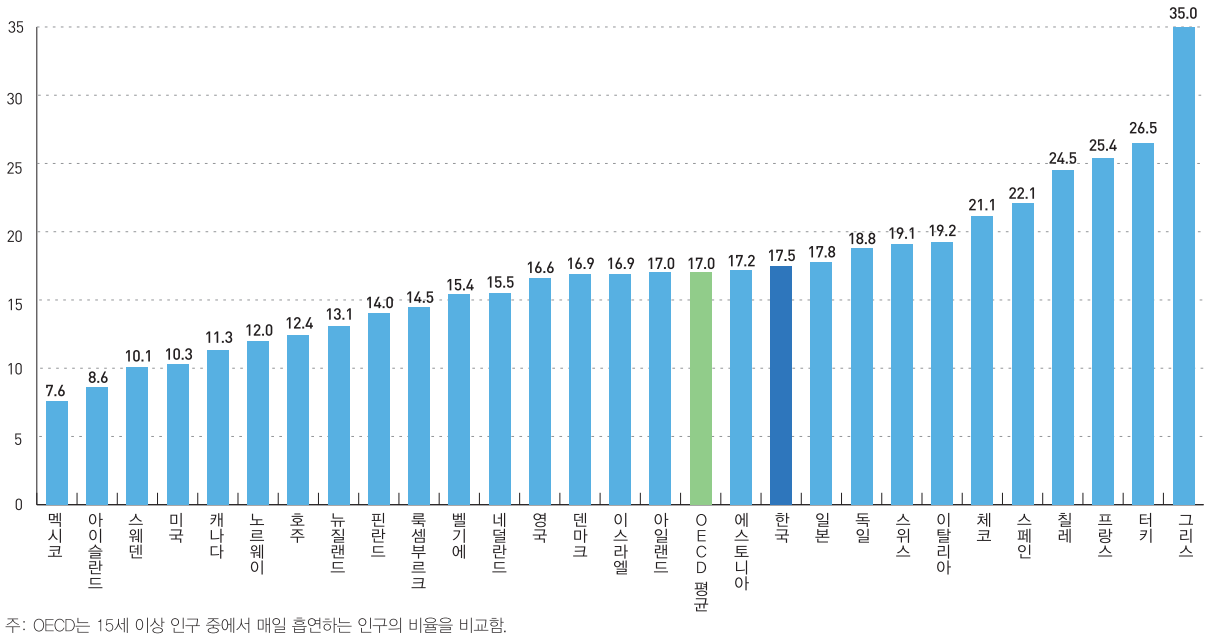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27.5	27.8	35.0	30.5	25.1	16.1	12.6	27.0	28.5	31.1	28.5	25.8	26.2	24.8
2011	27.1	28.3	36.6	25.7	24.5	17.5	14.3	26.2	31.6	32.9	29.1	26.0	22.7	23.6
2012	25.8	28.0	32.5	27.7	24.6	13.4	10.9	25.4	28.2	29.6	28.4	23.5	22.5	23.8
2013	24.1	24.1	30.7	26.9	22.0	17.4	8.0	23.3	27.5	28.9	26.5	24.0	20.9	20.7
2014	24.2	22.5	30.0	29.2	20.6	18.2	10.1	23.4	29.7	28.1	24.3	25.8	23.1	19.7
2015	22.6	23.7	27.7	25.4	20.8	14.1	9.0	22.4	23.6	26.0	21.6	24.2	21.7	18.9
2016	23.9	25.4	30.4	25.0	22.7	14.6	9.1	23.1	28.8	25.6	26.0	22.5	23.5	21.7
2017	22.3	24.4	25.5	26.3	20.2	14.4	8.5	21.5	27.5	26.0	24.9	22.7	21.7	15.9
2018	22.4	23.8	24.7	26.7	22.8	14.9	6.6	21.7	27.3	25.1	26.7	21.6	20.5	17.2
2019	21.5	24.8	24.0	22.4	20.3	16.8	8.4	21.3	21.5	27.9	21.8	23.7	20.5	14.0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그림 8-18 OECD 국가의 흡연율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매일 흡연하는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06-1
연 관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Cigarettes Smoked Per Day Among Current Smokers

지표 정의

만 19세 이상의 '현재 흡연자'가 하루 평균 피우는 담배 개비 수이다.

측정 산식

• 하루 평균 흡연한 개비의 합 / 만 19세 이상 현재 흡연자 수

표 8-15 일반 특성별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2010~2019)

(단위: 개비)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15.2	12.3	14.6	17.2	18.5	15.1	13.8	15.1	-	14.9	15.1	-	-	-
2011	15.3	13.2	14.8	17.7	16.6	16.7	11.0	14.9	-	14.5	14.8	15.7	16.1	-
2012	14.7	12.0	14.3	17.5	16.2	16.5	10.7	14.2	-	14.8	14.4	14.6	-	-
2013	14.6	12.9	14.4	16.1	16.8	15.3	11.0	14.5	-	-	-	-	-	-
2014	14.7	12.9	14.3	15.9	16.8	15.1	13.6	14.4	-	14.1	15.1	-	-	-
2015	13.4	10.3	13.2	15.4	16.0	14.8	10.5	13.3	-	-	-	-	-	-
2016	13.1	10.8	12.7	15.1	15.1	13.0	11.8	12.9	14.4	13.6	12.8	13.1	13.2	-
2017	13.3	11.8	12.5	14.4	16.6	13.4	10.1	13.2	-	13.4	14.1	13.3	-	-
2018	13.0	11.4	12.8	13.8	14.6	14.8	10.3	12.9	-	-	-	-	-	-
2019	12.4	10.0	11.9	13.3	15.4	14.3	10.6	12.2	13.6	12.2	-	12.4	-	-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3) 자료의 수가 20 미만인 경우에는 '–'로 표시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06-2
연 관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Nonsmoker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workplace

지표 정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과거흡연자 포함)' 중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은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7일동안 직장의 실내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현재 비흡연자 수}} \times 100$$

* 2013년부터 '최근 7일 동안'이라는 기준이 포함됨.

표 8-16 일반 특성별 현재 비흡연자의 직장실내 간접흡연 노출률 (2010~2019)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49.2	58.3	57.3	49.7	46.8	36.3	15.5	48.8	52.6	49.7	46.9	50.5	45.3	55.2
2011	45.2	56.5	50.9	45.8	39.6	29.5	22.4	45.1	51.0	43.0	43.1	46.2	47.3	46.6
2012	46.1	59.1	52.4	45.8	40.3	32.8	15.0	46.4	44.1	43.8	40.0	52.2	45.1	48.7
2013	47.4	47.6	47.9	51.7	51.8	42.0	30.1	47.5	45.8	45.0	53.7	41.3	49.4	46.8
2014	40.1	43.0	42.1	42.5	44.5	29.7	22.5	41.3	37.0	46.3	32.5	41.9	40.5	40.8
2015	26.9	26.4	27.1	29.1	31.8	24.9	13.5	25.1	36.7	32.5	25.7	27.1	24.9	25.0
2016	17.4	20.3	15.9	18.8	21.0	13.1	8.3	16.6	23.2	21.3	17.1	14.1	18.5	16.7
2017	12.7	10.9	13.6	12.3	17.3	15.0	4.4	12.7	14.6	11.7	16.6	14.5	12.2	9.1
2018	11.5	10.9	12.2	12.1	14.9	9.9	4.2	11.2	15.4	17.6	12.5	12.2	10.1	5.9
2019	14.1	16.3	14.9	12.0	18.0	11.9	6.1	14.6	11.5	16.6	20.3	12.1	10.3	13.6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06-3
연 관

청소년 현재 흡연율

Current Smoking Rate of Adolesc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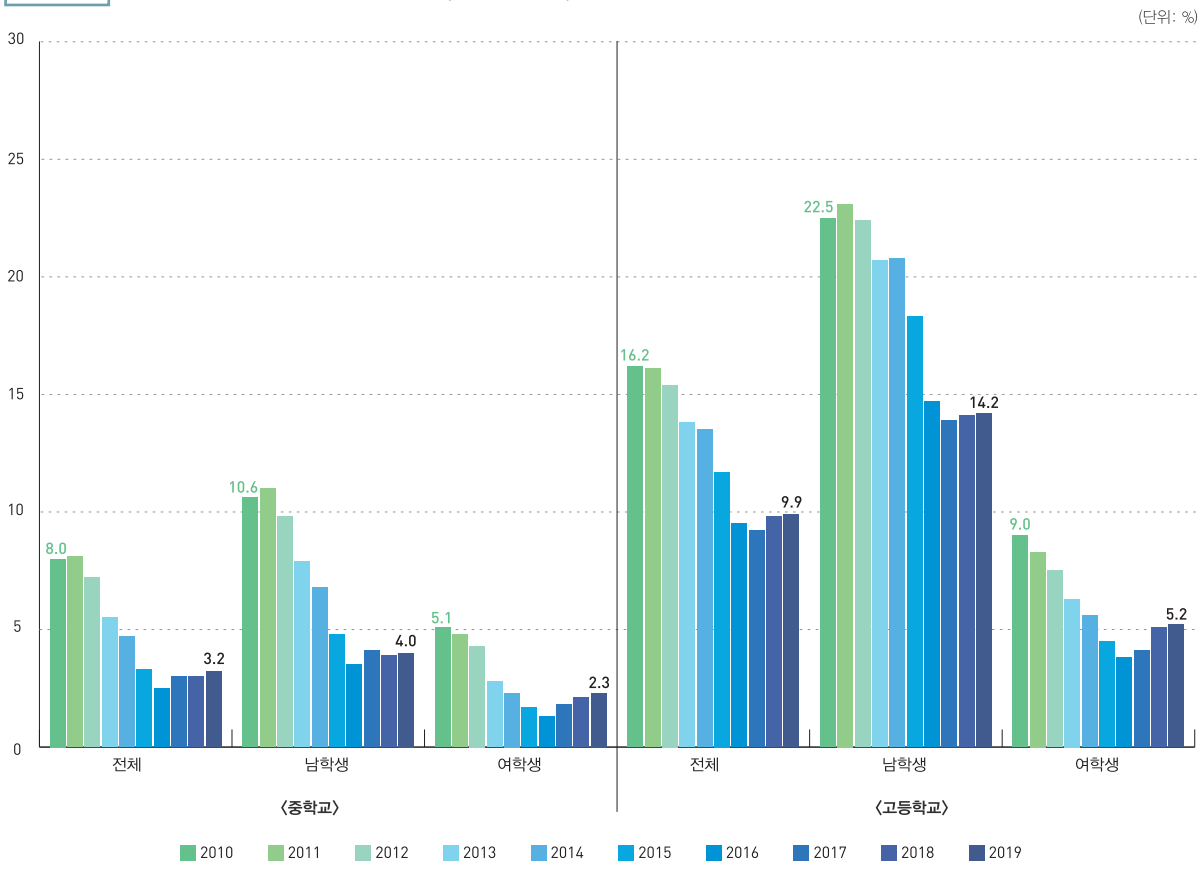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그림 8-19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현재 흡연율 (2010~2019)



자료: 질병관리청,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19

07 대 표

고위험 음주율

High Risk Alcohol Consumptio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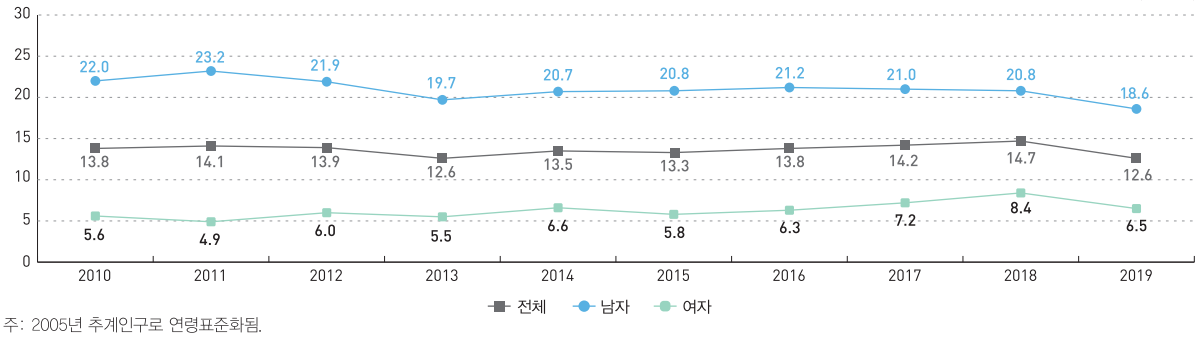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간 음주빈도 문항 주2회 이상 응답자이면서 1회 음주량 문항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 응답자}}{\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0 성별 고위험 음주율 (2010~2019)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표 8-17 특성별 고위험 음주율 (2010~2019)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13.8	12.9	18.0	16.8	13.8	6.7	3.6	13.5	14.7	15.4	13.2	14.5	13.8	12.0
2011	14.1	14.2	18.8	16.2	14.1	6.5	2.0	13.6	16.5	15.8	14.9	12.0	13.1	14.6
2012	13.9	14.4	17.2	17.2	13.3	6.5	2.8	13.9	14.2	13.4	12.4	16.5	12.5	15.5
2013	12.6	14.1	15.6	15.1	12.1	4.6	1.7	12.4	13.0	11.3	11.7	13.6	13.9	12.5
2014	13.5	11.9	17.6	16.4	14.5	7.4	3.3	13.2	16.1	14.5	14.1	12.8	12.4	13.2
2015	13.3	12.7	15.8	16.2	13.8	9.1	2.5	13.1	13.9	14.4	13.7	12.0	14.1	12.4
2016	13.8	13.8	16.4	15.8	15.4	9.0	2.7	13.3	17.1	13.7	14.6	10.7	15.6	14.4
2017	14.2	14.2	16.9	16.9	14.5	9.1	3.2	14.3	13.0	14.3	15.5	14.9	13.1	13.2
2018	14.7	15.9	15.2	18.1	14.6	11.2	3.0	14.3	16.3	14.2	15.9	14.4	16.4	12.3
2019	12.6	11.2	13.8	15.3	13.9	10.4	4.7	12.1	15.4	14.2	14.9	12.2	10.8	11.1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우리나라 성인남녀의 고위험 음주율은 12.6%로 2018년 14.7%보다 2.1%p 감소하였다(남자 20.8% → 18.6%, 여자 8.4% → 6.5%). 과음하는 습관은 소화기계, 심혈관기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치매, 뇌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여 정신건강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음주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앞으로도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07-1
연 관

연간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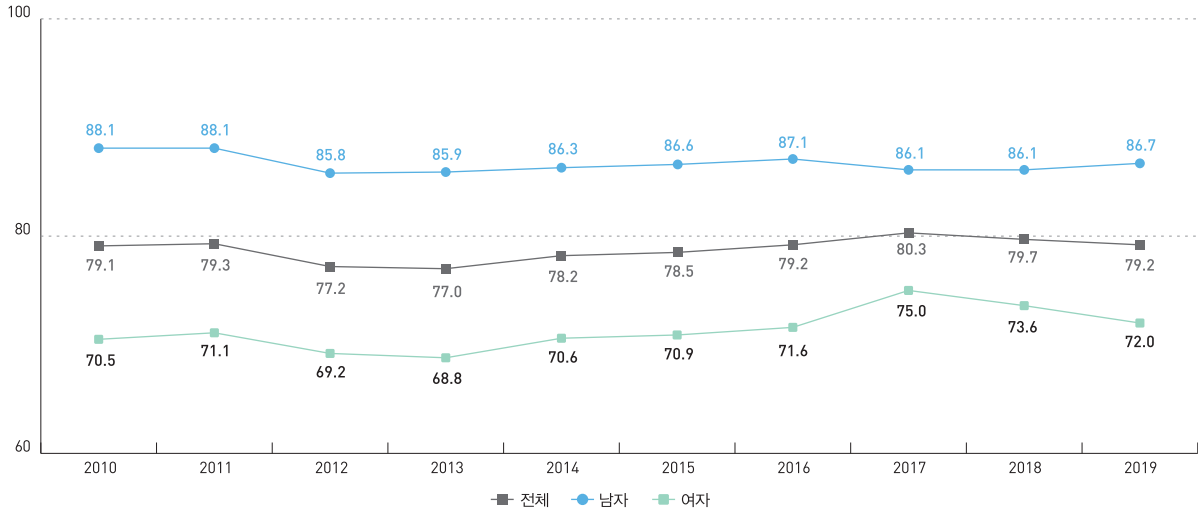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1 성별 연간 음주율 (2010~2019)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07-2
연 관

청소년 현재 음주율

Current Alcohol Consumption rate of Adolescent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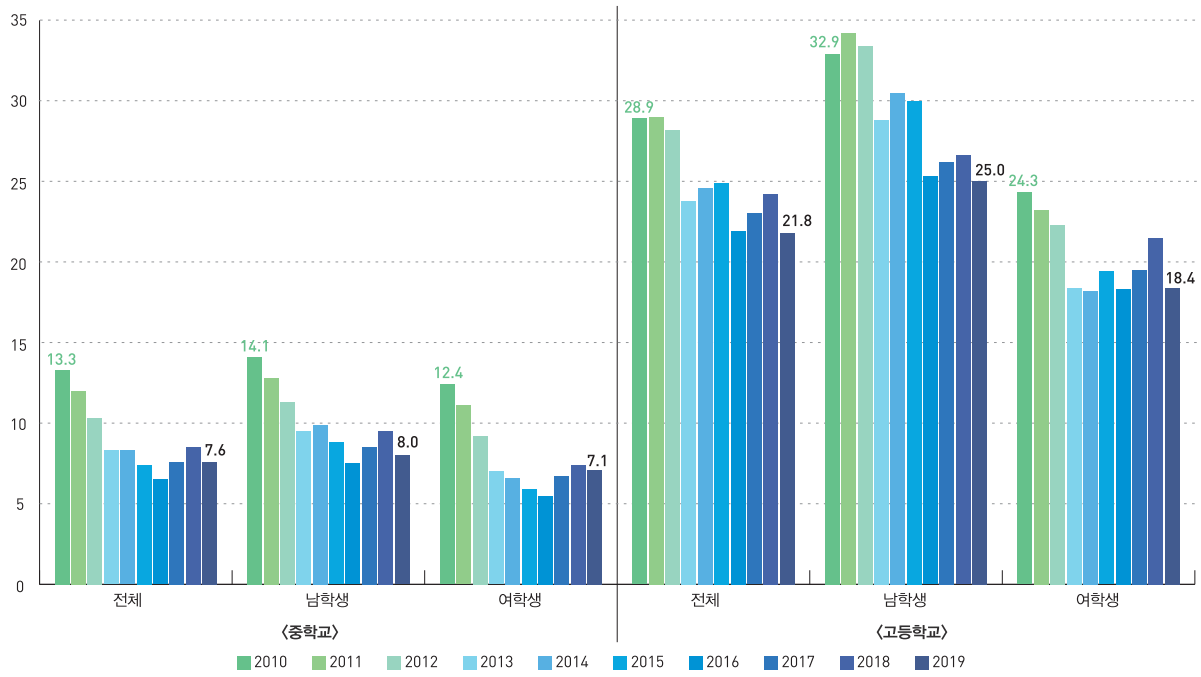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청소년(중1~고3)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그림 8-22 성별 · 학교급별 청소년 현재 음주율 (2010~2019)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19

07-3
연 관

1인당 알코올소비량

Alcohol Consumption Per Capita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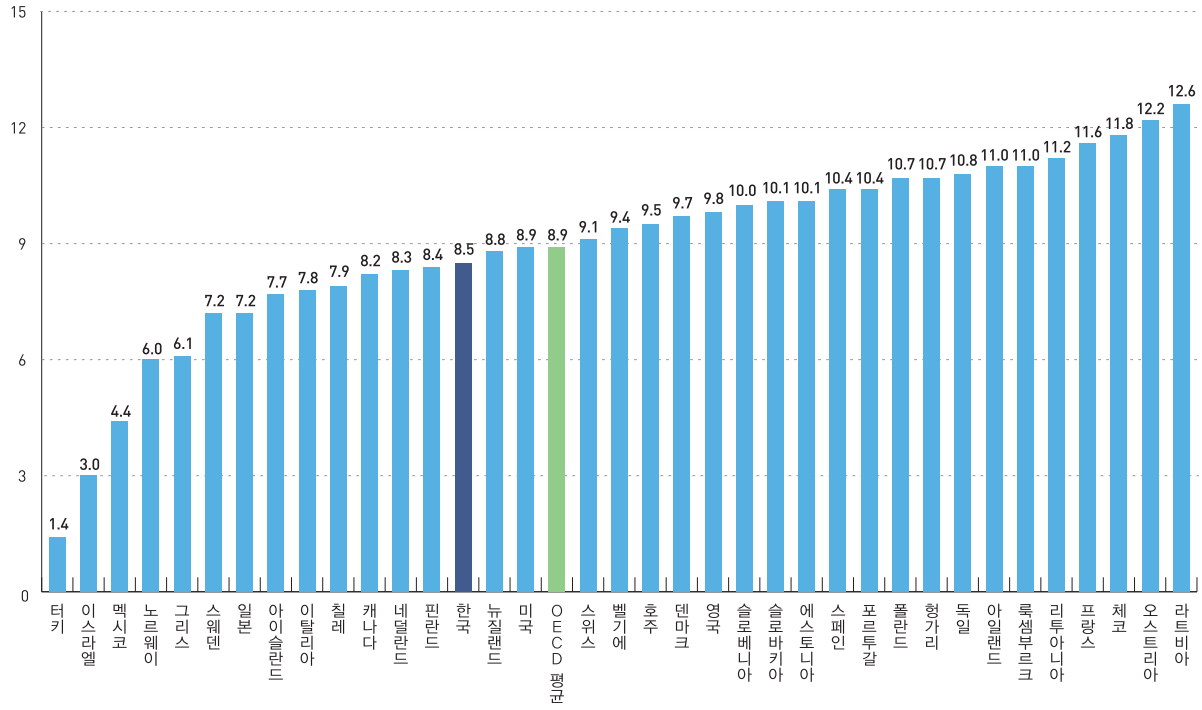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순수 알코올소비량을 1인당으로 환산한 값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주류 총 소비량}}{\text{15세 이상 인구수}}$$

그림 8-23 OECD 국가의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소비량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ℓ)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2.17.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18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08 대 표

비만율

Obesity Rat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은 대한비만학회가 제시한 것에 따른다.

- WHO는 비만을 '건강을 해칠 정도로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하게 지방조직에 지방이 축적된 상태'라고 정의하고,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본다. 한편, 대한비만학회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본다. BMI는 비교적 측정이 쉬워 건강조사나 임상검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비만 지표로, 미래의 질병 부담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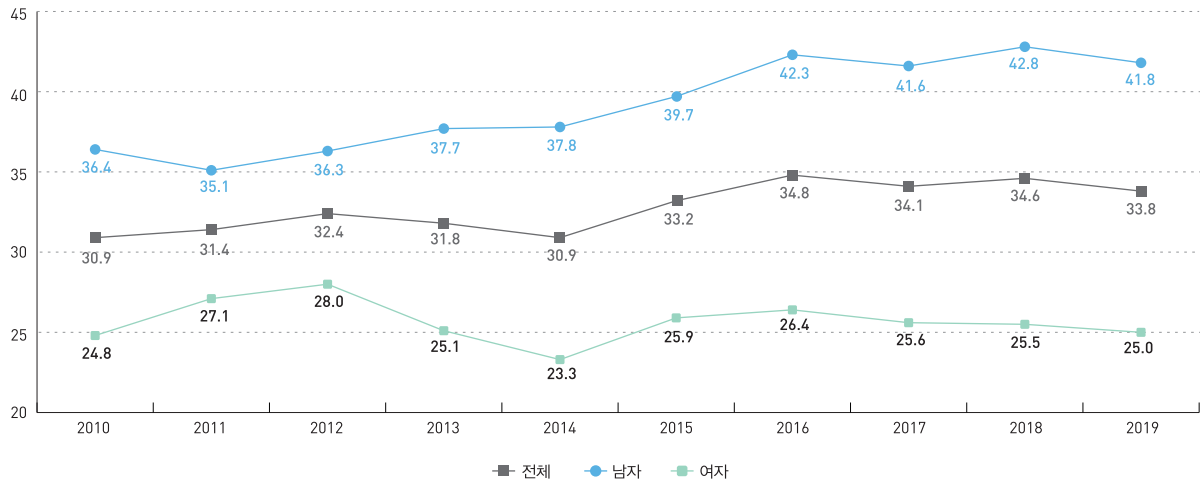
측정 산식

- $\dfrac{\text{체질량지수(BMI)}^{*}\ 25\ \text{이상인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 \text{체질량지수(BMI)} = \dfrac{\text{체중(kg)}}{[\text{신장(m)}]^2}$

그림 8-24 성별 비만율 (2010~2019)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비만율은 33.8%로 2018년의 34.6%에 비해 0.8%p 감소하였다. 201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던 비만율이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비만 현상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비만은 만성 질환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바, 지속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표 8-18 일반 특성별 비만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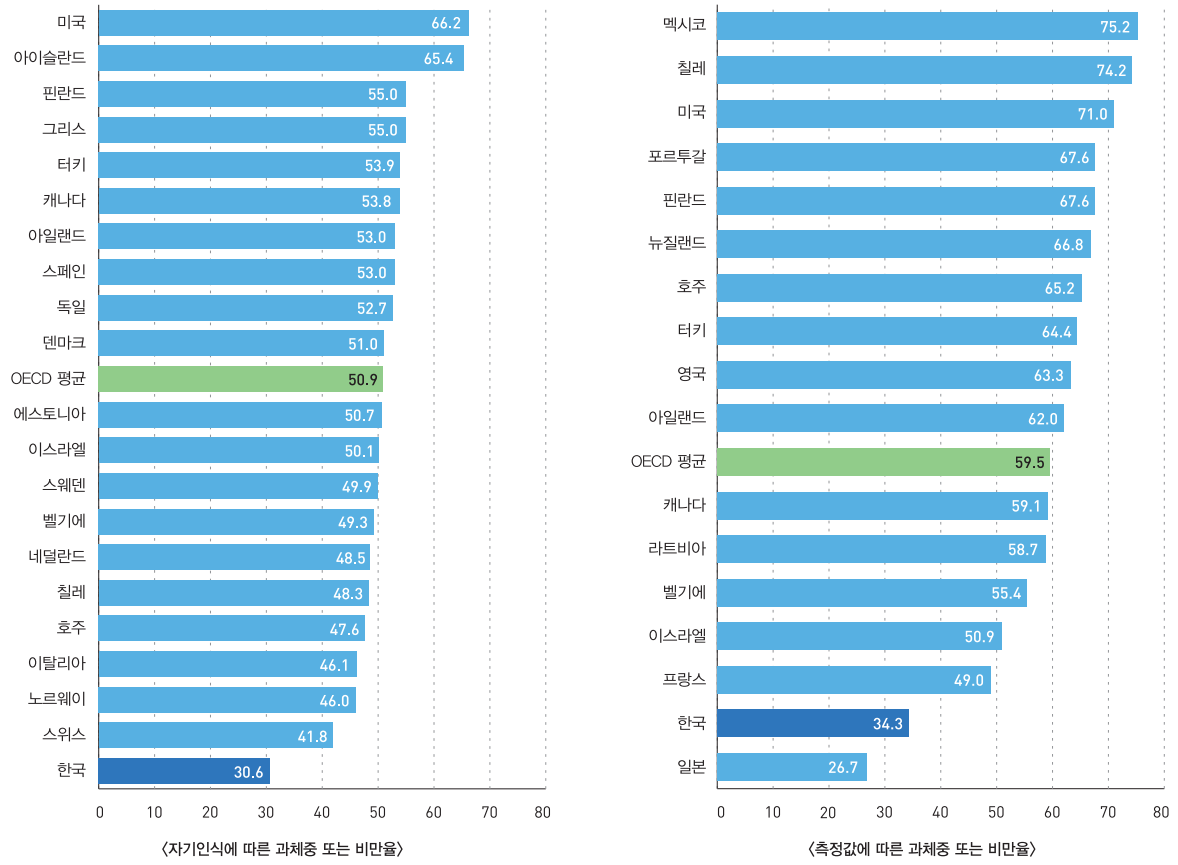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30.9	20.5	31.0	34.1	35.3	40.7	30.6	30.7	31.8	29.6	32.3	29.1	30.9	32.5
2011	31.4	21.7	31.5	35.4	35.7	38.8	29.7	31.1	34.3	32.2	31.9	33.8	31.0	27.4
2012	32.4	22.4	32.5	39.2	34.1	38.5	31.1	31.5	37.6	33.7	37.2	31.3	29.9	30.4
2013	31.8	22.4	33.2	33.7	37.3	36.3	33.8	31.3	33.5	32.1	34.2	30.4	30.7	31.3
2014	30.9	23.9	31.8	31.1	35.4	36.8	32.1	30.5	33.3	33.2	33.0	33.1	30.4	24.8
2015	33.2	23.5	32.9	35.6	38.3	40.1	37.4	32.4	37.4	38.4	34.1	32.2	32.0	30.1
2016	34.8	27.2	34.2	39.0	36.1	40.2	37.5	33.5	42.9	38.4	33.4	35.4	33.6	33.3
2017	34.1	29.4	33.4	35.3	38.0	38.0	34.7	33.6	38.8	38.5	35.8	32.3	33.8	30.6
2018	34.6	26.9	37.8	36.8	35.2	36.8	38.0	34.2	37.2	35.1	38.4	35.4	35.5	28.1
2019	33.8	27.6	34.9	35.6	36.5	37.3	34.3	33.0	39.2	35.6	33.6	34.1	33.1	31.8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그림 8-25 OECD 국가의 과체중 또는 비만율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OECD는 전체 인구집단 중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2.28. 인출)

08-1
연 관

청소년 비만율

Adolescent Obesity Rat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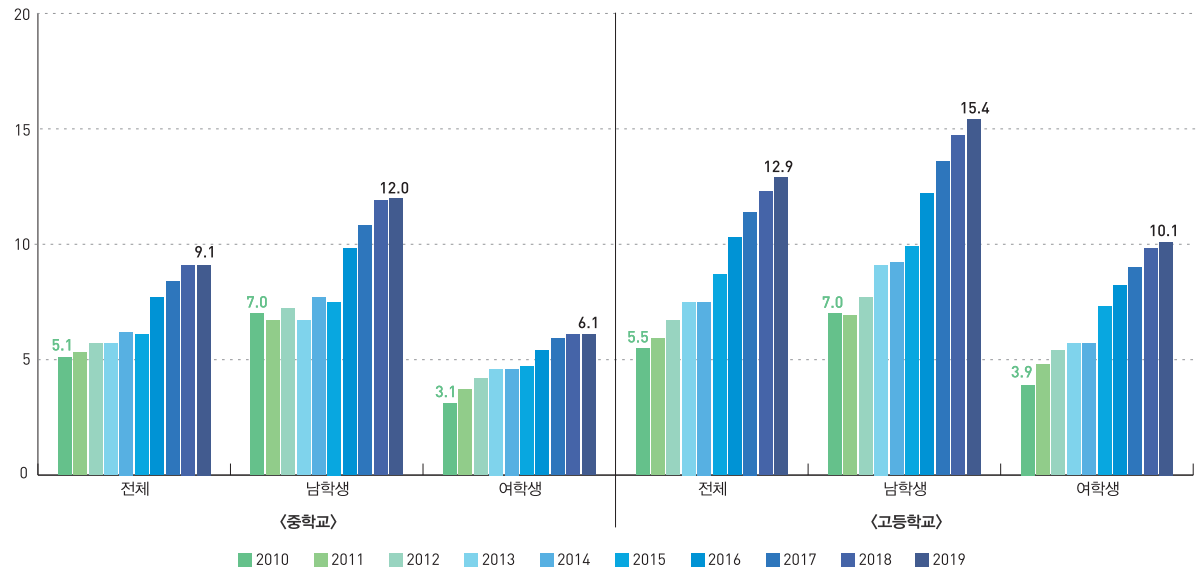
$$\frac{\text{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text{ 기준 95백분위 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의 수}}{\text{조사 대상자 전수}} \times 100$$

* 체질량지수(BMI) = $\frac{\text{체중(㎏)}}{[\text{신장(m)}]^2}$

* 신장과 체중은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됨.

그림 8-26 성별·학교급별 청소년 비만율 (2010~2019)

(단위: %)



주: 기존(2006~2017년)에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나, 2017년 소아성장도표 제정에 따라 연도비교를 위해 2006~2017년 결과 재산출함.
자료: 질병관리청,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5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2019

08-2
연 관

걷기실천율

Practice rate of physical activity (Walking)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19 일반 특성별 걷기실천율 (2010~2019)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41.1	50.9	38.3	34.5	40.1	44.5	37.8	41.1	41.4	43.3	42.5	39.5	40.1	40.1
2011	38.0	49.8	34.9	31.9	36.7	36.6	34.3	39.4	29.7	36.5	39.6	36.1	39.7	37.4
2012	39.4	50.6	39.0	34.5	34.7	37.7	32.1	40.7	33.0	41.4	36.2	38.9	38.4	41.9
2013	38.0	49.0	35.7	36.0	31.5	34.7	35.1	39.0	33.9	37.8	36.9	37.3	40.2	37.9
2014	41.7	51.9	37.1	38.8	39.3	41.2	38.7	43.6	30.9	41.7	39.0	40.0	44.5	43.7
2015	41.2	50.8	39.0	38.4	37.7	42.7	32.6	42.9	33.4	43.7	37.0	40.2	40.9	44.1
2016	39.6	48.1	37.4	36.3	36.6	41.8	33.6	41.4	29.0	35.1	37.6	36.5	45.1	44.2
2017	39.0	47.9	34.7	37.2	39.4	38.4	31.4	40.7	28.3	36.1	39.9	38.0	39.2	41.4
2018	40.2	49.9	38.3	38.2	34.1	41.6	32.1	42.0	27.3	39.8	38.4	40.5	40.9	41.3
2019	43.5	57.0	40.6	37.3	40.7	41.5	38.9	45.0	34.8	41.5	42.4	44.8	43.4	45.3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09 대 표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Rates of undernutrition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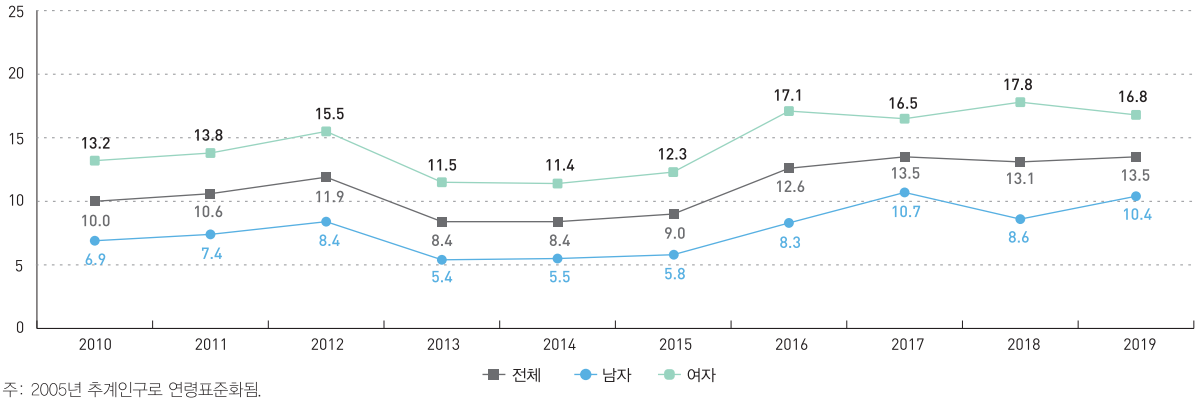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 중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의 분율이다. 조사는 만 1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 필요량 미만인 대상자 수}}{\text{만 1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27 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10~2019)

(단위: %)



주: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표 8-20 일반 특성별 영양섭취부족자 분율 (2010~2019)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10.0	4.9	7.0	7.5	15.6	14.8	8.1	5.7	14.7	10.2	9.1	14.1	11.7	8.2	7.6	7.6
2011	10.6	11.4	6.0	4.3	14.9	15.4	9.3	5.9	17.0	11.1	8.0	12.6	11.3	10.2	8.4	9.4
2012	11.9	9.3	7.6	7.3	17.0	17.1	10.3	8.0	15.6	11.2	15.3	17.7	10.7	13.0	9.0	8.1
2013	8.4	5.9	5.9	4.1	15.9	13.3	7.5	3.1	8.5	8.6	6.8	12.0	7.5	8.1	7.6	6.8
2014	8.4	12.7	4.8	3.5	15.4	12.4	7.9	3.3	8.3	8.3	9.3	11.9	9.0	6.0	8.7	6.3
2015	9.0	7.4	5.7	4.8	16.7	13.1	8.5	3.9	8.3	8.9	9.5	14.7	10.0	6.4	7.8	5.6
2016	12.6	4.8	7.3	4.8	19.4	15.4	12.9	9.1	14.1	12.0	16.0	16.0	12.2	13.0	10.0	11.0
2017	13.5	7.8	3.2	6.6	19.2	19.9	13.1	9.9	14.7	13.3	15.4	18.7	13.3	12.3	13.3	9.6
2018	13.1	5.3	3.8	8.4	17.6	16.2	14.4	8.8	14.4	13.1	13.5	16.7	12.5	14.0	11.3	10.7
2019	13.5	2.5	4.3	4.9	19.0	19.9	13.9	8.9	16.3	13.4	14.6	18.9	13.4	14.0	12.0	9.0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sqrt{\text{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Checkpoint 영양섭취부족자 분율은 과거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이, 거주 지역에 따른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지속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상황의 개선과 함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형평성의 개선도 요구된다.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09-1
연 관

건강식생활 실천율 추이

Practice rate of healthy dietary lifesyle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 현황을 반영하는 4개 지표 중에서 2개 이상을 만족하는 사람의 분율이다. 조사는 만 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지방은 지방섭취가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에서 정의하는 지방에너지 적정비율 내 해당하고, 나트륨은 1일 섭취량이 2,000㎎ 미만인 경우, 과일 및 채소는 과일류와 채소류 섭취량 합계가 500g 이상인 경우이다. 그리고 영양표시는 가공식품 선택 시 영양표시를 읽는지 여부에 '예'로 응답한 경우이다.

- 지방에너지 적정비율은 2016년부터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에 따르고, 2015년까지는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및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에 따랐음.

측정 산식

- $\frac{\text{지방, 나트륨, 과일 및 채소, 영양표시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하는 대상자 수}}{\text{만 6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1 특성별 건강식생활 실천율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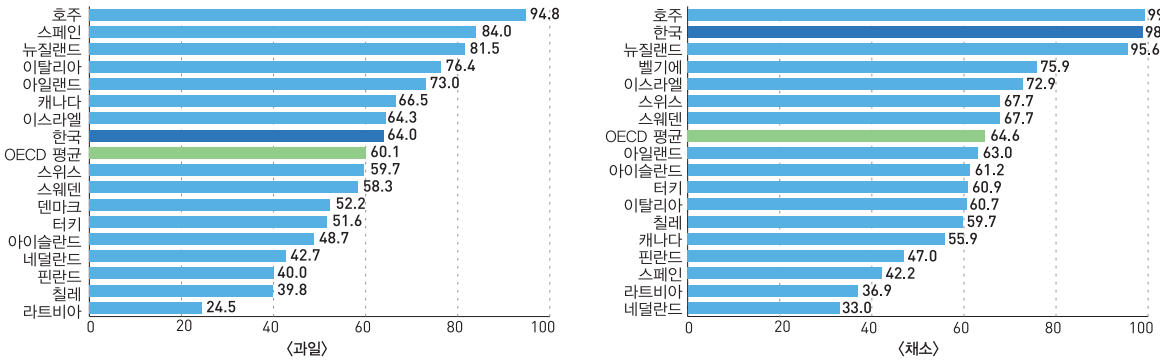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1]	연령별						거주지역별[1]		소득수준별[1][2]				
		6~11세	12~18세	19~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33.9	31.4	37.7	37.1	40.7	25.6	12.5	35.0	29.6	32.2	33.7	32.6	34.2	37.6
2011	33.2	33.9	38.7	36.7	36.6	28.0	14.1	34.2	27.8	30.0	30.0	31.2	35.2	40.9
2012	33.7	32.1	35.6	35.7	38.7	30.2	15.7	34.2	32.4	27.6	32.0	32.2	37.5	40.8
2013	36.9	40.6	41.5	36.8	39.7	34.2	21.3	37.9	32.3	32.6	36.2	34.3	37.8	43.5
2014	37.5	37.4	41.7	31.7	42.0	38.5	24.0	38.3	32.5	33.2	35.9	36.9	39.0	42.3
2015	38.5	44.8	38.4	34.5	42.4	38.8	25.8	39.4	34.4	36.3	37.6	37.0	41.5	40.3
2016	44.8	45.8	40.3	43.4	47.9	49.2	31.2	45.4	41.6	43.2	42.4	43.6	47.1	47.6
2017	45.8	46.5	41.8	45.5	49.4	47.9	32.0	47.0	38.5	42.4	46.4	44.1	46.4	49.0
2018	42.0	38.5	40.0	42.5	45.2	44.2	30.1	42.7	38.4	39.4	42.2	42.5	41.8	44.6
2019	44.5	37.4	39.0	44.4	48.9	47.5	36.0	45.0	42.6	43.0	41.7	43.6	46.2	48.2

주: 1)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2)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그림 8-28 OECD 국가의 과일 또는 채소 매일 섭취자 비율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주: OECD는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과일 또는 채소를 매일 섭취하는 인구의 비율을 비교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10 대 표

평균 재원일수

Average of inpatient day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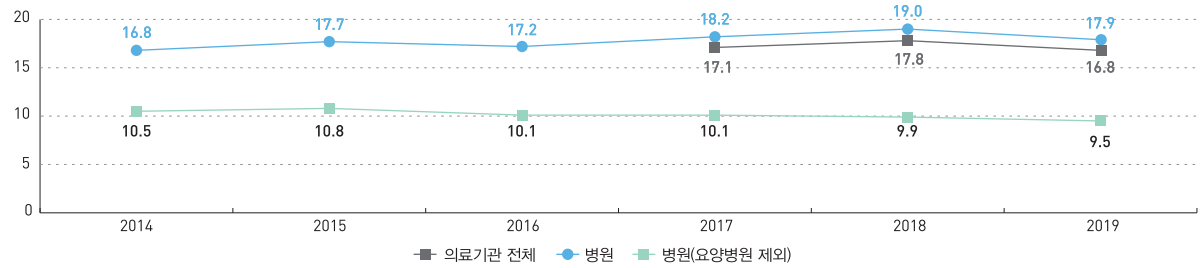
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를 입원환자 수로 나눈 값이다. 분석은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입원환자의 총 재원일수}}{\text{입원환자 수}}$

그림 8-29 평균 재원일수 (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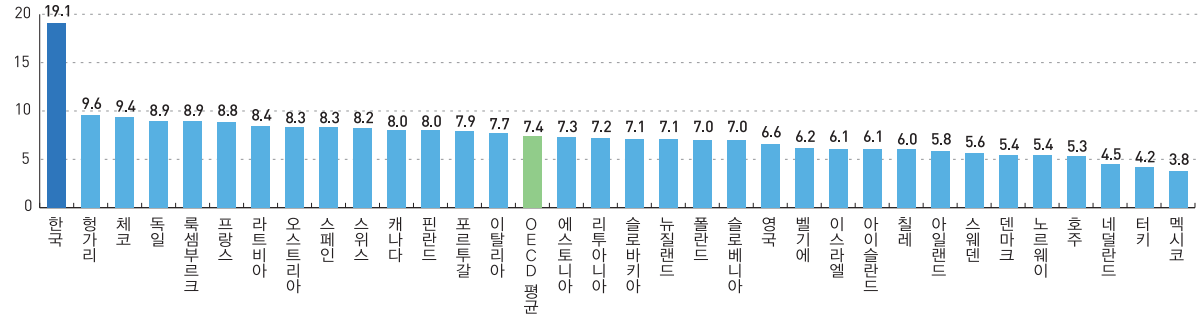
(단위: 일)



주: 1) 의료기관 전체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을 포함함.
2)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자료를 분석하되, 산재보험은 포함하지 않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각 연도

그림 8-30 OECD 국가의 평균 재원일수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일)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2.28.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이용현황*	2014	2019	1년

* 의료서비스이용현황 통계는 환자조사를 개선한 새로운 승인통계로 OECD 제공 자료임. 관련된 정보 중 2014년 이전의 수치는 환자조사 결과임.

Checkpoint 병상의 기능과 역할 정립이 시급하다. 급성기 병상에 일반 환자가 오래 입원하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퇴원을 하거나, 재활이나 장기입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는 병상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각 연도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11
대 표

1인당 의사 진찰 건수

Number of consultations with doctor per capita

지표 정의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은 의사의 진료 건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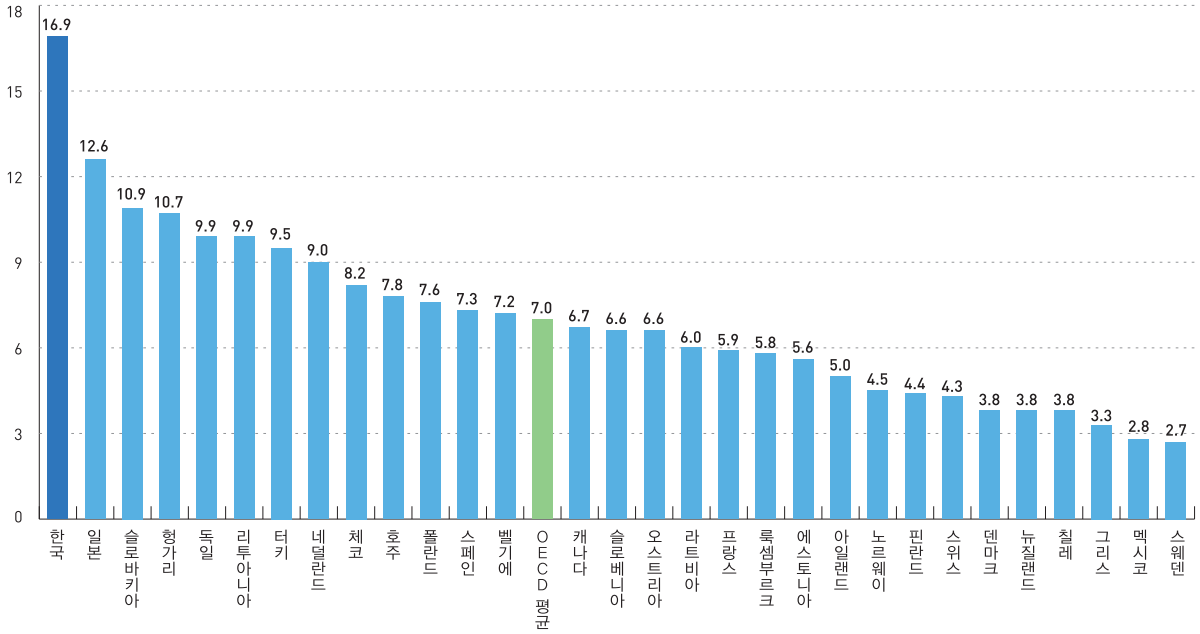
• 진료는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보건의료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료가 포함하는 내용과 진료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를 수 있다. 진료는 의사의 진료실, 클리닉, 병원의 외래부서, 또는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진다.

측정 산식

• $\frac{\text{모든 의료기관의 연간 의사진료 건수 합계}}{\text{장래추계 인구수}}$

그림 8-31 OECD 국가의 1인당 의사 진찰 건수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건)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18	1년

Checkpoint

2018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 진찰 건수는 16.9건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다. 의료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바, 국가는 국민의 요구(Needs)를 잘 확인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적합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해야 한다.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11-1
연 관

1인당 외래방문 횟수

Averag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지표 정의

외래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를 외래방문 횟수(또는 내원 일수)라고 하며,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1년 동안의 총 외래방문 횟수를 조사대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 1인당 외래방문 횟수 = $\frac{\text{외래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는 횟수}}{\text{(조사 대상) 인구수}}$
- 입원 건당 입원 일수 = $\frac{\text{입원의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병원에 머무는 날}}{\text{입원 건수}}$

표 8-22 시도별 1인당 의료이용 현황 (2019)

(단위: 회, 일)

시도	인구 1인당 외래 진료 횟수			평균 재원일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국	18.6	16.1	21.1	16.8	15.6	17.8
서울	21.0	18.4	23.5	10.4	10.3	10.5
부산	20.9	17.8	23.9	20.7	18.0	22.9
대구	20.8	18.0	23.5	17.6	16.7	18.4
인천	17.5	14.9	20.1	15.2	14.9	15.5
광주	19.2	17.1	21.3	15.8	13.9	17.3
대전	21.1	18.6	23.6	16.7	14.5	18.8
울산	17.4	15.3	19.7	17.4	14.8	19.7
세종	14.7	13.1	16.4	20.7	16.2	24.0
경기	16.3	14.1	18.5	16.5	16.1	16.9
강원	17.0	14.8	19.2	14.9	14.9	14.9
충북	18.4	15.8	21.0	17.8	17.0	18.4
충남	17.8	15.5	20.3	20.3	18.2	22.2
전북	21.3	18.5	24.1	20.9	17.7	23.7
전남	20.1	17.1	23.1	19.0	17.0	20.6
경북	17.3	14.9	19.8	27.6	25.4	29.6
경남	17.5	15.0	20.0	20.4	18.8	21.8
제주	20.3	17.1	23.5	14.7	14.4	14.9

주: 1) 평균 재원일수는 의료기관 전체(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를 대상으로 한 값으로, 병원 결과만 발표한 OECD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
2) 산재보험은 미포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이용현황*	2014	2019	1년

* 의료서비스이용현황 통계는 환자조사를 개선한 새로운 승인통계로 OECD 제공 자료임. 관련된 정보 중 2014년 이전의 수치는 환자조사 결과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보건복지부, 2019년 기준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2020

11-2
연 관

산전수진율

Rate of Prenatal car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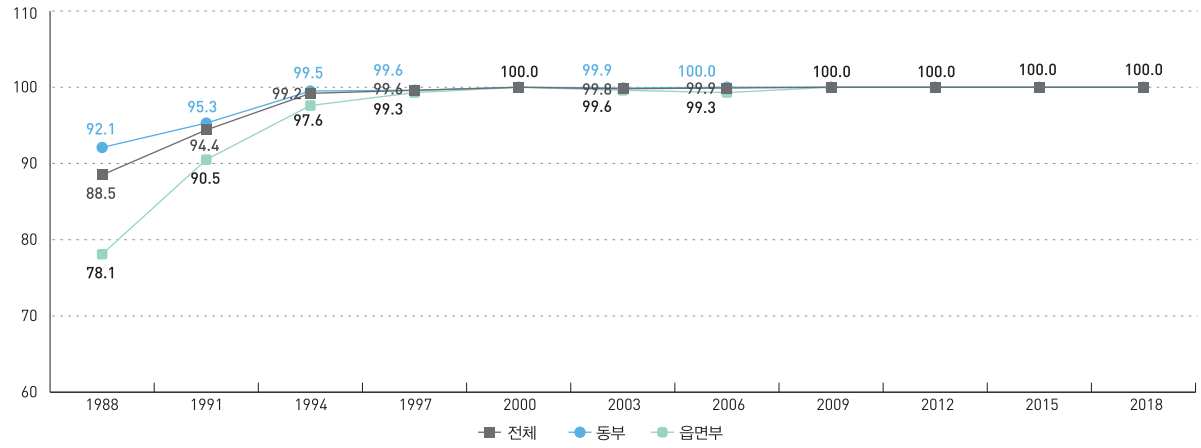
산전수진율이란 임신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5~49세 기혼여성 임산부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임산부의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의료의 접근도를 나타내는 동시에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 $\dfrac{\text{임신 중 의료기관을 방문한 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 조사 대상자 수}}{\text{출산 경험이 있는 15~49세 기혼여성 조사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32 연도별 · 지역별 산전수진율 (1988~2018)

(단위: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각 연도

표 8-23 연도별 · 지역별 및 모의 연령구간별 산전진찰 초진 시기 및 방문 횟수

(단위: 주, 번)

구분	2006		2009		2012		2015		2018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초진시기	방문 횟수
전체	5.3	13.5	5.5	13.5	5.4	13.4	5.3	13.3	5.4	13.5
지역										
동부	5.3	13.3	5.5	13.6	5.3	13.4	5.3	13.3	5.4	13.5
읍 · 면부	5.5	12.8	5.7	12.9	5.7	13.4	5.4	13.2	5.5	13.4
모 연령										
15~24세	5.9	12.6	6.8	13.3	7.4	13.5	6.0	13.1	5.4	13.3
25~29세	5.1	13.5	5.5	13.6	5.0	13.4	5.2	13.7	5.3	13.9
30~34세	5.3	13.3	5.4	13.2	5.0	13.2	5.2	13.2	5.4	13.5
35세 이상	5.5	12.9	5.4	14.3	6.2	13.7	5.4	13.3	5.6	13.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964	2018	3년

참고문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 · 복지 실태조사, 각 연도

12
대 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지표 정의

조사 대상자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조사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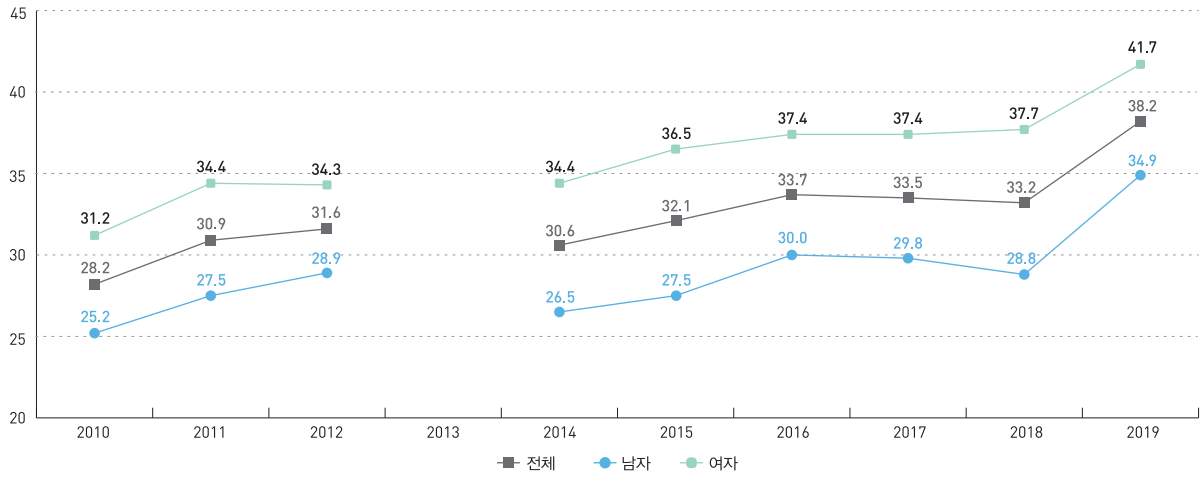
- 인플루엔자는 급성기 호흡기 감염병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며, 매년 예외 없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는 전 연령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이 면역력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을 겪게 된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과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많은 항바이러스제보다는 예방접종이 권장되는 편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8-33 성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0~2019)

(단위: %)



주: 1)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Checkpoint WHO는 예방접종이 사람들을 인플루엔자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감염병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예방 활동이 강화되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아졌다. 2010년 28.2%였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2015년 32.1%, 2019년 38.2%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표 8-24 일반 특성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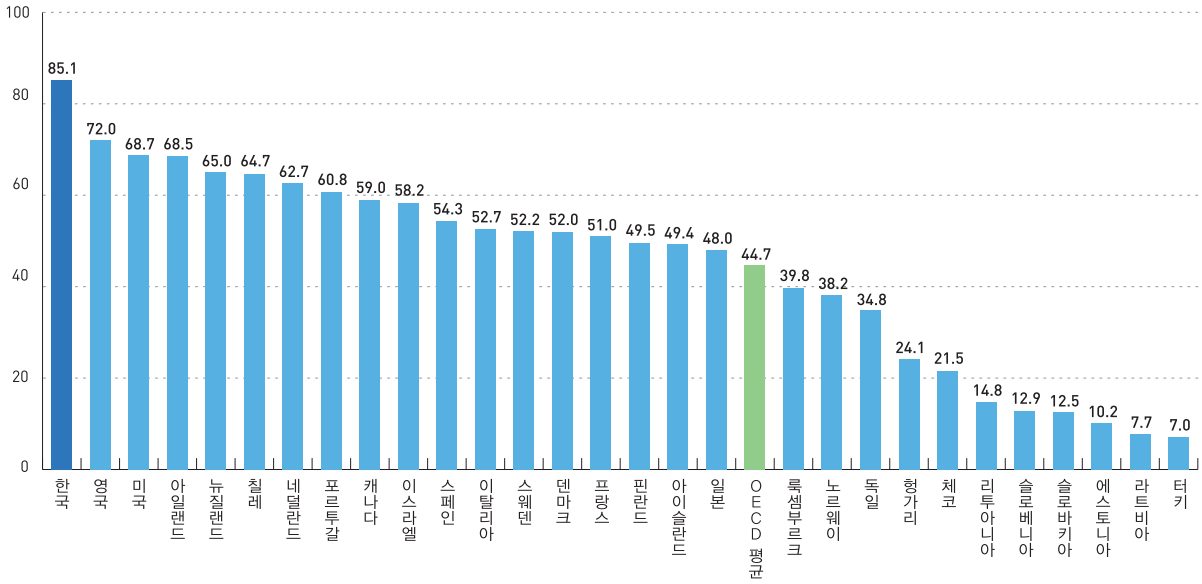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전체[2]	연령별						거주지역별[2]		소득수준별[2][3]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동	읍면	하	중하	중	중상	상
2010	28.2	16.6	25.4	16.9	23.5	55.5	80.6	28.1	27.5	26.0	29.0	28.4	27.7	30.3
2011	30.9	18.0	26.9	21.2	27.0	61.0	81.1	30.8	30.7	31.5	28.1	32.7	30.2	32.3
2012	31.6	18.0	29.5	21.7	28.6	58.7	80.9	31.3	33.1	33.0	28.0	32.9	31.4	33.0
2013[1]	-	-	-	-	-	-	-	-	-	-	-	-	-	-
2014	30.6	16.2	29.0	20.1	26.7	57.4	83.6	30.8	29.6	31.5	26.8	28.9	34.8	31.0
2015	32.1	16.4	33.8	20.7	27.7	58.4	83.4	32.2	32.1	29.8	34.4	28.1	32.7	35.7
2016	33.7	14.8	34.3	22.0	33.1	63.7	87.0	33.3	36.3	33.8	31.7	33.4	35.1	34.3
2017	33.5	15.9	33.9	24.1	30.2	59.4	88.0	32.7	39.1	30.9	32.6	34.0	34.3	35.7
2018	33.2	16.9	33.9	22.4	27.0	60.9	89.1	33.3	32.1	32.8	34.6	30.7	33.2	34.6
2019	38.2	23.0	37.5	31.1	30.4	64.9	88.9	38.3	38.0	38.5	35.6	38.9	36.9	41.4

주: 1)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됨.
3) 월 가구균등화소득(월 가구소득/√가구원 수)을 성별 · 연령별(5세 단위) 오분위로 분류함.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그림 8-34 OECD 국가의 65세 이상 인구의 예방접종률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12-1
연 관

DPT(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률: 1세 대상

DPT(Diphtheria, Tetanus, Pertussis)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children aged 1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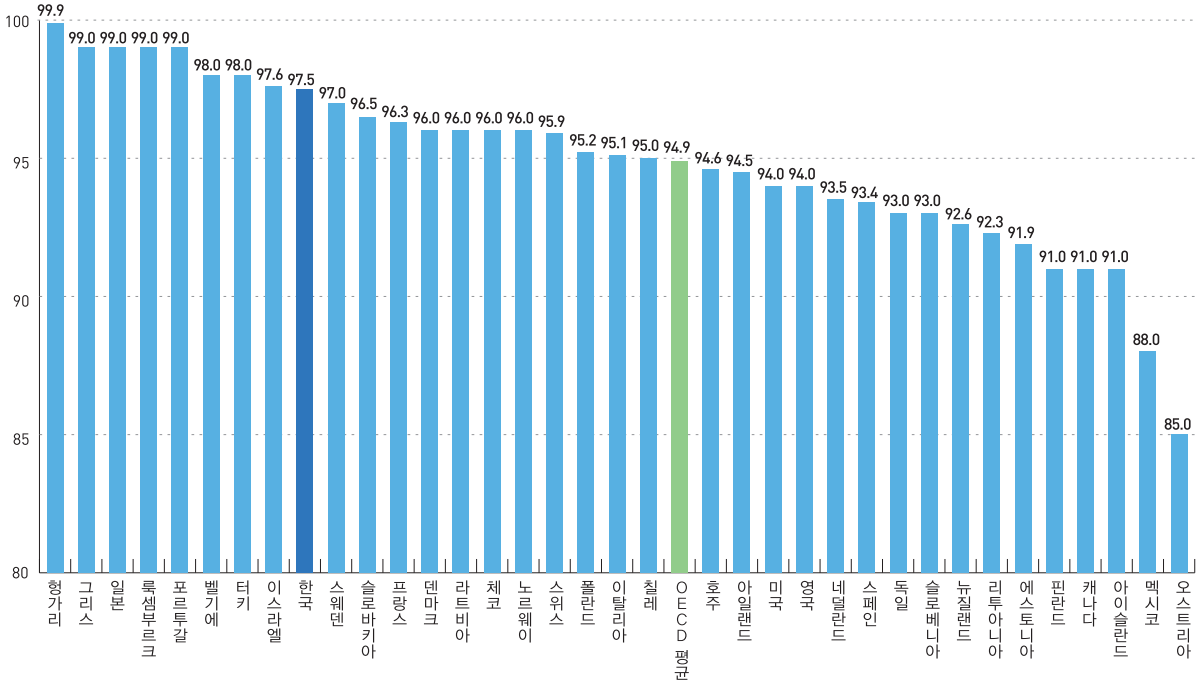
1세의 소아 중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1세 이하 중 DPT 접종을 받은 사람의 수}}{\text{1세 이하 인구수}} \times 100$

그림 8-35 OECD 국가의 DPT 예방접종률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자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OECD Health Statistics	1960	2018	1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12-2
연 관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1~18세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rates for pediatric(1-18 year old)

지표 정의

만 1~18세 중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text{만 1~18세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5 일반 특성별 소아 ·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2010~2019)

(단위: %)

구분	전체	연령별				성별	
		1~5세	6~11세	12~14세	15~18세	남자	여자
2010	45.2	73.9	57.4	31.7	16.3	44.4	46.2
2011	47.3	74.0	56.6	36.0	24.2	46.5	48.2
2012	49.7	78.6	59.7	38.3	23.5	51.9	47.0
2013	-	-	-	-	-	-	-
2014	47.8	79.2	55.2	31.4	20.1	47.0	48.6
2015	49.3	76.7	56.2	42.1	19.8	47.0	51.9
2016	45.7	73.3	55.6	33.6	17.1	43.5	48.2
2017	50.7	77.3	60.4	44.9	18.9	49.3	52.3
2018	56.3	84.2	66.3	41.5	24.7	55.0	57.8
2019	64.4	91.6	80.2	52.2	24.6	63.0	65.9

주: 2013년 결과는 제시되지 않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20 (https://knhanes.cdc.go.kr/knhanes/sub04/sub04_03.do?classType=7에서 2021.2.1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1998	2019	1년

참고문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 2019

13 대 표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지표 정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중에서 건강검진 대상자로 선정되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생활 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고,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반 건강검진으로 이는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거나, 만 70세와 만 74세 중에서 인지기능 장애 위험이 높다고 판정된 사람은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지역 가입자, 사무직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년에 한 번씩, 비사무직 직장 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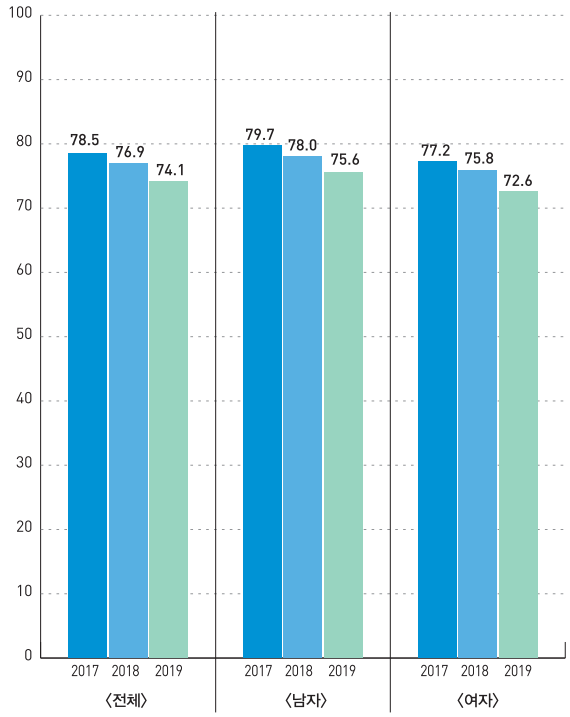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일반건강검진 수검 인원}}{\text{일반건강검진 대상자}} \times 100$

유의사항 여기에서는 건강보험대상자의 검진 실적만 검토한다.

그림 8-36 성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7~2019)

(단위: %)



주: 2018년부터 일반건강검진 중 2차 검진이 삭제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표 8-26 시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2019)

(단위: 명, %)

구분	전체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국	21,716,582	16,098,417	74.1
서울	3,981,327	2,864,618	72.0
부산	1,441,546	1,063,421	73.8
대구	1,030,247	745,253	72.3
인천	1,242,951	942,418	75.8
광주	585,945	446,000	76.1
대전	620,028	477,828	77.1
울산	513,370	400,985	78.1
세종	126,296	99,209	78.6
경기	5,491,594	4,084,480	74.4
강원	648,491	487,695	75.2
충북	711,034	549,318	77.3
충남	932,362	692,922	74.3
전북	751,184	562,697	74.9
전남	779,594	580,311	74.4
경북	1,155,887	844,188	73.0
경남	1,439,792	1,068,116	74.2
제주	264,934	188,958	71.3

주: 2차 대상 인원은 1차 검진의 고혈압, 당뇨병 질환 의심자 및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수검자에 해당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4.1%로 2018년 76.9%보다 2.8%p 감소하였다(남자는 2.4%p, 여자는 3.2%p 감소). 비록 2018년에 비교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수검률은 감소하였으나, 기본 검진 이외에 다양한 검사가 추가된 종합검진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연보, 각 연도

13-1
연 관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Rate of recipients of general health check-ups, by core items

지표 정의

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대상자 중 이 항목의 검진을 실시한 사람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특정 검진항목 수검자 수}}{\text{특정 검진항목 대상자 수}} \times 100$

표 8-27 시도별 주요 검진항목의 수검률 (2019)

(단위: 명, %)

구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			구강검진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대상 인원	수검 인원	수검률
전국	23,122,600	12,891,329	55.8	2,712,089	2,103,881	77.6	22,944,733	7,111,890	31.0
서울	4,309,632	2,330,666	54.1	516,784	396,994	76.8	4,218,795	1,315,886	31.2
부산	1,581,689	885,132	56.0	157,653	126,504	80.2	1,513,505	441,244	29.2
대구	1,077,392	561,518	52.1	118,006	88,278	74.8	1,083,870	246,055	22.7
인천	1,283,412	746,559	58.2	158,462	125,786	79.4	1,313,377	497,590	37.9
광주	615,789	367,195	59.6	75,777	56,721	74.9	620,456	176,948	28.5
대전	642,673	375,471	58.4	82,423	64,190	77.9	658,038	265,589	40.4
울산	507,407	286,501	56.5	70,799	57,119	80.7	546,028	259,477	47.5
세종	121,108	74,022	61.1	19,129	15,930	83.3	133,708	50,190	37.5
경기	5,616,388	3,163,701	56.3	724,226	560,324	77.4	5,817,572	1,811,206	31.1
강원	740,496	417,499	56.4	67,179	54,335	80.9	678,535	187,036	27.6
충북	744,110	421,435	56.6	83,783	65,888	78.6	748,520	303,225	40.5
충남	984,894	544,474	55.3	116,593	89,868	77.1	984,658	308,551	31.3
전북	858,623	499,662	58.2	83,738	61,246	73.1	789,450	278,938	35.3
전남	925,346	533,794	57.7	89,124	67,432	75.7	819,262	188,727	23.0
경북	1,288,787	685,924	53.2	132,701	102,827	77.5	1,216,034	298,589	24.6
경남	1,531,726	848,137	55.4	179,819	141,929	78.9	1,522,114	405,766	26.7
제주	293,128	149,639	51.0	35,893	28,510	79.4	280,811	76,873	27.4

주: 1) 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해당함.
2) 영유아건강검진은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을 대상으로 실시됨.
3) 구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 사례를 합산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2008	2019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건강검진통계연보, 2020

14 대 표

의료보장 적용 인구

Beneficiaries of Health Insurance and Medical Aid

지표 정의

정부나 사회보장기금(건강보험)으로부터 기본 의료서비스(예방, 증진, 치료, 재활, 완화치료)를 받는 인구를 의미한다. 크게 건강보험 적용 인구(직장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와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 2종)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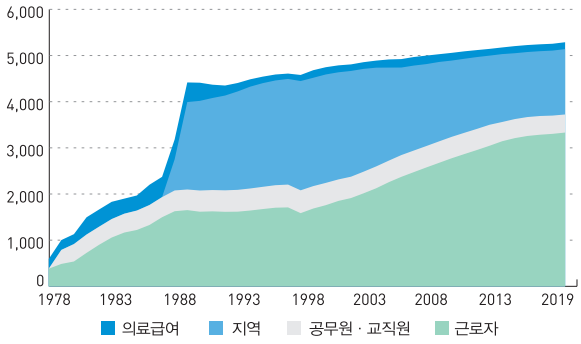
- 의료보장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과 의료비지출에 사회적으로 공동 대처하여 재정적 보장을 제공해주는 제도로써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은 의료급여제도에 의해서, 이외의 나머지 국민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보호된다. WHO는 2010년 World Health Report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안으로 '보장인구의 확대', '급여서비스 영역의 확대', '환자 직접부담 금액의 감소'를 제안하였다.

측정 산식

- **건강보험 적용 인구 + 의료급여 수급권자**

그림 8-37 의료보장 적용인구 (197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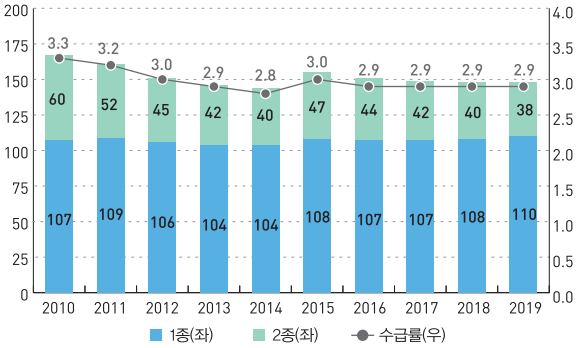
(단위: 만 명)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그림 8-38 의료급여 수급자 수 및 수급률 (2010~2019)

(단위: 만 명, %)



주: 수급률=총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자 수, 총인구는 안정행정부의 연말기준 자료임.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표 8-28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2010~2019)

(단위: 만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의료보장	5,058	5,091	5,117	5,145	5,176	5,203	5,227	5,243	5,256	5,288
건강보험	4,891	4,930	4,966	4,999	5,032	5,049	5,076	5,094	5,107	5,139
직장	3,238	3,326	3,411	3,501	3,560	3,622	3,667	3,690	3,699	3,723
근로자	2,775	2,865	2,953	3,045	3,143	3,210	3,257	3,284	3,303	3,331
공무원 · 교직원	464	461	458	455	417	413	410	406	396	392
지역	1,652	1,604	1,556	1,498	1,471	1,427	1,409	1,404	1,408	1,416
의료급여	167	161	151	146	144	154	151	149	148	149
1종	107	109	106	104	104	108	107	107	108	110
2종	60	52	45	42	40	47	44	42	40	38

주: 1) 의료보장인구는 연도 말 기준으로, 통계청의 추계연앙인구와는 다를 수 있음.
2) 수치는 사사오입으로 인하여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전체 의료보장 적용 인구(건강보험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8년에 비교해서 다소 증가하였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8년 5,107만 명에서 2019년 5,139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 명에서 149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14-1 연 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Number of Priority Caring Programs Recipients in Near Poor

지표 정의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기존 세대에서 별도 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를 산정

측정 산식

• 희귀난치성 또는 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수급 받은 자

구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 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 식대의 20%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2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30%
	심 · 뇌혈관 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수술 시 30일), 기본 식대의 20%

표 8-2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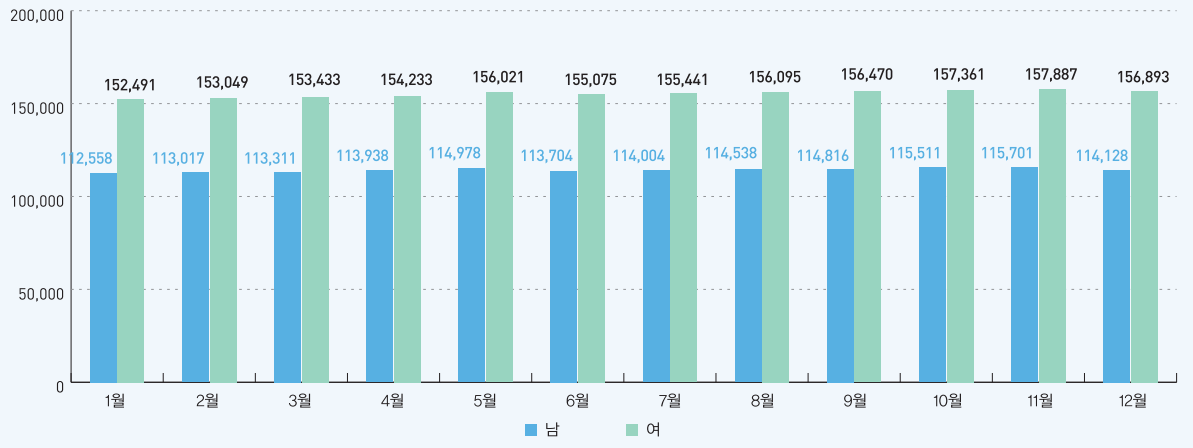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83,058	311,851	316,203	349,522	345,349	300,520	289,737	279,904	273,880	271,022

주: 각 연도 12월 기준

그림 8-39 월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Checkpoint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수는 5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인다.

참고문헌 • 사회보장정보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각 연도

표 8-30 월별 · 시도별 · 성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남	17,849	17,942	17,941	18,086	18,350	18,229	18,263	18,328	18,343	18,463	18,601	18,365
	여	22,984	23,111	23,231	23,401	23,821	23,691	23,718	23,801	23,824	23,957	24,118	23,917
부산	남	7,250	7,291	7,325	7,328	7,430	7,396	7,425	7,483	7,540	7,576	7,614	7,555
	여	10,479	10,528	10,594	10,627	10,801	10,835	10,886	10,967	11,024	11,077	11,124	11,111
대구	남	7,607	7,613	7,658	7,722	7,789	7,675	7,690	7,725	7,745	7,795	7,813	7,703
	여	10,012	10,039	10,095	10,196	10,279	10,217	10,242	10,263	10,283	10,383	10,437	10,338
인천	남	5,232	5,245	5,284	5,359	5,412	5,395	5,461	5,509	5,523	5,570	5,593	5,533
	여	6,656	6,680	6,720	6,798	6,880	6,893	6,936	7,009	7,047	7,102	7,160	7,152
광주	남	5,652	5,678	5,690	5,711	5,762	5,697	5,703	5,721	5,750	5,743	5,700	5,577
	여	6,957	6,991	6,973	7,039	7,115	7,047	7,070	7,105	7,152	7,155	7,137	7,073
대전	남	3,578	3,583	3,590	3,627	3,651	3,614	3,608	3,628	3,658	3,710	3,734	3,655
	여	4,617	4,628	4,624	4,677	4,725	4,704	4,697	4,707	4,714	4,769	4,812	4,797
울산	남	1,385	1,399	1,401	1,411	1,437	1,426	1,443	1,449	1,458	1,474	1,505	1,495
	여	1,723	1,730	1,750	1,775	1,796	1,778	1,794	1,813	1,827	1,845	1,859	1,866
세종	남	425	444	443	441	450	435	442	440	432	443	449	439
	여	575	582	574	567	563	555	560	566	567	576	584	583
경기	남	20,847	20,968	21,011	21,093	21,276	20,961	20,983	21,109	21,171	21,286	21,397	21,082
	여	25,911	26,025	26,117	26,246	26,549	26,299	26,253	26,393	26,511	26,681	26,833	26,610
강원	남	4,274	4,295	4,324	4,285	4,294	4,237	4,256	4,271	4,277	4,291	4,284	4,261
	여	6,036	6,068	6,097	6,090	6,187	6,153	6,196	6,233	6,222	6,231	6,229	6,247
충북	남	3,049	3,057	3,072	3,110	3,138	3,127	3,135	3,137	3,164	3,185	3,200	3,156
	여	4,398	4,395	4,405	4,447	4,462	4,449	4,485	4,498	4,530	4,579	4,611	4,547
충남	남	3,322	3,311	3,304	3,302	3,350	3,286	3,285	3,280	3,286	3,291	3,274	3,209
	여	4,934	4,916	4,893	4,893	4,934	4,916	4,907	4,927	4,926	4,955	4,949	4,893
전북	남	9,628	9,704	9,742	9,864	9,914	9,708	9,750	9,777	9,786	9,836	9,763	9,544
	여	14,024	14,116	14,129	14,172	14,282	14,108	14,124	14,134	14,127	14,207	14,202	14,050
전남	남	7,635	7,628	7,623	7,629	7,594	7,460	7,423	7,455	7,438	7,470	7,437	7,309
	여	12,222	12,242	12,225	12,182	12,255	12,121	12,123	12,134	12,164	12,181	12,131	12,065
경북	남	6,241	6,204	6,219	6,224	6,320	6,262	6,261	6,311	6,326	6,382	6,397	6,345
	여	9,552	9,551	9,554	9,590	9,700	9,649	9,713	9,761	9,764	9,794	9,836	9,771
경남	남	6,630	6,689	6,709	6,738	6,798	6,786	6,863	6,901	6,908	6,972	6,948	6,926
	여	9,076	9,123	9,138	9,197	9,309	9,301	9,370	9,421	9,413	9,476	9,491	9,488
제주	남	1,954	1,966	1,975	2,008	2,013	2,010	2,013	2,014	2,011	2,024	1,992	1,974
	여	2,335	2,324	2,314	2,336	2,363	2,359	2,367	2,363	2,375	2,393	2,374	2,385
합계	남	112,558	113,017	113,311	113,938	114,978	113,704	114,004	114,538	114,816	115,511	115,701	114,128
	여	152,491	153,049	153,433	154,233	156,021	155,075	155,441	156,095	156,470	157,361	157,887	156,893
	계	265,049	266,066	266,744	268,171	270,999	268,779	269,445	270,633	271,286	272,872	273,588	271,021

15 대 표

의사 수

Number of Physician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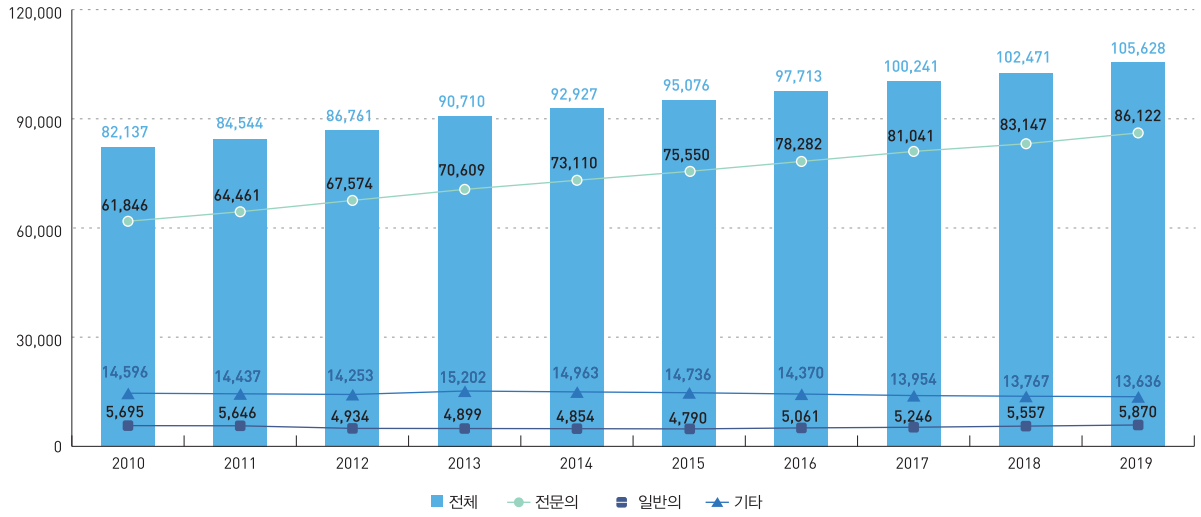
의료법 제2조에 의거 의료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사의 수이다. 여기에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주요 업무로 하는 전문의, 일반의, 인턴, 레지던트까지를 포함하며, 치과의사와 한방의사는 제외한다.

측정 산식

• 요양기관이 신고한 상근 의사 수

그림 8-40 의사 수 (2010~2019)

(단위: 명)



주: 1) 연도말 기준임.
2)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1994	2019	1년

Checkpoint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의사는 2010년 이후 연평균 2.8%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105,628명에 이르렀다. 2010~2019년 사이에 전문의는 3.7%, 일반의는 0.3%, 기타 의사(인턴 및 레지던트)는 −0.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20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표 8-31 시도별 의사 수 (2019)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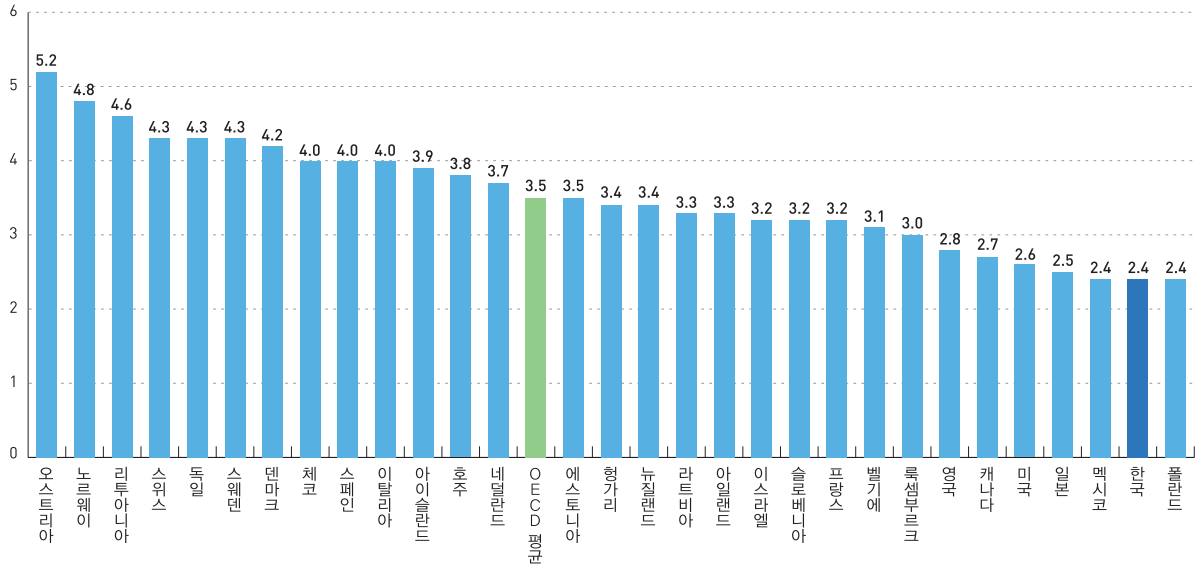
구분	의사 수[1]				인구 천 명당 의사 수[2]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3]	전체	전문의	일반의	기타[3]
전국	105,628	86,122	5,870	13,636	2.0	1.7	0.1	0.3
서울	30,359	23,359	1,187	5,813	3.1	2.4	0.1	0.6
부산	8,008	6,669	365	974	2.3	2.0	0.1	0.3
대구	5,908	4,813	167	928	2.4	2.0	0.1	0.4
인천	5,071	4,250	246	575	1.7	1.4	0.1	0.2
광주	3,658	3,045	153	460	2.5	2.1	0.1	0.3
대전	3,726	2,990	172	564	2.5	2.0	0.1	0.4
울산	1,754	1,528	105	121	1.5	1.3	0.1	0.1
세종	302	276	26	-	0.9	0.8	0.1	-
경기	21,210	18,024	971	2,215	1.6	1.4	0.1	0.2
강원	2,719	2,106	226	387	1.8	1.4	0.1	0.3
충북	2,529	2,119	222	188	1.6	1.3	0.1	0.1
충남	3,198	2,567	342	289	1.5	1.2	0.2	0.1
전북	3,689	2,974	306	409	2.0	1.6	0.2	0.2
전남	3,128	2,553	432	143	1.7	1.4	0.2	0.1
경북	3,662	3,198	409	55	1.4	1.2	0.2	0.0
경남	5,532	4,638	467	427	1.6	1.4	0.1	0.1
제주	1,175	1,013	74	88	1.8	1.5	0.1	0.1

주: 1) OECD에서 발표하는 의사 수와의 차이는 한의사의 포함 여부에 따름. OECD는 한의사를 의사 항목에 포함하여 집계함.
2)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 종사 의사 수'를 의미함.
3) 인턴과 레지던트는 기타로 분류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www.mois.go.kr에서 2020.12.2. 인출)

그림 8-41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자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15-1 면허의료인 수

연 관

Number of licensed health care workers

지표 정의

주요 의료 인력의 해당 분야 면허인 수이다. 주요 의료 인력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가 해당된다.

측정 산식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 수

표 8-32 연도별 · 성별 면허의료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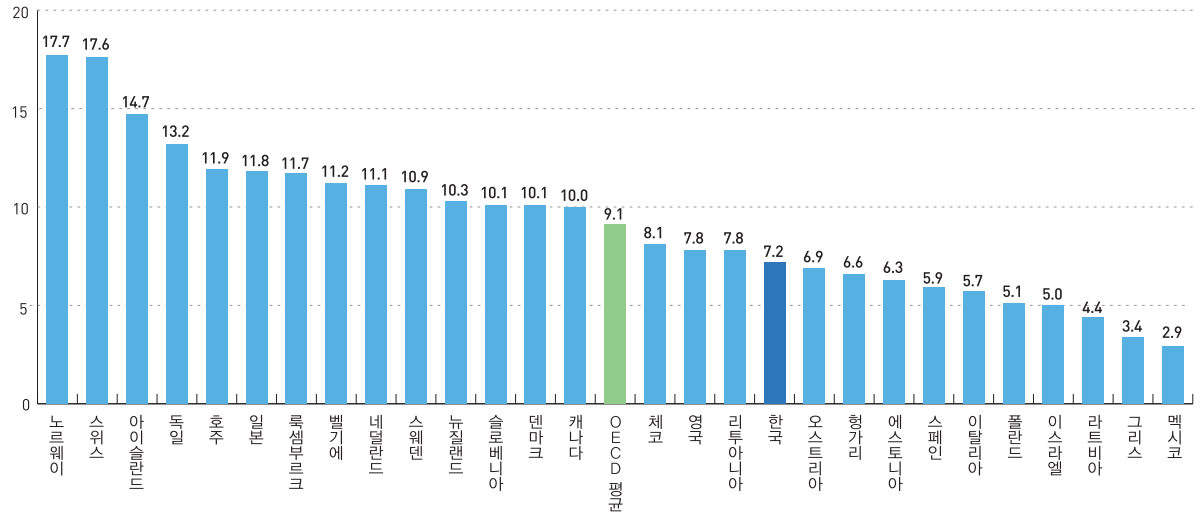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2010	2015	2019	2010년 대비 2019년(%)	2010	2015	2019	2010년 대비 2019년(%)	2010	2015	2019	2010년 대비 2019년(%)
의사[1)]	101,443	116,045	126,795	25.0	78,499	87,442	93,653	19.3	22,944	28,603	33,142	44.4
치과의사[1)]	25,390	28,953	31,640	24.6	18,964	21,266	22,941	21.0	6,426	7,687	8,699	35.4
한의사[1)]	19,132	23,245	25,592	33.8	15,905	18,675	19,892	25.1	3,227	4,570	5,700	76.6
약사[1)]	62,469	67,703	73,553	17.7	22,838	25,054	26,676	16.8	39,631	42,649	46,877	18.3
간호사	270,274	338,629	414,983	53.5	-	-	-	-	-	-	-	-

주: 1)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한의사, 한약사를 포함함.
2) 사망자(말소자 포함)는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그림 8-42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활동 간호사 수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명, 인구 천 명당)



자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18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16 대 표

병상 수

Number of inpatient care beds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전체 병상 수이다.

- 병상 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자원을 보여준다. 연도별 추이, 지역별 병상 현황을 관찰함으로써 병상 수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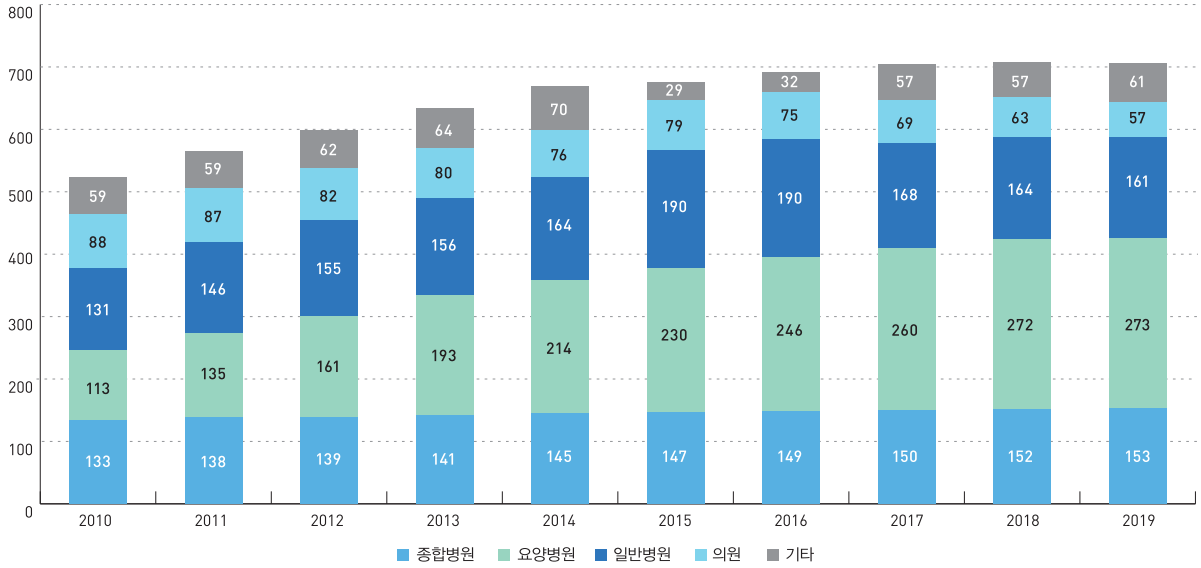
측정 산식

- **등록 병상 수**

유의사항 우리나라 병상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신고 병상 자료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등록 병상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OECD Health Statistics의 작성은 등록 병상 자료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등록 병상에 대해서 기술한다.

그림 8-43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10~2019)

(단위: 천 개)



주: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 병 · 의원, 한방 병 · 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전체 병상 수는 70.5만 개로 2018년에 비교해서 0.3만 개 감소하였다. 하지만 병상 수는 2010년 이후 연평균 3.4%씩 증가해왔다. 특히, 요양병원의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의 병상 수 증가가 눈에 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 증가율(2010~2019)은 연평균 10.3%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표 8-33 시도별 · 의료기관 종류별 병상 수 (2019)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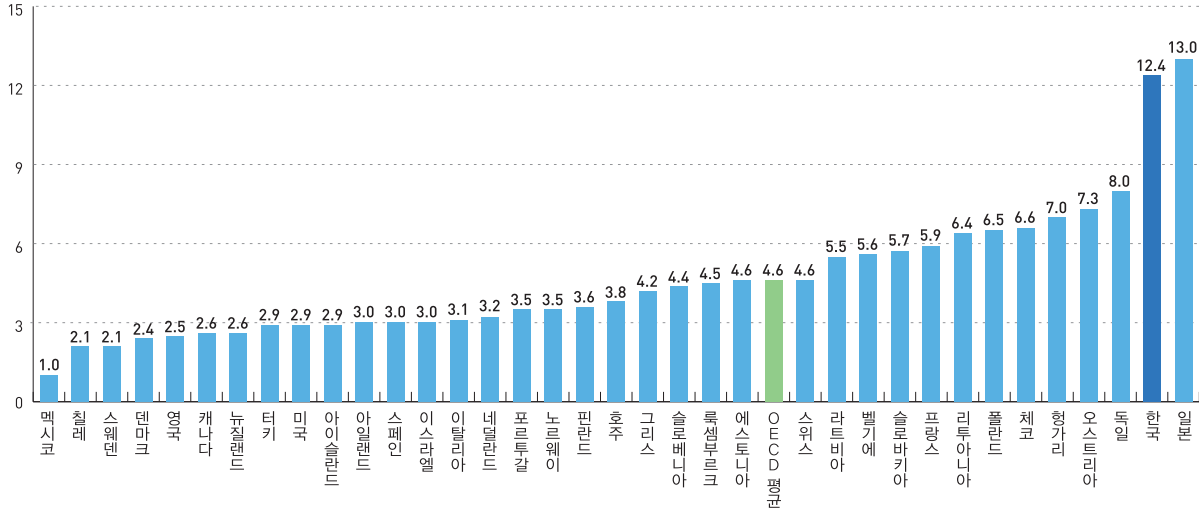
구분	병상 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1]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2]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기타[2]
전국	705,079	152,977	273,284	160,929	57,140	60,749	13.6	3.0	5.3	3.1	1.1	1.2
서울	88,060	33,427	21,075	18,482	9,827	5,249	9.1	3.4	2.2	1.9	1.0	0.5
부산	69,862	13,030	33,226	13,864	3,625	6,117	20.5	3.8	9.7	4.1	1.1	1.8
대구	38,132	7,573	12,943	14,105	2,804	707	15.6	3.1	5.3	5.8	1.2	0.3
인천	34,176	8,207	12,078	7,228	3,902	2,761	11.6	2.8	4.1	2.4	1.3	0.9
광주	40,322	7,746	15,371	8,078	2,414	6,713	27.7	5.3	10.6	5.5	1.7	4.6
대전	23,613	5,319	9,432	5,583	2,561	718	16.0	3.6	6.4	3.8	1.7	0.5
울산	15,284	3,064	7,070	3,969	976	205	13.3	2.7	6.2	3.5	0.9	0.2
세종	1,440	200	690	0	338	212	4.2	0.6	2.0	0.0	1.0	0.6
경기	133,202	25,515	53,481	28,392	12,774	13,040	10.1	1.9	4.0	2.1	1.0	1.0
강원	17,360	5,519	4,141	5,682	1,902	116	11.3	3.6	2.7	3.7	1.2	0.1
충북	21,371	4,763	6,822	4,454	2,424	2,908	13.4	3.0	4.3	2.8	1.5	1.8
충남	29,276	5,393	12,331	3,830	2,583	5,139	13.8	2.5	5.8	1.8	1.2	2.4
전북	39,889	5,917	19,138	8,960	3,354	2,520	21.9	3.3	10.5	4.9	1.8	1.4
전남	41,824	7,676	17,005	9,923	2,166	5,054	22.4	4.1	9.1	5.3	1.2	2.7
경북	43,657	7,817	20,905	11,171	2,309	1,455	16.4	2.9	7.8	4.2	0.9	0.5
경남	62,757	9,581	26,334	16,422	2,809	7,611	18.7	2.8	7.8	4.9	0.8	2.3
제주	4,854	2,230	1,242	786	372	224	7.2	3.3	1.9	1.2	0.6	0.3

주: 1)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행정안전부의 연말기준 '총인구' 대비 요양기관별 '병상 수'를 의미함.
2) 기타에는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이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그림 8-44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병원 병상 수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개, 인구 천 명당)



주: OECD 통계에는 병원급만 포함됨. 따라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은 제외됨.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16-1
연 관

의료기관 수

Number of healthcare providers

지표 정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의 등록된 수이다.

측정 산식

• 등록 기관 수

표 8-34 시도별 의료기관 현황 (2019)

(단위: 개)

시도	전체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조산원	기타
전국	69,118	356	1,468	1,486	32,441	18,194	14,795	19	359
서울	17,694	57	123	227	8,635	4,890	3,694	3	65
부산	5,198	29	170	142	2,382	1,298	1,146	2	29
대구	3,786	16	68	109	1,804	899	881	0	9
인천	3,344	19	68	62	1,573	921	691	1	9
광주	2,175	23	63	80	949	638	409	0	13
대전	2,251	10	51	51	1,079	534	513	1	12
울산	1,367	8	42	43	600	387	278	0	9
세종	354	1	5	0	177	85	77	0	9
경기	15,254	64	314	278	7,058	4,243	3,214	7	76
강원	1,626	15	32	45	771	394	364	0	5
충북	1,838	13	43	37	884	434	410	1	16
충남	2,322	13	72	44	1,063	571	528	0	31
전북	2,465	13	83	74	1,165	591	536	0	3
전남	2,030	23	83	76	940	489	400	1	18
경북	2,839	20	114	74	1,278	684	645	1	23
경남	3,686	26	128	137	1,632	917	816	1	29
제주	889	6	9	7	451	219	193	1	3

주: 1) 연도말 기준임.
2) 병원에는 특수병원(결핵, 한센, 정신) 포함, 의원에는 산업체 부속의원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	1988	2019	1년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2020

17 대 표

GDP 대비 경상의료비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as % GDP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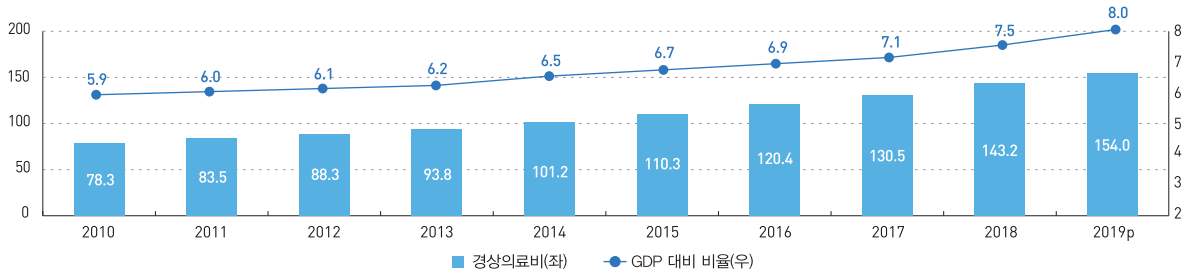
GDP에서 경상의료비(Current Health Expenditure)*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경상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료서비스와 집합보건의료서비스(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정부 · 의무가입제도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한다**.

측정 산식

$$\frac{\text{경상의료비}}{\text{GDP}} \times 100$$

그림 8-45 경상의료비 (2010~201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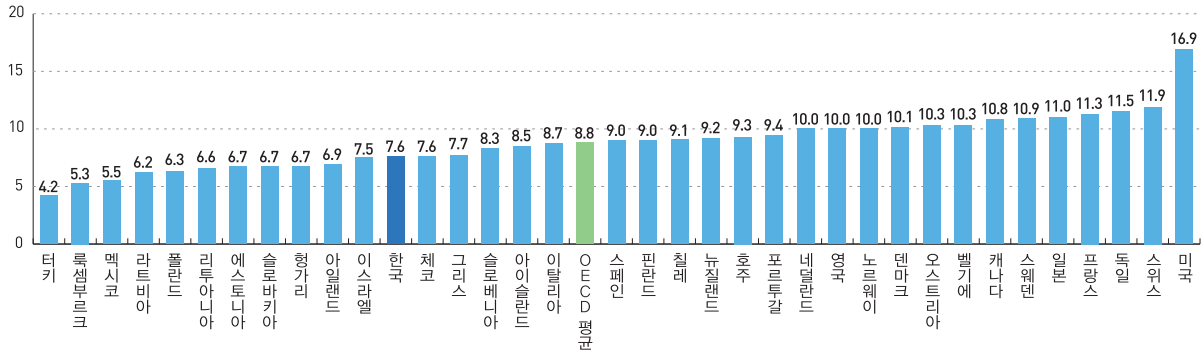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자료: 보건복지부 외, 2018년 국민보건계정, 2020 (http://kosis.kr에서 2020.12.30. 인출)

그림 8-46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8년 또는 최근 연도)

(단위: %)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0.11.23.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9p*	1년

* 잠정치임. OECD는 의료비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자 2020년 OECD 통계 포털(stats.oecd.org)에 2018년 확정치와 함께 2019년 잠정치를 함께 발표함. 우리나라는 OECD에 공표된 자료를 통계청 통계 포털(http://kosis.kr)에서도 함께 제시함.

Checkpoint 최근 10년간(2010~2019p) 경상의료비(명목)는 연평균 7.8%씩 증가해왔다. 경상의료비는 연이은 보장성 강화 정책, 건강관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외, 2018년 국민보건계정, 2020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 보건계정의 신매뉴얼인 'SHA2011'에서는 의료비 총량치의 대표 지표로 국민의료비 대신 경상의료비를 사용하기로 정하고 있음. OECD는 Health Statistics 2015(2015.7. 발표)부터 이러한 방침을 국제비교 시에 적용함.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와 고정자본형성을 더한 것으로, 2000년대 초반 보건계정이 시작된 이후 2015년까지 보건의료비용의 대표 지표로 사용됐음.

** OECD Health Statistics 2016의 산출 기준이 되는 SHA2011에서는 재원 구분을 크게 정부 · 의무가입제도와 민간재원으로 구분함. 정부 · 의무가입제도는 기존 매뉴얼(SHA1.0)에서의 공공재원과 민영사회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더한 개념임.

17-1
연 관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의 비중

Out-of-pocket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지표 정의

경상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가계직접부담은 의료이용 시 이용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본인부담의 합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frac{\text{가계직접부담}}{\text{경상의료비}} \times 100$$

표 8-35 연도별 경상의료비 재원구성

(단위: 십억 원, %)

연도	경상의료비	정부 · 의무가입제도		임의가입제도 및 가계직접부담			
		정부	의무가입 (건강)보험	임의가입 건강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
1980	1,365	96	179	-	8	6	1,076
	(100.0)	(7.0)	(13.1)		(0.6)	(0.4)	(78.8)
1990	7,275	540	2,377	-	48	19	4,292
	(100.0)	(7.4)	(32.7)		(0.7)	(0.3)	(59.0)
2000	25,398	2,624	11,064	400	190	38	11,083
	(100.0)	(10.3)	(43.6)	(1.7)	(0.7)	(0.1)	(43.6)
2010	78,263	9,042	38,641	3,343	519	94	26,624
	(100.0)	(11.6)	(49.4)	(4.3)	(0.7)	(0.1)	(34.0)
2015	110,303	11,747	53,224	7,014	1,089	168	37,061
	(100.0)	(10.6)	(48.3)	(6.4)	(1.0)	(0.2)	(33.6)
2019p	153,966	15,495	78,108	10,252	1,485	216	48,409
	(100.0)	(10.1)	(48.3)	(6.4)	(1.0)	(0.2)	(32.5)

자료: 보건복지부 외, 2018년 국민보건계정, 2020 (http://kosis.kr에서 2020.12.3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9p*	1년

* 잠정치임. OECD는 의료비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자 2020년 OECD 통계 포털(stats.oecd.org)에 2018년 확정치와 함께 2019년 잠정치를 함께 발표함. 우리나라는 OECD에 공표된 자료를 통계청 통계 포털(http://kosis.kr)에서도 함께 제시함.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외, 2018년 국민보건계정, 2020

17-2
연 관

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의 비중

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non-durables expenditure, as %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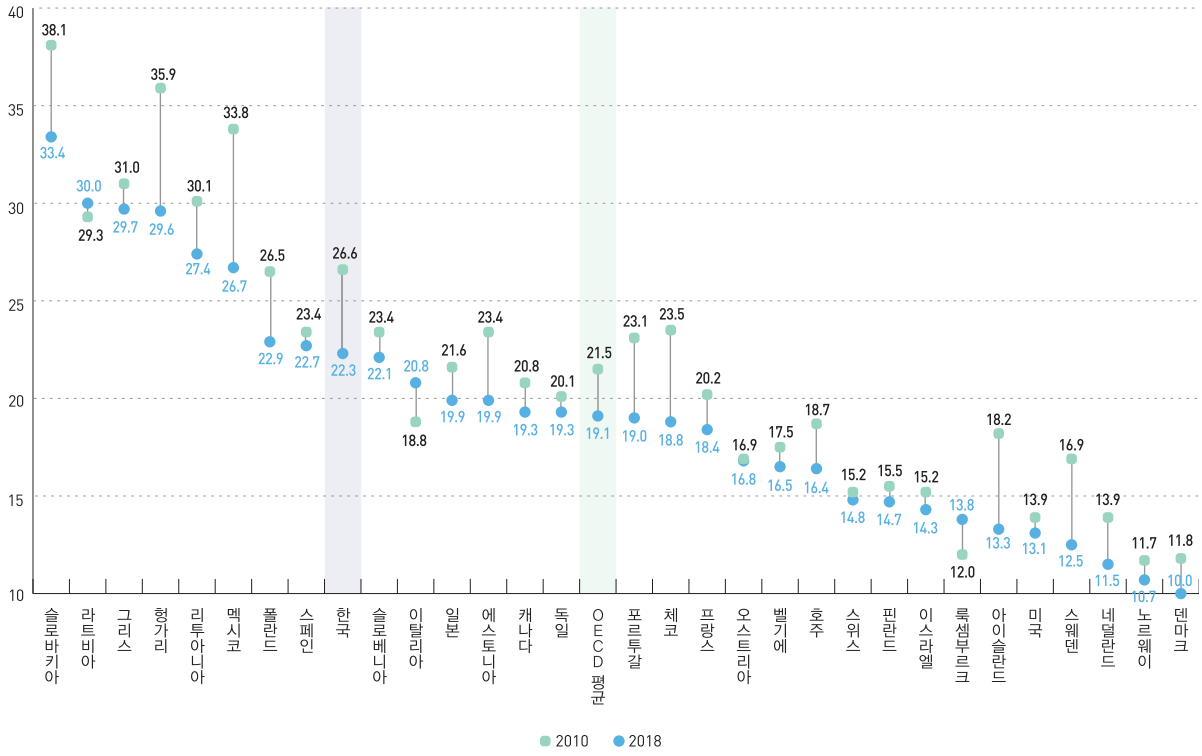
경상의료비 중에서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에 대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서 의약품은 처방의약품과 비처방의약품으로, 의료용 소모품은 반창고, 요실금용품, 피임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의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비}}{\text{경상의료비}} \times 100$$

그림 8-47 OECD 국가의 연도별 의약품 및 의료용소모품비의 비중

(단위: %)



자료: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stats.oecd.org에서 2021.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1970	2018	1년

* OECD는 의료비 통계의 시의성과 정책 활용성을 높이고자 2020년 OECD 통계 포털(stats.oecd.org)에 2018년 확정치와 함께 2019년 잠정치를 함께 발표하는 가운데, 기능별, 공급자별 세부 항목까지는 잠정치 생산을 권고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음. 의료비의 기능별, 공급자별 세부 수치의 잠정치를 생산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뿐임.

참고문헌

• OECD, OECD Health Statistics 2020, 2020

17-3
연 관

건강보험 급여비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 amount

지표 정의

급여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에 든 총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다. 이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합으로 구성되며, 현물급여는 요양급여(본인부담액상한제 사전지급분 포함), 건강진단비로,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비,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분, 임신출산진료비로 구성된다.

측정 산식

• 현물급여 + 현금급여

표 8-36 건강보험 급여비 (2010~2019)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3,796	36,056	37,334	39,862	42,586	45,730	50,891	54,625	61,670	68,456
현물급여 (비중)	33,300 (98.5)	35,448 (98.3)	36,674 (98.2)	39,123 (98.1)	41,899 (98.4)	44,582 (97.5)	49,705 (97.7)	53,322 (97.6)	60,141 (97.5)	66,571 (97.2)
현금급여 (비중)	497 (1.5)	608 (1.7)	660 (1.8)	739 (1.9)	687 (1.6)	1,148 (2.5)	1,185 (2.3)	1,303 (2.4)	1,528 (2.5)	1,885 (2.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	2005	2019	1년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0

17-4
연 관

건강보험 보장률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지표 정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치료 목적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하였을 때 발생되는 전체 의료비(보험자부담금,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자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단, 건강보험 보장률에 있어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미용성형수술, 집단검진, 개별검진, 시력 교정술, 예방접종, 기타 예방진료, 임플란트*, 미용목적의 보철 · 교정, 건강증진 목적의 한약첩약,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외한 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급여 항목만을 포함한 것이다.

* 2006~2013 보장률은 임플란트 전체를 미포함, 2014년 보장률은 75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 2015년 보장률은 70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 2016년 보장률은 65세 이상 임플란트를 포함함. 이와 같이 급여 확대에 따라 포함 항목이 시계열적으로 일관되지 않음.

측정 산식

$$\frac{\text{보험자부담금}}{\text{보험자부담금} + \text{법정 본인부담금} + \text{비급여 본인부담금}} \times 100$$

표 8-37 건강보험 보장률 (2010~2019)

(단위: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현금급여 포함	63.6	63.0	62.5	62.0	63.2	63.4	62.6	62.7	63.8	64.2
현금급여 미포함	62.7	62.0	-	-	-	-	-	-	-	-

주: 현금급여를 제외한 경우는 2011년 이후 발표되지 않음.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8 건강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005	2019	1년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각 연도

9

보육 및 교육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02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03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04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05 학교급별 취학률

06 학급당 학생 수

07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08 교원 1인당 학생 수

09 학생 1인당 사교육비

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11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12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13 고등교육 이수율

1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9 보육 및 교육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0~5세 아동보육공급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교육의 질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학교급별 취학률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교육 기회보장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고등교육 이수율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Highlight

국가 보육지원정책의 목표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 발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통해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 2012년 3월부터 만 0~2세와 만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시작되었고 2013년에는 무상보육이 영유아 전체로 확대되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어린이집은 37,371개소, 유치원은 8,837개소이며 어린이집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유치원 수는 매년 큰 변동 없이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2019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0~2세 아동의 경우 80.5%, 3세 이상의 경우 9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의 수급아동은 658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및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2004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그간 돌봄대상의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공간이나 운영모델을 다양화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고시 제2020-248호)에 근거하는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점차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양상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2017년 대비 2018년 6.5%, 2018년 대비 2019년 11.1%로 약 2배 수준의 증가율 차이가 확인된다. 지난 2014년에도 초등돌봄교실 운영교실 및 참여학생수의 급격한 증가가 확인되는데, 2014년과 비교해 2019년 초등돌봄교실 운영교실은 26.8%, 참여학생은 31.2% 증가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초등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생태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돌봄수요를 충족하고,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주요 지표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중·고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OECD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개선이 요구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역시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국 · 공립 대비 사립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1.6% 수준이며, 학교유형과 지역규모 등에 따라 학업중단율 차이가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사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 학생이 크게 증가하였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74.8%,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9만 원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4.7만 원, 중학교 47.4만 원, 고등학교 59.9만 원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특히 2015년 대비 2019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5.5%(5.9만 원), 중학교 22.9%(6.3만 원), 고등학교 54.7%(12.9만 원)로 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지속적으로 4%대를 유지하였으나 2019년 3.89%로 감소 추세인 반면, 대학은 2014년 전체 입학자의 6.79%를 기회균형으로 선발하였으나 2019년 11.21%로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2019년 2학기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은 평균 약 2.90백만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 이용 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01
대 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Number of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

지표 정의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정의되며,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 운영되는 학교로 유아교육법에 의해 정의된다. 본 지표는 각각의 기관의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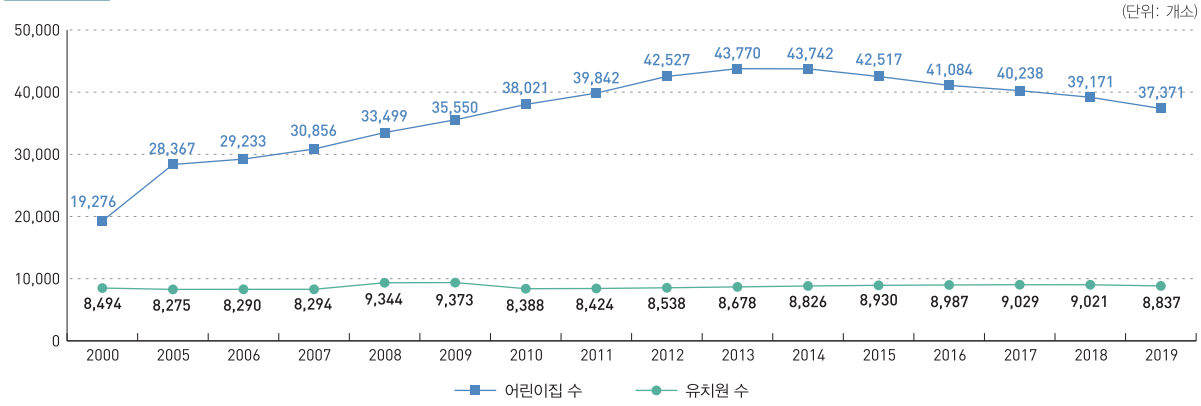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어린이집 수 =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7개 유형 어린이집 수
- 유치원 수 =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 수

유의사항 어린이집은 설립주체 유형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 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9-1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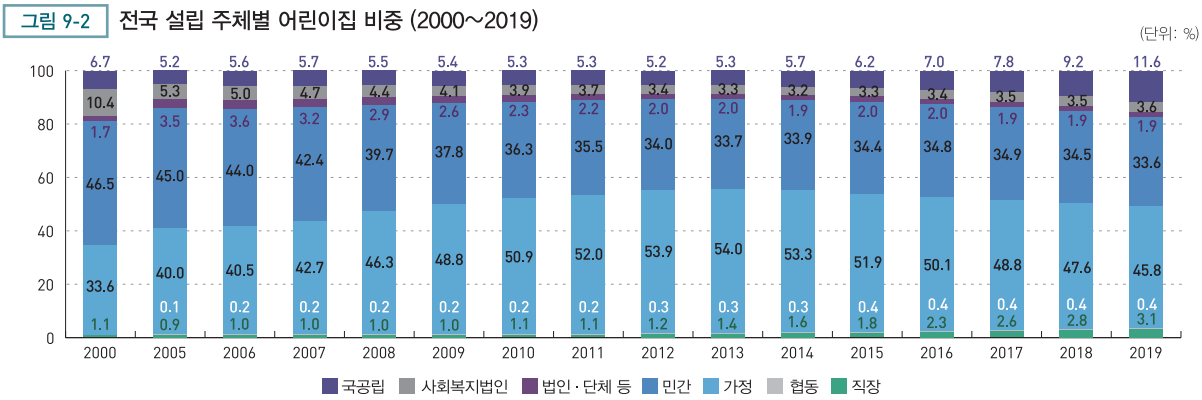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25. 인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9-2 전국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비중 (2000~2019)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어린이집및이용자통계,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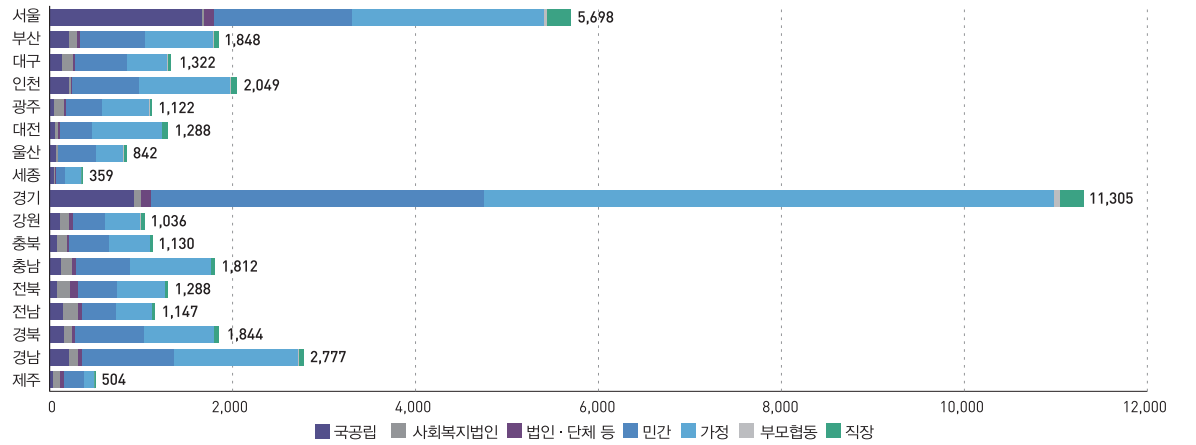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4	2019	1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9	1년

Checkpoint 어린이집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37,371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1,800개소 감소하였다. 유치원 수는 2019년에는 8,837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184개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3 시도별 · 설립 주체별 어린이집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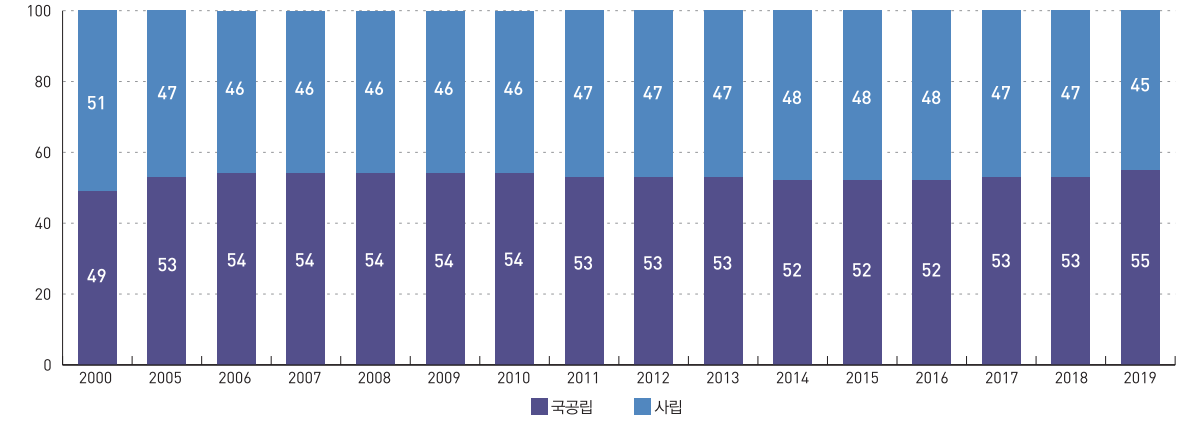
(단위: 개소)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그림 9-4 전국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분포 (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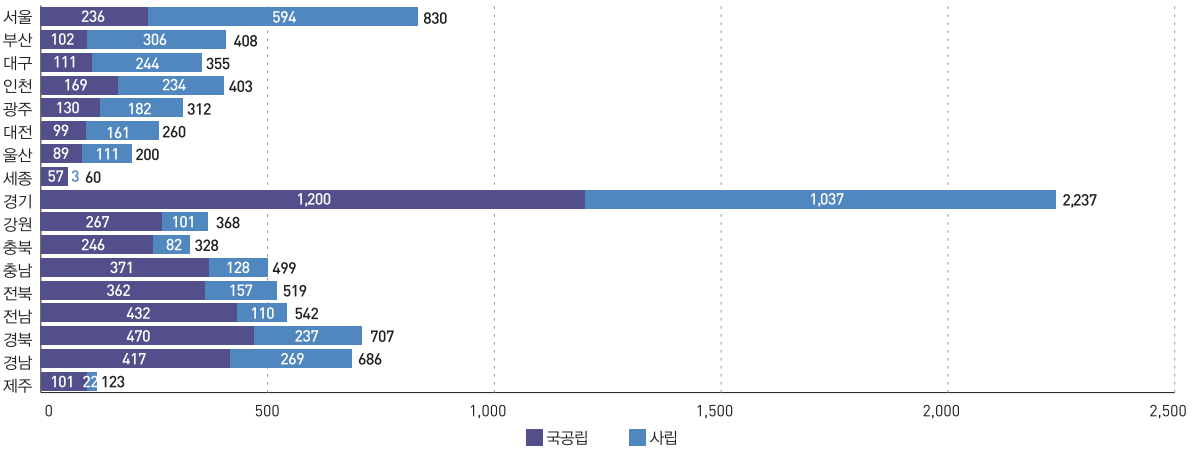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유초등통계, 각 연도

그림 9-5 시도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수 (2019)

(단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유초등통계, 2019

01-1
연 관

0~5세 아동보육공급률

Supply rate of Childcare services for 0-5 year olds

지표 정의

0~5세 아동보육공급률은 전체 0~5세 아동 수 대비 전체 어린이집 정원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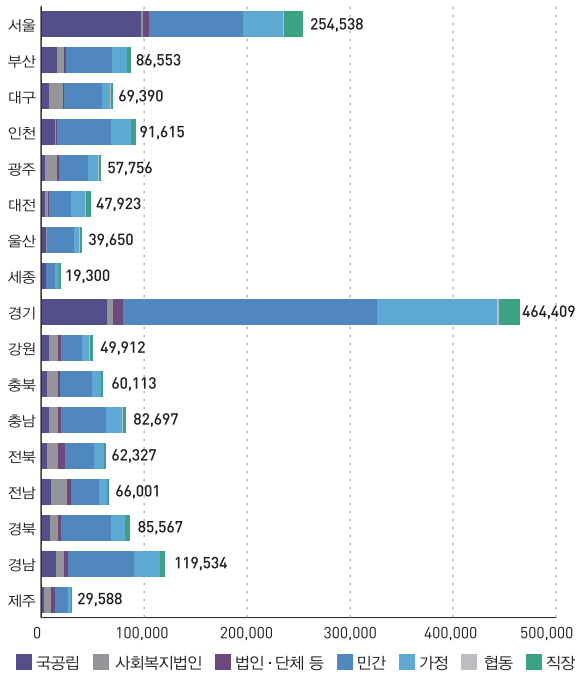
•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정원이 전체 0~5세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capacity)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전체 어린이집 정원}}{\text{전체 0~5세 아동 수}} \times 100$$

그림 9-6 시도별 ·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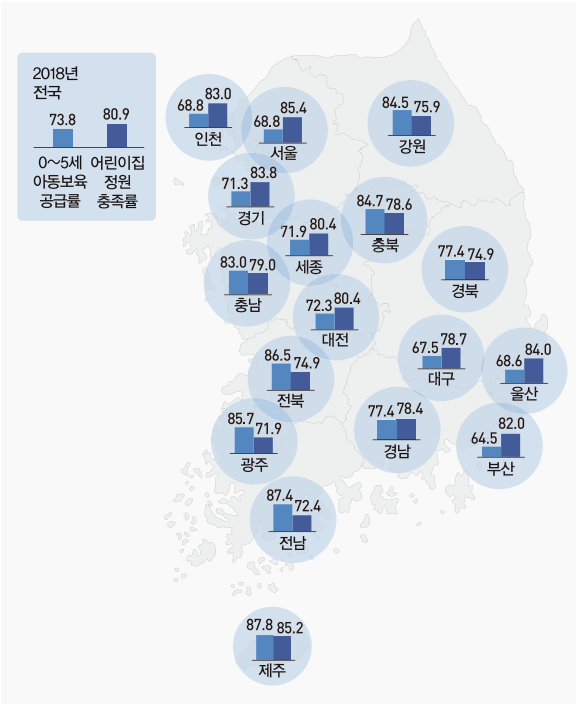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그림 9-7 시도별 0~5세 아동보육공급률 및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2019)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행정안전부, 연령별 인구현황,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4	2019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08	2019	1개월

Checkpoint 2019년 어린이집이 제공하고 있는 보육 정원은 약 1,686천 명으로 2018년의 약 1,757천 명보다 45천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0~5세 아동수의 감소로 아동보육공급률은 2019년 73.8%로 2018년 71.7%보다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2
대 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Rate of Children enrolled in Daycare and Kindergarten programs

지표 정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해당 연령의 아동 수 대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유아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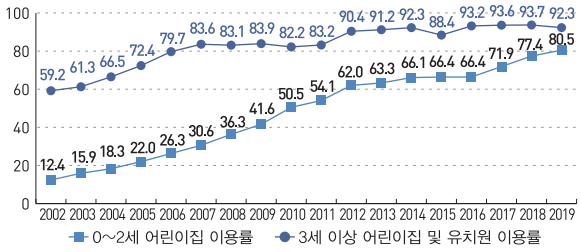
측정 산식

- 0~2세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수}}{\text{전체 0~2세 아동 수}} \times 100$
- 3세 이상 이용률 = $\frac{\text{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3세 이상 아동 수}}{\text{전체 3~5세 아동 수}} \times 100$

유의사항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와 주민등록인구현황은 연말 기준이나 교육기본통계는 4월1일 기준으로 시점이 다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0~2세 이용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2세 보육아동 수를 기준으로 한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 교육을 위해 설립 · 운영되는 학교이므로, 3세 이상 이용률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 이상 보육아동 수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3세 이상 원아 수 총합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유의한다.

그림 9-8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02~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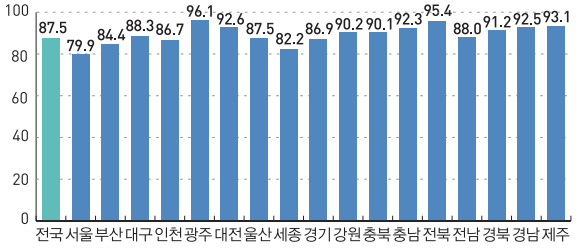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유초등통계,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현황, 각 연도

그림 9-9 시도별 0~5세 아동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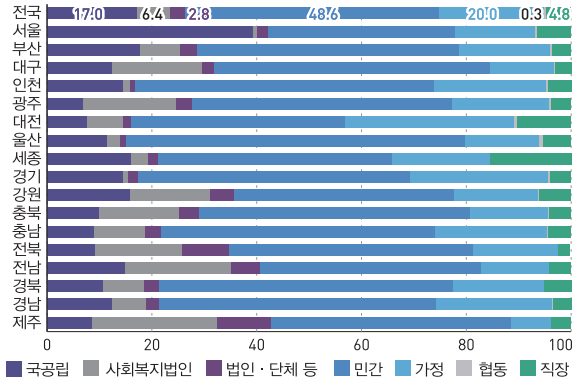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유초등통계, 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그림 9-10 시도별 어린이집 설립 주체 유형에 따른 이용 비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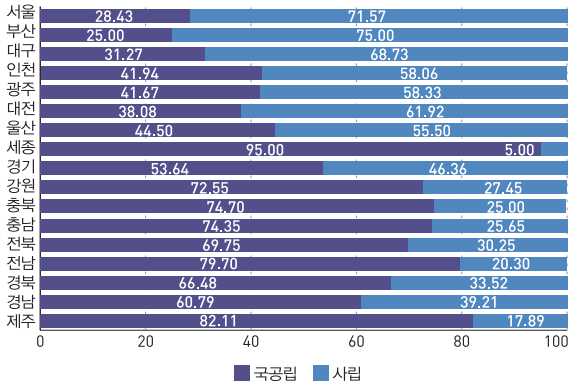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그림 9-11 시도별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이용 비중 (2019)

(단위: %)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 유초등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4	2019	1년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9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08	2019	1개월

Checkpoint 국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은 0~2세의 경우 2002년 12.4% 이후 2019년 8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3세 이상의 경우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 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83% 내외로 유지되다가 2012년 90.4%로 증가한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9년 92.3%까지 증가하였다.

03
대 표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allowance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며, 본 지표는 전체 양육수당 수급 아동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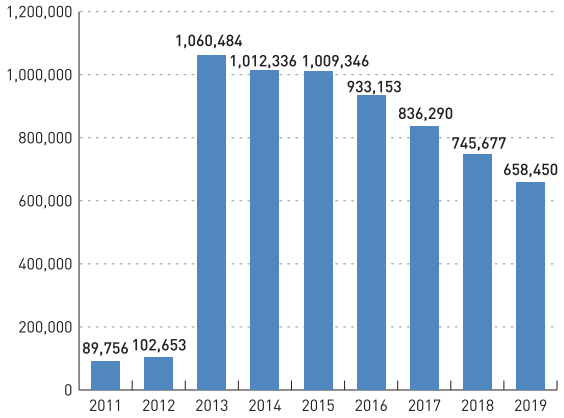
- 2019년 현재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의 가정 양육수당은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월 17만 7천 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월 15만 6천 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월 12만 9천 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측정 산식

- 0~84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은 수급자 수

그림 9-12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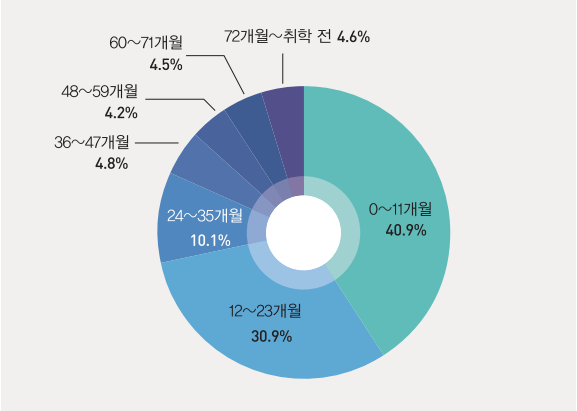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 연도

그림 9-13 연령별 양육수당 수급 비중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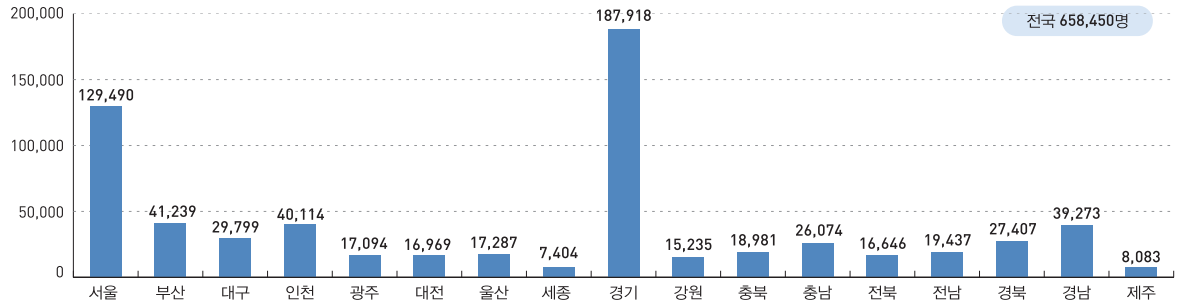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그림 9-14 시도별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4	2019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08	2019	1개월

Checkpoint 2013년부터 양육수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체 미취학 아동에게 확대됨에 따라 2013년도 양육수당 수급 아동의 수는 급증하였으나 최근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출생아수가 감소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03-1
연 관

양육수당 아동 지원 수

Number of Recipients of Child Home Care Benefit

지표 정의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신청일 기준)에 대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되는 현금성 급여이다. 단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등록장애인인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월령별로 다음과 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을 받은 아동 수 (2019년 기준)

※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월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월 150천 원, 24~84개월 미만 월 100천 원

※ 농어촌 양육수당 : 12개월 미만 200천 원, 12~24개월 미만 177천 원, 24~36개월 미만 156천 원, 36~48개월 미만 129천 원, 48~84개월 미만 100천 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6개월 미만 200천 원, 36~84개월 미만 100천 원

표 9-1 성별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구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합계	남성	74,861	282,457	831	358,149
	여성	150,093	199,649	465	350,207
	전체	224,954	482,106	1,296	708,356

표 9-2 시도별 가정 양육수당 수급자 수 (2019)

(단위: 명)

시도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계
서울	142,786	377	3	143,166
부산	44,498	128	8	44,634
대구	31,600	66	14	31,680
인천	42,790	117	27	42,934
광주	17,814	58	5	17,877
대전	18,146	86	3	18,235
울산	17,948	42	7	17,997
세종	7,734	14	10	7,758
경기	202,167	549	150	202,866
강원	16,171	24	152	16,347
충북	19,902	47	147	20,096
충남	27,025	66	291	27,382
전북	17,489	55	371	17,915
전남	19,866	33	725	20,624
경북	28,587	66	604	29,257
경남	40,906	127	376	41,409
제주	8,139	40	365	8,544
합계	703,568	1,895	3,258	708,721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양육수당 지원 아동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월

표 9-3 월별 · 연령별 가정 양육수당 지급 건수 및 지급액 (2019)

(단위: 건수, 천 원)

구분	0~1세 미만		1세 이상~2세 미만		2세 이상~3세 미만		3세 이상		계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지급 건수	지급 금액
1월	287,276	62,247,479	245,161	36,847,083	97,149	9,755,361	154,610	15,663,500	784,196	124,513,423
2월	286,976	62,174,100	252,247	37,902,208	105,856	10,617,700	183,293	18,568,860	828,372	129,262,868
3월	263,384	57,624,050	146,655	22,037,120	44,239	4,438,250	94,707	9,507,050	548,985	93,606,470
4월	267,647	58,584,600	152,454	22,931,695	44,757	4,492,158	98,345	9,906,575	563,203	95,915,028
5월	268,918	58,407,950	159,947	24,050,583	46,932	4,715,050	100,592	10,123,908	576,389	97,297,492
6월	269,384	58,395,800	165,165	24,827,456	48,604	4,883,150	102,616	10,335,333	585,769	98,441,740
7월	286,119	60,662,950	157,519	23,340,667	47,143	4,736,750	105,108	10,623,933	595,889	99,364,300
8월	268,633	57,978,200	179,255	26,942,650	54,190	5,444,800	113,060	11,457,148	615,138	101,822,798
9월	267,484	57,919,450	181,973	27,355,850	55,745	5,591,950	114,290	11,474,216	619,492	102,341,466
10월	268,038	58,160,150	188,304	28,302,744	58,381	5,862,550	116,891	11,759,064	631,614	104,084,509
11월	267,759	57,832,450	195,151	29,318,450	61,278	6,142,075	117,298	11,763,381	641,486	105,056,356
12월	267,981	57,842,450	202,420	30,414,900	65,342	6,547,263	117,754	11,825,644	653,497	106,630,256

04
대 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Number of Prim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After-school Care programs

지표 정의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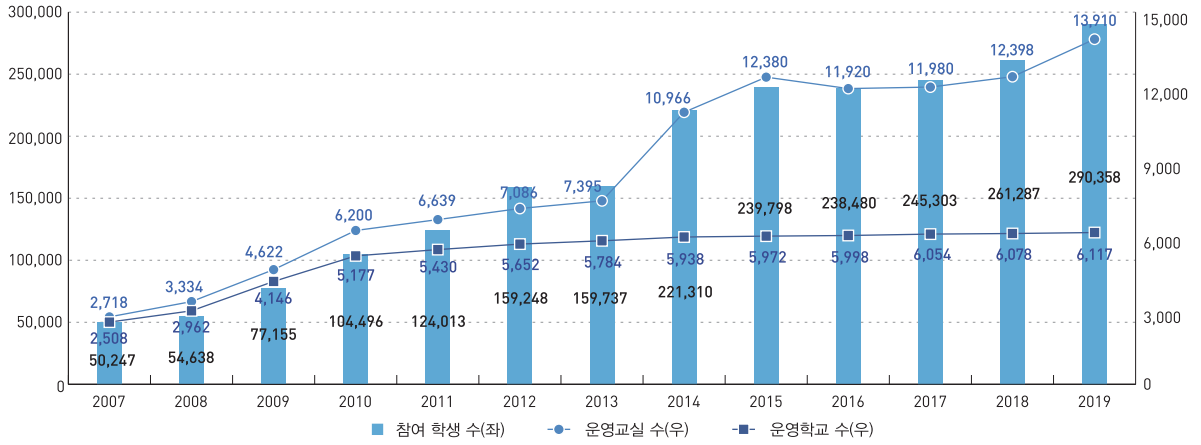
-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 교실 수,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수**

그림 9-15 초등 돌봄교실 운영 현황 (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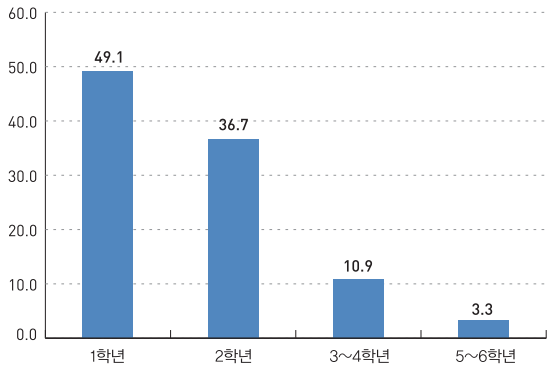
(단위: 명, 개)



자료: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9-16 학년별 초등 돌봄교실 참여 현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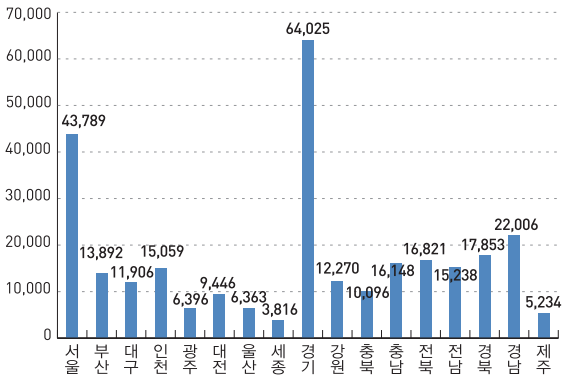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2020

그림 9-17 시도별 초등 돌봄 교실 참여 학생 수 현황 (2019)

(단위: 명)



자료: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부자료),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교실 참여 학생 수 (내부자료)	2007	2020	1년

Checkpoint

지난 10년간 초등 돌봄교실 운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2019년의 경우 초등 돌봄교실을 이용한 학생은 전년 대비 약 11.1%(29,071명), 운영교실은 12.2%(1,512실)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다만, 현재 초등 돌봄교실은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초등 돌봄교실 수요 및 운영 프로그램 내실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05 대 표

학교급별 취학률

Enrollment rates by school level

지표 정의

학교급별 취학률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적령인구 대비 해당 교육기관에 재적하는 학생의 비율을 의미한다. 취학적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만 6~11세, 중학교는 만 12~14세, 고등학교는 만 15~17세이다.

측정 산식

$$\text{취학적령의 재적 학생 수} \div \text{취학적령인구수} \times 100$$

유의사항 • OECD 교육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연령별 취학률(연령별 학생 수/연령별 인구수)을 산출하고 있으며, 연령은 5~14세 및 15~19세로 구분된다.

표 9-4 연도별 · 학교급별 취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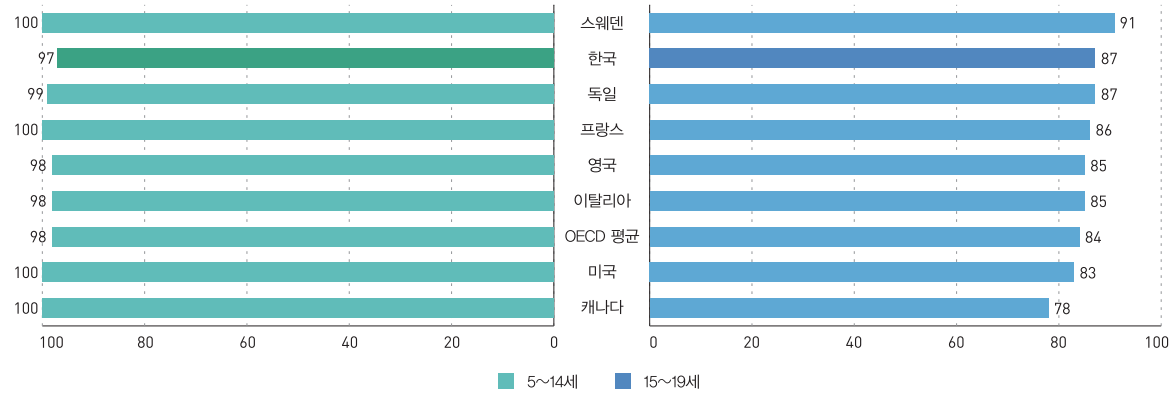
(단위: %)

학교급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초등학교	99.1	98.7	98.5	97.3	96.7	99.1	98.6	97.3	97.4	98.7
중학교	96.5	96.7	95.6	95.7	96.4	95.3	94.3	94.2	97.9	96.7
고등학교	91.7	92.0	92.2	92.5	93.2	92.5	93.1	93.7	92.4	91.3

주: 1) 취학률(%) = 취학적령의 학생 수 / 취학적령인구
2) 취학적령 : 유치원(만 3~5세), 초등학교(만 6~11세), 중학교(만 12~14세), 고등학교(만 15~17세)
자료: 교육부, 2019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2019

그림 9-18 OECD 주요국의 연령별 취학률 (2017)

(단위: %)



주: 캐나다는 중등 후 비고등교육은 제외됨.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9,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9	1년

Checkpoint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완전취학 상태이며, 아직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의 취학률은 91.3%로 나타남.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 연령별(5~19세) 취학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06
대 표

학급당 학생 수

Average Class Size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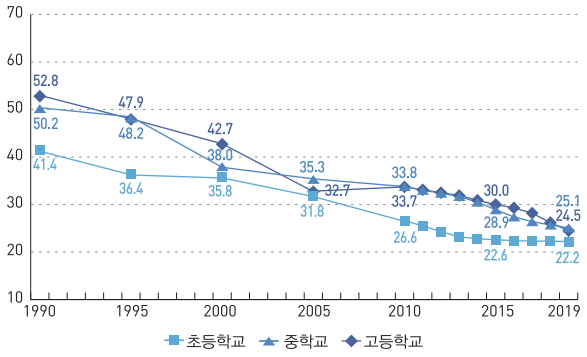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학교급별로 전체 학급 수 대비 재적하고 있는 학생 수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는 학교급별로 1개의 학급당 평균적으로 배정된 학생 수를 의미하여 학급규모에 대한 교육 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로서 의의가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총 재적 학생 수}}{\text{총 학급 수}}$ (단위: 명)

그림 9-19 연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 2019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2019

표 9-5 지역규모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9)

(단위: 명)

지역규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2.2	25.1	24.5
대도시	22.6	24.5	24.6
중소도시	24.8	27.8	25.4
읍 · 면지역	17.8	21.4	22.1
도서벽지	8.6	14.1	17.9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중등교육통계편, 2019

표 9-6 시도별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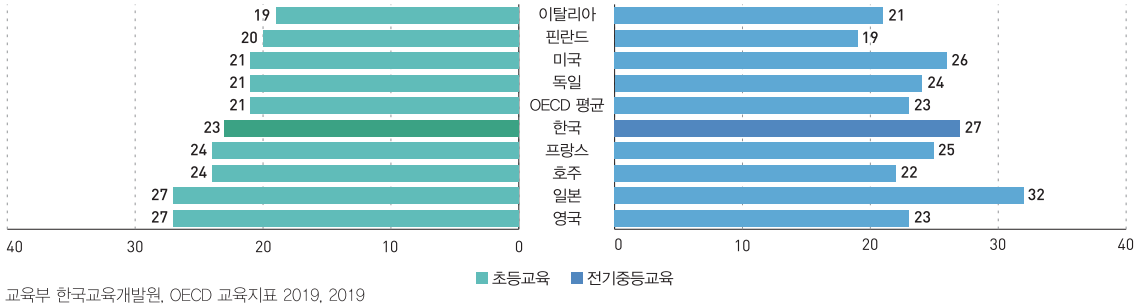
(단위: 명)

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22.6	23.7	25.0
부산	22.5	24.8	23.1
대구	23.1	24.0	24.7
인천	23.0	25.8	24.0
광주	21.9	24.1	27.1
대전	21.3	25.8	24.4
울산	23.0	25.2	24.2
세종	21.0	22.6	22.7
경기	24.7	28.7	25.4
강원	17.6	22.1	22.8
충북	20.2	24.2	25.1
충남	20.4	25.1	24.8
전북	19.0	23.6	23.5
전남	18.4	22.2	21.8
경북	20.4	21.4	22.2
경남	21.2	24.7	24.1
제주	22.8	26.4	28.1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편, 2019

그림 9-20 OECD 주요국의 학급당 학생 수 (2017)

(단위: 명)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9,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9	1년

Checkpoint 학생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초, 중, 고 학급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2.2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5명 수준이다. 하지만 OECD 평균 학급당 학생 수 초등교육 21명, 전기중등교육 23명과 비교할 때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07 대 표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High School Dropout Rates

지표 정의

학업중단율은 총 재적 학생 중 학교에서 중도탈락한 학업중단자 수를 의미한다. 의무교육단계인 초 ·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학업중단의 사유로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과 특수교육 대상자 중 유예 및 면제가 있다. 2010학년도부터는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을 학업 중단자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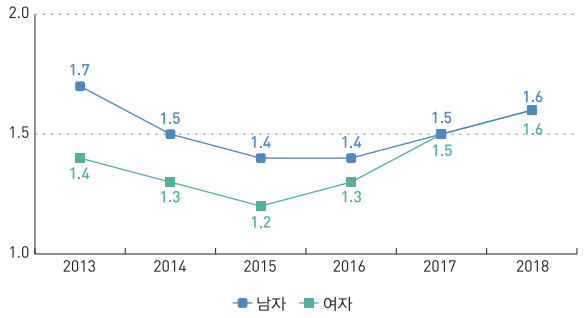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고등학교 학업중단자 수}}{\text{전년도 고등학교 재적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학업중단자 수는 당해 연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학년도를 기준으로 조사되므로 다른 통계와 자료 기준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9-21 성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 (2013~2018)

(단위: %)



주: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 편, 각 연도

표 9-7 지역규모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18)

(단위: %)

지역규모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전체	1.6	1.3	1.4	3.2	1.1
대도시	1.6	1.3	1.4	3.1	1.1
중소도시	1.6	1.3	1.3	3.1	1.2
읍 · 면지역	1.8	1.4	1.6	3.6	1.0
도서벽지	1.7	1.4	-	2.8	0.8

주: 1)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2)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 유예, 면제된 자들을 말함(이하 동일).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 편, 2019

표 9-8 시도별 · 고등학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2018)

(단위: %)

시도	고등학교 (전체)	일반고	특수 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서울	1.8	1.7	1.3	2.9	1.3
부산	1.7	1.2	1.5	3.8	0.8
대구	1.4	1.0	2.0	3.4	0.7
인천	1.6	1.2	0.8	3.2	0.9
광주	1.4	1.2	1.0	2.7	0.8
대전	1.6	1.1	1.9	3.6	1.2
울산	1.1	0.8	0.9	2.5	0.9
세종	1.9	1.9	1.2	3.7	1.6
경기	1.8	1.6	1.3	3.1	1.4
강원	1.8	1.2	1.0	4.9	1.1
충북	1.7	1.0	1.4	3.7	1.2
충남	1.6	1.2	2.3	3.6	1.2
전북	1.5	1.0	1.6	3.0	0.8
전남	1.5	1.0	1.4	2.9	0.9
경북	1.4	1.0	1.3	3.5	0.7
경남	1.3	1.1	1.0	2.8	1.2
제주	1.1	1.0	1.5	1.3	-

주: 1) 연도는 해당 학년도를 의미함.
2) 고등학교 학업중단자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사유), 제적, 유예, 면제된 자들을 말함(이하 동일).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 편,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8	1년

Checkpoint 2018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1.6%로 초등학교(0.7%)와 중학교(0.7%) 대비 약 2배 높은 수준이며, 특히 고등학교 유형별에 따른 학업중단율 차이가 뚜렷했다. 즉 자율고(1.1%), 일반고(1.3%), 특목고(1.4%) 대비 특성화고(3.2%)로 학업중단율은 약 2~3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교 유형별 학업중단율 차이는 지역규모 및 시도 특성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08
대 표

교원 1인당 학생 수

Ratio of students to teacher

지표 정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 사람의 교사가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을 대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학급당 학생 수와 함께 교육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교원 수에 대한 재적학생의 비율로 나타낸다. 교원에는 휴직교원과 기간제교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이 지표가 "이용 가능한 교수자원의 수준에 대한 정보"(OECD, 2017)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측정 산식

• 국내 산식 = $\frac{\text{재적 학생 수}}{\text{교원 수(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사 포함, 퇴직교원 및 강사 제외)}}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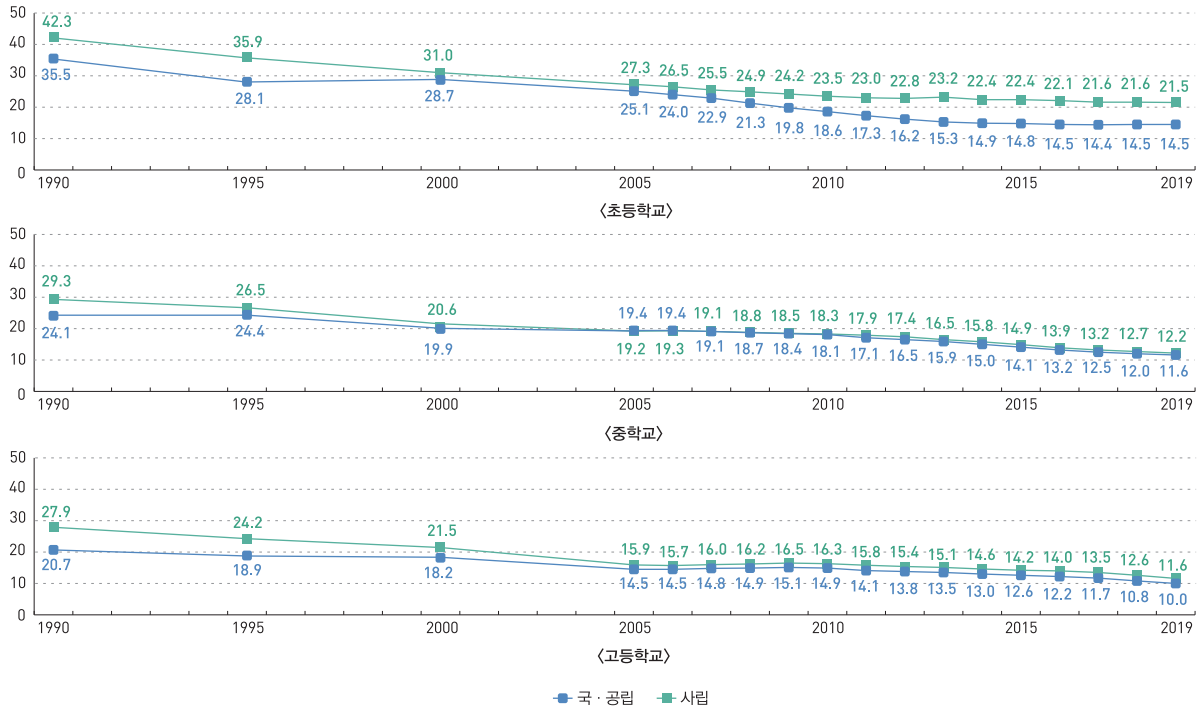
유의사항 OECD 교육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산출하고 있다. OECD 기준 상 교사는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휴직교사 포함)로 전일제 환산치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 기준이다.

• OECD 산식 (Education at a Glance 기준) = $\frac{\text{재적 학생 수}}{\text{교원 수(교장, 교감, 전문상담, 사서, 보건, 영양, 강사를 제외한 전체 교원 − 휴직교원 및 기간제교원 포함)} \times 100}$

자료 : OECD, OECD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2017

그림 9-22 연도별 · 학교급별 · 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초·중등교육통계편,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9	1년

Checkpoint 초, 중, 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6명, 중학교 11.7명, 고등학교 10.6명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 국공립(14.6명)과 사립(21.5명)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표 9-9 지역별 · 학교급별 · 설립별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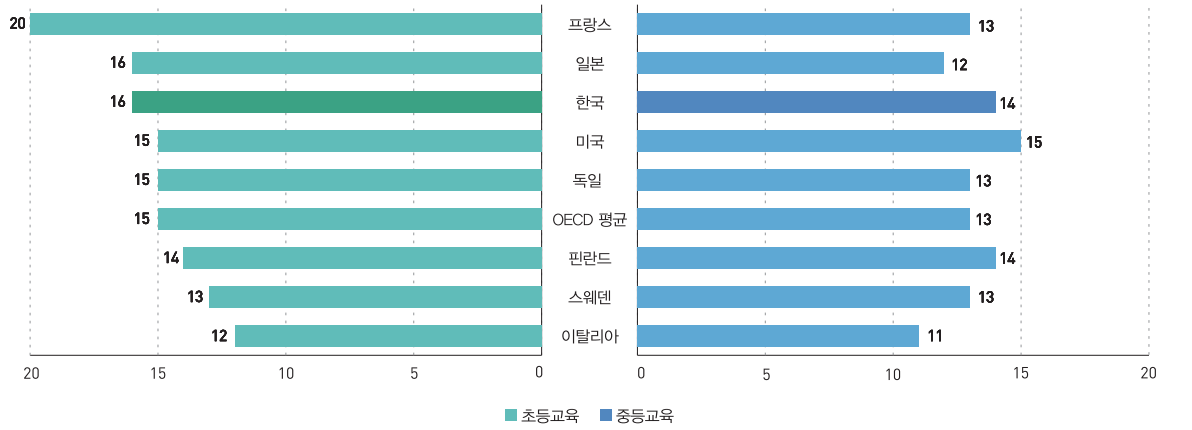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국 · 공립	사립
전체		14.6	14.5	21.5	11.7	11.6	12.2	10.6	10.0	11.6
지역규모	대도시	14.9	14.8	22.0	11.9	11.8	12.2	10.7	9.8	11.5
	중소도시	16.6	16.5	20.5	13.2	13.1	14.1	11.1	10.7	12.1
	읍 · 면지역	11.2	11.2	18.0	8.9	8.8	9.6	9.3	8.7	10.5
	도서벽지	5.4	5.4	-	5.0	5.0	6.6	6.6	6.1	11.0
시도	서울	14.7	14.5	21.7	11.8	11.8	11.8	11.0	9.6	11.9
	부산	15.3	15.3	21.8	11.9	11.9	11.9	10.1	9.9	10.4
	대구	14.0	13.9	28.3	11.2	11.2	13.4	10.5	9.7	11.3
	인천	16.0	16.0	16.4	12.9	12.9	13.1	10.2	9.7	11.5
	광주	14.7	14.5	26.3	11.5	11.5	12.7	11.7	10.8	12.4
	대전	13.8	13.7	23.1	11.7	11.7	10.8	10.3	9.9	10.8
	울산	15.9	15.9	-	11.6	11.6	14.4	10.3	10.3	10.0
	세종	14.3	14.3	-	10.4	10.4	-	9.1	9.1	9.2
	경기	16.5	16.5	19.6	13.4	13.5	12.7	11.1	10.8	11.9
	강원	11.4	11.3	21.5	9.8	9.6	12.0	9.2	8.6	11.5
	충북	13.0	13.0	25.3	10.6	10.4	11.8	10.9	10.2	13.0
	충남	13.2	13.2	15.1	11.2	10.9	12.3	10.6	10.0	12.0
	전북	11.9	11.9	-	10.3	9.6	12.5	10.4	9.1	11.6
	전남	11.7	11.6	18.8	9.1	8.8	10.9	9.3	8.5	10.7
	경북	12.8	12.7	20.8	9.5	8.9	11.4	9.9	8.8	11.2
	경남	14.1	14.1	19.1	11.5	11.3	12.4	10.4	10.0	11.0
	제주	14.5	14.5	-	12.3	11.9	14.6	12.4	10.5	16.7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유 · 초 · 중등교육통계편, 2019

그림 9-23 OECD 주요국의 교육과정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2017)

(단위: 명)



주: 1) 한국, 일본 고등교육 수치: 자료가 수집되지 않거나 무응답
2) 일본의 고등학교과정은 다른 범주의 자료를 포함함.
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2019, 2019

09
대 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A monthly average Private Educational Expenditures per student

지표 정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초 · 중 · 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비용으로 정의된다.

- 사교육비에는 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통신강의(EBS 제외) 등이 포함된다. 사교육비는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형평성 정도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교급별 사교육비 연간총액}}{\text{학교급별 재적 학생 수}} \div 12$

유의사항 고등학생일 경우는 일반계고와 특성화고를 모두 포함하는 값이다.

표 9-10 학교급별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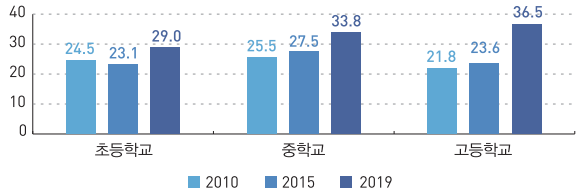
(단위 : 억 원, 만 원, %)

연도	학교급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사교육비 (억 원)	전체	201,266	190,395	185,960	182,297	178,346	180,606	186,223	194,852	209,970
	초등학교	90,461	77,554	77,375	75,949	75,287	77,438	81,195	85,531	95,597
	중학교	60,006	61,162	57,831	55,678	52,384	48,102	48,181	49,972	52,554
	고등학교	50,799	51,679	50,754	50,671	50,675	55,065	56,847	59,348	61,819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24.0	23.6	23.9	24.2	24.4	25.6	27.2	29.1	32.1
	초등학교	24.1	21.9	23.2	23.2	23.1	24.1	25.3	26.3	29.0
	중학교	26.2	27.6	26.7	27.0	27.5	27.5	29.1	31.2	33.8
	고등학교	21.8	22.4	22.3	23.0	23.6	26.2	28.5	32.1	36.5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전체	33.5	34.0	34.7	35.2	35.5	37.8	38.2	39.9	42.9
	초등학교	28.4	27.1	28.3	28.6	28.6	30.2	30.7	31.9	34.7
	중학교	36.8	39.1	38.4	39.1	39.7	43.1	43.2	44.8	47.4
	고등학교	42.2	44.2	45.4	46.4	47.1	49.9	51.0	54.9	59.9
사교육 참여율 (%)	전체	71.7	69.4	68.8	68.6	68.8	67.8	71.2	72.8	74.8
	초등학교	84.6	80.9	81.8	81.1	80.7	80.0	82.7	82.5	83.5
	중학교	71.0	70.6	69.5	69.1	69.4	63.8	67.4	69.6	71.4
	고등학교	51.6	50.7	49.2	49.5	50.2	52.4	55.9	58.5	61.0

주: 2017년 결과는 진로, 진학 학습상담 비용을 포함하여 소급 보정됨.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9-24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10, 2015,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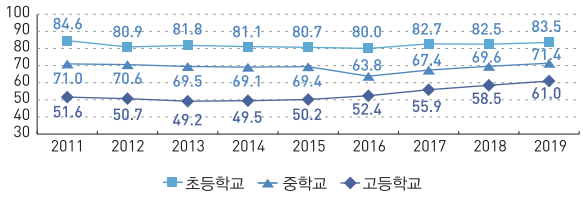
(단위: 만 원)



주: 2017년 결과는 진로, 진학 학습상담 비용을 포함하여 소급 보정됨.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그림 9-25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 참여율 (2011~2019)

(단위: %)



주: 2017년 결과는 진로, 진학 학습상담 비용을 포함하여 소급 보정됨.
자료: 통계청, 초 · 중 · 고 사교육비 조사 보고서,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7	2019	1년

Checkpoint 사교육비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지속적 감소 및 보합세를 보이던 사교육비는 2016년을 기점으로 다시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사교육비 총규모는 약 20조 9천억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2.1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19년 기준 74.8%인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 참여율 증가추세가 뚜렷하다.

09-1
연 관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 of GDP

지표 정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비율(public expenditure on tertiary education as a percentage of GDP)은 교육기관에 정부가 직접 투자한 공교육비와 가계에 지원한 정부보조금(장학금, 학비지원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하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출을 GDP 대비 비중으로 환산한 값으로 정의된다. 이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투자를 알 수 있는 국제지표로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측정 산식

- $\frac{\text{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용}}{\text{GDP}} \times 100$

표 9-11 OECD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2003~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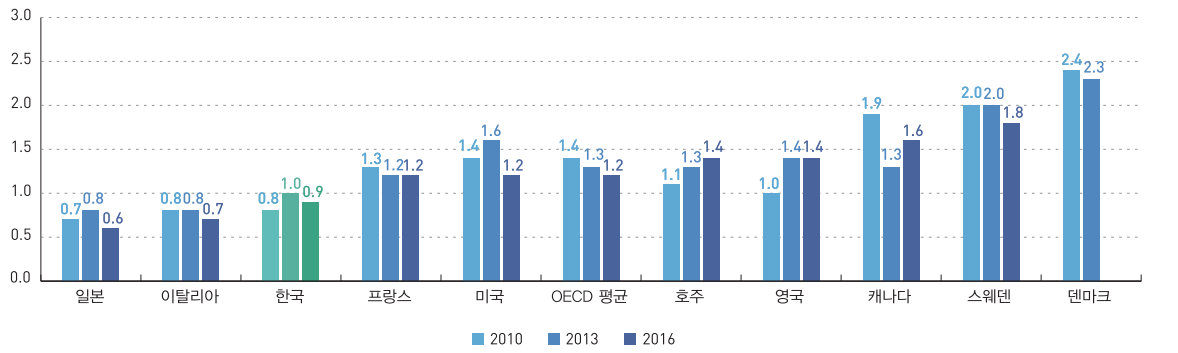
(단위: GDP%)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0.6	0.6	0.6	0.7	0.6	0.7	0.9	0.8	0.8	0.9	1.0	1.1	0.9	0.9
일본	0.6	0.7	0.6	0.6	0.6	0.6	0.8	0.7	0.8	0.8	0.8	0.7	0.7	0.6
호주	1.1	1.1	1.1	1.1	1.0	1.0	1.1	1.1	1.1	1.1	1.3	1.4	1.5	1.4
캐나다	1.7	-	1.7	1.8	1.8	1.7	1.8	1.9	2.0	1.7	1.3	1.7	1.2	1.6
덴마크	2.5	2.5	2.4	2.3	2.3	2.2	2.4	2.4	2.4	2.4	2.3	2.3	-	-
프랑스	1.2	1.2	1.2	1.2	1.2	1.2	1.3	1.3	1.3	1.2	1.2	1.3	1.2	1.2
이탈리아	0.8	0.8	0.8	0.8	0.8	0.8	0.9	0.8	0.8	0.8	0.8	0.8	0.8	0.7
스웨덴	2.2	2.1	1.9	1.9	1.8	1.8	2.0	2.0	2.0	1.9	2.0	1.9	1.9	1.8
영국	1.1	1.0	1.2	1.1	0.9	0.8	0.8	1.0	1.3	1.4	1.4	1.3	1.3	1.4
미국	1.5	1.3	1.3	1.4	1.2	1.3	1.3	1.4	1.3	1.5	1.6	1.4	1.3	1.2
OECD 평균	1.3	1.3	1.3	1.3	1.2	1.3	1.4	1.4	1.4	1.3	1.3	1.3	1.2	1.2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각 연도

그림 9-26 OECD 주요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정부부담 교육비 비율 (2010, 2013, 2016)

(단위: GDP%)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2	2019	1년

10 대 표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Proportion of Students who have a loan

지표 정의

재학생 수 대비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을 의미한다.

- 소득 차이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중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 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 2005년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시행되었던 학자금 대출제도는 2009년 대폭 정비되어 국가장학금 사업과 학자금 대출사업을 총괄하는 기구로서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되었고, 일반상환제도와 함께 취업 후 상환제도가 도입되었다.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실소요액과 생활비 등을 대출해 주고 상환 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 징수 폐지 등을 통해 학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 또한 지속되고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text{재학생 수}} \times 100$

표 9-12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대학 + 전문대학): 등록금 + 생활비 (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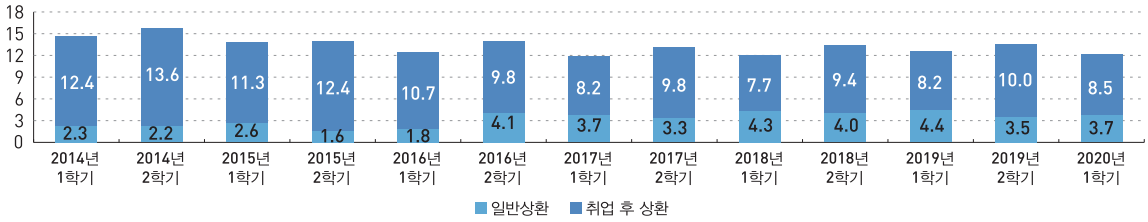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4년 1학기	2,322,503	53,345	2.30	288,914	12.44	342,259	14.74
2014년 2학기	2,155,239	47,363	2.20	292,403	13.57	339,766	15.76
2015년 1학기	2,290,572	59,690	2.61	257,857	11.26	317,547	13.86
2015년 2학기	2,111,058	33,140	1.57	261,541	12.39	294,681	13.96
2016년 1학기	2,233,832	40,106	1.80	239,431	10.72	279,537	12.51
2016년 2학기	2,330,575	96,029	4.12	227,651	9.77	323,680	13.89
2017년 1학기	2,183,155	80,358	3.68	179,741	8.23	260,099	11.91
2017년 2학기	2,020,379	66,414	3.29	197,009	9.75	263,423	13.04
2018년 1학기	2,166,767	92,433	4.26	167,725	7.74	260,158	12.00
2018년 2학기	2,026,485	80,555	3.98	189,617	9.36	270,172	13.33
2019년 1학기	2,154,579	93,978	4.36	177,608	8.24	271,586	12.61
2019년 2학기	2,019,683	70,765	3.50	202,168	10.01	272,933	13.51
2020년 1학기	2,139,570	78,210	3.66	180,913	8.46	259,123	12.11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그림 9-27 학자금 대출 유형별 이용률(대학+전문대학, 등록금+생활비) (2014년 1학기~2020년 1학기)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학자금 대출 현황 (내부자료)*	2008	2020	6개월

*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도 통계구득 가능

Checkpoint 최근 대학 학자금 대출 중 일반상환 이용률은 4%, 취업 후 상환 이용률은 10%대로 나타난다. 전체(일반상환 + 취업 후 상환) 대학 학자금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1학기 보다 2학기에 조금 높은 편이다. 다만, 일반상환은 1학기에 높고, 취업 후 상환은 2학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최근 5년간 일반상환과 취업 후 상환 모두 전문대학 이용률이 대학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9-13 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등록금 + 생활비 (2014~2020)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4년 1학기	1,825,623	39,863	2.18	205,410	11.25	245,273	13.44
2014년 2학기	1,684,826	36,626	2.17	206,110	12.23	242,736	14.41
2015년 1학기	1,800,475	42,477	2.36	185,936	10.33	228,413	12.69
2015년 2학기	1,654,047	25,756	1.56	186,091	11.25	211,847	12.81
2016년 1학기	1,755,259	29,062	1.66	173,010	9.86	202,072	11.51
2016년 2학기	1,883,393	82,214	4.37	163,647	8.69	245,861	13.05
2017년 1학기	1,715,784	55,823	3.25	132,765	7.74	188,588	10.99
2017년 2학기	1,585,303	48,748	3.07	141,869	8.95	190,617	12.02
2018년 1학기	1,704,144	65,440	3.84	124,302	7.29	189,742	11.13
2018년 2학기	1,592,401	59,742	3.75	137,608	8.64	197,350	12.39
2019년 1학기	1,691,711	68,765	4.06	130,259	7.70	199,024	11.76
2019년 2학기	1,582,163	53,729	3.40	145,416	9.19	199,145	12.58
2020년 1학기	1,682,711	58,508	3.48	133,828	7.95	192,336	11.83

자료: 교육부, 내부자료

표 9-14 전문대학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등록금 + 생활비 (2014~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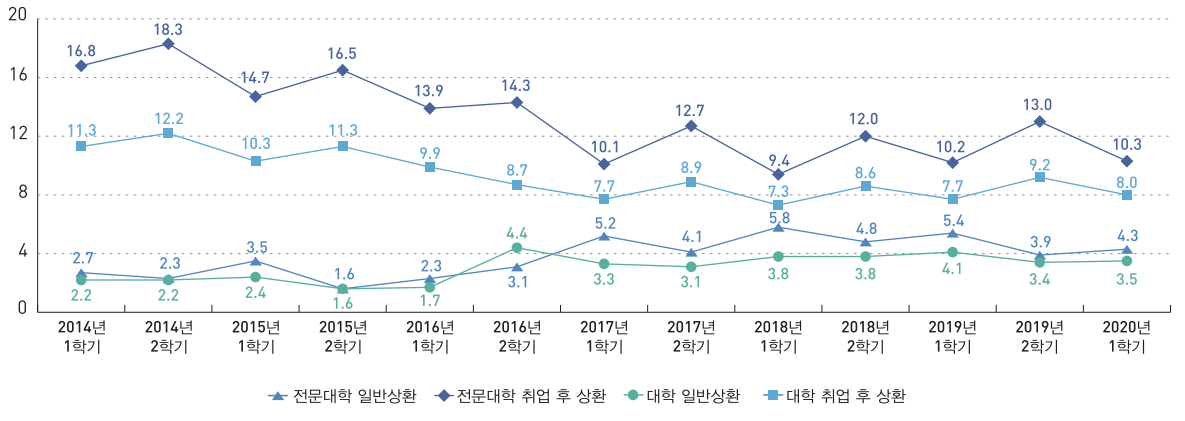
(단위: 명, %)

학기	재학생 수 (A)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인원 (B)	이용률 (B/A*100)	인원 (C)	이용률 (C/A*100)	인원(D)	이용률 (D/A*100)
2014년 1학기	496,880	13,482	2.71	83,504	16.81	96,986	19.52
2014년 2학기	470,413	10,737	2.28	86,293	18.34	97,030	20.63
2015년 1학기	490,097	17,213	3.51	71,921	14.67	89,134	18.19
2015년 2학기	457,011	7,384	1.62	75,450	16.51	82,834	18.13
2016년 1학기	478,573	11,044	2.31	66,421	13.88	77,465	16.19
2016년 2학기	447,182	13,815	3.09	64,004	14.31	77,819	17.40
2017년 1학기	467,371	24,535	5.25	46,976	10.05	71,511	15.30
2017년 2학기	435,076	17,666	4.06	55,140	12.67	72,806	16.73
2018년 1학기	462,623	26,993	5.83	43,423	9.39	70,416	15.22
2018년 2학기	434,084	20,813	4.79	52,009	11.98	72,822	16.78
2019년 1학기	462,868	25,213	5.45	47,349	10.23	72,562	15.68
2019년 2학기	437,520	17,036	3.89	56,752	12.97	73,788	16.87
2020년 1학기	456,859	19,702	4.31	47,085	10.31	66,787	14.62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그림 9-28 학자금 대출 유형별 이용률(2014년 1학기~2020년 1학기)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10-1
연 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

Amount of Loan per Student who has a loan

지표 정의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1인당 대출 금액을 의미한다.

-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은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과 더불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정도를 보여준다.

측정 산식

- $\frac{\text{학자금 대출 금액 총액}}{\text{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수}}$

표 9-15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등록금 + 생활비 (2014~2020)

(단위: 명, 천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4년 1학기	53,345	178,403,771	288,914	868,966,294	342,259	1,047,370,065	3,344	3,008	3,060
2014년 2학기	47,363	141,480,606	292,403	757,249,389	339,766	898,729,995	2,987	2,590	2,645
2015년 1학기	59,690	198,925,175	257,857	735,954,178	317,547	934,879,353	3,333	2,854	2,944
2015년 2학기	33,140	96,726,567	261,541	624,743,989	294,681	721,470,556	2,919	2,389	2,448
2016년 1학기	40,106	130,757,283	239,431	650,438,157	279,537	781,195,440	3,260	2,717	2,795
2016년 2학기	96,029	344,289,024	227,651	535,688,564	323,680	879,977,588	3,585	2,353	2,719
2017년 1학기	80,358	250,865,414	179,741	455,538,306	260,099	706,403,720	3,122	2,534	2,716
2017년 2학기	66,414	166,767,117	197,009	441,551,762	263,423	608,318,879	2,511	2,241	2,309
2018년 1학기	92,433	291,234,620	167,725	411,601,716	260,158	702,836,336	3,151	2,454	2,702
2018년 2학기	80,555	216,630,037	189,617	419,118,578	270,172	635,748,616	2,689	2,210	2,353
2019년 1학기	93,978	281,714,560	177,608	425,411,739	271,586	707,126,299	2,998	2,395	2,604
2019년 2학기	53,729	150,141,922	145,416	324,629,746	199,145	474,771,668	2,794	2,232	2,384
2020년 1학기	58,508	178,857,488	133,828	322,376,724	192,336	501,234,212	3,057	2,409	2,606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학자금 대출 현황 (내부자료)*	2008	2020	6개월

*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에서도 통계구득 가능

Checkpoint

국가장학금 규모 확대 등에 따라 학자금 대출 규모는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다만, 2016년 2학기 대출제도 선택제 도입의 영향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증가한 반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감소하였다. 또한 2018년 1학기 일반상환 생활비 대출한도 확대(학기당 100만 원→150만 원)의 영향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였다.

표 9-16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대학 (2014~2020)

(단위: 명, 천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4년 1학기	39,863	135,021,229	205,410	614,539,020	245,273	749,560,249	3,387	2,992	3,056
2014년 2학기	36,626	112,818,178	206,110	544,826,514	242,736	657,644,692	3,080	2,643	2,709
2015년 1학기	42,477	142,194,514	185,936	525,757,957	228,413	667,952,471	3,348	2,828	2,924
2015년 2학기	25,756	77,425,123	186,091	452,617,154	211,847	530,042,277	3,006	2,432	2,502
2016년 1학기	29,062	95,662,780	173,010	466,253,890	202,072	561,916,670	3,292	2,695	2,781
2016년 2학기	82,214	310,865,257	163,647	390,124,079	245,861	700,989,336	3,781	2,384	2,851
2017년 1학기	55,823	174,227,542	132,765	332,729,254	188,588	506,956,796	3,121	2,506	2,688
2017년 2학기	48,748	122,925,714	141,869	322,757,577	190,617	445,683,291	2,522	2,275	2,338
2018년 1학기	65,440	206,734,881	124,302	303,098,464	189,742	509,833,345	3,159	2,438	2,687
2018년 2학기	59,742	165,213,518	137,608	309,302,680	197,350	474,516,198	2,765	2,248	2,404
2019년 1학기	68,765	208,750,050	130,259	311,560,775	199,024	520,310,826	3,036	2,392	2,614
2019년 2학기	53,729	150,141,922	145,416	324,629,746	199,145	474,771,668	2,794	2,232	2,384
2020년 1학기	58,508	178,857,488	133,828	322,376,724	192,336	501,234,212	3,057	2,409	2,606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표 9-17 학생 1인당 학자금 대출 금액 : 전문대학 (2014~2020)

(단위: 명, 천 원)

학기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1인당 대출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전체
2014년 1학기	13,482	43,382,542	83,504	254,427,274	96,986	297,809,816	3,218	3,047	3,071
2014년 2학기	10,737	28,662,428	86,293	212,422,875	97,030	241,085,303	2,670	2,462	2,485
2015년 1학기	17,213	56,730,661	71,921	210,196,221	89,134	266,926,882	3,296	2,923	2,995
2015년 2학기	7,384	19,301,444	75,450	172,126,835	82,834	191,428,279	2,614	2,281	2,311
2016년 1학기	11,044	35,094,503	66,421	184,184,267	77,465	219,278,770	3,178	2,773	2,831
2016년 2학기	13,815	33,423,767	64,004	145,564,485	77,819	178,988,252	2,419	2,274	2,300
2017년 1학기	24,535	76,637,872	46,976	122,809,052	71,511	199,446,924	3,124	2,614	2,789
2017년 2학기	17,666	40,249,610	55,140	118,794,185	72,806	159,043,795	2,278	2,154	2,184
2018년 1학기	26,993	84,499,739	43,423	108,503,252	70,416	193,002,991	3,130	2,499	2,741
2018년 2학기	20,813	51,416,519	52,009	109,815,899	72,822	161,232,418	2,470	2,111	2,214
2019년 1학기	25,213	72,964,509	47,349	113,850,964	72,562	186,815,473	2,894	2,405	2,575
2019년 2학기	17,036	43,123,910	56,752	118,681,620	73,788	161,805,530	2,531	2,091	2,193
2020년 1학기	19,624	57,256,965	46,924	111,355,943	66,548	168,612,908	2,918	2,373	2,534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11 대 표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

Amount of National Scholarship per Student

지표 정의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의미한다.

• 이 지표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 경제적으로 불리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 국가장학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정액 차등 지원하는 유형(Ⅰ유형)과 등록금 동결 · 인하,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유형(Ⅱ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에는 셋째 아이 이상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자녀유형이 신설되었다.

* 국가장학금은 Ⅰ유형, Ⅱ유형 및 다자녀유형 모두 기초수급자 ~ 8분위 이하 학생을 대상(저소득층 학생 수 데이터가 확보 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수로 대체 가능)으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율은 저소득층 학생들 중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의 비율이고, 국가장학금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가장학금 수혜학생 1인당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말한다.

*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장학사정관제를 통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소득 · 성적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하다.

측정 산식

• $\frac{\text{국가장학금 지원액}}{\text{실 수혜인원}}$

표 9-18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2019년 2학기)

(단위 : 명, 백만 원)

학기 / 소득구분	Ⅰ유형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장학금			Ⅱ유형			합계(인원건수)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기초	34,005	78,001	2.29	7,801	18,611	2.39	11,130	8,278	0.74	42,764	104,889	2.45
1분위	130,197	296,761	2.28	29,903	71,021	2.38	58,426	36,573	0.63	163,318	404,355	2.48
2분위	75,488	174,575	2.31	17,940	42,679	2.38	34,189	19,466	0.57	95,240	236,720	2.49
3분위	78,331	180,929	2.31	18,583	44,333	2.39	36,159	19,732	0.55	98,676	244,995	2.48
4분위	61,921	112,707	1.82	15,170	32,099	2.12	39,410	21,668	0.55	79,705	166,473	2.09
5분위	29,398	50,892	1.73	7,369	15,649	2.12	19,326	9,688	0.50	37,956	76,230	2.01
6분위	86,392	150,296	1.74	21,469	45,535	2.12	54,574	24,166	0.44	110,694	219,997	1.99
7분위	46,612	27,622	0.59	13,607	28,882	2.12	33,902	17,658	0.52	61,782	74,162	1.20
8분위	101,223	34,086	0.34	32,089	68,031	2.12	74,202	35,753	0.48	136,297	137,870	1.01
9분위	-	-	-	0	0	0.00	304	828	2.72	304	828	2.72
10분위	-	-	-	0	0	0.00	458	1,329	2.90	458	1,329	2.90
합계	643,567	1,105,868	1.72	163,931	366,839	2.24	362,080	195,140	0.54	827,194	1,667,848	2.02

주: 중복수혜가 가능한 Ⅰ유형과 Ⅱ유형, Ⅱ유형과 다자녀장학금을 고려하여, 중복수혜인원을 제거한 합계임.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내부자료)	2012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2학기 학생 1인당 국가장학금 수혜금액은 소득 1분위 2.48백만 원, 소득 8분위 1.01백만 원으로, 전체 평균 약 2.90백 만으로 나타난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가장학금 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소득수준 및 성적 등의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장학금 정책기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표 9-19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2018~2019)

(단위: 명, 백만 원)

학기 / 소득구분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수혜인원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금액
기초	49,249	120,819	2.45	44,312	109,105	2.46	46,993	114,881	2.44	42,764	104,889	2.45
1분위	183,152	456,286	2.49	169,316	427,938	2.53	175,200	433,856	2.48	163,318	404,355	2.48
2분위	103,119	257,347	2.50	100,303	255,703	2.55	99,020	246,193	2.49	95,240	236,720	2.49
3분위	101,419	251,845	2.48	99,678	255,179	2.56	99,703	246,340	2.47	98,676	244,995	2.48
4분위	87,750	181,414	2.07	81,742	184,067	2.25	87,160	180,326	2.07	79,705	166,473	2.09
5분위	41,443	82,574	1.99	38,735	85,845	2.22	41,572	83,102	2.00	37,956	76,230	2.01
6분위	77,995	153,929	1.97	75,092	166,315	2.21	116,606	230,568	1.98	110,694	219,997	1.99
7분위	102,353	115,756	1.13	92,892	144,335	1.55	69,300	79,820	1.15	61,782	74,162	1.20
8분위	137,910	130,244	0.94	132,490	170,532	1.29	143,514	142,639	0.99	136,297	137,870	1.01
9분위	1,344	2,875	2.14	1,082	2,930	2.71	464	1,284	2.77	304	828	2.72
10분위	1,849	4,439	2.40	1,847	4,982	2.70	788	2,305	2.93	458	1,329	2.90
합계	887,583	1,757,527	1.98	837,489	1,806,930	2.16	880,320	1,761,314	2.00	827,194	1,667,848	2.02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0

표 9-20 국가장학금 신청대비 수혜율 (2014~2019)

(단위: %)

학기 / 유형구분	2014년 1학기	2014년 2학기	2015년 1학기	2015년 2학기	2016년 1학기	2016년 2학기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2019년 1학기	2019년 2학기
Ⅰ 유형(전체)	41.14	40.13	37.65	36.67	38.81	38.16	39.47	36.04	32.07	29.68	31.65	29.67
Ⅱ 유형(전체)	25.23	23.65	20.61	25.36	20.21	22.90	21.05	23.54	18.06	20.07	18.27	16.70
다자녀 (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	1.06	0.85	1.63	1.32	2.10	1.77	2.45	2.10	8.21	7.26	8.41	7.56
합계	67.43	64.63	59.89	63.35	61.12	62.84	62.97	61.68	58.34	57.01	58.34	53.93

주: 국가장학금 수혜율 = 국가장학금 수혜인원 / 국가장학금 신청인원 × 100

자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내부자료), 2020

12 대 표

고등교육기관 입학생 중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The percentage of Students Selected by the equality of opportunity among Tertiary New Entrants

지표 정의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 입학자 수 대비 기회균형 선발학생 수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내 또는 정원 외로 일정한 비율을 할당하고 있다. 이 지표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기관 및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준다.

측정 산식

- $\frac{\text{기회균형 선발학생 수(정원 내외)}}{\text{총 입학자 수}} \times 100$

표 9-21 기회균형 선발 현황 (201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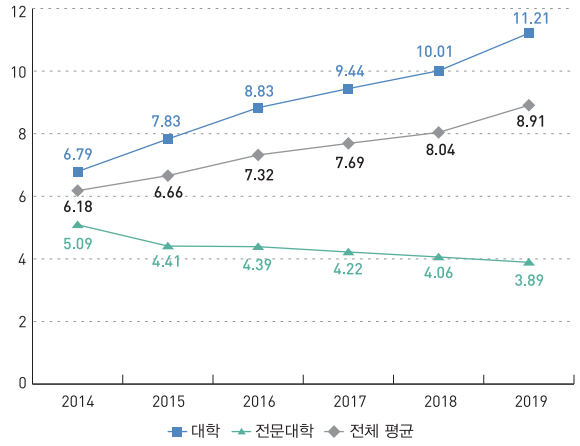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균형 선발학생 (B)	비율 (B/A*100)
대학	389,319	34,366	8.83	382,187	36,070	9.44	382,511	38,291	10.01	380,265	42,638	11.21
전문대학	201,285	8,845	4.39	192,135	8,115	4.22	188,604	7,650	4.06	174,221	6,784	3.89
합계	590,604	43,211	7.32	574,322	44,185	7.69	571,115	45,941	8.04	554,486	49,422	8.91

주: 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2,3,4년제), 기능대학 포함. 대학에는 대학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포함. 2015년 대학원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항목 삭제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1.25. 추출)

그림 9-29 기회균형 선발 비율 (2014~2019)

(단위: %)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1.25. 추출)

표 9-22 지역별 · 설립별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현황 (2019)

(단위: 명, %)

구분	국공립			사립			계		
	총 입학자 (A)	기회 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 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총 입학자 (A)	기회 균형 선발 학생 (B)	비율 (B/A*100)
수도권	28,530	2,247	7.9	160,301	14,506	9.0	188,831	16,753	8.9
비수도권	67,065	10,059	15.0	219,964	28,132	12.8	287,029	38,191	13.3
합계	95,595	12,306	12.9	380,265	42,638	11.2	475,860	54,944	11.5

주: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일컬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 외 지역임. 국공립은 공립, 국립, 국립대법인, 특별법국립을 포함
자료: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 (http://www.academyinfo.go.kr에서 2020.12.31. 추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대학공시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	2008	2019	1년

Checkpoint

기회균형 선발은 정원 외와 정원 내로 구분된다. 정원 외 선발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졸 재직자, 농어촌지역학생, 기타(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서해5도 학생 등)가 포함되며, 정원 내 선발에는 고른기회대상과 대학독자기준이 포함된다. 2019년 기회균형 선발 비율은 8.91%였고, 최근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전문대학은 완만하게 감소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3 대 표

고등교육 이수율

Tertiary Education Attainment

지표 정의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고등교육 기회에의 접근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고등교육의 이수이다.
한 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정도는 연령대별 총인구 중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고등교육 이수율)로 파악할 수 있다.

- OECD에서는 25세~64세 인구를 성인층으로, 그 중에서도 25세~34세 인구를 청년층, 55세~64세 인구를 장년층으로 구분한다. 고등교육은 단기고등교육(전문대학 과정)과 대학(학사),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과정으로 구분하며, 단기고등교육은 전문대학, 각종 학교 · 기술대학 · 사내대학(전문대학과정), 전공대학, 기능대학이 해당된다. 대학(학사)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각종 학교 · 기술대학 · 사내대학(대학과정), 전문대학 · 기능대학(학사학위 심화과정)이 포함되며, 대학원(석사)은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석사과정)이, 대학원(박사)은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박사과정)이 해당된다.

측정 산식

- $\dfrac{\text{해당 연령 고등교육 이수자 수}}{\text{해당 연령 전체 인구수}} \times 100$

표 9-23 고등교육 이수 인구 비율 (2015~2019)

(단위: %)

구분	국가	단기고등교육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고등교육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5~64세	25~34세	55~64세
2015	한국	13.0	22.4	3.8	32.3	46.5	14.5	-	-	-	-	-	-	45.4	68.9	18.3
	OECD 평균	7.5	7.6	6.9	16.1	22.0	10.9	11.2	13.3	8.3	1.0	0.7	0.9	34.0	41.4	25.3
2016	한국	13.1	22.2	4.0	33.5	47.6	15.6	-	-	-	-	-	-	46.6	69.9	19.7
	OECD 평균	7.1	7.1	6.7	16.6	22.7	11.3	12.1	14.1	8.9	1.0	0.7	0.9	35.0	42.5	26.2
2017	한국	13.5	21.4	4.3	34.2	48.3	17.0	-	-	-	-	-	-	47.7	69.8	21.3
	OECD 평균	7.3	7.6	7.0	17.1	23.3	11.4	12.2	14.1	8.7	1.1	0.8	1.0	35.8	43.3	26.3
2018	한국	13.7	21.0	4.7	30.7	45.3	14.5	4.7	3.2	3.8	-	-	-	49.0	69.6	23.1
	OECD 평균	7.2	7.8	7.0	17.5	23.7	11.7	12.7	14.3	9.3	1.1	0.8	1.0	36.9	44.1	27.4
2019	한국	13.9	20.9	5.0	31.5	45.6	16.0	4.6	3.3	3.4	-	-	-	50.0	69.8	24.4
	OECD 평균	7.2	7.8	7.2	17.9	24.1	11.9	13.4	14.7	9.9	1.2	0.9	1.0	38.0	44.9	28.4

주: 우리나라는 2015~2017년에는 석박사과정이 학사과정에 포함되었으며, 2018~2019년에는 박사과정이 석사과정에 포함되었음.
자료: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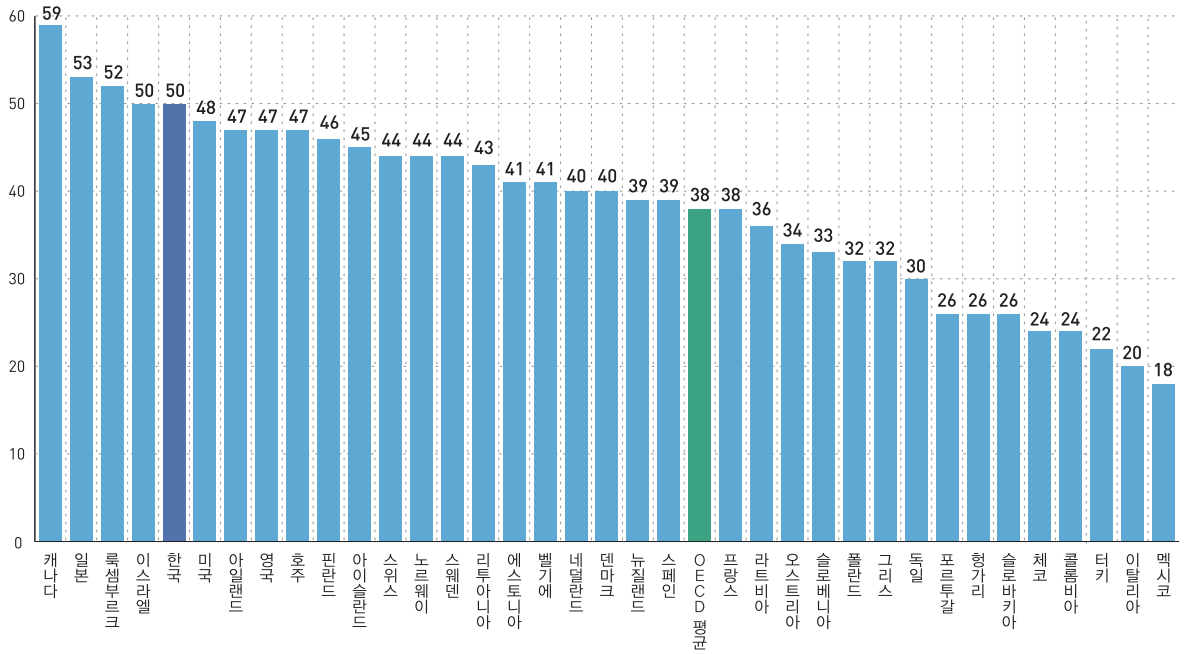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OECD 교육지표	1963	2019	1개월

Checkpoint 우리나라 25~6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2019년 50.0%로 OECD 평균 38.0%와 비교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단기고등교육 13.9%, 학사과정 31.5%인 반면 OECD 평균은 각각 7.2%, 17.9%로 차이를 보였고, 25~34세 연령대의 경우 단기고등교육 20.9%, 학사과정 45.6%인 반면 OECD 평균은 각각 7.8%, 24.1%로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9-30 OECD 주요국의 고등교육 이수율 (2019)

(단위: %)



주: 1) 일본은 다른 범주의 자료도 포함된 수치임.
2) 2019년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국가 순으로 내림차순정렬

자료: OECD Stat, Educational attainment 25-64 years-old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93190#에서 2021.2.5. 인출)

14
대 표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

An Overview of High School Student Educational Benefit in Single Parent Family : Provision and Expenditure

지표 정의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업단절 또는 중단의 위기에 직면한 한부모가족의 고교생자녀 또는 청소년한부모 중 고교생에게 지급된 교육비(수업료, 입학금)를 산출한 값이다.

측정 산식

•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52% 초과 60% 이하인 가구,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72% 이하의 가구에게 고교생학비를 지원한 건수 및 지원 금액 (2019년 기준)

(단위: 원/월)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표 9-24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2013~2019)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건 수	135,710	145,915	126,453	40,940	33,007	22,431	18,193

주: 각 연도 12월 기준

표 9-25 시도별 월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 (2019)

(단위: 건)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울	4	0	746	100	8	609	62	9	706	46	0	694	2,984
부산	0	0	304	7	1	295	2	0	256	35	0	274	1,174
대구	0	1	309	3	1	315	0	1	330	0	0	314	1,274
인천	0	0	11	0	0	5	0	0	0	5	0	5	26
광주	2	0	0	68	70	15	44	89	22	6	118	142	576
대전	1	0	83	114	0	109	62	0	78	44	58	149	698
울산	1	0	608	148	0	665	8	142	664	141	1	813	3,191
세종	0	0	0	0	0	0	0	0	0	0	0	0	0
경기	4	2	905	252	30	810	199	67	800	210	12	983	4,274
강원	0	0	124	56	5	176	1	4	171	3	0	161	701
충북	0	0	88	2	3	68	5	5	73	0	6	61	311
충남	0	0	1	1	1	1	1	0	1	0	0	1	7
전북	0	0	122	23	4	134	4	0	121	17	6	137	568
전남	0	0	87	18	47	22	32	73	78	70	8	137	572
경북	2	0	113	87	17	100	87	15	136	43	17	185	802
경남	0	0	202	70	4	164	90	5	190	56	11	241	1,033
제주	0	0	1	0	0	0	0	0	0	0	0	1	2
합계	14	3	3,704	949	191	3,488	597	410	3,626	676	237	4,298	18,193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사회보장정보원	한부모가족고교생학비지원현황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010	2019	1년

Checkpoint 전년 대비 2019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고교생학비 지원 건수는 18,193건으로 전년 대비 18.9%가 감소하였고, 지원금액은 약 16억으로 전년 대비 19.1%가 감소하였다.

표 9-26 시도별 · 월별 한부모가족 고교생학비 지원금액 (2019)

(단위: 천 원)

시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서울	651	0	139,481	17,916	920	137,944	14,110	2,795	153,200	8,856	0	152,887	628,761
부산	0	0	22,986	665	46	23,607	117	0	19,939	3,067	0	20,717	91,145
대구	0	47	22,826	298	40	25,340	0	322	26,508	0	0	24,843	100,222
인천	0	0	722	0	0	412	0	0	0	412	0	412	1,957
광주	135	0	0	4,460	4,285	1,007	2,958	13,702	1,609	364	8,122	9,687	46,329
대전	234	0	6,409	10,548	0	9,647	6,775	0	6,191	3,263	6,440	13,852	63,359
울산	65	0	39,076	7,985	0	47,874	642	17,548	47,259	8,483	20	54,206	223,158
세종	337	156	48,491	13,818	1,066	57,664	14,617	8,191	57,111	14,741	548	70,671	287,411
경기	0	0	5,244	2,044	95	7,660	46	282	7,050	87	0	7,092	29,601
강원	0	0	5,133	91	110	4,151	150	635	4,340	0	259	3,736	18,605
충북	0	0	62	62	0	62	62	0	62	0	0	62	369
충남	0	0	8,319	1,045	172	10,011	217	0	8,170	900	234	8,623	37,692
전북	0	0	3,668	790	2,035	974	1,358	6,225	4,061	3,467	328	6,140	29,046
전남	87	0	5,391	4,187	743	5,090	4,222	1,393	6,512	2,115	737	8,931	39,409
경북	0	0	9,578	3,293	167	8,893	5,032	224	9,623	2,741	596	12,193	52,341
경남	0	0	45	0	0	0	0	0	0	0	0	28	72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1,509	203	317,431	67,201	9,680	340,335	50,307	51,316	351,634	48,497	17,284	394,080	1,649,477

10

문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02 연간 독서량

03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0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05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06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07 생활체육 참여율

08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09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10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11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12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13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14 GDP 대비 문화예산

15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10 문화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문화 향유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연간 독서량	연간 독서율
문화 접근성 (인프라)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문화 참여	연간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	
	생활체육 참여율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문화 교육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문화 복지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GDP 대비 문화예산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Highlight

국민의 여가시간 확대를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문화향유를 위한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여가활동에 사용하는 비용과 시간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활동을 위한 시간과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공공문화시설을 무료로 개방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들이 문화시설을 관람 또는 방문함으로써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 등에서는 문화와 여가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 체육지도자사업,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문화생활에서 소외되고 있는 대상들에게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예술지원강사사업과 지방문화원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과 어르신들 등 다양한 연령층에게 문화예술활동을 배우고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휴가기간에 여행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생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문화인프라, 문화활동 참여와 관련된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정도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수요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문화관련 통계지표들이 2년 이상의 주기가 많았지만, 최근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통계작성 주기가 1년 단위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 현재 81.8%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77.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분야의 관람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66.6%로 2010년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25.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도 24.9%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문화시설 수는 2019년 현재 100만 명당 52.6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 현재 100만 명당 582.2개까지 증가하였다.

시설수 증가와 더불어 예술공간 이용률이 69.2%, 이용횟수가 7.6회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창작·발표)활동 참여율도 2010년 2.2회에서 2019년 10.4로 증가하여, 문화공간과 창작활동 등 직접 참여하는 비율도 증가하였다.

문화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문화향유율과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인프라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예술분야와 특정 문화활동 위주로 문화향유와 참여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더 다양한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01 대 표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Visiting rate of Annual Culture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만 15세 이상의 국민이 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를 관람한 응답자의 비율로 정의한다.

- 최소한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의 비율을 통하여 성별, 도시규모별, 소득수준별, 연령별 문화예술 향유 기회의 격차가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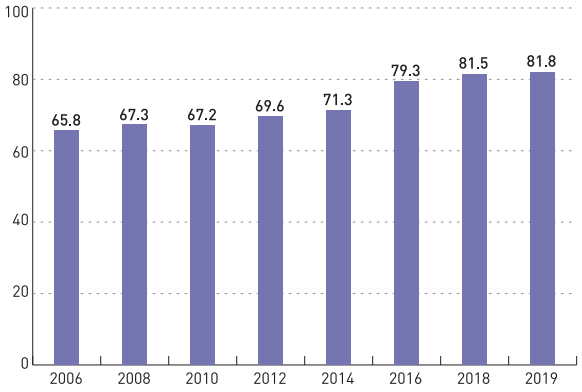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1회 이상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통계청 사회조사와 유사한 지표처럼 보이나 질문 방식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 다른 지표이다.

그림 10-1 연도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표 10-1 연도별 · 분야별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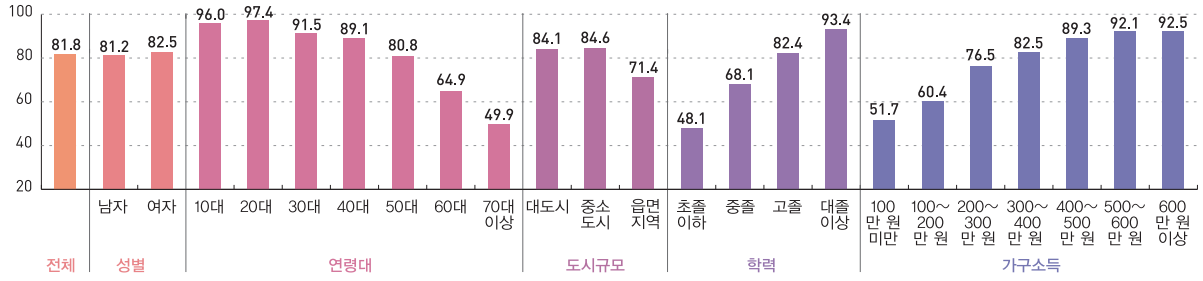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문학행사	4.4	4.0	3.8	6.1	6.2	5.8	8.9	6.7
미술전시회	6.8	8.4	9.5	10.2	10.6	12.8	15.3	13.5
서양음악	3.6	4.9	4.4	4.8	4.9	4.5	5.5	6.1
전통예술	4.4	4.4	5.7	6.5	5.7	7.6	9.3	10.3
연극	8.1	11.0	11.2	11.8	12.6	13.0	14.4	14.9
뮤지컬				11.5	11.5	10.2	13.0	13.5
무용	1.4	0.7	1.4	2.0	2.4	1.3	1.7	2.4
영화	60.3	58.9	60.3	64.4	65.8	73.3	75.8	77.0
대중음악/연예	7.6	10.0	7.6	13.5	14.4	14.6	21.1	23.3
역사 ·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	-	-	-	-	-	11.4	-	-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만 '역사 ·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그림 10-2 일반 특성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2019)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19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Checkpoint 연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최근 10년 넘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문화향유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화관람률이 77%로 다른 분야보다 월등히 높아 국민들이 분야별 문화향유의 편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관람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학력, 소득에 있어 문화향유의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01-1
연 관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Annual Average the Visiting Number of Culture Arts Events

지표 정의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는 지난 1년 동안 직접 관람한 문화예술행사(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연예)의 평균 횟수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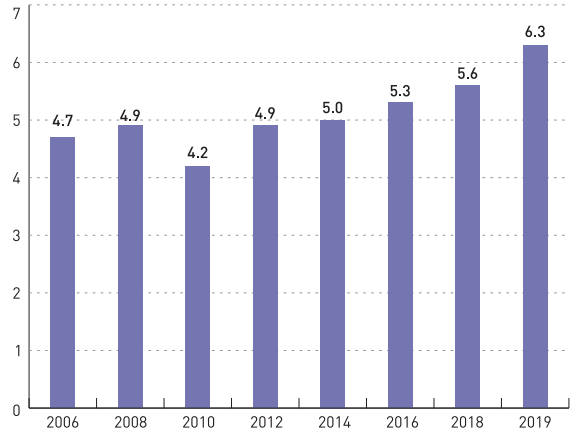
-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횟수를 파악하여, 실제 문화향유를 하는 정도를 지역별,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문화예술 향유 빈도 격차 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것으로 응답한 사람의 전체 횟수}}{\text{15세 이상 대상자 수}} \times 100$$

그림 10-3 연도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06~2019)

(단위: 회)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만 '역사,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표 10-2 연도별 분야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0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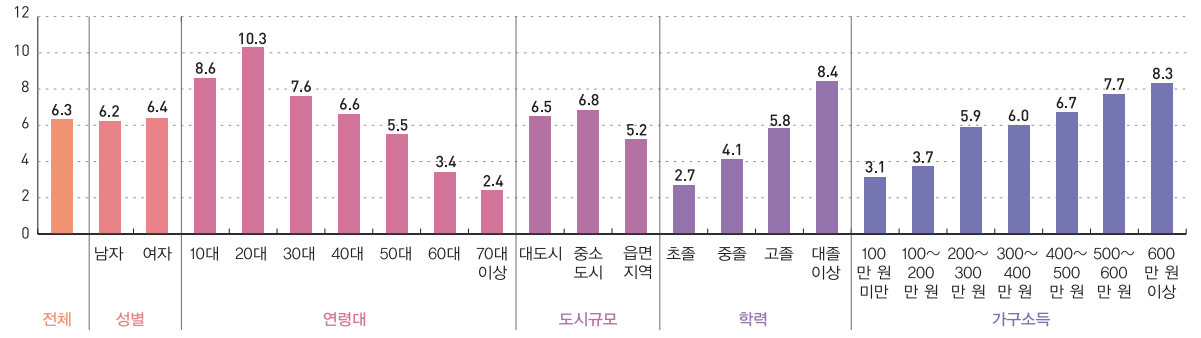
(단위: 회)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문학행사	0.10	0.10	0.10	0.10	0.10	0.12	0.20	0.12
미술전시회	0.20	0.20	0.20	0.20	0.20	0.29	0.30	0.27
서양음악	0.10	0.10	0.10	0.10	0.10	0.08	0.10	0.11
전통예술	0.10	0.10	0.10	0.10	0.10	0.14	0.20	0.18
연극	0.20	0.20	0.20	0.20	0.20	0.23	0.30	0.31
뮤지컬					0.20	0.17	0.20	0.23
무용	0.01	0.03	0.04	0.04	0.05	0.04	0.03	0.06
영화	3.86	4.00	3.30	3.60	3.60	3.70	4.00	4.56
대중음악/연예	0.20	0.10	0.10	0.30	0.50	0.53	0.30	0.48
역사 · 철학강의 및 역사탐방	-	-	-	-	-	0.25	-	-

주: 1) 2012년 조사부터 연극과 뮤지컬을 별도로 조사하였으며, 2016년 조사에만 '역사 · 철학 관련 강의 및 역사탐방'이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그림 10-4 일반 특성별 연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 횟수 (2019)

(단위: 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19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02 대 표

연간 독서량

Annual Quantity of Reading

지표 정의

연간 독서량*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읽은 종이책(일반도서 기준)의 평균 독서 권수로 정의한다.

- 연간 독서량을 통해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의 독서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서의 패턴의 변화추이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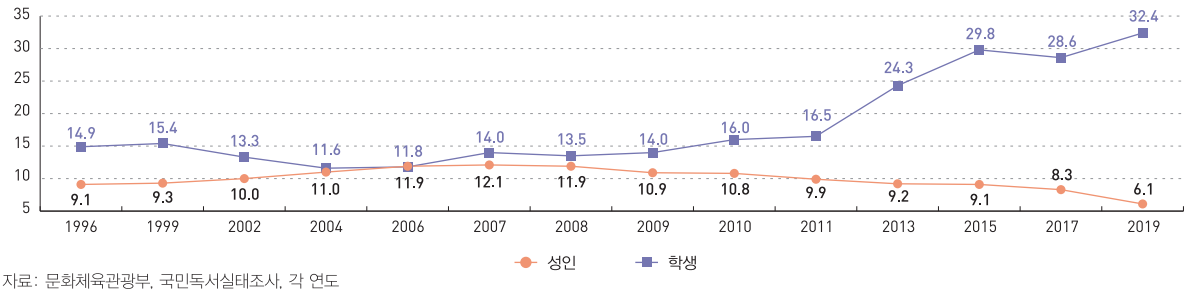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성인 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성인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times 100$
- 학생 독서량 =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학생 전체가 읽은 종이책 독서 권수의 합}}{\text{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times 100$

유의사항 성인과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집계하고, 성인은 만 19세 이상의 고졸이상자를,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림 10-5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량 (199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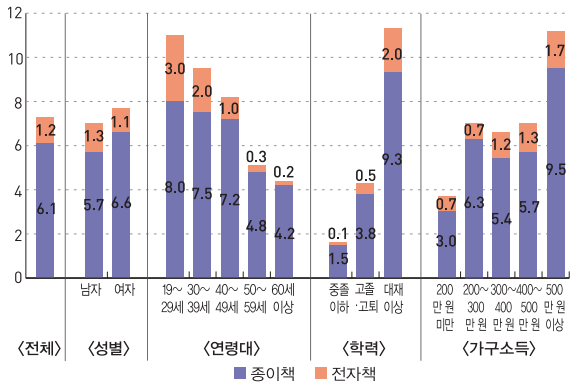
(단위: 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6 일반 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량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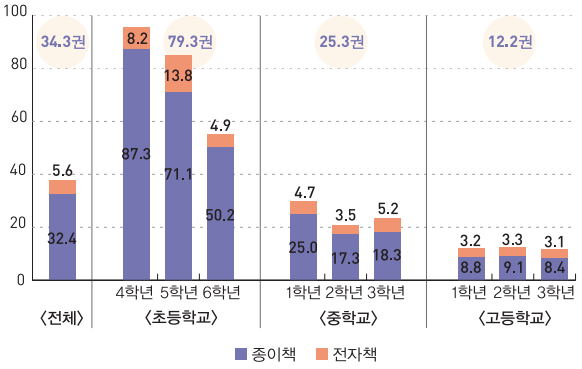
(단위: 권)



주: 소수점 2자리의 값에 의해 종이책과 전자책 독서량의 합이 전체의 값과 차이가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9

그림 10-7 학교급별 · 학년별 학생의 연간 독서량 (2019)

(단위: 권)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량은 초등학생 79.3권, 중학생 25.3권, 고등학생 12.2권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19	2년

Checkpoint 2019년도 성인(종이책)독서량은 6.1권으로 2017년도보다 2.2권 적었고, 학생의 경우 32.4권으로 3.8권 많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과 학생 모두 나이가 어릴수록 독서량이 많으며, 성인의 독서량은 여자가, 대학 이상 다닌 사람이,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읽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0년 조사부터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02-1
연 관

연간 독서율

Annual rate of reading

지표 정의

연간 독서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일반도서 기준)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및 학생(초 · 중 · 고등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 연간 독서율은 국민들이 독서를 접하는 비율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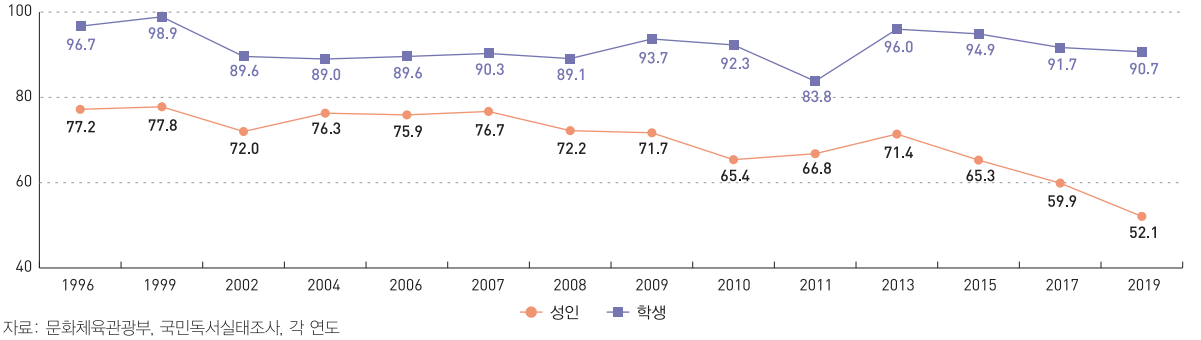
측정 산식

• 성인 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전체의 수}}{\text{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전체의 수}} \times 100$

• 학생 독서율 = $\frac{\text{지난 1년 동안 종이책을 한 권 이상 읽은 학생 전체의 수}}{\text{국내 거주하는 학생 전체의 수}} \times 100$

그림 10-8 연도별 연간 종이책 독서율 (1996~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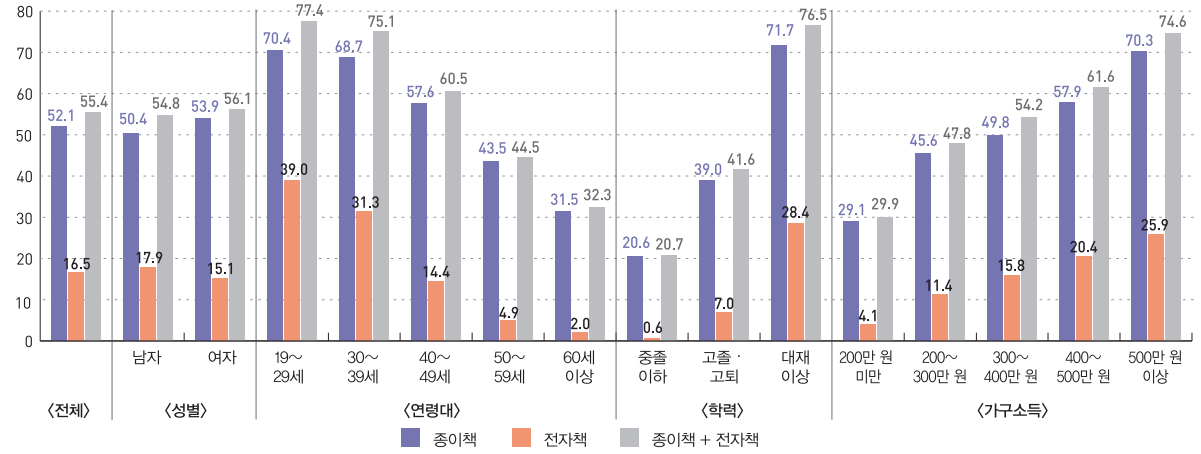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9 일반 특성별 성인의 연간 독서율 (2019)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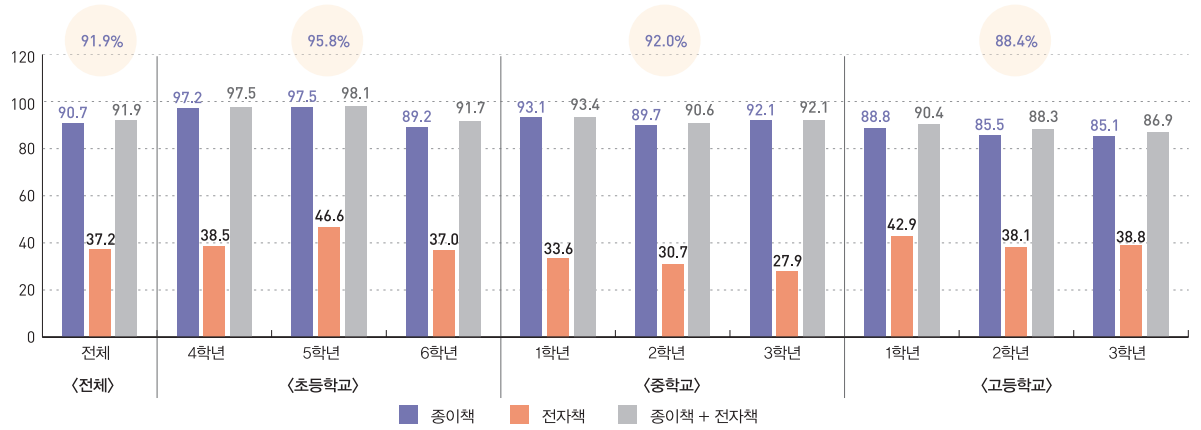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1994	2019	2년

* 2010년 조사부터 일반도서(종이책)과 전자책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부터 잡지와 만화책을 제외하여 집계함. 학생의 경우 교과서와 참고서를 제외함.

그림 10-10 학교급별 · 학년별 학생의 연간 독서율 (2019)

(단위: %)



주: 학교급별 연간 독서율(종이책+전자책)은 초등학생 95.8%, 중학생 92.0%, 고등학생 88.4%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2019

표 10-3 OECD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 (2013)

(단위: %)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국가	독서율
스웨덴	85.7	미국	81.1	OECD 평균	76.5	일본	67.0
에스토니아	84.9	독일	81.1	프랑스	74.7	벨기에	65.5
덴마크	84.9	체코	79.2	한국	74.4	스페인	65.2
핀란드	83.4	오스트리아	78.7	네덜란드	73.6	이탈리아	63.6
노르웨이	83.2	아일랜드	78.1	폴란드	73.6		
영국	81.1	캐나다	77.0	슬로바키아	69.6		

주:OECD 국가의 연평균 독서율은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OECD 조사에서는 전자책 및 만화를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7 재인용 (원자료: OECD, PIAAC(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국제성인역량조사), 2013)

표 10-4 EU 국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2013)

(단위: %)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국가	공공도서관 이용률
스웨덴	74	네덜란드	45	스페인	33	슬로바키아	26
핀란드	66	아일랜드	45	한국	32	폴란드	26
덴마크	63	라트비아	39	EU 평균	31	이탈리아	24
슬로베니아	48	벨기에	37	크로아티아	31	독일	23
영국	47	리투아니아	35	말타	29		
에스토니아	47	프랑스	33	체코	28		

주: 1)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해당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1년에 1회 이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임.
2) 한국 자료는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만 15~17세(고등학생)가 차지하는 인구구성비 6.4%를 감안하여, 〈201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의 성인(만 18세 이상) 조사 결과에 고등학생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17, 재인용 (원자료: EU, CULTURAL ACCESS AND PARTICIPATION., European Commission, 2013)

03
대 표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Number of Cultural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문화시설 수로 정의한다.

• 문화기반시설은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이 해당되며, 인구 대비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농어촌 산간지역 등 소외지역 문화 인프라 제고와 같은 사회보장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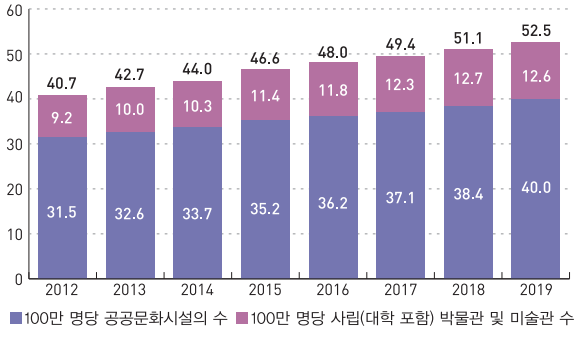
측정 산식

$$\text{해당 연도의 전체 문화시설 개수의 합계} \over \text{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 \times 1{,}000{,}000$$

유의사항 동일한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하기 위해,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하여 재산출하여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과 100만 명 당 문화시설의 수는 다소 차이가 있음*.

그림 10-11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12~2019)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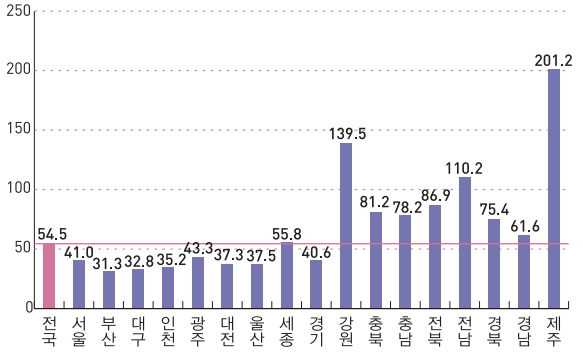


주: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3.4. 인출)

그림 10-12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 (2019)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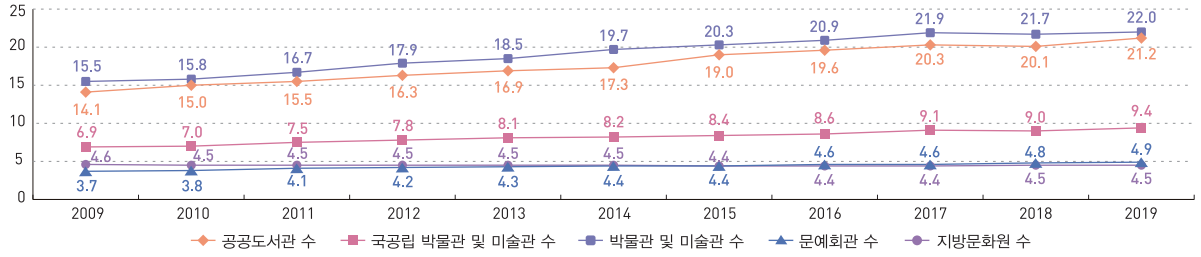


주: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2019년 해당 연도의 값이기 때문에 문화의집을 포함하여 산출한 값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9;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3.4. 인출)

그림 10-13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의 수 (2009~2019)

(단위: 개)



주: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체와 국공립만의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3.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03	2019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거주자)	2008	2019	1개월

Checkpoint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지표이다.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의 수는 52.6개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제주가 201.2개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은 31.3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공공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만을 대상으로 함. 2013년부터 문화의 집이 추가되었으나 시계열을 위하여 통계산출에서는 제외함.

04 대 표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Number of Public Sports Facilities per Million People

지표 정의

주요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구 100만 명 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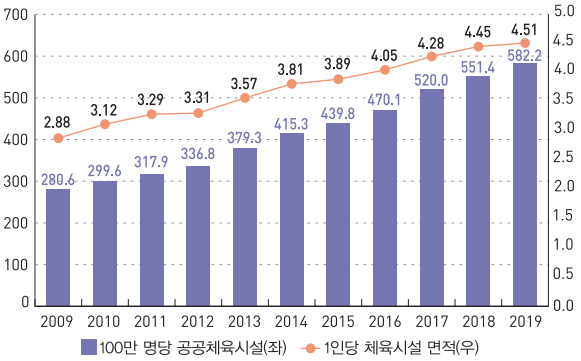
• 인구대비 공공체육시설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국민들의 체육 및 여가 시설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의 공공 체육시설 수}}{\text{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인구수}} \times 1{,}000{,}000$$

그림 10-14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 (2009~2019)

(단위: 개,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1.3.4.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3.4. 인출)

표 10-5 유형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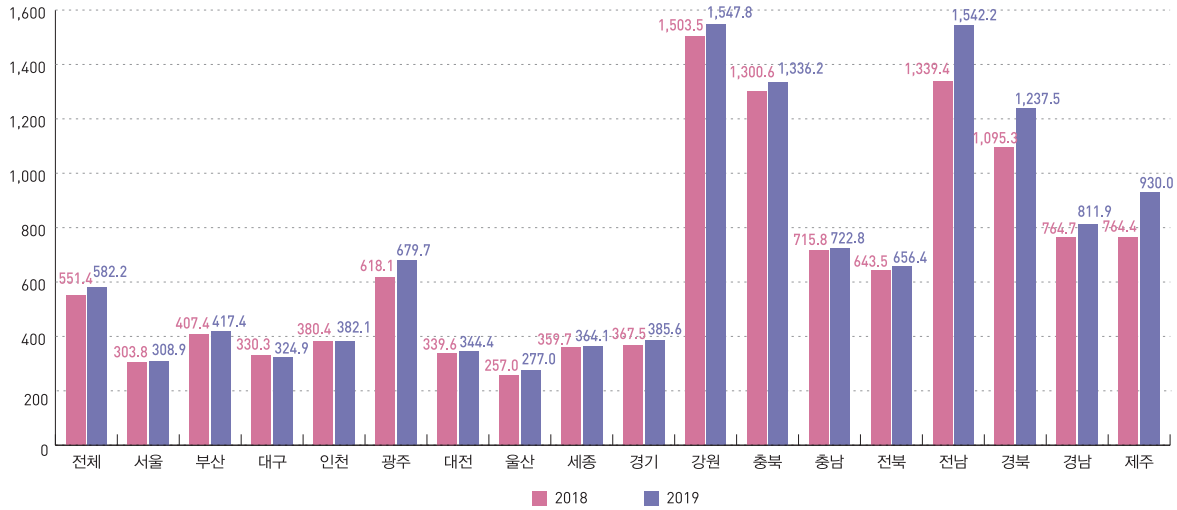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축구장	체육관	간이 운동장	테니스장	기타
인구 100만 명당 공공 체육시설 수	20.1	22.0	441.0	15.8	83.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9.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1.3.4.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9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3.4. 인출)

그림 10-15 연도별 ·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체육시설의 수

(단위: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각 연도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51에서 2021.3.4. 인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각 연도 (https://jumin.mois.go.kr/에서 2021.3.4.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2004	2019	1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2008	2019	1개월

Checkpoint

'인구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는 매년 작성되는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자료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2019년도에 582.2개로 2018년 551.4개보다 30.8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100만 명당 공공체육시설의 수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5
대 표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Annual Utilization Rate on Art Space

지표 정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문화예술공간(도서관, 박물관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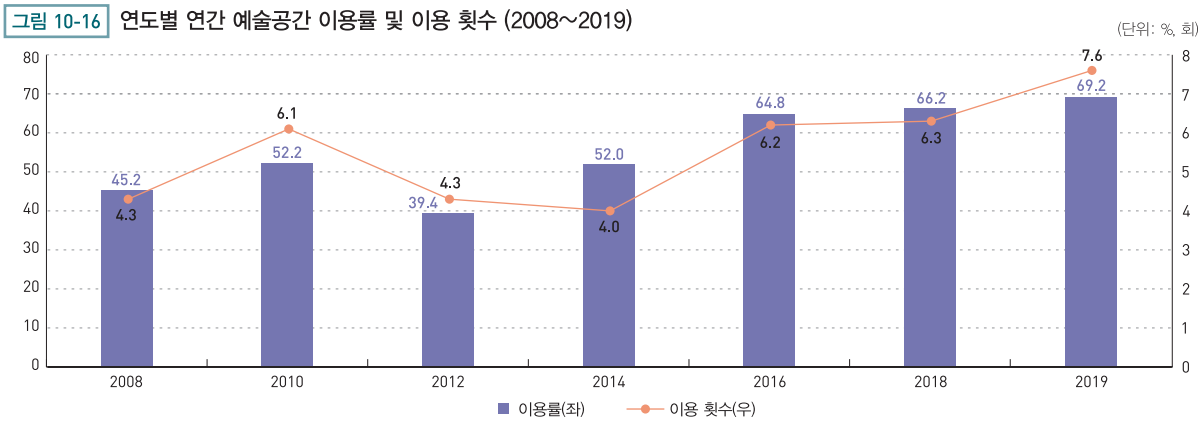
-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공간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박물관, 도서관,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파악이 가능한 예술공간 위주로 조사하여 산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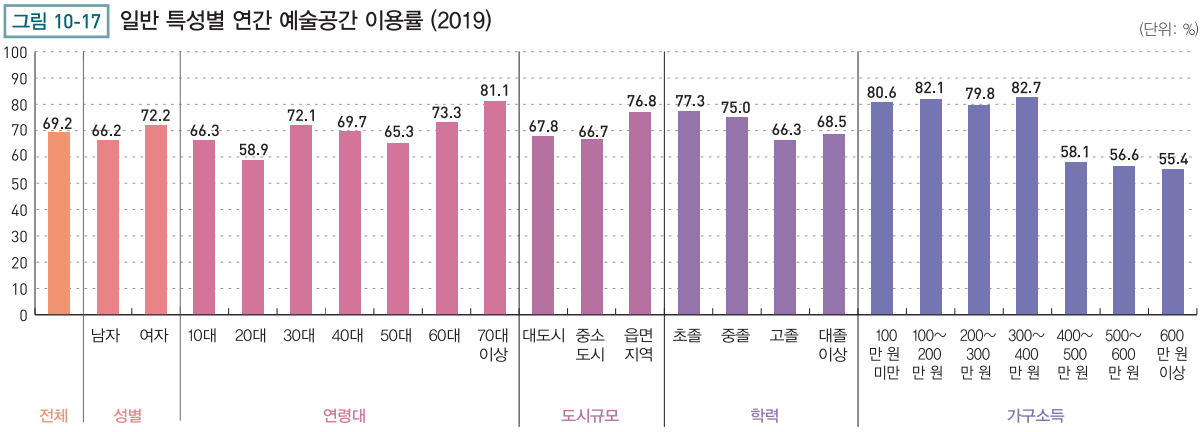
그림 10-16 연도별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및 이용 횟수 (2008~2019)



주: 1)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단체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으며, 문학관광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에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그림 10-17 일반 특성별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 (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19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Checkpoint '연간 예술공간 이용률'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생산되는 지표이다. 2019년도 예술공간 이용률은 69.2%로 2018년 대비 3.0%p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이용 횟수는 6.3회에서 7.6회로 1.3회 증가하였다. 예술공간별로는 박물관이 2018년 16.5%에서 2019년 12.3%로 4.2%p 감소하였다.

표 10-6 연도별 문화예술공간별 이용률 (2008~2019)

(단위: %)

문화예술 공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19
전체	45.2	52.2	39.4	52.0	64.8	66.2	69.2
시 · 군 · 구민회관	12.0	11.5	8.0	8.8	9.8	12.8	9.7
문화예술회관	11.5	11.5	6.6	6.6	5.5	8.0	5.4
복지회관	7.7	11.4	4.6	4.5	7.0	9.0	5.7
청소년회관	4.4	4.2	5.1	2.2	3.5	3.6	2.7
문화원	2.1	2.1	2.7	1.2	2.4	1.8	1.8
도서관	16.2	20.5	12.8	10.4	16.1	12.8	14.9
박물관	12.1	14.8	9.3	16.6	10.8	16.5	12.3
문화의 집	-	1.2	1.0	0.4	0.5	0.4	0.6
대학교부설 사회문화교실	1.7	1.7	1.4	1.4	1.5	2.3	1.5
사설문화센터	5.5	6.0	5.3	7.7	6.1	6.7	5.8
주민자치센터	-	-	9.2	17.0	31.8	30.4	32.1
민간공연장	-	-	8.8	16.3	19.3	25.7	27.2
문학관	-	-	-	-	0.5	0.6	0.9
생활문화센터	-	-	-	-	2.0	1.7	2.5

주: 1) 문화의 집은 2010년 조사부터, 주민자치단체와 민간공연장은 2012년 조사부터 추가되었으며, 문학관광 생활문화센터는 2016년도에 추가됨.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06
대 표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Annual Cultural Arts Activities

지표 정의

연간 문화예술활동 참여율은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 관련 창작 · 발표활동 등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로 정의한다.

-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능동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의 성격을 가지며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 창작 참여기회의 제 공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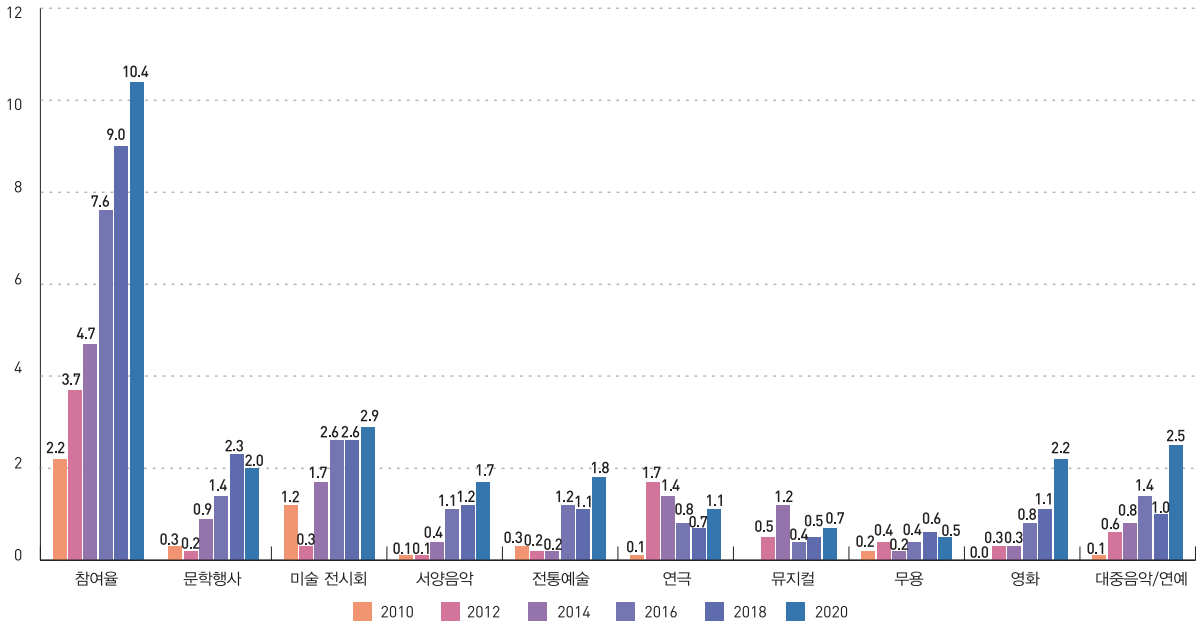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2018년 예술활동 참여를 1회 이상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본인이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 방송출연행위는 제외하였다.

그림 10-18 연도별 · 장르별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 (2010~2019)

(단위: %)



주: 1) 2018년 통계의 경우 시계열을 위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재산출된 통계임.
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19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Checkpoint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활동 참여율'은 2010년 2.2%에서 2019년 10.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8년 대비 1.4%p 증가한 것이다. 장르별로는 미술이 2.9%로 가장 참여율이 높았으며 무용이 0.5%로 가장 참여율이 낮았다. 대중음악/연예와 영화가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문화예술(창작, 발표)활동 참여율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7 일반 특성별 연간 문화예술(창작 · 발표) 활동 참여율 (2019)

(단위: %)

구분		문학	미술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
전체		2.0	2.9	1.7	1.8	1.1	0.7	0.5	2.2	2.5
성별	남성	1.7	2.6	1.8	1.8	1.1	0.8	0.3	2.3	2.3
	여성	2.4	3.1	1.6	1.8	1.1	0.7	0.7	2.2	2.7
연령대	15~19세	4.2	3.3	1.6	1.1	1.2	0.9	0.5	1.2	4.0
	20대	1.8	3.0	1.1	0.7	2.0	1.0	0.3	3.7	5.1
	30대	2.6	3.4	2.4	1.6	1.1	1.3	0.4	2.2	2.0
	40대	2.2	3.1	1.8	1.9	1.5	0.9	0.4	2.5	2.5
	50대	1.7	2.4	2.0	2.7	0.9	0.6	0.7	2.2	1.7
	60대	2.3	2.8	1.9	2.5	0.3	0.3	0.9	2.0	2.1
	70세 이상	0.6	2.1	0.4	1.7	0.3	0.0	0.3	0.4	0.9
학력	초졸 이하	1.3	0.5	0.8	1.2	0.1	0.3	0.1	0.4	1.7
	중졸	1.4	2.1	0.8	1.6	0.4	0.3	0.5	1.2	1.9
	고졸	1.6	2.5	1.7	2.1	1.0	0.6	0.5	2.5	2.4
	대졸 이상	2.9	4.0	2.2	1.7	1.6	1.1	0.5	2.6	3.0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0.4	1.3	0.8	1.5	0.0	0.1	0.1	1.6	1.4
	100~200만 원	1.2	1.4	0.7	1.5	0.3	0.2	0.2	0.7	2.8
	200~300만 원	1.9	2.8	2.1	2.5	1.2	0.7	0.7	2.4	1.9
	300~400만 원	2.8	2.9	1.9	2.3	1.4	0.8	0.5	1.7	1.9
	400~500만 원	1.6	2.4	1.6	1.1	0.9	0.8	0.5	2.6	3.0
	500~600만 원	2.0	3.5	1.3	1.6	1.3	1.4	0.8	2.5	2.5
	600만 원 이상	3.1	4.2	2.4	1.9	1.4	0.7	0.3	3.0	3.7
지역	수도권	2.3	4.0	1.7	1.8	1.3	1.1	0.4	2.9	2.8
	강원/제주권	3.9	3.1	3.8	4.2	4.2	1.1	0.6	1.9	3.3
	충청/세종권	1.4	2.2	1.7	2.4	0.1	0.3	1.0	0.9	2.2
	호남권	0.6	1.0	1.2	1.2	0.3	0.1	0.3	0.6	1.2
	대경권	2.4	1.5	2.2	1.8	1.1	0.6	0.6	1.1	1.4
	동남권	1.2	1.6	0.4	0.6	0.5	0.1	0.1	3.8	4.2
지역규모	대도시	1.9	3.1	1.4	1.6	1.1	0.8	0.5	3.4	2.9
	중소도시	1.8	2.5	1.6	1.5	1.1	0.7	0.5	1.5	2.1
	읍면지역	2.7	3.0	2.5	2.8	0.9	0.6	0.6	1.0	2.5

주: 2018년 통계의 경우 시계열을 위해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재산출된 통계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07
대 표

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Sport for all

지표 정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전체 응답자 중 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다.

-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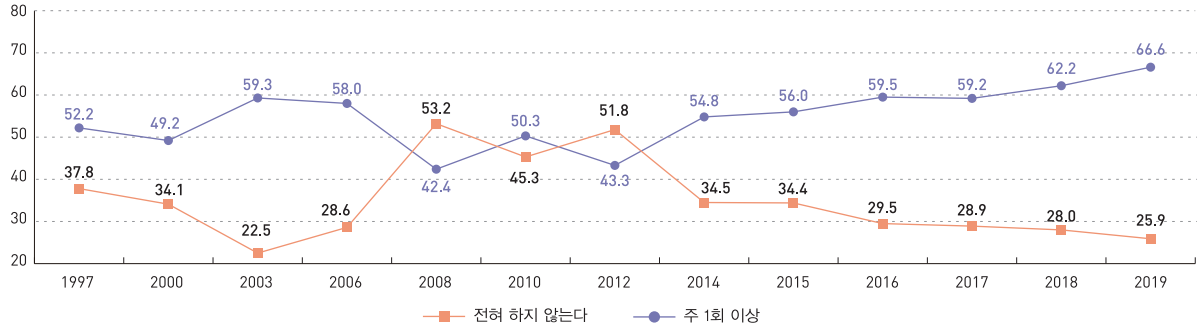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1주일에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0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0세 이상의 국민들이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운동을 1주일에 1회 이상한 비율을 측정한다.

그림 10-19 연도별 생활체육 참여율 (199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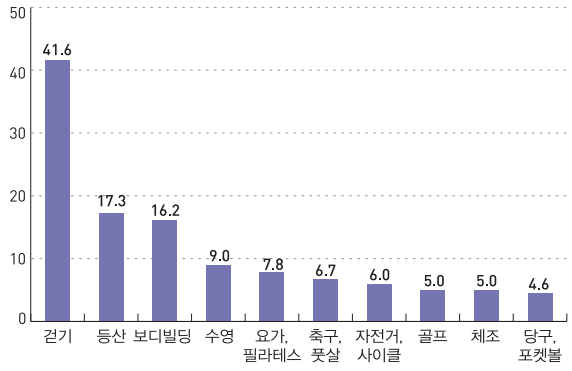
(단위: %)



주: 국민생활체육조사는 2012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4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20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상위 10개 종목 비율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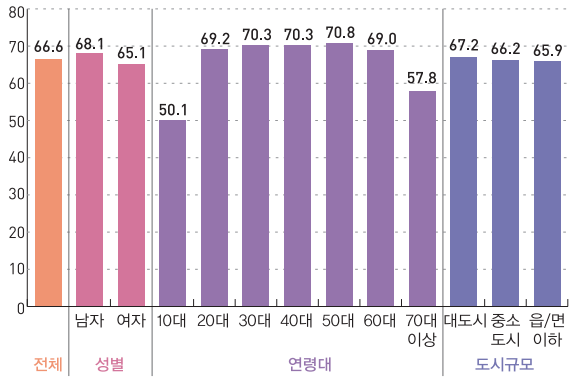
(단위: %)



주: 주로 참여하는 체육활동 종목은 1+2+3순위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9

그림 10-21 일반 특성별 생활체육 참여율 현황 (2019)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1994	2018	2년, 1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19	2019	1년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2012년까지 2년 주기, 2014년 조사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명칭이 국민생활체육조사로 변경됨.

Checkpoint

'생활체육 참여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생활체육조사」를 통하여 생산되는 지표이다. 2019년도 생활체육 참여율은 66.6%로 2018년 62.2%에 비해 4.4%p 증가하였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은 걷기(41.6%)로 나타났으며, 등산(17.3%), 보디빌딩(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는 남자(68.1%)가 여자(65.1%)보다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70.8%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50.1%로 가장 적게 규칙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7-1
연 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of Lifetime Spor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지표 정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서 산출되는 통계로, 등록장애인들 중 생활체육 완전실행자에 해당하는 비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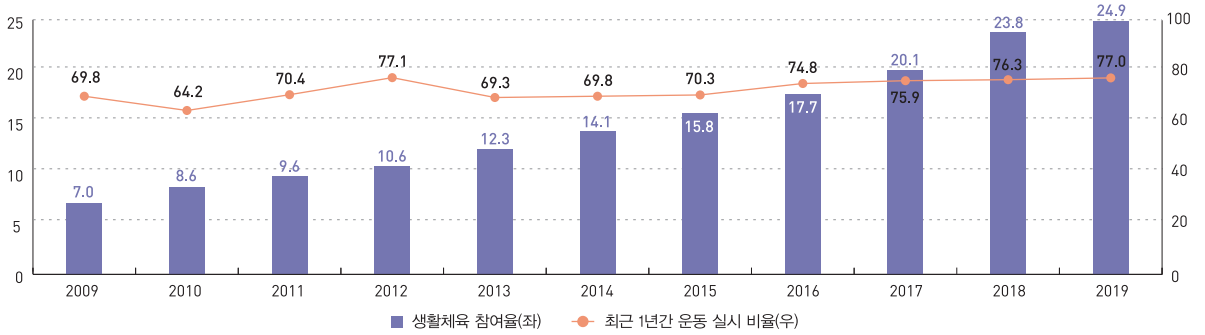
-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최근 1년간 재활치료 이외 목적으로 1주일에 2~3회 이상, 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수 운동하는 장애인으로 추정된 수}}{\text{만 10세 이상 69세 미만 등록 재가 장애인 수}} \times 100$

그림 10-22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과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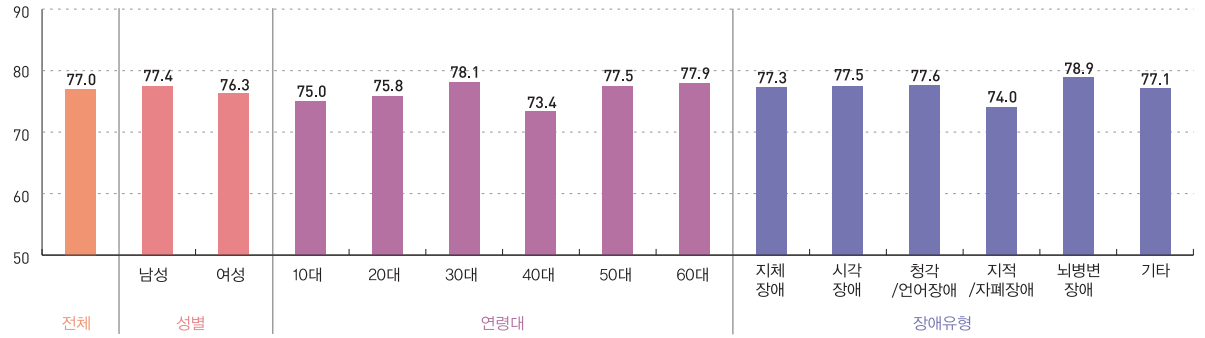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0-23 일반 특성별 장애인 생활체육 최근 1년간 운동 실시 비율 (2019)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2019	2019	1년

*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명칭이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로 변경됨.

08
대 표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

Benefit Rate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율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초 · 중 · 고등학교와 학생의 비율로 정의한다.

• 문화예술 경험 기회 및 향유능력 제고, 공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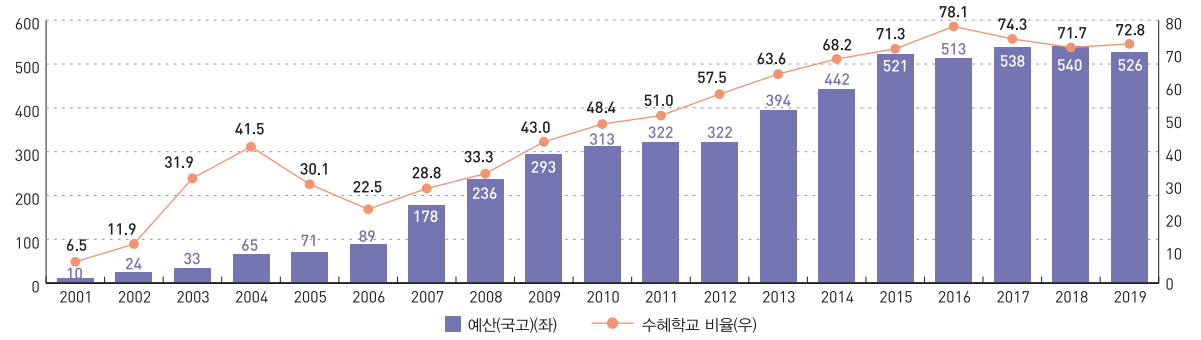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학교 수}}{\text{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수}} \times 100$

• 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비율 = $\frac{\text{학교 문화예술교육 수혜자 수}}{\text{전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수}} \times 100$

유의사항 각 통계의 출처가 다르게 산출하였으므로 계산하는 기준에 따라 다소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

그림 10-24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학교 비율 및 지원예산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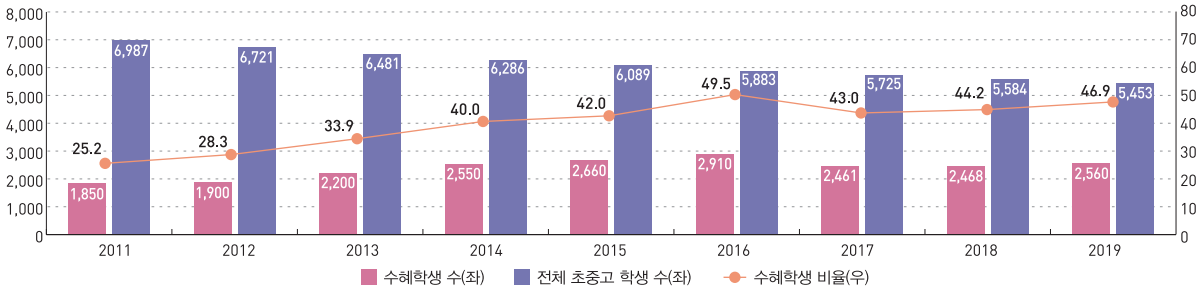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각 연도

그림 10-25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수혜자 비율 (2011~2019)

(단위: 천 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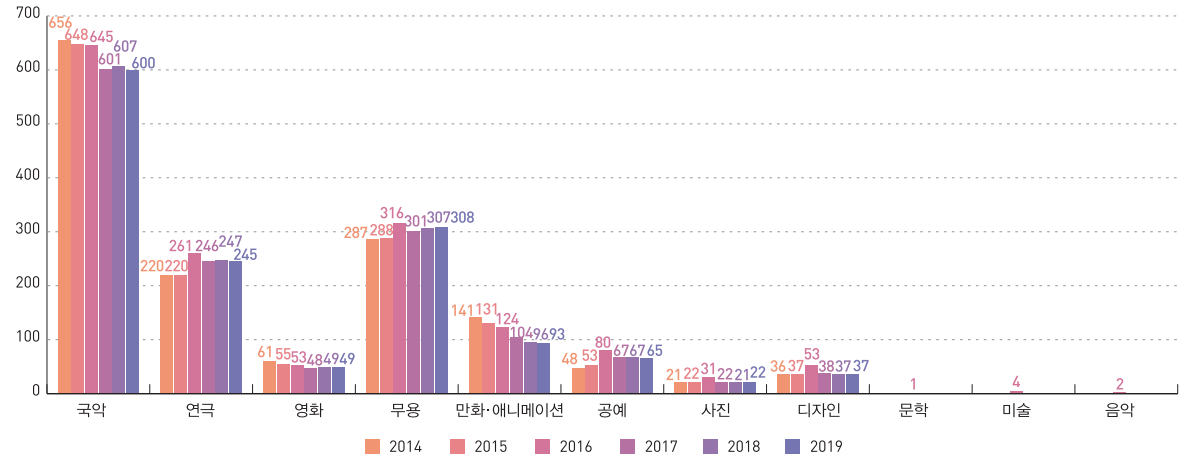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2005	2019	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1965	2019	1년

Checkpoint 학교 문화예술 수혜율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통하여 예술교육을 받은 학교 수와 학생 수를 통하여 산출되는 지표이다. 2019년도 예산이 526억, 수혜학교 비율이 72.8%, 수혜학생 비율이 46.9%로 2018년도 예산 540억, 수혜학교 비율 71.7%, 수혜학생 비율 44.2%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다.

그림 10-26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지원 시수 (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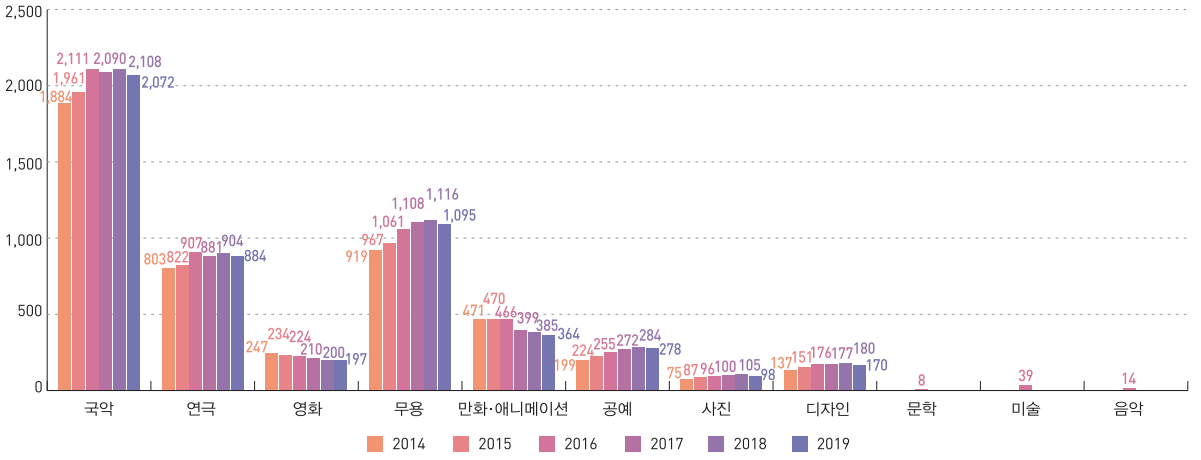
(단위: 천 시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그림 10-27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장르별 강사 수 (2014~2019)

(단위: 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문화예술교육사업보고, 각 연도

09
대 표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Experience Rate of Social Arts and Culture Education

지표 정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서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강좌나 강습(온라인 교육, 방송교육 포함)의 형태로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다.

- 초 · 중 · 고등학교 정규 학교교육 외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대안적인 문화예술교육의 수준, 문화예술 향유능력 개발의 기회 정도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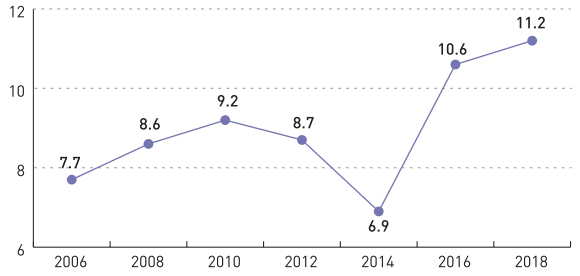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지난 1년간 학교 교육 이외에 문화예술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15세 이상의 대상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15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산출하였음.

그림 10-28 연도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06~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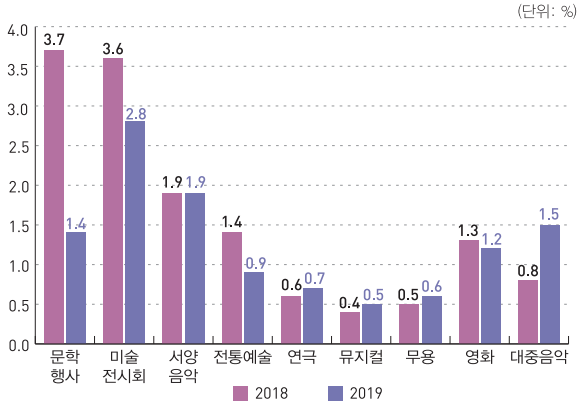


주: 1) 2010년 이전의 자료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경험률이며, 2012년 이후는 지난 1년 동안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임.
2) 2016년 사회 문화 예술교육 경험률은 역사, 철학 강의 및 역사탐방을 포함하지 않는 값이며, 포함했을 때는 11.5%임.
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는 2006~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되었으며, 2019년 이후 1년 단위 조사로 변경되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그림 10-29 연도별 · 문화장르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1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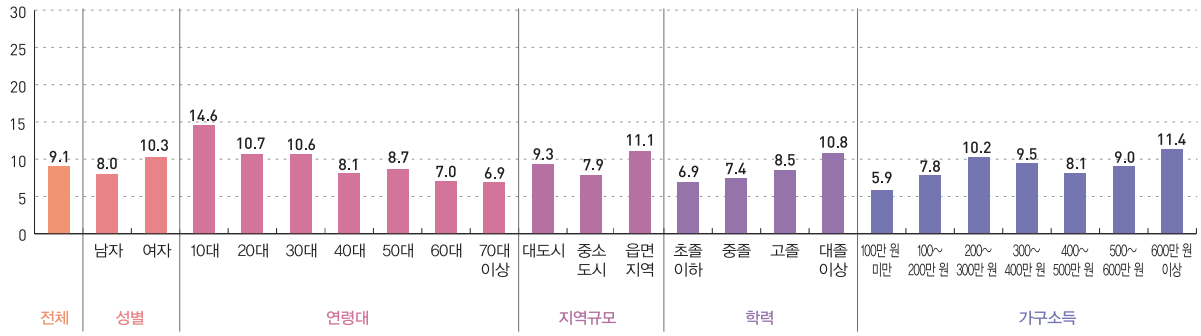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그림 10-30 일반 특성별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2019)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향수실태조사*	1991	2018	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2019	2019	1년

* '문화향수실태조사'는 2019년도에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로 명칭이 변경됨.

Checkpoint

사회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2019년도에 9.1%로 2018년에 11.2%에 비해 2.1%p 감소하였다. 장르별로는 미술전시회가 2.8%로 가장 높았고, 뮤지컬이 0.5%로 가장 낮았다. 여성(10.3%)이 남성(8.0%)보다 더 높았고, 10대(14.6%)에서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6.9%)에서 가장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지역(11.1%), 대졸 이상(10.8%)에서,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11.4%)의 구간에서 가장 높은 교육 경험률이 나타났다.

10 대 표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Integrated Cultural Voucher

지표 정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인구 대비 통합문화이용권*을 이용하여 문화여가를 향유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율로 경제적 이유로 문화를 누리기 힘든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의 제공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text{기초생활수급자 수}} \times 100$$

유의사항 본 통계의 모수는 문화소외계층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해당자의 합임.

표 10-8 문화 · 여행 · 스포츠관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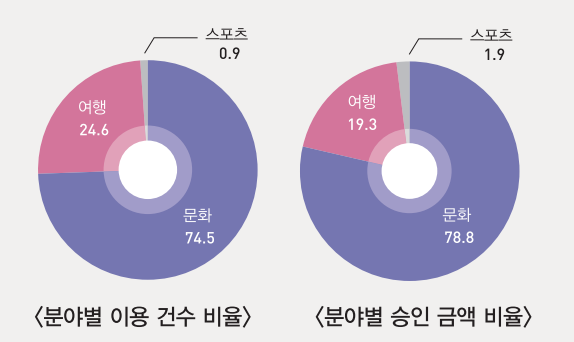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수혜자 수	수혜자 비율
전체	1,378	57.0	1,451	57.8	1,524	57.9	1,592	62.2	1,629	74.2

주: 수혜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문화소외계층의 합 대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그림 10-31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분야별 이용 비율 (2019)

(단위: %)



〈분야별 이용 건수 비율〉 〈분야별 승인 금액 비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표 10-9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세부분야별 이용 건수와 승인 금액 (2019)

(단위: 천 건, 백만 원)

구분	이용 건수	승인 금액
전체	6,760	118,159
도서	2,239	54,329
음반	87	1,884
영화	1,761	22,642
공연	62	1,433
전시	62	932
문화일반	143	3,278
문화체험	685	8,646
기타	0	0
숙박	58	1,510
철도	438	5,225
항공/여객	766	9,207
여행사	26	1,170
관광지	279	3,237
테마/레저	92	2,473
스포츠	63	2,19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이용 현황 (내부자료)	2014	2019	1년

Checkpoint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수혜율은 경제적 사정으로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 국내여행 · 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 정도를 나타낸 지표이며, 2019년 수혜자 수는 162만 9천 명으로 2018년 대비 3만 7천여 명 증가하였다.

* 2014년 문화이용권, 여행이용권, 스포츠관람이용권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통합되었음.

11 대 표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율

Benefit Rate of Sports Class Voucher

지표 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만 5~18세 유소년 및 청소년들 중 스포츠바우처 지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수급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정과 같은 소외계층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text{기초생활수급자 만 5 ~ 18세 유 · 청소년의 수}} \times 100$$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 유소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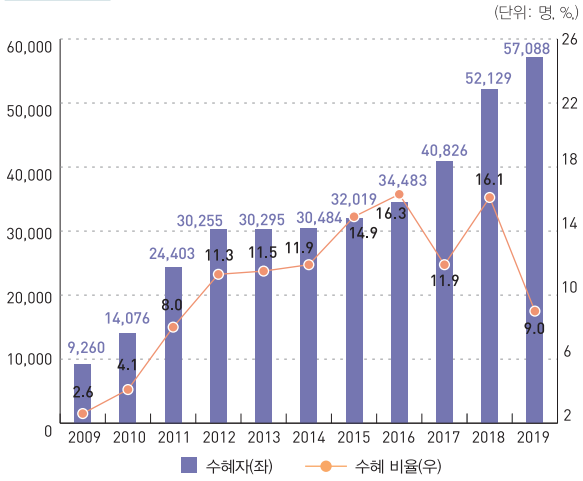
표 10-10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수혜자 수와 수혜자 비율 (2009~2019)

(단위: 명, %, 억, 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혜자 수	9,260	14,076	24,403	30,255	30,295	30,484	32,019	34,483	40,826	52,129	57,088
수혜 비율	2.6	4.1	8.0	11.3	11.5	11.9	14.9	16.3	6.5	8.2	9.0
예산	19.6	30	86.2	105.8	105.8	109.7	117.6	128.5	173.6	196	215
만족도	75.2	79.2	80.8	83.1	83.8	84.5	85.8	89.1	91.6	92.6	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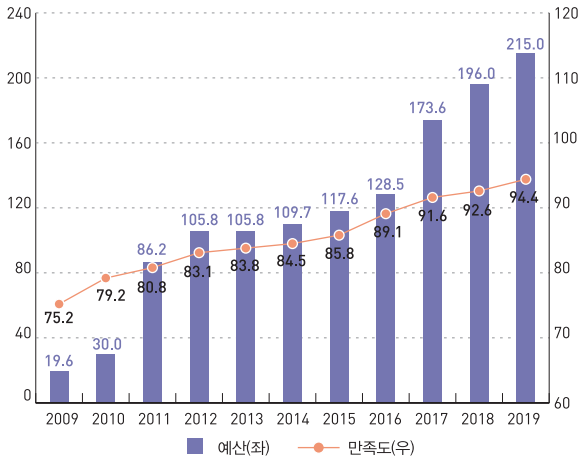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2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및 수혜율 (2009~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0-33 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 및 만족도 (2009~201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보고 (내부자료)	2009	2019	1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1977	2019	1년

Checkpoint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율은 소외계층 가정의 만 5~18세들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수혜자는 4,959명, 수혜 비율은 0.8%p, 예산은 19억, 만족도는 1.8점 증가하였다.

12 대 표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Number of Elderly Cultural Programs beneficiary

지표 정의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지방문화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로 측정한다.

• 고령화시대 어르신세대의 여가기회 및 참여활동 확대로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수**

표 10-1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예산 및 수혜자 수 (2007~2020)

(단위: 억 원, 개,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지원액	15.0	15.0	19.0	23.0	21.9	34.5	32.0	37.6	38.5	46.8	42.1	37.9	32.7	27.73
참여문화시설 수	76	100	137	134	149	198	193	295	262	268	310	265	258	179
프로그램 수	76	100	137	183	202	334	311	433	435	391	332	297	311	202
수혜자 수	2,593	3,522	4,740	5,841	7,037	11,804	12,068	13,366	14,042	12,111	9,152	8,628	10,039	5,86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내부자료)

표 10-12 성별 · 지역별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 (202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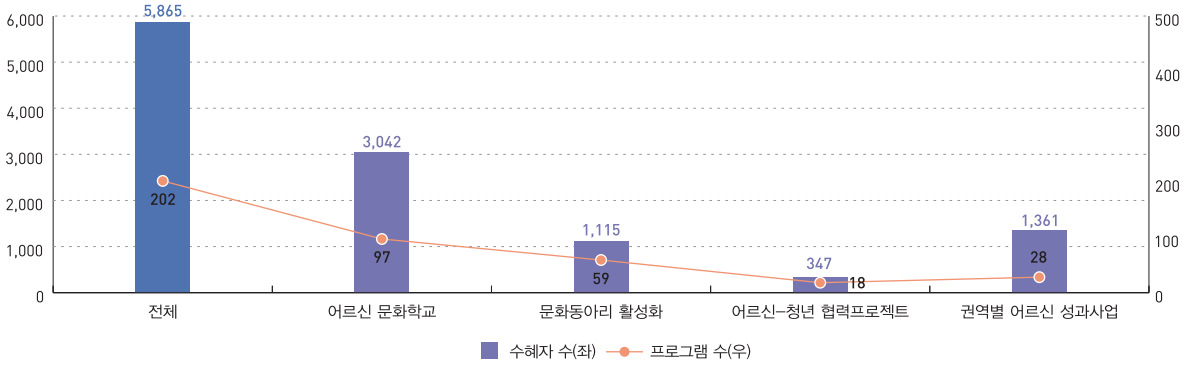
구분		수혜자 수	비율
성	남자	1,119	19.1
	여자	4,746	80.9

구분		수혜자 수	비율
지역	서울/경기	2,090	35.6
	강원/충청	1,071	18.3
	영남	1,282	21.9
	호남/제주	1,422	24.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내부자료)

그림 10-3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별 수혜자 수와 프로그램 수 (2020)

(단위: 명,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보고 (내부자료)	2005	2020	1년

Checkpoint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수혜자 수는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참가자 수로 파악하는 지표이다. 국고보조금 사업인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은 2020년 현재 전국 179개 문화시설에서 5,865명의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 참여문화시설이 258개에서 179개로, 프로그램 수는 311개에서 202개로 감소하였다. 예산 또한 27.7억으로 전년(32.7억)보다 5억 감소하였다.

13
대 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율

Benefit Rate of Disabled Sport Leaders Service

지표 정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수혜를 받은 비율로 정의된다.

• 장애인의 스포츠 향유 확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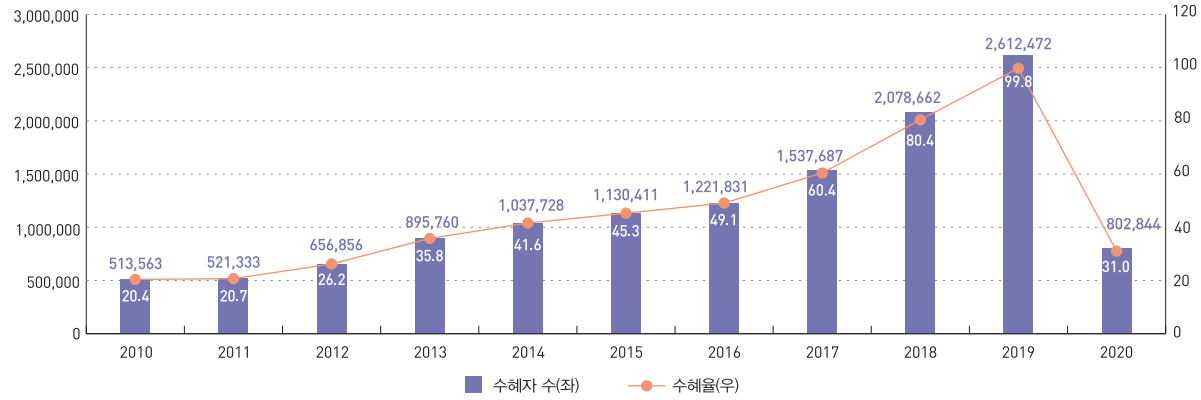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해당 연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수혜자 수}}{\text{등록 장애인 수}} \times 100$$

유의사항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이용한 대상으로 작성한 지표임.

그림 10-35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수혜자 수와 수혜율 (201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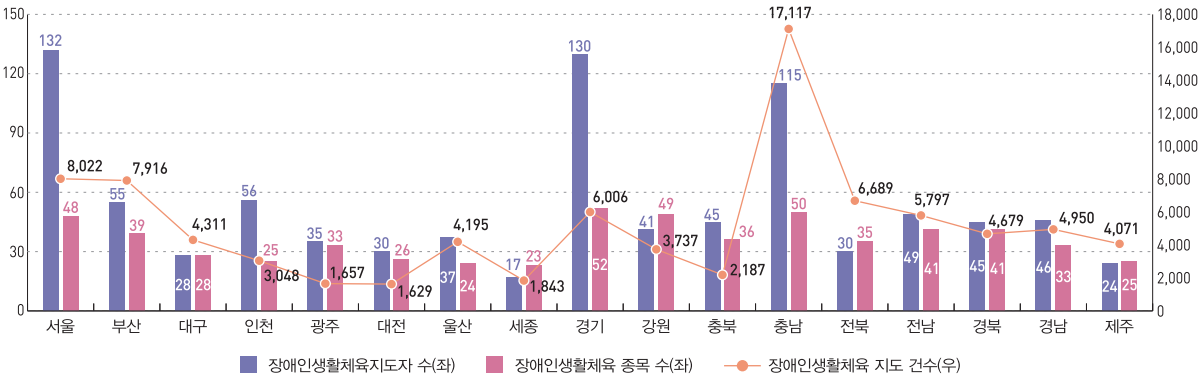
(단위: 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내부자료)

그림 10-36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체육지도자 수와 종목 수, 지도 건수 (2020)

(단위: 명, 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사업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사업보고 (내부자료)	-	2020	1년
보건복지부	시 · 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1989	2020	1년

Checkpoint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국가와 지자체 매칭(50대 50)으로 2007년 21명이 최초 배치된 이후, 2020년 현재 915명이 전국에 배치되었다. 2020년도는 2019년에 비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153명 증가하였고, 종목 수는 608개로 10개 감소하였다. 수혜자 수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지도 불가로 인해 전년 대비 약 70%가 감소하여 802,884명이고, 수혜율은 31%로 70%p 감소하였다.

14 대 표

GDP 대비 문화예산

Cultural Budget for GDP

지표 정의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GDP로 나눈 값을 GDP 대비 문화예산*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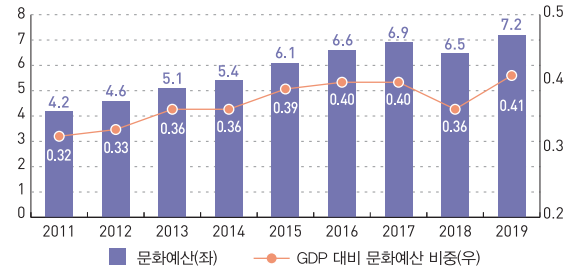
• GDP 대비 문화예산 비율을 통하여 정부예산 중 문화분야에 대한 지출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text{GDP}}$$

그림 10-37 GDP 대비 문화예산 비중 (2011~2019)

(단위: 조, %)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1.2. 인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에서 2021.1.2. 인출)

표 10-13 정부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비중 (201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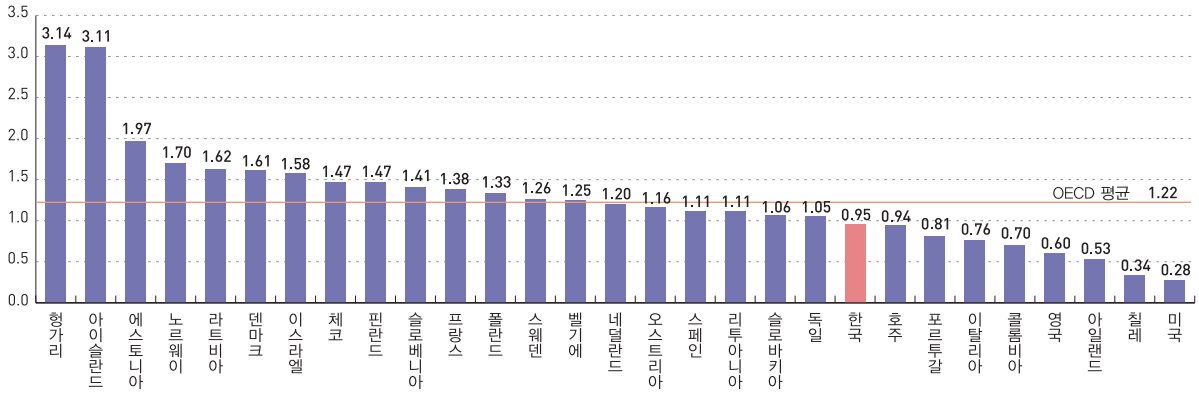
(단위: 조,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문화체육관광부 (A)	3.5	3.7	4.1	4.4	5.0	5.5	5.7	5.3	5.9
정부 (B)	309.0	325.4	341.9	355.8	375.4	386.3	400.5	428.8	469.6
비율 (A/B)	1.12	1.14	1.2	1.24	1.33	1.42	1.42	1.24	1.26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21.1.2. 인출)

그림 10-38 OECD 국가의 GDP 대비 오락여가비 정부지출 비중 (2019)

(단위: %)



주: 1) 오락문화비는 일반정부 총지출 기준
2) 스위스는 2017년도 자료를 이용함.

자료: OECD.Stat,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COFOG) (https://stats.oecd.org/index.aspx?r=829815에서 2021.3.9. 인출); OECD.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TSI4_2018에서 2021.3.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 예산	-	2019	1년

Checkpoint GDP 대비 문화예산은 GDP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을 비중으로 작성한다. 문화예산은 2018년 6.5조에서 2019년 7.2조로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을 보면 2018년 5.3조에서 2019년 5.9조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GDP 대비 오락여가비 정부지출을 보면 2018년도 0.86%에서 2019년도 0.95%로 0.09%p 증가하였지만, OECD 국가의 평균인 1.22%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미래부와 방통위의 일부 문화 관련 예산을 의미

15
대 표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Leisure Culture Expenditure for Household Consumption

지표 정의

가계의 국내 최종지출최종소비* 중에서 오락, 문화 등의 명목 오락문화비 사용 비중을 산출하여 오락문화비 가계지출비중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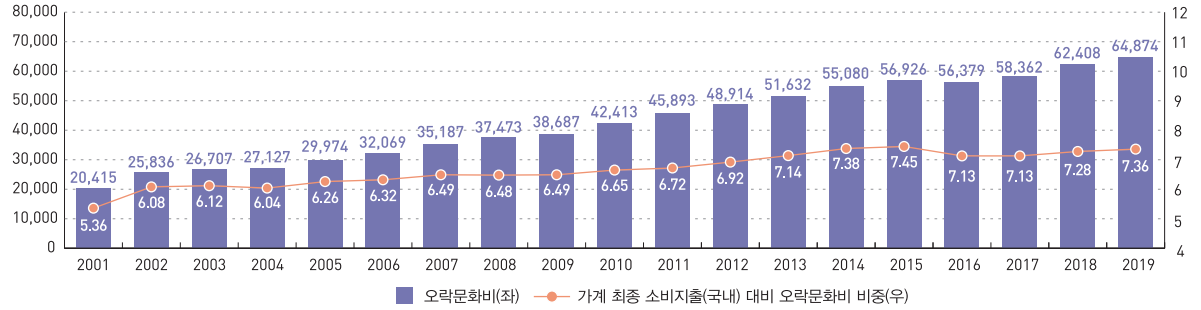
• 가계가 국내에서 소비하는 지출 중 오락문화비 지출 비중의 정도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전체 가계의 국내 오락문화 최종 소비지출 금액}}{\text{전체 가계의 국내 최종 소비지출 금액}} \times 100$$

그림 10-39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01~2019)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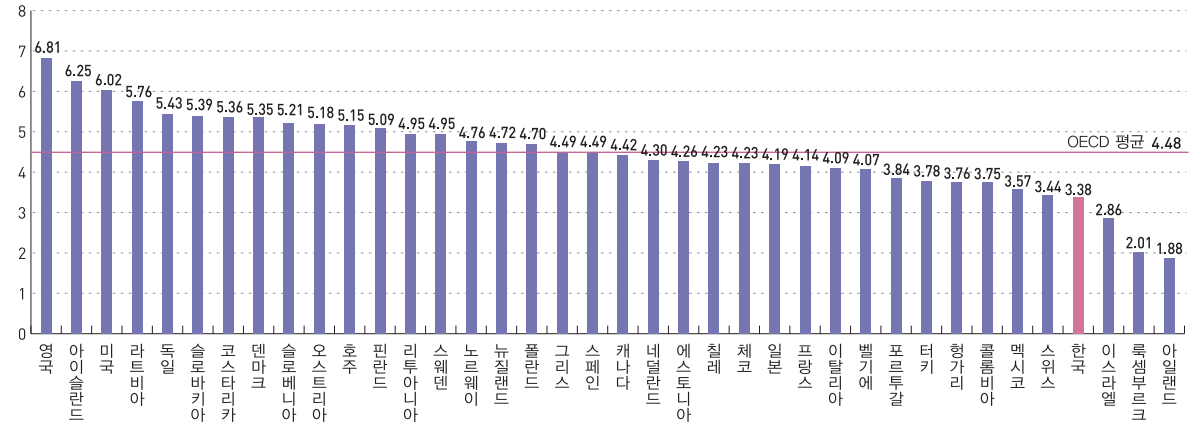


주: 오락문화비는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명목기준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에서 2021.1.23. 인출)

그림 10-40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 (2018)

(단위: %)



주: 1) 오락문화비는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 명목가격 기준

2) 국가별 최신 자료를 이용하여 코스타리카는 2017년, 뉴질랜드, 칠레, 일본, 콜롬비아, 스위스는 2018년도 자료를 이용함.

자료: OECD.Stat. Final consupmtion expenditure of houshold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NA_TABLE5에서 2021.3.9. 인출); OECD.Stat. Gross domestic product(GDP).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OTSI4_2018에서 2021.3.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은행	국민계정	1953	2019	1년

Checkpoint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은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하는 금액 중 오락문화비로 지출하는 비중으로 산출되는 지표이다. 오락문화비는 2018년도 62.4조에서 2019년 64.9조로 증가하였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GDP 대비 오락문화비 가계지출 비중은 2019년 3.4%로, OECD국가들의 평균(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계의 국내 최종 소비지출 대비 여가문화비 지출 비중을 시계열로 비교하기 위해 명목금액으로 산출하였음.

11

주거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02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03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04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05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06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07 노숙인 수
08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09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10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11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12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11 주거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주거의 질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주거의 안정성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노숙인 수	
주거비 부담 가능성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Highlight

주거생활의 기본 단위는 가구로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래인구 및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28년을 정점으로 인구수가 줄어드는 반면, 가구 수는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9년 합계출산율 0.92명을 감안할 때, 소가구화와 고령화는 미래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구 특성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저성장 국면, 대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문제 등은 주거부문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야에서는 주거의 질적 · 양적인 측면, 그리고 주거비 측면에서 관련된 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주거의 질 측면에서는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인 가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주거의 양적인 측면과 동시에 안정성 부분과 관련하여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그리고 노숙인 수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비 부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주택연금대출 보증 건수를 살펴볼 것이다.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9년 5.3% 106만 가구로 전년 대비 0.4%p 감소 및 5만 가구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7%이고 소득별로는 소득 하위인 가구는 9.2%에 달하여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다.

가구 규모와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전통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주택이 아닌 주택 이외의 거처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1995년 56,978가구에서 2005년 53,616가구, 2015년 364,131가구 그리고 2019년 435,120가구가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누락될 수도 있는 거처가 등장하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2017)에 따르면, 고시원 · 고시텔 거주가구가 기타 유형을 제외하면 41.0%로 숙박업소 8.2%, 판잣집 · 비닐하우스 1.8%를 훨씬 상회한다.

한편, 양질의 저렴한 주택인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2019년 7.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를 목표로 2019년 공공임대주택 13.6만 호 공급계획(2019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계획에 따른 공급이 진행된다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2019년 104만여 가구로 1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일반가구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기준이 중위소득의 43%에서 2019년에는 44%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된 영향도 있다. 급여지원 상한도 기존 대비 5.0~9.4%로 인상하였다.

주택연금대출 보증 건수를 보면, 2007년 515건에서 2019년 10,98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누적 건수 71,034건이 되었다. 고령사회로 진입 후 은퇴 연령이 빨라지는 한편, 가족 등을 통한 개인적 부양이 어려운 점에서 주택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보전하려는 고령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01
대 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Under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지표 정의

전체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주거수준으로, 최소 주거면적,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 성능 및 환경기준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및 규모는 주거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활용하는 지표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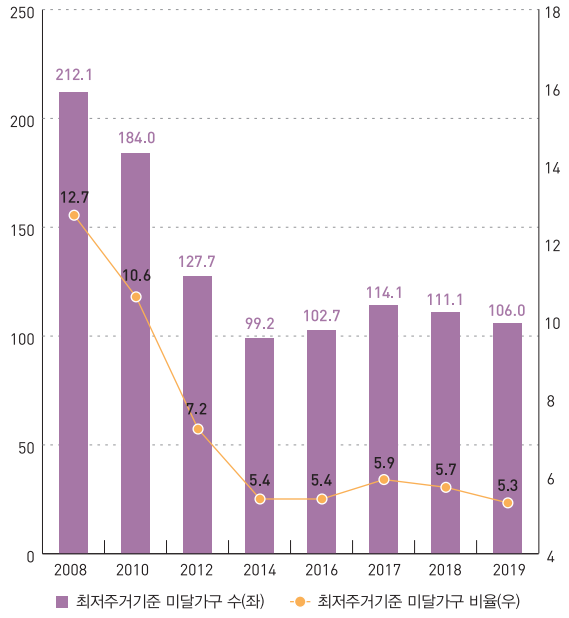
측정 산식

$$\frac{\text{면적기준, 방수기준 및 설비기준 미달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법으로 규정된 최저주거기준 중에서 정량적 정보 파악이 어려운 구조 · 성능 · 환경 기준은 비적용 하였고, 주거실태조사가 표본조사인 점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는 추정치이다.

그림 11-1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및 비율

(단위: 만 가구,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 지역별 · 소득계층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019)

(단위: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지역별	수도권	6.7	5.6	3.3	0.3
	광역시 등	4.3	2.6	2.6	0.2
	도지역	3.9	1.7	2.9	0.3
	계	5.3	3.8	3.0	0.3
소득별	하위	9.2	6.1	6.5	0.2
	중위	3.8	3.0	1.2	0.4
	상위	1.3	1.0	0.4	0.2
	계	5.3	3.8	3.0	0.3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9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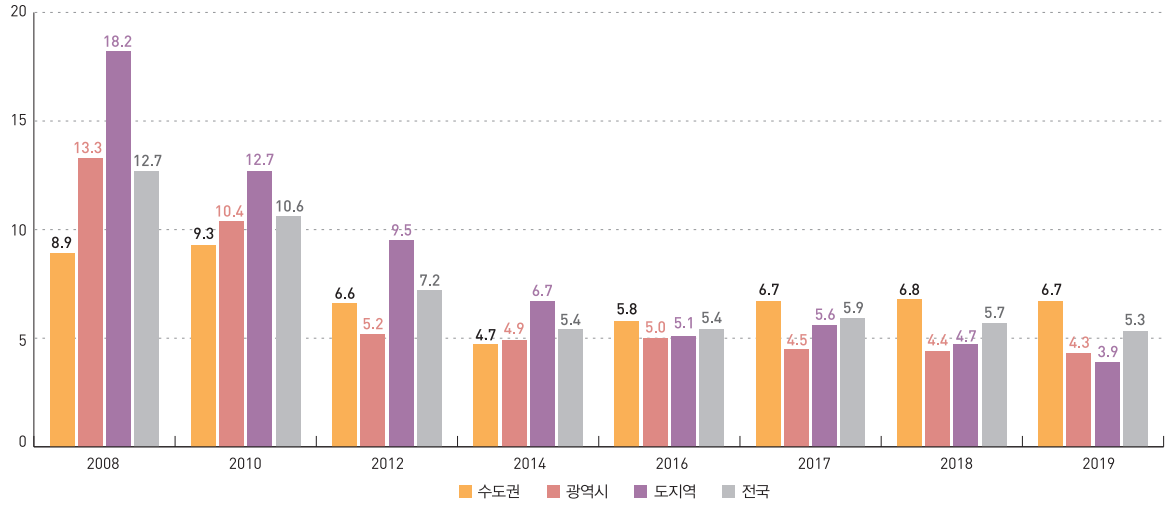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Checkpoint 주거실태조사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기점으로 2017년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19년 전체 가구의 5.3%인 106만 가구가 되었다. 특히 광역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2019년 6.7%로 2018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에 따라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 ·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 ·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 성능 및 환경기준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공고 제2011-490호 최저주거기준에 명시하고 있다.

그림 11-2 연도별 ·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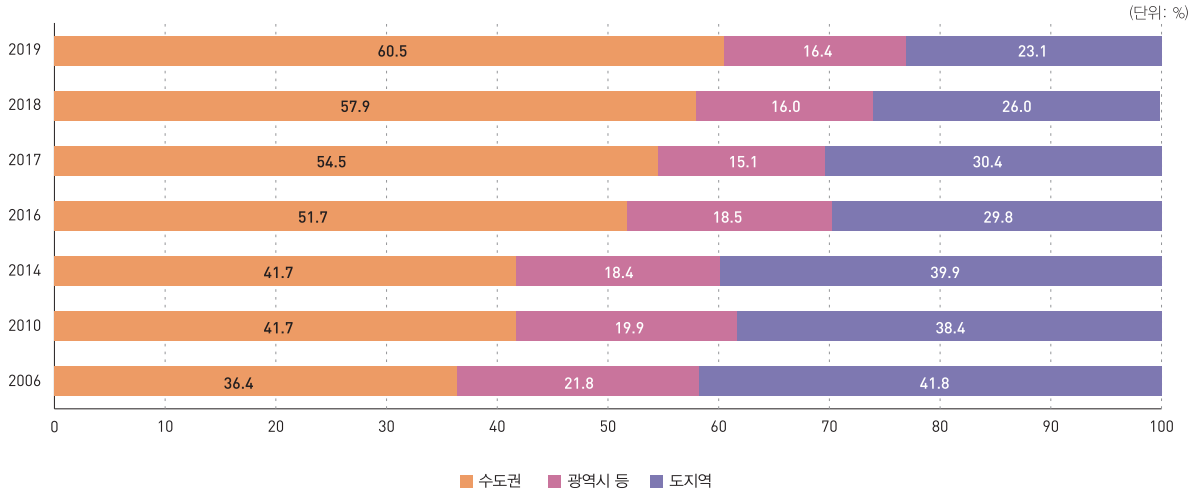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1-3 연도별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2 연도별 · 점유형태별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단위: %)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체	0.3	0.3	0.6	0.3	0.2	0.2	0.2	0.1
자가	0.1	0.1	0.1	0.1	0.1	0.0	0.1	0.1
전세	0.2	0.2	0.6	0.3	0.1	0.1	0.2	0.1
보증금 있는 월세	0.8	0.9	1.6	0.9	0.7	0.6	0.5	0.4
보증금 없는 월세	1.6	0.8	1.8	0.7	1.3	0.2	1.3	0.1
무상	0.5	0.4	1.5	0.2	0.2	0.4	0.1	0.1

주: 1) 거실 및 식당 수가 방의 개수에 포함됨.
2) 2012년도의 경우 부엌, 거실, 화장실, 창고를 제외한 방 수를 조사하였으므로 방의 개수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를 단칸방으로 간주함.
3)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02
대 표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in receipt of Housing Improvement Support Households

지표 정의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이란 사회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열악한 주택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의 물리적 보완이나 개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5개 사업 지원가구 수의 합
– 주거급여사업, 집수리사업, 슬레이트지붕 철거 · 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유의사항 5개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가 다양하여 중복이 있을 수 있다.

표 11-3 저소득층 주택개보수 지원가구 수 (2008~2019)

(단위: 가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거급여사업[1]	-[4]	19,677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78,294	76,928	73,084	82,960	87,582
								(9,792)	(21,207)	(18,308)	(17,011)	(22,264)
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사업[2]	-[5]	-[4]	1,660	23,654	4,217	1,527	2,219	1,291	-	-	-	-
집수리사업	-[5]	19,270	34,000	10,860	6,360	4,457	2,049	765	1,067	1,241	1,302	848
슬레이트지붕 철거 · 지원사업[3]	-[5]	1,700 (행)[6]	2,320	1,240	360	212	-	-	-	-	-	-
		-	-	2,372 (환, 시범)[6]	8,290	17,942	22,320	27,488	26,721	-[7]	-[7]	-[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69,535	63,996	43,336	21,428	29,628	36,508	42,158	40,707	29,468	26,128	30,385	34,195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1,075	1,093	1,091	1,115	1,054	1,048	934	806	413	754	877	907
계	70,610	105,736	100,718	77,293	64,514	75,859	83,557	149,351	134,597	101,207	115,524	123,532

주: 1) 2014년까지는 주거현물급여(보건복지부), 2015년은 수선유지급여, ()안은 연간수선완료 가구 실적임.
2) 환경부 사업이었으나 2016년 이후 주거급여사업(국토교통부)으로 통합
3) 2009년, 2010년은 희망근로사업이며, 2011년 이후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 지원가구 수 자료 없음.
5) 사업 시행 전
6) 환 : 환경부 사업 / 행 : 행정안전부 사업
7) 해당사업의 2017년 통계는 저소득층 구분 불가(일반인 포함)
자료 : 각 관련 부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내부자료)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내부자료)	2015	2019	부정기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내부자료)	-	2019	부정기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내부자료)	-	2019	부정기
환경부	슬레이트지붕 철거 · 지원사업 (내부자료)	-	2016	부정기
행정안전부	집수리 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내부자료)	-	2019	부정기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음.

Checkpoint 주거급여사업 지원가구 수는 2019년 87,582가구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수선유지급여가 자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가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03
대 표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비율

Percentages of households residing in nonhousing accommodation

지표 정의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처가 있으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여관 등 숙박시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무허가 불량 건축물 등이 해당되나 오피스텔과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은 제외한다.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주택이외의 거처로 오피스텔과 기타로만 구분되어 있으므로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에서 오피스텔 거주가구를 제외한 가구로 계산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숙박업소의 객실 거주가구 수 + 판잣집,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수 + 기타 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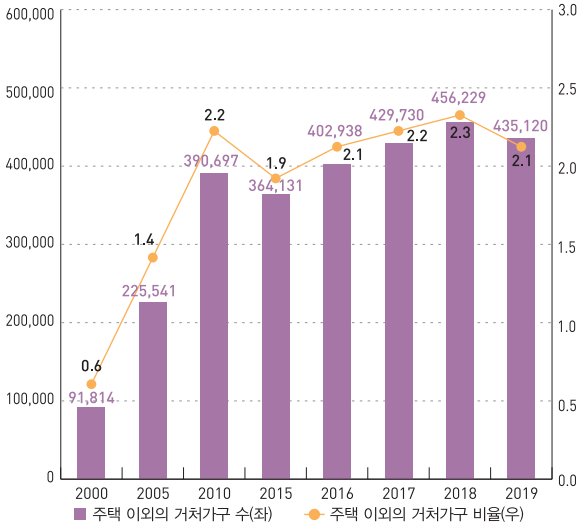
또는

$$\frac{\text{(주택이외의 거처 거주−오피스텔 거주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2015년까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한 여관, 판잣집, 비닐하우스 외에도 고시원, 고시텔,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등이 주택 이외의 거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림 11-4 연도별 주택 이외 거처가구 규모 및 비율

(단위: 가구, %)



주: 1) 2015년 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입 이전에는 기본 항목에 대한 조사를 현장 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이후에는 등록센서스 기반의 조사 방식을 따름.
2) 2015년 이후 값은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전수부문의 결과임.
3) 주택 이외의 거처는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 공간으로 오피스텔,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2. 인출)

표 11-4 연도별 ·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이외의 거처가구 현황

(단위: %)

구분	주택 이외 거처가구					주택 거주 가구
	2015	2016	2017	2018	2019	2019
20세 미만	0.5	0.7	0.4	0.5	0.4	0.3
20~29세	14.0	14.4	20.7	15.1	14.4	6.8
30~39세	16.0	15.6	11.6	14.9	14.5	14.9
40~49세	19.1	18.4	28.7	16.9	16.2	21.1
50~64세	35.6	35.8	27.5	36.9	37.6	34.4
65세 이상	14.9	15.1	11.2	15.7	16.9	2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등록센서스를 활용한 전수부문의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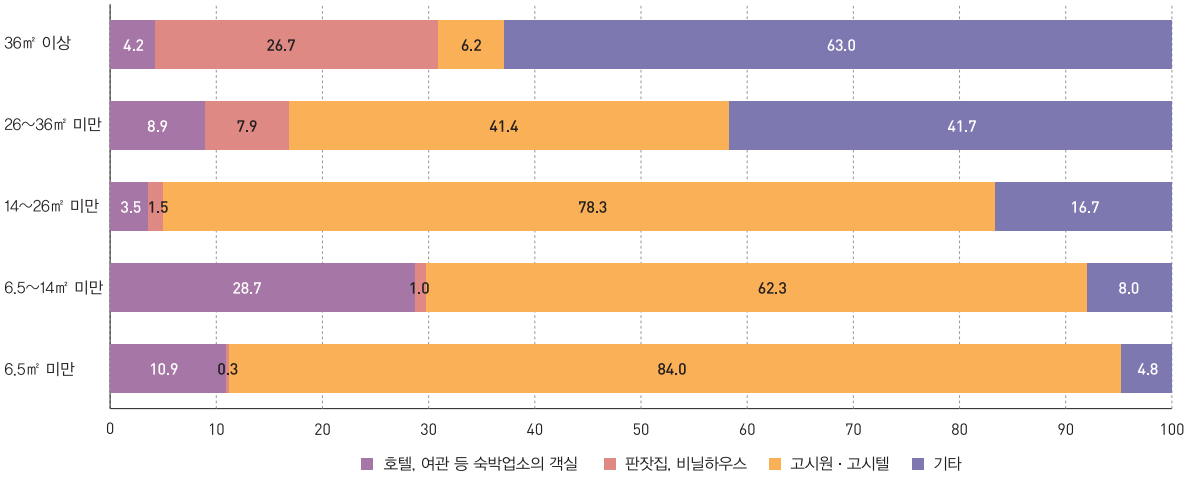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9	1년

Checkpoint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는 최근 5년 간 2% 내외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이외의 거처로 인식되어 온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거주가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이들 거처가구의 비율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에 집계되거나 조사되지 못한 거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2017년 실시된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고시원 및 고시텔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1-5 주거전용면적별 유형별 주택 이외의 거처 분포 (2017)

(단위: %)



주: 1) 무응답, 반올림, 신뢰도가 낮아 공표되지 않는 항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거처 유형의 기타 중 일터의 일부공간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18 (http://kosis.or.kr에서 2021.1.4. 인출)

표 11-5 지역별 유형별 주택 이외의 거처 분포 (2017)

(단위: 가구, %)

구분	가구 수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 비닐하우스	고시원 · 고시텔	기타
계	369,501	8.2	1.8	41.0	49.0
수도권	190,186	3.5	1.6	68.7	26.2
비수도권	179,315	13.3	2.0	11.6	73.1

주: 1) 무응답, 반올림, 신뢰도가 낮아 공표되지 않는 항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전체와 하위 구성항목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거처 유형의 기타 중 일터의 일부공간과 PC방 등 다중이용업소는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2018 (http://kosis.or.kr에서 2021.1.4. 인출)

04
대 표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Number of housing units per 1,000 population

지표 정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전체 주택 수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 주택의 양적 상태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많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적 지표이다. 가구 수보다는 인구수 측정이 용이하여 주택의 양적 수급여건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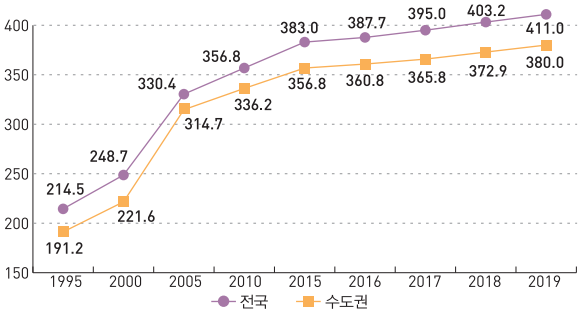
측정 산식

- $\frac{\text{주택 수}}{\text{인구수}} \times 1{,}000$

유의사항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1채로 보는 경우와 구분거처 수로 산정하는 경우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는 지표이기는 하나, 상기한 바와 같이 국가별로 주택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1-6 연도별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단위: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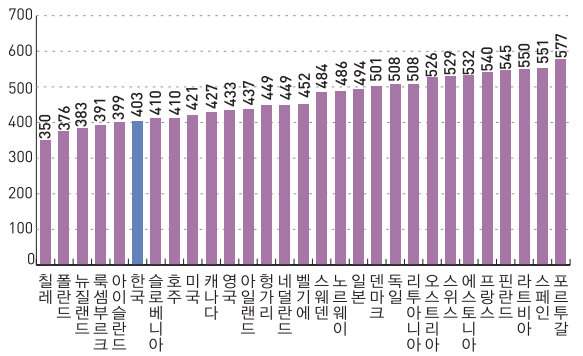


주: 1) 주택 수 산정 관련, 1995년, 2000년은 다가구주택 1호로 산정, 2005년 이후는 구분거처 수로 산정
2) 주택 수에는 빈집이 포함
3)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

자료: e-나라지표,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http://www.index.go.kr에서 2021.2.5. 인출)

그림 11-7 OECD 국가의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2018년 또는 최신 연도)

(단위: 호/천 명)



주: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주택수는 2018년도 기준 e-나라지표 자료를 이용

자료: OECD, Questionnaire on Affordable and Social Housing (2016, 2019);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표 11-6 연도별 · 시도별 인구 천 인당 주택 수 변화 (2018~2019)

(단위: 호)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A)	403.2	372.9	380.6	416.2	407.5	377.4	414.1	405.0	413.9	366.2	453.3	450.3	440.2	441.1	463.7	475.5	429.6	404.3	419.9
2019(B)	412.0	380.0	388.0	427.0	412.0	381.0	422.0	412.0	426.0	374.0	470.0	460.0	447.0	452.0	471.0	485.0	442.0	417.0	427.0
천 인당 주택 수 변화 (B-A)	8.8	7.1	7.4	10.8	4.5	3.6	7.9	7.0	12.1	7.8	16.7	9.7	6.8	10.9	7.3	9.5	12.4	12.7	7.1

주: 2015년 이후는 등록센서스 기반

자료: e-나라지표,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주택 수(http://www.index.go.kr에서 2021.2.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60	2015	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2015	2019	1년

Checkpoint 인구 천 인당 주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및 도지역은 천 인당 주택 수가 400호를 넘어선 데 비해 수도권은 380.1호인데(서울 387.8호, 인천 380.5호, 경기 37.4호), 이는 주택의 양적 부족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에 대부분 지역이 주택보급률(구분거처로 산정하는 新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2019년에도 여전히 서울은 96.0%으로 주택의 절대적 부족을 보이고 있다.(인천 2011 제주 2015, 경기 2019 주택보급률 100% 초과)

05
대 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eholds Living in Long Term Public Rental Housing

지표 정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의 재원(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건설, 매입하여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거나 매입한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의무기간을 규정하는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본 지표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였다.

-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공공재원이 투입되고 장기간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책정되므로,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유의사항 제도 변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외국의 사회주택과 유사한 유형 외에도 중간소득층 대상의 내집마련을 위한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포함되어 있다.

표 11-7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09~2019)

(단위: 천 가구,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가구 수		16,862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561	19,838	20,168	20,500	20,891
임대주택	수	1,311	1,399	1,460	1,487	1,616	1,709	1,938	2,273	2,444	2,985	3,045
	%	7.77	8.07	8.24	8.24	8.78	9.10	9.91	11.46	12.12	14.56	14.57
공공임대주택	수	865	924	1,019	1,038	1,125	1,177	1,257	1,358	1,441	1,570	1,660
	%	5.13	5.33	5.75	5.75	6.11	6.27	6.43	6.84	7.15	7.66	7.95
장기공공임대주택	수	691	806	890	748	783	820	1,163	1,256	1,350	1,484	1,584
	%	4.10	4.65	5.02	4.14	4.25	4.37	5.95	6.33	6.70	7.24	7.58

주: 전체 가구 수는 2007-2014년 국토교통부의 주택보급률 상 가구 수 활용, 2015년부터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함. 이는 장래가구추계의 수치와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31. 인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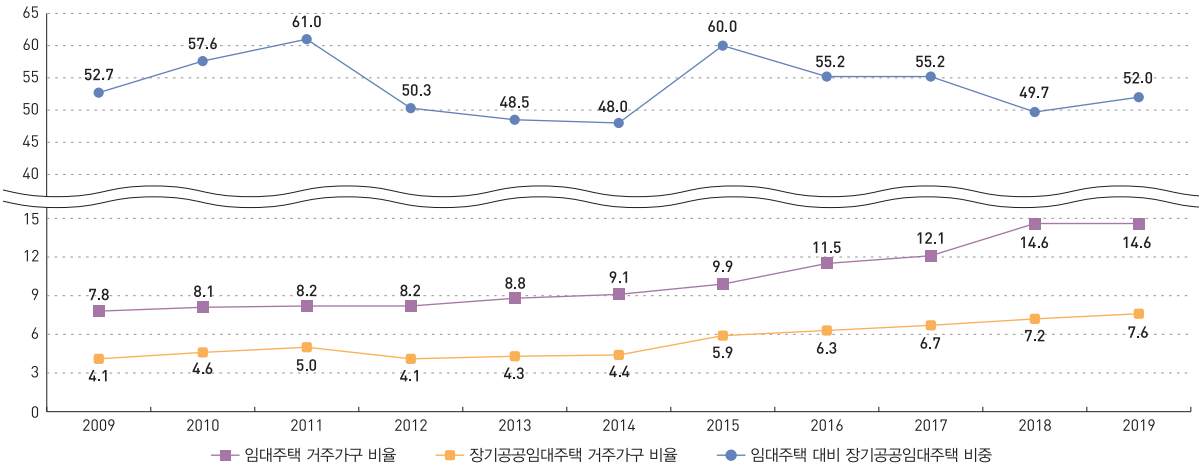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은 7.58%로 전년도 7.24%에 비해 0.35%p 상승하였으며, 지속적인 공급으로 재고도 확대되고 있다.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만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계획에 따라 공급된다면 향후에도 거주가구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1-8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중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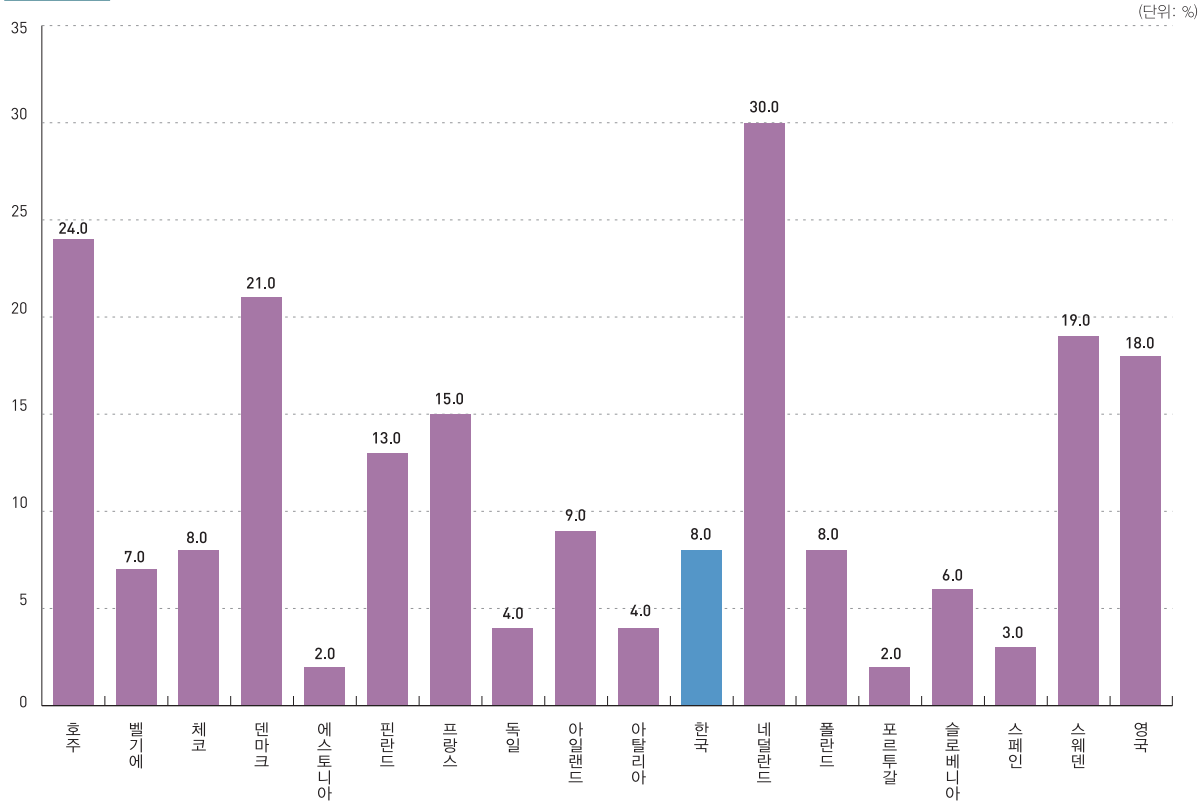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31. 인출);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각 연도

그림 11-9 EU 주요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2019)

(단위: %)



주: 1)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에는 사회주택, 자선단체, 시정부 공공임대주택에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을 의미함.
2) 총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총 점유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스페인)
3) 2019년도 자료가 있는 국가만 포함

자료 : Housing Europe, The State oh Housing in the EU 2019, 2019

05-1
연 관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Public Rental Housing units as percentage of an new housing units

지표 정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이란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이는 공공부문의 시장개입 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며,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수준도 전망할 수 있게 한다.

측정 산식

$$\frac{\text{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 수}}{\text{당해 연도 주택공급 호 수}} \times 100$$

표 11-8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수 (2009~2019)

(단위: 천 호,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주택 건설(인허가)		381.8	386.5	549.6	586.9	440.1	515.3	765.3	726.0	653.4	554.1	488.0
공공임대 주택 건설	(인허가)	168.3	138.3	115.3	109.6	79.6	63.3	76.4	75.8	76.6	81.1	93.6
	%	44.1	35.8	21.0	18.7	18.1	12.3	10.0	10.4	11.7	14.6	19.2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0.12.31. 인출)

표 11-9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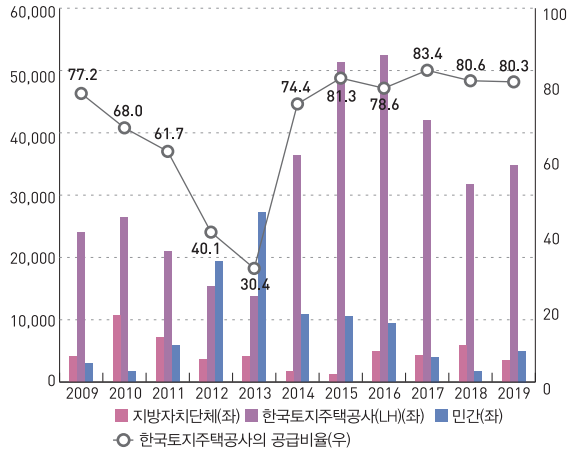
(단위: 호)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31,021	38,828	34,026	38,399	45,156	48,926	63,178	66,646	50,255	39,328	43,208
지방자치단체	4,153	10,746	7,117	3,595	4,142	1,695	1,263	4,907	4,296	5,897	3,512
한국토지주택공사 (LH)	23,943	26,385	20,980	15,399	13,739	36,421	51,366	52,353	41,932	31,691	34,715
민간	2,925	1,697	5,929	19,405	27,275	10,810	10,549	9,386	4,027	1,740	4,981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0.12.31. 인출)

그림 11-10 공급주체별 신규 공공임대주택 수 및 LH의 공급 비율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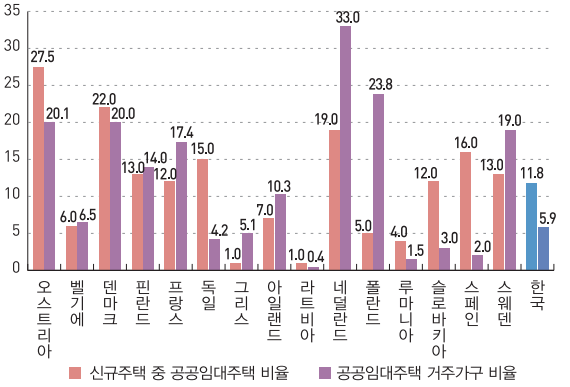
(단위: 호, %)



자료: 국토교통부,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0.12.31. 인출)

그림 11-11 EU 국가의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2017)

(단위: %)



주: 1) 프랑스는 착공(starting) 기준, 그 외 국가는 준공(completion) 기준
2) 신규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수치가 없는 EU 국가는 제외
3) 벨기에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기준
4)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의 경우 신규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및 공공주택 거주가구 비율은 CECODHAS Housing Europe, 2012 기준

자료: Housing Europe, The State of Housing in The EU 2017, 2017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	2019	1년

06
대 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e in current housing

지표 정의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거주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능동적인 입장에 있는 자가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더 길다. 그러므로 현재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은 특히 임차가구의 경우 더욱 의미가 있다.

측정 산식

- 현재 주택에 거주한 연도에서 조사 연도까지의 기간

유의사항 특성별 거주기간 비교를 통해 주택유형, 소득수준별 주거안정성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표 11-10 연도별 · 지역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국	7.7	7.7	7.9	8.6	7.7	7.7	8.0	7.7	7.7
수도권	5.3	6.0	6.2	6.7	6.4	6.4	6.7	6.3	6.3
광역시	7.2	7.2	7.5	8.0	7.6	7.4	7.7	7.4	7.4
도지역	11.3	10.6	10.6	11.9	10.0	9.9	10.3	10.2	10.0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1 연도별 · 점유형태별 현재 주택에서의 평균 거주기간

(단위: 년)

구 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자가	11.0	10.8	11.4	12.5	11.2	10.6	11.1	10.7	10.7
전세	2.9	3.1	3.3	3.2	3.5	3.4	3.6	3.3	3.0
보증금 있는 월세	3.2	3.4	3.3	4.1	3.4	3.5	3.4	3.4	3.2
보증금 없는 월세	3.6	4.7	4.6	5.2	4.3	4.8	3.4	4.2	3.2
무상	8.6	8.7	8.5	10.5	7.4	7.0	7.8	6.7	7.2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9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Checkpoint

2019년 평균 거주기간은 7.7년으로 2012년 8.6년, 2018년 8.0년을 제외하면 평균 거주기간은 7.7년 정도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역별로 보면, 광역시가 전국 평균에 유사하게 나타나고 수도권은 이보다 짧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인 경우 도지역과 같이 평균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임대형태에 비해 거주기간이 세 배 가까이 길었으며, 임대는 점유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소득별 평균 거주기간을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었는데, 특히 25년 이상 장기거주 비율이 중고소득층에서는 4% 미만인 데 반해 저소득층은 10% 내외이다.

표 11-12 연도별 · 소득별 현 주택의 평균 거주기간 및 거주기간별 분포 변동

(단위: 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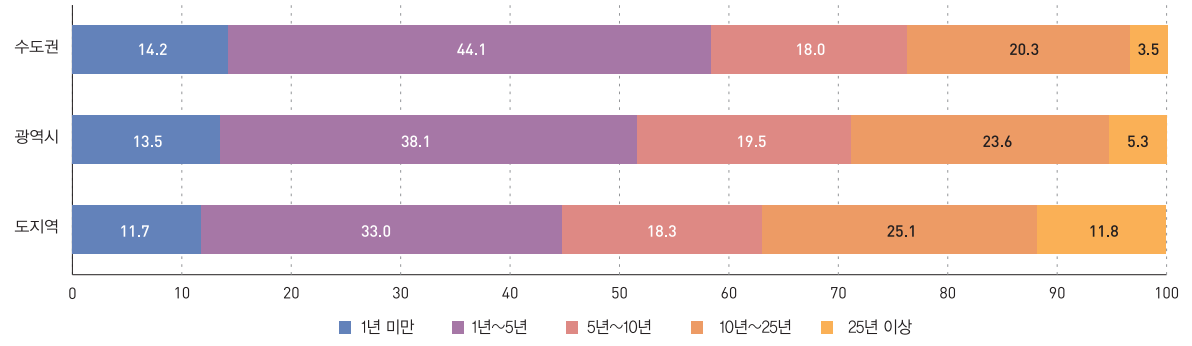
구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거주기간
하위	2006	13.5	32.8	15.6	25.6	12.5	100	10.3
	2008	12.1	29.7	18.4	27.0	12.8	100	10.6
	2010	10.9	33.5	17.3	25.8	12.5	100	10.3
	2012	8.6	31.5	17.1	29.0	13.8	100	11.5
	2014	13.6	31.9	15.7	27.2	11.6	100	10.1
	2016	13.6	33.2	17.4	25.9	9.9	100	9.3
	2017	11.9	36.0	15.3	25.8	11.1	100	9.7
	2018	14.1	33.8	15.6	25.3	11.2	100	9.6
	2019	15.8	11.2	15.3	7.9	11.6	100	9.5
중위	2006	14.7	44.7	19.4	18.4	2.8	100	5.8
	2008	13.5	43.4	21.7	18.5	2.9	100	6.0
	2010	10.8	43.3	20.5	22.1	3.4	100	6.6
	2012	8.3	46.4	20.3	21.4	3.5	100	6.8
	2014	13.8	42.1	18.4	22.3	3.3	100	6.4
	2016	12.2	42.8	19.3	22.2	3.5	100	6.6
	2017	9.4	44.1	19.4	23.5	3.7	100	6.8
	2018	12.1	44.8	18.2	21.4	3.6	100	6.5
	2019	13.0	14.4	19.6	6.8	3.9	100	6.5
상위	2006	12.5	47.1	20.9	17.4	2.1	100	5.5
	2008	10.5	44.6	26.0	17.4	1.5	100	5.6
	2010	8.8	43.5	24.8	20.9	2.1	100	6.2
	2012	7.3	44.7	21.6	24.0	2.4	100	6.6
	2014	10.5	40.8	23.6	23.4	1.8	100	6.4
	2016	9.6	41.4	22.4	24.0	2.6	100	6.7
	2017	7.7	42.4	21.1	26.2	2.7	100	6.7
	2018	9.4	42.5	20.7	24.9	2.5	100	6.7
	2019	8.9	14.1	21.8	8.2	2.4	100	6.8

주: 1)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그림 11-12 지역별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비율 (2019)

(단위: %)



자료 : 국토교통부,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0

07
대 표

노숙인 수

Number of homeless persons

지표 정의

노숙인은 정규적인 주거지가 없어 사람이 자도록 고안되지 않은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일시적인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사람을 말한다.

-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중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노숙인이라 할 수 있으며, 노숙인 수는 노숙인 문제의 양상과 그 심각성을 보는 데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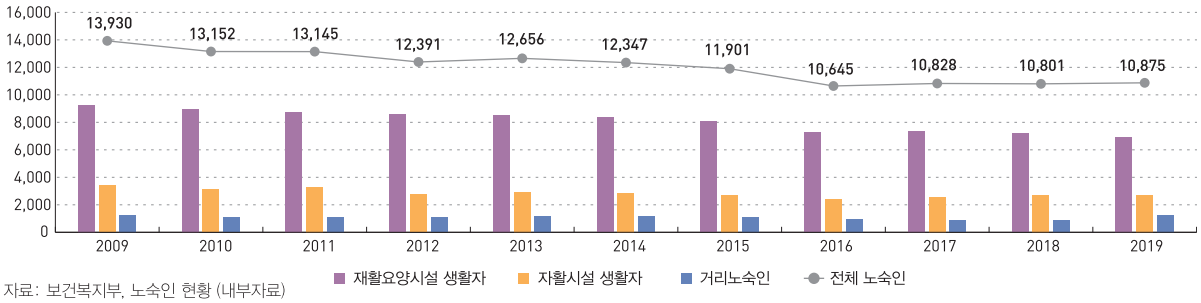
측정 산식

- **거리노숙인 수 + 노숙인시설 생활자 수(자활시설, 재활 · 요양시설)**

유의사항 노숙인에 준하는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와 연계하여 이해해야한다.

그림 11-13 유형별 노숙인 수 (2009~2019)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 노숙인 현황 (내부자료)

표 11-13 시도별 노숙인 현황 (2013~2019)

(단위: 명, %)

연도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3	노숙인 수	12,656	4,481	898	1,314	764	377	344	33	114	1,117	297	804	46	217	759	405	520	166
	비중	100.0	35.4	7.1	10.4	6.0	3.0	2.7	0.3	0.9	8.8	2.3	6.4	0.4	1.7	6.0	3.2	4.1	1.3
2014	노숙인 수	12,347	4,248	884	1,251	809	167	359	53	112	1,181	341	802	78	229	764	391	510	168
	비중	100.0	34.4	7.2	10.1	6.6	1.4	2.9	0.4	0.9	9.6	2.8	6.5	0.6	1.9	6.2	3.2	4.1	1.4
2015	노숙인 수	11,901	4,046	850	1,197	763	211	336	79	128	1,045	295	810	80	222	764	364	516	195
	비중	100.0	34.0	7.1	10.1	6.4	1.8	2.8	0.7	1.1	8.8	2.5	6.8	0.7	1.9	6.4	3.1	4.3	1.6
2016	노숙인 수	10,645	3,682	767	1,106	527	154	311	22	132	1,002	323	774	48	232	720	349	343	153
	비중	100.0	34.6	7.2	10.4	5.0	1.4	2.9	0.2	1.2	9.4	3.0	7.3	0.5	2.2	6.8	3.3	3.2	1.4
2017	노숙인 수	10,828	3,653	880	1,001	718	154	293	43	115	924	287	712	76	235	735	345	498	159
	비중	100.0	33.7	8.1	9.2	6.6	1.4	2.7	0.4	1.1	8.5	2.7	6.6	0.7	2.2	6.8	3.2	4.6	1.5
2018	노숙인 수	10,801	3,628	784	1,014	680	158	315	41	111	947	307	729	144	233	683	329	540	158
	비중	100.0	33.6	7.3	9.4	6.3	1.5	2.9	0.4	1.0	8.8	2.8	6.7	1.3	2.2	6.3	3.0	5.0	1.5
2019	노숙인 수	10,875	3,589	775	1,024	716	344	299	145	118	931	256	697	52	247	689	321	528	144
	비중	100.0	33.0	7.1	9.4	6.6	3.2	2.7	1.3	1.1	8.6	2.4	6.4	0.5	2.3	6.3	3.0	4.9	1.3

자료: 보건복지부, 노숙인 현황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노숙인 현황 (내부자료)	2005	2019	1년

Checkpoint 노숙인 수는 2016년까지 감소해왔으며, 그 이후에는 다소의 가감이 있으나 유사한 규모를 보인다. 지역별 비중 변화를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서울은 2013년 35.4%에서 2019년 33.0%로 감소하였고, 그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대구나 경기도는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 노숙인의 비율이 낮은 도지역인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그리고 광역시 중 인천, 광주, 울산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2019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19

08
대 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Housing Price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은 PIR(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도 하며, 주택가격을 연소득 대비 배수로 나타난다.

•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지역별, 국가별 주택구입능력을 비교해 봄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성이나 주택가격 수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연소득이나 주택가격 산정값에 따라 배율에 차이가 있다.

측정 산식

$$\text{주택가격} \div \text{가구의 연소득}$$

유의사항 국제 비교 시 주택가격 대푯값(혹은 개별가구의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에 대한 기준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11-14 연도별 ·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배)

구 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 국	중위수	4.2	4.3	4.3	5.1	4.7	5.6	5.6	5.5	5.4
	평균	6.0	6.0	5.6	7.6	5.7	6.3	6.4	6.7	6.8
수도권	중위수	5.7	6.9	6.9	6.7	6.9	6.7	6.7	6.9	6.8
	평균	8.1	8.5	7.9	10.1	7.1	7.6	7.9	8.6	9.0
광역시	중위수	4.1	3.3	3.5	5.0	4.7	5.3	5.5	5.6	5.5
	평균	4.2	4.0	4.1	7.1	5.1	5.7	5.8	6.2	6.2
도지역	중위수	3.3	3.0	2.9	3.6	4.2	4.0	4.0	3.6	3.6
	평균	3.4	3.3	3.1	5.4	4.1	4.7	4.5	4.5	4.3

주 : 2012년은 개별가구 PIR를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5 연도별 · 소득계층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배)

구 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전 국	중위수	4.2	4.3	4.3	5.1	4.7	5.6	5.6	5.5	5.4
	평균	6.0	6.0	5.6	7.6	5.7	6.3	6.4	6.7	6.8
하 위	중위수	6.3	6.4	6.1	7.5	8.3	9.8	8.3	9.0	8.9
	평균	10.9	9.9	9.2	11.3	11.2	11.6	11.1	12.0	12.3
중 위	중위수	3.4	4.3	4.2	4.3	5.0	5.6	5.2	5.2	5.2
	평균	5.4	5.6	5.7	5.5	5.8	6.2	6.2	6.4	6.5
상 위	중위수	3.6	4.2	4.0	4.4	4.7	5.0	4.8	4.8	4.8
	평균	5.3	5.2	4.7	5.4	4.5	5.0	5.3	5.7	5.8

주: 1) 2012년은 개별가구 PIR를 중위수 및 평균을 도출한 값이며, 그 외는 대상 집단의 중위수 및 평균으로 계산
2) 소득계층은 조사된 가구소득 10분위수를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4분위), 중소득층(5분위~8분위), 고소득층(9분위~10분위)으로 구분함.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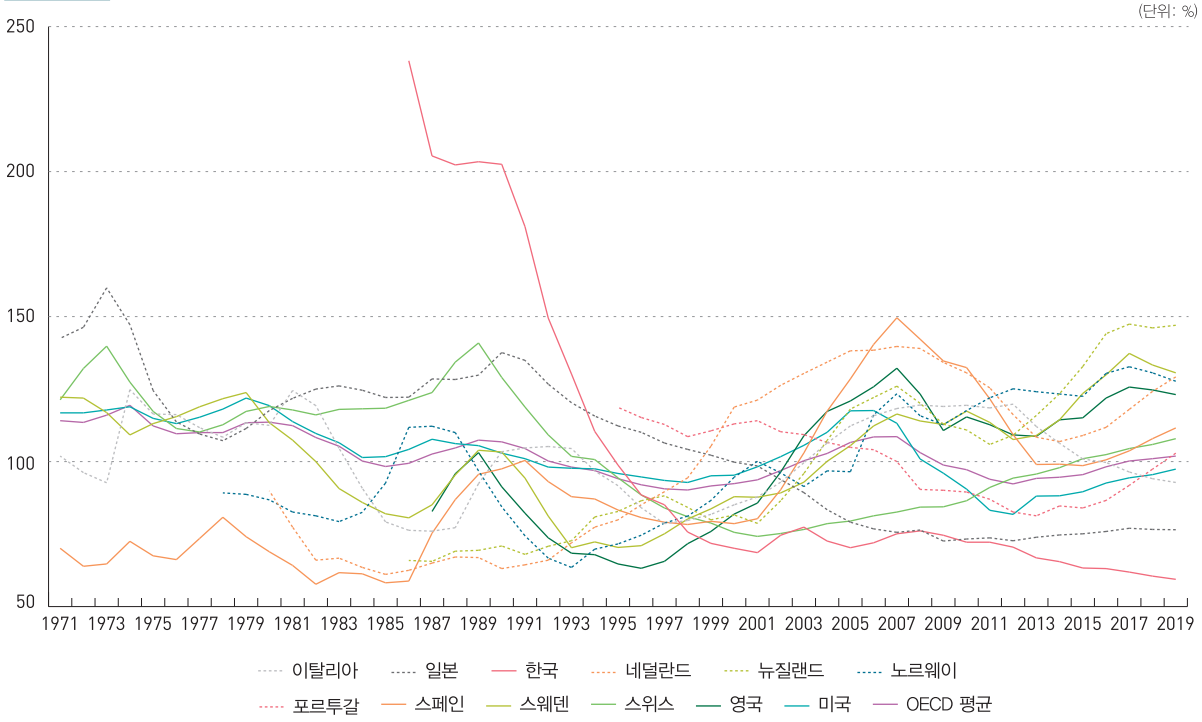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9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Checkpoint 주택가격은 소득상승 및 주택시장 영향이 큰 만큼 주택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PIR은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소득 상위의 PIR은 소득 중위나 하위층보다 낮다. 그리고 2019년 PIR은 6.8배로 2018년 PIR 6.7배로 유사하나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양상이다. 한편, 2010년 기준 PIR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다.

그림 11-14 OECD 국가별 PIR 추이(1971~2019)

(단위: %)



주: 1) 기준연도 2015(2015=100)
2) 가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대비 평균 주택가격으로 계산
자료: OECD. Stat, Housing prices – Standardised price-income ratio (http://data.oecd.org에서 2020.12.30. 인출)

그림 11-15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OECD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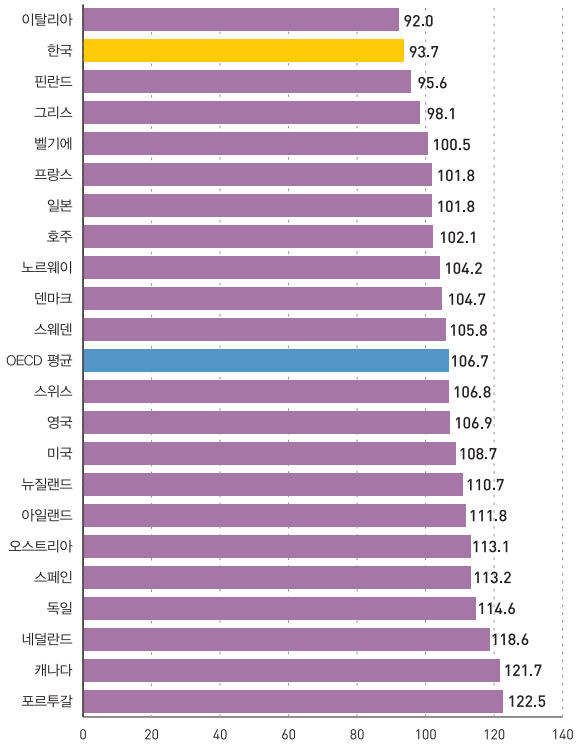
(단위: %)



주: OECD 평균에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이 포함됨.
자료: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ouse Prices. 2019 (http://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market.htm에서 2021.2.17. 인출)

그림 11-16 OECD 국가별 PIR (2015년 대비 2019년 수준)

(단위: %)



주: 1) 기준연도 2015(2015=100)
2) 가구의 가처분 소득 평균대비 평균 주택가격으로 계산
자료: OECD. Stat, Housing prices – Standardised price-income ratio (http://data.oecd.org에서 2020.12.30. 인출)

09
대 표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Monthly Rent to Income Ratio

지표 정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월소득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공공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이 25% 혹은 30%를 넘으면 임대료 과부담 가구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임대료 부담이 커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측정 산식

- $\frac{\text{가구의 월 임대료}}{\text{가구의 월소득}} \times 100$

※ 전세가구는 해당 시점에서 전세금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유의사항 전세보증금의 월세전환율에 대한 이해 및 적정 월 임대료 비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파트가 많은 국내의 경우, 임대료 외에 관리비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11-16 연도별 · 지역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전국	18.7	22.9	17.5	22.8	19.2	23.1	19.8	26.4	20.3	24.2	18.1	21.4	17.0	21.8	15.5	21.1	16.1	21.3
수도권	19.9	25.3	22.3	26.1	20.9	26.4	23.3	30.5	21.6	27.4	17.9	24.6	18.4	24.7	18.6	24.0	20.0	24.6
광역시 등	18.5	20.1	19.3	19.5	16.4	19.4	16.8	22.0	16.6	20.5	15.4	16.9	15.3	17.5	16.3	17.6	16.3	17.7
도지역	17.8	18.5	15.9	16.4	14.4	16.2	14.5	19.3	15.8	17.3	14.2	15.1	15.0	15.9	15.0	15.4	12.7	14.6

주 :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를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표 11-17 연도별 · 소득계층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

(단위: %)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7		2018		2019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평균
하위	27.6	36.6	25.0	30.9	28.2	31.1	21.8	33.6	29.0	34.1	23.1	26.7	22.2	26.3	20.3	25.8	20.3	26.2
중위	18.9	20.7	17.6	21.4	16.6	21.4	17.3	20.3	17.0	23.1	14.9	18.9	15.7	19.2	16.7	18.8	16.7	19.2
상위	16.1	18.5	17.4	20.3	21.1	21.0	22.6	24.4	21.6	21.2	19.0	20.6	20.3	21.9	18.3	20.8	18.3	21.1

주 : 월세 전환율(월세이율)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06년 11.88%에서 2008년 11.76%, 2010년 11.52%, 2012년 10.44%, 2014년 9.36%, 2016년 6.70%, 2017년 6.40%, 2018년 6.20%, 2019년 6.10%를 적용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연도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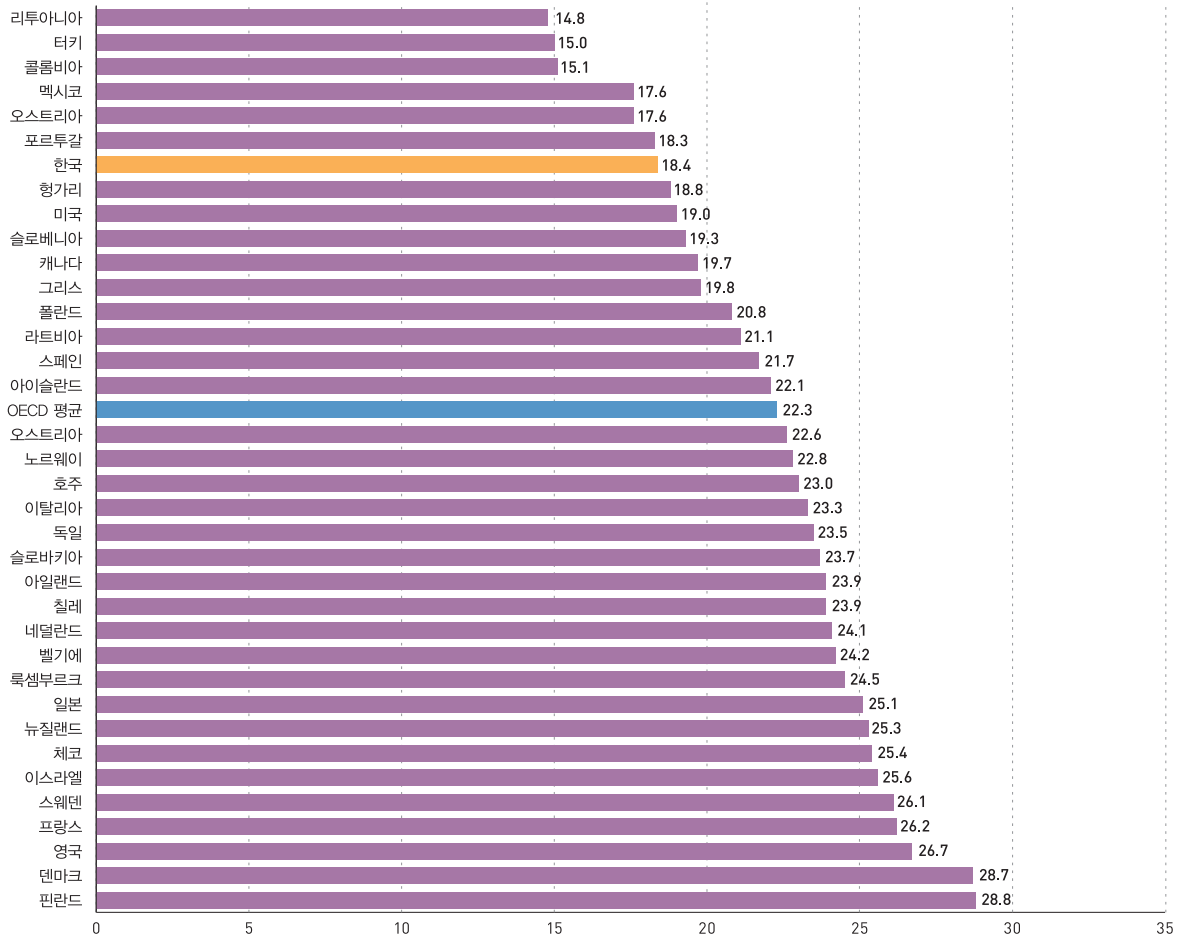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	2019	1년

* 2016년까지는 2년 주기, 2017년부터 1년 주기로 변경됨.

Checkpoint 월세전환율 하락으로 월세부담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으로 RIR 역시 하락하고 있다. 다만, 임대료 외 주거비용(광열수도비,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을 포함한 RIR 산정 시 더 높아질 것이다. 임대료가 높은 수도권, 소득수준이 낮은 하위층의 RIR이 높게 나타난다. EU에서는 적정 주거비 부담 수준을 가처분 소득 대비 총 주거비 비율을 25% 이하로 보고 있다.

그림 11-17 OECD 국가의 가구소비 지출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 (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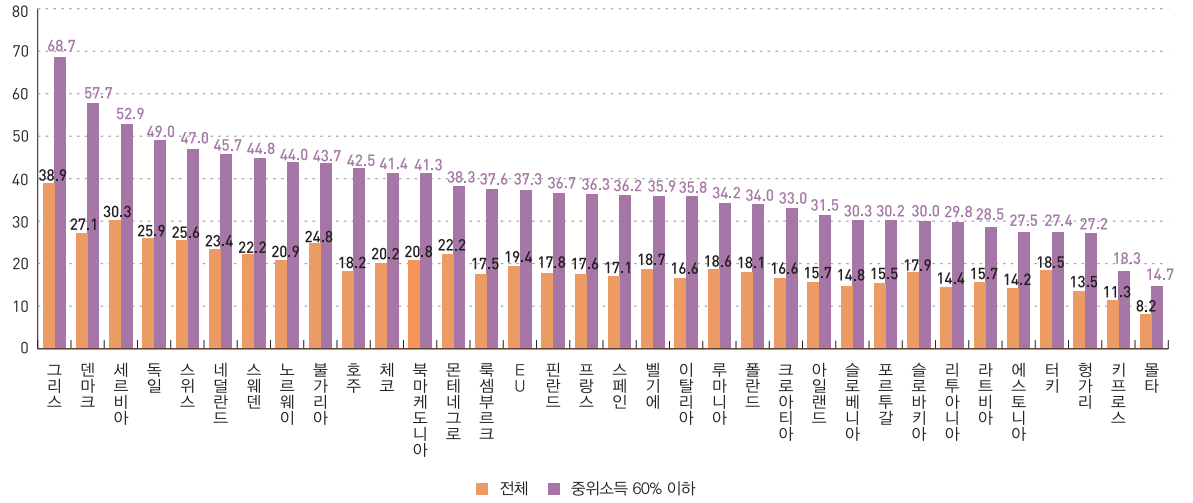


주: 2017년 또는 최근 연도 자료

자료: OECD. OECD Affordable Housing Database (http://www.oecd.org/housing/data/affordable-housing-database/housing-conditions.htm에서 2021.2.1. 인출)

그림 11-18 국가별 주거비 과부담 비율 (2019)

(단위: %)



주: 주거비 과부담이란 가구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data (2021.1.4. 인출)

10 대 표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Number of households with loans from National Housing and Urban Fund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는 근로자 · 서민 등 일정한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 지원한 가구 수를 의미한다. 또한 대출 조건이 무주택자라는 점에서 무주택 서민의 자가 취득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가 목적이다.

측정 산식

• 내집마련 디딤돌 융자가구 수 + 공유형 모기지 지원가구 수 + 기타(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 오피스텔 구입자금)

유의사항 2014년부터 근로자 · 서민주택구입융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융자가 내집마련 디딤돌로 통합되어 운영한다.

표 11-18 유형별 국민주택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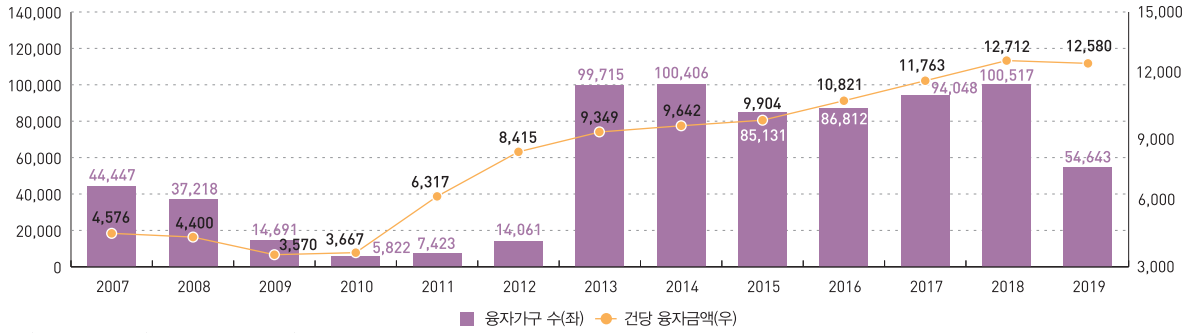
(단위: 가구,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융자가구 수		44,447	37,218	14,691	5,822	7,423	14,061	99,715	100,406	85,131	86,812	94,048	100,517	54,643
자금 융자 규모 (억 원)	내 집 마련 디딤돌	-	-	-	-	-	-	-	81,127	79,241	93,264	110,566	127,725	68,719
	근로자 · 서민 구입	19,239	15,554	5,172	1,576	281	130	3,028	395	7	1	-	-	-
	생애최초 주택구입	1,099	821	72	559	4,408	11,703	86,411	6,649	2,005	481	1	-	-
	공유형 모기지	-	-	-	-	-	-	3,782	7,747	1,955	188	58	49	21
	기타 (주거안정, 오피스텔)	-	-	-	-	-	-	-	2,359	2,099	22	1	5	1
	융자 총액	20,338	16,375	5,244	2,135	4,689	11,833	93,221	98,277	85,307	93,936	110,626	127,779	68,741
건당 융자금액(만 원)		4,576	4,400	3,570	3,667	6,317	8,415	9,349	9,642	9,904	10,821	11,763	12,712	12,580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그림 11-19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 융자가구 수 및 건당 융자금액 (2007~2019)

(단위: 가구, 억 원)



주: 1) 건당 융자금은 (융자총액/융자가구 수)로 계산된 수치임.
2) 2015년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내 유형별 기금이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19	1년
국토교통부	주택구입자금대출 건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19	1년

Checkpoint

주택구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744,934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지원 규모는 73조 8천억 여원에 이른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 확대와 주택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2014년) 및 공유형 모기지(2013년)는 시행 후 3여 년이 지난 현재 지원 규모가 크게 줄었고, 내 집 마련 디딤돌이 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2019년도 융자가구 수는 54,643가구로 2018년 10만 517가구의 54.3% 수준으로 줄었는데 주택시장 경기, 주택가격, 가구의 구매력 등 여러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 2015.7.1. 주택도시기금으로 용어 변경

10-1
연 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Number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jeonse loans

지표 정의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의 전월세자금을 이용한 가구 수를 의미하는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 부부 등은 6천만 원)이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 대출 한도는 전세가격의 70% 범위 내로 하되, 융자 조건은 연소득 구간별로 임차보증금 한도 및 대출 이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일반주택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지원을 하고 있다.

측정 산식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구**

유의사항 2015년부터 근로자 · 서민과 저소득 전세를 통합해 '버팀목' 대출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통계 수치와 비교 시 감안해야 한다.

표 11-19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융자가구 수 및 건당 융자금액 (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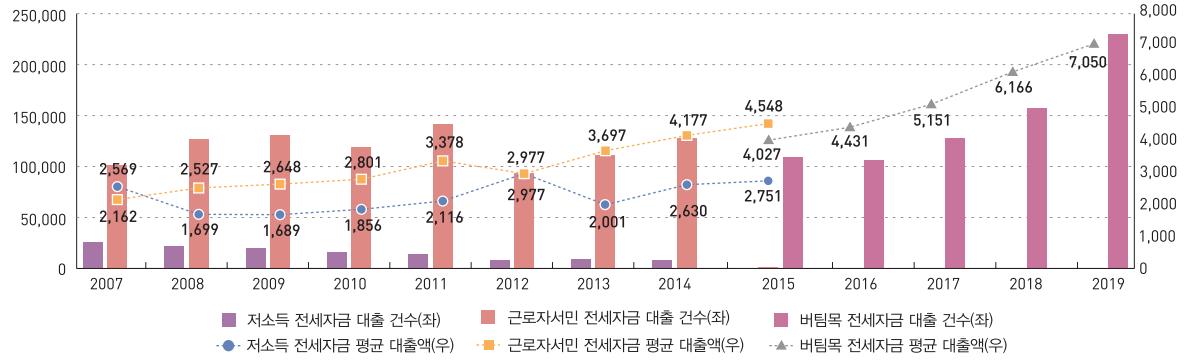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만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저소득 전세 자금	대출 건수	25,809	21,819	19,869	16,038	14,084	8,613	8,864	8,330	229	-	-	-	-
	대출총액(억 원)	6,631	3,706	3,356	2,976	2,980	1,889	1,774	2,191	63	-	-	-	-
	평균 대출액 (만 원)	2,569	1,699	1,689	1,856	2,116	2,977	2,001	2,630	2,751	-	-	-	-
근로자 서민 전세 자금	대출 건수	101,289	127,281	131,331	119,467	141,770	93,426	111,258	127,901	1,282	-	-	-	-
	대출총액(억 원)	21,897	32,170	34,780	33,463	47,883	35,306	41,128	53,427	583	-	-	-	-
	평균 대출액 (만 원)	2,162	2,527	2,648	2,801	3,378	2,977	3,697	4,177	4,548	-	-	-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건수	-	-	-	-	-	-	-	-	109,360	106,016	128,419	157,809	230,002
	대출총액(억 원)	-	-	-	-	-	-	-	-	44,043	46,980	66,151	97,301	162,146
	평균 대출액 (만 원)	-	-	-	-	-	-	-	-	4,027	4,431	5,151	6,166	7,050

주: 평균 대출액은 (대출총액/대출 건수)로 계산된 수치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그림 11-20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건수 및 평균 대출액 (2007~2019)

(단위: 건, 만 원)



주: 1) 평균 대출액은 (대출총액/대출 건수)로 계산된 수치임.
2) 저소득 전세자금 및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2015년 폐지되고, 버팀목 전세자금이 도입되었음.
3) 그래프에 표시된 값은 평균 대출액임.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업무편람	1981	2018	1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월세대출 가구 수 및 금액 (내부자료)	-	2019	1년

11 대 표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Percentage of housing benefit claimants

지표 정의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급여 중 하나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급여를 제공하되, 자가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개보수서비스를 통한 현물급여를 제공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임차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수 +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수}}{\text{일반가구 수}} \times 100$

표 11-20 주거급여 지원 실적 (2010~2019)

(단위: 천 가구,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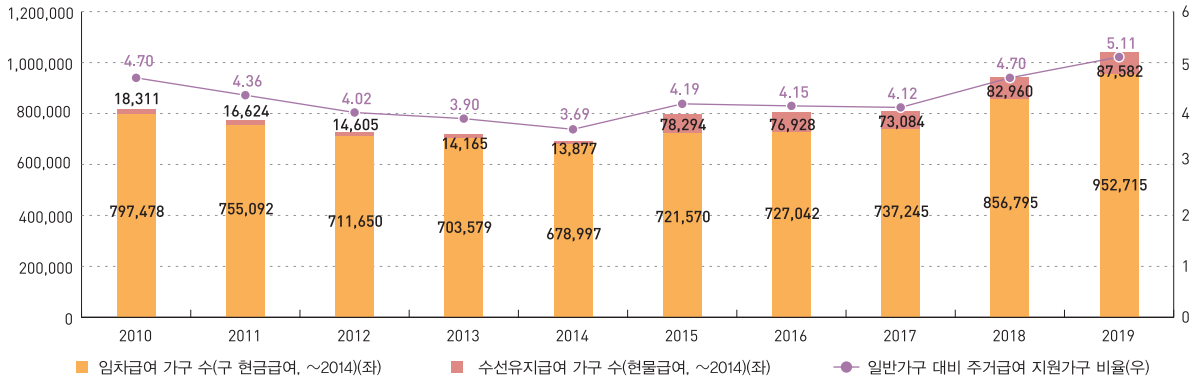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일반가구 수(A, 천 가구)		17,339	17,719	18,057	18,408	18,773	19,111	19,368	19,674	19,979	20,343
주거급여 지원가구 (가구)	합계(B=C+D)	815,789	771,716	726,255	717,744	692,874	799,864	803,970	810,329	939,155	1,040,297
	현금급여(C)	797,478	755,092	711,650	703,579	678,997	-	-	-	-	-
	현물급여(D)	18,311	16,624	14,605	14,165	13,877	-	-	-	-	-
	임차 급여(C)	-	-	-	-	-	721,570	727,042	737,245	856,795	952,715
	수선유지 급여(D)	-	-	-	-	-	78,294 [9,792]	76,928 [21,207]	73,084 [18,308]	82,960 [7,011]	87,582 [22,264]
일반가구 대비 주거급여 지원가구 비율(%) (B/A)		4.70	4.36	4.02	3.90	3.69	4.19	4.15	4.12	4.70	5.11

주: 1) 2010~2014년 보건복지부, 2015년 이후는 국토교통부 자료, ()안은 연간수선완료 호수 실적
2) 2015년부터 2018년 일반가구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4.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그림 11-21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및 지원가구 비율 (2010~2019)

(단위: 가구,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14. 인출)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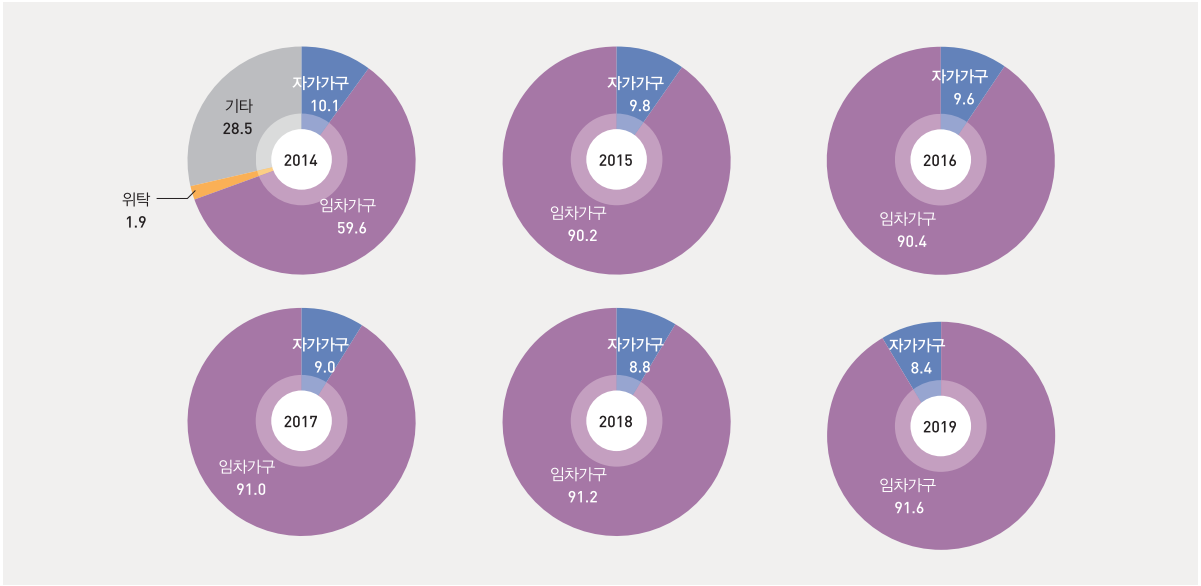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2010	2014	1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2015	2019	1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25	2019	1년

Checkpoint 2019년 주거급여 지원가구는 104만 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5.11%를 차지하며, 이중 임차 급여가구가 91.6%로 대부분이다. 주거급여 도입 시 80만 가구에서 매년 증가해 왔다. 수급자 선정은 신청주의에 기반하는 만큼, 대상 가구를 발굴하는 한편, 대상 기준을 확대하게 되면서 그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거급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3%에서 2019년에는 44%로 상향 조정되었다. 급여 대상자들에 대해 적정한 주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급여형태별, 지역별, 점유형태별 주거급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그림 11-22 점유형태별 수급가구 분포 변화 (2014~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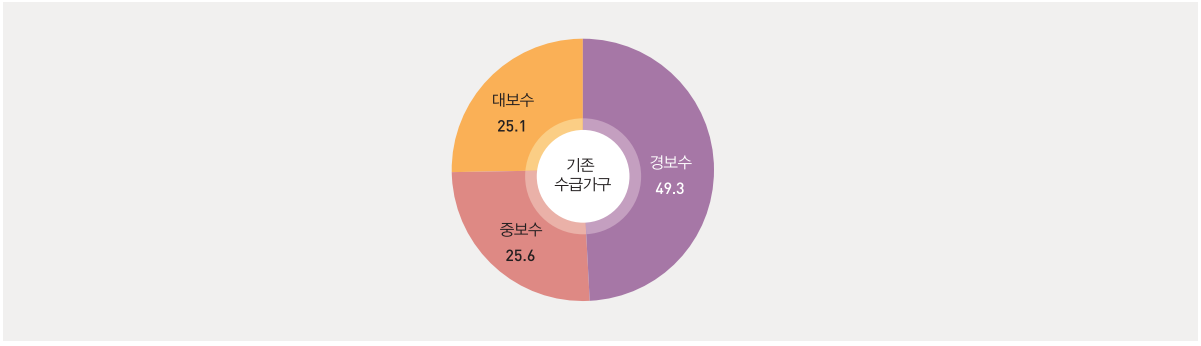
(단위: %)



주: 1) 위탁 : 가정위탁, 보장기관 제공 거주자, 그룹홈 거주자 등
2) 기타 : 부분무료임차, 전체무료임차, 움막비닐하우스, 무허가주택
3) 2014년은 보건복지부, 2015년 이후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그림 11-23 수급가구의 주거상태 (2019)

(단위: %)



주: 1) 경보수 : 설비 부분 교체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 보수(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마감재 개선)
2) 중보수 : 건축마감 불량 및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기능 및 설비 개선)
3)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원가구 수 (내부자료)

12 대 표

주택연금대출(역모기지) 보증 건수

Number of Reverse Mortgages Guaranteed

지표 정의

주택연금대출 보증 건수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대출에 대한 보증 건수를 의미한다. 자산은 있으나 소득은 낮은(house-rich, income-poor)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상품이며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측정 산식

- 매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주택연금 보증 건수

표 11-21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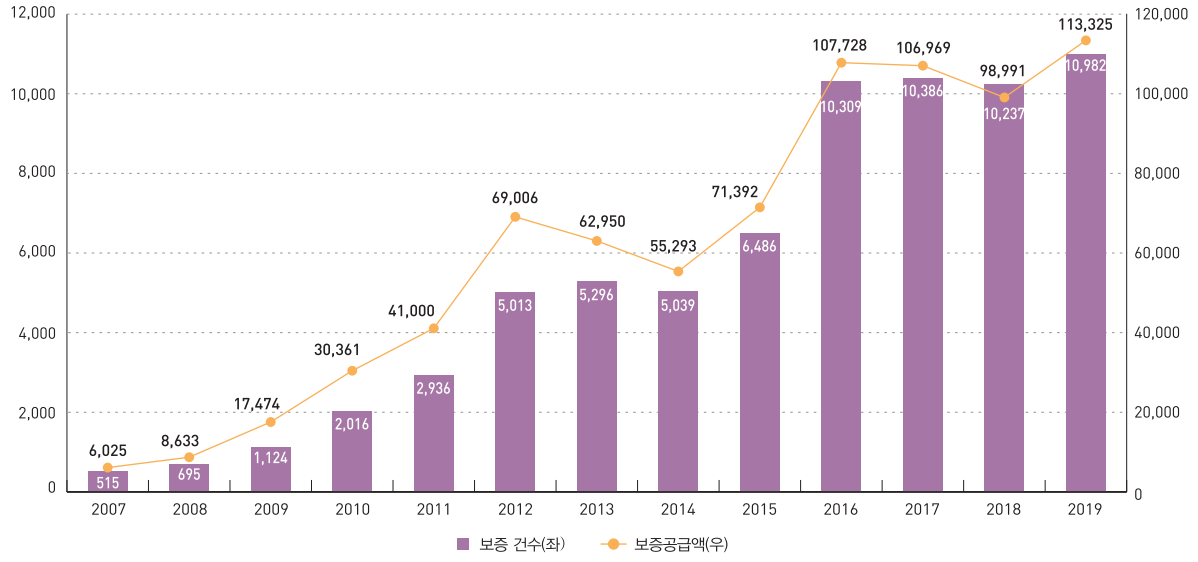
(단위: 건, 억 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보증 건수	515	695	1,124	2,016	2,936	5,013	5,296	5,039	6,486	10,309	10,386	10,237	10,982
보증공급액	6,025	8,633	17,474	30,361	41,000	69,006	62,950	55,293	71,392	107,728	106,969	98,991	113,325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주택연금 통계현황 (https://www.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203126739755.do에서 2021.1.12. 인출)

그림 11-24 주택연금 보증 건수 및 보증공급액 (2007~2019)

(단위: 건, 억 원)



주: 보증공급액은 가입자에게 100세까지 공급될 예상보증공급액 (월지급금 + 개별인출금 + 대출이자 + 보증료)임.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 주택연금 통계현황 (https://www.hf.go.kr/research/portal/stat/easyStatPage/T188203126739755.do에서 2021.1.12. 인출)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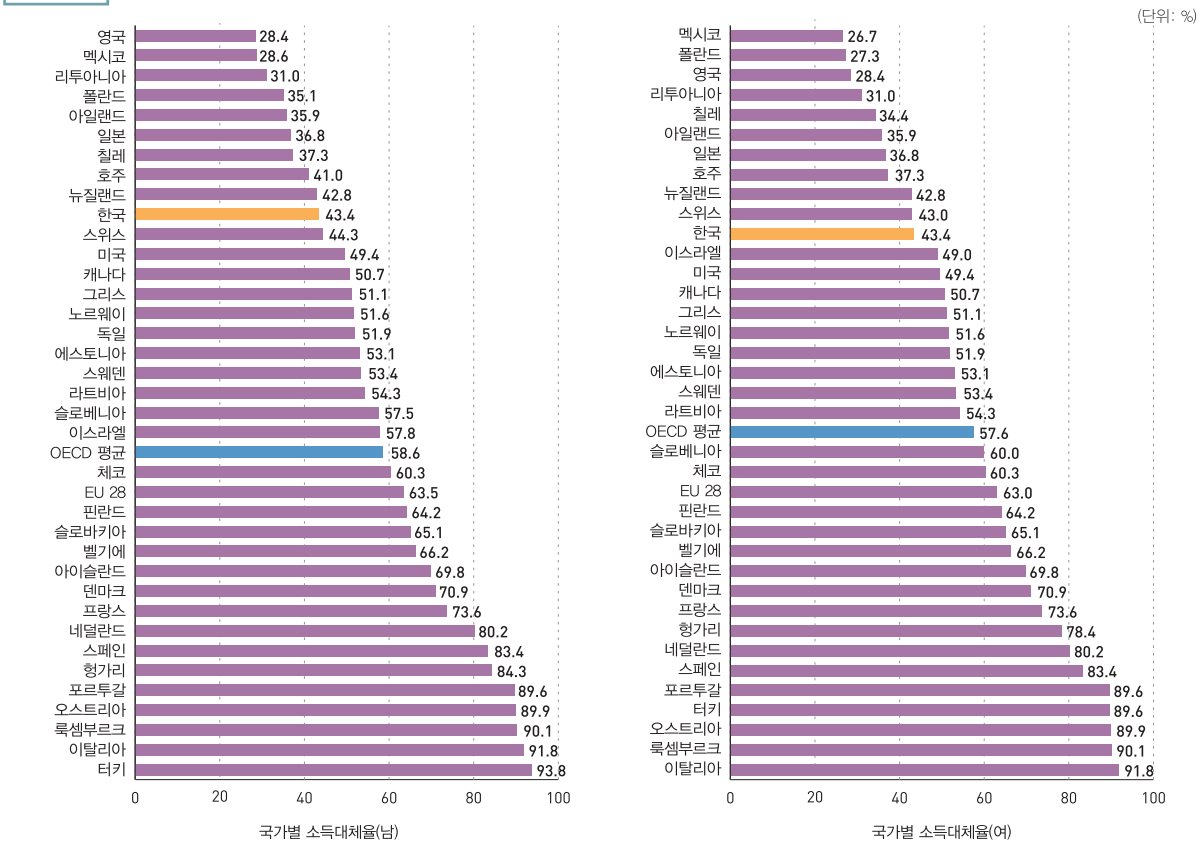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리서치 통계편	2007	2019	3개월

* 2017년까지는 1개월 주기, 2018년부터 분기(2, 5, 8, 11월 말)로 변경됨.

Check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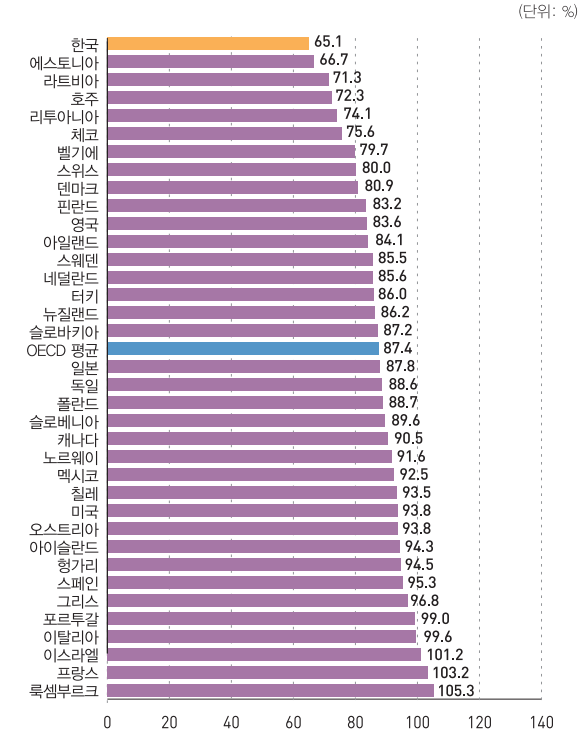
전년 대비 2019년의 주택연금 보증 건수는 7.28%p, 보증공급액은 14.5%p 증가하였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총 보증 건수는 71,034건이다. 2016년 이후로 한 해 1만 1천 건 미만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택을 활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장이라는 점에서 주택시장 경기나 다른 소득원 여부 등에 따라 주택연금대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25 국가별 소득대체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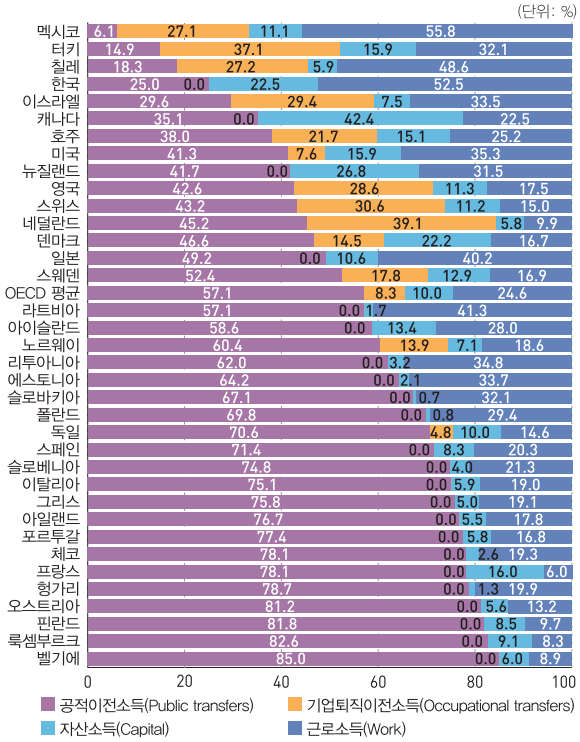
주: 공적연금의 순소득대체율(net pension replacement rates from mandatory(public and private)임.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9

그림 11-26 국가별 총 인구 소득대비 고령인구의 소득비율 (2016)



자료: OECD. Stat, Pensions at a Glance: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9414에서 2021.1.14. 인출)

그림 11-27 국가별 고령인구의 소득구성비 (2016)



자료: OECD. Stat, Pensions at a Glance: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http://data.oecd.org에서 2021.1.14. 인출)

12

에너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가전기기 보급률

02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03 도시가스 보급률

04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05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06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07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08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09 연료비 지원

12 에너지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에너지 사용 유형	가전기기 보급률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도시가스 보급률	
에너지 소비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에너지복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연료비 지원	

Highlight

에너지 소비는 기온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여름에는 냉방용, 겨울에는 난방용 소비가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난방용 수요가 많아 겨울에 에너지 소비가 집중된다. 에너지는 기기를 통해서 소비된다.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에너지 가격이 크게 변동해도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도시가스나 열에너지와 같은 네트워크 에너지는 배관망을 통해서만 공급되므로 이러한 에너지원으로의 교체는 더욱 어렵다.

에너지 소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으로 많은 저소득가구가 상대적으로 비싼 에너지원인 등유나 LPG를 저렴한 도시가스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겨울에 저소득가구의 소득에서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원인의 하나다. 특히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매우 과중하게 된다. 다행히 2013년 이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효율개선, 가격할인, 연료비 지원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효율개선은 단열공사나 노후 보일러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과 같은 사업으로 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해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다. 가격할인은 에너지 공급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열요금 감면 등이 포함된다. 연료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최근에는 기후위기로 여름철에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냉방 에너지 지원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름철에 전기요금 할인 폭이 확대되고 2019년부터는 냉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도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에어컨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01
대 표

가전기기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Home Appliances

지표 정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의 가구당 평균 보유 대수를 의미한다.

- 가구의 가전기기 사용 정도와 전력소비의 필요성을 결부시켜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보급대수/가구, 가구 에너지 소비 실태조사의 소득수준별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조사에 기초한다.**

표 12-1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2~2017)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12	1.26	1.01	1.84	0.78	1.77	0.73	0.77	0.88	0.85
2013	1.23	1.01	1.77	0.77	1.74	0.71	0.80	0.89	0.85
2014	1.19	1.01	1.74	0.76	1.72	0.69	0.75	0.88	0.85
2015	1.19	1.00	1.65	0.71	1.68	0.66	0.67	0.89	0.77
2016	1.17	1.01	2.08	0.81	1.72	0.69	0.57	0.85	0.73
2017	1.17	1.02	1.77	0.92	1.75	0.71	0.63	0.89	0.78

주: 2015년 가전기기 보급률은 가구원 수별 가구분포에 대한 가중치 조정으로 다소 낮게 추정됨. 냉장고 보급률은 김치냉장고를 포함한 수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각 연도

표 12-2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6)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12	1.00	1.99	0.55	1.62	0.60	0.22	0.87	0.54
200~400만 원	1.17	1.02	2.10	0.85	1.77	0.72	0.65	0.84	0.77
400~600만 원	1.21	1.02	2.18	1.04	1.78	0.75	0.88	0.82	0.89
600만 원 이상	1.26	1.01	2.20	1.21	1.82	0.79	1.03	0.83	0.9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17

표 12-3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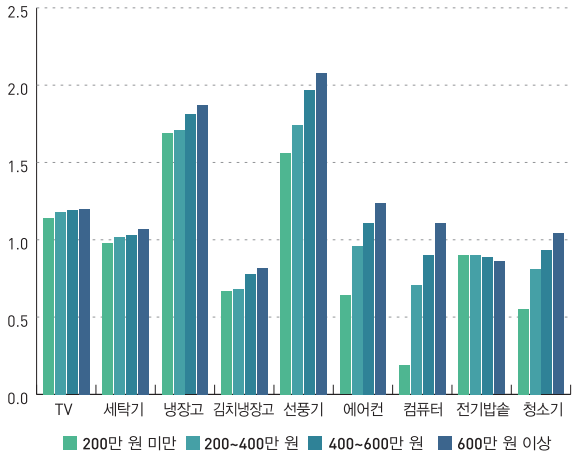
(단위: 대/가구)

구분	TV	세탁기	선풍기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	전기밥솥	청소기
200만 원 미만	1.14	0.98	1.56	0.64	1.69	0.67	0.19	0.90	0.55
200~400만 원	1.18	1.02	1.74	0.96	1.71	0.68	0.71	0.90	0.81
400~600만 원	1.19	1.03	1.97	1.11	1.81	0.78	0.90	0.89	0.93
600만 원 이상	1.20	1.07	2.08	1.24	1.87	0.82	1.11	0.86	1.04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19

그림 12-1 소득구간별 주요 가전기기 보급률 (2017)

(단위: 대/가구)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년 가구 에너지 소비 상설표본조사,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에너지경제연구원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2011	2018	1년

Checkpoint

가전기기 가운데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기는 TV, 냉장고, 전기밥솥과 같이 사용시간이 많거나 단위당 소비전력이 큰 기기인데 이러한 가전기기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급률이 1대 이상이거나 거의 1대에 근접해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지라도 가전기기 사용을 통한 전력 소비가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최근 기후위기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 냉방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02 대 표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Distribution of Households by Type of Heating Facility

지표 정의

난방설비는 크게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으로 구분된다.

• 가구의 에너지원별 소비실태를 파악하고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정책 수립에 활용가능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난방시설(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별 가구 수, 인구총조사의 난방시설 조사에 기초한다.**

표 12-4 거처별·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2015)

(단위: 천 가구,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계	19,112 (100.0)	524 (2.7)	2,425 (12.7)	16,162 (84.6)	12,308 (64.4)	2,312 (12.1)	504 (2.6)	670 (3.5)	160 (0.8)	135 (0.7)	14 (0.1)	19 (0.1)
주택	18,400 (100.0)	496 (2.7)	2,352 (12.8)	15,551 (84.5)	11,910 (64.7)	2,222 (12.1)	481 (2.6)	595 (3.2)	152 (0.8)	128 (0.7)	13 (0.1)	18 (0.1)
단독주택	6,739 (100.0)	0 (0.0)	0 (0.0)	6,739 (100.0)	3,694 (54.8)	2,015 (29.9)	156 (2.3)	542 (8.0)	148 (2.2)	126 (1.9)	13 (0.2)	18 (0.3)
아파트	9,196 (100.0)	493 (5.4)	2,333 (25.4)	6,370 (69.3)	6,087 (66.2)	44 (0.5)	234 (2.5)	4 (0.0)	1 (0.0)	0 (0.0)	0 (0.0)	0 (0.0)
연립주택	427 (100.0)	0 (0.0)	19 (4.4)	408 (95.6)	339 (79.4)	36 (8.4)	30 (7.0)	2 (0.5)	1 (0.2)	0 (0.0)	0 (0.0)	0 (0.0)
다세대주택	1,710 (100.0)	0 (0.0)	0 (0.0)	1,710 (100.0)	1,598 (93.5)	57 (3.3)	47 (2.7)	8 (0.5)	0 (0.0)	0 (0.0)	0 (0.0)	0 (0.0)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327 (100.0)	3 (0.9)	0 (0.0)	324 (99.1)	192 (58.7)	70 (21.4)	14 (4.3)	39 (11.9)	3 (0.9)	2 (0.6)	0 (0.0)	0 (0.0)
주택 이외의 거처	712 (100.0)	28 (3.9)	73 (10.3)	611 (85.8)	398 (55.9)	90 (12.6)	23 (3.2)	75 (10.5)	8 (1.1)	7 (1.0)	1 (0.1)	1 (0.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거처 종류의 난방시설 구성비를 의미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5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인구총조사	1960	2015	5년

Checkpoint

연도별 난방시설 분포를 보면 중앙난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개별난방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시가스보일러는 확대되고 기름보일러는 축소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5년에서 2010년 기간에 발생한 변화의 크기에 비해 2010년에서 2015년 기간에는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난방시설 분포가 점차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표 12-5 연도별 · 지역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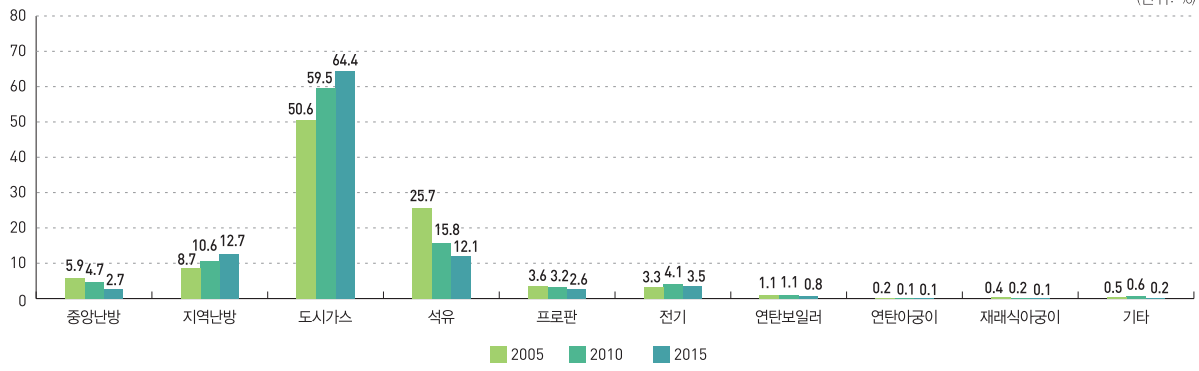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난방 시설계	중앙난방	지역난방	개별난방								
					소계	도시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전국	2005	100.0	5.9	8.7	85.5	50.6	25.7	3.6	3.3	1.1	0.2	0.4	0.5
	2010	100.0	4.7	10.6	84.7	59.5	15.8	3.2	4.1	1.1	0.1	0.2	0.6
	2015	100.0	2.7	12.7	84.6	64.4	12.1	2.6	3.5	0.8	0.1	0.1	0.2
동부	2005	100.0	7.1	10.4	82.5	59.4	17.9	2.4	1.8	0.5	0.1	0.0	0.3
	2010	100.0	5.7	12.4	81.9	67.8	9.3	1.9	2.1	0.5	0.0	0.0	0.2
	2015	100.0	3.3	15.1	81.6	71.9	5.9	1.7	1.5	0.3	0.0	0.0	0.1
읍부	2005	100.0	2.0	1.8	96.3	27.9	44.8	13.0	5.9	2.8	0.4	0.7	0.7
	2010	100.0	0.9	4.1	95.0	41.3	30.4	11.4	7.8	2.6	0.2	0.3	1.1
	2015	100.0	0.7	4.4	94.9	51.6	24.6	7.8	7.0	2.0	0.1	0.2	0.4
면부	2005	100.0	0.5	1.3	98.2	5.6	66.4	5.3	11.8	4.2	0.7	2.7	1.7
	2010	100.0	0.3	2.0	97.7	10.2	54.8	6.0	16.3	4.8	0.4	1.7	3.5
	2015	100.0	0.1	0.3	99.6	15.2	51.2	5.8	16.3	3.8	0.4	0.8	0.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그림 12-2 연도별 · 난방시설별 가구 분포 변화

(단위: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표 12-6 연도별 · 난방연료별 표본가구 분포

(단위: %)

구분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2016
연 탄	80.5	81.9	72.5	29.0	3.1	1.5	0.8	1.4	1.5	2.1	2.6	1.1
석 유	4.7	4.2	19.7	53.2	62.6	53.9	41.4	31.2	22.9	22.3	22.1	15.1
가 스	-	0.1	2.6	14.8	31.6	38.1	50.1	55.3	62.3	63.0	63.2	67.5
열	-	-	-	-	2.1	5.9	5.3	8.9	8.6	9.5	9.8	11.5
기 타	14.8	13.8	5.2	3.0	0.6	0.6	2.4	3.2	4.7	4.7	2.3	4.7

주: 1) 기타는 전기 및 신재생에너지(임산연료) 등
2) 2013년까지 표본에 조사되었던 중유는 2016년 조사에서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03
대 표

도시가스 보급률

Penetration Rate of City Gas

지표 정의

총가구에서 도시가스를 난방용 또는 취사용으로 공급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 해당 지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함으로써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도시가스 수용 가구 수}}{\text{총 가구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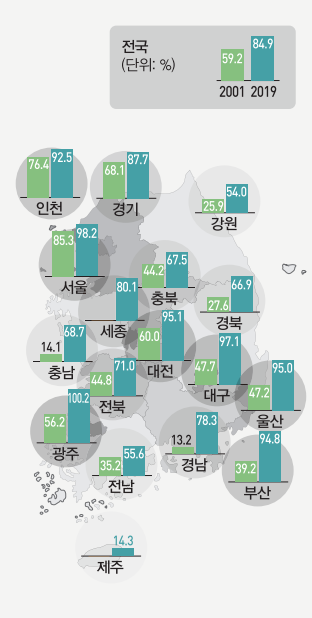
표 12-7 연도별 · 시도별 도시가스 보급률 추이 (2001~2019)

(단위: %)

연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59.2	85.3	39.2	47.7	76.4	56.2	60.0	47.2	-	68.1	25.9	44.2	14.1	44.8	35.2	27.6	13.2	-
2002	62.6	87.2	41.8	53.4	81.6	59.1	64.0	51.8	-	71.5	29.4	48.4	16.6	48.8	37.8	31.0	17.8	-
2003	64.1	88.9	45.7	53.6	83.3	61.3	66.4	55.8	-	72.6	31.0	39.5	20.2	51.8	39.9	37.1	42.7	-
2004	65.5	89.4	49.6	57.6	85.4	63.4	67.8	61.2	-	73.9	33.1	41.0	21.9	46.5	41.0	41.2	44.1	-
2005	65.6	88.7	53.1	59.9	85.9	66.4	68.8	66.7	-	75.1	35.0	42.2	24.9	49.6	37.3	42.7	44.8	0.7
2006	67.1	87.4	56.6	66.5	85.3	69.4	76.4	69.1	-	75.2	37.2	46.6	29.0	52.8	39.3	45.9	46.8	2.3
2007	68.3	86.9	61.2	65.9	85.8	73.4	79.8	70.3	-	75.0	39.2	50.4	32.0	56.2	40.5	50.7	48.2	2.5
2008	69.8	86.8	65.6	70.1	86.8	80.6	83.4	75.7	-	76.4	39.2	45.5	35.8	59.7	42.9	51.4	51.8	2.6
2009	71.2	87.5	68.6	73.1	88.0	84.8	85.9	79.0	-	77.5	42.6	48.8	39.1	53.9	45.8	51.7	54.5	3.0
2010	72.2	89.6	69.4	74.9	88.9	87.6	87.3	80.9	-	79.1	39.5	51.1	41.7	54.1	48.7	46.8	56.3	4.3
2011	75.0	92.3	72.6	77.8	91.5	91.2	90.7	83.8	-	81.2	48.0	53.4	45.3	58.1	50.2	48.9	58.4	5.6
2012	75.8	92.0	74.8	80.1	91.0	92.4	91.0	85.7	-	82.1	49.4	55.0	48.4	58.4	46.6	49.6	57.1	6.2
2013	78.6	95.4	79.8	84.6	89.6	96.6	92.8	87.8	52.5	85.7	49.7	59.1	52.2	62.1	45.1	53.8	61.8	9.3
2014	79.4	95.6	82.9	87.5	90.4	99.7	93.4	89.2	72.2	85.5	46.2	61.8	54.8	64.3	47.0	56.1	63.7	10.1
2015	80.8	96.6	85.4	90.7	91.2	95.8	94.1	90.7	79.1	86.3	47.1	63.5	57.7	66.1	48.4	59.1	66.4	11.6
2016	82.0	98.0	87.6	94.0	92.0	97.6	94.4	91.8	79.3	87.0	47.8	62.9	61.2	68.0	49.8	61.6	67.4	12.6
2017	83.1	98.6	89.9	95.7	92.8	99.3	94.6	93.2	81.4	87.9	49.7	65.6	64.5	69.0	51.3	63.7	71.8	9.2
2018	84.4	98.2	92.3	96.4	92.9	99.9	94.8	93.9	81.0	88.1	52.5	66.8	67.3	70.0	53.4	65.9	75.3	14.0
2019	84.9	98.2	94.8	97.1	92.5	100.0	95.1	95.0	80.1	87.7	54.0	67.5	68.7	71.0	55.6	66.9	78.3	14.3

자료: 통계청, 도시가스 보급률(시도) (http://kosis/kr에서 2021.1.2. 인출)

그림 12-3 시도별 2001년 대비 2019년의 도시가스 보급률 변화



자료: 통계청, 도시가스 보급률(시도)
(http://kosis/kr에서 2021.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편람	1987	2019	1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1982	2019	1년

Checkpoint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던 도시가스 보급률은 2000년대 들어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10년 이후에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급률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세종시와 같은 지역에서도 보급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도시 지역의 보급률이 대부분 90%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수용가가 가장 많은 서울의 보급률이 98%로 거의 포화상태에 놓여 이전과 같은 보급률 증가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04 대 표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

Fuel costs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는 일반가구에서 조명, 냉난방 및 취사 등 일상가사를 영위하기 위해 지출하는 연료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 소득분위별 연료비는 각 소득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가구당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표 12-8 분기별 월평균 연료비 (2019~2020)

(단위: 원)

구분	2019				202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료비	144,670	85,206	60,885	79,534	140,675	91,409	61,574	85,193

주: 2인 이상 비농림어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1.4.16. 인출)

표 12-9 소득분위별 월평균 연료비 (2009~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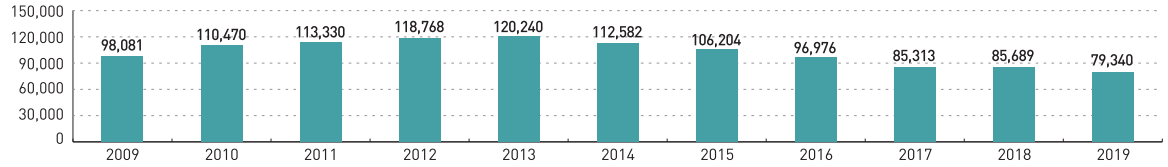
(단위: 원)

소득분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분위	70,644	81,033	83,963	89,008	90,015	85,518	79,118	73,639	58,246	54,946	52,480
2분위	81,348	92,323	96,323	103,664	102,945	94,108	90,027	84,433	60,633	62,518	60,615
3분위	89,698	98,616	99,875	109,744	110,551	104,843	97,760	87,930	72,414	69,004	67,003
4분위	92,772	103,318	109,622	111,547	116,932	109,868	102,889	93,153	77,993	76,831	70,649
5분위	97,095	107,205	115,387	119,792	117,598	111,726	103,142	97,063	78,293	83,547	74,523
6분위	103,375	113,422	116,385	120,975	121,663	116,585	110,431	97,132	87,906	86,526	84,169
7분위	104,920	118,577	119,137	122,078	126,031	115,188	109,686	103,343	92,951	96,096	87,906
8분위	105,705	121,818	123,008	129,232	132,170	120,989	116,011	105,231	100,653	101,189	91,250
9분위	109,607	129,468	126,805	135,425	135,093	128,646	121,889	107,689	103,047	107,179	97,888
10분위	125,596	138,863	142,750	146,162	149,350	138,323	131,005	119,993	120,946	119,022	106,898
전체 평균	98,081	110,470	113,330	118,768	120,240	112,582	106,204	96,976	85,313	85,689	79,340

주: 2009년~2016년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2019년은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그림 12-4 월평균 연료비 지출액 (2009~2019)

(단위: 원)



주: 2009년~2016년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2019년은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에서 2020.11.26.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0	분기, 1년

Checkpoint 2013년 이후 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가구당 연료비 지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가구당 연료비 지출이 2018년보다 감소하였다. 2018년 여름철 이상고온의 영향으로 냉방비용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상대적 영향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05 대 표

소득(소비지출) 대비 연료비 비율

Fuel cost as percentage of income, by income decile

지표 정의

연료비/소득(소비지출) 비율은 소득 또는 총 소비지출에서 연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득 비율은 각 소득분위에 속한 가구의 평균 연료비/소득 비율을 의미하며, 가구의 에너지 비용부담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보장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월평균 연료비}}{\text{월평균 경상소득}} \times 100$,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지출 현황에 기초한다.

유의사항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지출과 소득부문이 분리되어 재설계되었으며, 지출부문은 연간통계로 개편되었다.

표 12-10 분기별 연료비/소득 비율 (2019~2020)

(단위: %)

구분	2019				202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분위	12.0	5.9	4.3	6.7	12.1	5.9	4.3	6.6
10분위	1.4	0.9	0.6	0.8	1.3	1.0	0.6	0.9
전체 평균	2.8	1.7	1.2	1.6	2.7	1.8	1.2	1.7

주: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1.4.16. 인출)

표 12-11 소득분위별 연료비/소비지출 비율 (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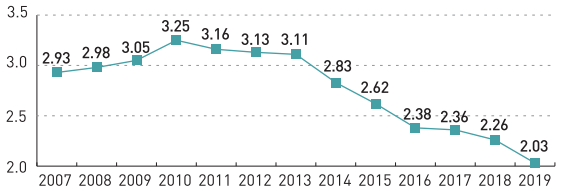
(단위: %)

소득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위	4.5	4.4	4.5	4.6	4.8	4.7	4.8	4.8	4.4	4.1	3.8	3.3	3.4
2분위	7.2	7.4	7.5	7.6	8.3	8.4	8.5	8.7	8.3	7.7	6.9	5.3	5.2
3분위	6.2	6.2	6.4	6.7	7.0	6.7	7.1	7.0	6.4	5.9	5.8	5.1	5.0
4분위	5.6	5.3	5.7	5.8	5.9	5.7	6.1	6.0	5.5	5.1	4.9	4.4	4.3
5분위	5.1	5.0	5.1	5.3	5.4	5.3	5.3	5.4	5.1	4.7	4.4	4.0	4.0
6분위	4.9	4.8	4.8	5.0	5.1	5.0	5.3	5.3	4.6	4.4	4.0	3.5	3.6
7분위	4.5	4.5	4.6	4.7	4.9	4.9	4.7	4.8	4.4	4.1	3.8	3.4	3.4
8분위	4.3	4.3	4.2	4.4	4.6	4.4	4.6	4.4	4.1	3.9	3.6	3.2	3.4
9분위	4.1	3.9	4.0	4.0	4.3	4.1	4.2	4.4	3.9	3.6	3.3	3.1	3.1
10분위	3.7	3.7	3.8	3.6	4.1	3.9	4.0	4.0	3.6	3.5	3.1	2.7	2.8
전체 평균	3.3	3.1	3.2	3.3	3.5	3.6	3.5	3.5	3.1	3.0	2.7	2.5	2.5

주: 2006년~2016년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년~2018년은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2. 인출)

그림 12-5 연료비/소득 비율 (2007~2019)

(단위: %)



주: 1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2. 인출)

표 12-12 가구주 연령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9~2019)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39세 이하	2.7	2.9	2.9	2.9	2.7	2.5	2.3	2.1	1.5	1.4	1.3
40~49세	2.8	3.0	2.9	2.9	2.8	2.5	2.3	2.1	1.9	1.7	1.7
50~59세	2.9	3.1	2.9	2.8	2.8	2.5	2.3	2.1	1.8	1.8	1.6
60세 이상	4.4	4.4	4.3	4.2	4.4	4.0	3.6	3.2	3.0	2.8	2.3
전체 평균	3.0	3.2	3.1	3.0	3.0	2.7	2.5	2.3	2.0	1.9	1.7

주: 1) 2007년~2016년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2017~2019년은 연료비는 1인 이상 가구 기준
2) 2017~2019년 경상소득은 4분기, 2인 이상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2. 인출)

표 12-13 가구원 수별 연료비/소득 비율 (2009~2019)

(단위: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인	3.8	4.1	4.3	4.3	4.4	4.0	3.5	3.2	3.1	3.0	2.7
2인	3.6	3.7	3.6	3.6	3.5	3.2	3.0	2.7	2.8	2.7	2.4
3인	2.9	3.1	3.0	2.9	2.9	2.6	2.4	2.2	2.2	2.1	1.8
4인	2.8	3.0	2.8	2.8	2.7	2.5	2.3	2.0	2.1	1.9	1.8
5인 이상	2.9	3.1	3.1	3.1	3.1	2.8	2.6	2.4	2.4	2.2	1.9
전체 평균	3.1	3.3	3.2	3.1	3.1	2.8	2.6	2.4	2.4	2.3	2.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1.1.2.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963	2020	분기, 1년

Checkpoint 연료비/소득 비율 또는 연료비/소비지출 비율을 보면 201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은 연료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구의 연료비/소득 비율이 2.03%로 2018년 대비 0.23%p 하락하여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06
대 표

가정부문 가구당 에너지 소비

Energy Consumption per household

지표 정의

최종에너지 소비부문(산업, 수송, 가정, 상업 및 공공기타) 중 가정부문에서 소비되는 가구당 전력과 취사 및 난방용(온수용 포함) 에너지 소비를 의미한다.

• 가구당 에너지 소비는 가구의 평균 에너지 소비수준을 통해 적정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가구당 연간 에너지 소비량**

표 12-14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3)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 비용(천 원)	1,045	1,298	1,500	1,743	1,922	1,991	2,130
비용지수(100만 원 미만=100)	100	62	43	36	31	26	18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8,529	10,875	12,605	15,152	16,736	17,053	16,99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8.4	3.5	1.5	0.4	0.4	0.0	0.0
석유류	20.3	12.3	8.3	3.6	1.5	1.2	1.7
가스류	36.9	52.2	57.3	62.4	61.8	59.1	53.5
전 력	29.4	26.8	25.2	22.9	22.2	22.7	24.6
열	5.0	5.1	7.8	10.6	14.1	17.0	20.2

주: 1) 가스류에는 도시가스와 LPG 포함됨.
2) 비용지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득 1만 원당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5

표 12-15 소득계층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6)

(단위: %)

구분	100만 원 미만	100~200만 원	200~300만 원	300~400만 원	400~500만 원	500~600만 원	600만 원 이상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9,027	9,887	10,291	11,860	12,926	13,196	14,89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6.1	3.7	1.3	1.1	0.2	0.2	0.0
석유류	23.7	19.0	12.3	6.3	4.7	2.2	1.7
도시가스	32.9	41.8	52.7	58.0	62.6	61.8	55.0
전 력	31.4	29.2	27.9	26.9	24.4	24.8	23.1
열	4.9	5.0	5.7	7.6	8.1	10.8	19.9
기타	1.1	1.3	0.2	0.1	0.0	0.2	0.3

주: 1) 가스류에는 도시가스와 LPG 포함됨.
2) 비용지수는 100만 원 미만 가구의 소득 1만 원당 에너지 소비지출 비용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총조사	1981	2016	3년

Checkpoint 2016년 전체 가구의 연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2013년은 겨울철 이상저온으로 난방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2013년과 2016년을 소득 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2016년에 가구 소득 100만 원 미만 구간에서만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조금 증가하였고 그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소득 구간별 에너지 소비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표 12-16 가구원 수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6)

(단위: %)

구분	평 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1,184	7,841	10,514	11,691	13,374	13,531	14,4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0.0	4.1	3.3	1.5	0.2	1.5	1.1
석유류	10.8	22.1	16.1	7.7	4.0	6.0	10.7
도시가스	51.6	39.9	44.6	55.9	60.1	53.2	52.8
전 력	27.1	29.1	29.4	26.8	24.1	26.1	31.8
열	8.0	4.0	5.7	7.9	11.4	12.5	3.6
기타	0.5	0.7	0.8	0.2	0.1	0.7	0.0

주: 1) 프로판, 부탄은 석유류에 포함
2) 기타는 대부분 임산연료에 해당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표 12-17 사용건평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6)

(단위: %)

구분	평 균	10평 미만 (33㎡ 미만)	10~19평 (33~66㎡)	20~29평 (66~99㎡)	30~39평 (99~132㎡)	40~49평 (132~165㎡)	50평 이상 (165㎡ 이상)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1,184	5,864	9,048	11,147	12,605	14,963	15,5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0.9	1.9	3.5	0.7	0.6	0.6
석유류	10.8	5.4	10.1	14.6	7.4	4.9	15.1
도시가스	51.6	58.4	55.1	48.8	55.2	49.3	35.2
전 력	27.1	33.6	27.2	27.9	26.6	23.9	27.5
열	8.0	1.6	5.3	4.8	9.8	21.4	20.8
기타	0.5	0.0	0.4	0.6	0.4	0.0	0.9

주: 열에너지에 온수(급탕) 사용량 포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표 12-18 주택형태별 가구당 연평균 에너지 소비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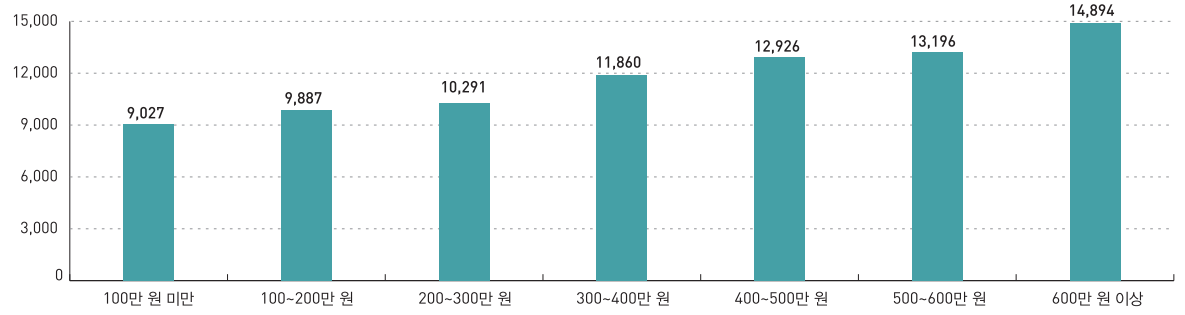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평 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상가 주택
에너지 소비량 (천 kcal)	11,184	11,695	11,329	10,461	10,145	10,2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연 탄	2.0	6.9	0.0	0.2	0.0	0.0
석유류	10.8	33.3	1.2	3.1	1.9	9.0
도시가스	51.6	26.8	58.0	69.9	72.4	49.7
전 력	27.1	31.5	24.9	26.3	25.8	33.0
열	8.0	0.0	15.9	0.5	0.0	7.1
기타	0.5	1.5	0.0	0.0	0.0	1.2

주: 상가주택은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그림 12-6 소득수준별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 (2016)

(단위: 천 kcal)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8

07
대 표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지표 정의

정부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총규모와 가구 수를 의미한다.

-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에너지 이용효율을 개선시켜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가구를 포함한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19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3~2019)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담기관
효율 개선	전력효율향상 (고효율 조명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총지원액	246	356	260	218	217	187	196	전력기금 (지자체)
			지원 가구 수	46,269	76,800	34,780	29,761	-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 주택 창호 · 단열 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 원한도)	총지원액	411	671	613	489	489	639	819	에특회계 (한국에너지 재단)
			지원 가구 수	36,508	42,158	40,707	29,468	26,128	30,385	34,19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	2019	1년

Checkpoint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단열, 창호, 고효율보일러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절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등의 효과도 보이고 있다. 효율 개선사업 지원 한도가 적어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으로 가구당 지원 단가를 평균 25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설비가 설치되어 가동되면 연료비가 들지 않아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08
대 표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지표 정의

에너지기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할인 사업의 지원 가구 수를 의미한다.

• 에너지 가격 할인을 통해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경감시켜 준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20 에너지 가격할인 지원 사업 현황 (2013~2019)

(단위: 억 원, 천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담기관
가격할인사업	전기요금 할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10천 원/월, 여름철 12천 원), 차상위(8천 원/월, 여름철 10천 원), 복지시설(주택 30%) 등	총지원액	2,533	2,617	2,623	2,748	4,831	5,540	5,712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지원 가구 수	2,275	2,328	2,360	2,477	2,809	3,296	3,397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월평균 3,100원	총지원액	684	936	997	1,027	1,121	1,188	-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지원 가구 수	768	865	926	1,039	1,163	1,270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총지원액	48	56	59	62	65	67	-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지원 가구 수	148	157	168	175	181	190		

주 : '16.12월 이후 변경, 상세내용은 아래의 표 12-21 참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표 12-21 지원대상별 전기요금 할인 현황 (2017~2019)

(단위: 천 가구, 억 원)

구분	도입일	대상종별	할인내용(2016년)		호수(천 가구)			할인액(억 원)		
			2016.11월까지	2016.12월 이후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장애인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월 1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한도)	637	664	671	1,226	1,311	1,276
유공상이자	'04. 3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8	8	8	16	17	15
독립유공자	'05.12	주택용	월 8천 원 한도		5	5	5	10	11	11
기초생활 수급자	'05.12	주택용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8천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4천 원 한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월 16천 원(여름철 2만 원) 한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월 10천 원(여름철 12천 원) 한도	652	712	820	1,138	1,257	1,335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사회복지시설	'07. 1	주택용	21.6%	30.0%	124	126	125	815	896	847
		일반용	20.0%	30.0%						
	'08. 1	심야	갑 31.4%, 을 20.0%	갑 31.4%, 을 20.0%						
차상위계층	'08. 7	주택용	월 2천 원 한도	월 8천 원 한도(여름철 1만 원 한도)	212	211	211	168	204	205
	'10. 8	심야	갑 29.7%, 을 18.0%	갑 29.7%, 을 18.0%						
3자녀 이상 가구	'09. 8	주택용	20%(월 1만 2천 원 한도)	30.0% (월 16천 원 한도)	644	656	629	917	938	877
대가족	'07. 1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월 1만 2천 원)		285	292	272	399	415	383
출산가구	'16. 12	주택용	–		229	610	643	125	469	728
생명유지장치	'07. 8	주택용	한 단계 낮은 요율(301~600kWh)	30.0%	12	12	13	17	22	35
합계					2,809	3,296	3,397	4,831	5,540	5,712

자료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7.jsp에서 2021.1.20.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	2020	1년

Checkpoint

2019년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전년보다 10만 1천 가구 증가하였다. 2019년 전기요금 할인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82만 가구까지 증가하였고 1,335억 원이 지원되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기요금 할인 총액은 2018년에 5,540억 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19년에도 5,71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09
대 표

연료비 지원

지표 정의

저소득가구의 동절기 난방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가구 수를 의미한다.

•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적정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유도한다.

측정 산식

• **총지원액 및 지원 가구 수**

표 12-22 연료비 지원 사업 현황 (2013~2019)

(단위: 억 원,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담기관
연료비 지원 사업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 원)	총지원액	52	49	39	36	32	24	20	에특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가구 수	17,345	16,095	12,460	11,800	9,423	7,934	6,342	
	연탄보조	연탄쿠폰 (2016년까지 가구당 169천 원, 2017년 313천 원, 2019년 가구당 40.6천 원)	총지원액	141	131	131	172	221	183	222	에특회계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 가구 수	83,060	76,987	77,413	73,175	63,712	58,791	54,670	
	에너지 바우처	전기 · 도시가스 · 연탄 · 등유 등 구입 가능한 전자바우처	총지원액	-	-	405	512	512	498	578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가구 수	-	-	494,627	523,664	545,930	565,498	641,7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2011	2019	1년

Checkpoint

연료비 지원사업 중 규모가 가장 큰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포함한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매년 증액되고 있다. 2019년에는 64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578억 원 지원되었다. 연탄쿠폰은 연탄가격 상승으로 가구당 지원단가(2019년 40만 6천 원)가 증액되면서 2019년 지원액이 22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표 12-23 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 (2013~2019)

(단위: 억 원, 가구, 천 가구)

구분	지원사업	주요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담기관
효율 개선 및 보급 사업	전력효율향상 (고효율 조명 보급)	고효율 조명기기 무상 교체	총지원액	246	356	260	218	217	187	196	전력기금 (지자체)
			지원 가구 수 (가구)	46,269	76,800	34,780	29,761	-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주택창호 · 단열공사, 노후 보일러 교체 (가구당 150만 원한도)	총지원액	411	671	613	489	489	639	819	에특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가구 수 (가구)	36,508	42,158	40,707	29,468	26,128	30,385	34,195	
가격 할인 사업	전기요금 할인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상이자/유공자 (16천 원/월, 여름철 2만 원) 차상위(8천 원/월,여름철 10천 원), 복지시설(주택 30%) 등	총지원액	2,533	2,617	2,623	2,748	4,831	5,540	5,712	민간자금 (한국전력공사)
			지원 가구 수 (천 가구)	2,275	2,328	2,360	2,477	2,809	3,296	3,397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유공자,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월평균 12,400원, 주거급여, 차상위 월평균 6,200원 교육급여, 차상위확인서 월평균 3,100원	총지원액	684	936	997	1,027	1,121	1,188	-	민간자금 (한국가스공사)
			지원 가구 수 (천 가구)	768	865	926	1,039	1,163	1,270	-	
	열요금 감면	기본요금 전액 감면 (10천 원/월)	총지원액	48	56	59	62	65	67	-	민간자금 (지역난방공사)
			지원 가구 수 (천 가구)	148	157	168	175	181	190	-	
연료비 지원 사업	난방 연료지원	난방용 등유 200L 상당 (가구당 310천 원)	총지원액	52	49	39	36	32	24	20	에특회계 (한국에너지재단)
			지원 가구 수 (가구)	17,345	16,095	12,460	11,800	9,423	7,934	6,342	
	연탄보조	연탄쿠폰 (2016년까지 가구당 169천 원, 2017년 313천 원, 2019년 가구당 40.6천 원)	총지원액	141	131	131	172	221	183	222	에특회계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원 가구 수 (가구)	83,060	76,987	77,413	73,175	63,712	58,791	54,670	
	에너지 바우처	전기 · 도시가스 · 연탄 · 등유 등 구입가능한 전자바우처	총지원액	-	-	405	512	512	498	578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가구 수 (가구)	-	-	494,627	523,664	545,930	565,498	641,7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지원사업 현황 (내부자료)

13

환경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02 주요 도시 소음도

03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04 GPD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05 상수도 보급률

06 하수도 보급률

07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08 환경성질환자 수

13 환경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환경상태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주요 도시 소음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환경관리	GPD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환경예산 비율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하수도 설치율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환경 보건	환경성질환자 수	

Highlight

OECD의 구분 방식을 따르자면 환경 분야는 크게 환경압력, 환경상태, 환경관리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 사회보장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환경상태와 환경관리이다. 이하에서는 환경 분야의 통계를 환경상태와 환경관리로 구분하고 여기에 환경 보건을 추가하여 세 영역으로 구분한다.

환경상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질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대기질이다. 전통적인 대기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1995년에 측정을 시작한 미세먼지(PM_{-10})는 2012년 이후부터 주요 도시 대부분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PM_{-10})보다 건강에 더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PM_{-2.5}$)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에 전국 평균 연농도가 26㎍/㎥에서 2018년에 23㎍/㎥으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2018년에 강화된 연평균 환경기준(15㎍/㎥)에 비교할 때 모든 주요 도시들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 기준을 많이 초과하고 있다.
대기오염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가 소음이다. 정부는 지역특성(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간대(낮, 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환경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 특히 전용주거 지역의 경우 환경기준 달성률이 30%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도시공원은 도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이다.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2001년 5.3㎡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10.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환경관리는 환경오염을 저감·예방하고 환경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을 집계한 것이 환경보호지출이다. GDP 대비 환경보호지출 비율은 2009년의 2.17%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전년(2.11%) 대비 0.02%p 상승한 2.13%였다.
우리나라에서 환경관리의 성과를 잘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상·하수도 보급률이다. 상수도 보급률은 1990년대 초 80% 수준에서 2018년에는 99.2%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농어촌의 경우 엄격한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제외하면 보급률이 여전히 70% 대에 머물러 있다. 하수도 보급률 역시 1990년대 초 30% 수준에서 2017년에 93.6%로 급격히 증가하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농어촌 보급률은 2018년에 71.8%에 머물러 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발생량이 일정 범위 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발생한 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등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0%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62.0%가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24.6%)되거나 매립(13.4%)되었다.

환경 보건은 환경오염이 인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영역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관련 통계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환경 보건 영역을 대표하는 통계 중의 하나가 환경성질환자 수인데, 환경성질환자는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중 1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환경성질환자는 2002년 550만 명(중복질환자 제외)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19년에는 약 861.1만 명(중복질환자 제외)으로 전년(약 864.8만 명) 대비 0.4% 감소하였다. 환경성질환자 중에도 특히 알레르기비염 질환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1 대 표

주요 도시 초미세먼지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Particulate Matter(PM10)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1㎥에 들어있는 미세먼지의 질량이다. 초미세먼지는 직경 2.5㎛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PM_{-2.5}$이라 표기하고, 입자의 직경이 10.0㎛ 이하인 경우는 미세먼지라 부르고 PM_{-10}이라 표기한다.

측정 산식

• 1㎥에 들어있는 직경 2.5㎛ 이하의 먼지 입자($PM_{-2.5}$)의 질량

표 13-1 항목별 대기오염도 (2003~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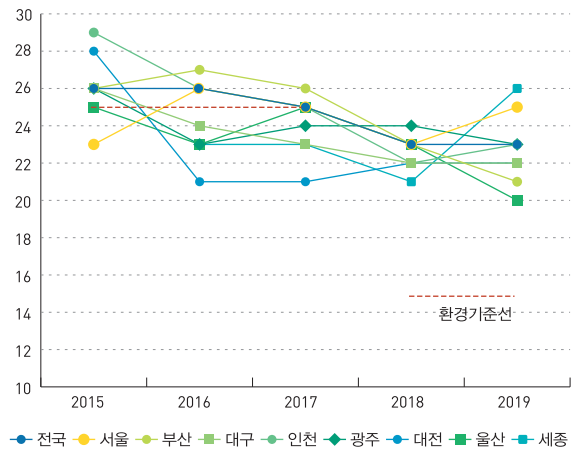
(단위:ppm, ㎍/㎥)

항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SO_2 (ppm)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6 (0.020)	0.005 (0.020)	0.005 (0.020)	0.005 (0.020)	0.004 (0.020)	0.004 (0.020)	0.004 (0.020)
NO_2 (ppm)	0.024 (0.050)	0.024 (0.050)	0.022 (0.050)	0.023 (0.050)	0.026 (0.030)	0.026 (0.030)	0.025 (0.030)	0.025 (0.030)	0.024 (0.030)	0.023 (0.030)	0.024 (0.030)	0.024 (0.030)	0.023 (0.030)	0.023 (0.030)	0.022 (0.030)	0.021 (0.030)	0.018 (0.030)
O_3 (ppm)	0.021	0.022	0.022	0.022	0.022	0.023	0.024	0.023	0.024	0.025	0.026	0.027	0.027	0.027	0.029	0.027	0.03
CO (ppm)	0.7	0.7	0.6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PM_{-10} (㎍/㎥)	56 (70)	58 (70)	57 (70)	59 (70)	58 (50)	54 (50)	53 (50)	51 (50)	50 (50)	45 (50)	49 (50)	49 (50)	48 (50)	47 (50)	45 (50)	41 (50)	41 (50)
$PM_{-2.5}$ (㎍/㎥)	-	-	-	-	-	-	-	-	-	-	-	-	26 (25)	26 (25)	25 (25)	23 (15)	23 (15)

주: 1) $PM_{-2.5}$는 '15.1.1.부터 대기환경기준이 시행됨.
2) ( )는 연평균 환경기준치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그림 13-1 주요 도시 연도별 $PM_{-2.5}$ 농도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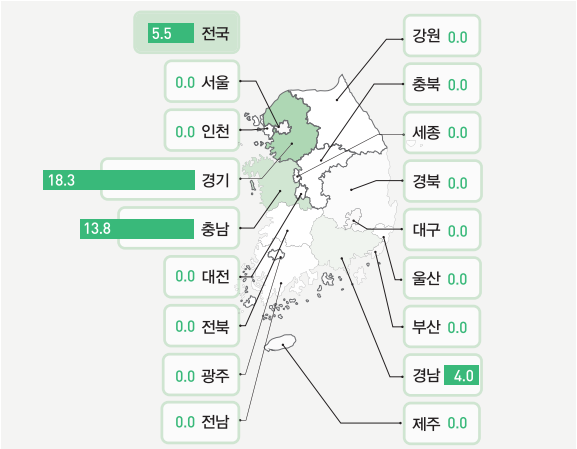
(단위: ㎍/㎥)



주: 전국 수치는 전체 측정망의 연평균 수치를 활용함.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그림 13-2 시도별 미세먼지(PM_{-10}) 환경기준 초과율 (2019)

(단위: %)



주: 각 시도별 측정소 중 초과측정소/유효측정소의 값임.
자료: 환경부, 2019 대기환경연보,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2015	2019	1개월

Checkpoint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PM_{-2.5}$) 농도는 공식적인 측정을 시작한 2015년 26㎍/㎥에서 2019년 23㎍/㎥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대기환경기준(15㎍/㎥)을 한참 초과하는 수준이다.

01-1
연 관

주요 도시 이산화황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Sulfur Dioxide(SO_2) in Major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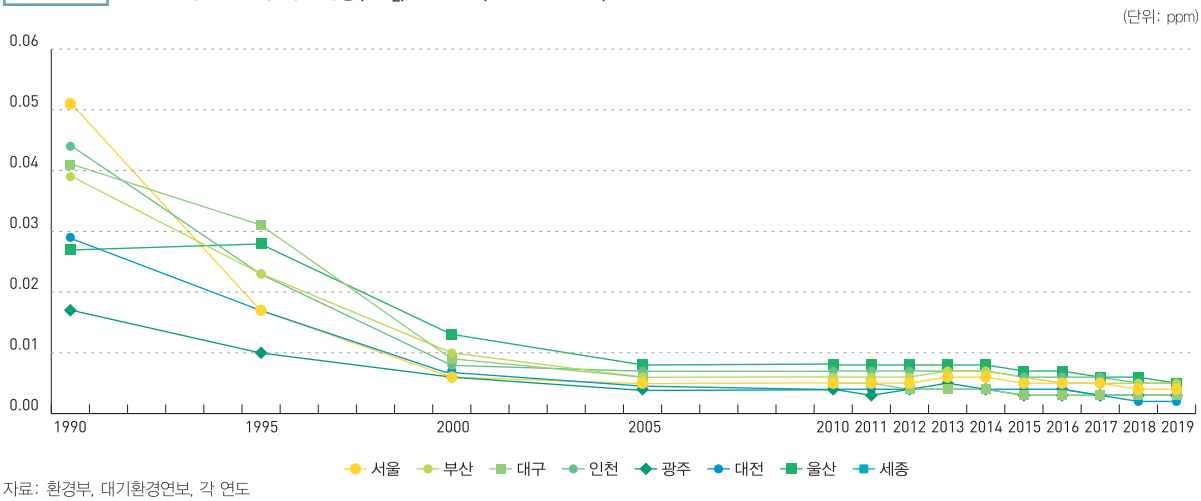
지표 정의

이산화황 오염도(ppm)는 대기 백만 리터(L)당 이산화황의 양이다.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황의 양(ppm, parts per million)

그림 13-3 연도별 주요 도시 이산화황(SO_2) 오염도 (1990~2019)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9	1개월

01-2
연 관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 오염도

Concentration Level of Nitrogen Dioxide(NO_2)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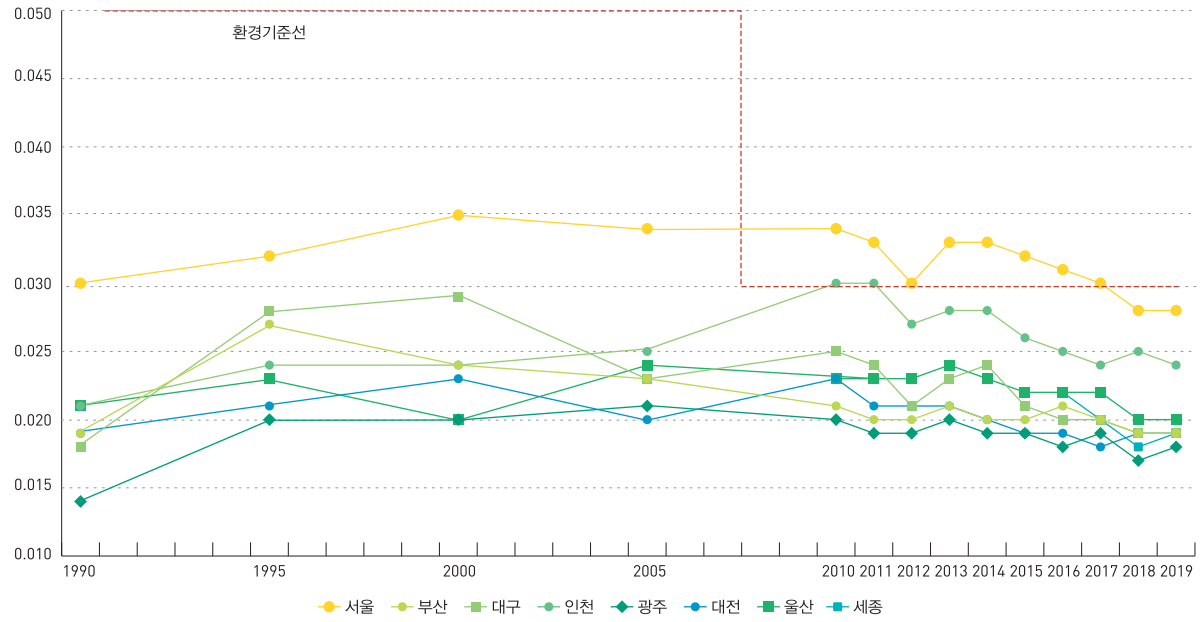
이산화질소 오염도(ppm)는 대기 백만 리터(L)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이다.

측정 산식

• 대기 백만 리터에 들어있는 이산화질소의 양(ppm, parts per million)

그림 13-4 연도별 주요 도시 이산화질소(NO_2) 오염도 (1990~2019)

(단위: ppm)



자료: 환경부, 대기환경연보,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1980	2019	1년

02
대 표

주요 도시 소음도

Noise Level in Major Cities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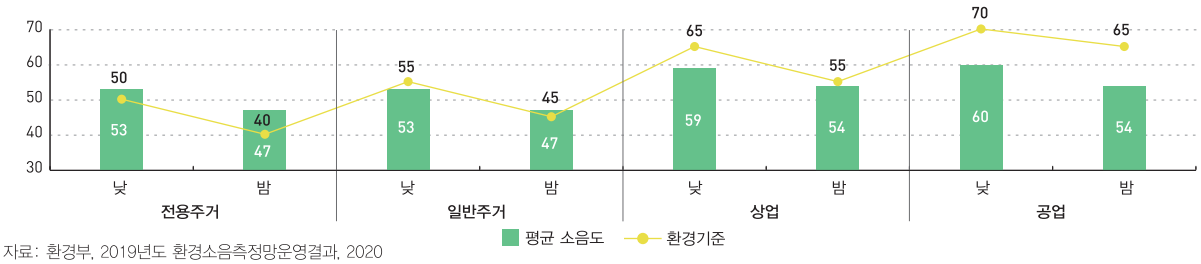
소음도는 소음의 크기를 뜻하며, 「소음 · 진동 관리법」 상 소음은 기계 · 기구 · 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의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측정 산식

- 소음도는 데시벨(dB)로 측정한다.
- 낮 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점에서 2시간 간격으로 4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 밤 시간대에는 낮 시간대에 측정한 지점에서 2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그림 13-5 환경기준 대비 평균 소음도–일반지역: 낮, 밤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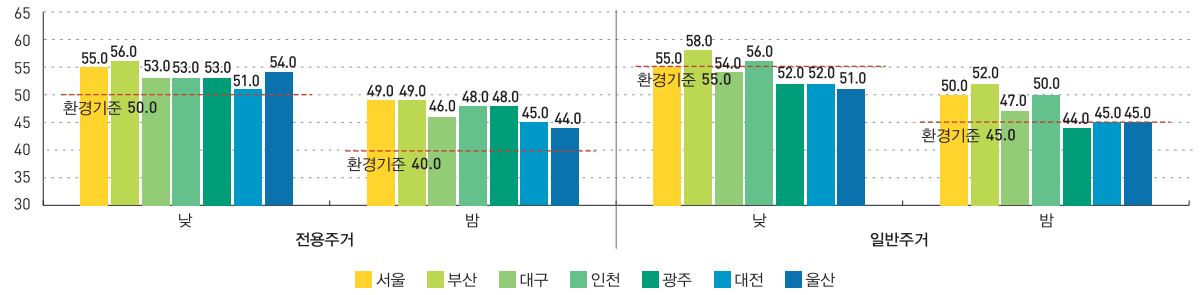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2019년도 환경소음측정망운영결과, 2020

그림 13-6 주요 도시 소음도 현황–일반지역: 낮, 밤 (2019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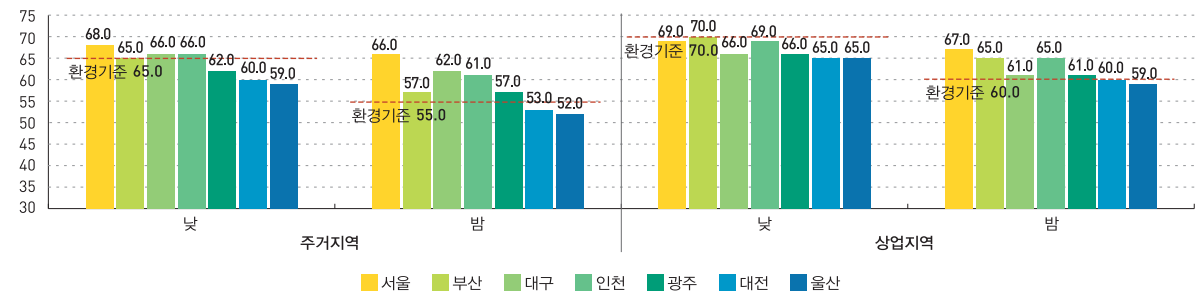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주요 도시 환경소음도현황, 2020 (http://kosis.kr에서 2020.12.29. 인출)

그림 13-7 주요 도시 소음도 현황–도로변지역: 낮, 밤 (2019 하반기)

(단위: Leq dB(A))



자료: 환경부, 주요 도시 환경소음도현황, 2020 (http://kosis.kr에서 2020.12.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주요 도시 환경소음도현황	2000	2019	분기

Checkpoint 전용주거지역의 환경기준 달성률이 특히 낮으므로('19년 기준 낮 시간대 25%, 밤 시간대 16%),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대 표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Per Capita Park space

지표 정의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지역 인구 대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의 규모는 도시 환경의 쾌적한 정도를 나타내며, 시민의 휴양과 건강을 위한 생활공간으로서 의미도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도시공원 조성 면적}}{\text{도시 지역 인구}}$

표 13-2 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01~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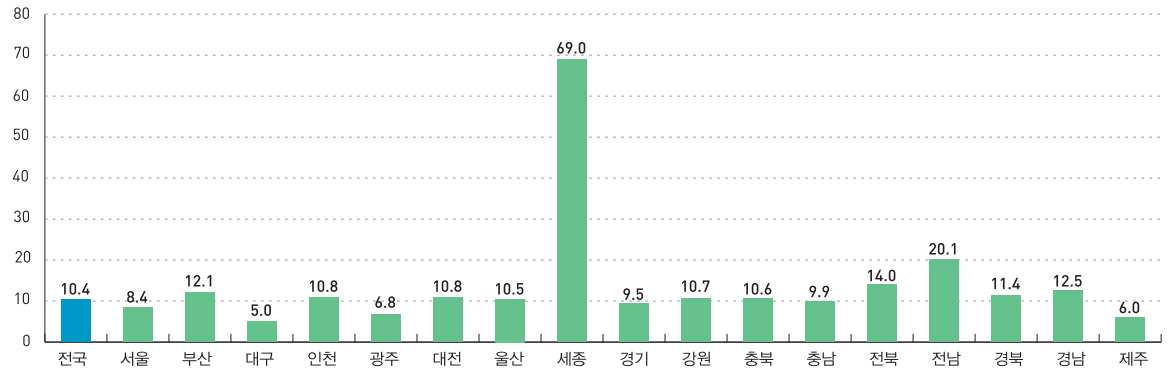
(단위: ㎢, ㎡/인)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도시공원 결정 면적	1,026	1,043	1,055	1,126	1,136	1,141	1,190	1,284	1,112	1,089	1,008	1,020	1,005	989	934	942	924	927	904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인)	18.6	24.1	24.1	25.7	25.8	25.8	26.7	28.6	24.6	23.7	21.8	22.0	21.5	21.0	19.8	19.8	19.4	19.5	19.0
도시공원 조성 면적	230	219	304	361	304	292	329	461	368	384	386	412	404	406	418	437	455	480	498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인)	5.3	5.1	6.9	8.2	6.9	6.6	7.4	10.3	8.1	8.4	8.3	8.9	8.6	8.6	8.8	9.2	9.6	10.1	10.5

주: 1) 도시공원 :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
2)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도시공원 조성 면적 ÷ 도시 지역 총인구
3) 조성 면적 = 결정 면적 – 미집행 면적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각 연도

그림 13-8 시도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2019)

(단위 : ㎡/인)



주: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자료: 국토교통부, 2019 도시계획현황, 2020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0	2019	1년

Checkpoint 도시공원의 개수와 조성 면적, 그리고 녹지의 비율은 도시인의 휴식에 필요한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준다.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3-1
연 관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Number of City Park per 10,000 city residents

지표 정의

도시지역 인구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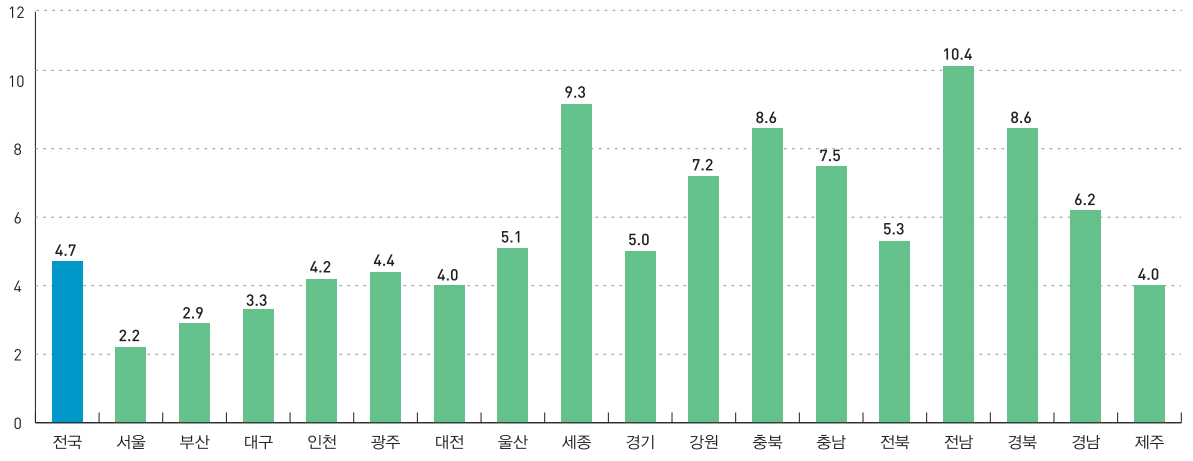
• 도시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도시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frac{\text{도시공원 개소}}{\text{도시지역 인구}} \times 10{,}000$$

그림 13-9 시도별 1만 명당 도시공원 개소 (2019)

(단위: 개소/1만 명)



주: 1) 도시공원 수를 도시지역 인구로 나누어 계산함.
2) 결정현황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조성현황 기준과 차이가 있음.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현황, 2020 (http://kosis.kr에서 2020.12.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9	1년

03-2
연 관

도시지역 인구당 녹지조성 면적

Natural and Artificial Grasslands Area per Urban Area 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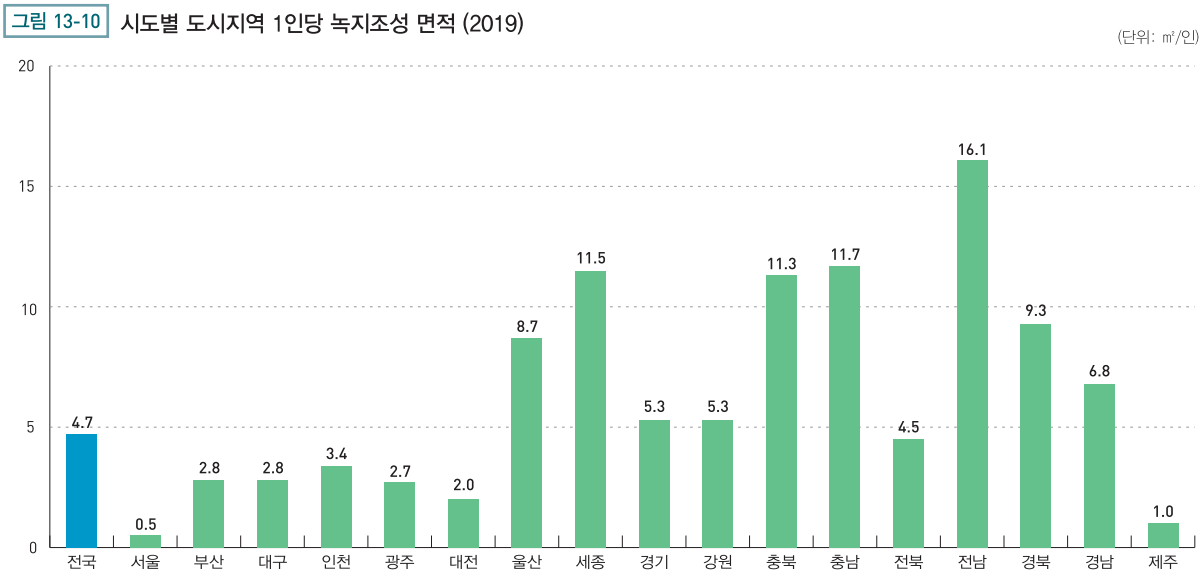
지표 정의

도시지역 인구 1인당 녹지조성 면적을 의미한다. 녹지란 도시공원과는 별개로 자연환경의 보전이나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측정 산식

- 녹지조성 면적 / 도시지역 인구

그림 13-10 시도별 도시지역 1인당 녹지조성 면적 (2019)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 도시계획현황, 2020 (http://kosis.kr에서 2020.12.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2006	2019	1년

04
대 표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s % of GDP

지표 정의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은 명목 GDP에 대비한 환경보호 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지출은 환경보호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출한 비용이며, 대기오염방지, 폐수처리, 폐기물처리, 토양과 수질오염 방지 및 처리, 소음과 진동 방지, 생태계 보호, 방사선 처리, 연구개발 및 기타 항목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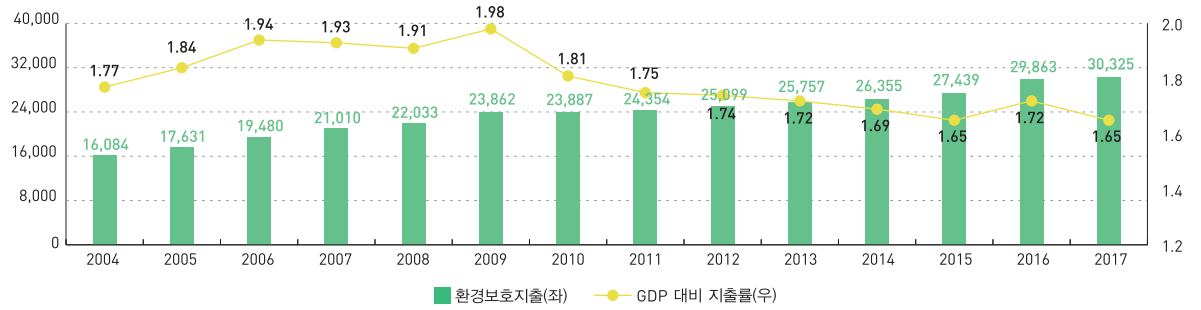
• 국민경제 내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행위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측정 산식

• $\frac{\text{환경보호 지출액}}{\text{명목 GDP}} \times 100$

그림 13-11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 (2004~2017)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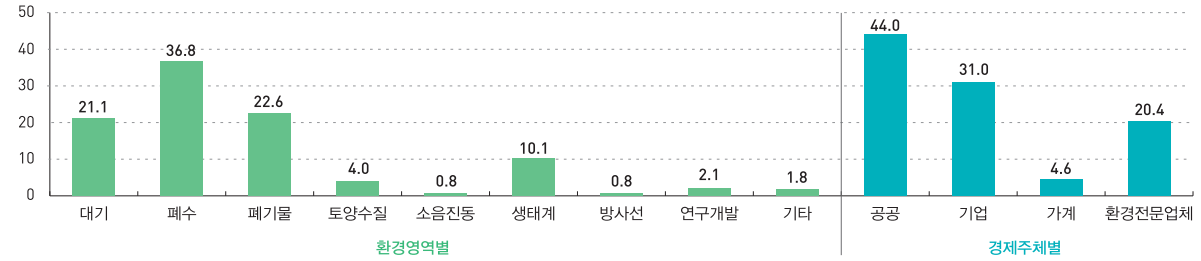


주: 1) 환경보호 지출 및 수입(EPER) 통계 기준을 활용함.
2) 환경보호 지출액은 (투자지출 + 경상지출 − 부산물 수입)으로 계산함.
3) 2016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http://kosis.kr에서 2020.12.29. 인출)

그림 13-12 환경영역별 경제주체별 환경보호 지출 비중 (2017)

(단위: %)



주: 2017년 수치는 잠정치

자료: 환경부, 환경보호지출계정, 2018 (http://kosis.kr에서 2020.12.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작성년도	최근작성년도	주기
환경부	환경보호 지출계정	1997	2018	1년

Checkpoint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후반 지출액이 정체되면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04-1
연 관

환경예산 비율

Budget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 % of Government Budget

지표 정의

환경예산 비율은 정부예산 중 환경분야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환경분야 예산}}{\text{정부예산}} \times 100$

표 13-3 환경예산 비율 (2008~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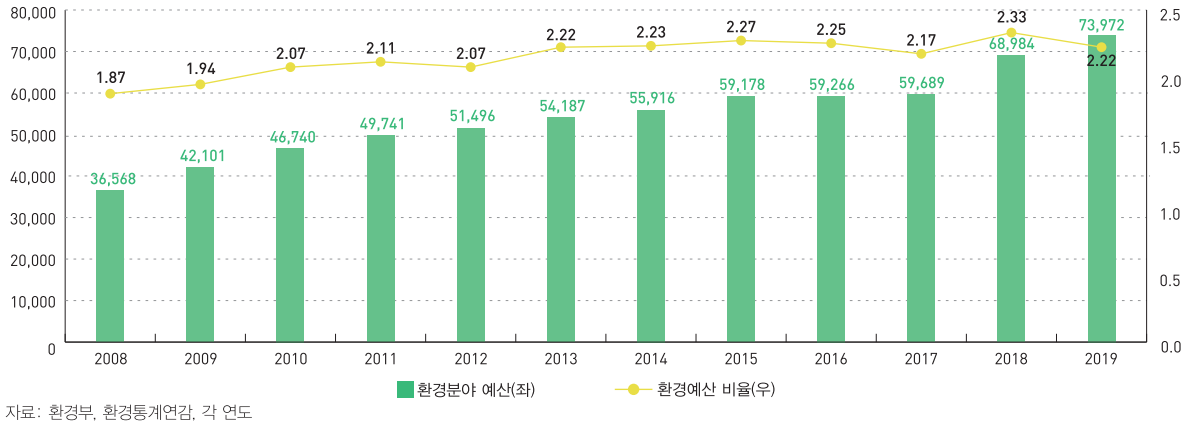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정부예산	1,951,002	2,174,723	2,259,682	2,356,000	2,486,125	2,436,433	2,507,885	2,601,465	2,639,243	2,746,699	2,962,367	3,289,199
환경분야 예산	36,568	42,101	46,740	49,741	51,496	54,187	55,916	59,178	59,266	59,689	68,984	73,972
환경부 예산	35,514	40,282	44,832	47,778	49,897	52,206	54,121	57,191	56,975	57,287	57,082	69,255
환경예산 비율	1.87	1.94	2.07	2.11	2.07	2.22	2.23	2.27	2.25	2.17	2.33	2.22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그림 13-13 환경예산 비율 (2008~2019)

(단위: 억 원, %)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3	2019	1년

05
대 표

상수도 보급률
Water Supply Rate

지표 정의
상수도 보급률은 수돗물의 보급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인구 중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급수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표 13-4 지역별 상수도 보급률 (2006~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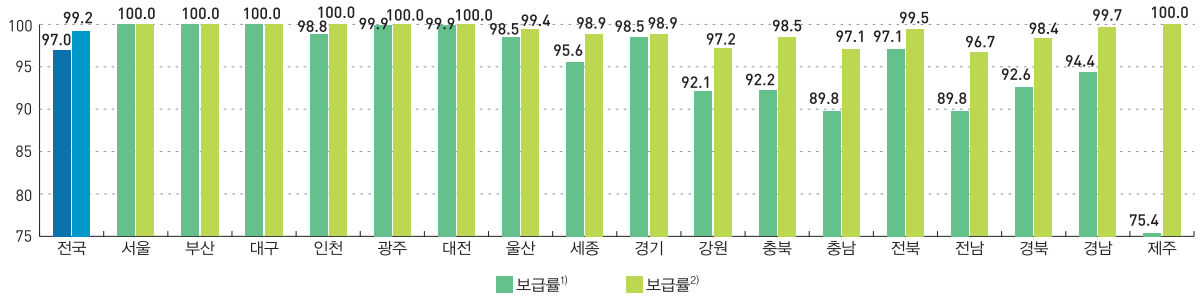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지역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보급률1 (%)[1]	전국	91.3	92.1	92.7	93.5	94.1	94.6	95.1	95.7	96.1	96.5	96.4	96.8	97.0
	특 · 광역시	99.1	99.1	99.3	99.4	99.5	99.6	99.6	99.6	99.7	99.7	99.6	99.7	99.7
	농어촌[3]	41.1	45.2	47.4	51.0	55.9	58.8	62.6	66.4	69.1	71.0	72.8	75.6	77.0
보급률2 (%)[2]	전국	95.9	96.4	96.8	97.4	97.7	97.9	98.1	98.5	98.6	98.8	98.9	99.1	99.2
	특 · 광역시	99.1	99.3	99.5	99.5	99.9	99.9	99.9	99.9	99.9	99.9	99.9	99.9	100.0
	농어촌	48.4	53.9	58.1	61.6	85.4	86.7	88.2	90.2	91.5	92.3	92.7	94.3	94.8

주: 1)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
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
3) 농어촌 보급률은 면지역 보급률을 의미함.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4 시도별 상수도 보급률 (2018)

(단위: %)



주: 보급률[1]은 수도사업자에 의한 급수 인구를 이용한 보급률이며, 보급률[2]는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공급받는 인구를 포함한 보급률임.
자료: 환경부, 2018 상수도통계, 2019 (http://kosis.kr에서 2020.12.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상수도통계	1975	2018	1년

Checkpoint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인구의 비율은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전국보급률(마을, 소규모 제외)은 97.0%이며,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한 결과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77.0% 수준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06 대 표

하수도 보급률

Total Public Sewerage(% of resident population connected to wastewater collecting system)

지표 정의

하수도 보급률은 총인구 중 하수처리구역 내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배출할 수 있고, 동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용 개시가 공시된 구역을 말한다. 따라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관할 행정구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없지만 타 지역에 설치된 처리장으로 유입 · 처리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이다.

• 하수도 보급률은 해당 지역의 수질 환경관리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text{하수도 보급률} = \frac{\text{하수처리구역 내 인구}}{\text{총인구}} \times 100$$

표 13-5 하수도 보급률 (200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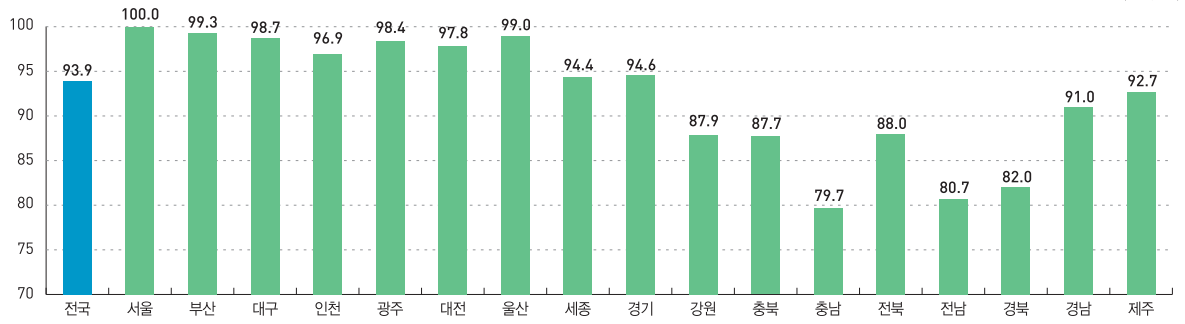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인구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50,394	50,644	51,435	51,717	51,881	52,127	52,419	52,672	52,858	52,950	53,073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	35,369	36,760	38,449	39,924	41,157	42,450	43,569	44,631	45,264	46,358	47,034	47,538	48,016	48,507	48,925	49,275	49,546	49,834
공공하수처리 인구	-	-	-	39,680	40,910	42,175	43,286	44,343	44,972	46,060	46,710	47,202	47,672	48,151	48,571	48,944	49,171	49,451
폐수종말처리 인구	-	-	-	245	247	275	283	288	292	297	324	336	344	356	355	332	183	198
하수도 보급률	73.2	75.8	78.8	81.4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5 시도별 하수도 보급률 (2018)

(단위: %)



자료: 환경부, 2018 하수도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8	1년

Checkpoint 2018년 하수도 보급률은 93.9%로 전년도에 비해 0.3%p 증가하였지만, 보급률의 지역 격차는 여전히 큰 편이다. 2018년 기준으로 도시 보급률은 96.0%인데 반해 농어촌 보급률은 71.8%로 약 25%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3-6 지역별 하수도 보급률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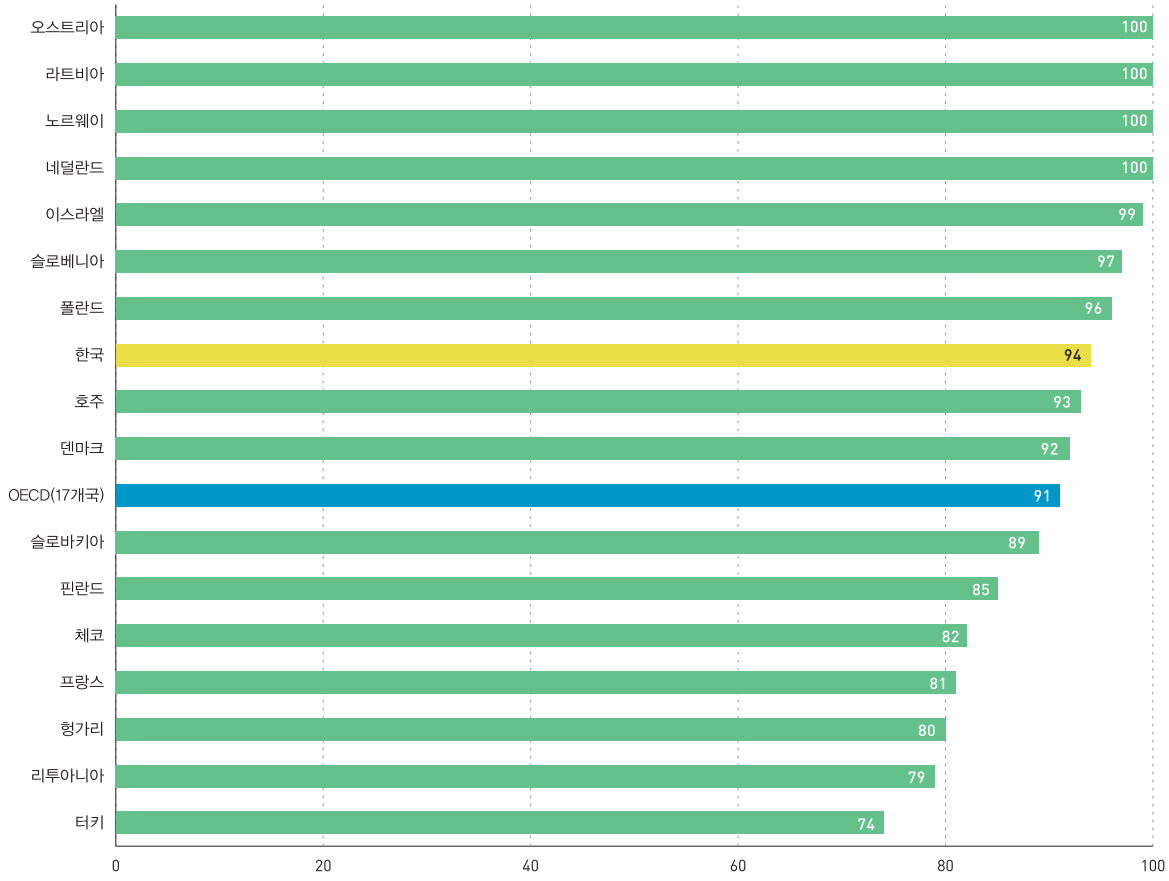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국 보급률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도시 보급률	92.5	93.4	93.8	94.2	94.6	94.9	95.0	95.1	95.5	95.8	96.0
농어촌 보급률	48.0	52.0	55.2	59.5	62.1	63.7	65.9	67.1	68.7	70.0	71.8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6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 (2018)

(단위: %)



주: 1) OECD 회원국 중 2018 하수도 보급률 수치가 있는 국가 선정
2) 헝가리는 추정치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http://stats.oecd.or.kr에서 2020.12.29. 인출)

06-1
연 관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Population Connected to Tertiary Sewerage treatment Facility

지표 정의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이란 행정구역의 총인구 대비 고도처리가 이루어지는 지역 내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다. 여기서 고도처리란 질소, 인까지 하수처리하는 방법으로 3차 처리라고도 한다.

• 하수의 고도처리는 수질관리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cdot \frac{\text{3차 처리 인구}}{\text{행정구역의 총인구}} \times 100$$

표 13-7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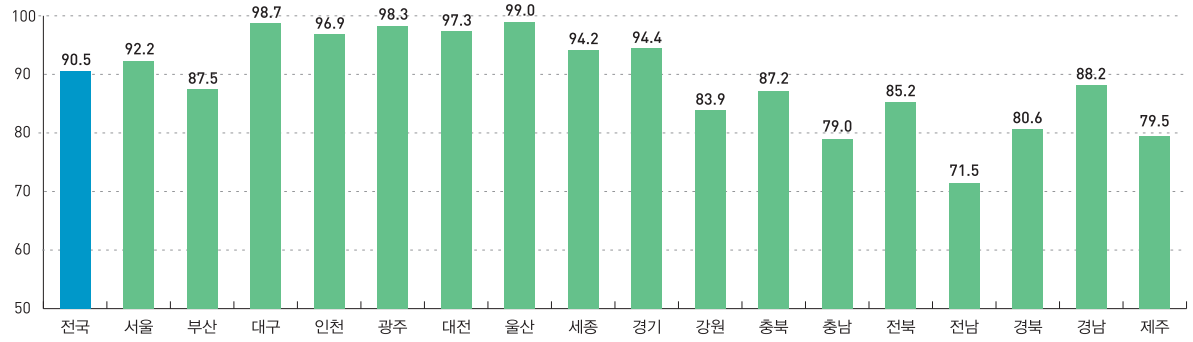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39.5	50.2	54.1	58.2	59.9	81.6	82.8	84.0	88.6	90.9	90.5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http://kosis.or.kr에서 2020.12.29. 인출)

그림 13-17 시도별 고도처리 인구 보급률 (2018)

(단위: %)



자료: 환경부, 2018 하수도통계,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8	1년

06-2
연 관

하수도 설치율

Total Public Sewage & Sewerage Installation rate

지표 정의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하수관로를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하수도 설치율은 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하수도 보급률)과 계획연장 대비 시설연장을 의미하는 하수관로 보급률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측정 산식

- $\frac{\text{공공하수처리 인구 보급률(\%)} \times \text{하수관로 보급률(\%)}}{100}$

표 13-8 하수도 설치율 (200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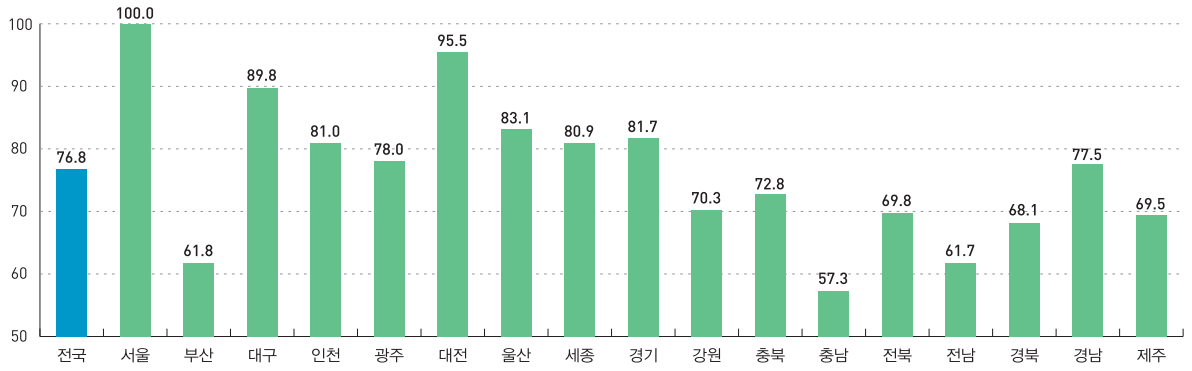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하수도 보급률	81.4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92.5	92.9	93.2	93.6	93.9
하수관로 보급률	62.2	62.4	64.5	66.1	67.8	75.4	78.0	73.4	75.8	76.5	77.8	79.9	80.0	80.7	81.8
하수도 설치율	50.6	52.1	55.2	57.6	60.0	61.6	64.3	66.7	69.5	70.5	72.0	74.2	74.8	75.4	76.8

자료: 환경부, 하수도통계, 각 연도

그림 13-18 시도별 하수도 설치율 (2018)

(단위: %)



자료: 환경부, 2018 하수도통계, 2019 (http://kosis.or.kr에서 2020.12.29.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하수도통계	1975	2018	1년

07
대 표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Recycling rate of municipal waste

지표 정의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은 총 생활폐기물 중에서 별도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 폐기물은 발생량뿐 아니라 처리과정도 중요하다. 환경정책 차원에서는 재활용률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측정 산식

$$\frac{\text{재활용량}}{\text{생활폐기물 발생량}} \times 100$$

표 13-9 생활계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 (2009~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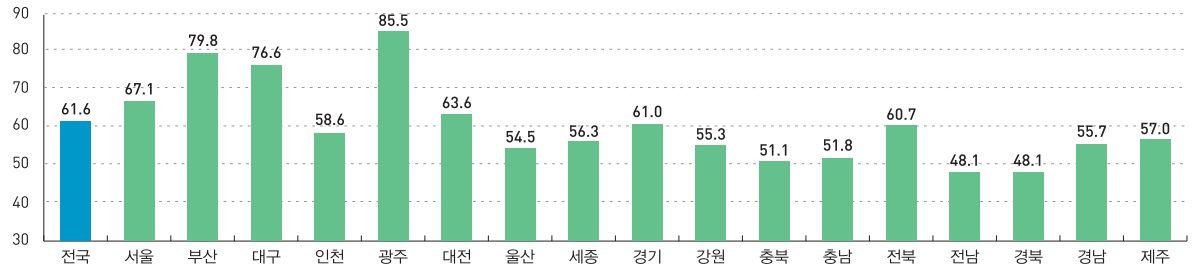
(단위: 톤/일,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량	50,906	49,159	48,934	48,990	48,728	49,915	51,247	53,772	53,490	56,035
매립	9,471 (18.6)	8,797 (17.9)	8,391 (17.2)	7,778 (15.9)	7,613 (15.6)	7,813 (15.7)	7,719 (15.1)	7,909 (14.7)	7,240 (13.5)	7,525 (13.4)
소각	10,309 (20.3)	10,609 (21.6)	11,604 (23.7)	12,261 (25.0)	12,331 (25.3)	12,648 (25.3)	13,176 (25.7)	13,610 (25.3)	13,318 (24.9)	13,763 (24.6)
재활용	31,126 (61.1)	29,753 (60.5)	28,939 (59.1)	28,951 (59.1)	28,784 (59.1)	29,454 (59.0)	30,352 (59.2)	32,253 (60.0)	32,932 (61.6)	34,747 (62.0)

주: 1)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2) ( )는 각 연도별 생활계폐기물 처리방법별 비중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그림 13-19 시도별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 (2018)

(단위: %)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료: 환경부, 201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9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3	2018	1년

Checkpoint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09년 61.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상승하고 있다. 소각과 매립의 비율은 2015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년 발생한 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62.0%가 재활용 되었으며, 24.6%는 소각, 13.4%는 매립 처리되었다.

07-1
연 관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Municipal Waste Generation per Capita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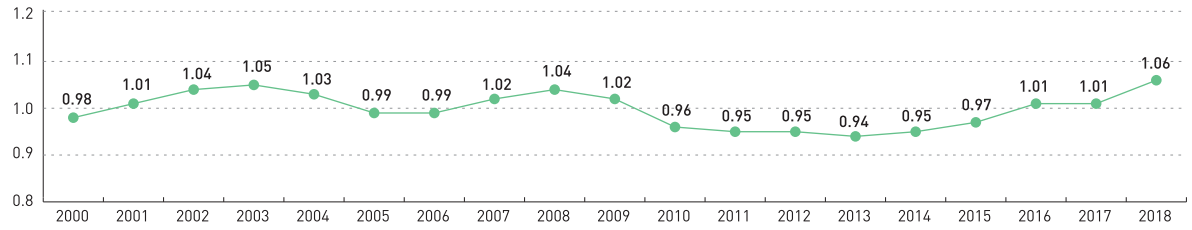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가정생활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폐기물의 합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로 나눈 값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생활계폐기물(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폐기물) 발생량}}{\text{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내 인구}}$

그림 13-20 생활계폐기물 1일 1인당 발생량 (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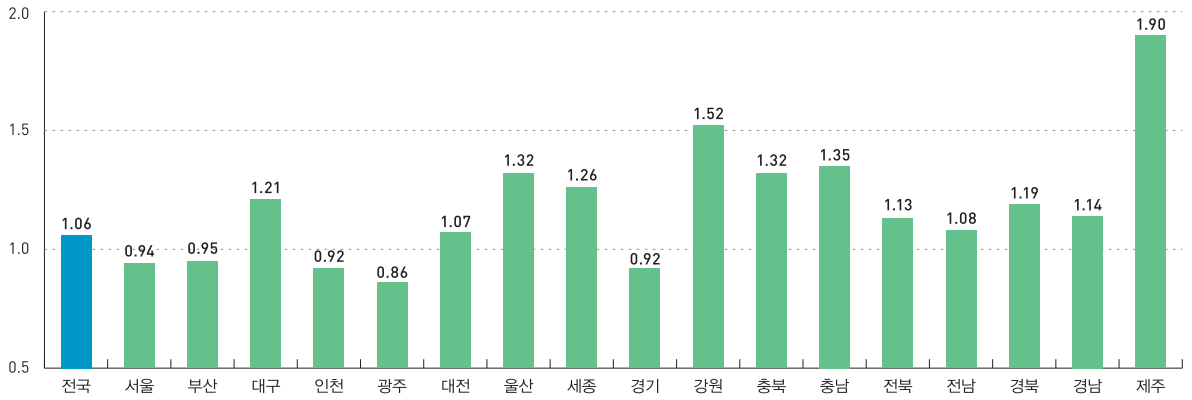
(단위: kg/일/인)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료: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각 연도

그림 13-21 시도별 1일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8)

(단위: kg/일/인)



주: 생활계폐기물 = 가정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료: 환경부, 2018년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9

통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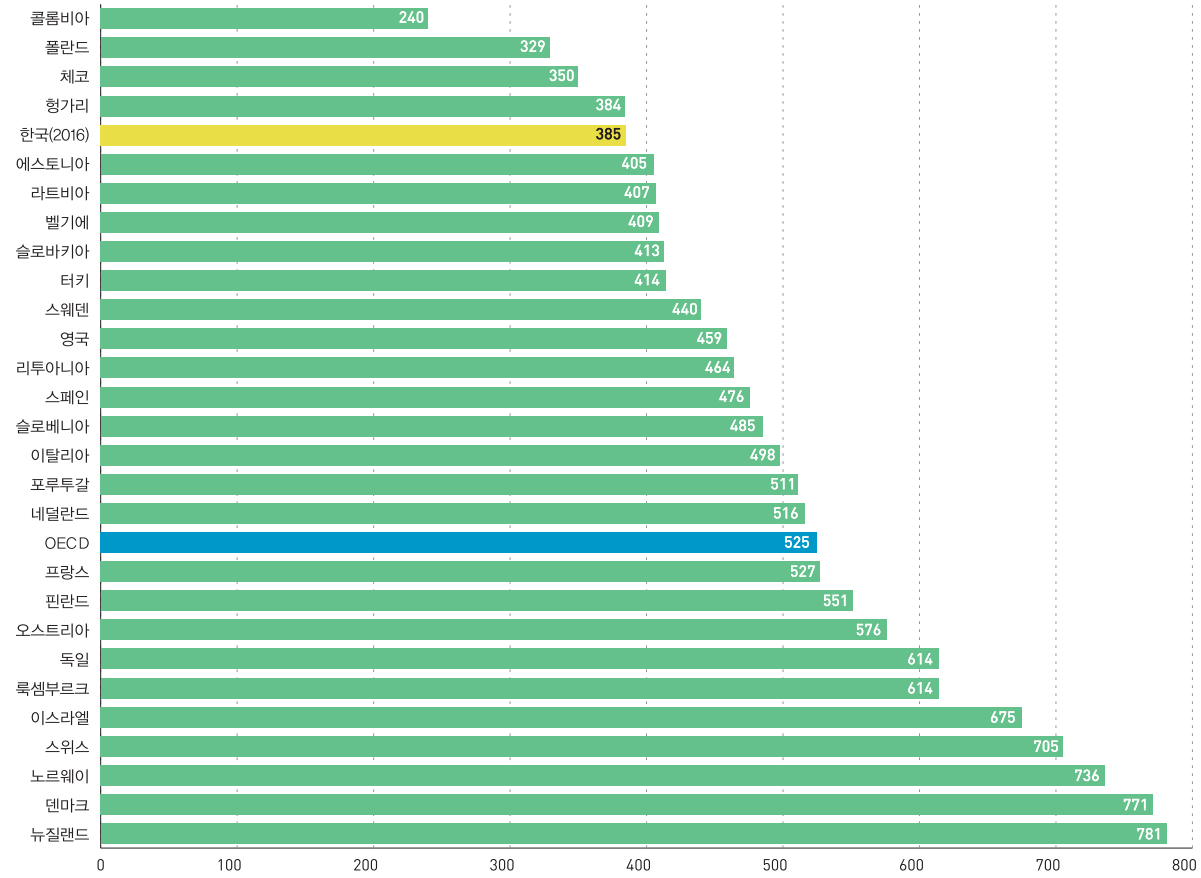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993	2018	1년

참고문헌

-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6

그림 13-22 OECD 국가의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2018)

(단위: kg/년/인)



주: 한국은 OECD에 제출된 최근 연도 자료를 활용

자료: OECD, Environment Statistics Database, 2016 (http://sats.oecd.or.kr/에서 2020.12.29. 인출)

08
대 표

환경성질환자 수

Number of Patients with Environmental Disease

지표 정의

환경성질환자 수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수이며, 환경성질환은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의 3개 질환을 포함한다.

측정 산식

• 합계 = 알레르기 비염(J30) + 아토피피부염(L20) + 천식(J45~46) 질환자 수

표 13-10 항목별 환경성질환자 수 (200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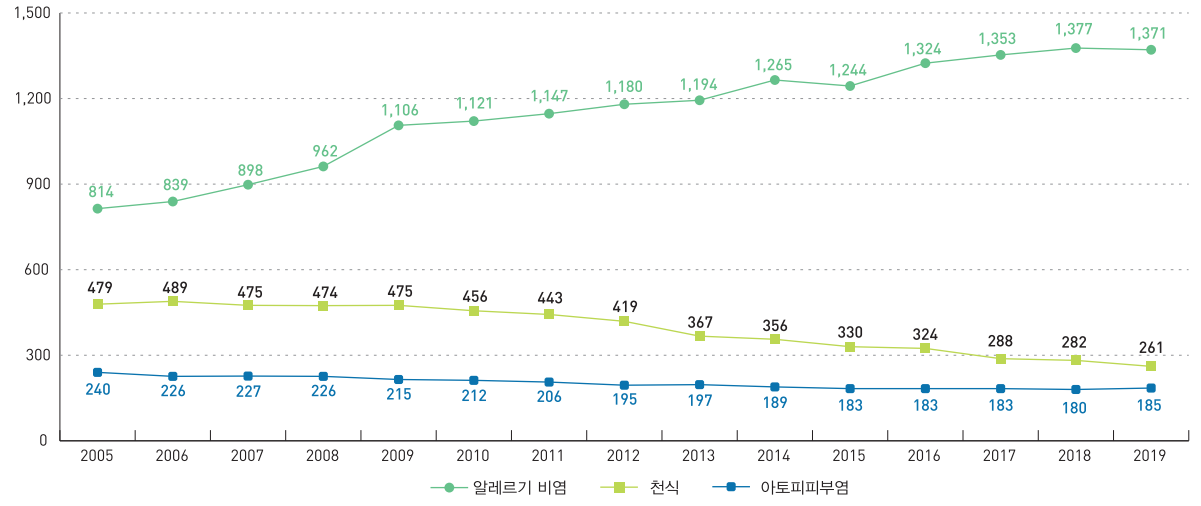
(단위: 천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3,859	3,978	4,292	4,633	5,379	5,482	5,652	5,862	5,968	6,368	6,280	6,723	6,892	7,034	7,047
아토피피부염(L20)	1,139	1,069	1,086	1,090	1,048	1,039	1,013	971	983	951	925	930	934	918	949
천식(J45) 및 천식 지속	2,269	2,317	2,270	2,282	2,310	2,230	2,182	2,080	1,833	1,789	1,668	1,644	1,466	1,438	1,341
합계	7,266	7,364	7,648	8,005	8,737	8,751	8,848	8,912	8,784	9,108	8,874	9,297	9,292	9,390	9,337
순계	6,567	6,660	6,873	7,165	7,821	7,825	7,918	8,006	7,936	8,265	8,081	8,483	8,538	8,648	8,611

주: 순계 =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환경성질환자 수 총합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각 연도

그림 13-23 인구 1만 명당 주요 환경성질환자 수 (2005~2019)

(단위: 명, 인구 1만 명당)



주: 1만 명당 환자 = 환자 수/건강보험 연말 적용인구 × 10,000
자료: 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성질환자 수 (내부자료)	1994	2019	1년

Checkpoint

환경성질환은 환경적 요소에 민감한 아동 및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는 실내 · 외의 환경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환경성질환자 중 중복질환자를 제외한 순계는 2012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5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약 861만 명을 기록하였다.

14

사회재정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01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02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0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0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05 공적연금수지

06 고용 · 산재보험수지

0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08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14 사회재정

세부영역	대표지표	연관지표
재원배분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사회보장 지출 구조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 · 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국제비교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Highlight

저출산·고령화, 저성장·불평등 추세의 심화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중대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른바 선진 복지국가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재정지출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 되고 말았다. 사회재정지출은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정부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재정지출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 등의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중 노인·청소년, 보육·가족·여성 등을 포괄한 기초생활보장 및 일자리사업 등의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이는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거대담론과 연관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양한 재정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재정 분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지출비중, 보조사업 비중, 주요 사회복지예산규모, 공적연금수지, 고용·산재보험수지, 국민건강·노인 장기요양보험수지, 공공사회지출(SOCX)비중,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로 구성되며 이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중앙정부의 경우, 사회복지·보건분야의 지출은 전년 대비 19.5조 원 증가하여 국가 총지출의 증가분 42.7조 원의 4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례적인 지출 규모의 증가는 기초생활보장과 노동을 위한 재정지출에 기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유사하게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부문의 지출이 늘어났고, 이례적으로 식품의약안전, 보훈부문의 지출이 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보건분야 보조사업 비중은 정책영역별로 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여성, 노인·청소년 순이다. 공적연금은 2020년 정부내부수입이 14조 3,6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9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보전금이 전년 대비 6,709억 원 증가하고 국가부담금이 전년 대비 2,913억 원 감소한 것에 따른다.

이는 연금개혁의 효과라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9년 10조 3,436억 원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정부 지원금 증가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지출효율화 관점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OECD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서라도 그 규모를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규모가 아닌 지출의 증가율을 고려해볼 때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단순 사회지출의 규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성 등 체계적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01
대 표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Central Government Spe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C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재정지출 16대 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지출이 국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국가의 사회보장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국가 총지출}} \times 100$$

유의사항 국가란 행정주체로서의 국가를 의미하며 국가재정은 중앙부처 소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회계를 포괄한다. 한편, 예산과 결산상 지출 규모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표 14-1 국가 분야 · 부문별 지출 (2010~2020)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증가율
사회복지 · 보건[A]	81.2	86.4	92.6	99.3	106.4	115.7	123.4	129.5	144.6	161.0	180.5	8.3
국가총지출[B]	292.8	309.1	325.4	349.0	355.8	375.4	386.4	400.5	428.8	469.6	512.3	5.8
비중[A/B]	27.7	28	28.5	28.5	29.9	30.8	31.9	32.3	33.7	34.3	35.2	-
[사회복지, 억 원]	739,162	788,926	847,715	904,712	972,051	1,052,815	1,128,656	1,191,272	1,335,151	1,488,769	1,664,919	8.5
기초생활보장	72,937	75,240	79,100	87,761	88,310	94,773	101,311	104,904	110,152	127,046	139,659	6.7
취약계층지원	15,212	13,427	13,946	16,849	17,987	23,688	24,989	26,082	26,204	34,019	39,603	10.0
공적연금	259,856	281,833	312,678	331,382	364,031	396,612	427,062	449,930	478,007	503,116	554,491	7.9
보육 · 가족 · 여성	23,694	28,759	33,847	45,431	57,156	54,278	57,654	59,225	67,348	231,548	262,400	27.2
노인 · 청소년	36,630	38,759	40,510	45,034	65,619	90,362	94,210	98,013	112,749			
노동	122,935	126,180	131,242	140,362	144,588	155,162	172,950	182,653	238,104	267,185	299,892	9.3
보훈	36,094	38,737	40,541	43,152	44,576	46,376	48,181	49,754	55,256	55,588	57,345	4.7
주택	167,162	180,536	190,062	187,679	182,343	183,867	194,381	212,421	233,870	257,309	297,314	5.9
사회복지일반	4,642	5,455	5,789	7,062	7,440	7,697	7,917	8,290	11,268	12,958	14,215	11.8
[보건, 억 원]	73,304	75,000	78,589	88,213	92,203	104,009	105,339	103,558	111,015	121,203	135,218	6.3
보건의료	17,037	15,599	16,039	20,247	19,451	22,808	23,278	23,405	24,129	25,930	27,694	5.0
건강보험지원	53,827	57,102	60,113	65,131	69,665	77,442	77,860	75,811	82,167	90,187	101,956	6.6
식품의약안전	2,440	2,299	2,437	2,835	3,087	3,760	4,201	4,342	4,719	5,086	5,568	8.6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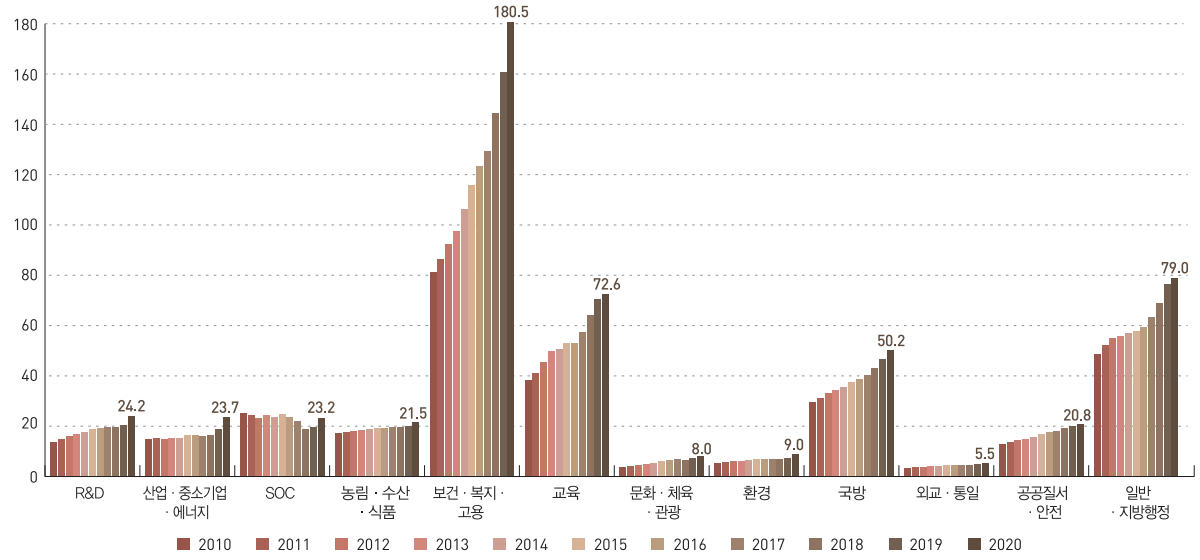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2009	2020	1년

Checkpoint 국가 총지출은 전년 대비 42.7조 원 증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19.5조 원 증가한 180.5조 원으로 총지출 대비 비중이 역대 최고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와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재정지출에 기인한다.

그림 14-1 국가 분야별 재원배분 (2010~2020)

(단위: 조 원)



주: 그래프안의 수치는 2020년도 본예산 규모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02
대 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

Local Government Sepnding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 of LG Total Spending)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재정통계 작성기준 13대** 분야 중 사회복지 · 보건 지출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재정 규모를 파악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측정 산식

$$\frac{\text{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지출}}{\text{지자체 예산 규모}} \times 100$$

유의사항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일반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과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지자체 일반재정 중 예산(일반회계 + 특별회계) 순계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였다. 예산순계는 자치단체 내 회계 간(일반회계–특별회계) 내부거래,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 중복계상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국 및 시도별 재정규모를 파악할 때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따른 재정이전을 비롯하여 지자체 및 회계 간 복잡한 재정관계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빈번한 추경편성이 이루어지므로 당초예산과 최종예산, 그리고 예산과 결산상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최종예산의 편성이나 결산정보가 상대적으로 늦게 공개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재정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출했다.

한편, [지표 14–1]과 [지표 14–2]의 행정주체별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자체 간의 재정이전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 지출 규모를 단순 합산하거나 그 비율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사회보장지출 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2 지방자치단체 분야 · 부문별 세출 (2011~2020)

(단위: 조 원, 억 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증가율
사회복지 · 보건[A]	30.5	33.0	37.3	42.5	46.8	49.5	52.6	60.7	69.9	79.1	11.2%
지자체예산규모[B]	141.0	151.1	156.9	163.6	173.3	184.6	193.2	210.7	231.0	253.0	6.7%
비중[A/B]	21.6	21.8	23.8	26.0	27.0	26.8	27.2	28.8	30.3	31.3	4.2%
[사회복지,억 원]	284,632	309,157	349,921	400,832	440,629	466,075	494,509	571,293	661,588	751,015	11.4%
기초생활보장	90,710	92,998	102,700	103,231	105,279	111,722	114,787	126,262	146,194	160,332	6.5%
취약계층지원	38,873	43,786	47,401	52,644	57,547	62,253	66,796	77,318	91,196	107,375	12.0%
보육 · 가족 · 여성	67,372	77,490	98,688	118,631	116,017	121,192	127,708	148,312	167,595	178,546	11.4%
노인 · 청소년	68,791	70,836	76,976	102,545	134,884	142,234	149,433	180,278	208,730	241,287	15.0%
노동	6,313	6,255	6,481	6,664	6,792	7,212	8,879	12,147	13,836	17,787	12.2%
보훈	1,606	2,096	2,465	2,475	2,782	3,407	3,683	4,599	5,278	5,990	15.7%
주택	7,553	12,214	11,655	10,164	12,640	13,019	17,090	14,888	19,633	28,578	15.9%
사회복지일반	3,415	3,481	3,554	4,478	4,689	5,036	6,135	7,489	9,126	11,115	14.0%
[보건,억 원]	20,082	20,825	23,323	24,139	26,935	29,123	31,505	35,217	37,002	40,057	8.0%
보건의료	19,664	20,329	22,699	23,415	25,935	27,965	30,063	33,678	35,453	38,327	7.7%
식품의약안전	418	496	624	724	1,001	1,158	1,442	1,538	1,549	1,729	17.1%

주: 당초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20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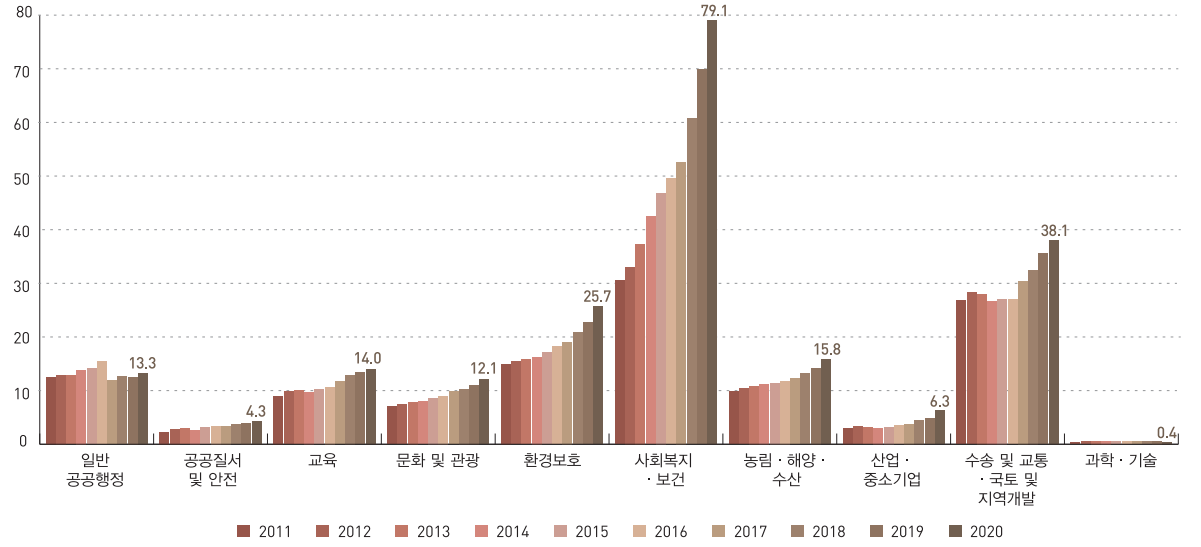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17개)와 기초자치단체(226개)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재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된다.

** 2014년부터 기존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구분되어 제시된다.

*** [지표 14–2]는 일반회계 +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기초한 것으로 지표명이나 설명에 '지출' 대신 '세출'로 기술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나, [지표 14–1]는 국가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지출 비중과 관련한 재정범위가 기금을 포함한 총지출에 기준한다는 점에서 세출 대신 지출로 표기하였고, 지표 간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세출' 대신 '지출'을 사용한다.

그림 14-2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재원배분 (2011~2020)

(단위: 조 원)



주: 1) 당초예산(순계) 기준
2) 그래프안의 수치는 2020년도 예산 규모임.
3)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합계지출 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각 연도

03
대 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Subsidy Spending Ratio of Local Government on Health and Social Welfare

지표 정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분야 지출에서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관련 사업의 유형과 지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측정 산식

$$\frac{\text{보조사업비 규모}}{\text{지자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세출 예산}} \times 100$$

표 14-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 보건 분야 보조사업 비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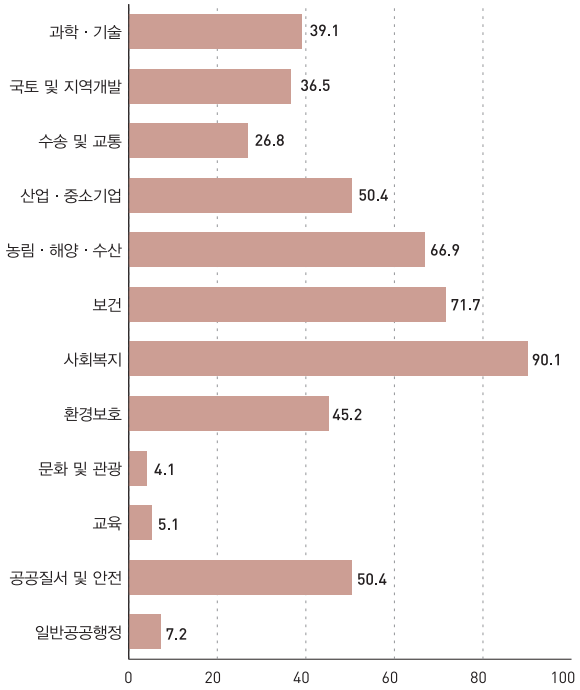
(단위: 억 원, %)

구분	보조사업 (A)	자체사업 (B)	보조사업 비중 [A/(A+B)]	2019년도 보조사업 비중
지자체 예산	1,104,086	1,026,740	51.8	50.6
사회복지 · 보건	707,142	82,570	89.5	89.5
사회복지	678,485	71,224	90.5	90.5
기초생활보장	156,222	3,706	97.7	97.5
취약계층지원	95,319	11,991	88.8	87.7
보육 · 가족 · 여성	165,999	12,296	93.1	93.4
노인 · 청소년	219,018	22,014	90.9	90.5
노동	10,406	7,376	58.5	53.3
보훈	2,426	3,565	40.5	37.1
주택	20,721	7,614	73.1	75.4
사회복지일반	8,375	2,662	75.9	74.3
보건	28,657	11,346	71.6	71.5
보건의료	27,391	10,881	71.6	71.4
식품의약안전	1,265	464	73.2	75.0

주: 1) 당초예산(순계) 기준
2) [지표 14-2] 분야 부문별 예산 규모와 차이는 행정운영경비나 재무활동 등이 제외되기 때문임.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구, 예산개요), 2020

그림 14-3 지방자치단체 분야별 보조사업 비중 (2020)

(단위: %)



주: 당초예산(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997(2008년 기능분류체계 개편)	2020	1년

Checkpoint 지방자치단체 세출 전 분야 보조사업 비중은 전년 대비 1.2%p 하락하였다. 사회복지 · 보건 분야 정책영역 중 보육 · 가족 · 여성, 주택, 식품의약안전의 보조사업 비중이 전년 대비 각각 0.3%p, 2.3%p, 1.8%p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보조사업 비중이 하락하였다.

04
대 표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규모

Government Spending on Major Benefit Programs

지표 정의

사회복지 분야 주요 예산사업 즉,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정책사업의 재정규모로 국가-지자체 간 분담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생계 · 해산 · 장제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국비+지방비 합계와 신설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을 합산한 것임.

표 14-4 주요 사회복지 예산사업 현황 (2019)

(단위: 억 원)

구분	계(A)	국비(B)	지방비	국가분담률(B/A)
합계	375,333	285,835	91,673	76.2%
기초생활보장	150,993	117,448	33,545	77.8%
생계 · 해산장제급여	46,618	37,919	8,699	81.3%
주거급여	17,233	13,853	3,380	80.4%
교육급여	1,616	1,317	299	81.5%
의료급여	85,526	64,359	21,167	75.3%
장애인연금	10,735	7,194	3,541	67.0%
장애수당	1,936	1,297	639	67.0%
기초연금	147,202	114,952	32,457	78.1%
영유아보육료(0~2세)	50,940	34,053	16,887	66.8%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8,153	38,153	-	-
가정양육수당	13,527	10,891	4,604	80.5%

주: 1) 세출규모는 예산 기준임.
2)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교육부 소관) 세출규모만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2019 나라살림예산(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보건복지부(내부자료)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주요 사회복지 예산 (내부자료)	-	2019	1년

05
대 표

공적연금수지

Fiscal Balance of Public Pension Funds

지표 정의

4대 공적연금 기금운용계획상 정부내부수입과 여유자금회수 및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수지차의 합계로 정의한다.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건전성과 국가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4대 공적연금 경상수입(자체수입 + 경상이전수입) – 경상지출(사업비지출 + 기금운영비)

유의사항 동 지표는 실적이 아닌 기금운용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표 14-5 4대 공적연금기금 운용계획 (2020)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수지차[A+B–D–E]	274,497	405,264	△106,783	△27,682	3,698
[조달]	1,718,565	1,329,189	229,758	35,305	124,313
자체수입(A)	828,780	679,374	89,861	6,889	52,656
기여금(보험료) 수입	592,426	488,104	63,042	6,745	34,535
이자 및 재산수입 등[1]	236,354	191,270	26,819	144	18,121
경상이전수입(B)	821	-	-	90	731
정부내부수입(C)	143,625	102	106,738	27,826	8,959
국가부담금[2]	106,166	-	94,119	12,047	-
보전금	28,390	-	12,611	15,779	-
전입금[3]	9,069	102	8	-	8,959
공공자금예탁원리금 및 이자	-	-	-	-	-
여유자금회수	745,339	649,713	33,159	500	61,967
[운용]	1,718,565	1,329,189	229,758	35,305	124,313
사업비(D)	548,372	268,812	195,810	34,656	49,094
급여지출	513,332	266,034	174,186	34,656	38,456
경상지출[4]	2,733	2,258	3	-	472
융자지출[5]	26,205	520	15,519	-	10,166
자본지출[6]	6,102	-	6,102	-	-
기금운영비(E)	6,732	5,298	834	5	595
정부내부지출[7]	523	-	-	-	523
여유자금운용	1,162,938	1,055,079	33,114	644	74,101

주: 1)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잡수입 및 융자원금 회수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융자원금 회수 및 민간차입금 포함
2)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지자체부담금 포함
3)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여장학금 수탁금 및 운영부담금 포함;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가부담금 포함
4)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복지타운운영비, 기금운용본부운영비 및 기타사업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차입금원리금 상환 및 국민주택기금 예탁금 포함; 군인연금기금의 경우, 공자기금예탁 포함
5)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포함;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대부사업운영 포함;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생활자금대여 및 학자금대여 포함
6) 공무원연금기금의 경우, 주택사업운영, 시설사업운영 및 통합전략시스템 포함
7) 사학연금기금의 경우 국고학자금대여반환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 경제 · 재정수첩 p.254. 수정 인용(원자료 :보건복지부,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국방부)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안(내부자료)	-	2020	1년

Checkpoint 공무원연금기금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내부수입 총액은 10조 6,738억 원으로 2019년 10조 3,487억 원 대비 3.1% 증가한 규모이다. 국가부담금은 전년 대비 3,422억 원 감소한 9조 4,119억 원이고, 보전금은 전년 대비 6,670억 원 증가한 1조 2,611억 원이다.

06
대 표

고용 · 산재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Employment·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unds

지표 정의

고용 · 산재보험수지는 근로안전망으로 6개 사회보장성 기금을 구성하는 고용 · 산재보험의 재정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고용 · 산재보험기금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사업비 + 기금관리비 등)

표 14-6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19)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수지차[A+B–C–D]	△6,103	△22,279	16,176
[조달]	262,934	156,358	106,576
보험료(A)	192,694	117,236	75,458
기타(B)	5,215	0	5,215
정부내부수입(전입금)	5,402	1,402	4,000
여유자금회수	59,624	37,720	21,904
[운용]	262,934	156,358	106,576
사업비(C)	199,291	138,531	60,760
기금관리비 등(D)	8,721	985	7,736
여유자금운용	54,923	16,843	38,080

주: 2019년도 결산 기준임.
자료: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2019년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 p.11. 수정 인용
산재보험: 고용노동부. 2019년도 산재보험 사업연보. pp.196–199. 수정 인용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기획재정부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결산 현황	2006	2019	1년

07
대 표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수지

Fiscal Balance of the National Health and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지표 정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로 정의되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표이다.

측정 산식

•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상수입(보험료 + 기타) – 경상지출

표 14-7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현황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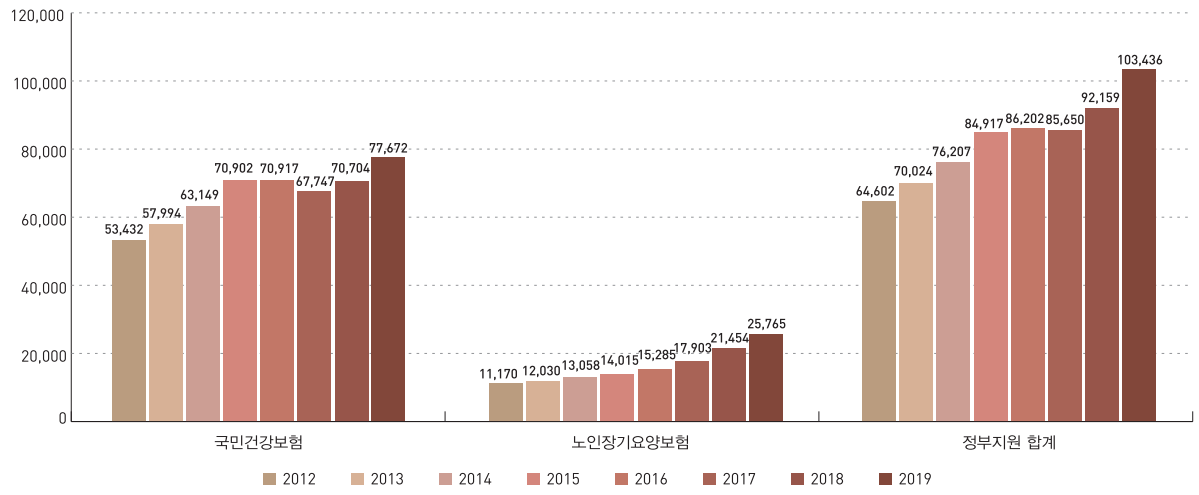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지차[A–B]	△36,186	△29,240	△6,946
[수입]	767,936	691,733	76,203
보험료 및 기타(A)	664,499	614,061	50,438
정부지원	103,436	77,672	25,765
[지출] (B)	804,122	720,972	83,149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그림 14-4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지원규모 (2012~2018)

(단위: 억 원)



주: 2012~2019 결산기준

자료: 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통계연보, pp.94–95.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p.786.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 ·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산현황	2012	2019	1년

Checkpoint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규모는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6조 4,602억 원에서 2019년 10조 3,436억 원으로 약 1.6배 확대되었다. 2012~2019년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운영 정부지원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5%와 12.7%이다.

08
대 표

공공사회지출(Public SOCX) 비중

Composit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OCX)

지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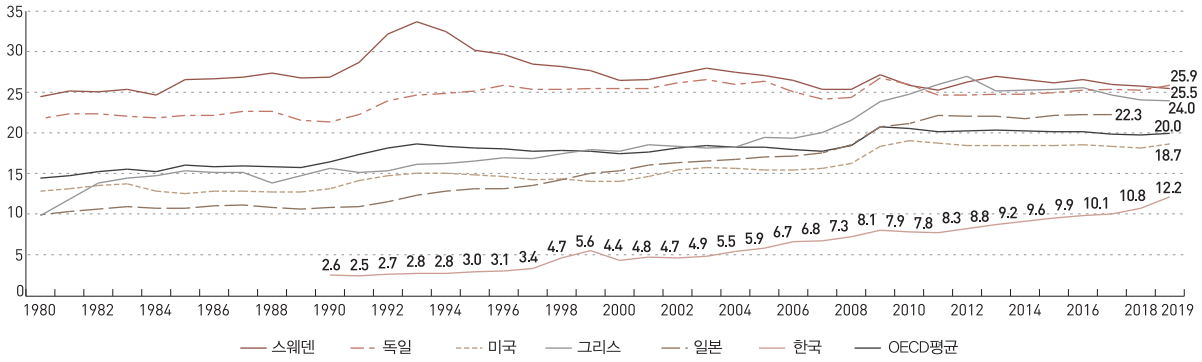
공공사회지출은 명목 GDP 규모 대비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비중으로 국가 간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측정 산식

- $\frac{\text{Public SOCX}}{\text{명목 GDP}} \times 100$

그림 14-5 주요국 공공사회지출 (198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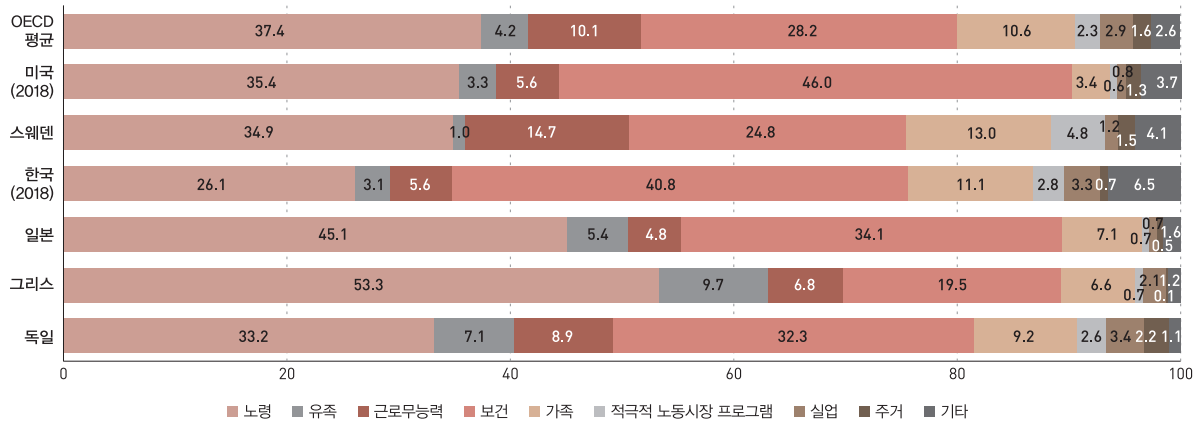
(단위: 명목 GDP 대비 %)



주: SOCX의 각국 자료 범위는 1980~2019년, 1980~2017년은 확정치, 2018~2019년은 예측치(단, 일본은 2017년까지, 한국은 1990년 이후 자료)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21.1.14. 인출)

그림 14-6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 (2017 혹은 최신 연도)

(단위: 공공사회지출 대비 %)



주: 1) 각 국 SOCX 9대 영역별 GDP 대비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를 합하여 영역별 분율을 계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로 반올림
2) 한국과 미국은 2018년도 자료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21.1.15. 인출)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발표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1990	2019 (확정치 '80~'15, 예측치 '16~'18)	2년

표 14-8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 (1990~2018)

(단위: 백만 원)

연도	공공사회지출									
		1.노령	2.유족	3.근로 무능력	4.보건	5.가족	6.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7.실업	8.주거	9.기타
1990	5,300,288	1,165,749	374,101	486,647	2,827,892	59,886	50,690	-	-	335,323
1991	6,173,644	1,470,571	510,848	676,336	3,047,700	88,738	43,613	-	-	335,837
1992	7,675,829	2,028,385	581,111	858,382	3,665,683	110,865	103,162	-	-	328,241
1993	8,948,860	2,660,554	610,600	879,358	4,141,643	153,824	144,042	-	-	358,840
1994	10,556,695	3,316,754	725,579	1,137,271	4,715,003	184,860	114,439	-	-	362,789
1995	13,167,906	4,372,921	811,946	1,324,006	5,774,227	261,762	168,119	-	-	454,926
1996	15,519,434	4,650,867	915,671	1,549,479	7,291,890	337,352	183,633	10,459	-	580,084
1997	18,440,043	5,458,158	1,035,923	1,862,131	8,482,750	428,714	359,558	78,737	-	734,072
1998	25,340,693	8,930,747	1,058,084	1,887,317	9,612,703	548,994	1,627,392	799,415	-	876,042
1999	33,253,240	13,004,910	1,072,284	1,756,747	11,229,380	530,003	3,265,765	936,163	-	1,457,988
2000	28,752,016	7,570,329	1,247,962	2,095,087	12,782,221	664,909	2,313,351	470,792	-	1,607,364
2001	33,852,286	6,714,835	1,361,495	2,509,899	17,510,247	941,250	1,428,835	845,109	-	2,540,617
2002	36,519,738	7,324,597	1,570,839	2,989,398	18,468,439	1,017,929	1,342,499	834,948	-	2,971,089
2003	41,404,583	8,785,190	1,860,768	3,586,355	20,749,650	1,268,122	931,917	1,030,304	-	3,192,276
2004	50,287,246	10,706,653	2,058,380	4,485,396	22,614,681	1,654,245	938,848	1,448,306	-	6,380,738
2005	56,304,480	12,183,883	2,254,962	4,942,264	25,223,351	2,131,329	1,022,514	1,751,974	-	6,794,203
2006	67,367,467	13,546,495	2,510,647	5,520,371	29,334,113	4,753,167	1,074,230	2,074,004	-	8,554,438
2007	73,899,687	15,525,965	2,790,585	6,009,967	32,852,515	4,540,474	1,255,823	2,434,033	-	8,490,325
2008	83,844,436	19,446,695	3,008,426	6,672,889	35,671,296	6,241,375	2,606,232	2,865,256	-	7,332,268
2009	97,263,139	21,348,690	3,281,683	7,104,927	41,245,422	7,823,589	4,961,445	4,116,404	-	7,380,979
2010	103,962,371	23,686,227	3,589,646	6,633,875	46,447,780	8,850,262	3,815,149	3,686,529	-	7,252,902
2011	108,526,687	25,378,967	3,923,011	7,245,329	48,874,078	9,349,951	3,308,486	3,561,353	-	6,885,510
2012	119,953,845	29,195,474	4,223,476	7,916,355	50,928,968	12,002,439	4,495,698	3,676,665	-	7,514,770
2013	132,453,110	31,478,367	3,989,739	8,097,000	54,234,013	17,155,870	5,248,351	3,883,507	-	8,366,262
2014	143,638,953	36,670,451	4,354,975	8,314,408	58,006,819	17,556,828	5,365,912	4,156,137	-	9,213,422
2015	159,767,425	42,347,984	4,822,168	9,206,109	63,265,137	18,693,283	5,538,555	4,547,336	410,760	10,936,094
2016	171,811,916	44,986,564	5,146,743	9,750,761	69,235,135	19,178,613	6,051,662	4,895,396	1,125,866	11,441,177
2017	185,529,013	49,021,923	5,941,346	11,019,111	75,555,282	20,245,518	5,454,739	5,264,784	1,177,524	11,848,786
2018	205,172,709	53,544,566	6,434,471	11,539,586	83,708,639	22,764,640	5,672,929	6,703,424	1,454,351	13,350,104

주: 1) 1990~2017년 자료는 OECD에 제출한 확정치이며, 2018년은 예측치임.
2) 각 항목은 반올림되어 있어, 합계와 맞지 않을 수 있음.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http://stats.oecd.org에서 2021.01.15.인출)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Public social expenditure by fund structure

08-1
연 관

지표 정의

공공사회지출(SOCX)의 9대 기능별 지출구성을 보여주는 보조지표로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 〈표 14-9〉의 지출규모는 OECD SOCX 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출한 것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정부 재정지출 등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14-9 연도별 9대 영역별 공공사회지출의 재원구조

(단위: 백만 원)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2017
총액	총계	28,774,138	56,555,604	104,800,057	157,163,072	185,644,559
	중앙정부	6,520,544	12,881,158	25,545,129	45,254,460	49,151,293
	지방정부-매칭비	2,201,922	4,362,921	10,122,877	14,607,784	15,743,546
	지방정부-자체사업비[1]	-	2,247,476	2,083,191	3,327,991	5,847,455
	지방교육청[2]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687,988	12,093,677	20,910,931	33,273,688	40,056,517
	사회보험-고용보험	988,839	2,288,458	5,364,047	6,328,941	8,381,983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460,071	3,048,243	3,549,120	4,415,317	4,536,025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9,776,163	19,227,380	34,780,541	46,386,437	56,948,769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1,830,043	2,763,510	4,013,530
	공기업	138,611	406,291	614,178	804,944	965,442
노령	총계	7,570,329	12,653,010	24,139,031	42,274,212	49,021,923
	중앙정부	70,839	584,825	3,173,205	7,967,872	8,201,977
	지방정부-매칭비	334,300	594,934	1,222,579	2,632,987	2,619,330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494,376	580,531	940,942	1,461,674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7,074,315	10,716,826	18,785,905	30,196,899	36,043,528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90,875	262,050	376,811	535,512	695,413
유족	총계	1,071,530	2,013,164	3,034,681	3,616,891	5,941,346
	중앙정부[3]	516,494	880,704	1,303,899	1,020,788	1,332,815
	지방정부-매칭비	-	-	-	-	-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438,443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508,573	1,083,262	1,730,754	2,596,103	3,553,082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617,006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46,463	49,197	28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	-	-	-	-

통계정보

작성기관	통계명	최초 작성연도	최근 작성연도	주기
보건복지부	재원구조별 공공사회지출 (내부자료)	2016	2017	-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2017
근로무능력	총계	2,271,519	5,492,187	7,187,509	10,169,908	11,019,111
	중앙정부	692,378	1,500,633	1,805,876	2,945,170	3,023,436
	지방정부–매칭비	402,673	877,439	1,886,855	2,525,732	3,368,346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427,923	119,964	399,361	939,125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104,946	293,327	393,988	480,327	459,642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1,031,112	2,256,604	2,757,200	3,564,629	2,975,291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40,411	136,261	223,627	254,689	253,271
보건	총계	12,804,343	25,474,475	47,367,506	62,016,003	75,495,574
	중앙정부	1,804,839	3,787,747	6,959,831	8,389,053	9,963,791
	지방정부–매칭비	840,846	1,716,906	3,005,199	3,626,316	3,625,757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428,959	791,639	791,920	850,688	943,728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9,729,699	19,178,183	34,780,513	46,386,437	56,948,769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1,830,043	2,763,510	4,013,530
	공기업	-	-	-	-	
가족	총계	664,909	2,131,329	8,553,279	16,701,343	20,420,772
	중앙정부	437,014	1,085,090	4,274,066	11,315,035	13,606,075
	지방정부–매칭비	227,895	323,771	3,138,485	3,492,262	3,788,368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648,184	770,043	1,183,250	2,102,121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	74,283	370,685	710,525	923,830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	-	-	271	378
적극적 노동시장	총계	2,313,351	1,022,514	4,030,093	7,090,584	5,454,739
	중앙정부	1,795,304	560,313	2,723,260	4,469,239	2,364,552
	지방정부–매칭비	-	-	-	1,201,614	874,560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518,047	462,201	1,306,833	1,419,731	2,215,627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	-	-	-	-

기능	재원	2000	2005	2010	2015	2017
실업	총계	470,792	1,751,974	3,686,529	4,198,685	5,264,784
	중앙정부	-	-	-	-	-
	지방정부-매칭비	-	-	-	-	-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	-	-	22,258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	-	-	-	-
	사회보험-고용보험	470,792	1,751,974	3,686,529	4,198,685	5,242,526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	-	-	-	-
주거	총계	-	-	-	-	1,177,524
	중앙정부	1,203,675	4,481,845	5,304,994	9,147,302	929,595
	지방정부-매칭비	396,209	849,870	869,760	1,128,873	190,394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676,993	612,654	804,438	57,535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154	263	283	360	-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7,325	7,980	13,740	14,472	-
기타	총계	1,607,364	6,016,951	6,801,430	11,095,445	11,848,786
	중앙정부	1,203,675	4,481,845	5,304,994	9,147,302	9,729,052
	지방정부-매칭비	396,209	849,870	869,760	1,128,873	1,276,790
	지방정부-자체사업비	-	676,993	612,654	804,438	826,299
	지방교육청	-	-	-	-	-
	사회보험-4대공적연금	154	263	283	360	265
	사회보험-고용보험	-	-	-	-	-
	사회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	-	-	-	-
	사회보험-노인장기요양	-	-	-	-	-
	공기업	7,325	7,980	13,740	14,472	16,380

주: 1) 자체사업비자료는 행정자치부의 예산개요 및 기금 운용개요(순계)(2004-2009년), e-호조system분석(2010년 이후)에 기초함.
2) 지방교육청자료는 재원구분이 용이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매칭비)로만 구분된 것임.
3) 2013년 이후 국가보훈처의 유족급여는 SOCX의 '유족' 영역과 '기타' 영역(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등)으로 분류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Social Security Factbook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숙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안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하솔잎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소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분야별 참여 전문가

김종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혜자	한국교육개발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근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변금선	청소년정책연구원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최보람	용인송담대학교
최복천	전주대학교
최은희	LH토지주택연구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고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자인 좋은PR소야 070-4616-4040